2014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Ⅲ)

2014. 10

금융위원회

2014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 (Ⅲ)

2014. 10

금융위원회

총 목 차

(가, 나, 다, 순)

(Ⅰ권)

김 기 식 의원 ····· 1

김 상 민 의원 ····· 111

(Ⅱ권)

김 영 환 의원 ····· 1

김 을 동 의원 ····· 319

김 종 훈 의원 ····· 325

(Ⅲ권)

민 병 두 의원 ····· 1

박 병 석 의원 ····· 27

신 동 우 의원 ····· 337

유 의 동 의원 ····· 623

유 일 호 의원 ····· 673

이 운 룡 의원 ····· 1003

요 구 자 료 목 차

(가, 나, 다, 순)

민병두 의원

1. 최근 5년간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보유 및 이용 현황 ····· 3

2. 최근 5년간 각종 상품권 구입 현황 ····· 4

3.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현황('09년부터) ····· 5

   - 금융투자업자별로 위반횟수

4. 녹색금융 이행실적 ····· 6

5. 혁신평가제도 관련 일체 ····· 7

   5-1. 기술금융 관련 연도별 목표

   5-3. '14.9월 현재 기술금융 실적

   5-4. TCB 수수료 산정 기준

6. 4급 이상 공무원 주식 등 보유 현황 ····· 23

7.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관련 적격 여부 판단 ····· 24

8. 금융위에 현재 인·허가 신청된 사안 중 2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는 사안 일체(지체사유 포함) ····· 25

박병석 의원

1. 2013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 29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290

3. 최근 3년간 내부 감사현황 ····· 293

   - 최근 3년간 내부 감사 및 직원 징계 현황

4. 소득수준별 대출 잔액 (최근 3년, 금융업권별 구분) ····· 317
5. 가계부채 업권별 잔액규모 ····· 318
6. 가계부채 업권별 연체율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 319
7. 자영업자 대출 추이 ····· 320
8. 다중채무자 현황 ····· 321
9. 최근 3년 금융권 제재 건수 및 내용 ····· 322
10. 서민금융총괄기구 설치방안 ····· 323
11. 신복위, 미소금융, 햇살론 개인보증운영실적 ····· 328
12. 자본시장조사단 활동 성과 ····· 329
13. 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 331
14. 금융업권별 부실채권 정리 실적 ····· 332
15-1.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 333
15-2. 기술금융 실적 ····· 335

신동우 의원

1. 최근 3년간 내부감사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현황,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339
2. 최근 3년간(2012년 ~ 2014년 9월) 직원 징계처리현황 및 조치결과 ····· 364
   - 직급, 주요업무, 징계사유, 부적절행위 적발기관, 징계사항 및 결과 등
3. 최근 3년간(2012년 ~ 2014년 9월) 퇴직자 중 산하단체나 직할기관, 금융사 등으로 재취업한 현황 -성명, 퇴임당시 직책 등 경력, 재취업 직장명 및 직책, 퇴직 및 재취업 일시 ····· 365

4. 금융위가 감사를 나갈 수 있는 기관 목록 및 최근 5년간('10~'14) 감사 현황 및 결과 ····· 367

5. 2014년 9월 현재 은행권 수수료 개편 논의 진행상황 및 경과보고 ··· 602

6. 최근 3년간(2012~2014년 9월)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 603

7. 최근 3년간 신용카드사별 과태료 부과현황 ····· 604

8.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9월) 해외겸용카드 발급건수 및 수수료 지급 현황, 카드발급 후 해외 사용 실적이 없는 카드 수 · 605

9.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9월) 금융위가 해외국가(정부기관)와 체결한 MOU 체결현황 및 MOU 체결의 성과와 의미, 향후 추진 계획 ····· 606

10.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9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금융위가 실시한 연구용역보고서 또는 내부 검토보고서 ··· 608

11. 최근 3년간(12년~14.9월) 금융위원회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 609

12. 최근 3년간 위원회별 개최현황 ····· 610

13.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9월) 금융위가 규제 개혁위원회에 심사요청한 규정 및 주요내용, 결과 ····· 611

14.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9월) 금융위가 규제 개혁위원회에 심사요청한 규정 및 주요내용, 결과 ····· 612

15. 최근3년간(2012~2014.8월) 공적자금 연도별, 대상별 지원 및 회수 현황 및 회수계획 ····· 617

유의동 의원

1. 최근 3년간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 625

2.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 보고서 ····· 626
3. 최근 3년간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 현황(사법처리, 내부징계 구분 요망 / 징계 사유 포함) ····· 627
4. 최근 3년간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이 原告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 628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 635
6.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 641
7.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 641
8. 정부업무평가결과 ····· 643
9~10. 2013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 644
11. 최근 3년간 판공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645
12. 최근 3년간 퇴직자 현황 ····· 646
13. 최근 2년간 4급이상 퇴직자 취업심사 현황 ····· 647
14. 최근 2년간 5급이하 재취업 심사결정 사유 및 심사결과 ····· 647
15. 2010년 이후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 648
16. 언론해명자료 및 정정보도 요청 목록 (2013년 10월-현재) ····· 649
17. 2014년도 업무계획 ····· 657
18. 2013년도 기관업무평가실적(경영실적보고서) ····· 658
19. 최근 5년간 기관업무평가실적 평가등급변동현황 ····· 658
20. 수의계약 현황(2013.1월 ~ 현재) ····· 659
21. 최근 3년간 직원해외연수 현황(파견자명, 소속, 파견국가 및 기관, 파견목적, 파견기간, 경비사항 포함) ····· 660
22. 최근 3년간 국외출장현황 ····· 663
23. 201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기관자료 ····· 671

24. 최근 3년간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 672

유일호 의원

1. 최근 10년간 금융채무불이행자 관련 ····· 675

A.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채무액 월별 증감 추이

B.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선정 기준관련 법령/규정 사본 (변동연혁 포함, 민간기구의자체 기준 등도 포함)

C.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정부/ 금융기관의 직/간접적 지원제도 현황 및 성과

2. 최근 5년간 사금융 시장 현황 ····· 676

A. 등록업체수, 대출자 수 증감추이

B. 대부업 전체 대출규모, 이익 규모

3. 최근 5년간 대부업체 관련 ····· 677

A. 연도별 업체별 자산총액, 대출액, 연체액, 연체율, 순이익 변화 추이

B. 외국계 대부업체의 국내진출 현황 및 사업규모

C. 일본계 자금이 투자된 대부업체의 상호명, 회사별, 자산총액, 대출액, 연체율, 순이익 변화 추이

4. 가계부채 관련 ····· 678

A. 최근 10년간 가계부채 추이

B. 한국은행 등 가계부채 관련 통계 생산 부처(청) 현황 및 차이점 … 679

C. 금융권역별/만기구조별 가계대출 현황 (저축은행 구분) ····· 686

D. 최근 3년간 발표한 가계부채 관련 대책 및 각 대책별 효과 ····· 688

5-A. 금융위가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의 종류 및 관련법률 ····· 746

5-B. 연도별 과징금 예산 및 징수현황 ····· 747

5-C. 연도별 과징금 체납 및 정리현황 ····· 747

5-D. 체납 후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재산추적 등)까지 구체적인 절차(기간 및 근거기준) 및 방법(금융위의 권리, 의무 등)에 대한 상세설명 ····· 748

5-E. 연도별 총 결손처분 건수 및 금액 ····· 749

5-F. 연도별 가산금 종류별 징수 및 수납현황 ····· 750

5-G. 과징금 부과에 따른 불복관련 규정 및 절차 설명 ····· 751

5-H. 과징금 불복절차에 따른 ····· 752

a) 불복접수 및 처리현황

b) 평균결정기간

c) 각각의 경우에서 결정기간을 초과한 건수 및 금액

d) 각각의 경우에서 결정기간을 초과한 건을 금융위 승 건, 금융위 패 건으로 구분하여 건수와 금액을 일치시킬 것

5-I. 연도별 과징금 관련 소송 현황(금융위 기준 승소/패소/부분승(패)소 등을 건수, 금액으로 명기) ····· 754

6. TF 관련 ····· 755

A. 최근 3년간 금융위 내부 설치한 T/F현황

B. T/F 통한 제도개선 등 결과물

C.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참여한 외부 T/F현황

D. 외부 T/F 발표 및 의견제시를 위해 작성한 자료 일체

7. 개인신용평가 관련 ····· 971

A. 최근 3년간 개인신용평가 관련 민원접수 내역

B. 최근 3년간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및 성과

C. 신용평가 회사 별 개인신용평가 개요 및 회사별 차이점

D. 개인신용평가 관련 법령 및 규정

E. 개인신용평가 회사별/종류별 수수료 현황 (건당 수수료 및 연간 수수료 수입)

8. 주식시장 관련 ····· 972

A.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현 시장별 최근 3년간 시장상황 및 이에 대한 금융위의 평가

B. 최근 3년간 주식시장 선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및 성과

9. 국민행복기금 관련 ····· 975

A. 국민행복기금 개요(대상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사업계획서 대통령 등 보고서 사본)

B. 국민행복기금 운영 현황(성과 및 당초 계획대비 현황에 대한 평가)

C. 지원 내역(신청자/지원자, 신청액/지원액, 중도탈락(포기)자/금액, 상환계획대비 상환율)

10. 단기지표금리 ····· 976

A. 단기지표금리 개선을 위한 T/F 구성 이후 논의내용 및 진행 상황(회의현황 및 회의자료, 회의록 일체)

이운룡 의원

1. 기술신용평가 관련 ····· 1005

1-1.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자격 요건, 인허가 절차

1-2. 기술신용평가 수수료가 기술평가 난이도와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100만원으로 책정된 사유 ····· 1006

1-3. 기술정보 DB(TDB) 구축시 대학 보유 특허 및 기술이 누락된 사유 ····· 1006

1-4. 대학보유 특허 및 기술을 기술신용평가 제도와 연계 활용하기 위해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TCB 역할 부여에 대한 금융위원회 검토 의견 ····· 1007

2. 은행별 기술금융 전담 조직 운영 현황 (신설 계획 포함) ····· 1008

3.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추진 관련 ····· 1009
(추진목표, 일정, 세부 추진성과, 성과미비 사유)

4. 금융관행 실태조사 보고서 ····· 1012

5. 구속성 예금 규제 변천 연혁 ····· 1013

- 도입연도, 관렵 법·규정·고시 변경일, 변경목적 및 주요내용

민 병 두 의원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 최근 5년간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보유 및 이용 현황

☐ 해당 없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2. 최근 5년간 각종 상품권 구입 현황

☐ 해당 없음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3.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현황('09년부터)
- 금융투자업자별로 위반횟수

□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여 직접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 녹색금융 이행실적

□ 녹색성장을 유도하고 녹색산업을 신성장 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자금 지원 실시중**

○ 정책금융기관은 **'09~'14년간** 녹색산업에 대해 대출(25.8조), 보증(47.4조), 투자(1.0조) 등의 형태로 **총 73.7조원을 공급**

< 정책금융기관별 녹색산업 자금지원 실적 >

(단위 : 조원)

정책금융기관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3분기)	합계
산 은	0.7	0.6	0.8	2.0	1.9	1.8	7.8
기 은	1.2	2.3	2.6	2.9	3.1	2.3	14.4
정금공	-	0.7	0.8	1.4	0.9	0.3	4.1
신 보	2.6	3.6	5.4	8.1	7.0	5.3	32.0
기 보	1.7	1.8	2.4	3.3	3.5	2.7	15.4
합 계	**6.2**	**9.0**	**12.0**	**17.7**	**16.4**	**12.4**	**73.7**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기술금융 관련
5. 혁신평가제도 관련 일체
5-1. 기술금융 관련 연도별 목표
5-3. '14.9월 현재 기술금융 실적
5-4. TCB 수수료 산정 기준

금융정책과

□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 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하는 **혁신지표를 금년 하반기중 도입**할 계획

○ 아직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은 확정된 바 없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혁신위원회**를 통해 마련할 계획

※ 기술금융 혁신평가(안)은 지난 9.18일 발표(보도자료 별첨)하였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확정할 예정입니다.

산업금융과

□ **기술신용평가 활용은 '14.7월 이후 기보 보증부 대출, 정금공 온렌딩 대출**에 의무 적용 중이며, **'15년 이후 신보 보증부 대출 일부**(예: 창업 초기 기술력 우수 기업)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

○ 그 외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적으로 기술신용평가 활용 중

□ 과거 정책금융 집행실적, 은행 자율 수요 등에 비추어 볼 때 TCB 평가 기반 기술신용대출은 **'14년 하반기 7,500건, '15년 22,600건, '16년 40,200건 수준**으로 전망

○ **'14.8월말 현재**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1,661건**에 **1조 1,400억원 수준**(승인기준, 잠정)

○ **초기 업무구축** 단계를 지나 **실적이 빠르게 증가**(7월 599 → 8월 1,062건)하고 있어 **연말까지 무난하게 당초 전망치**(7,500건) **달성 예상**

< 연도별 TCB 기반 대출건수(전망) 및 실적(잠정) >

(단위: 건)		정책금융 의무활용				은행 자율	합계
			온렌딩	기보	신보		
'14년下	전망	5,800	1,800	4,000	-	1,700	7,500
	14.8말 실적	1,436	358	1,078	-	225	1,661
'15년 전망		18,600	4,600	13,000	1,000	4,000	22,600
'16년 전망		35,000	11,000	21,000	3,000	5,200	40,200

※ '14.9월말 기술금융 실적 집계 중

□ 현재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으로는 **기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3개사**가 지정·운영 중

○ **평가 수수료 가격**은 평가 수요자(금융기관)와 공급자(TCB) 간 합의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정부가 관여하고 있지 아니함**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작성 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이형주 과장(2156-9750)	담당자	김윤희 사무관(2156-9751) 윤동욱 사무관(2156-9671)	
배포일	2014. 9. 18.(목) 14:00	배포 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3매

제 목: 기술금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14.8월말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약 **1,660건, 1.1조원** 실시(승인기준, 잠정)

◆ 향후 은행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 가칭)" 도입**(10월)

▸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통해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 등을 공개**(10월)

▸ **"기술금융 박람회"** 개최(11월),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12월)

1. 기술신용대출 공급 현황

□ **'14년 8월말 현재**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1,661건**에 **1조 1,400억원 수준**(승인기준, 잠정)

○ **시행초기 업무구축** 단계를 지나 **실적이 빠르게 증가**(7월 599 → 8월 1,062건)하고 있어 **연말까지 무난하게 당초 전망치**(7,500건) **달성 예상**

□ **기업은행이 약 700건, 5,080억원** 수준으로 기술금융을 선도 중

○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약 200건, 1,750억원 수준),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45건, 200억원 수준)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붙임: 참고1)

< 연도별 TCB 기반 대출건수(전망) 및 실적(잠정) >

(단위: 건)		정책금융 의무활용				은행 자율	합계
			온렌딩	기보	신보		
'14년下	전망	5,800	1,800	4,000	-	1,700	7,500
	14.8말 실적	1,436	358	1,078	-	225	1,661
'15년 전망		18,600	4,600	13,000	1,000	4,000	22,600
'16년 전망		35,000	11,000	21,000	3,000	5,200	40,200

2. 향후 추진계획

□ **(기술금융 혁신평가 도입: TECH(가칭)) 기술금융 비중**(Technology Financing), **기술 사업화 지원**(Entrepreneurship), **신용지원 비중**(Credit Financing), **전문인력 등**(Human Resources) 4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

○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모의평가** 등을 거쳐 **「금융혁신위원회」 2차 회의 심의** 후 **평가지표 확정**(10월중순)

○ 최종 등급은 **금융기관간 상대평가를 통해 배분**(분기별 점검)하고, **이와 연계하여 다각도의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9월말 실적**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등급평가 실시·공개**(10월말)

< 기술금융 혁신평가(안)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예)
T			40
	기술금융 비중	평가기간 중 중기대출 공급액 대비 기술금융* 공급액 비중 * 기술금융: TCB 및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서 기반 대출, 투자	20
	기술기업 비중	평가기간 중 중기차주수 대비 기술금융 중기차주수 비중	20
E			20
	기술력 반영도	차주의 신용등급 대비 기술신용등급 평균 상향폭	10
	창업기업 지원	중기차주수 대비 업력 7년 이내 기술금융 중기차주수 비중	10
C			20
	신용지원 비중	평가기간 중 기술금융 공급액 대비 신용대출·투자 공급액 비중	10
	신용지원 증가율	직전 신용지원 공급액 대비 해당기간 신용지원 공급액 증가율	10
H			20
	기술금융 전문인력	이공계 전공자 또는 기술평가 3년 이상 경력자 등 전문인력 수 기술금융 관련 자체 및 외부 위탁 교육 수료자 및 교육시간	10
	기술금융 전담조직	기술금융 전담조직 구축 여부 기술금융 평가서 산출, 기술금융 여신 시행 등 실적	5
	기술금융 심사모형	은행의 비재무평가 중 기술 항목을 TCB 평가와 연계 TCB가 우수 기술(신용)등급 평가시 은행의 신용등급 조정	5

□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구축) 기업금융나들목, 은행연합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실적을 공개**(10월중)

○ **기보 보증부 대출, 정금공 온렌딩 대출, 그 외 은행 자율대출**로 구분하여 **건수 및 금액을 주 단위**로 업데이트

○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 가칭) 지표**도 **주기적으로 공개**

□ **(기술금융 박람회 개최) 「창조경제 박람회」**(11.27~30일)와 연계하여 **정책금융기관 및 벤처캐피털 등의 기술금융 상담·홍보의 場** 마련

○ 기술금융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해 **서훈·표창** 등 포상과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

□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T/F를 운영**(9~11월)하고,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12월중)

○ **기술평가정보 공유** 및 **수요자(금융기관 등 투자자) 관점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 붙임: 기술금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붙임

기술금융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014. 9.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추진배경

Ⅱ.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및 활용 현황

1.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현황

2. 기술신용대출 공급 현황

Ⅲ. 향후 추진계획

[참 고]

1. 은행별 기술금융 지원 실적 (8월말, 잠정)

2. 기술금융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상세설명

I. 추진배경

□ **기술금융**은 일반적으로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

○ '13년말 기준 기술금융 공급 규모는 **26조원*** **수준**으로 **기보·신보의 보증에 기반한 대출 형태**(19조원)가 대부분

* 26조원 = 보증부 대출(19조원) + 투자(6조원) + 은행 대출(0.7조원) + 기술 이전·사업화 관련 정부예산 등(0.5조원)

□ 그간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

○ 이는 금융기관이 여전히 **담보나 보증 위주의 보수적인 자금지원 관행을 지속**하고 있고,

○ 기술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기술평가시장**은 은행 등 **금융권의 수요**에 맞는 **평가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

□ 기술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대출·투자 수요에 맞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무형의 기술**은 유형담보와 달리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초기에는 가치평가보다 **등급평가를 우선 시행**

○ 금융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술신용등급을 생성하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을 도입**

○ 앞으로 **기술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기술가치평가 기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

* (예)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 투자금 회수를 위한 펀드규모 확대

Ⅱ.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및 활용 현황

1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현황

1. 기술신용평가기관(TCB)

□ 현재 **기보**(14.6.20.), **한국기업데이터**(KED, 6.25.), **나이스평가정보**(7.15.) **3개사**를 TCB로 지정·운영 중

○ **기술등급과 신용등급을 각각 산출**한 후 이를 가중합산하여 기술신용등급 산출(기술신용등급과 신용등급은 등급체계가 동일)

< 기술신용등급 산출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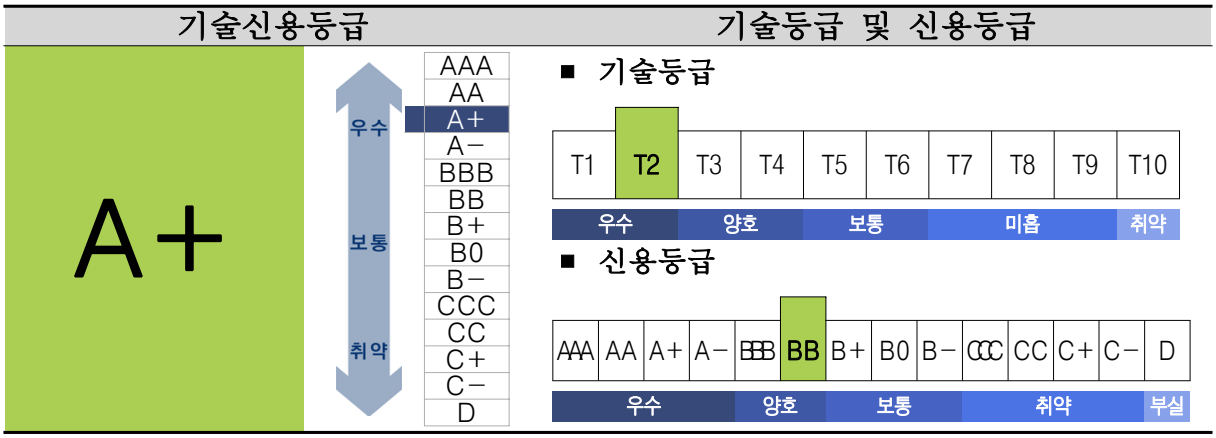

□ 향후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허·회계법인도 적정요건 구비시** TCB로 지정 가능

2.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 **신용정보법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가 기술정보를 추가 집중 관리하여 **TDB(www.tdb.or.kr)**로서 기능

○ **32개 민·관 협약기관**으로부터의 수집정보 등 **약 800만건**을 은행, 보증기관, TCB 등 **23개 기관**에 제공 중

○ 연말까지 **협약기관을 약 100개, 제공 정보수를 1,000만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DB 활용기관**을 **확대**

2 기술신용대출 공급 현황

□ **'14.8월말 현재**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1,661건**에 **1조 1,400억원 수준**(승인기준, 잠정)

□ **업무초기 2달 경과 시점**에서 각 은행별 내부교육 등 숙련도 제고 단계를 거치고 **기술신용평가 대출이 본격화**되는 추세

○ 내역별로는 **기보 보증부 대출이 약 1,100건, 4,000억원 수준**으로 **전망치의 1/4 이상**(건수 기준)**을 실행**하는 등 실적 양호

○ **정금공 온렌딩 대출**은 **약 360건, 6,050억원 수준**으로 전망치의 **1/5 수준을 보이는 등 다소 실적이 저조**

- 은행이 평가 의뢰한 기업이 **TCB에 평가 기본자료를 제출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고, **TCB의 업무초기 평가속도가 높지 않아** TCB 평가접수건 중 **약 40%가 평가 미완료**

○ **그 외 은행 자율대출**은 **약 220건, 1,600억원 수준**으로 은행이 제출한 전망치의 **1/7을 하회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

- **기술금융 관련 조직·인력 충원, 전지점 직원 대상 내부교육** 등 기술금융 취급을 위한 **내부 확산 노력 부족**이 주요 원인

□ **기업은행**이 **약 700건, 5,080억원** 수준으로 기술금융을 선도 중

○ 시중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약 200건, 1,750억원 수준),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45건, 200억원 수준)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

< 연도별 TCB 기반 대출건수(추정) 및 실적(잠정) > (☞참고1)

(단위: 건)		정책금융 의무활용				은행 자율	합계
			온렌딩	기보	신보		
'14년下	전망	5,800	1,800	4,000	-	1,700	7,500
	14.8말 실적	1,436	358	1,078	-	225	1,661
'15년 전망		18,600	4,600	13,000	1,000	4,000	22,600
'16년 전망		35,000	11,000	21,000	3,000	5,200	40,200

Ⅲ. 향후 추진계획

1 **(기술신용대출 확대)** TCB의 전문인력 추가 충원, TDB의 TCB 평가정보 집중 강화* 등을 통해 **TCB의 평가역량 및 처리속도 제고**

* (예) TCB 평가서 중 기술 관련 평가의견을 집중하여 유사기술 평가시 활용

○ **기술금융 혁신평가**를 통해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 및 역량을 평가하고 이와 연계하여 **다각도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2 **(기술금융 혁신평가: TECH(가칭)) 기술금융 비중**(Technology Financing), **기술 사업화 지원**(Entrepreneurship), **신용지원 비중**(Credit Financing), **전문인력 등**(**Human** Resources) 4개 항목별로 평가

○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모의평가** 등을 거쳐 **「금융혁신위원회」2차 회의 심의** 후 **평가지표 확정**(10월중순)

○ 최종 등급은 **금융기관간 상대평가를 통해 배분**(분기별 점검)

- **9월말 실적**을 대상으로 **기술금융 등급평가 실시·공개**(10월말)

< 기술금융 혁신평가(案)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예)
T			40
	기술금융 비중	평가기간 중 중기대출 공급액 대비 기술금융* 공급액 비중 * 기술금융: TCB 및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서 기반 대출, 투자	20
	기술기업 비중	평가기간 중 중기차주수 대비 기술금융 중기차주수 비중	20
E			20
	기술력 반영도	차주의 신용등급 대비 기술신용등급 평균 상향폭	10
	창업기업 지원	중기차주수 대비 업력 7년 이내 기술금융 중기차주수 비중	10
C			20
	신용지원 비중	평가기간 중 기술금융 공급액 대비 신용대출·투자 공급액 비중	10
	신용지원 증가율	직전 신용지원 공급액 대비 해당기간 신용지원 공급액 증가율	10
H			20
	기술금융 전문인력	이공계 전공자 또는 기술평가 3년 이상 경력자 등 전문인력 수 기술금융 관련 자체 및 외부 위탁 교육 수료자 및 교육시간	10
	기술금융 전담조직	기술금융 전담조직 구축 여부 기술금융 평가서 산출, 기술금융 여신 시행 등 실적	5
	기술금융 심사모형	은행의 비재무평가 중 기술 항목을 TCB 평가와 연계 TCB가 우수 기술(신용)등급 평가시 은행의 신용등급 조정	5

3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기업금융나들목, 은행연합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실적을 공개**(10월중)

○ **기보 보증부 대출, 정금공 온렌딩 대출, 그 외 은행 자율대출**로 구분하여 **건수 및 금액을 주 단위**로 업데이트

○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 가칭)** 지표도 **주기적으로 공개**

4 **(기술금융 T/F 운영)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T/F**를 구축(9.3일)하여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 마련(12월중)

○ **기술평가정보 공유** 및 **수요자(금융기관 등 투자자) 관점의 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 정부 조달사업 및 R&D 사업 등에의 **TCB 활용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금융기관이 부담 중인 TCB **평가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및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재정·세제상 지원방안 등 검토**

5 **(기술평가기반 투자활성화)** 성장사다리펀드 내에 TCB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 기술력을 평가받은 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 조성**(3,000억원 수준)

○ 세컨더리펀드(성장사다리펀드) 및 지식재산회수펀드(산은·기은) 등 **투자금 회수용 펀드를 확대**(2,100 → 4,700억원 수준)

6 **(기술금융 박람회) 「창조경제 박람회」**(11.27~30일)와 연계하여 **정책금융기관 및 VC 등의 기술금융 상담·홍보의 場** 마련

○ 기술금융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해 **서훈·표창** 등 포상과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

참고 1 은행별 기술금융 지원 실적 (8월말, 잠정)

(단위 : 억원, 대출승인기준)

구 분		기보		온렌딩		은행 자율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특수은행	기업	455	1,669	233	3,302	19	112	707	5,083
	산업	11	105	3	125	6	46	20	276
	정금공	-	-	-	-	4	231	4	231
	수출입	-	-	-	-	6	119	6	119
	농협	42	115	1	5	-	-	43	120
	수협	-	-	5	77	-	-	5	77
시중은행	국민	149	482	19	372	16	103	184	957
	신한	113	442	13	168	45	324	171	934
	외환	37	112	11	317	3	8	51	437
	우리	121	310	51	1,297	26	147	198	1,754
	하나	59	144	21	386	47	474	127	1,004
	씨티	10	17	-	-	-	-	10	17
	SC	5	10	-	-	-	-	5	10
지방은행	경남	16	42	-	-	3	12	19	54
	광주	12	23	-	-	-	-	12	23
	대구	24	122	-	-	21	77	45	199
	부산	19	35	1	1	28	37	48	73
	전북	5	38	-	-	1	1	6	39
	제주	-	-	-	-	-	-	-	-
합 계		1,078	3,666	358	6,050	225	1,691	1,661	11,407
(평균, 억원/건)		(3.4)		(16.8)		(7.5)		(6.9)	

(단위: 건)		정책금융 의무활용				은행 자율	합계
			온렌딩	기보	신보		
'14년下	전망	5,800	1,800	4,000	-	1,700	7,500
	'14.8말 실적	1,436	358	1,078	-	225	1,661
	7월	543	138	405	-	56	599
	8월	893	220	673	-	169	1,062
'15년 전망		18,600	4,600	13,000	1,000	4,000	22,600
'16년 전망		35,000	11,000	21,000	3,000	5,200	40,200

참고 2 기술금융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상세설명

1 기술금융 실적 강제 할당

○ 금융위는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 실적 우수 은행**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은행이 적극적으로 기술금융을 추진해 나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나,

○ 각 은행에 **구체적인 수치를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

2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지원시 부도율 상승 우려

○ 기술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정책금융 관련 기술신용평가를 의무화**하는 정책취지는 높은 부실 발생률이 예상되는 기업에게 **기술신용평가를 근거로 무조건 대출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 은행이 대출 결정시 **부도율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종래 사용해오던 **재무정보 이외에 기술정보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신용도 판단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할 목적**

3 기술신용평가 수수료 부담 과다

○ 기술신용평가 수수료가 **100만원으로 획일적인 것은 아니**며,

- **3개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각각 **상이한 가격체계**에 따라 은행에 **최저 40만원~50만원 수준**부터 평가서 제공 중

* 기술신용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 **TCB 평가수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하더라도 대출원금*의 **0.14% 수준**에 해당('14년上 국내은행 순이자마진(NIM): 1.81%)

* 현재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건의 평균 금액은 7억원 수준

○ 금융위는 은행의 평가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온렌딩 공급금리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임

- **온렌딩 공급금리**는 매년도 신규 실적 뿐만 아니라 기존 실적까지 포함된 **각 은행별 전체 온렌딩 잔액에 적용**되어 **금리를 소폭 인하**(예: 5bp)하더라도 은행의 **비용절감 효과가 매우 큼**

* (예) 14.6월말 기준 온렌딩 잔액 15.6조원 중 잔액 2조원 이상인 4개 은행이 10.8조원 차지 → 4개 은행에 공급금리 5bp 인하시 은행당 연간 10억원 이상 이자비용 절감('14년 하반기 TCB 평가수수료는 은행당 3~4억원 수준 발생 예상)

4 낮은 기술금융 대출금리 강제

○ **대출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 대신,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 등이 부족한 기업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이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을 할 경우 기보가 **최대 3%p까지 이차보전**하는 제도를 시행 중임(8.1일)

5 기술금융 실적 일별 보고

○ **기술금융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은행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평가 기반 대출 실적**을 **점검 중**이며,

○ **실적 점검 방식 및 주기는 「기술금융 실적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임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6. 4급 이상 공무원 주식 등 보유 현황

□ 요구하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4급 이상 공무원 전원의 신고내역을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나

○ 공직자윤리법은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사람 중 특정인의 범죄수사 또는 비위 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무단 열람 및 복사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아울러,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목적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7.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 관련 적격 여부 판단

□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여 직접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8. 금융위에 현재 인·허가 신청된 사안 중 2개월 이상 지체되고 있는 사안 일체(지체사유 포함)

□ 금융위 인·허가 사항 중 현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사안은 없음

박 병 석 의원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 2013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용

□ 붙임 : ‘2013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결과 보고서’ 참조

* 다만, 201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2014. 9. 30.자로 의결되었고 시정처리 결과보고서의 국회제출 기한은 2014. 10. 30.로, 상기 ‘시정처리결과보고서’는 수정가능성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붙임 1-1>

2013년도 국정감사
정 무 위 원 회

업 무 현 황

2013. 10. 1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일반 현황

Ⅱ.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 현황

1. 금융시장 동향
2. 금융산업 현황

Ⅲ. 2013년도 주요 정책 추진현황

1.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4대 금융현안과제의 해결방안 강구
3. 서민금융 애로 해소
4.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5.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6. 금융산업 발전방안 마련

Ⅳ. 정기국회내 제·개정 추진 주요법률 현황

[붙임]

1. 2012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 2014년도 예산(안) 개요
3. 주요 통계
4. 금융위원회 간부현황

Ⅰ. 일반 현황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재정경제부 (금융, 15과)		금융감독위원회 (12과)		금융위원회 (24과)
금융정책국(1국 1심의관 7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1국 2과), 금융정보분석원(1원 6과)	+	1관 1실 2국 12과	⇒	본부(1관 3국 1대변인 1정책관 18과) 소속기관(금융정보분석원, 1원 6과)

○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3 조 직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1정책관 18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업무보좌, 실무지원을 위해 사무국 설치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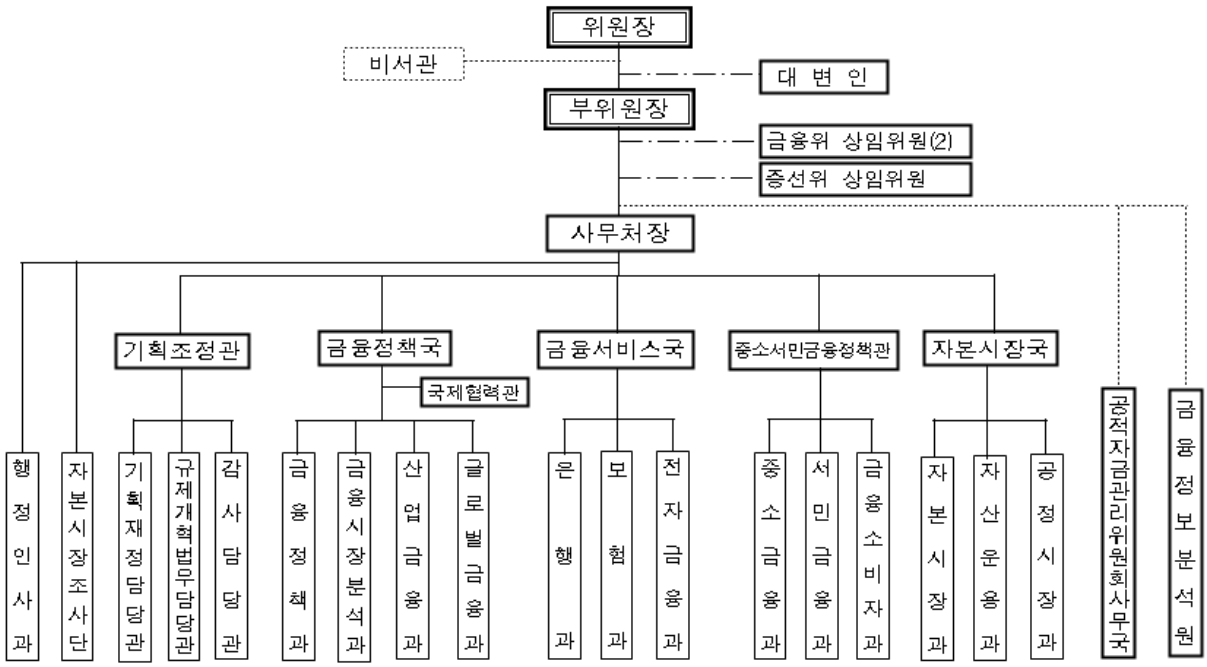

4 인원 및 예산

□ **정원 :** 251명('13.9월 현재)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기능직	계
합 계	2	228	5	8	8	251
본부	2	170	5	-	8	185
금융정보분석원	-	47	-	8	-	55
공자위 사무국	-	11	-	-	-	11

□ **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148억원, 세출예산 4,204억원('13년도)

Ⅱ.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 현황

1 금융시장 동향

가. 국제 금융시장

◇ 국제금융시장은 美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감**과 **취약 신흥국 위기 가능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 **(주가)** **글로벌 증시**는 6월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연내 축소 언급 등으로 출렁거리다 **9월 양적완화 지속 결정*** 등으로 **상승**

* 9월 FOMC에서 양적완화를 축소할 거라는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존 정책 유지 결정

	12말	13.5말	6말	7말	8말	9말	8월말비	전년말비
미국	13,104	15,116	14,910	15,500	14,810	15,130	2.16%	15.46%
일본	10,395	13,775	13,677	13,668	13,389	14,456	7.97%	39.06%
인도	19,427	19,760	19,396	19,346	18,620	19,380	4.08%	△0.24%

□ **(환율)** 美 **달러화**는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취약 신흥국 불안으로 **신흥국 통화대비 강세**를 보이다 **9월들어 약세로 전환**

	12말	13.5말	6말	7말	8말	9말	8월말비	전년말비
달러/유로	1.3192	1.2998	1.3010	1.3302	1.3222	1.3527	2.31%	2.54%
엔/달러	86.75	100.47	99.14	97.88	98.18	98.25	0.07%	13.26%
루피/달러	54.790	56.635	59.544	60.660	66.620	62.547	△6.11%	14.16%

□ **(금리)** 미국 **국채금리**는 **6월** 버냉키 발언 이후 큰 폭 **상승**했으나, **9월 양적완화 지속 결정** 등으로 **하락**

(%)	12말	13.5말	6말	7말	8말	9말	8월말비	전년말비
미국	1.76	2.13	2.49	2.58	2.78	2.61	△17bp	85bp
일본	0.79	0.86	0.85	0.80	0.72	0.69	△3bp	△11bp

□ **(유가)** 국제유가는 8월들어 **시리아 사태** 등으로 **큰 폭 상승**한 후 **9월 시리아 사태가 진정되면서 하락 전환**

($/배럴)	12말	13.5말	6말	7말	8말	9말	8월말비	전년말비
WTI	91.8	92.0	96.6	105.0	107.7	102.3	△4.94%	11.45%
Dubai	106.7	98.6	100.2	103.8	112.4	105.1	△6.50%	△1.48%

나. 국내 금융시장

◇ **국내금융시장**은 양적완화 축소 우려에 따른 글로벌 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의 건전성**이 부각되며 **안정적**

□ **(주가)** **주가지수**는 6월 버냉키 발언으로 약세를 보이다, 여타 **신흥국과의 차별화 부각**으로 외국인 투자가 지속되며 **강세 시현**

	12말	13.5말	6말	7말	8말	9말	8월말비	전년말비
KOSPI	1,997.1	2,001.1	1,863.3	1,914.0	1,926.4	1,997.0	3.66%	△0.00%
KOSDAQ	496.3	577.9	519.1	554.3	516.7	534.9	3.51%	7.77%

□ **(환율)** **원화**는 6월 글로벌시장 불안 등으로 약세를 보이다, 최근들어 **양호한 펀더멘탈** 및 **외국인 자금 유입** 등으로 **강세**

	12말	13.5말	6말	7말	8말	9말	8월말비	전년말비
원/달러	1,070.6	1,129.7	1,142.0	1,123.5	1,110.0	1,074.7	△35.3	4.1
원/100엔	1,234.1	1,124.4	1,151.9	1,147.8	1,130.6	1,098.0	△32.6	△136.1

□ **(금리)** **국내 채권금리**는 **6월** 글로벌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다소 상승**했으나, **최근 하락 전환**하며 **큰 변화없이 안정적**

(%)	12말	13.5말	6말	7말	8말	9말	8월말비	전년말비
국고채(3년)	2.82	2.78	2.88	2.92	2.88	2.82	△6bp	-
회사채(AA-,3년)	3.29	3.14	3.31	3.36	3.25	3.24	△1bp	△5bp
스프레드	47bp	36bp	43bp	44bp	37bp	42bp	5bp	△5bp

□ **(외국인)** **주식자금**은 '13년들어 순유출되다 **7월이후 순유입 전환**, **채권자금**은 8월이후 순유출 전환되었으나 **연중 순유입 유지**

(조원)	'12년	'13년 (1~9월)	1~3월	4~6월	7월	8월	9월
주식 순매수	17.6	1.2	△2.3	△7.6	1.3	1.5	8.3
채권 순투자	7.4	7.3	4.1	6.1	1.7	△2.1	△2.4

2 금융산업 현황

개 황

□ 2013년 6월 현재 **1,334개*** 금융기관이 영업중이며, **총자산은 3,433조원** 수준

* 금융위원회 감독대상 기준이며, 상호금융·새마을금고·대부업체 등은 미포함

('13.6월기준, 단위 : 개, 명, 조원)

	업체수	점포수[1]	종사자수[2]	자기자본	총자산
은 행	18	7,832	116,522	154	2,126
일 반	13	5,759	86,770	99	1,433
특 수	5	2,073	29,752	55	693
증 권	62	1,689	41,687	41	301
선 물	7	8	532	0.4	3
자산운용	85	122	4,622	3	4
보 험	55	7,911	63,522	71	730
생 명	24	4,648	30,578	49	570
손 해	31	3,263	32,944	22	160
종합금융	1	4	80	0	1
저축은행	91	341	7,488	3	44
신용협동조합	949[3]	-	18,091	5	55
여신전문	66	748	25,909	34	170
신용카드	8	281	15,244	22	84
합 계	1,334	18,655	278,453	312	3,433

1)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해외사무소 포함
2) 직원외 인력 제외
3) 조합수 기준

은 행

□ 국내은행의 **건전성은**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다소 악화된 모습**이나, **아직 양호**한 수준

○ '13.6월말 국내은행의 **BIS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은 **13.88%로 양호**한 수준이나, **'12년말(14.30%) 이후 하락세**

<국내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07.12월	08.12월	09.12월	10.12월	11.12월	12.12월	13.3월	13.6월
BIS 비율	12.31	12.31	14.36	14.55	13.96	14.30	14.00	13.88

○ '13.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총여신)은 **1.73%**로 전년말(1.33%) 대비 **상승**

- **대손충당금적립률(고정이하여신대비)은 147.6%로 양호**

<국내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07.12월	08.12월	09.12월	10.12월	11.12월	12.12월	13.3월	13.6월
부실채권비율	0.72	1.14	1.24	1.90	1.36	1.33	1.46	1.73
대손충당금 적립률	199.1	143.0	137.0	108.5	152.1	159.0	147.6	147.6

□ **'13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7조원**으로 전년 동기(5.4조원) 대비 **절반수준으로 축소**

*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1.8조원) 및 유가증권 평가손실 발생(2분기, 0.1조원), 일회성 주식매각익 미발생(전년동기 하이닉스 0.5조원) 등에 기인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추이(조원, %)>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상반기	
							상반기	
당기순이익	15.0	7.7	6.9	9.3	11.8	8.7	5.5	2.7
ROA[1)]	1.10	0.48	0.39	0.54	0.66	0.47	0.60	0.29

1) ROA(Returns On Asset) : 당기순이익/총자산, (과거 1년간 실적 기준)

보 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명보험사 상장을 통한 자본확충** 등으로 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

○ '13.6월말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273.7%**로 **최저기준**(100%)을 **상회**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단위 :%)

	'09.3월	'10.3월	'11.3월	'12.3월	'13.3월	'13.6월
생명보험회사	214.3	271.1	276.6	301.7	317.5	277.7
손해보험회사	275.9	303.2	306.1	290.3	284.9	264.3
계	230.7	279.8	284.7	298.4	307.8	273.7

○ '13.6월말 **부실채권비율은 0.72%**로 **양호한 수준**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

(단위 :%)

	'10.3월	'11.3월	'12.3월	'13.3월	'13.6월
생명보험회사	1.95	1.12	0.99	0.70	0.64
손해보험회사	0.80	1.25	1.28	1.21	0.94
계	1.74	1.15	1.06	0.83	0.72

○ 다만, 최근 **양적완화 축소** 우려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시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잠재리스크 상존**

□ '13.6월 **당기순이익**은 **1.3조원**(생보사 0.8조원, 손보사 0.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다소 감소**

* '13.6월 : 1.6조원(생보사 0.8조원, 손보사 0.8조원)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단위 : 조원)

	FY'08	FY'09	FY'10	FY'11	FY'12	FY'13.1Q
생명보험회사	0.6	2.5	4.0	3.4	3.2	0.8
손해보험회사	1.3	1.5	2.0	2.4	2.4	0.4
계	1.9	4.0	6.0	5.8	5.6	1.3

금융투자업

□ **(증권사)** ’13.6월말 현재 **증권사의 당기순이익은 0.1조원**으로 거래대금 감소 등에 따라 **수익성은 지속 하락**

○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494%**로 **지도비율**(150%)**을 큰 폭으로 상회**

< 증권산업 주요 경영지표 >

구 분	FY’10 (‘11.3월말)	FY’11 (‘12.3월말)	FY’12 (‘13.3월말)	FY’13.1분기 (‘13.6월말)
당기순이익(조원)	2.8	2.2	1.2	0.1
ROE(%)	7.7	5.6	3.0	1.6 (연환산)
영업용순자본비율(%)	555	605	506	494

* NCR = $\frac{\text{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 − 비유동성 자산등 차감 + 후순위차입금 등 가산)}}{\text{총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 \times 100$

□ **(자산운용사)** ’13.6월말 현재 **총 수탁고**(NAV)는 **340조원**으로 **주식형 공모펀드의 수탁고 정체** 등으로 **수익성 악화**

○ **당기순이익**은 펀드순자산 감소 등에 따라 **하락추세**이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528%**로 **안정적인 수준**

< 자산운용산업 주요 경영지표 >

구 분	FY’09 (’10.3월말)	FY’10 (’11.3월말)	FY’11 (’12.3월말)	FY’12 (’13.3월말)	FY’13 1Q (’13.6월말)
총 수탁고(조원)	329.3	304.8	293.1	335.4	339.8
당기순이익(억원)	4,578	4,010	3,052	3,287	1,046
영업용순자본비율(%)	506.1	497.5	519.7	534.0	528.0

중소금융

□ **(신용카드사)** 우리카드 분사('13.2월) 등으로 **카드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 신용카드사 주요 경영지표 >

	'09말	'10말	'11말	'12말	'13.6말
신용카드사 수	6	6	7	7	8
총자산(조원)	44.4	54.5	81.8	82.4	84.3
당기순익(억원)	18,644	27,128*	15,232	13,056	9,572
조정자기자본비율(%)	29.1	28.5	25.6	25.8	27.6
연체율(%)	2.2	1.7	1.9	1.85	2.03

* 삼성카드 계열사주식 처분이익(6,075억원) 및 신한카드 법인세 환급액(1,955억원) 포함

□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이후 자본적정성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자산 축소, 손실지속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

< 저축은행 주요 경영지표 >

	'09.6말	'10.6말	'11.6말	'12.6말	'13.6말*
저축은행 수	106	105	98	93	91
총자산(조원)	74.9	86.4	69.8	50.6	43.8
당기순익(억원)	△566	△7,728	△27,777	△16,608	△10,791
BIS 비율(%)	9.4	9.1	5.6	7.4	10.4
연체율(%)	15.7	12.6	15.5	21.3	21.5

* '13.6말 결산공시 전 잠정치

□ **(신 협)** 급증하던 **자산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감소**하고 **건전성지표**도 **다소 악화**

< 신용협동조합 주요 경영지표 >

	'09말	'10말	'11말	'12말	'13.6말
신협 수	982	962	955	949	949
총자산(조원)	39.7	47.8	49.6	55.3	55.3
수신(조원)	34.8	41.9	43.3	48.8	49.1
여신(조원)	22.9	27.5	30.8	32.1	32.4
당기순익(억원)	1,848	3,373	2,920	1,731	83
연체율(%)	6.9	6.5	6.0	6.4	6.9

Ⅲ. 2013년도 주요 정책 추진현황

1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외환건전성·가계부채 등 우리 금융시스템의 **잠재 취약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가. 외환건전성 제고

(1) 추진 실적

□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매월 외화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자금부족 은행**의 **자금확충을 독려**

* '08년 금융위기 상황을 가정해, 최소한 향후 3개월간 유출예상액 만큼 외화유동성 확보

○ 국내은행이 단기차입 보다는 **중장기차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외환건전성 강화 노력 추진**

* 국내은행 단기차입 비중(%) : ('08말) 50.1 ('11말) 26.3 ('12말) 18.0 ('13.7월말) 19.9

□ 금융위·금감원 합동 **「금융상황점검회의**(주재 : 금융위 부위원장)」를 중심으로 **주요 금융이슈** 및 **외환시장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

○ 외화차입 여건 및 유동성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상황별로 **대응방안을 신속 시행**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2) 향후 계획

□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지속 실시하여 **외화유동성 여력**을 **점검**하고, **부족분**은 조달 계획을 마련하여 **조기에 확충**토록 독려

□ 외환부문 **위기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자체 위기진단**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포착**을 **강화**

* 국내·외 시장지표 등의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를 기준으로 요주의, 준위기 및 위기 단계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

나.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1) 추진 실적

□ **총량적 차원**에서는 '11년 이후 **가계부채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고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는 완화**

* 가계부채 증가율(%) : ('11.2Q)9.6 (4Q)8.7 ('12.2Q)5.9 (4Q)5.2 ('13.2Q)5.5
* 고정금리 가계대출비중(%) : ('10말) 5.1 → ('13.7월) 23.0
  비거치식분할상환 주담대 비중(%) : ('10말) 6.4 → ('13.6월) 17.4

□ **미시적 차원**에서는 저소득층·고령층 등 **취약계층, 하우스푸어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추진**

○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국민행복기금**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추진**

(2) 향후 계획

□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구조개선 등 연착륙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취약업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

○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대출 공급 확대, 커버드본드법 제정** 등을 통해 **가계부채 대출구조 개선을 유도**

□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금융, 복지, 취업 지원 등 **맞춤형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

○ **미시분석을 강화**하여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체계 구축

○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하여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지속**

○ **가계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기반 확충, 복지지원 강화 등 범 정부적 노력을 강화**

다.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1) 추진 실적

□ **(은행) 새로운 국제건전성규제**(바젤Ⅲ, 13년부터 단계적 도입) **시행에 대비하여** 은행법규상 **관련제도 정비**

□ **(보험) 지급여력 강화**('13년 중 단계적 시행) **및 자산운용실적에 기반한 적립이율 수준 결정**('13.4월 시행) **등 제도개선 시행**

□ **(금융투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변화된 영업환경의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

□ **(저축은행)** 저축은행 **부실경영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법개정, '13.6월)하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13.9월)

*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지역내 영업기반 확충, 서민금융 공급 기능 제고

□ **(상호금융)**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고위험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기준 마련(감독규정 개정, '13.3월) 및 경영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임임원 설치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 '13.6월)

(2) 향후 계획

□ **(은행) 바젤Ⅲ**를 **순차적으로 도입**('13.12.1일 부터)하고 **조건부 자본증권***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 은행 부실시 보통주 전환·상각을 통한 손실 흡수 요건 필요

□ **(보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2단계** 시행('18년 예정)에 **대비**

□ **(금융투자)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추진

□ **(저축은행)** 상시구조조정에 따라 **저축은행을 관리·감독**하고,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 유도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과제 **발굴**

□ **(상호금융)** 가계대출 급증 **억제, 건전성 유지, 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해 농림·해수·안행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 강화**

라. 기업구조조정 추진 및 회사채시장 정상화

(1) 추진 실적

□ 그동안 **부실이 누적되어온 대기업그룹**은 **채권단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 정상화가 가능한 **쌍용건설, STX조선** 등은 **채권단 지원**을 바탕으로 **정상화 추진 중**

□ **개별 대기업** 정기신용위험평가(6월)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도 **원칙에 입각****하여 **구조조정을 추진 중**

* 대상 업체수 : ('10.) 65개 → ('11.) 32개 → ('12.) 36개 → ('13.) 40개

** C등급(27개)은 워크아웃, D등급(13개)은 자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 **회사채 시장 양극화**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7.8)

○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차환발행 원활화를 위해 시장안정 P-CBO 발행**

*'14년말까지 한시적 운영하고, 총 6.4조원의 시장안정 P-CBO 발행 예정

○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회사채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회사의 회사채 발행 어려움 완화**

*BBB이하 회사채를 30%이상 편입한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

(2) 향후 계획

□ **기업 부실 사전 방지 및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주채무계열 및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개선**을 추진

□ 채권단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13년 종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 추진

참고 주요 대기업그룹 구조조정 추진현황

1. 쌍용건설

* 총자산 1.6조원, 시공능력 13위 종합건설사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 불황**으로 **경영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어 부실화

* 당기순이익(억원) : ('09) 151 → ('10) 185 → ('11) △1,564 → ('12) △4,115

○ 거액의 **당기순손실(△4,115억원)** 등에 따른 **완전자본잠식** 및 **유동성 부족**으로 **워크아웃**을 **신청**(2.26일)

□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3.4일)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6.14일)하여 **정상화 추진 중**

○ **신규자금 공급**(약 7천억원), **자본확충**(약 1천억원 출자전환) 등을 통해 정상화를 **적극 지원 중**

2. STX그룹

* 총자산 25.7조원, 재계순위 17위, 조선·해운 주력

□ **무리한 해외투자, 주력업종**(조선·해운업)의 **불황 지속** 등으로 '12년 이후 **급격한 경영실적 악화** 및 심각한 **자금 부족**에 직면

* 당기순이익(억원) : ('10) 3,288 → ('11) 1,485 → ('12) △17,560

□ 이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정상화가 가능한 조선계열사**에 대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 차질없이 진행 중**

○ STX조선해양 등 **조선계열 3사에 1.3조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8월 이후 본격 자금 투입*** 등 정상화를 지원 중

* 채권단은 조선3사에 추가 신규자금 3.0조원, 출자전환 1조원 등 지원 예정

○ 금융권의 지원만으로 정상화가 어려운 **STX팬오션, STX건설**은 **회사의 신청으로 법정관리** 절차 진행 중

3. 동양그룹

* 총자산 7.6조원, 재계순위 46위, 시멘트·레미콘 주력

□ '08년 이후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시멘트 및 레미콘 사업 부진**으로 비금융계열사의 **경영실적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부실화

* 당기순이익(억원) : ('09)△1,147 →('10)△3,057 →('11)△1,170 →('12)△2,808

□ 이에 따라, **동양그룹**은 **약 2조원의 자구계획을 마련**('12.12월)·**추진**하였으나 **자구계획 이행이 계속 지연**됨으로써

○ ㈜동양, 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에 대해 회생절차 신청**

* 동양레저·(주)동양·동양인터내셔널(9.30일) / 동양시멘트·동양네트웍스(10.1일)

□ 향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관리인 선임, 회생계획 수립·인가** 등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CP 및 회사채 **불완전 판매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특별검사** 실시 중

* 동양증권은 동양그룹 회사채(3.2만명 1조원), CP(1.2만명 4,324억원) 및 AB전자단기사채(4,724명 1,470억원)를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

○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 부과**

○ **선의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분쟁조정 및 소송 등 지원**

□ **기업자금조달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 강구

2 4대 금융현안과제의 해결방안 강구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

◈ **우리금융 민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 및 관행 개선**

가.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1)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금감원과 별도조직으로 **독립적으로 설립**하고 **적절한 업무와 권한을 부여**

○ (**업무**)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

○ (**권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 부여(금감원과 사전협의 의무)

□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검사 등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간 세밀한 협력체계** 마련

○ 금소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

○ 금감원/금소원간 **중복제재 및 형량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2) 향후 계획

□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률 개정 추진**

□ 입법추이를 보아가며, **금소원 설립준비단 구성 및 세부설립방안** 준비

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1) 주요 내용

□1 대내 정책금융 부문 :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

○ 창업·벤처기업 지원,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은의 정책금융 전문성**을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

○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하되, **벤처투자, 온렌딩** 등 주요기능은 **산은내 독립부서에서 수행**

○ **산은**의 **일부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생명보험) **매각 추진**

□2 대외 정책금융 부문 : 현행 체제 유지 및 핵심역량 강화

○ **현행 수은·무보 체제를 유지**하되, **개도국 수출지원, 중장기·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중심**으로 기능 개편

○ 수은·무보의 **비핵심업무**(단기여신, 단기수출보험 등)를 **단계적으로 축소**

□3 선박금융·해외플랜트 지원 강화

○ 수은·무보·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인력**(약 100명)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가칭)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

○ **해운보증기금 설립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재부, 해수부, 산업부, 금융위 등) 협업과제로 **추가 검토**

□4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

○ 기은, 신·기보 등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창업초기·혁신형**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확대·강화**

(2) 향후 계획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추진**

□ **통합절차**를 거쳐 **'14.7.1일 '통합 산은' 출범**

다. 우리금융 민영화

(1) 추진 실적

□ 우리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매각**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 **마련**(6.26)

* ①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 ② 증권계열(우리투자증권·우리자산운용·우리아비바생명·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파이낸셜, 우리F&I), ③ 우리은행계열(우리은행, 우리카드, 금호종금, 우리PE, 우리FI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지방은행)** 7.15~9.23일간 예비입찰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경남은행에 4개, 광주은행에 7개 투자자가 입찰에 참가**

- 매각이 용이하도록 매각절차 진행 중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지방은행 분할 결의**(8.27)

○ **(증권계열)** 8.16일 **우리금융지주가 매각공고를 실시**하였고, 10.21일까지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예정

○ **(우리은행계열)** 지방은행 및 증권계열 인수자가 결정된 이후 내년초 매각절차 개시 예정

(2) 향후 계획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조속한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10월중 지방은행 및 증권계열 최종입찰대상자 선정** 등 추진

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

(1) 추진 실적

□ 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13.7)을 통해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축소**(9%→4%)하고, PEF 등의 **산업자본 간주요건도 강화**

□ 금융회사 경영투명성 제고 및 업권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

* ①이사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기능 강화 ②지배구조 내부규범 마련 의무화 ③보수 투명성 강화 ④리스크 관리 강화 ⑤업무집행책임자 규율

□ CEO 승계관리 강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 지배구조상 '공익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13.6)

* ①이사회 권한·책임 명문화 ②CEO승계프로그램 관리 강화 ③사외이사 선임 관련 절차 개선 ④사외이사 보수 투명성 확보 ⑤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공개 의무화 등

(2) 향후 계획

□ **금산분리** 관련 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

□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바탕으로 지배구조 규율의 기본틀을 재정립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13년 내)

3 서민금융 애로 해소

◈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층의 실질적인 자활 지원**과 **편의성 제고**를 위한 **서민금융 제도 개선**

◈ **금융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의 **안전성 제고**

가. 국민행복기금 추진현황

(1) 추진 실적

□ **국민행복기금 출범**(3.29)이후 금융채무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 중**

① **(채무조정)** 20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 4.22~10.10일 기간 중 **총 19.2만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였고, **이중 16.0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 **금융회사·대부업체·공적AMC** 등으로부터 **총 284.8만명**의 연체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

* **284.8만명** = (일괄매입) **94만명** + (신청에 따른 매입) **18만명** + (공적AMC 이관) **178만명** - (신청자 중 공적AMC 중복) **5.2만명**

② **(전환대출)** 기존 바꿔드림론의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고금리(20%이상) 대출의 **저금리**(10%내외) **전환 지원**

- 한시적 완화 기간(4.1~9.30) 중 **총 3.5만명**(3,787억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전환대출로 지원**(전년동기 대비 7% 증가)

* (기존)연소득 2,600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은 4천만원 이하) → (완화)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여러 부처·기관간 협업**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채무자**를

지원하고, **고용·창업지원 등을 통해 상환능력**도 제고

○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하여, 지원 곤란 사유를 확인하고,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

* 캠코, 금감원, 신복위, 은행연합회, NICE신용정보, 대부업협회

- 9.30일까지 **총 6,198명**에 대해 **무한도우미팀을 통한 추가 지원**

○ **취업·창업 등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적극 실시**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686명**을 연계·지원

* 직업상담·교육·취업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중기청은 **채무조정 신청자에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20명**이 교육 수료

(2) 향후 계획

□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이관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 추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매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해당 채권을 매입·채무조정**을 지원

*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국회 제출(김희정의원 발의, '13.8.8)

- 채권매입이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장학재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을 **'14.1월까지 연장**

○ **(햇살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햇살론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 추진**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방문('13.9.6) 등을 통해 햇살론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

□ 남은 신청기간(~10월말)까지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적극 독려**

나.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

(1) 추진 실적

□ **서민들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요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9.11)

①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 신복위·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통합**

※ 행복기금운영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하여 업무단절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② **서민금융상품 운영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및 **내실화**

-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조건**을 **통일**하여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햇살론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95%→ 85%)

-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이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은행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미소금융의 지배구조** 및 **사업모델**을 **개선**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

③ **서민금융**의 **"質的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 및 **신용회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상담·조정**을 **활성화**하여 **공·사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고 **One-stop 서비스 제공**

(2) 향후 계획

□ 법안 작업 및 개선방안 구체화 관련 **작업반 구성**(9월) **및 운영**

□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 등 **관련 법률안 마련**(연내)

다. 금융서비스 안전성 제고

(1) 추진 실적

□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대부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9.17)

① **업태에 따라** (일반)**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감독**

②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 요건 및 보증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부시장**을 **정비**

③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이 곤란한 업체는 **금융위**(금감원)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를 **수행**

□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 고통을 주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 및 **피해구제 추진**

○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및 **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 실시**(3.25~)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9.6)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강화**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12.7월)에 따라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유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완료**

(2) 향후 계획

□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 및 국회 제출**(연내)

□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합동 일제신고접수·집중단속(~10.31) 실시 및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에 대한 서민금융 지속 지원

□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

* 보험업법 개정안(정무위 대안) 법사위 계류중

4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 **코넥스시장 개설 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대한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을 조성**

◈ **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여 **투자자금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연대보증 폐지**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

가. 코넥스시장 개설 및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1) 추진 실적

□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13.7.1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시장 개장**

○ 10.8일 현재 **24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금년말까지 50여개 기업으로 늘어날 전망

□ **신생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추진(관련법안 **정무위 계류중)**

* 인터넷 등을 이용, 다수(crowd)로부터 투자 약정을 통해 소규모 자금을 조달 (해외입법례 : 미국(JOBS Act), 이탈리아(Growth Decree, 성장촉진법) 등)

○ **자금모집시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등 원활한 자금조달을 제도적으로 지원

(2) 향후 계획

□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의 **수요와 공급, 兩 측면에서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노력 경주

○ 법률 통과시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도 신속히 정비**

나. 성장사다리펀드 조성

(1) 추진 실적

□ 현재 벤처·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양은 풍부한 상황이나, 지나치게 융자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구조

* 중기자금 조달(12년말, 잔액기준) : (융자) 466조, (주식·회사채) 0.7조, (벤처투자) 5조

○ 기존 벤처캐피탈 투자의 경우도 창업 초기보다 **중·후기 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성장·회수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함**

○ 융자 중심의 금융구조와 리스크 회피 경향에서 벗어나, **창업·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필요

□ **자금 지원의 공백영역**에 기존 벤처캐피탈과 보완관계를 형성하여 **선도적 모험투자**를 위한 **성장사다리 펀드 출범**(8.12)

○ **성장사다리펀드** 內 창업·초기기업 투자 목적의 제1차 **'스타트업 펀드'(1,250억원)** 운용사 선정(10.4)

○ 투자자간 **리스크 분리 구조***를 통해 **정책자금이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여 민간자금이 손쉽게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

*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은 후순위, 민간투자자는 선순위 투자자로 참여

○ **창업초기 단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M&A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성장·회수단계의 자금조달 여건 조성**

○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간의 협업**을 통해 투자, 보증, 대출이 복합된 금융을 제공해 나갈 계획

(2) 향후 계획

□ 성장사다리펀드의 **1차년도 조성목표 규모는 2조원**으로서, 하반기 중 **본격적으로 성장사다리 펀드를 운용**할 계획

○ 개별펀드는 운용사 제안을 받아 **창업-성장-회수 단계별 시장상황과 수요를 고려하여 조성**할 예정

다. 신용보증 지원강화 및 연대보증관행 폐지

(1) 추진 실적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기반 확대**

○ **창업·혁신형 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신규보증 중 **창업기업 비중을 50%이상*** **유지**

* '13년 창업기업 신규보증 공급실적(8월) : 6.3조원 (총 신규보증공급 : 12.6조원)

○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보증연계투자**를 도입('13.5)하고 준비된 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실시**

* '13.3월 도입이후 67개업체, 75억원 창업자금 지원 결정

○ **기술·산업간 융합**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도입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을 촉진**하고 **창조경제에 기여**

* '13.3월 도입이후 308건, 1,542억원 신규공급(8월)

□ **연대보증 제도개선**을 통한 **부당한 폐해 방지** 및 **재기지원 촉진**

○ **은행권·신기보의 연대보증 폐지** 이후('12.5월),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도 폐지**하고 **예외적 허용 범위도 대폭 축소**('13.7월)

* (은 행) 개인사업자 연대보증부 여신비중 : (종전) 8.6% → (개선) 0.4%
* (신기보) 법인사업자 평균연대보증인수 : (종전) 1.58명 → (개선) 1.13명
(제2금융) 신규 연대보증부 대출취급건수 : '13.7말 기준 전월대비 약 2만건 감소

○ 신·기보 보증지원을 받던 중소기업이 기업회생 절차를 거치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감면**토록 **신·기보법 개정**('13.5월)

(2) 향후 계획

□ **고부가가치 창출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지속 확대**

□ 연대보증 폐지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대출 축소 및 편법적 운용여부 등을 **지속 점검 예정**

5 공정하고 안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

◈ **주가조작 근절, 분식회계 처벌강화** 등을 통해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등**에 **적극 대응**

가. 불합리한 관행 개선

(1) 추진 실적

□ 우체국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5.9)

○ **공정경쟁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체국 보험 및 공제에 대해 **보험회사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건전성 감독 강화**

* (규제 강화) 준법감시인 임명 등 내부통제 강화, 책임준비금 등 **지급능력 기준 내실화**
(건전성 강화) 금융위 점검 및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을 통해 상시 관리·감독 체계 구축**

□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의 50%** 이상을 설계사 등에 **분할지급**하도록 하여 **해지환급금 수준 개선**('13.8월)

* 현행 30%인 분급비율을 '16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선지급 비중 축소)

□ 현재 은행별 0.5~2.0%(**평균 1.44%**)내에서 부과되고 있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 잔여일**에 따라 **차등부과**토록 개선(**'11.9**월)

(2) 향후 계획

□ **민원분석, 실태조사 등을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금년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절차를 마무리

□ 연구용역(은행법학회, ~12월말)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검토

□ 꺾기 규제의 **법적 근거를 강화**(규정→시행령)하고, **금융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기준을 다양화**

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1) 추진 실적

□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4.18)

* 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5.2), ② Fast Track 운영, ③ 자본시장 조사단 신설(9.17) ④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금감원, 거래소) 등

□ 분식회계 처벌 강화 등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3.4)**

* ① 분식회계 조치대상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포함, ②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한 경우 상장법인 임원 취임 제한 조치 신설 등

□ 계열 금융회사간 펀드 판매 등 **계열사 집중에 따른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해 판매비율(50% 이하)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신설('13.4)

(2) 향후 계획

□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4.18)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노력 경주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신설 및 과징금 도입, 불공정거래 관련 형벌 강화 등

□ 유한회사, 비상장 대기업 등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방안** 마련

□ **보험사와 대주주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추진('13년말 입법예고 추진)

* 대주주(자회사)와의 불리한 조건거래 금지대상에 (현행) '자산'거래 외에 '용역'거래를 추가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도 상향

다. 전자금융사고 피해 예방

(1) 추진 실적

□ 온라인결제 사고 방지를 위해 **본인인증과 부정방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온라인 결제 보안강화 종합대책***』 마련('13.4월)

* 게임사이트 카드결제시 본인확인 강화, 카드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범위확대 등

□ 3.20 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전산 보안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13.7월)

* ① 고객 금융거래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제3백업센터 구축, ② 사이버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망 분리 운영, ③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전임제 도입 등을 통해 금융전산 보안 수준을 제고

□ 신·변종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여 미래부·경찰청 등과 **정부 합동경보를 발령**('13.3월, 8월)하여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300만원이상 이체시 추가 본인확인을 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13.9.26일부터 전면 시행

○ 이에 따라 사기범이 **타인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고, 고객 예금의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향후 계획

□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의 구제범위를 확대하고, 처벌근거를 신설한 **피싱방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노력**('13.7월 국회 제출)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

□ 파밍, 스미싱 등 **신·변종 금융사기**에 대하여 금융위, 미래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 강구**

6 금융산업 발전방안 마련

◈ **금융의 실물지원 역량 강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가. 추진배경

□ 금융산업은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

○ 실물경제 성장둔화, 국내 금융시장 포화(소매금융·단순중개) 상태 진입으로 **성장세**가 **정체**

- **100세 시대 도래, 저출산·고령화** 등 주변 여건도 급변

○ 반면, 금융권의 **뚜렷한 발전·차별화 전략**이 없는 상황

□ 성장이 정체된 **국내 금융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현상유지도 못할 우려**

○ 오랜기간 해결이 지연되어 온 **금융부문 현안이 어느정도 마무리** 됨에 따라 이제 **발전방안을 고민**할 시점

○ 우리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금융산업의 발전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

* 예) 창조경제 구현 필요성, 고령화, 신흥아시아국의 빠른 성장세 등

나. 추진방향

◇ 금융업이 **창조경제**의 血脈을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을 촉진**

○ **창조경제를 적극 뒷받침**하여 **실물경제와 동반성장**

○ **공정한 경쟁촉진, 新시장 개척** 등을 통해 **금융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

(1)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의 실물지원 역량 강화」

□ 소비자금융에 편중된 **은행자금의 중소벤처·창업 지원을 확대**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성장사다리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금융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 수행

○ **공신력 있는 지식재산·아이디어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 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 개선**

□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이 **「융자→투자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으로 진취적 자본**을 **적극 유치**

○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 사모펀드제도 개선·M&A 활성화 등을 추진

(2) 공정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

□ **업무영역 칸막이·영업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금융권 스스로의 혁신을 통한 **新상품·新수요 창출** 기반 마련

○ **업권간·상품간 규제차익 해소**를 통해 건전한 경쟁기반 조성

□ **연금시장 개선** 등으로 **국민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는 한편, **축적된 금융자산**을 **금융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으로 활용

○ **주택연금, 고령자보험, 생애주기 자산관리업** 등의 개선을 통해 **고령화로 인해 새롭게 부각되는 금융수요**를 **충족**

□ 급성장하는 **신흥 아시아국과의 금융 동반협력** 모색을 통해 **새로운 틈새시장**을 적극 개척·활용

○ **금융인프라 수출, 부실채권 정리 경험** 등 우리금융이 강점을 지닌 분야를 중심으로 신흥아시아국과 협력방안 마련

Ⅳ. 정기국회내 제·개정 추진 주요법률 현황

법률안명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 정 안 (입법 추진중)	**<입법 필요성>** ○ **금융소비자 보호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방안 ○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에 사전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속 마련 필요 **<주요내용>** ○ 금감원과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근거** 및 **업무·권한**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안 (법안소위 계류)	**<입법 필요성>** ○ 금융상품 소비의 全단계(사전 정보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피해 구제)를 포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 구축** * 금소원 설치(근거법 : 금융위설치법)와 금소법 제정을 연계하여 금소법을 조속히 처리 필요 **<주요내용>** ○ 금융상품 판매시 적용되는 **"6대 판매행위 규제"*** **규정**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 체결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 **과징금제도 도입** 등 규제위반시 제재 강화
산업은행법 개정안 (입법 추진중)	**<입법 필요성>** ○ 8.27일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이행법안 ○ 산은을 정금공과 통합, **대내부문 정책금융 기능을 단일화**하여 **정책재원 활용의 효율성** 제고 필요 ○ 산은 민영화 중단에 따라 **정부 통제장치, 은행법 적용범위, 대외채무 정부보증 방식** 등 수정 필요

법률안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 **정금공 및 산은지주**를 **산은과 합병**(정책금융공사법 폐지, 산은지주 설립근거 삭제)하고, 산은 **민영화 관련조항을 삭제**(단, 향후 IPO 가능성에 대비) ○ 舊산은법, 정금공법 등을 참고하여 '통합 산은'의 **정책금융기능 강화** 및 **합리적 통제장치**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시 규정** ○ 원활한 합병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합병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병위원회 설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 정 안 (정무위 회부)	**<입법 필요성>** ○ 금년말로 **기촉법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적시에 법안이 연장되지 않는 한 **내년부터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 ○ 특히, 내년에도 건설·조선·해운 등 **취약업종내 일부 기업들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원활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기촉법 연장이 시급** **<주요내용>** ○ 기촉법 만료시한 **3년 연장**('13년말 → '16년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제처 심사중)	**<입법 필요성>** ○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정**은 2013.12.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짐(법률 제9344호 부칙 제2조) ○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금융회사·대부업자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고금리 피해** 우려 야기 * 이자제한법상 금융회사·대부업자는 최고금리 적용이 배제되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상한 규정이 사라지게 될 경우 금리 상한이 없음(이자제한법 제7조)

법률안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 **최고금리 상한**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13.12.31에서 '18.12.31까지 5년 연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법안소위 계류)	**<입법 필요성>** ○ 지배구조 관련 **업종간 형평성제고** 및 **불합리한 규제차이 방지** ○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 강조** ○ **지배구조**가 금융시스템 및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이에 대한 **규율 강화 필요** **<주요내용>** ○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 마련 의무화** * CEO 승계, 임원 선임,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에 관한 자체적인 내부규범을 마련·공시 ○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기능 강화** *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및 사외이사 과반수로 사외이사후보추천위 구성,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의결권 제한 ○ **리스크 관리 강화** * 위험관리기준 마련 및 위험관리위원회·위험관리책임자 도입 ※ "**대주주 주기적 자격심사**" 제도를 포함한 동 법률 의원 발의안이 계류중 (김기식/김기준/이종걸/김용태 의원안) *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격요건 유지여부를 사후심사하고, 자격 미달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 정 안 (정무위 회부)	**<입법 필요성>** ○ **크라우드펀딩**의 조속한 제도화를 통해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내실화** 할 필요

법률안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 도입 추진** * 크라우드 펀딩 : 온라인 펀딩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 온라인을 통한 **소액 증권공모**에 대해 **공시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중개업체 관련 규제를 정비** -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크라우드 펀딩이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추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정무위 회부)	**<입법 필요성>** ○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일부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 필요 **<주요내용>** ○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기업 확대** (신용등급 “BBB이상” → “BB이상”으로 확대) ○ **자산유동화 관련 공시의무 강화** ○ **자산관리자 제도개선**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 정 안 (정무위 회부)	**<입법 필요성>** ○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신종 행위를 **현행법상 규제할 수 없는 공백 제거** 필요 ○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효과** 및 **부당이득 환수 효과 강화** 필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4.18)」 추진 관련 사항

법률안명	주요내용
	<주요내용>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및 **과징금 부과** 신설 ○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 강화*** * 징역형 선고시 벌금형 필요적 병과, 몰수·추징의 의무화 ○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근거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정무위 회부)	**<입법 필요성>** ○ 현행법은 사후 구제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피해 방지기능은 미비 ○ 보이스피싱 **범죄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제대상 확대(대출사기 포함)** ○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처벌규정** 신설(10년↓, 2천만원↓) ○ 온라인으로 대출신청·저축상품 해지시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의무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정무위 회부)	**<입법 필요성>** ○ '11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대주주·임직원의 불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주요내용>** ○ **대주주 적격성 수시심사제** 도입, **교차대출 금지, 편법적 신용공여금지** 등을 통해 **규제 사각지대 정비**

참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구 분	법 률
금융정책 관련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산업금융 관련 (6)	·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구조개선 관련 (6)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글로벌금융 관련 (1)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은행 관련 (6)	·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보험 관련 (2)	·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중소서민금융 관련 (6)	·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자본시장 관련 (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사채등록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회계 관련 (2)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금융정보분석원 (2)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계 (41)	

(참고) '13년도 법률 제·개정 실적

법 률 명	분류	공포 일자	주 요 내 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13.3.22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공개되지 않은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3.3.22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따른 연회비를 반환토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13.4.5	금융투자상품 거래청산제도 등을 도입하고, 최근「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특례 조항을 정비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3.5.22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 신설 등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13.5.28	회생추진기업의 채무 감면시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감면하고, 구상채권 매각 및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	'13.5.28	회생추진기업의 채무 감면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감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13.5.28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원 보수에 대한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형의 하한선 마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13.7.30	주택연금 가입 연령요건 완화(부부 모두 만60세 → 부부 중 주택소유자 만60세)

법 률 명	분류	공포 일자	주 요 내 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13.8.13	거래정보의 명의인에게 제공사실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일, 사유, 기간 및 횟수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추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정기 국회에 보고토록 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13.8.13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13.8.13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시 예금자 보호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장이 대주주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은행법	개정	'13.8.13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13.8.13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규정, 코넥스시장(KONEX) 상장법인의 반기·분기 보고서의 제출 특례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3.8.13	자금세탁행위 범위 및 국세청·관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을 확대, 특정금융거래정보에 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를 포함, 불법의심거래보고 보고기준금액을 폐지함

< 붙 임 >

1. 2012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 2014년도 예산(안) 개요

3. 주요 통계

4. 금융위원회 간부 현황

1. 2012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시중은행 대출금 용도 분석 결과 등을 검토하여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다 현실적인 가계부채 문제에 종합적인 대책 및 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동향과 시스템 리스크를 상시점검하고 분석·평가중 * 가계부채 미시분석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전담팀'운영('12.11월) □ 저소득층, 고령층, 하우스푸어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다각적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추진 * 국민행복기금 설립 및 운영(13.4월～) *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마련(13.4.1일)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도입(13.6.1일)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자율협약 체결(13.5.24일) □ 상황악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컨틴전시 플랜은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수시 수정·보완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동향을 지속 점검 □ 가계소득 확충, 복지지원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가계부채 리스크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추가 대응책* 강구 * 주택연금 확대, 베이비붐세대 은퇴 대응,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13.11월까지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대부분인 가계대출 구조를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자금 조달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이중상환청권부채권의 발행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13.2월) 및 법사위 심의중 **<향후 추진계획>** □ 법률 통과와 함께 하위 규정 조속 마련 및 시행 준비
3.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조정 및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조치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금융권 자체적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13.4.1일) 및 은행권 자율협약 체결('13.5.24일) * 지원내용 : 장기분할상환, 고정금리대출 전환 등 *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실적(월평균, 천억원) : ('13.1~5월) 8.9 → ('13.6~8월) 9.6 □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보대출 채무조정(프리/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자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13.6.10일) * 지원대상 : 총채무 5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채무조정 요건 : 채권자 2/3이상 동의→ 1/2 초과 동의 □ 하우스푸어 채무조정시 LTV예외를 인정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13.5.24일) **<향후 추진계획>** □ 금융회사의 자체 프리워크아웃 실적 등을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강화토록 독려 ○ 필요시 추가 제도 개선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단기지표금리로서 유효성이 저하된 CD 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 금리를 조속히 도입할 것	**<처리결과>** □ 관계기관 합동으로 CD금리 등 단기 지표금리 개선방안 기 마련('12.8.22일) ○ CD금리를 대신할 수 있는 지표금리로 단기코픽스 신규도입('12.12월 최초공시) ○ CD발행시장 정상화,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등 추진 **<향후 추진계획>** □ 현재 관계기관간 단기자금시장 개편 TF를 운영하고 있는바, 단기지표금리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5. 금융권의 신입공채 관련 입사지원서에 개인역량과 무관한 재산상황, 가족 최종학력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금감원을 통해 금융투자업자 및 유관 기관에 시정 지도 완료('13.3.7)
6. 새희망홀씨대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수시 점검 실시 ○ '12년말 기준 저신용층(신용등급 7등급 이하)·저소득층(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비율 74% 유지 **<향후 추진계획>** □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을 통일하여 저신용층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 확대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민간복지사업자의 미소금융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를 전면 재선정하는 한편, 민간복지사업사의 미소금융 관련 과도한 대출이자율을 인하하도록 할 것	**<처리결과>** □ 미소금융중앙재단을 통해 복지사업자 및 복지이용자에 대한 실질검사 강화 ○ 기존 복지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정 제정, 검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운영하여 복지사업 이용자 현장방문 및 전수조사 등 시행 ○ 기존 복지사업자의 약정이행 여부를 사업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차년도 지원금 배정에 반영
8.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정보에 반영하여 제도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소금융 전환대출과 관련하여 이미 연체가 발생한 고금리대출 대학생들에 대하여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미소금융 성실상환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13.3월) ○ 대출정보·연체정보 등 부정적 요소는 현재와 같이 집중하지 않도록 유지 ○ 미소금융 성실상환시 신용등급이 개선되어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 가능성 제고 기대 □ 과거 연체가 있었더라도 현재 연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旣 조치 함 **<향후 추진계획>** □ 가점부여 모형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13년 하반기 중 미소금융 성실상환 정보를 신용평가시 가점으로 반영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햇살론이 보증방식의 문제로 부실의 개연성이 높고 금융당국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햇살론 보증비율을 서민금융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는 한편, 햇살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13.9월)
10.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2010년 이후 변동 없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바꿔드림론 금리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바꿔드림론 금리 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운영을 주관하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2년 11월 금리를 0.5%p 인하(평균 금리 10.5% → 10%) □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13.4월~9월)
11. 금융IT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금융회사 IT보안사고 방지를 위해서 IT 인력 및 예산 일정수준 확보를 권고* * 금융회사 IT보호업무 모범규준 마련('12.10월) □ 금융IT 보안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 ('12.7월 국회제출, '13.5월 개정) * 전자금융 기반시설의 취약점에 대한 주기적 점검 의무화, CEO책임하에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안전성 확보 불이행시 제재 근거 신설 등 □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마련('13.7월)하여 추진중 * 금융전산 망분리, 제3센터 구축, CISO의 독립성 강화 **<향후 추진계획>** □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할 것	**<처리결과>** □ 외환은행이 출연 계획을 철회('12.12월)
13. 2012년 2월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한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노조 간의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향후 추진계획>** □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노조 간의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
14. 은행의 담보물 자체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의 담보평가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업계와 금융업계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T/F를 구성('12.8월)하고 연구용역 추진중(~'13.12월/연장)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 및 금융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추진
15. 명확한 기준 없이 변동금리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중('13.9월)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여부 등을 검토하겠음
16. 은행의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에 대한 개선 및 부당취급 사례 적발시 제재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12년말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은행 내부통제 강화 □ '13.3월부터 가계·중소기업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 실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금리결정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17. 신보·기보 보증부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와 관련하여 약관을 조속히 개정할 것	**<처리결과>** □ 신·기보와 은행간 신용보증 약관 개정 완료('12.11월) ○ 보증채무이행에서 제외하는 "신용가산이자율"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이라도 신용을 이유로 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 * (기존) "부도시 손실률"을 반영하여 가산한 이자율 → (개선)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한 이자율
18. 외국자본의 먹튀논란과 관련한 고배당 등에 대한 제도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향후 추진계획>** □ 과도한 배당 등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
19. 은행들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미사용 수수료 부과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가계대출 한도미사용수수료 부과 현황 파악('12.10월) □ 가계대출에 대한 한도미사용 수수료 자율적 폐지('12. 12월) * 한도대출의 경우 미사용 부분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등 전면적 폐지의 경우 은행건전성에 악영향이 우려 · 기업대출의 경우 현행 유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가계대출에 대한 한도미사용 수수료 자율적 폐지('12. 12월) * 한도대출의 경우 미사용 부분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등 전면적 폐지의 경우 은행건전성에 악영향이 우려 · 기업대출의 경우 현행 유지
20. 은행의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꺾기 관행 근절방안 발표('13.10월) ○ 꺾기 규제근거 강화 및 보험·펀드에 대한 꺾기 규제 강화 **<향후 추진계획>** □ 꺾기 관행 근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21. 신한은행 라응찬 전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하여 재점검할 것	**<처리결과>** □ 추가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검사 실시('13. 2월~4월 금감원 검사) □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추가 제재 ○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으로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37.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22.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 직전 대주주 가족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분처분 행위에 대하여 조사 후 조치하도록 할 것	**<처리결과>** □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23. CP발행정보 원스탑조회시스템과 관련하여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은행발행 CP 정보도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은행연합회의 CP 발행정보 공유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진행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법률 이슈 검토이후 통합관리방안 강구
24. 기업의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감리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시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CEO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개정('13.3) * 대규모 회계분식기업에 대한 조치 강화, CEO에 대해 검찰고발·통보시에도 과징금 병과조치 등 □ 상반기중 외감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13.4.30) *1 회계분식 조치대상 확대 : (현행) 등기임원 → (개정)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 포함 *2 대표이사 등이 분식회계 관여시, 상장법인 임원취임 제한조치 신설
25.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세회피지역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견제시스템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관계기관(금융위, 기재부, 한은, 금감원)은 '10.6월부터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 *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외화대출 관리 강화,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등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지속 견지할 계획 ○ 다만,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개선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6. 소액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 **<향후 추진계획>** □ 금년 하반기중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27. 미수령주식의 주인 찾아주기를 위해 명의개서대행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 전개와 주민등록 전산자료 활용 등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예탁결제원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 * ’12년 실적: 1,958명, 20,197천주(약 302억원) **<향후 추진계획>** □ 안전행정부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전산자료를 전달받아서 상속주주에 대한 미수령 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진행(예정)
28. 한국기업데이타의 크래탑 신용정보 상품 강매로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한국기업데이타(KED)는 ’11.9월부터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 □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노력 ○ 전차 등급대비 등급조정 제한, 등급 조정 사유의 명확화, 평정회의 제도 강화(이상 ’11.9월 시행), 평가의 전문성 및 윤리성 강화(’11.10월 시행), 평가모형의 개선(’12.1월 시행)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평가와 영업의 분리 조치 ○ 평가일 전·후 일정기간 동안 영업 금지 ('11.10월 시행)
29. 해외 PEF와 달리 국내 PEF 배당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국내외 PEF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동일한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특법('13.1월) 및 동법 시행령('13.2월) 개정
30. 갱신형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마련 ○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단독상품 출시 ○ 자기부담금 20% 상품 출시하여 합리적 보장·보험료 조합 제시 ○ 보험료 과다인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적정성 심사, 최대 인상한도 공시 등 **<향후 추진계획>** □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지급보험금 관리체계 강화 *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 마련 및 비급여 의료비 청구서식 표준화 추진(지속추진)
31. 생명보험회사의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과 해약환급율 및 고배당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낮은 유지율과 해약환급률의 한 원인인 현행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부과 개선*방안 마련 * 계약체결비용의 분급비율 확대(30%→50%), 방카 및 온라인 채널은 계약체결비용 인하(70%→50%) ○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확대 및 계약 해지시 환급률 제고 가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3.9.17일 예고)
32. ING생명의 출자회사에 대한 계속되는 컨설팅 명목의 자금송금 및 과도한 신계약 시책으로 인한 시장 마찰 및 부실계약 발생 우려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금감원과 ING생명간 MOU* ('11.4.20)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13년 금감원 검사계획에 반영 * ING생명이 대주주로부터 받는 경영자문 등 용역비용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마련 **<향후 추진계획>** □ 현재진행중('13.8월~)인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과정에서 지적내용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예정
33. 휴대폰보험 민원해소를 위하여 불완전판매 해소와 상품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개선방안(단종보험대리점도입) 마련('12.12) ○ 휴대폰보험 등 물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보험판매 자격(단종보험대리점) 부여 및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필요 **<향후 추진계획>**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입법예고 : '13.4/4분기 예정
34. 신용카드 신가맹점수수료의 원가내역에 대손비용 및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검토할 것	**<처리결과>** □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및 삼일PwC에 연구용역을 진행 ('12.1~3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회계법인인 삼일 PwC는 카드사의 결제 서비스 제공 비용을 분석 □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맹점수수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12.3월) □ 전문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학계, 가맹점단체,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실시 ('12.4월)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소상공인연합회, 한국금융학회 등 각 계에서 의견 개진 □ 개정 여전법의 취지, 연구용역 및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 TF*를 구성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 금감원, 여전협회, 카드사 등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진행 (~'12.9월) ○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 완료 ('12.12.22일 시행)
35.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상인에 대한 1.5%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별적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현행 여전법 체계로는 가맹점에 해당되지 않는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 *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대표가맹점(G마켓, 옥션 등)만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대표가맹점의 하위 온라인 가맹점은 개별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PG업자와 계약한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카드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전법 개정안이 발의(길정우, '12.12월)되어 있으므로,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
36.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그동안 체크카드 수수료 합리화* 조치('11.5월) 및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수수료 부담 경감 추진 * 은행계좌 이용 수수료 인하(0.5%→0.2%) 체크카드 수수료: 2.0~2.5%(우대 1.6~1.8%) → '11.3월부터 1.5~1.7%(우대 1%) ** ('12) 신용 20%, 체크 25% →('13) 신용 20%, 체크 30% **<향후 추진계획>** □ 카드 결제처리 비용인 VAN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노력 * 현재 카드업계 등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중
37. 리볼빙 대출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리볼빙 대책에 따라 리볼빙 이용자들이 금융소외자 내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고위험 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고정→요주의)하고, 저신용자(개인신용 7등급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도록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제한' 조치를 마련·시행('12.10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리스크 강화에 따라 금융소외자, 신용불량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정책으로 보완
38.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취 거부 등 불법행위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국세청에서 불법가맹점으로 판단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불법가맹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 금감원 및 여전협회內 「신용카드 불법가맹점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가맹점 정보는 국세청에 통보 중 □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으로 파악된 불법가맹점 정보 제공은 곤란하다는 입장 **<향후 추진계획>** □ 카드 수취 거부 등 불법 가맹점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여전협회의 불법가맹점 관리시스템을 보완 * 전산개발 및 홈페이지 신고 시스템 개선 및 소비자보호센터 신설
39.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무분별한 취득방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최소화를 위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 □ 비업무용 부동산의 무분별한 취득방지와 보유 최소화를 위해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평가, 처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3.7월) **<향후 추진계획>** □ 동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0. 상호저축은행의 공시지연 및 검사결과 발표 지연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결산공시 주기단축 및 지연·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 결산공시 주기단축 : 반기 → 분기 ('11.11월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 ** 과태료 상향조정 : 5백만원→ 5천만원 ('13.7.2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
41.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중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조치할 것	**<처리결과>** □ 예보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 일상경영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 아울러 금융기관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MOU 목표 부여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음 * MOU목표의 상한설정, MOU목표 산정방식 개선, 분기별 목표의 경우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수립 등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도 합리적인 MOU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자율성 보장을 위한 금융기관 요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
42. 금융지주회사가 자은행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향후 추진계획>** □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 감독하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현재 TF를 통해 업계, 학계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지주사-자회사간 역할 명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11月발표예정)
43. 산업은행 민영화 지연으로 정책금융공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영업자산의 지속적인 확충과 조달비용 절감*에 따른 적정 영업마진 확보 및 구조조정 주식 매각**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 추진 * 평균조달비용(%) : 4.20(10년) → 4.07(11년) → 3.80(12년) → 3.60(13.6월) ** '12년 SK하이닉스(억원) : 매각대금 1,782, 매각이익 1,082 '13년 SK하이닉스(억원) : 매각대금 2,200, 매각이익 1,576 ○ 이에 따라 순이자손실이 지속적으로 감소 * 6,820억원(10년) → 5,360억원(11년) → 4,640억원(12년) → 2,405억원(13.6월) **<향후 추진계획>** □ '13.8.27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 발표로 산은-정금공 통합이 결정되어 정금공의 구조적 손실 누적문제 종결 ○ 통합산은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적정 이익구조가 유지되도록 하겠음
44. 금융회사 부실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을 위해 부실관련자 범위 확대, 자료요구 대상기관 확대, 이해관계자 부실책임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부실책임조사 실효성 강화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12.10월) ○ 예보법상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법원행정처와 세무관서의 장을 명시 ○ 부실책임조사에 불응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실관련자 수준으로 상향 조정 (200만원→500만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45. 퇴직연금 및 펀드 판매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간접규제를 도입(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12.12월) 하였고, 업계 자율의 계열사간 거래 완화* 유도(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3.4.23) * 운용·자산관리 계약기준 계열사 적립금 비율제한 (50%) 등 □ 펀드 판매 등 계열사 집중에 따른 폐해 및 투자자보호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해 직접 비율규제(50%)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완료 ('13.4.23) **<향후 추진계획>** □ 이행실태 지속 점검
46. 금융회사들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업권 사회공헌실적 비교공시 실시 * 2012회계연도 3분기(10~12월)부터 보험사별 사회공헌 활동 실적을 경영공시대상에 포함 **<향후 추진계획>** □ 금융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실적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 (예) 사회공헌실적 비교공시 및 경영실태평가 반영을 다른 업권까지 확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7. 대형 시중은행 및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	**<처리결과>** □ 중소기업의 원활한 실물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13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계획(106.4조원)보다 확대하여 총 112.2조원* 지원할 예정 * '13.8월말까지 81.7조원 공급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가능성에 대비,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상황을 면밀히 지도·점검 예정
48.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외상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하청업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지원 확대*를 통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한 하청업체의 부담을 완화 * ('12년 실적) 6.9조원 → ('13.9말 실적) 9.4조원 ○ 또한, 현재 매출채권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건설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13.4월) **<향후 추진계획>** □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 체계 개선 등 하청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9.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는 이미 대폭 완화된 상황 ○ 앞으로도 해외진출 금융기관의 건의·애로사항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 ~'13)에 따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본시장 고도화 등을 적극 추진 중
50.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허용과 관련한 해외위탁 허용범위, 개인정보보호, 정보이전 허용에 따른 기술설비 위치, 감독권 확보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민간 전문가 TF 및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금융정보처리의 해외 위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금융위 고시)을 제정(6.25~) * ① 국외 위탁시 본·지점 및 계열사에 한해 위탁을 허용, ② 위·수탁회사가 정보보호를 위한 모든 관련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토록 규정, ③ 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원장 등 주요 설비의 국외위탁 제한 등 **<향후 추진계획>** □ 제정된 규정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
51. 지역금융 역외유출 문제완화 등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운용 *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신보)·지방기술 유망기업(기보)에 대한 보증우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자금 2조원 조성(산은) 및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특별자금(정금공)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지역기반 금융 활성화 위해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영업 강화*,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병행 추진 *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13.9.17)
52.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 은행장, 지주사 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 강화를 요구 □ 위기대응 관련 매뉴얼 정비 및 주요 징후 발생시 적극 대응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검사 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
53.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연체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연체자들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신복위는 저신용(6등급이하), 저소득층(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금융피해자에 대해 저금리 대출('새희망힐링펀드') 제공 ('12.8월 출시) □ 카드사들은 자율적으로 카드론 대출 피해자에 대해 자체 감면기준에 따라 10~50% 원금감면 중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는 대출정보 활용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용회복방안」 (전자금융팀 '12.7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4. 통일부와 협의하여 남북경협기업의 피해실태와 대출상환 연장 등 지원 수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통일부를 중심으로 남북경협기업의 경영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점검 중 **<향후 추진계획>** □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형평성 등에 대해 지속 검토
55. 대출모집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속적인 점검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대출모집인의 등록 및 판매행위 관련 제반 법적의무가 부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국회제출('12.7월) □ 중개수수료 상한(5%)을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완료('13.6월 시행) □ 모집인 등록여부 조회시스템 구축 등 불건전한 대출모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12.7월) **<향후 추진계획>** □ 대출모집 운영실태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불건전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
56. 금융위원회의 과다한 파견인력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현재 파견 규모를 유지하되, 직제개정을 통해 신설된 부서를 제외한 기존 부서의 신규직위에 대한 파견은 허용하지 않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직무파견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민간전문가의 업무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
57.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정부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민원만족도 제고 노력 및 개선방안 마련 ○ 민원처리 십계명 제정 및 교육 실시('12.12월),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13.1월) 등 **<향후 추진계획>** □ 민원만족도 평가결과 개선방안을 시행 ○ 처리기한 준수여부,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 등 민원관련 주요사항 처리현황을 매월 부서별로 평가·배포
58. 2012년 3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적정하게 정비되지 않은 원인과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할 것	**<향후 추진계획>** □ '12.3월 법 개정시 38조(검사대상기관)의 각호 호수가 변경되어 시행령도 이에 따라 호수를 정비할 필요 ○ 향후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작업시 일괄정비할 계획
59.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금융감독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금감원은 감독·조사업무 등을 위해 금융위를 통한 FIU정보 활용* 가능 * 근거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7 * 금감원은 금융정보의 직접 열람이 가능(실명법 §4① 4.6.)하여 FIU 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측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FIU는 금융감독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금감원이 필요한 경우 FIU에 정보제공을 적극 요구토록 조치
60.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 업무가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 파견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심사분석 인력 파견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도록 법집행기관*에 공문요청('12.12.21.) *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향후 추진계획>** □ FIU내 법집행기관 파견인력 비중의 단계적 감축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
61.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에 파견검사의 적정 인원과 직제상 보직 없는 파견검사가 중간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 FIU 업무처리지침 개정('13.10월) ○ 정보분석심의회 설치 등 개정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여 내부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 파견검사의 중간결재권 폐지
62. 금융기관 제재권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중복·혼란을 해소하고 제재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중 3명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선임 **<향후 추진계획>** □ 제재양정기준의 표준화, 공개 등을 통해 제재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3. 신보·기보의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현재 신·기보의 구상권 행사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기보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 신·기보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계류중 ○ 자료제공의 범위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국세청, 안전행정부와 협의 진행 중
64.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감사 임명 및 임원의 특정지역 편중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제청하거나 선임할 예정이며, ○ 출신지역, 여성비율 등을 감안한 균형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65. 특정 상위대학에 편중된 국책은행 신입사원 채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대학출신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처리결과>** □ 우수한 지방인재 채용을 위해 산은·기은 등 국책은행은 지방대 할당제, 가점부여 등 지방인재 우대채용정책을 지속 시행중 ○ 이에 따라 국책은행의 지방대학 출신 신규채용비율*이 점차 증가추세 * 산은 : ('09)6.4% ('10)6.0% ('11)11.2% ('12)50.7% 기은 : ('09)24.9% ('10)29.1% ('11)30.6% ('12)27.4% **<향후 추진계획>** □ 신규채용시 지방대 할당제 실시 등으로 지방인재 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6.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대기업 여신 등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여신,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 수감 완료 * 대기업 지원 관련 감사 : '12.11월 감사결과 통보 * 해외자원개발 관련 감사 : '13. 2월 감사결과 통보 **<향후 추진계획>** □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여신 및 투자금융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67.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은행에 대하여 추가로 출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을 위해 '13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800억원 출자 반영 **<향후 추진계획>** □ '14년도에도 설비투자펀드 등 중소기업 관련 지원확대 수요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예산 추가 반영 예정
68. 개인 금융정보요구에 대한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금융거래시 개인정보 수집실태 전수조사('12.6월)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개선방안 마련('12.11월) □ 금융분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마련('13.7월)

2. 2014년도 예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201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54억 14백만원**으로 2013년 예산대비 **5억 80백만원 증가**(3.9%)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A)	'14예산안(B)	증감액(B-A)	증감률(%)
합 계	**14,834**	**15,414**	**580**	**3.9**
과징금 및 과태료	13,678	14,852	1,174	8.6
가 산 금	113	110	△3	△2.7
기타경상이전수입	-	452	452	순증
전대차관 원리금회수	1,043	0	△1,043	순감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201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1,183억 97백만원**으로 2013년 예산대비 **6,979억 65백만원 증가**(166%)

○ 2014년 **금융위원회 운영 예산(안)은 1,183억 97백만원**으로 2013년 예산대비 **2,992억 62백만원 감소**(△72%)

* 주요 증가 내역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1조원(신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36억원(증가), 불합리한 금융관행 조사 및 개선 4억원(신규)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13예산(A)	'14예산안(B)	증감액(B-A)	증감율(%)
합 계	**420,432**	**1,118,397**	**697,965**	**166**
□ 금융위원회 운영	417,659	118,397	△299,262	△71.7
○ 인 건 비	18,064	18,881	817	4.5
○ 기 본 경 비	7,128	7,020	△108	△1.5
○ 사 업 비	392,467	92,496	△299,971	△76.4
□ 내부 거래	2,773	1,000,000	997,227	35,962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	1,000,000	1,000,000	순증
○ IBRD차관 원금 상환	2,710	0	△2,710	순감
○ IBRD차관 이자 상환	63	0	△63	순감

3. 주요 통계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조원, 억달러)

		'09	'10	'11	'12	'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1)2)]	0.3	6.3	3.7	2.0		1.5			2.3		-	
	(금액, 조원)	(1,065.0)	(1,173.3)	(1,235.2)	(1,272.4)		(325.2)			(328.2)		-	
	GNI 증가율[1)2)]	1.6	5.6	1.5	2.6		3.5			4.7		-	
	(금액, 조원)	(950.0)	(1,003.5)	(1,018.5)	(1,044.7)		(254.0)			(274.3)		-	
실물동향	생산 증가율[2)]	△0.1	16.3	5.9	0.8	7.7	△9.5	△2.9	1.5	△1.3	△2.5	0.9	3.4
	재고 증가율[2)]	△7.8	18.0	14.9	3.2	7.0	5.5	3.7	3.0	2.6	3.0	6.7	3.4
	평균가동률	74.4	80.3	80.2	78.1	78.6	77.2	75.4	75.4	75.4	75.4	74.2	76.5
	소매판매 증가율[2)]	2.6	6.7	4.5	2.3	△2.7	1.6	1.8	2.0	0.6	0.8	1.0	2.5
	설비투자 증가율[2)]	△9.5	25.8	4.0	△2.0	△15.7	△22.5	△7.9	△12.1	△12.1	△6.1	△8.3	4.6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	-	-	99.8	99.6	99.5	99.6	99.9	100.5	100.9	101.2
물가·고용	소비자 물가	2.8	3.0	4.0	2.2	1.5	1.4	1.3	1.2	1.0	1.0	1.4	1.3
	근원소비자물가	△0.2	3.8	6.1	1.6	1.2	1.3	1.5	1.4	1.6	1.4	1.5	1.3
	실업자수(천명)	889	920	855	820	847	990	883	825	797	813	828	783
	(실업률)	(3.6)	(3.7)	(3.4)	(3.2)	(3.4)	(4.0)	(3.5)	(3.2)	(3.0)	(3.1)	(3.1)	(3.0)
대외거래	경상수지(억달러)	327.9	293.9	260.7	431.4	23.3	27.1	49.3	39.3	86.4	72.4	67.7	57.4
	(상품수지)	378.7	400.8	316.6	383.4	26.2	25.6	41.6	35.4	72.7	50.2	56.8	53.3
	(서비스수지)	△66.4	△86.3	△58.5	26.8	△9.3	△4.6	0.9	14.5	11.3	11.8	3.6	1.0
	자본·금융계정	△346.5	△274.8	△267.8	△436.2	△9.1	△32.7	△67.2	△26.1	△11.6	△49.1	△74.5	△76.2
	(자본수지)	2.9	△2.2	△0.2	6.0	0.5	0.4	0.7	△0.4	△0.2	△0.1	△1.2	0.7
	(금융계정)	△349.4	△272.6	△267.5	△442.2	△9.6	△33.1	△67.9	△25.7	△115.8	△49.0	△73.3	△76.9
	- 직접투자	△149.5	△221.8	△164.1	△186.3	△14.2	△7.8	△18.7	3.0	△14.8	△13.8	△9.8	△9.2
	- 증권투자	497.3	424.8	131.1	101.1	△43.7	19.9	△33.9	△19.2	△11.7	△52.9	18.5	14.4
	- 파생상품	△30.9	8.3	△10.3	30.8	5.9	6.9	1.5	△3.1	6.5	△9.4	4.4	2.2
	- 기타투자	20.4	△214.1	△84.7	△269.0	46.4	△32.2	△1.3	△15.8	△85.3	△14.7	△66.5	△67.4

주: 1) 실질 GDP(금액 : 명목), 실질 GNI 2) 전년동기비 3) 선행종합지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지표

2. 주식시장

	'08말	'09말	'10말	'11말	'12말	'13년		
						7말	8말	9말
KOSPI	1,124.5	1,682.8	2,051.0	1,825.7	1,997.1	1,914.0	1,926.4	1,997.00
	(△40.7)	(49.6)	(21.9)	(△11.0)	(9.4)	(△4.2)	(△3.5)	(3.7)
KOSDAQ	332.1	513.6	510.7	500.2	496.3	554.3	516.7	534.9
	(△52.8)	(54.7)	(△0.6)	(△2.1)	(△0.8)	(11.7)	(4.1)	(3.5)
미국 (DOW)	8,776	10,428	11,578	12,218	13,104	15,500	14,810	15,130
	(△33.8)	(18.8)	(11.0)	(5.5)	(7.3)	(18.3)	(13.0)	(2.2)
일본 (NIKKEI)	8,860	10,546	10,229	8,455	10,395	13,668	13,389	14,456
	(△42.1)	(19.0)	(△3.0)	(△17.3)	(22.9)	(31.5)	(28.8)	(8.0)
중국 (상해종합)	1,821	3,277	2,808	2,199	2,269	1,994	2,098	2,175
	(△65.4)	(80.0)	(△14.3)	(△21.7)	(3.2)	(△12.1)	(△7.5)	(3.6)
영국 (FTSE)	4,434	5,413	5,900	5,572	5,898	6,621	6,413	6,462
	(△31.3)	(22.1)	(9.0)	(△5.6)	(5.8)	(12.3)	(8.7)	(0.8)
인도 (SENSEX)	9,647	17,465	20,509	15,455	19,427	19,346	18,620	19,380
	(△52.5)	(81.0)	(17.4)	(△24.6)	(25.7)	(△0.4)	(△4.2)	(4.1)
홍콩 (HS)	14,387	21,873	23,035	18,434	22,657	21,884	21,731	22,860
	(△48.3)	(52.0)	(5.3)	(△20.0)	(22.9)	(△3.4)	(△4.1)	(5.2)
시가총액 (조원)	623.1	974.0	1,239.9	1,148.0	1,154.3	1,114.6	1,128.2	1,168.0
	(△40.8)	(56.3)	(27.3)	(△7.4)	(0.5)	(△3.4)	(△2.3)	(1.2)
고객예탁금 (조원)	9.2	11.8	13.7	17.4	17.1	17.4	17.5	16.3
	(△3.2)	(28.3)	(16.1)	(27.0)	(△1.7)	(1.8)	(2.3)	(△4.7)
주식형펀드 (조원)	140.2	126.2	101.0	104.2	159.2	91.3	89.6	85.6
	(20.4)	(△10.0)	(△20.0)	(3.2)	(52.8)	(△42.7)	(△43.7)	(△46.2)
(국내펀드)	85.8	75.4	61.1	72.7	133.1	68.4	67.3	62.5
	(29.0)	(△12.1)	(△19.0)	(19.0)	(83.1)	(△48.6)	(△49.4)	(△53.0)
(해외펀드)	54.4	50.8	39.9	31.5	26.1	22.9	23.8	23.1
	(9.0)	(△6.6)	(△21.5)	(△21.1)	(△17.1)	(△12.3)	(△24.4)	(△11.5)
외국인순매수[1](십억원)	△35,924	32,253	22,599	△9,422	17,522	△8,106	△5,874	1,953
기관순매수[1](십억원)	23,873	△27,229	△13,436	13,241	3,630	9,773	9,548	5,496
개인순매수[1](십억원)	4,170	493	△3,680	△1,106	△14,358	△447	△2,224	△5,292
신용거래잔액 (십억원)	1,647	4,598	6,124	4,599	4,002	4,727	4,579	4,548
(신용융자잔액)	1,504	4,357	5,936	4,413	3,881	4,555	4,415	4,380
(미수거래잔액)	143	241	188	186	121	172	164	168

주: 1) 연중 순매수액 2) ( )내는 전년말대비 변동률(%)

3. 주요 금리

(단위 : %)

	'09말	'10말	'11말	'12말	'13년			
					7말	8말	9말	'12말대비
미국 LIBOR(3Mo)	0.25	0.30	0.58	0.31	0.27	0.26	0.25	△6 bp
미국 T/Bill(3Mo)	0.05	0.12	0.01	0.05	0.04	0.03	0.01	△4 bp
미국 T/N(5년)	2.68	2.01	0.83	0.73	1.38	1.60	1.42	69 bp
미국 T/N(10년)	3.84	3.29	1.88	1.76	2.58	2.78	2.64	88 bp
국고채(10년)	5.39	4.52	3.78	3.21	3.49	3.53	3.42	21 bp
국고채(5년)	4.92	4.08	3.46	3.02	3.20	3.17	3.05	3 bp
국고채(3년)	4.41	3.38	3.34	2.86	2.92	2.88	2.82	△4 bp
은행채(3년,AAA)	5.18	3.85	3.74	3.04	3.15	3.08	3.05	1 bp
회사채(3년,AA－)	5.53	4.27	4.12	3.31	3.36	3.25	3.24	△7 bp
회사채(3년,BBB－)	11.58	10.26	9.74	8.82	9.04	8.95	8.94	12 bp
통안증권(2년)	4.44	3.47	3.50	2.85	2.82	2.79	2.78	△7 bp
통안증권(1년)	3.52	3.11	3.50	2.80	2.69	2.66	2.67	△13 bp
KORIBOR(1년)	4.10	3.31	3.71	2.96	2.74	2.77	2.76	△20 bp
통안증권(91일)	2.43	2.66	3.48	2.79	2.56	2.56	2.57	△22 bp
CD(91일)	2.86	2.80	3.55	2.89	2.66	2.66	2.66	△23 bp
CP(91일)	3.07	3.01	3.68	2.98	2.69	2.71	2.71	△27 bp
KORIBOR(3개월)	2.86	2.80	3.56	2.87	2.66	2.66	2.65	△22 bp
콜금리(익일물,전체)	1.99	2.49	3.27	2.74	2.53	2.50	2.50	△24 bp

4. 주요국 환율 변동

(단위 : 원)

	'08말	'09말	'10말	'11말	'12말	'13년		
						7말	8말	9말
₩ / US$	1,259.5	1,164.5	1,134.8	1,151.8	1,070.6	1,123.5	1,110.0	1,074.7
	(34.5)	(△7.5)	(△2.6)	(1.5)	(△7.1)	(4.9)	(3.7)	(0.4)
US$ / EUR	1.3973	1.4326	1.3387	1.2959	1.3192	1.3302	1.3222	1.3527
	(△4.2)	(2.5)	(△6.6)	(△3.2)	(1.8)	(0.8)	(0.2)	(2.5)
JPY / US$	90.68	93.01	81.16	76.90	86.75	97.88	98.18	98.25
	(18.8)	(△2.6)	(12.7)	(△5.2)	(12.8)	(12.8)	(13.2)	(13.3)

주: ( )는 전년말대비 변동율(%)

4. 금융위원회 간부 현황

직 명	성 명	전화번호(사무실)
위원장	신제윤	2156-9500
부위원장	정찬우	2156-9501
금융위 상임위원	이상제	2156-9503
금융위 상임위원	홍영만	2156-9504
증선위 상임위원	유재훈	2156-9505
사무처장	고승범	2156-9502
금융정보분석원장	진웅섭	3145-8900
대변인	도규상	2156-9540
기획조정관	-	2156-9600
금융정책국장	김용범	2156-9700
금융서비스국장	이병래	2156-9800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이해선	2156-9705
자본시장국장	서태종	2156-9801
국제협력관	서재홍	2156-9701
공자위 사무국장	손병두	2156-9440

<붙임 1-2>

제320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자료

2013. 10.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2013년도 주요 업무현황

Ⅱ. 2013년도 예산집행사항

Ⅲ. 2013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Ⅳ. 2012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Ⅴ. 2013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Ⅵ.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Ⅶ.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Ⅷ. 2013년도 민원처리사항

Ⅸ.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Ⅰ. 2013년도 주요 업무현황

2013년 업무계획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2013. 4. 3.

금융위원회

목 차

Ⅰ. 금융정책 여건

1. 우리나라 금융의 현주소

가. 그 동안의 금융정책 추진평가

나. 보완할 점

2. 향후 금융정책 추진여건

가. 대외 리스크 요인 및 전망

나. 대내 리스크 요인 및 전망

3. 향후 금융정책 방향

Ⅱ. 국정과제 실천계획

1. [제1 미션] 미래 창조 금융

가.「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

나. 정책금융지원체계 개편

다. 성장동력으로서 금융 韓流 확산

2. [제2 미션] 따뜻한 금융

가.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다. 전자금융사고 피해 예방

3. **[제3 미션] 튼튼한 금융**

가. 기업자금공급 원활화

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다. 금융불공정행위 근절

라. 금융안정기반 확립

Ⅲ. 부처간 협력과제

1. 지하경제 양성화
2. 신용회복과 취업·창업지원 연계 강화
3. 창조형 산업 금융지원

Ⅳ. [추진체계] 국민 중심의 금융행정

1.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
2. 국민행복을 위해 협력하는 유능한 행정
3. 국민관점에서 생각하는 맞춤형 서비스 행정

Ⅰ. 금융정책 여건

1. 우리나라 금융의 현주소

2. 향후 금융정책 추진여건

3. 향후 금융정책 방향

1. 우리나라 금융의 현주소

가 그 동안의 금융정책 추진 평가

◈ 우리나라 금융은 실물경제 성장과 함께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며, **금융시장 안정성 및 실물경제 지원능력도 큰 폭 개선**

□ (**금융부문 발전**) 실물경제 성장과 더불어 금융부문도 **큰 폭 성장**

○ **지난 37년간 금융회사 총자산[1]이 약 400배** 성장했으며, **상장주식 시가총액[2]이 최근 15년간 약 16.3배** 성장

* 1) ('75.12) 8조원→ ('12.9) 3,174조원 2) ('97.12) 71조원→ ('12.12) 1,154조원

○ 예금보험제도 및 통합감독기구 도입 등 **금융안정망을 강화**하고, 자본시장법 제정 및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 **인프라도 선진화**

□ (**금융안정성 제고**) 몇차례에 걸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금융산업구조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도 상당수준 개선

○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금융산업 구조가 개선**되고, **자본적정성**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개선**

* 부실 저축은행 정리 : '11~'13.2월중 총 26개 (자산기준 : 38.1조원 감소, 44%)
** 국내은행 BIS비율(%) : ('00) 10.6 → ('03) 11.2 → ('08) 12.31 → ('12) 14.30

○ **금융시장**의 **대내외 충격 흡수능력**도 크게 개선*됨에 따라, **'12년중 3대 신평사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08.9월) 79.1 → (12.12월) 38.7
** Moody's(A1→ Aa3, 8.27), Fitch(A+ → AA-, 9.6), S&P(A→ A+, 9.14)

□ (**실물경제 지원**) **실물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중소기업 정책자금공급 등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여건 개선**

* 중소기업대출/GDP(%) : ('02) 26.6 → ('12) 37.5

○ 3대 서민정책금융공급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도 개선**

나 보완할 점

◈ 다만, 우리 금융은 외연적 성장에 비해 **금융의 전문성 및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보완의 여지가 많은 상황

○ **대내외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

□ (**실물경제지원의 비효율성**) 금융의 실물경제지원은 **양적 지원 중심**으로 **담보 및 정부보증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경향

* 공적보증/GDP규모(%) : (韓) 5.84 (美) 0.1 (캐나다) 0.52 (대만) 3.04 (日) 7.32

○ 향후 국가경쟁력은 지식·기술의 창조역량에 좌우되나 **고도의 리스크를 수반**하는 **창조활동 지원을 위한 금융발달은 미흡**

*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개사) : ('02) 150 → ('07) 63 → ('12) 22

○ 우리 경제 및 일자리의 主役인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지나치게 경기 순응적**으로, '비올때 우산 뺏기'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

□ (**금융산업 성장동력 정체**) 금융산업은 그동안 실물경제 지원역할에 치중함으로써 **독자적 산업으로서 발전**하는 데에는 미흡

○ 금융업권별로 차별화된 전략없이 외형위주 성장을 추진하여, **새로운 금융수요 및 新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경쟁력이 부족**

* '12년 IMD 금융경쟁력 순위 : 59개국 중 25위 (호주 6위, 미국 9위, 일본 22위)
* 금융업 수출액/서비스업 수출액(%) : ('08) 3.7 ('10) 4.1 ('12) 3.3

○ **낙후된 지배구조 및 시장질서** 등으로 인해 금융부문의 신뢰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한계

□ (**금융포용 미흡**) 금융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의 사각지대**가 잔존

○ 경기둔화로 **서민층의 신용회복문제 및 금융애로**가 지속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면적·체계적 대응도 미진

* 저신용층 대출비중(%) : ('08) 26.8 ('10) 20.5 ('12) 18.3

○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및 공공성**에 대한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

* 금융민원건수 (만건) : ('08) 6.6 ('10) 7.2 ('12) 9.4

□ **(대내외 불안요인 상존) 국내 금융시장**은 높은 대외개방도* 및 외국인 투자비중** 등으로 인해 **대외 불안요인에 크게 영향**

* 무역의존도(수출+수입 ÷ GDP) : '11년말 현재 94.5%

** 외국인 주식·채권 보유 비중('13.3.28기준) : (주식) 32.0% (채권) 7.2%

○ **세계경제 회복세의 지연** 및 美·日 등의 양적완화로 팽창된 **글로벌 유동성**, 북핵문제 및 엔화약세 등 위험요인이 지속

○ 경기부진 및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에 따른 **가계부실 확대 가능성, 기업자금시장의 취약성** 등에 대한 지속적 대응 필요

⇨ **금융안정** 기반 위에, **'지속가능한 성장→일자리→국민행복'**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경쟁력 있고 따뜻한 금융**을 구현하여, **"금융과 실물부문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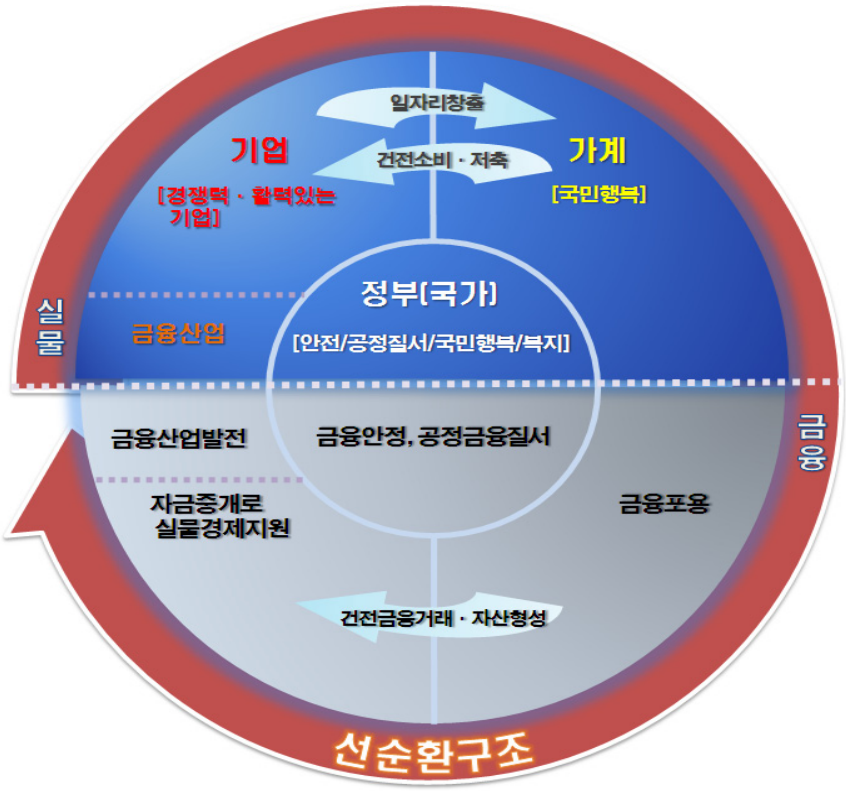

2. 향후 금융정책 추진 여건

가 대외 리스크요인 및 전망

◇ **세계경제 회복세**는 올해도 **제한적**일 전망이며, 선진국 **양적완화** 등에 따라 **환율갈등** 및 글로벌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

○ 대외여건 불안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성장 및 수출 둔화,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될 우려

□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경기부양** 등으로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 지속으로 **회복세는 제한적**일 전망

* 13년 성장률 전망(IMF, %) : 전세계(3.5), 미국(2.0), 유로존(△0.2), 중국(8.2), 일본(1.2)

○ 세계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가능성** 및 **교역 부진***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중장기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세계교역 성장률(IMF, %) : (10) 12.6 (11) 5.9 (12^{e}) 2.8 (13^{e}) 3.8

** 무역의존도((수출+수입)/GDP, 11년, %) : 韓(94.5, 12년) 獨(73.6) 中(49.2) 日(28.6) 美(24.8)

□ **주요국**이 경기회복을 위해 **양적완화**에 의존하는 가운데 국가간 **환율갈등**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이 증대

○ 양적완화에 따른 **선진국 통화가치의 절하**가 신흥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입힐 경우 **환율갈등이 고조될 가능성**

○ **풍부해진 글로벌 자금**은 유럽재정위기 등 리스크 요인* 부각시 대거 유출되며 글로벌 **자본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

* 13년중 주요 글로벌 리스크 요인 : ① 유럽재정위기 불확실성 지속 (이탈리아 정부구성 불확실성, 키프로스 구제금융 및 은행위기), ② 일본 경기부양책에 따른 재정리스크 심화 우려 ③ 미국 재정긴축 관련 정당 간 대립 지속

○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對北 긴장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결합**할 경우 **우리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

나 대내 리스크요인 및 전망

◇ 국내 경기도 **빠른 경기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

○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금융산업의 건전성·수익성 악화**에도 유의할 필요

□ 대내외 불안요인 지속 등으로 인해 **국내 경기도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기는 어려울 전망**

○ 가계부채 원리금 부담, 수요부진 등으로 인해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

- **경기회복 지연** 및 **부동산시장 침체 지속**시 한계차주 중심으로 부실화가 확대되면서 **금융산업의 건전성·수익성 저하** 가능

*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 ('10말) 0.61 ('11말) 0.67 ('12말) 0.81 ('13.2말) 1.04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은 중장기적으로 경제활력 회복에 부담

□ 대내외 불안요인 지속 및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

○ 주식시장의 **높은 외국인 보유 비중**(32.2%, '13.2말) 등으로 인해 **외국인 자금유출입 급변**시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

- 특히, **주요국의 완화정책이 급격히 축소 또는 종료**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해 **주식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

○ '08년 위기당시 확대된 **우량·비우량 회사채간 스프레드***가 **웅진사태** 등의 여파로 높은 수진을 유지하며 **양극화가 심화**

* AA-와 BBB-간 스프레드(3년, bp) : (07말)235 (08말)430 (12말)551 (13.3말)561

- **비우량·취약업종** 중심으로 **차환발행 등이 어려워**질 가능성

3. 향후 금융정책 방향

기본방향 : 3대 미션 및 9개 실천계획

◇ **새 정부의 국정 비전 구현**을 위한 금융부문 미션은

○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부문 지원방안 및 금융산업 발전전략**을 마련·추진하고

○ 창조경제 성장의 효과를 국민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더불어 행복한 "따뜻한 금융"**을 구현

○ 또한, 창조경제의 **기반인 "금융안정 및 공정한 금융시장질서"를 확립**하는 것

⇨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국정과제**를 분야별로 나누어 **3대 미션 및 9개 실천계획**으로 구분하여 역량을 집중

【미션 1: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으로 일자리 늘리기】

① 「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
② 정책금융지원체계 재편
③ 성장동력으로서 금융 韓流 확산

【미션 2: 서민들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구현】

④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⑥ 전자금융사고 피해 예방

【미션 3: "튼튼한 금융"으로 공정한 금융질서와 금융위기없는 나라 확립】

⑦ 기업자금공급 원활화
⑧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⑨ 금융불공정행위 근절

비전 **희망의 새 시대**

미션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실천계획	① 「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 · 창업 환경 혁신 · 중기M&A등 회수시장 활성화 · 성실한 실패의 재도전 지원 ② 정책금융지원체계 재편 · 정책금융역할 재정립 · 창업기술기업지원강화 · 기술산업융복합지원 ③ 성장동력으로서 금융 韓流 확산 · 금융韓流 발전전략 마련 · 베이비부머 노후대비 지원 ·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등	①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 하우스푸어 대응 · 국민행복기금 설립·지원 ② 금융소비자보호강화 · 금융소비자보호 권익 강화 · 서민금융 안전성 제고 ·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③ 전자금융사고 피해 예방 · 금융 전산사고 방지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① 기업자금공급 원활화 · 기업구조조정 추진 · 회사채시장 정상화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 지배구조 개선 · 대주주 적격성심사 확대 · 금산분리 강화 ③ 금융불공정행위 근절 · 주가조작 근절 · 개인투자자 보호강화 · 불공정거래 금지 등
협업과제	• 창조형 산업 금융지원 (미래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청)	• 신용회복과 취업·창업 지원 연계 강화 (고용부, 중기청)	• 지하경제 양성화 (기재부, 국세청)

추진체계 **국민중심의 금융행정**

①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	②국민행복을 위해 **협력**하는 **유능한** 행정	③국민관점에서 생각하는 **맞춤형 서비스** 행정

Ⅱ. 국정과제 실천계획

1. [미션 1]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으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2. [미션 2] 서민들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3. [미션 3] “튼튼한 금융“으로 공정한 금융질서와 금융위기 없는 나라를 지켜나가겠습니다.

1. 미래 창조 금융

"미래를 창조하는 금융"으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 기본 방향 〉

◈ 금융부문이 **경제의 창조역량과 활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

○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을 조성**

◈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역할**을 강화하여, **실물경제의 창조활력을 뒷받침**하고 **新성장·新일자리 창출분야를 발굴**

◈ **고령화관련 금융수요 확대**에 대응한 전략 및 **금융韓流 확산** 등을 통해 **성장동력으로서 금융산업**의 발전전략을 마련

▣ [실천계획①] 「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

가. 창업환경 혁신
나. 중소기업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다. 연대보증 폐지 등 성실한 실패의 재도전 지원

▣ [실천계획②] 정책금융지원체계 재편

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나. 창업·기술기업 지원강화
다. 실물경제의 창조활력 뒷받침

▣ [실천계획③] 성장동력으로서 금융 韓流 확산

가. 금융韓流 전략 추진
나. 베이비 부머의 노후 대비 지원
다.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실천계획① 「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

가 창업 환경 혁신

◈ **담보·보증 중심의 여신관행**으로 **창업·기술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움

⇒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금융환경을 혁신**

1 (**크라우드 펀딩**) **신생기업의 성장초기단계 필요자금**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제도***'를 도입

* 인터넷 등을 이용, 다수(crowd)로부터 투자 약정을 통해 소규모 자금을 조달 (해외입법례 : 미국(JOBS Act), 이탈리아(Growth Decree, 성장촉진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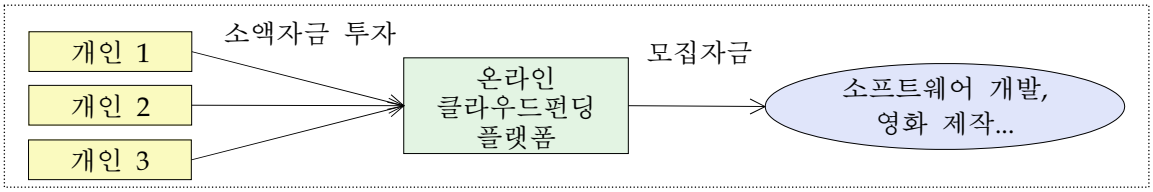

* 예: 호두까기 인형(발레, 1,099만원), 26년(영화; 3억 8천만원) 등

○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신생기업이 자금모집시 공시의무 완화** 등 지원

2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기업과 금융회사간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

○ 기보의 「**융·복합 R&D센터**('13.1월)」를 종합적인 **기술평가 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

* 타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이 대출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평가 및 사업화 위험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 신보의 경우 **기술·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과거 재무제표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식자산 평가모형**」을 **적용·평가**

나 중소기업 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 중소기업 **투자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여 **선순환 유도**

* '11년중 벤처캐피탈 투자자금의 7.4%만이 M&A로 회수

⇒ **중소기업 M&A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1 **(코넥스 시장) 자본시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新시장인 '코넥스 시장'을 신설**

○ 창업초기 기업특성에 맞게 **상장·공시부담을 완화**[1]하고, **지정자문인제도**[2]를 통해 상장을 지원

* 1) 일반 투자자 참여제한 등을 감안하여 진입요건, 수시공시 등 완화
2) 상장적격성 심사, 공시업무 자문,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상장 지원

2 **(코스닥시장)** 업력·외형 위주*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중심으로 재편된 코스닥시장을 **첨단기술주 시장으로 육성**

* 신규상장기업 업력 추이(년) : ('07) 10.9 → ('09) 12.2 → ('12) 12.2
신규상장기업 매출액 추이(억원) : ('07) 334 → ('09) 518 → ('12) 542

○ **기술형·성장형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성평가 특례업종 확대** 등 진입요건을 탄력적으로 개선

○ 상장전 증자·최대주주 변경제한* 등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여 **상장예정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

* 상장전 1년간 유무상 증자(자본금의 100% 이내) 및 최대주주 변경 제한 중

3 **(중기 M&A 지원 강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M&A자금지원을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 투자자금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칭)**성장사다리펀드**'*를 조성하여 **중소기업 M&A 인수금융 공급, 세컨더리펀드 결성** 등 추진

* 주식, 메자닌증권, 유동화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 → 기보의 기술평가, 신보의 기업평가, 기업은행의 기업정보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

○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 자금**에 대해 신보가 기업가치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M&A보증 지원**

* 지원한도 산정시 일반적 재무평가모형이 아닌 기업의 미래수익창출 능력을 종합 평가

4 (**민간자금의 유입 촉진**) 혁신중소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합병제도의 탄력성 제고** 및 **M&A 수요기반 강화**

○ 코넥스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각종 M&A 규제를 합리화**

- **코넥스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 M&A의 경우, 일반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의 적용을 배제**

* 예: ①합병가액 산정시 "주가(株價)" 적용 ②외부평가기관 평가 의무화 ③우회상장 규제 적용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 **사모투자펀드(PEF)***가 주식 이외에 **다양한 메자닌 증권(BW, CB등)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경영권 참여, M&A를 전문적으로 수행

- **PEF의 메자닌 증권 투자기준을 명확히***하여 중소기업 메자닌 증권 등에 대한 투자유인을 확대

* (현행) PEF는 원칙적으로 투자기업주식을 10% 이상 취득하는 투자만 허용 → (개정) BW·CB 등 주식연계증권도 주식과 동일하게 투자대상으로 인정

다 연대보증 폐지 등 성실한 실패의 재도전 지원

◈ 한 번의 경영실패가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는 금융환경 조성**

⇒ 연대보증 폐지 확대, 재기지원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의 실패에 따른 금융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1 (연대보증 폐지) 연대보증 폐지('12.5월)의 효과성 및 중기·서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추진

①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

* 제2금융권 특수성상 서민금융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생계유지, 자활 등을 위해 불가피 등) 일부 예외를 인정

② 신·기보의 **예외적 연대보증 입보범위**를 **대폭 축소**

* 例 : (현행) 신·기보는 은행권과 달리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되지 않은 비공식적 동업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을 허용→ (개선) 연대보증 예외허용 폐지

2 (재창업지원)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 제고 등 재창업지원 활성화

○ **재창업지원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소액자금 신청시 외부 컨설팅으로 사업성 평가를 대체**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

* 신복위·신보·기보·중진공 등 5인으로 구성('12.4월) → 재창업을 희망하는 실패 중소기업의 사업성을 심의하여, 신·기보 및 중진공 등에서 최대 30억원 지원

○ 현행 **재창업지원 제한업종**(음식업, 미용업 등) 중에서도 **기술력·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별지원 허용**

○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피해자의 신용회복** 지원방안 마련

* (예) ①법원 금융채무불이행 정보 등에 등재된 경우 관련 공공정보의 일괄삭제를 추진 ② 개별 금융회사에 보증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채무조정 지원

실천계획① 「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

	~5월말 (100일 이내)	상반기	연내	임기내 (연중)
가①크라우드 펀딩 도입	도입방안 마련 (4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		
가②기술평가	융복합R&D 센터설립(1월) 지식자산평가 모형 시행(1월)	종합기술지원 프로그램마련	종합기술지원 프로그램시행	추진상황 모니터링
나①코넥스 시장 신설	지정자문인 선정(3월)	코넥스 시장 개설		
나②코스닥 시장 육성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4월)			
나③(가칭) 성장사다리 펀드 조성	관계기관협의 (5월)	펀드조성방안 마련	펀드 투자 시행	투자 지속
나④중기M&A 보증 도입	세부운용방안 수립(5월)	프로그램시행	보증지원지속	보증지원지속
나⑤ M&A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나⑥ 메자닌 증권		자본시장법 (국회 계류) 개정		
다①연대보증 폐지확대	제도개선방안 마련(4월)		제도개선방안 시행	
다②재창업 지원 활성화	관계부처협의 (4월)	제도개선방안 마련	제도개선방안 시행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천계획② 정책금융지원체계 재편

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 기존의 **양적·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선별적· 선도적 지원 역할을 강화**

⇒ 현행 정책금융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 하여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기능 중복 해소**

1 (**핵심역량 집중**) 종래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시스템 리스크 및 高위험으로 인한 시장실패** 영역에 선별적·선도적 지원 강화

○ 정책금융의 탄력적 공급*을 통해 **민간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

* 중기 정책금융 자금공급규모(조원) : ('12계획) 106.4 → ('13) 112.2

○ **창업·기술형 기업** 등에 대한 **선별적·선도적 지원 강화**

* '13년 보증지원 계획 : (창업기업) 16.2조원, (기술혁신형기업) 17.0조원

○ 정책금융이 **중소기업 지원**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 정책금융기관, 학계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정책금융 핵심역량 집중 및 자본시장 역할강화방안 모색

2 (**역할재정립방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금융기관별로 핵심업무 재정립·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정책금융지원계획 수립, 정책금융기관간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조정·협의기능을 강화**하여 **기능중복 문제 해소**

- 정책금융기관간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지원의 효율성 제고**

○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책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 검토

나 창업·기술기업 지원강화

◈ **창업·기술기업**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위한 **금융환경 조성**

⇒ **창업기업 및 사업초기 단계 중소기업의 안착을 지원**

1 (**창업·기술기업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사업성·기술력에 기반**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지원 기반 마련**

○ **창업·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보의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신규보증 중 창업기업 비중을 50%** 이상 유지*

* '13년 창업기업 신규보증 공급계획 : 7.2조원(총 신규보증공급 : 14.4조원)

○ **창업·혁신형 기업**에 대해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행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를 '13년중 **500억원 규모로 확대**

* (기보) '12년 계획 100억원 → '13년 계획 500억원
* (신보) 신보법 개정안('12.5월 발의)이 개정 되는대로 업무개시 예정

○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자 유도를 위해 **정책금융(모태펀드, 정금공 등)이 더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펀드** 조성

* '(가칭)한국미래창조펀드' 시범 조성 (기재부, 중기청 협조)

2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기보에 예비창업자가 **창업 즉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

○ 우수기술·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예비평가를 거쳐 지원예정금액과 지원 유효기간**을 정한 **사전보증 확인서를 발급**

* 최대 5억원, 100% 보증(창업후 1년 경과시 90% 전환), 0.5% 보증료 감면

3 (**창업 지원 효율성 제고**) 창업컨설팅·교육 등 **창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준비된 창업" 활성화**

○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의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고, 창업컨설팅·교육 이수자 등 **"준비된 창업자"**에 **보증지원 우대**

* 국내외 기관과 제휴를 통한 청년창업 인프라구축 및 창업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다 실물경제의 창조활력 뒷받침

◈ **실물경제의 창의성 발현을 적극 지원**하여 **新성장·新일자리 산업의 창출**을 뒷받침

⇒ 기술·산업 융복합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조형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1 (**기술·산업 융복합 지원 프로젝트**) **"기술개발 - 사업화 - 확장"**의 **全단계를 연속선상에서 지원**하는 체계 구축

○ 기술기업에 대해 **기술컨설팅, 거래 알선, 투자·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활성화**

○ **기술평가**와 **기업 발굴·기술이전, 융복합 및 R&D보증 등** 기술의 사업화 全과정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 도입**(기보)

2 (**지식재산권 펀드 도입**)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IP) 및 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

○ **Sales & License Back*** 방식 등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권펀드 도입****

* 기업 보유 특허를 투자자에게 매각한 후 기업은 투자자에게 기술료를 지급 (로열티 등 IP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자산유동화)

** '13년중 1,000억원 지원

3 (**창조형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 제조업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서비스 업종별 맞춤형 자금지원**을 도입

○ **핵심부가가치별로 서비스산업을 재분류***하고, 분류된 업종별로 자금수요·조달방법 특징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서비스업 맞춤형 자금지원 관련 용역(4~6월)을 통해 세부방안 마련

○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평가기준 개선**, 정책금융기관의 **내부경영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금융지원 강화

* 헬스케어, 문화컨텐츠, SW, 관광(MICE) 등 고부가가치 창출분야

실천계획② 정책금융지원체계 재편

	~5월말 (100일 이내)	상반기	연내	임기내 (연중)
가①핵심역량 집중			창업기술기업 선별보증지원 (13년중) -창업 16.2조원 -기술 17.0조원	정책금융의 탄력적 공급·경기순응성 완화
가②역할재정립방안 마련	중기TF 구성,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역할재정립 기본방향 마련	
나①창업·기술기업 지원	세부운용방안 수립(4월)	(가칭)한국 미래창조펀드 조성안 마련	보증연계투자 ('13년중 500억원)	
나②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 도입	특례보증도입 (3월)·시행	보증지원지속	보증지원지속	보증지원지속
나③창업지원 효율성제고	창업지원센터 개소(3월)	창업지원 프로그램 마련	창업지원실시	창업지원실시
다①기술산업 융복합 지원 프로젝트	세부운용방안 수립(5월)	프로그램시행	지원지속	지원지속
다②지식재산권 펀드 도입	도입방안 마련 및 시행(3월)	투자 지속	투자 지속	투자 지속
다③창조형 서비스산업 지원 강화		연구용역 실시 (4~6월)	기본방향 마련	지원지속

참 고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을 위한 지원방안 (요약)**

실천계획③ 성장동력으로서 금융 韓流 확산

가 금융 韓流 발전전략 마련

◈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신흥국**들은 우리 경제발전경험 및 그 원동력이 된 **금융인프라***에 큰 관심

* 거래소(증권거래시스템), 산은(개발금융), 신보(신용보증제도), 예보(예금보험제도) 등

⇒ 우수한 **금융인프라**, 성공적인 위기극복경험 등을 바탕으로 **아시아 시장을 교두보로 "금융 韓流" 확산**을 추진

1 **(금융인프라 수출)** 금융인프라 수출을 **금융한류 확산** 및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발판으로 활용**

* KRX는 캄보디아 증시개설 기술지원후 합작거래소 설립(KRX 45%, 캄 정부 55%, 11.7월)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및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프라 수출기관간 사업연계 등**을 통해 수출효과 극대화 추진

* 금융위, 정책금융기관, 금융협회 등으로 구성('11.10월)

2 **(해외금융협력 강화) 신흥국** 금융당국과의 **금융협력 MOU***, **금융 KSP 사업** 확대 등 **전략적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

* '13.3월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등 22개국 38개 기관 등과 총 35건 체결

○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당국간 인사교류 확대** 등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및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

3 **(해외진출 지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 은행의 **소규모 해외현지법인 인수절차 완화**(사전승인→ **사후보고**)

○ 연기금 해위위탁 운영정책과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연계 등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시아지역 펀드 패스포트*(ARFP)」** 논의에도 적극 대응

* 펀드 인가·판매 등에 대한 공통규범을 제정하여 회원국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 호주는 APEC 재무장관회의('13.9월)에서 관련계획을 공식 제안할 예정

나 베이비 부머의 노후 대비 지원

◈ 고령화로 인해 개인의 자산형성·운용에 대한 **새로운 금융 수요가 증가**

⇒ **금융수요 증가**에 대한 **新상품·新판매채널 개발** 등을 통해 관련시장을 활성화

1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개인연금시장 활성화방안 마련

○ **인터넷 등 新판매채널을 활성화***하여 직장인들의 접근성 제고

* 인터넷 전업사 설립 허용, 기존 인터넷 판매사 활용

- 판매수수료 및 운영비가 절감되는 인터넷 상품 등 **사업비가 낮은 상품을 판매**토록 하여, **연금상품 수익률 제고**

○ **판매채널별**로 **사업비 부과방식**을 **다양화**하여 **초기환급률 개선**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예) 인터넷채널은 가입(납입)기간에 평준화된 사업비 부과

○ 공보험을 포함한 노후 재무설계를 지원하고 연금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연금저축 종합포털"을 구축**

* (예) 은행·증권·보험상품간 장·단점, 업권간·업권내 상품 수익률 비교, 세제혜택 및 조기해지시 불이익 등 정보 제공

2 (노후의료비 보장)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상품에 더하여 의료비를 보장하는 新상품(가칭「연금의료비저축」) 을 개발

○ 연금개시前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개시** 시점에 적립금을 **연금 계좌와 의료비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

○ **의료비 계좌** 인출은 **의료비 지급** 용도로만 한정하는 등 노후 의료비에 사전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및 지원방안 마련

3 (**퇴직연금**) 수수료할인 등을 통해 **퇴직연금시장 활성화 추진**

○ '**장기가입자 수수료할인**'을 도입하여 **퇴직연금 장기계약 유도**

○ 각 업권별 협회 사이트에 퇴직연금사업자별 **수수료·수익률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

* 현재 적립금 수준에서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 퇴직연금 **사업자간 원리금 보장상품 교환을 활성화**하여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

4 (**장기세제혜택펀드**)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추진 (기재부 협의사항)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펀드 투자액**(주식편입비율 40%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추진

* **40%, 최대 24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기재부 소관, 관련의원안 계류중) 개정 추진(4월)

5 (**주택연금**) **新상품 출시** 등을 통해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

○ 주택연금의 **초기 보증료*를 대폭 인하한 新상품을 출시**하여 이용고객의 **선택권을 확대****

* 주택연금 가입시 주택가격의 2%를 보증료로 납부 (천재지변에 의한 주택 멸실 등 이외에는 주택연금 중도해지시에도 반환되지 않음)

** 초기보증료를 인하하는 대신, 연보증료(현행 대출잔액의 0.5%)는 인상되고 월지급금은 일부 축소

※ (예) 미국의 연방주택청(FHA)도 단기·소액의 연금이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HECM Saver 출시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0.01%, 연보증료 1.25%, 월지급금은 HECM Standard의 80%수준)

다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등

◈ 성장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강화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등을 위한 **경쟁력있는 자본시장제도**를 구축

⇒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선진형 **기업금융을 강화**하고, 기타 **우리금융 민영화** 등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주요정책 추진

1 (**자본시장법 개정**) 선진형 기업금융 강화 및 경쟁력있는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처리**

○ 성장 기업 및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을 담당할 **선진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여 **기업금융 강화**

○ 기업의 탄력적 재무관리를 위한 **조건부자본증권 도입** 추진

○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ATS) 등 **자본시장인프라 선진화**

2 (**우리금융 민영화**) **신속한 민영화 원칙**하에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민영화방안을 마련

○ 그동안의 매각추진 경험을 참고하여 지분의 일괄매각,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민영화 추진 로드맵을 마련**

3 (**금융전문대학원**) **부산금융중심지 조성** 및 **금융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전문대학원을 설립**

○ **KAIST 연구용역**을 통해 설립방안 검토 및 교과부·기재부·부산시 등과 협의하여 **KAIST 부산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실천계획③ 성장동력으로서 금융 韓流 확산

	~5월말 (100일 이내)	상반기	연내	임기내 (연중)
가①금융 인프라 수출		해외금융협력 협의회 개최	인프라수출기관간 사업연계·정보 공유 강화	수출대상 인프라 지속 발굴 및 수출 지원
가②해외금융 협력 강화			신흥국과의 금융협력 MOU 체결 추진	금융협력MOU, KSP사업 확대
가③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제도개선		은행권 규제 개선 T/F 구성	은행권 규제 재검토 및 해외 진출 절차 개선 자산운용사 해외진출지원 추진	은행규제개선 관련법령 개정
나①개인연금 활성화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마련(5월)	온라인채널 활성화 유도	연금포털 구축방안마련	사업비 부과 체계 개편
나②노후 의료비 보장	노후의료비 상품 도입 T/F 구성(4월)	상품도입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관련법규 개정추진
나③퇴직연금 활성화	수수료 체계 개선 등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4월)		수익률 등 일괄 조회시스템 구축(9월)	
나④장기세제 혜택펀드 도입	조특법 개정 추진(4월)			
나⑤주택연금 활성화			주택연금신상품 도입방안 마련	주택연금신상품 출시('14.상)
다①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시장법 (국회 계류) 개정		
다②우리금융 민영화		민영화 로드맵 마련		민영화 로드맵 추진
다③금융전문 인력 양성			KAIST의 부산 금융전문대학원 설립방안 연구용역 실시	실무금융전문 인력 양성 지원

2. 따뜻한 금융

서민들이 행복하고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 기본 방향 〉

◈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선순환 발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각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흔들림없이 추진**

○ 주택가격 하락으로 곤란을 겪고있는 **하우스푸어 및 서민층의 금융부담 완화 및 신용회복**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전면 개선**

◈ 금융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

▣ [실천계획④]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나. 하우스푸어 대응

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 디딤돌' 놓기

▣ [실천계획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나. 서민금융 안전성 제고

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실천계획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제고

가. 금융 전산사고 방지

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실천계획④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대출구조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

* GDP대비 가계부채(2010) : 86.6%(OECD평균 76.7%, 28개국중 11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2010) : 158.0%(OECD평균 136.9%, 28개국중 8위)

⇒ 경기둔화 지속 등에 대비하여 **가계부채 연착륙을 지속 추진**

1 (**가계부채 연착륙**) 증가속도 관리 및 대출구조개선 **지속 추진**

○ 가계대출 증가속도는 **경상 GDP·가처분소득 증가율**을 감안하여 최대한 **적정증가율 수준 이내로 관리**

* 연도별 가계부채 증가율 : ('10년) 8.7% ('11년) 8.1% ('12년) 5.2%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비중 개선목표**(은행권 '16년말까지 30%)도 차질없이 추진

* ('12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비중) 고정금리 14.2%, 비거치식 13.9%

2 (**취약계층 대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응강화**

○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부문에 대한 **미시분석*을 상시화**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

* 금융위(원),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사 등이 공동으로 위험요인 및 상환능력 등 분석

○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제도를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 자영업자 대출의 **특정업종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고위험·과잉 대출을 억제**하는 한편,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유도

3 (**커버드본드법**) **커버드본드* 근거법**(국회 계류중)**을 조속히 제정**하여 금융회사 조달자금 장기화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 추진

* 발행기관 및 기초자산집합 모두에 상환청구권을 갖는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나 하우스푸어(House-poor) 대응

◈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우스푸어 문제가 대두

⇒ **既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방안(4.1)"을 성실히 추진**하는 한편, 주택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대응방안 검토

1 (**금융권 채무조정**) 금융권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우선 실시하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금융권 자체적인 **상환부담 경감 노력을 강화**

-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자체노력을 독려**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및 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하여 신용회복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

- **금융회사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마련

* 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위한 채권자 동의요건 완화(현행 2/3→ 1/2이상)
성실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평가등급 상향조정(요주의→ 정상)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조정시 **LTV규제를 배제**

2 (**주택연금 사전가입**)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확대**하고 일시금으로 받은 **주택연금으로 현재 부채를 상환**하도록 지원

○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확대***(현재 만 60세이상→ **만 50세 이상**)

*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로 한정

○ 현행 **수시인출금 한도**(50%)에서는 주택연금으로 현재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한도를 100%까지 확대**

* **한시적(1년)으로 시행 후 사전가입 수요를 보아가며 연장여부 결정**

3 (**채권매입 및 채무조정**) **캠코·주택금융공사**가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추진

○ 캠코가 **매입·보유한 3개월 이상 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1,00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 실시)

- 특정 차주의 **채권을 전액 매입**한 경우, 차주에게 **주택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 부여(지분매입은 100억원 한도내에서 실시)

○ 주택금융공사는 **MBS발행**을 통해 매입한 **정상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해 **원금상환유예 등 채무조정 지원**

- **'13년중 1조원 한도**로 채권을 매입하되, 추가 매입은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여력을 감안**하여 **점진적 규모확대 검토**

4 (**컨틴전시 플랜**) 향후 **경제위기·주택가격 급락**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활용가능한 정책 대안을 발굴하여 지속 보완

* **금융권 공동대응, 재정투입**을 통한 대응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시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 디딤돌" 놓기

◈ 경기둔화 및 가계부채 문제 등과 관련 **채무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등 서민금융 부담완화 필요성 제기

⇒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여 서민들에게 신용회복 기회 부여

1 (**국민행복기금 설립**) **채무불이행자 및 학자금대출자**의 채무조정, 고금리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설립(3.29)

* 사업규모는 총 1.5조원 : ①사업초기 소요예상 8,000억원은 신복기금(5천억원) 및 차입금, 유동화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 ②전환대출사업 소요자금 7천억원은 채권회수·보증수수료 수입등으로 조달가능

○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으로 **전환**하여 우선 출범하되, 「(가칭)**국민행복기금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2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금융회사 및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

* 단기연체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일반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50%, 기초수급자 등**은 **원금의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공적정보 활용** 확대 및 **은닉재산 발견시 채무조정을 무효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3 (**저금리대출 전환지원**)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바꿔드림론)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운영하되, **지원기준**을 **한시적**(6개월) **완화**

○ 지원대상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4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1인당 **전환대출 한도도 확대**(3→ 4천만원)하되

* 종래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신용층은 4천만원 이하

○ **대상채무를 '13.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중인 고금리**(20%이상) **채무로 제한**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 1천만원 이하 고금리 채무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으로 요건완화

4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장학재단*과 금융회사의 **학자금 대출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하여 **채무조정 실시**

*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 장학재단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우선 추진

○ 대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학자금 대출을 **"취업후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상환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5 **(신용회복제도 개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여 지원범위 및 규모를 확대**

○ 취약계층*의 경우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최근 1년이내 연체일수가 총 1개월 이상인 경우"**로 확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 금융채무불이행자 以前의 단기 연체자(1~3개월 연체) 채무조정 지원

○ **개인워크아웃* 대상채무**를 **공적채무조정**(개인회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담보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동의요건을 완화*****

* 3개월 이상 연체자 채무조정 지원

** (현행) 담보·무담보 채무합계 5억원 → (개선)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 (현행) 금융회사 2/3이상 동의시 채무조정 → (개선) 1/2이상 동의

6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서민금융센터 운영개선 및 확대**

○ 지자체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예산지원·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추진 (안행부 협의사항)

○ 서민금융상담 매뉴얼 배포 등 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서민금융수요가 많은 지역 등을 위주로 **단계적으로 센터 추가 설치**

실천계획④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5월말 (100일 이내)	상반기	연내	임기내 (연중)
가①가계부채 연착륙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가②취약계층 대응	'13년 미시분석 계획수립(5월)	미시분석 추진	미시분석 추진 미흡사항 보완	
가③ 커버드 본드법 제정	'13.2월 제출 법안 국회대응			
나①금융권 채무조정		감독규정, 신용회복협약 개정	이행실적 점검 보완방안 마련	
나②주택연금 사전가입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		
나③채권매입 및 채무조정	세부계획 수립 (4월)	제도시행	이행실적 점검 보완방안 마련	
나④컨틴전시 플랜 보완				시장상황 감안하여 지속보완
다①국민행복기금 설립	국민행복기금 출범 (3월)		국민행복기금법 제정	
다②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채무조정 신청 접수 개시(5월)			
다③저금리 대출전환지원	한시적 전환대출 확대 시행(4월)			바꿔드림론 지속 운영
다④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장학재단 채권 매입(7월)	
다⑤신용회복 제도개선	신용회복지원 협약 개정(5월)			
다⑥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서민금융종합 지원센터 개선방안(5월)		추가 설치 및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실천계획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소비와 관련한 全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부재**하고, **업권별로도 차이 상존**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방안 마련

1 (**전면적 보호체계 구축**) **금융소비의 全과정**에서 **소비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및 인프라**를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법**(국회계류중)을 조속히 제정하여, 과잉대출 및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꺾기금지, 광고규제 등 6대 판매행위 규제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과징금 등 제재 강화

○ **전문가·학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문제**를 비롯한 **감독체계개편 계획 마련**

○ 소비자 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체계 구축

* 고령층·청소년·직장인·은퇴준비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 추진

○ 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시각에서 **금융상품 공시를 알기 쉽게 개선**

2 (**보험정보 관리**) 개인정보보호 및 보험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다수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험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

* 생보협회, 손보협회 및 보험개발원

○ 보험계약 **인수심사** 및 **보험금 지급** 관련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토록 하고,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강화**

○ **경찰청·국토부 등과의 정보교류 확대**를 통해 보험료·보험금 산정 합리화

3 (**신용평가 제도개선**) 개인신용평가 변동사항 통지 및 항변권 강화

○ 신용조회회사는 **희망자에게 '개인신용등급 변동사항 통지 서비스***를 제공

*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변동여부를 SMS 또는 이메일로 본인에게 알리면, 홈페이지 등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세부내역을 확인

- '13년 하반기부터 **최대 월2회** 신용등급 변동사항 알림서비스 제공

○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
(1단계 : **신용조회회사**에 이의제기 → 2단계 :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

4 (**카드시장 개선**)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및 소비자보호 강화**

○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승인·정산 수수료**(VAN수수료) **개선 방안*** 마련

* KDI 연구용역(상반기) 후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반기)

○ 서민의 **금융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대출**('12년 약 27조원) **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강화**

○ 신용카드 **상품 가입시 주요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카드모집인의 임의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불완전판매 차단

* 대출모집인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명함·전단지 등을 이용한 광고

○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남은 기간 연회비를 반납**하도록 개선

나 금융서비스의 안전성 제고

◈ 서민, 노약층, 부녀자 등 취약계층대상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

⇒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의 안정성 제고**

1 (**대부업 감독강화**) 대부업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등을 위해 **대부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

○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직권감사를 강화**하고, 대부업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여 **영세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

* 현재 ①자산 100억원 이상 ②거래자수 1천명 이상 & 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 금감원이 수시로 직권검사 가능

○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설정하여 **대출금리 하락을 유도**

* 대출규모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차등화하여 규제형평성 확보

2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총리실 주관의 **'불법사금융대책 T/F'**를 통해 **불법 고금리·채권추심**을 **적극 단속**하고 **피해구제 지속**

* '12.4.18~'12.12.7 기간 중 불법 사채업자 10,720명을 검거하고, 피해자에 대해 667건 서민금융 지원, 1,873건 법률 상담 실시

○ 광역 자치단체에 설치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피해구제 강화**

○ **과도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 금융회사 등이 **미등록 대부업체에 채권을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권매입·추심업자**"**의 등록기준을 강화**

3 (**보험사기 방지**) 보험상품의 '개발-판매-보험금지급' **全과정**에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장치*** **마련**

* 상품개발시 "보험사기 영향평가" 실시, 과다보험가입제한 등 계약인수시 심사 철저 등

○ **보험사기 적발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및 관계기관간 **유기적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사기 단속의 실효성 제고**

* 지방경찰청에 '금융범죄 수사팀' 등 **전담조직** 확대 설치, 수사·금융·의료당국 등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 운영('14년말까지)

○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무종사자에 대한 제재 강화, 보험사기자**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 부과** 등 **처벌 강화**

* 보험사기자 정보를 보험계약인수 또는 대출 심사시 참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그 동안 금융회사의 영업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누적**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영업 관행을 **전면 조사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일괄개선**

1 (**전면 조사**) **소비자권익침해관행을 전면조사**하여 개선안 마련

○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여 全 금융업권의 **소비자권익 침해 사례**를 원점에서 **전면 조사**하고 **일괄개선**

* 각 점검분야별로 ①소비자·전문가 의견조사, ②민원·분쟁 분석, ③금융업권별 이슈 발굴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관행 발굴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10대 중점점검분야***」를 선정하고 심층 점검

* 금융상품 약관·광고·공시·영업관행 등 소비자 피해관련 주요 분야

2 (**금융관행 개선**)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굴·개선**

① (**꺾기 관행**) 꺾기규제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금융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기준을 다양화****

*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및 세칙에 규정 → (개선) 시행령
** 현재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 초과여부'로 판단

② (**금리·수수료**) **은행·여전사** 등의 금융회사별 대출(기준·가산) 금리를 **신용등급별로 비교공시**

- 중도상환수수료 등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

③ (**보험사업비 제도**) **선취 구조 위주인 사업비 부과체계***를 개편하여, **다양한 판매수수료 체계**를 가진 보험상품 출시 유도

* 판매시 사업비(보험료의 10~30%)를 선취하여 해지환급금 저하요인으로 작용

- 해외사례 조사, 전문가TF,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비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실천계획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5월말 (100일 이내)	상반기	연내	임기내 (연중)
가①금융소비자 보호체계 전면 개편		금융교육종합 계획 수립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가②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	보험정보체계 개선TF구성 (3월)	제도 개선안 마련(6월)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9월)	
가③개인신용 평가변동통지 및 항변권강화		통지서비스 제공·이의제기 절차 마련		
가④카드시장 구조개선	VAN수수료 개편 TF구성 (3월)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감독 규정 개정	VAN수수료 개편안 마련 카드대출 금리 체계 합리화	
나①대부업 감독강화			대부업법 개정	
나②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단속·피해구제 지속
나③보험사기 방지	보험사기 영향 평가 시행 (4월)		보험사기자 정보시스템구축 보험업법개정안 국회제출	
다①소비자 권익침해관행 전수조사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설치 (4월말)	불합리한 금융관행 조사 및 개선 (~'14)		
다②꺾기관행 개선	꺾기 TF개최 (4월)	의견 수렴	개선방안 마련	관련규정 개정
다③금리·수수료 부과관행 개선	은행 가산금리 비교공시 실시 (3월)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점검	개선방안 마련	
다④보험사업비 제도개선	개선방안 용역 (5월)	개선안 마련	관련규정 개정	시행

실천계획⑥ 전자금융사고 피해 예방

◈ **금융권 전산사고*** 및 **신종·변종 피싱수법에 따른 서민층 피해****가 지속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협

* 신한·NH·제주은행 전산장애('13.3월) 농협·현대캐피탈 전산사고('11.4월) 등

**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 ('10) 5,455 → ('11) 8,244→ ('12) 5,709

⇒ **전산사고의 근원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거래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1 (**금융전산 사고 방지**) 全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점검**(~5월)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 종합대책** 마련

○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국회계류중)의 개정을 통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와 CEO의 책임을 강화**

○ 금융회사가 **보안취약점을 자체분석**토록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보안강화***를 유도

* 취약회사에 대한 점검·제재, 우수회사 인센티브 부여·금융권 사례확산 병행 검토

2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공인인증서에 기반한 현 전자금융 인증체계를 **글로벌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편**

* 인증체계 개편을 위한 해외 사례 조사 등 연구용역 추진('13.6월)

○ 보다 **안전한 온라인 상의 금융결제**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

* 미래부, 금감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참여(4월중 1차대책 발표 추진)

3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보이스피싱 특별법을 개정**하여 **피해구제대상을 확대**하고 피싱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도 신설**

○ 신종·변종 피싱수법 등에 대해 **합동경보 발령*·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강화 등** 피해방지대책 지속 추진

* 금융위·금감원·경찰청 합동으로 '파밍' 주의경보 발령('13.3.4)

**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시 본인확인강화 의무화 (3/4분기중)

실천계획⑥ 전자금융사고 피해 예방

	~5월말 (100일 이내)	상반기	연내	임기내 (연중)
① 금융전산 사고 방지	전산장애 실태점검 (~5월)	전산사고 재발 방지 종합방안 마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금융회사 IT보안 실태 수시점검
②전자금융 거래 안전성 제고	온라인결제 보안강화 방안 마련(4월중)	인증체계 개편 연구용역 발주		
③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보이스피싱법 국회 제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시행	보이스피싱 합동경보 발령

3. 튼튼한 금융

"튼튼한 금융"으로 공정한 금융질서와 금융위기 없는 나라를 지켜나가겠습니다

〈 기본 방향 〉

◈ **회사채시장 양극화 해소 및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원활한 기업자금공급 도모

◈ 금융회사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 추진

◈ **주가조작** 및 계열사간 부당한 금융거래 등에 대한 적발 및 처벌을 강화하여 **금융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

▣ [실천계획⑦] 기업자금공급 원활화

가. 기업구조조정 추진
나. 회사채시장 정상화

▣ [실천계획⑧]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나. 서민금융 안전성 제고
다.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실천계획⑨] 금융불공정행위 근절

가. 주가조작 근절, 개인투자자 정보접근성 강화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 *[기타] 금융안정기반 확립*

가. 외환건전성
나. 금융회사 건전성
다.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 강화

실천계획⑦ 기업자금공급 원활화

가 기업구조조정 추진

◈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취약업종 중심 추가부실**이 우려되고, '13년말 기촉법 기한 만료 등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부실위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도 추진**

1 (**상시 구조조정**) 旣 구축된 **기업규모별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상시적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 **대기업 그룹**의 경우 **재무구조평가**(4월)를 통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강화**를 유도

* 약정체결 그룹 수 : ('08) 6 → ('09) 11 → ('10) 8 → ('11) 6 → ('12) 6

○ **개별 대기업**(4월~6월) **및 중소기업**(7월~10월)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추진**

2 (**취약업종**) **취약업종**(건설·조선·해운) 대기업의 **자금사정악화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

3 (**제도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도모,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 추진**

○ '13년말 종료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연장 또는 상시화** 등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 추진

* 워크아웃 신청주체 확대(기업→ 주채권은행 추가) 및 신용공여 범위 확대(유동화증권 포함) 등

나 회사채시장 정상화

◈ 회사채 시장은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지속 중이나, **비우량 등급 및 취약업종의 발행 어려움**(양극화 현상)이 지속

* 회사채 발행규모(조원) : ('09) 56.3 ('10) 51.6 ('11) 72.6 ('12) **76.7**
* BBB이하/건설사 발행규모(조원) : ('10) 5.3/5.6 ('11) 4.9/6.4 ('12) **4.3/4.4**

⇒ **회사채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1 (**건설업**) 신보의 **건설사 P-CBO*** **지원대상**을 대기업(재계순위 1~10위 제외)으로 확대(4월중 발행)

* 총 보증규모 4.3조원, 잔여분 2.3조원

2 (**유동화 지원**) **중소기업 보유자산을 기초로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자격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예: (현행) 신용등급 BBB 이상 →(개선) BB 이상

3 (**회사채 발행제도**) **회사채 발행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보호 강화 및 회사채에 대한 장기·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

* 수요예측제도 : 투자자보다 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금리 제시관행을 개선

4 (**상시 모니터링**) **취약업종·비우량채**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컨틴전시 플랜도 지속 보완**

실천계획⑦ 기업자금공급 원활화

	~5월말 (100일 이내)	상반기	연내	임기내 (연중)
가①상시기업 구조조정	대기업그룹 재무구조 평가(4월)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4월~6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7월~10월)	지속
가②취약업종 모니터링	지속	지속	지속	지속
가③기업구조 조정 제도개선			기촉법 개정안 국회제출	
나① 건설업 지원 강화	P-CBO지원 확대방안 발표 (2월) 신보내규개정 (3월)	P-CBO 발행 추진		
나②유동화 증권 발행자격 완화		자산유동화법 국회 제출(6월)		
나③회사채 발행 제도 개선	회사채 발행 제도 개선 추진(5월)	이행상황 모니터링	모니터링 지속	모니터링 지속
나④ 상시 모니터링	지속	지속	지속	지속

실천계획⑧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 대주주·경영진 모럴해저드, 사외이사 책임성 저하, CEO 공백상태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가 지속 발생**

⇒ **全업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책임성**을 제고

1 (**지배구조법 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및 업권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제정

○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보수체계 합리화 유도

* 이사회의 사외이사 과반수 의무화,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

** 임원 유형별(사외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로 보수총액을 공시하고, 성과연동 보수지급, 성과보수 이연지급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

○ **주요집행임원 임면**시 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자체적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공시하도록 의무화

* 주요 집행임원 임면의 이사회 의결 및 이사회 요구시 출석·보고 의무화

2 (**지배구조 선진화**) **사외이사제도**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사외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사외이사 모범규준' 개정** 추진

* 민·관합동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구성하여 지배구조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방안 마련

3 (**대주주 적격성 심사**) 현재 은행·저축은행에서만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全금융업권으로 확대**

○ 현행 금융업법상 대주주 자격심사는 3단계*로 이루어지나, **제2금융권은** 3번째 단계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가 부재**

* 1단계: 금융회사 인·허가시 자격심사 → 2단계: 대주주 변경승인시 자격심사 → 3단계: 사후유지(대주주 적격성 심사)

** 은행은 6개월, 저축은행은 2년(자산 2조원 이상 매년)마다 주기적 실시 중

○ 이해관계자·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세부 심사요건 구체화**

④ (금산분리 강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현행 9%)를 **축소**

○ **구체적인 한도**에 관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추진

실천계획⑧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5월말 (100일 이내)	상반기	연내	임기내 (연중)
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법 제정 추진	지배구조법 제정	지배구조 개선
②지배구조 선진화	지배구조 선진화 T/F 운영(4~5월)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	지배구조 개선 방안 마련·추진	지배구조 개선
③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	관련 의견수렴 및 법규화 방안 마련(4월)	법 제정 추진	지배구조법 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④ 금산분리 강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개정 추진	법 개정 추진	금산분리 강화

실천계획⑨ 금융불공정행위 근절

◈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발생건수가 증가***

* ('10) 194건 → ('11) 222건 → ('12) 271건

⇒ **주가조작 근절** 등 **불공정거래규제를 강화**하여 시장질서 확립

1 (**주가조작 근절**) 주가조작 **적발·처벌 全단계에 걸친 개선안** 마련

○ 주가조작의 主근원지인 **사이버상 풍문유포** 등을 **감시**하는 **사이버시스템***을 **구축**

* 거래소에 인터넷 등을 이용한 주가조작시도를 자동으로 적출하는 시스템 운영

○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 마련** 및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

2 (**개인투자자 보호강화**) **개인의 합리적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확대 및 투자자교육 활성화** 등 추진

○ **종속회사 주요경영사항** 및 **가장납입사실**, 지배-종속회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요 변동사항** 등에 대한 **공시 신설**

○ **비전문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투자 및 위험관리방법,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소액사건 분쟁조정 진행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토록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여, 투자자 피해 **사후구제 기능 강화**

○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 및 부실감사 예방**을 위한 개선안 마련

- 기업의 **분식회계 엄단**을 위해 **조치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장법인 **임원 취업 제한 조치** 등을 신설

* 현행 외감법상 분식회계 조치대상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님 등)를 포함

- 회계법인이 구축·운용하는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시스템의**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부실한 회계법인의 시장 퇴출**을 유도

-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해석·질의회신 절차**를 보다 신속·투명하게 개선하고 **회계기준원의 기능을 IFRS에 맞춰 재정립**

3 (**보험사 불공정거래 제한**) 대기업집단 계열사 비중이 큰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사와 대주주간 거래 규제 강화**

○ 대주주(자회사)와의 **불리한 조건거래 금지대상**에 (현행) '자산'거래 외에 **'용역'거래를 추가**하고, 규제회피 목적 **우회거래도 금지**

○ 대주주와의 거래(자산·용역)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대주주와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

4 (**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집중 대응**) **계열사간 금융거래 집중 관행을 방지**하여 투자자보호 강화

○ 펀드 판매회사의 **계열운용사 신규펀드 판매 비율**과 펀드 운용시 **계열증권사에 대한 매매위탁비중**을 제한(연간 50%)

○ **변액보험자산 운용 위탁**시 계열사 비중 제한(연간 50%)

○ **계열사 고위험채권 투자권유·판매 등을 제한**하고 일임·신탁의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제한을 강화**(계약·수탁고의 50% 등)

실천계획⑨ 금융불공정행위 근절

	~5월말 (100일 이내)	상반기	연내	임기내 (연중)
①주가조작 근절	주가조작근절 종합대책 마련 (4월)			
②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거래소 규정 개정·시행(4월) 외감법 개정안 국회제출(4월)		투자자 교육시스템 확충(9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국회통과 추진 외감법 국회 통과추진	
③보험사 계열사간 불공정 거래 금지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제출(9월)	
④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 집중 대응	금투업규정 개정(4월)			

기타 금융시장 안정기반 확립

가 외환건전성 제고

◈ '11년 하반기부터 선제적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속 추진한 결과, 국내 은행의 **현금 외화유동성은 양호**

* '11.6월말대비 '13.2월말 5배 수준으로 증가

⇒ 대내외불안요인에 대비하여 **외환시장 건전성을 선제적 제고**

□1 (**유동성 확보**) **외화유동성 확보 및 차입선 다변화** 지속 추진

○ 국내은행 **외화 Stress test***를 통해 외화유동성 여력을 지속 점검

* 위기발생시 최소 3개월 동안 견딜 수 있는 외화유동성 자체 확보

○ **외화예수금 확충**과 **차입선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외화유동성을 확보토록 유도

□2 (**건전성 규제**) **외환건전성 규제**의 **탄력적 운용**

○ 자본유출입 추이 및 국내기업 환위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자본유출입 관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거시건전성 확보

○ 우호적인 차입여건을 활용하여 **외화채권 발행만기를 장기화**함으로써 **단기차입 비중 축소** 등 외환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

* 국내은행의 월별 중장기차입계획을 제출받아 만기구조 사전분석 및 중장기차입금의 만기분산 유도

○ 금융회사 **해외투자*** **확대의 건전성 및 리스크요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외화자산운용에 대한 리스크관리방안** 검토

* 해외투자(억불): (10말) 6,941 (11말) 7,537 (12말) 8,420 (+883)

나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

◈ '11년부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불안요인을 상당부분 제거*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일부 저축은행의 어려움이 지속**

* 총 26개(자산기준: △38.1조원, 44%), 주된 부실원인인 PF대출 약 71% 정리

○ **상호금융**은 '09년 비과세 예탁금 한도 확대(2천→3천만원)이후 **수신이 급격히 확대**된 반면 자금운용한계로 건전성이 악화

* 수신(조원) : ('08.12월) 253→ ('12말) 384조원 (+51.7%)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리스크요인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건전경영 기반을 강화**

1 (**저축은행**)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감독

○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자체정상화 유도**

- 불가피한 경우 **시장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리**

○ **대주주 적격성 수시 심사제** 도입, **편법·우회대출 금지** 등 **건전경영기반 확립**

2 (**상호금융**) **리스크요인 선제적 관리** 및 **건전경영 기반 마련**

○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하여 **잠재리스크**가 큰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금감원·중앙회 검사 강화

○ **외부감사 확대, 중앙회 예탁금 실적배당제** 도입 등 **건전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다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 마련

◈ 금융서비스의 실질은 유사하나 **감독부처 상이 및 규제수준 차이**로 **쏠림행태 및 불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문제 등 발생

⇒ **부처간 협력을 통해 엄격하고 공정한 금융감독**을 실행

1 (**상호금융**) 주무부처·근거법이 상이한 **상호금융의 감독체계를 정비**하여 상호금융의 **검사·감독 강화 및 건전성 확보**

○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모니터링 및 대응 강화**

* 금융위(신협), 농림부(농협), 해수부(수협), 안행부(새마을금고)·산림청(산림조합)

○ **금감원·중앙회**의 **검사·감독역량 강화방안 마련**

○ **중앙회**의 **조합 검사업무**에 대한 **감독근거** 마련

2 (**유사보험**) **4개 유사보험의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 새마을금고·신협·수협 공제 및 우체국보험

○ 보험·유사보험간 **규제차이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미, 한·EU FTA 후속조치)

* 주요내용 : 모집질서, 재무건전성 감독, 자산운용, 상품규제, 공시 등

3 (**개별법상 펀드**) 개별법상 펀드*에 **자본시장법 수준의 투자자보호규제****를 적용하는 등 **투자자보호 강화** 및 **규제차익 해소**

* 자본사장법상 집합투자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 14개 개별법상 펀드
** 내부통제기준, 지배구조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공시 규제 등

○ 펀드 규제체계 정비 연구용역 및 **부처협의 추진**

4 (**우체국 예금**) **예금전액보장** 등에 따른 우체국 자금과다유입 및 **지역금융기관 경영여건 악화** 문제 등에 대한 개선안 마련

○ 관계부처 **공동 연구용역 실시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기타] 금융시장 안정기반 확립

	~5월말 (100일 이내)	상반기	연내	임기내 (연중)
가① 외화 유동성 확보	외화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및 취약은행 확충 지도(3월)		외화예수금 확충방안(12.6월) 추진현황 점검 (유관기관 합동)	(필요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수정·보완
가② 외환 건전성 규제				(필요시) 자본유출입 관련 규제방안 마련 (유관기관 합동)
나①저축은행 건전성 제고	저축은행법 국회제출(5월)			상시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나②상호금융 건전성 제고	조기경보체계 구축(3월)		신협법 개정	
다①상호금융 감독체계정비	상호금융정책 협의회 개최(4월)	금감원·중앙회 검사·감독역량 강화 방안 마련	신협법 개정	
다②유사보험 규제 일원화	규제 개선방안 마련(5월)	유사보험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법규 개정	유사보험규제 일원화
다③개별법상 펀드규제정비		펀드 정비방안 마련	부처협의추진	
다④ 우체국 예금제도개선	미래부와 공동 연구용역 협의 (4월~5월)	연구용역 발주	연구용역 시행	개선방안 마련·추진

Ⅲ. 부처간 협력과제

1. 지하경제 양성화

2. 신용회복과 취업·창업지원 연계 강화

3. 창조형 산업 금융지원

1 지하경제 양성화

◈ FIU 정보제공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위-국세청간 **협력채널 구축**

◈ **지하경제 양성화 기반 조성**에 FIU의 분석·감독 **역량**을 집중

□ **금융회사**의 **FIU**에 대한 **탈세 의심거래보고**의 **범위**와 **FIU의 국세청**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대폭 확대**(4월중 법 개정 추진)

* (현행) 조세범죄 관련 정보 → (개정) **탈세혐의 조사** 및 **체납징수** 정보

○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현재 1천만원 이상)을 **폐지**

○ FIU-국세청간 **조세정보 분석협의회**(가칭)를 **설치**(4월중)하여 **관련 정보를 우선적으로 집중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확대**(연중)

* 탈세우려 업종·사업자 및 사회적 탈세이슈 업종·사업자 관련 고액현금 정보를 집중 제공하고, 협의를 통해 정보제공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

□ FIU의 **심사분석 및 감독 역량**을 **탈세·지하경제** 방지에 집중

○ **탈세우려 업종, 증시 불공정거래** 관련 적발을 강화하고, **테마검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유사 의심거래보고를 활성화

○ 외국 FIU와의 **MOU 및 정보교환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내국인의 역외탈세 의심거래 정보**의 입수(교환)·제공을 강화

○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이행 강화***를 통해 **기업비자금, 악성 차명거래 등 불법 금융거래 유인**을 억제

*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불법거래 여부를 점검

< 추진일정 >

	~5월말 (100일 이내)	상반기	연내	임기내 (연중)
정보제공 확대	법적근거 마련, 협의채널 구축	하위법령 개정 추진	협의 통해 정보제공 확대	정보제공 지속 확대
분석·감독 역량 집중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이행 강화	FIU 조직·기능 개편	외국 FIU에 대한 프로젝트 제안	분석·감독 역량 지속 강화

2 신용회복과 취업·창업지원 연계 강화

◈ 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에게 **취업·창업지원**을 **병행 실시**

○ **상환능력 제고**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취업 지원 (고용부 협업)

○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요건 확인절차** 없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일반참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등 징구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을 이수한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보조금**(연간 최대 860만원)을 지급

□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소상공인 창업학교"**를 통해 **창업 교육**을 제공(서류·면접심사 면제) (중기청 협업)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희망컨설팅 사업"**을 통해 **경영 컨설팅 지원** (중기청 협업)

○ 채무조정 기준에 따라 **2년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미소금융**을 통해 **창업자금 등을 지원**

□ 채무를 **1년이상 성실상환중**인 채무조정 대상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에서 1천만원 한도 내 **소액대출 지원**

< 추진일정 >

	~5월말 (100일 이내)	상반기	연내	임기내 (연중)
취업 지원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채무조정자 자금 지원				성실상환자 자금 지원 채무조정대상자 소액대출 지원

3 창조형 산업 금융지원

◈ 미래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및 중기청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창조형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강화

□ (**창조형 중소기업**) 정책기관(모태펀드, 정금공), 민간이 함께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조성*, **창업·기술기업** 지원 강화(중기청 협업)

* 정책자금이 보다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여 민간의 모험적 투자를 유도

○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지원효과 제고

□ (**ICT 중소벤처기업**) **지식재산권 펀드, 보증연계 투자** 등 ICT 기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활성화** (미래부 협업)

□ (**헬스케어산업**) **제약·바이오산업 M&A전문펀드를 통해 제약산업 대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 (복지부 협업)

* 정책금융공사 중심으로 0.5조 규모 펀드 조성 예정

○ **의료·헬스케어 등 고부가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

* 국부펀드간 협력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헬스케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국 국부펀드와 MOU 체결 추진(정책금융공사)

□ (**해양산업·해외플랜트**) **해양산업·해외플랜트 건설** 등 일자리창출효과가 큰 선도분야에 정책금융지원 강화 (국토부, 해수부 협업)

< 추진일정 >

	~5월말 (100일 이내)	상반기	연내	임기내 (연중)
혁신형 중기 투자지원 확대	관련기관 협의	미래창조펀드 조성방안 마련	펀드조성완료	펀드투자지속
ICT중소벤쳐기업 자금지원 강화	관련기관 협의	지식재산권 펀드·보증연계투자 시행	지속 지원	지속 지원
국부펀드간 MOU체결 추진	관련기관 협의		MOU체결국 확대 추진	해외진출 지원
제약·바이오산업M&A펀드조성	관련기관 협의		펀드결성	펀드투자지속

Ⅳ. 추진체계: 국민중심 금융행정

1.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
2. 국민행복을 위해 협력하는 유능한 행정
3. 국민관점에서 생각하는 맞춤형 서비스 행정

1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

◈ 국민에게 금융정책을 **"편리하게·이해하기 쉽게 공개"**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금융행정**을 구현

1 (**접근성 제고**) 정책에 **언제나·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업금융나들목 및 서민금융나들목** 등을 통해 중소기업금융 및 서민금융 전체 정책현황에 대한 **"온라인 토털 솔루션"**제공

○ **서민콜센터(1397)를 통한 전화 종합상담 서비스** 강화

○ 광역자치단체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체계 확립 및 **단계적 추가 설치**를 통해 **국민과의 서민금융정책 접점 확대**

2 (**이해도 제고**) 복잡한 금융상품과 금융정책을 **이해하기 쉽게, 국민 연령별·유형별로 차별화된 홍보·교육** 추진

○ 금융교육 프로그램 확충, 수요자 유형별로 홍보방식 차별화

* 예) 금융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금융교육포털' 구축**

3 (**현장 중심**) 현장에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생생히 듣고 대응방향을 마련하는 **"현장중심 체감정책"으로 정책공감대 확대**

* **중소기업 현장방문, 서민금융 현장방문**을 주기적으로 실시

4 (**다양한 정책제안 통로**) 국민들이 쉽게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확충**하여 **"문턱없는**(barrier-free) **정책서비스"** 제공

○ 「**희망나무 복주머니**」, 「**국민신문고**」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책결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

○ **기업금융애로센터**를 통한 상시적 중소기업금융 애로사항 발굴

○ **금융발전심의회** 등 자문기구를 통해 시장의견 수렴

2 국민행복을 위해 협력하는 유능한 행정

◈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효과적으로·편리하게**" 제공하는 **유능한 금융행정**을 추진

1 (**문제발생 사전차단**) 기관간 **긴밀한 협력 및 공동대응**을 통해 금융시스템 **잠재 위험요인의 현실화를 사전에 차단**

* ① **거시경제금융회의** : 기재부·한은 등과 정보공유 등을 통해 시스템리스크 조기대응
② **상호금융정책협의회** : 상호금융 주무부처(농림부·산림청·안행부)간 유기적 공조를 통해 규제일관성 제고 및 상호금융의 건전성 악화를 미연에 방지

2 (**신속·범정부적 문제해결**) 금융사기·전자금융사고 등 **서민금융안전 및 민생해결**에 **범정부적으로 신속히 협력·대응**

*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고 대응관련 **범정부기구 설립 및 관계부처합동 종합대책** 추진

3 (**신규정책 발굴·개선**) 국민입장에서 부처협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연계를 통해 효과를 제고**

○ 소관부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를 해소**

* **유사보험, 개별법상 펀드** 등에 대한 규제수준을 일원화하여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해소**

○ **정부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시너지효과를 제고**

* ①「**미래창조펀드**」조성 등 재정자금·정책금융간 협력을 통해 **中企 투자지원 확대**
② **서민금융**이 실질적인 자활의 발판이 되도록 취업지원·창업교육 등 **고용지원과 연계**
③ **FIU 금융정보 공동활용**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재원확보에 기여

○ **서민금융지원인프라**(1397 콜센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를 통한 **금융·복지 고용 지원제도 종합적 상담** 제공방안 검토

3 국민관점에서 생각하는 맞춤형 서비스 행정

◈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금융정책**을 실현

1 (**정확한 수요파악**) **세밀한 통계관리, 다각적 국민의견 수렴**절차 등을 통해 **대상별·상황별 세분화된 정책수요** 파악

○ **가계부채관련 다양한 통계분석**을 위해 금감원·금융회사·신용정보기관 등을 활용한 **정보수집체계를 관리·개선**

○ **중소기업·서민금융·사금융실태 조사** 등을 통해 세부통계 파악 및 금융현황·애로사항 모니터링 지속

* 「국민행복기금」 출범이후 지역별 **운영상황점검 및 정책수요 발굴**

2 (**맞춤형 서비스**) **정책대상을 보다 세분화**하여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능력을 강화

○ 중소기업 **성장단계별·서비스산업 유형별*** 맞춤형 금융지원 추진

* 서비스업 맞춤형 자금지원 관련 용역(4~6월) 및 효과적 지원방안 마련

○ **고령층 대상 교육상품 개발** 등 **맞춤형 금융교육 종합계획** 마련

3 공급자 중심 사후평가에서 **국민 만족도 중심 점검·평가 강화**

① (**중간점검·평가**) 금융발전심의회 등 각종 자문위원회를 통해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점검·평가기능 강화**

② (**국민 만족도 평가**) 공급자 중심 양적·실적중심 평가에서 **국민 만족도**(체감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확대

-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제도의 개선 성과를 **소비자 관점에서 측정**

- **자체평가위원회**에 금융소비자·중소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참여 확대**로 **정책의 체감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방안 검토

③ (**국민 직접평가 확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피드백(feedback) 강화

Ⅱ. 2013년도 예산집행사항

□ 2013년 예산집행현황(13.9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 예산액	지출액
1. 인건비	**18,064**	**13,982**
2. 기본경비	**7,099**	**5,840**
3. 사업경비	**392,402**	**337,360**
· 저축의날 행사 및 저축장려	72	24
· 농어가기금출연	45,350	34,013
· 금융소비자보호	247	223
· 자금세탁방지추진	500	382
· FIU전산망구축운영(정보화)	5,878	3,807
· 금융관련 국제협력	460	390
· 금융중심지 추진	146	95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보조	681	583
· 금융전문인력양성	1,505	629
· 산은·기은 출자	90,000	50,000
· 모기지론이차보전	21,433	20,933
· 주택금융공사 출자	220,000	220,000
· 금융위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15	393
· 행정효율성 증진 등	107	58
· 정책연구개발	677	101
· 금융정책알리기	454	276
· 청사유지관리	4,467	3,766
4. 내부거래(기금간거래)	**2,773**	**1,344**
· IBRD차관 원금상환	2,710	1,332
· IBRD차관 이자상환	63	12
합 계	**420,338**	**358,526**

Ⅲ. 2013년도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과 그 실적

목 차

Ⅰ.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Ⅱ. 주요 정책과제 추진실적

1.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2.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3. 우리금융 민영화

4. 국민행복기금 추진

5.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

6.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7. 코넥스시장 개설 및 크라우드 펀딩 도입

8.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Ⅰ 금융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 상세내용은 자료 Ⅰ. 2013년도 주요업무 현황 참조

비전 — **희망의 새 시대**

미션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
실천계획		
① 「창업-회수-재도전」의 금융환경 혁신 · 창업 환경 혁신 · 중기M&A등 회수시장 활성화 · 성실한 실패의 재도전 지원	① 가계부채 연착륙 및 국민행복기금 설립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 하우스푸어 대응 · 국민행복기금 설립·지원	① 기업자금공급 원활화 · 기업구조조정 추진 · 회사채시장 정상화
② 정책금융지원체계 재편 · 정책금융역할 재정립 · 창업기술기업지원강화 · 기술산업융복합지원	② 금융소비자보호강화 · 금융소비자보호 권익 강화 · 서민금융 안전성 제고 ·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②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 지배구조 개선 · 대주주 적격성심사 확대 · 금산분리 강화
③ 성장동력으로서 금융 韓流 확산 · 금융韓流 발전전략 마련 · 베이비부머 노후대비 지원 ·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등	③ 전자금융사고 피해 예방 · 금융 전산사고 방지 ·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③ 금융불공정행위 근절 · 주가조작 근절 · 개인투자자 보호강화 · 불공정거래 금지 등
협업과제 • 창조형 산업 금융지원 (미래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청)	• 신용회복과 취업·창업 지원 연계 강화 (고용부, 중기청)	• 지하경제 양성화 (기재부, 국세청)

추진체계 — **국민중심의 금융행정**

①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	②국민행복을 위해 협력하는 유능한 행정	③국민관점에서 생각하는 맞춤형 서비스 행정

Ⅱ 주요 정책과제 추진실적

1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1)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을 금감원과 별도조직으로 **독립적으로 설립**하고 **적절한 업무와 권한을 부여**

○ (**업무**)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

○ (**권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 부여(금감원과 사전협의 의무)

□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복검사 등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간 세밀한 협력체계** 마련

○ 금소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

○ 금감원/금소원간 **중복제재 및 형량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2) 향후 계획

□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률 개정 추진**

□ 입법추이를 보아가며, **금소원 설립준비단 구성 및 세부설립방안** 준비

2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1) 주요 내용

1 대내 정책금융 부문 :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

○ 창업·벤처기업 지원,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은의 정책금융 전문성**을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

○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하되, **벤처투자, 온렌딩** 등 주요기능은 **산은내 독립부서에서 수행**

○ **산은**의 **일부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생명보험) **매각 추진**

2 대외 정책금융 부문 : 현행 체제 유지 및 핵심역량 강화

○ **현행 수은·무보 체제를 유지**하되, **개도국 수출지원, 중장기·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중심**으로 기능 개편

○ 수은·무보의 **비핵심업무**(단기여신, 단기수출보험 등)를 **단계적으로 축소**

3 선박금융·해외플랜트 지원 강화

○ 수은·무보·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인력**(약 100명)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가칭)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

○ **해운보증기금 설립여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기재부, 해수부, 산업부, 금융위 등) 협업과제로 **추가 검토**

4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

○ 기은, 신·기보 등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창업초기·혁신형**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확대·강화**

(2) 향후 계획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추진**

□ **통합절차**를 거쳐 **'14.7.1일 '통합 산은' 출범**

3 우리금융 민영화

(1) 추진 실적

□ 우리금융지주의 **14개 자회사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매각**하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 **마련**(6.26)

* ① 지방은행(경남·광주은행), ② 증권계열(우리투자증권·우리자산운용·우리아비바생명·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파이낸셜, 우리F&I), ③ 우리은행계열(우리은행, 우리카드, 금호종금, 우리PE, 우리FIS,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지방은행)** 7.15~9.23일간 예비입찰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경남은행에 4개, 광주은행에 7개 투자자가 입찰에 참가**

- 매각이 용이하도록 매각절차 진행 중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지방은행 분할 결의**(8.27)

○ **(증권계열)** 8.16일 **우리금융지주가 매각공고를 실시**하였고, 10.21일까지 예비입찰제안서 접수 예정

○ **(우리은행계열)** 지방은행 및 증권계열 인수자가 결정된 이후 내년초 매각절차 개시 예정

(2) 향후 계획

□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조속한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10월중 지방은행 및 증권계열 최종입찰대상자 선정** 등 추진

4 국민행복기금 추진

(1) 추진 실적

□ **국민행복기금 출범**(3.29)이후 금융채무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고금리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 중**

① **(채무조정)** 2013.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서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지원

- 4.22~10.10일 기간 중 **총 19.2만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였고, **이중 16.0만명**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 **금융회사·대부업체·공적AMC** 등으로부터 **총 284.8만명**의 연체채무를 매입 또는 이관

* **284.8만명** = (일괄매입) **94만명** + (신청에 따른 매입) **18만명** + (공적AMC 이관) **178만명** - (신청자 중 공적AMC 중복) **5.2만명**

② **(전환대출)** 기존 바꿔드림론의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고금리(20%이상) 대출의 **저금리**(10%내외) **전환 지원**

- 한시적 완화 기간(4.1~9.30) 중 **총 3.5만명**(3,787억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전환대출로 지원**(전년동기 대비 7% 증가)

* (기존)연소득 2,600만원 이하(신용등급 6~10등급은 4천만원 이하) → (완화)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여러 부처·기관간 협업**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채무자**를 지원하고, **고용·창업지원 등을 통해 상환능력**도 제고

○ 유관기관 합동*으로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하여, 지원 곤란 사유를 확인하고,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

* 캠코, 금감원, 신복위, 은행연합회, NICE신용정보, 대부업협회

- 9.30일까지 **총 6,198명**에 대해 **무한도우미팀을 통한 추가 지원**

○ **취업·창업 등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적극 실시**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 686명**을 연계·지원

* 직업상담·교육·취업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 중기청은 **채무조정 신청자에 특화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소상공인 재기 힐링캠프")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20명**이 교육 수료

(2) 향후 계획

□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이관하지 못한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 추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의 **채권매각 근거***가 마련되는 **즉시 해당 채권을 매입·채무조정**을 지원

*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국회 제출(김희정의원 발의, '13.8.8)

- 채권매입이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한국장학재단 대상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신청 접수기간**을 **'14.1월까지 연장**

○ **(햇살론)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햇살론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 추진**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 현장방문('13.9.6) 등을 통해 햇살론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

□ 남은 신청기간(~10월말)까지 **최대한 많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장 발송 등**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적극 독려**

5 서민금융지원제도 개선

(1) 추진 실적

□ **서민들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요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9.11)

①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 신복위·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통합**

※ 행복기금운영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하여 업무단절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② **서민금융상품 운영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및 **내실화**

-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조건**을 **통일**하여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햇살론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정상화**(95%→ 85%)

- 미소금융의 주요 재원인 **휴면예금**이 **지속 확보**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은행약관 개정**을 **추진**하고, **미소금융의 지배구조** 및 **사업모델**을 **개선**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

③ **서민금융**의 **"質的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 및 **신용회복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상담·조정**을 **활성화**하여 **공·사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고 **One-stop 서비스 제공**

(2) 향후 계획

□ 법안 작업 및 개선방안 구체화 관련 **작업반 구성**(9월) **및 운영**

□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 등 **관련 법률안 마련**(연내)

6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1) 추진 실적

□ **총량적 차원**에서는 '11년 이후 **가계부채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고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개선**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는 완화**

* 가계부채 증가율(%) : ('11.2Q)9.6 (4Q)8.7 ('12.2Q)5.9 (4Q)5.2 ('13.2Q)5.5
* 고정금리 가계대출비중(%) : ('10말) 5.1 → ('13.7월) 23.0
  비거치식분할상환 주담대 비중(%) : ('10말) 6.4 → ('13.6월) 17.4

□ **미시적 차원**에서는 저소득층·고령층 등 **취약계층, 하우스푸어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추진**

○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국민행복기금**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추진**

(2) 향후 계획

□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구조개선 등 연착륙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취약업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

○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대출 공급 확대, 커버드본드법 제정** 등을 통해 **가계부채 대출구조 개선을 유도**

□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하고 금융, 복지, 취업 지원 등 **맞춤형 대응 노력**을 **더욱 강화**

○ **미시분석을 강화**하여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체계 구축

○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하여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 등을 지속**

○ **가계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기반 확충, 복지지원 강화 등 범 정부적 노력을 강화**

7 코넥스시장 개설 및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1) 추진 실적

□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13.7.1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시장 개장**

○ 10.8일 현재 **24개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금년말까지 50여개 기업으로 늘어날 전망

□ **신생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추진(관련법안 **정무위 계류중)**

* 인터넷 등을 이용, 다수(crowd)로부터 투자 약정을 통해 소규모 자금을 조달 (해외입법례 : 미국(JOBS Act), 이탈리아(Growth Decree, 성장촉진법) 등)

○ **자금모집시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등 원활한 자금조달을 제도적으로 지원

(2) 향후 계획

□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의 **수요와 공급, 兩 측면에서 거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노력 경주

○ 법률 통과시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규정도 신속히 정비**

8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1) 추진 실적

□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4.18)

* ①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5.2), ② Fast Track 운영, ③ 자본시장조사단 신설(9.17) ④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확대(금감원, 거래소) 등

□ 분식회계 처벌 강화 등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13.4)**

* ① 분식회계 조치대상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포함, ② 분식회계에 직접 관여한 경우 상장법인 임원 취임 제한 조치 신설 등

□ 계열 금융회사간 펀드 판매 등 **계열사 집중에 따른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해 판매비율(50% 이하)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신설('13.4)

(2) 향후 계획

□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4.18)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노력 경주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신설 및 과징금 도입, 불공정거래 관련 형벌 강화 등

□ 유한회사, 비상장 대기업 등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방안** 마련

□ **보험사와 대주주간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 추진('13년말 입법예고 추진)

* 대주주(자회사)와의 불리한 조건거래 금지대상에 (현행) '자산'거래 외에 '용역'거래를 추가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수준도 상향

Ⅳ. 2012년도 국정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목 차

1. 시중은행 대출금 용도 분석 결과 등을 검토하여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다 현실적인 가계부채 문제에 종합적인 대책 및 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것

2.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대부분인 가계대출 구조를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자금 조달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3.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조정 및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조치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4. 단기지표금리로서 유효성이 저하된 CD 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 금리를 조속히 도입할 것

5. 금융권의 신입공채 관련 입사지원서에 개인역량과 무관한 재산상황, 가족 최종학력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6. 새희망홀씨대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7. 민간복지사업자의 미소금융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를 전면 재선정하는 한편, 민간복지사업사의 미소금융 관련 과도한 대출이자율을 인하하도록 할 것

8.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정보에 반영하여 제도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소금융 전환대출과 관련하여 이미 연체가 발생한 고금리 대출 대학생들에 대하여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9. 햇살론이 보증방식의 문제로 부실의 개연성이 높고 금융당국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10.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2010년 이후 변동 없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바꿔드림론 금리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

11. 금융IT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할 것

13. 2012년 2월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한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노조 간의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14. 은행의 담보물 자체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의 담보평가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업계와 금융업계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15. 명확한 기준 없이 변동금리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16. 은행의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에 대한 개선 및 부당취급 사례 적발시 제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17. 신보·기보 보증부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와 관련하여 약관을 조속히 개정할 것

18. 외국자본의 먹튀논란과 관련한 고배당 등에 대한 제도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19. 은행들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미사용수수료 부과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검토할 것

20. 은행의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1. 신한은행 라응찬 전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하여 재점검 할 것

22.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 직전 대주주 가족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분처분 행위에 대하여 조사 후 조치하도록 할 것

23. CP발행정보 원스탑조회시스템과 관련하여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은행 발행 CP 정보도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4. 기업의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감리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시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CEO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25.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세회피지역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견제 시스템을 강구할 것

26. 소액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7. 미수령주식의 주인 찾아주기를 위해 명의개서대행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 전개와 주민등록전산자료 활용 등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28. 한국기업데이타의 크래탑 신용정보상품 강매로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29. 해외 PEF와 달리 국내 PEF 배당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30. 갱신형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31. 생명보험회사의 낮은 보험계약유지율과 해약환급율 및 고배당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2. ING생명의 출자회사에 대한 계속되는 컨설팅 명목의 자금송금 및 과도한 신계약 시책으로 인한 시장마찰 및 부실계약 발생 우려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33. 휴대폰보험 민원해소를 위하여 불완전판매 해소와 상품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4. 신용카드 신가맹점수수료의 원가내역에 대손비용 및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검토 할 것

35.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상인에 대한 1.5%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별적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36.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

37. 리볼빙 대출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리볼빙 대책에 따라 리볼빙 이용자들이 금융소외자 내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제 방안을 강구할 것

38.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취 거부 등 불법행위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국세청에서 불법가맹점으로 판단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불법가맹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39.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무분별한 취득방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최소화를 위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40. 상호저축은행의 공시지연 및 검사결과 발표 지연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1.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중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조치할 것

42. 금융지주회사가 자은행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43. 산업은행 민영화 지연으로 정책금융공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44. 금융회사 부실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을 위해 부실관련자 범위 확대, 자료 요구 대상기관 확대, 이해관계자 부실책임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5. 퇴직연금 및 펀드 판매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46. 금융회사들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47. 대형 시중은행 및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

48.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외상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하청업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책을 마련할 것

49.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50.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허용과 관련한 해외위탁 허용범위, 개인정보보호, 정보이전 허용에 따른 기술설비 위치, 감독권 확보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1. 지역금융 역외유출 문제완화 등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52.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53.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연체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연체자들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54. 통일부와 협의하여 남북경협기업의 피해실태와 대출상환 연장 등 지원수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55. 대출모집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속적인 점검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56. 금융위원회의 과다한 파견인력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57.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정부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8. 2012년 3월「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적정하게 정비되지 않은 원인과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할 것

59.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금융감독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60.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 업무가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 파견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61.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에 파견검사의 적정 인원과 직제상 보직 없는 파견검사가 중간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

62. 금융기관 제재권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중복·혼란을 해소하고 제재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63. 신보·기보의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방안을 강구할 것

64.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감사 임명 및 임원의 특정지역 편중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65. 특정 상위대학에 편중된 국책은행 신입사원 채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대학출신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66.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대기업 여신 등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검토할 것

67.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은행에 대하여 추가로 출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8. 개인 금융정보요구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 2012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시중은행 대출금 용도 분석 결과 등을 검토하여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다 현실적인 가계부채 문제에 종합적인 대책 및 Contingency Plan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동향과 시스템 리스크를 상시점검하고 분석·평가중 * 가계부채 미시분석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 전담팀'운영('12.11월) □ 저소득층, 고령층, 하우스푸어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다각적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추진 * 국민행복기금 설립 및 운영(13.4월~) *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마련(13.4.1일) *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도입(13.6.1일)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자율협약 체결(13.5.24일) □ 상황악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컨틴전시 플랜은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수시 수정·보완 **<향후 추진계획>** □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동향을 지속 점검 □ 가계소득 확충, 복지지원 등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제고, 가계부채 리스크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추가 대응책* 강구 * 주택연금 확대, 베이비붐세대 은퇴 대응, 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13.11월까지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 변동금리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대부분인 가계대출 구조를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자금 조달시장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이중상환청권부채권의 발행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13.2월) 및 법사위 심의중 **<향후 추진계획>** □ 법률 통과와 함께 하위 규정 조속 마련 및 시행 준비
3.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체조정 및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조치 등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금융권 자체적인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13.4.1일) 및 은행권 자율협약 체결('13.5.24일) * 지원내용 : 장기분할상환, 고정금리대출 전환 등 *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실적(월평균, 천억원) : ('13.1~5월) 8.9 → ('13.6~8월) 9.6 □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보대출 채무조정(프리/개인워크아웃)을 활성화하고자 채무조정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13.6.10일) * 지원대상 : 총채무 5억원 이하 → 15억원 이하 * 채무조정 요건 : 채권자 2/3이상 동의→ 1/2 초과 동의 □ 하우스푸어 채무조정시 LTV예외를 인정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13.5.24일) **<향후 추진계획>** □ 금융회사의 자체 프리워크아웃 실적 등을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강화토록 독려 ○ 필요시 추가 제도 개선 검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 단기지표금리로서 유효성이 저하된 CD 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 금리를 조속히 도입할 것	**<처리결과>** □ 관계기관 합동으로 CD금리 등 단기 지표금리 개선방안 기 마련('12.8.22일) ○ CD금리를 대신할 수 있는 지표금리로 단기코픽스 신규도입('12.12월 최초공시) ○ CD발행시장 정상화,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등 추진 **<향후 추진계획>** □ 현재 관계기관간 단기자금시장 개편 TF를 운영하고 있는바, 단기지표금리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5. 금융권의 신입공채 관련 입사지원서에 개인역량과 무관한 재산상황, 가족 최종학력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금감원을 통해 금융투자업자 및 유관 기관에 시정 지도 완료('13.3.7)
6. 새희망홀씨대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수시 점검 실시 ○ '12년말 기준 저신용층(신용등급 7등급 이하)·저소득층(연소득 2천만원 이하) 대출비율 74% 유지 **<향후 추진계획>** □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조건을 통일하여 저신용층 등 금융취약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지원 확대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민간복지사업자의 미소금융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를 전면 재선정하는 한편, 민간복지사업사의 미소금융 관련 과도한 대출이자율을 인하하도록 할 것	**<처리결과>** □ 미소금융중앙재단을 통해 복지사업자 및 복지이용자에 대한 실질검사 강화 ○ 기존 복지사업자에 대한 감독규정 제정, 검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운영하여 복지사업 이용자 현장방문 및 전수조사 등 시행 ○ 기존 복지사업자의 약정이행 여부를 사업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차년도 지원금 배정에 반영
8. 미소금융 대출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신용정보에 반영하여 제도권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소금융 전환대출과 관련하여 이미 연체가 발생한 고금리대출 대학생들에 대하여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미소금융 성실상환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의 개인신용평가시 가점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13.3월) ○ 대출정보·연체정보 등 부정적 요소는 현재와 같이 집중하지 않도록 유지 ○ 미소금융 성실상환시 신용등급이 개선되어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 가능성 제고 기대 □ 과거 연체가 있었더라도 현재 연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생 고금리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旣 조치 함 **<향후 추진계획>** □ 가점부여 모형 개발 및 테스트를 거쳐 '13년 하반기 중 미소금융 성실상환 정보를 신용평가시 가점으로 반영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햇살론이 보증방식의 문제로 부실의 개연성이 높고 금융당국에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햇살론 보증비율을 서민금융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정상화 하는 한편, 햇살론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13.9월)
10.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2010년 이후 변동 없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바꿔드림론 금리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바꿔드림론 금리 인하 요구에 대응하여 운영을 주관하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2년 11월 금리를 0.5%p 인하(평균 금리 10.5% → 10%) □ 서민층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13.4월~9월)
11. 금융IT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금융회사 IT보안사고 방지를 위해서 IT 인력 및 예산 일정수준 확보를 권고* * 금융회사 IT보호업무 모범규준 마련('12.10월) □ 금융IT 보안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행 ('12.7월 국회제출, '13.5월 개정) * 전자금융 기반시설의 취약점에 대한 주기적 점검 의무화, CEO책임하에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안전성 확보 불이행시 제재 근거 신설 등 □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마련('13.7월)하여 추진중 * 금융전산 망분리, 제3센터 구축, CISO의 독립성 강화 **<향후 추진계획>** □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2.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여 조치할 것	**<처리결과>** □ 외환은행이 출연 계획을 철회('12.12월)
13. 2012년 2월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기로 한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노조 간의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	**<향후 추진계획>** □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노조 간의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
14. 은행의 담보물 자체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의 담보평가에 관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업계와 금융업계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 관계기관 및 전문가로 T/F를 구성('12.8월)하고 연구용역 추진중(~'13.12월/연장)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 및 금융이용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 추진
15. 명확한 기준 없이 변동금리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중('13.9월) **<향후 추진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여부 등을 검토하겠음
16. 은행의 부당한 가산금리 부과에 대한 개선 및 부당취급 사례 적발시 제재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12년말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은행 내부통제 강화 □ '13.3월부터 가계·중소기업대출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신용등급별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 실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금리결정체계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
17. 신보·기보 보증부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와 관련하여 약관을 조속히 개정할 것	**<처리결과>** □ 신·기보와 은행간 신용보증 약관 개정 완료('12.11월) ○ 보증채무이행에서 제외하는 "신용가산이자율"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보증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이라도 신용을 이유로 가산금리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 * (기존) "부도시 손실률"을 반영하여 가산한 이자율 → (개선) "채무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가산한 이자율
18. 외국자본의 먹튀논란과 관련한 고배당 등에 대한 제도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향후 추진계획>** □ 과도한 배당 등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
19. 은행들의 마이너스통장 한도미사용 수수료 부과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가계대출 한도미사용수수료 부과 현황 파악('12.10월) □ 가계대출에 대한 한도미사용 수수료 자율적 폐지('12. 12월) * 한도대출의 경우 미사용 부분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등 전면적 폐지의 경우 은행건전성에 악영향이 우려 · 기업대출의 경우 현행 유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가계대출에 대한 한도미사용 수수료 자율적 폐지('12. 12월) * 한도대출의 경우 미사용 부분만큼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등 전면적 폐지의 경우 은행건전성에 악영향이 우려 · 기업대출의 경우 현행 유지
20. 은행의 꺾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꺾기 관행 근절방안 발표('13.10월) ○ 꺾기 규제근거 강화 및 보험·펀드에 대한 꺾기 규제 강화 **<향후 추진계획>** □ 꺾기 관행 근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21. 신한은행 라응찬 전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하여 재점검할 것	**<처리결과>** □ 추가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검사 실시('13. 2월~4월 금감원 검사) □ 검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추가 제재 ○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으로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37.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22.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 직전 대주주 가족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분처분 행위에 대하여 조사 후 조치하도록 할 것	**<처리결과>** □ 금융감독원 조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23. CP발행정보 원스탑조회시스템과 관련하여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은행발행 CP 정보도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은행연합회의 CP 발행정보 공유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진행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법률 이슈 검토이후 통합관리방안 강구
24. 기업의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감리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시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CEO의 재무제표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개정('13.3) * 대규모 회계분식기업에 대한 조치 강화, CEO에 대해 검찰고발·통보시에도 과징금 병과조치 등 □ 상반기중 외감법 일부개정안 국회제출 ('13.4.30) *1 회계분식 조치대상 확대 : (현행) 등기임원 → (개정)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 포함 *2 대표이사 등이 분식회계 관여시, 상장법인 임원취임 제한조치 신설
25.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조세회피지역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견제시스템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관계기관(금융위, 기재부, 한은, 금감원)은 '10.6월부터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중 * 선물환포지션 제도 도입, 외화대출 관리 강화,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등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을 지속 견지할 계획 ○ 다만, 이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개선할 계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6. 소액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공매도 포지션 공시제도를 포함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 **<향후 추진계획>** □ 금년 하반기중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27. 미수령주식의 주인 찾아주기를 위해 명의개서대행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캠페인 전개와 주민등록 전산자료 활용 등 범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예탁결제원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 * ’12년 실적: 1,958명, 20,197천주(약 302억원) **<향후 추진계획>** □ 안전행정부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전산자료를 전달받아서 상속주주에 대한 미수령 주식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으로 진행(예정)
28. 한국기업데이타의 크래탑 신용정보 상품 강매로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한국기업데이타(KED)는 ’11.9월부터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 □ 평가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 노력 ○ 전차 등급대비 등급조정 제한, 등급 조정 사유의 명확화, 평정회의 제도 강화(이상 ’11.9월 시행), 평가의 전문성 및 윤리성 강화(’11.10월 시행), 평가모형의 개선(’12.1월 시행)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평가와 영업의 분리 조치 ○ 평가일 전·후 일정기간 동안 영업 금지 ('11.10월 시행)
29. 해외 PEF와 달리 국내 PEF 배당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에 대한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국내외 PEF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가 동일한 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특법('13.1월) 및 동법 시행령('13.2월) 개정
30. 갱신형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료 증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마련 ○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단독상품 출시 ○ 자기부담금 20% 상품 출시하여 합리적 보장·보험료 조합 제시 ○ 보험료 과다인상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적정성 심사, 최대 인상한도 공시 등 **<향후 추진계획>** □ 불필요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지급보험금 관리체계 강화 * 비급여 의료비 확인장치 마련 및 비급여 의료비 청구서식 표준화 추진(지속추진)
31. 생명보험회사의 낮은 보험계약 유지율과 해약환급율 및 고배당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낮은 유지율과 해약환급률의 한 원인인 현행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부과 개선*방안 마련 * 계약체결비용의 분급비율 확대(30%→50%), 방카 및 온라인 채널은 계약체결비용 인하(70%→50%) ○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 확대 및 계약 해지시 환급률 제고 가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3.9.17일 예고)
32. ING생명의 출자회사에 대한 계속되는 컨설팅 명목의 자금송금 및 과도한 신계약 시책으로 인한 시장마찰 및 부실계약 발생 우려를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금감원과 ING생명간 MOU* ('11.4.20)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2013년 금감원 검사계획에 반영 * ING생명이 대주주로부터 받는 경영자문 등 용역비용의 지급 기준 및 절차 마련 **<향후 추진계획>** □ 현재진행중('13.8월~)인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과정에서 지적내용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예정
33. 휴대폰보험 민원해소를 위하여 불완전판매 해소와 상품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개선방안(단종보험대리점도입) 마련('12.12) ○ 휴대폰보험 등 물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보험판매 자격(단종보험대리점) 부여 및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필요 **<향후 추진계획>**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입법예고 : '13.4/4분기 예정
34. 신용카드 신가맹점수수료의 원가내역에 대손비용 및 광고선전비 등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재검토할 것	**<처리결과>** □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및 삼일PwC에 연구용역을 진행 ('12.1~3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회계법인인 삼일 PwC는 카드사의 결제 서비스 제공 비용을 분석 □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맹점수수료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12.3월) □ 전문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학계, 가맹점단체, 카드사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 실시 ('12.4월)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소상공인연합회, 한국금융학회 등 각 계에서 의견 개진 □ 개정 여전법의 취지, 연구용역 및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 TF*를 구성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마련 * 금감원, 여전협회, 카드사 등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진행 (~'12.9월) ○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 완료 ('12.12.22일 시행)
35.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상인에 대한 1.5%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별적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현행 여전법 체계로는 가맹점에 해당되지 않는 온라인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가 별도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기 곤란 *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대표가맹점(G마켓, 옥션 등)만 수수료율이 적용되며, 대표가맹점의 하위 온라인 가맹점은 개별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PG업자와 계약한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카드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여전법 개정안이 발의(길정우, '12.12월)되어 있으므로, 법안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
36.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그동안 체크카드 수수료 합리화* 조치('11.5월) 및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등을 통해 가맹점수수료 부담 경감 추진 * 은행계좌 이용 수수료 인하(0.5%→0.2%) 체크카드 수수료: 2.0~2.5%(우대 1.6~1.8%) → '11.3월부터 1.5~1.7%(우대 1%) ** ('12) 신용 20%, 체크 25% →('13) 신용 20%, 체크 30% **<향후 추진계획>** □ 카드 결제처리 비용인 VAN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노력 * 현재 카드업계 등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 중
37. 리볼빙 대출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리볼빙 대책에 따라 리볼빙 이용자들이 금융소외자 내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고위험 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고정→요주의)하고, 저신용자(개인신용 7등급이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도록 '신용카드 발급·이용한도 제한' 조치를 마련·시행('12.10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리스크 강화에 따라 금융소외자, 신용불량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 정책으로 보완
38.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 수취 거부 등 불법행위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국세청에서 불법가맹점으로 판단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불법가맹점에 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처리결과>** □ 금감원 및 여전협회內 「신용카드 불법가맹점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가맹점 정보는 국세청에 통보 중 □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으로 파악된 불법가맹점 정보 제공은 곤란하다는 입장 **<향후 추진계획>** □ 카드 수취 거부 등 불법 가맹점에 대한 제재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여전협회의 불법가맹점 관리시스템을 보완 * 전산개발 및 홈페이지 신고 시스템 개선 및 소비자보호센터 신설
39.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무분별한 취득방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최소화를 위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처리결과>** □ 비업무용 부동산의 무분별한 취득방지와 보유 최소화를 위해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 평가, 처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3.7월) **<향후 추진계획>** □ 동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0. 상호저축은행의 공시지연 및 검사결과 발표 지연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증가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결산공시 주기단축 및 지연·허위공시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 결산공시 주기단축 : 반기 → 분기 ('11.11월 감독규정 개정 및 시행) ** 과태료 상향조정 : 5백만원→ 5천만원 ('13.7.2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
41.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중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진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점검하고 조치할 것	**<처리결과>** □ 예보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MOU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되 ○ 일상경영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의 경영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 □ 아울러 금융기관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MOU 목표 부여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음 * MOU목표의 상한설정, MOU목표 산정방식 개선, 분기별 목표의 경우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수립 등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도 합리적인 MOU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자율성 보장을 위한 금융기관 요구를 적극 검토할 예정
42. 금융지주회사가 자은행의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향후 추진계획>** □ 금융지주회사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 감독하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현재 TF를 통해 업계, 학계 등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지주사-자회사간 역할 명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중(11月발표예정)
43. 산업은행 민영화 지연으로 정책금융공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영업자산의 지속적인 확충과 조달비용 절감*에 따른 적정 영업마진 확보 및 구조조정 주식 매각**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 추진 * 평균조달비용(%) : 4.20(10년) → 4.07(11년) → 3.80(12년) → 3.60(13.6월) ** '12년 SK하이닉스(억원) : 매각대금 1,782, 매각이익 1,082 '13년 SK하이닉스(억원) : 매각대금 2,200, 매각이익 1,576 ○ 이에 따라 순이자손실이 지속적으로 감소 * 6,820억원(10년) → 5,360억원(11년) → 4,640억원(12년) → 2,405억원(13.6월) **<향후 추진계획>** □ '13.8.27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 발표로 산은-정금공 통합이 결정되어 정금공의 구조적 손실 누적문제 종결 ○ 통합산은에 대해서도 건전성 관리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적정 이익구조가 유지되도록 하겠음
44. 금융회사 부실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을 위해 부실관련자 범위 확대, 자료요구 대상기관 확대, 이해관계자 부실책임 조사 불응 시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부실책임조사 실효성 강화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12.10월) ○ 예보법상 자료제공 요구 대상기관에 법원행정처와 세무관서의 장을 명시 ○ 부실책임조사에 불응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실관련자 수준으로 상향 조정 (200만원→500만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45. 퇴직연금 및 펀드 판매 계열사 몰아주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간접규제를 도입(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12.12월) 하였고, 업계 자율의 계열사간 거래 완화* 유도(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3.4.23) * 운용·자산관리 계약기준 계열사 적립금 비율제한 (50%) 등 □ 펀드 판매 등 계열사 집중에 따른 폐해 및 투자자보호 우려가 큰 분야에 대해 직접 비율규제(50%)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 완료 ('13.4.23) **<향후 추진계획>** □ 이행실태 지속 점검
46. 금융회사들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체계 구축을 위해 보험업권 사회공헌실적 비교공시 실시 * 2012회계연도 3분기(10~12월)부터 보험사별 사회공헌 활동 실적을 경영공시대상에 포함 **<향후 추진계획>** □ 금융권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실적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 (예) 사회공헌실적 비교공시 및 경영실태평가 반영을 다른 업권까지 확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7. 대형 시중은행 및 금융위원회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것	**<처리결과>** □ 중소기업의 원활한 실물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 '13년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계획(106.4조원)보다 확대하여 총 112.2조원* 지원할 예정 * '13.8월말까지 81.7조원 공급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가능성에 대비,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상황을 면밀히 지도·점검 예정
48.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외상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하여 하청업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신보의 매출채권보험 지원 확대*를 통해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과 관련한 하청업체의 부담을 완화 * ('12년 실적) 6.9조원 → ('13.9말 실적) 9.4조원 ○ 또한, 현재 매출채권보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건설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13.4월) **<향후 추진계획>** □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 체계 개선 등 하청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9.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는 이미 대폭 완화된 상황 ○ 앞으로도 해외진출 금융기관의 건의·애로사항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음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1 ~'13)에 따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자본시장 고도화 등을 적극 추진 중
50.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허용과 관련한 해외위탁 허용범위, 개인정보보호, 정보이전 허용에 따른 기술설비 위치, 감독권 확보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민간 전문가 TF 및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금융정보처리의 해외 위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금융위 고시)을 제정(6.25~) * ① 국외 위탁시 본·지점 및 계열사에 한해 위탁을 허용, ② 위·수탁회사가 정보보호를 위한 모든 관련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토록 규정, ③ 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원장 등 주요 설비의 국외위탁 제한 등 **<향후 추진계획>** □ 제정된 규정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
51. 지역금융 역외유출 문제완화 등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운용 *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신보)·지방기술 유망기업(기보)에 대한 보증우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특별자금 2조원 조성(산은) 및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특별자금(정금공)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지역기반 금융 활성화 위해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 영업 강화*,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병행 추진 * 저축은행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13.9.17)
52.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 은행장, 지주사 회장 간담회 등을 통해 내부통제 기준 강화를 요구 □ 위기대응 관련 매뉴얼 정비 및 주요 징후 발생시 적극 대응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검사 시 점검을 강화할 예정
53.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연체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연체자들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신복위는 저신용(6등급이하), 저소득층(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금융피해자에 대해 저금리 대출('새희망힐링펀드') 제공 ('12.8월 출시) □ 카드사들은 자율적으로 카드론 대출 피해자에 대해 자체 감면기준에 따라 10~50% 원금감면 중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는 대출정보 활용을 일정기간 유예하여 개인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용회복방안」 (전자금융팀 '12.7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4. 통일부와 협의하여 남북경협기업의 피해실태와 대출상환 연장 등 지원 수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통일부를 중심으로 남북경협기업의 경영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점검 중 **<향후 추진계획>** □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성·형평성 등에 대해 지속 검토
55. 대출모집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속적인 점검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대출모집인의 등록 및 판매행위 관련 제반 법적의무가 부과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국회제출('12.7월) □ 중개수수료 상한(5%)을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완료('13.6월 시행) □ 모집인 등록여부 조회시스템 구축 등 불건전한 대출모집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12.7월) **<향후 추진계획>** □ 대출모집 운영실태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을 통해, 불건전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
56. 금융위원회의 과다한 파견인력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현재 파견 규모를 유지하되, 직제개정을 통해 신설된 부서를 제외한 기존 부서의 신규직위에 대한 파견은 허용하지 않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직무파견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민간전문가의 업무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
57.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정부 민원만족도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민원만족도 제고 노력 및 개선방안 마련 ○ 민원처리 십계명 제정 및 교육 실시('12.12월),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13.1월) 등 **<향후 추진계획>** □ 민원만족도 평가결과 개선방안을 시행 ○ 처리기한 준수여부, 불만족 민원에 대한 추가답변 등 민원관련 주요사항 처리현황을 매월 부서별로 평가·배포
58. 2012년 3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적정하게 정비되지 않은 원인과 향후 처리계획을 보고할 것	**<향후 추진계획>** □ '12.3월 법 개정시 38조(검사대상기관)의 각호 호수가 변경되어 시행령도 이에 따라 호수를 정비할 필요 ○ 향후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작업시 일괄정비할 계획
59.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금융감독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금감원은 감독·조사업무 등을 위해 금융위를 통한 FIU정보 활용* 가능 * 근거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7 * 금감원은 금융정보의 직접 열람이 가능(실명법 §4① 4.6.)하여 FIU 정보 활용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측면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FIU는 금융감독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으며, 금감원이 필요한 경우 FIU에 정보제공을 적극 요구토록 조치
60.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 업무가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 파견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심사분석 인력 파견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도록 법집행기관*에 공문요청('12.12.21.) *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향후 추진계획>** □ FIU내 법집행기관 파견인력 비중의 단계적 감축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
61.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에 파견검사의 적정 인원과 직제상 보직 없는 파견검사가 중간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 FIU 업무처리지침 개정('13.10월) ○ 정보분석심의회 설치 등 개정 법률의 취지를 감안하여 내부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 파견검사의 중간결재권 폐지
62. 금융기관 제재권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중복·혼란을 해소하고 제재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중 3명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선임 **<향후 추진계획>** □ 제재양정기준의 표준화, 공개 등을 통해 제재의 투명성·예측가능성 제고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3. 신보·기보의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 공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현재 신·기보의 구상권 행사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기보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 신·기보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계류중 ○ 자료제공의 범위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 국세청, 안전행정부와 협의 진행 중
64.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의 낙하산 감사 임명 및 임원의 특정지역 편중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를 제청하거나 선임할 예정이며, ○ 출신지역, 여성비율 등을 감안한 균형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65. 특정 상위대학에 편중된 국책은행 신입사원 채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대학출신의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	**<처리결과>** □ 우수한 지방인재 채용을 위해 산은·기은 등 국책은행은 지방대 할당제, 가점부여 등 지방인재 우대채용정책을 지속 시행중 ○ 이에 따라 국책은행의 지방대학 출신 신규채용비율*이 점차 증가추세 * 산은 : ('09)6.4% ('10)6.0% ('11)11.2% ('12)50.7% 기은 : ('09)24.9% ('10)29.1% ('11)30.6% ('12)27.4% **<향후 추진계획>** □ 신규채용시 지방대 할당제 실시 등으로 지방인재 채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6.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대기업 여신 등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감사를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여신,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에 관한 감사원 감사 수감 완료 * 대기업 지원 관련 감사 : '12.11월 감사결과 통보 * 해외자원개발 관련 감사 : '13. 2월 감사결과 통보 **<향후 추진계획>** □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책금융공사의 대기업 여신 및 투자금융 업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67.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은행에 대하여 추가로 출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을 위해 '13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800억원 출자 반영 **<향후 추진계획>** □ '14년도에도 설비투자펀드 등 중소기업 관련 지원확대 수요를 감안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출자예산 추가 반영 예정
68. 개인 금융정보요구에 대한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금융거래시 개인정보 수집실태 전수조사('12.6월)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개선방안 마련('12.11월) □ 금융분야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마련('13.7월)

Ⅴ. 2013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 및 조치결과

○ 감사원은 '13년 금융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재무감사('13.03.18~03.29, 총10일)』를 실시하였음

○ 또한, 감사원은 '12년 실시한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12.08.16~10.12, 총 30일)』에 대한 감사결과를 '13.03.04.에,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실태('12.11.05~12.14, 총 25일)』에 대한 감사결과를 '13.05.03. 통보하였음

<금융위원회 재무감사('13.03.18~03.29)>

지적사항	조치결과
□ 국가채권 보전 및 회수조치 부적정(통보) ○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조치를 실시할 것 ○ 독촉기한이 지나도록 납부되지 아니한 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보고 부적정(주의) ○ 성과지표의 중복사용, 구체성 없는 성과지표의 사용 및 합리성 없이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도록 할 것 ○ 적절한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성과 실적치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	완료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12.08.16~10.12)>

지적사항	조치결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 **2011년도 결산 및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업무처리 부적정(통보)** ○ 한국산업은행의 회계감사인이 적절하게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는지 등을 감리하여 적정한 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부적정(통보)** ○ 5개 금융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변별력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과거 추세치 등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중
□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부적정(주의)** ○ 5개 금융공공기관의 경영성과 실적 측정시 단순 회계제도 변경이나 과다 계상된 당기 순이익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말 것	완료
□ **수출지원 금융기관간 업무중복 논란 및 비효율 발생(주의)** ○ 수출지원 금융기관들과의 사이에 해외자원 개발사업 지원과 관련된 과열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계획 승인업무를 철저히 할 것	완료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복 조정 필요(통보)** ○ 한국산업은행의 업무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양 기관 간 경쟁으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중

지적사항	조치결과
□ **상시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통보)** ○ 한국산업은행에서 상시 명예퇴직제도를 폐지하여 명예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을 중심으로〉	
□ **상호저축은행 부실 PF사업장(채권) 매입지원 제도 운용 부적정(통보)**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지원한 상호저축은행 부실 PF대출채권에 대한 신속한 정리대책을 마련하고, 금융회사 부실채권 매입지원 대책 수립시 매입조건과 연착륙 지원방식 등을 개선할 것	조치중
□ **상호저축은행 부동산 PF대출 대책 집행 및 감독 미흡(주의)** ○ 산하기관 업무 집행 내용의 적정성과 기관 간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예금보험기금 부담 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완료
□ **상호저축은행 대출채권 건전성 감독기준 불합리(통보)** ○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대출채권의 담보 자산 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채권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중

지적사항	조치결과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 상장법인 부도발생 사실 통보의무 미이행 (통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은행이 주권 등 상장법인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한국거래소에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실태 I ('12.11.05~12.14)>

지적사항	조치결과
□ 우리금융지주 임직원의 우리투자증권 겸직 승인 부적정 (통보) ○ 우리금융지주 주식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하여 우리투자증권 경영지원총괄(부사장) 직위 겸직승인을 취소하거나 겸직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료

□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3년도 9월말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13.02.20 ~ 02.21)에 대한 특정감사와 「한국자본시장연구원」(’13.05.23 ~ 06.07) 및 「보험연구원」(’13.07.15 ~ 07.23)에 대한 종합감사 등 총 3건의 산하기관 감사를 실시

* 보험연구원 감사의 경우 10월중 감사결과 공개예정

○ 이후 하반기 중 「금융연수원」 및 「금융결제원」에 대한 종합감사와 「금융위 자체감사(12월)」등 3건의 감사를 실시할 예정

<한국공인회계사회(’13.02.20~02.21)>

지적사항	조치결과
□ 공인회계사 징계처리 업무 부적정(경고) ○ 감사인의 공인회계사법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조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 제척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조치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완료
□ 위탁 감리 업무 소홀(주의) ○ 증선위 등으로부터 감사인의 부실감사 혐의 등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동 감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감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 위탁감리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완료

지적사항	조치결과
□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한 미준수(주의)** ○ 감사인에 대한 조사·징계 등 조치의결 요청시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한을 철저히 준수할 것	완료
□ **공인회계사 징계 제척기한 처리 업무 미흡(주의)** ○ 공인회계사회(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징계제척기간 이내에 징계 등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완료
□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업무처리 지연(통보)** ○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발생사실 확인시 지체없이 등록을 취소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 할 것	완료
□ **증선위 지시 및 명령에 따른 직권재심 규정 미비(통보)** ○ 공인회계사회는 증선위의 지시 또는 명령이 있는 경우 위탁감리위원회의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개정 할 것	완료

<한국자본시장연구원('13.05.23~06.07)>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직원 승진 및 채용시 필요절차 미이행 (기관경고)** ○ 직원 승진이나 채용시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조치기한 미도래
□ **직원 채용 관련 채용심사절차 등 규정 미비 (개선)** ○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관리를 위해 직종(또는 직급)별로 채용심사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시행할 필요	조치기한 미도래
□ **특별휴직자 관리 부적정(주의)** ○ 특별휴직 승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된 내용에 따라 특별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휴직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조치기한 미도래
□ **국외출장계획 수립 및 출장보고서 작성 미흡 (기관주의)** ○ 국외출장계획 수립시 일정을 명확히 기재하고 복귀후 출장보고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출장보고서는 출장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할 것	조치기한 미도래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직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관리 미흡 (기관주의)** ○ 투명한 겸직관리를 위하여 겸직허가신청서 등 겸직허가와 관련한 증빙서류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조치기한 미도래
□ **초빙연구위원제도 운영 개선 필요(개선)** ○ 초빙연구위원의 임용기간 원칙을 준수하고 불가피하게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합리적으로 제한된 기간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조치기한 미도래
□ **성과연봉 및 연구장려금 지급 기준 미비(개선)** ○ 성과급여체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성과연봉 및 연구장려금 지급을 위한 평가 등급별 기준금액, 등급별 배분비율 등을 마련·시행할 필요	조치기한 미도래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필요(개선)** ○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위임전결규정과 회계규정 간 상충되는 규정 개선 필요	조치기한 미도래

지적사항	조치결과
□ **연구장려금 회계처리 부적정(기관주의)** ○ 수익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을 수익사업특별회계에 반영할 것	조치기한 미도래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등 회계처리 관행 개선 필요(권고)** ○ 추정된 수익사업 수익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반영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및 이의 일반회계 전입 등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할 필요	조치기한 미도래
□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 마련 필요(개선)** ○ 원장 선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조치기한 미도래

Ⅵ.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재정경제부 (금융, 15과)		금융감독위원회 (12과)		금융위원회 (24과)
금융정책국(1국 1심의관 7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1국 2과), 금융정보분석원(1원 6과)	+	1관 1실 2국 12과	⇒	본부(1관 3국 1대변인 1정책관 18과) 소속기관(금융정보분석원, 1원 6과)

○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3 금융위원회 조직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1정책관 18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업무보좌, 실무지원을 위해 사무국 설치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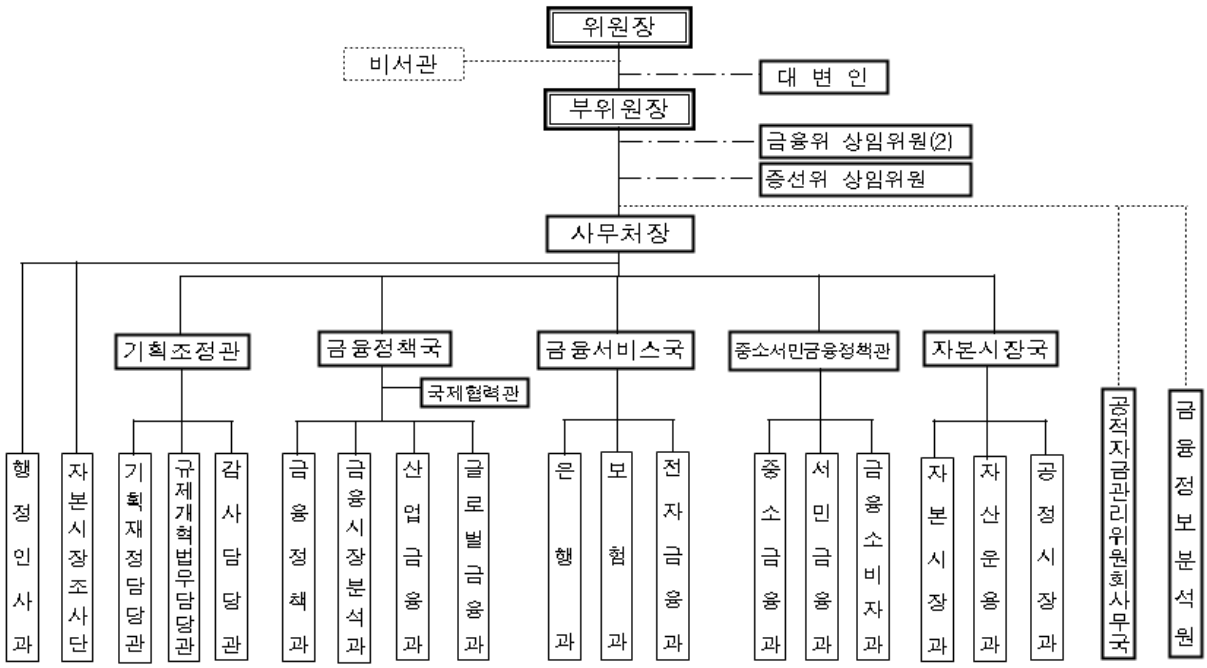

4 인원 및 예산

□ **정원 :** 251명('13.9월 현재)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기능직	계
합 계	2	228	5	8	8	251
본부	2	170	5	-	8	185
금융정보분석원	-	47	-	8	-	55
공자위 사무국	-	11	-	-	-	11

□ **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148억원, 세출예산 4,204억원('13년도)

Ⅶ.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현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은 금감원,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4개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산하기관은 총 9개사

가. 공공기관이 아닌 산하기관

1 금융감독원 :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

- ○ 금융회사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
-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에 의한 **금융회사 감독,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및 회계감리**
- ○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2 **산은금융지주는** 금융서비스 역량강화 및 원활한 민영화 추진 등 업무 수행

3 **산업은행·기업은행**은 중소기업자 등 산업자금공급을 위해 대출, 어음할인, 외화차입 등의 업무 수행

* 금감원은 '09.1월, 산은금융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12.1월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됨(기재부)

나. 공공기관인 산하기관

1 『**공기업**』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없음**

2 『**준정부기관**』에 해당되는 금융위 소관의 공공기관은 **7개사**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 미약 기업이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채무보증 등의 업무 수행

○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또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 등의 업무 수행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등의 업무 수행

○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결제 등의 업무 수행

3 『**기타공공기관**』은 정책금융공사, 준정부기관의 자회사가 이에 해당되며, 금융위 소관은 **2개사**

○ **정책금융공사**는 중소기업의 육성 등 국민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공급·관리 등의 업무 수행

○ **코스콤**은 국내외 증권선물시장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용 등의 업무 수행

* '공공기관'은 설립근거, 재정지원(출자·출연·보조), 권한·기능위탁 등의 여부에 따라 지정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분류	지정요건	금융위 소관 공공기관	
공기업	자체수입 50% 이상 직원 50인 이상	**0**	-
준정부기관	자체수입 50% 미만 직원 50인 이상	**7**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공기관	**2**	▪ 정책금융공사 ▪ 코스콤
소계		**9**	

Ⅷ. 2013년도 민원처리사항

□ 2013년도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일반 민원>

○ '13.1.1.~'13.9월말까지 일반민원 총 **4,043건**을 접수·처리

* '13.10.1.현재 처리기한 미도래 등으로 처리중인 건수는 78건임

< 유형별 접수·처리 현황 >

('13.9월말 기준)

구 분	진정·건의	법령질의	일반질의 및 기타	총 계
건 수	76건	533건	3,434건	4,043건

< 권역별 접수·처리 현황 >

('13.9월말 기준)

구분	금융정책	은행	증권 자산운용	보험	서민	여전	보증기금	기타	총계
건수 (비중)	863건 (21.3%)	134건 (3.3%)	249건 (6.1%)	113건 (2.8%)	1,506건 (37.2%)	145건 (3.6%)	514건 (12.7%)	519건 (12.8%)	4,043건 (100%)

<기타 민원>

○ '13.1.1.~'13.9월말까지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민원 총 495건을 접수·처리

* '13.10.1.현재 처리기한 미도래 등으로 처리중인 건수는 75건임

< 기타 민원 접수·처리 현황 >

('13.9월말 기준)

구 분	인허가		등록·신고		유권해석	총 계
	접수	상담신청	접수	상담신청		
건 수	27건	24건	49건	34건	361건	495건

Ⅸ.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1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법 률 명	분류	공포 일자	주 요 내 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13.3.22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공개되지 않은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13.3.22	신용카드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따른 연회비를 반환토록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13.4.5	금융투자상품 거래청산제도 등을 도입하고, 최근「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특례 조항을 정비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13.5.22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 신설 등
신용보증기금법	개정	'13.5.28	회생추진기업의 채무 감면시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감면하고, 구상채권 매각 및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개정	'13.5.28	회생추진기업의 채무 감면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채무도 함께 감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13.5.28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제도, 거래소 허가제 등 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원 보수에 대한 사업보고서 기재의무화, 불공정거래에 대한 벌금형의 하한선 마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13.7.30	주택연금 가입 연령요건 완화(부부 모두 만60세 → 부부 중 주택소유자 만60세)

법 률 명	분류	공포 일자	주 요 내 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13.8.13	거래정보의 명의인에게 제공사실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일, 사유, 기간 및 횟수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추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정기 국회에 보고토록 함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13.8.13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13.8.13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를 두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상품 판매시 예금자 보호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의무 및 상호저축은행상품의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장이 대주주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은행법	개정	'13.8.13	금산분리제도를 다시 강화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13.8.13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규정, 코넥스시장(KONEX) 상장법인의 반기·분기 보고서의 제출 특례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3.8.13	자금세탁행위 범위 및 국세청·관세청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요건을 확대, 특정금융거래정보에 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를 포함, 불법의심거래보고 보고 기준금액을 폐지함

2 시행령의 제정·개정·폐지

시 행 령 명	분류	공포 일자	주 요 내 용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13.3.23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11690호, '13.3.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4.5	증권신고와 관련 규제의 적용대상 증권에서 전자단기사채 등을 제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13.5.31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이내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노후생활자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의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추도록 하되, '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가입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6.11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적용대상 법인 및 대부중개수수료율 설정 등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13.6.11	상임 임원 선임 대상 조합의 요건과 상임 임원의 선임 요건 등을 정함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13.6.21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수준을 상향 조정하며,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심사요건을 강화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6.21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주권을 상장한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규제 및 합병 규제 등을 완화함

시 행 령 명	분류	공포 일자	주 요 내 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6.21	자기자본 및 매출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주권을 상장한 창업초기 중소기업 상장법인 및 주권을 상장하려는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선임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7.5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청산의무거래의 범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요건과 방법·절차,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을 정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13.7.8	사회복지법인·장학재단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13.7.8	사회복지법인·장학재단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은행법 시행령	개정	'13.7.8	사회복지법인·장학재단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 등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	'13.8.27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를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신용보증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30억원으로 정하되 그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시 행 령 명	분류	공포 일자	주 요 내 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8.2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요건, 다자간 매매체결회사의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범위 및 거래소 허가요건 등을 정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8.6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 등과 공모하여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등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13.8.9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간이 '13년 8월 12일 만료될 예정이나, 공적자금의 회수·관리를 위한 업무가 일부 남아있어 그 존속기간을 2014년 8월 12일까지 1년 연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13.9.17	자본시장조사단을 신설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13.9.17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및 반환기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은행법 시행령	개정	'13.9.9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없는 신탁업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제외한 신탁업과 투자자문업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정보교류차단 등의 규제를 합리화함

3 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법령명	분류	공포 일자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13.1.2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시행)의 개정에 맞춰 개정함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13.3.23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시행) 및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35호, 2013. 3. 23.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3.7.5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의 인가 및 예비인가의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의 보고사항 및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13.8.29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의 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13.9.17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685호, 2013. 8. 9. 공포·시행)가 재정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정원을 조정함

<붙임 2>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초안 수정중)

2014. 10.

금 융 위 원 회

목 차

1.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및 할부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카드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지원 및 창업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직불카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VAN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여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5. 신한은행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6. 외국계은행의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7.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대출 관련 전·현직 임직원의 불법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것

8.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에 관한 내용 및 후속처리절차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9. 보험금 부지급금 중 10만원 이하 소액도 소송없이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0.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상가 보험가입 시 국고 지원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 중소기업청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

11.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보험 광고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보험관련 현행 2년의 자살면책기간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2. 현행 손해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2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55세부터 연금수령을 개시할 경우 80세 이후 보장이 불가한 만큼 연금수령 기간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13.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으로 인해 전산산업, 기술개발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중립성 원칙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

14.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실효성 미흡 시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15. 신규 OTP 공동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16. 신협 리스크 대책과 관련하여 신협거래자는 주로 저신용등급자이므로 대손충당금 기준은 강화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7. 저축은행 인수대상자로 대부업체를 허용할지에 대하여 대부업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18. 대부업체의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대형 대부업체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강구할 것

19. 국민행복기금 관련 공적AMC로부터 이관받기로 한 사항들에 대하여 실제로 이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미이행되었다면 이관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20.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 관리 및 추심을 은행의 자회사인 추심업체에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은행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중 중도탈락자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22.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외의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23. 현재 민간 추심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행복기금 채권관리를 공적 추심기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4.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금융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5.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지속적으로 서민금융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6. 대출모집법인의 영업실태를 확인하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27. 동양 관련 투자자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고,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28.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29. 동양사태와 관련 확인된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

30. 동양그룹의 동양파이낸셜을 이용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31. 동양 등 최근 계열사가 많이 증가한 회사들이 위기를 겪는 경향이 있는점을 고려하여 순환출자 금지·출자총액제한 금지 등 금산분리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32. 대기업 중 제2금융권을 소유하고 동양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기업이 다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대주주 적격성심사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

33. 동양 관련 부실신용평가에 대한 검사·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34. 동양 관련 주채무계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5. 동양사태로 비우량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36.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CP발행 현황 등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37. CP 등의 편입이 많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영업관행을 개선할 것

38. 금융계열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39. 대기업이 계열 비상장 대부업체를 탈법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제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0. 계열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한 자금조달행위 등 내부거래정보에 대한 공시대상·범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1.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현장 검사·조사 시 인지사항에 대한 환류(feedback)가 이뤄지도록 유기적 연계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42.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3. 통합도산법상 기존경영인유지제도(DIP)가 부실경영에 악용될 여지 등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44. 금융상품의 위험 설명 및 투자자 고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5.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46. 독자신용등급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할 것

47.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전세수요의 자가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고, 주택자산 유동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금융 비전을 마련할 것

48. 전세가격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49. 정책금융의 시장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것

50. 정책금융체계 개편 등과 같은 정부의 주요 정책변경에 따른 법률 개정 시에는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51. 해외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52. 실효적인 금융중심지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53. 증권업계 등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 관련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

54.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거래소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

55. 증권업계의 업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장리스크 등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할 것

56. 공매도 관련 주가종목별 0.01% 초과시 보고하는 것과 관련 제도 정착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7. 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시장안정P-CBO)의 부실 위험에 대해서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것

58.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선박금융·해양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형 투자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59.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처간 이해관계가 다양한 만큼 국무조정실 갈등현안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0. 공정거래위원회와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다시 체결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61. 금융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2. 금융연구원 등 특정 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요 정책결정에 관련된 연구용역 보고서인 경우 정책 결정이 끝난 후에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63.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관련 조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64. 공제회의 자산운용 부문을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5.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에 대하여 회계시장 구조 및 유착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66. 초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 촉진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코넥스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67.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68. 증권회사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69. 경남은행·광주은행 매각기준과 관련하여 지배구조, 소유구조,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0.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취할 것

7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관련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72. 중소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73. 특례보증이 외형적 실적쌓기로 이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상시화가 필요한 특례보증은 일반보증 등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74. 중국계회사 고섬에 대한 조사 등과 관련해서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5.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한 우회투자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불법 차명거래 등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76.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금융투자업의 인허가 단위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7. 재형저축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금융권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및 가입유인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78.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79. 유암코가 자산관리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80. 금융기관 사외이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81. 자동차보험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013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및 할부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카드 부가서비스 임의축소 제한 및 변경 고지 강화 (감독규정 변경예고 완료, '14.7월) ○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카드 발급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유효기간동안 유지토록 유도 ○ 부가서비스 내용 변경시에는 3개월 전부터 서면,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 □ 할부기간 중 적용되는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카드대금 청구서를 통해 고지되도록 조치완료('13.12월) * 그간은 할부 납부금액 총액만 표시 → 할부원금과 할부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상세히 통보 **<향후 추진계획>** □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감독규정은 3분기 시행 추진
2. 카드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영업자 지원 및 창업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카드사 빅데이터를 활용, 창업 희망자 등에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13.9.23일 시행) * 매출정보를 지역·업종별로 가공하여 창업컨설팅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3. 직불카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불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활성화방안* 마련·추진중('13.9월~) * 체크카드 1일 이용한도 확대, 24시간 결제환경 구축, 은행·카드사간 계좌제휴 확대 등
4. VAN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여 신용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VAN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14.2.10, 김영주 의원)
5. 신한은행이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처리결과>** □ 제기된 사항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 '14.4월(금감원) **<향후 추진계획>** □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항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 등 후속 절차 진행예정
6. 외국계은행의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금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금융감독원에서 대출금리 관련 영업행위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 **<향후 추진계획>** □ 검사 결과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대출 관련 전·현직 임직원의 불법 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제기된 사항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 '13.10~11월/금감원 **<향후 추진계획>** □ 검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항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 등 후속 절차 진행중 * 관련 법령검토 등으로 인해 처리가 다소 지연
8.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에 관한 내용 및 후속처리절차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보험사기 적발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보험사기 조사·수사 연계체계를 강화* 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의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14.7월에 발표 * 보험사기 조사·수사 연계체계 법제화, 조사·협의 입증 수단 확충 등 **<향후 추진계획>** □ 동 대책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수사 연계체계 강화, 보험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의원입법안 국회 논의시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9. 보험금 부지급금 중 10만원 이하 소액도 소송없이 반환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임 ※ 보험금 부지급건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에 해당되는 건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님
10.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상가 보험 가입 시 국고 지원을 위한 예산안에 대해 중소기업청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	**<처리결과>** □ 중기청에 관련 예산안 반영 추진 시 금융위의 적극 협조 의사 전달 **<향후 추진계획>** □ 안전투자 활성화 등 범부처 회의 시 전통시장 정책성보험 도입 필요성 제기 ○ 향후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정책성보험 도입 관련 예산안을 반영·추진할 경우 기재부 설명 등 적극 지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1.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보험 광고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보험관련 현행 2년의 자살면책기간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보험상품 광고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원인에 상관없이'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10년) * 생·손보 협회 보험광고·선전 규정 개정 ('09.12월 개정, '10.1월 시행)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의 판단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예정 □ 자살면책기간 조정은 유족 보호방안 및 면책기간과 자살율간 객관적인 상관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함 ○ 현재로서는 위와 같은 전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중장기 검토 필요
12. 현행 손해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25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55세부터 연금수령을 개시할 경우 80세 이후 보장이 불가한 만큼 연금수령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생·손보사 등), 장기보험 매출 및 리스크 현황 분석 ○ 손보사 장기보험 비중이 전체 매출의 70%에 육박하여 이미 과도한 이자율차 리스크에 노출 ☞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기간 연장시 해당 리스크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중장기 검토 예정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13.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으로 인해 전산산업, 기술개발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술중립성 원칙을 고려하여 공인인증서 관련 정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5.20) ○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대책 발표(7.28) * 카드사가 온라인결제시 공인인증서 이외에 간편한 대체인증수단 제공(8월~) □ 특정기술 및 인증방법의 강요를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사위 통과, 7.8) **<향후 추진계획>** □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통과시 하위법령(시행령, 감독규정 등) 개정 추진(15년)
14.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실효성 미흡시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비대면으로 대출신청 및 예·적금 해지 시 추가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개정안 시행('14.7.29) □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부처의 종합적 대응 대책 마련을 지속 ○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13.12) * 메모리해킹 방지 프로그램 보완(은행권), 수취계좌 변조 의심거래시 본인인증 강화, 新입금계좌지정제 도입 추진, 해킹이용계좌 지급정지 지도 등 ○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후속조치」('14.8) * 대포통장 과다 발급 금융사 관리 강화, 지연이체제 도입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위한 홍보강화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신·변종 금융사기 종합대책 등의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15. 신규 OTP 공동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OTP운영위원회*에서 'OTP업체 추가절차' 규정 개정 완료('13.9월) * 금융회사가 주축이 되어 OTP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사결정하는 기구로서 금융보안연구원은 운영을 지원 ○ OTP운영위원회 표결방법 (종전) 재적위원 과반찬성 (개정) 과반참여 및 과반찬성 ○ OTP 업체 심사 부결시 재신청 절차 마련
16. 신협 리스크 대책과 관련하여 신협 거래자는 주로 저신용등급자이므로 대손충당금 기준은 강화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계획>** □ '14.2월 발표된「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에 따라 비은행권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중이며, ○ 상호금융권 건전성기준 분류 및 대손충당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17. 저축은행 인수대상자로 대부업체를 허용할지에 대하여 대부업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처리결과 및 계획>** □ '13.9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정책방향'을 발표하여 부실(우려)저축은행에 대한 대부업체 인수를 허용 * 인수주체를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로 한정, 대부업체 대부자산을 점진적으로 축소, 저축은행-계열대부업체간 연계영업행위 금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14.4월), 러시앤캐시('14.7월)의 가교저축은행 주식취득을 각각 승인 ○ 해당 대부업체가 제출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철저히 심사, 향후 주기적 점검예정 * 5년간 대부자산 40% 이상 감축, 계열대부업체와의 연계 영업 금지 등
18. 대부업체의 대기업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대형 대부업체 등의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대부업법 전부개정안 마련('14.2월 입법예고) ○ 대기업집단에 속한 대부업체 등은 금융위(금감원)에서 직접 관리·감독 ○ 대기업집단 및 금융회사 소유 대부업체의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향후 추진계획>** □ '14년 중 국회제출 추진
19. 국민행복기금 관련 공적 AMC로부터 이관받기로 한 사항들에 대하여 실제로 이관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미 이행되었다면 이관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처리결과>** □ 공적AMC 채무자도 국민행복기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상담창구도 일원화 **<향후 추진계획>** □ 장기간 운영 중인 공적 AMC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14.7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발표) (예) 국민행복기금과 통합 관리·운영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0.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 관리 및 추심을 은행의 자회사인 추심업체에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은행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위탁업무 체계 개편('13.11월) ○ 채무자 중심으로 위탁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 등 개선 ○ 채무조정 과정에서 과도한 추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지속 **<향후 추진계획>** □ 휴면예금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14.7월 입법예고) ○ 채무조정, 서민금융 상품 지원 등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서민금융 서비스의 원스톱 지원 등 추진
2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중 중도탈락자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채무조정 원금감면 폭을 확대*하여,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을 높임 * (기존) 30% → (국민행복기금) 30~50%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 □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 시행 * (예) 병환, 실직, 중증장애, 직업훈련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아져서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 ○ 개인회생·파산 연계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한 위한 공적 채무조정 연계('14.8.19. 보도자료 배포)
22.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외의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14.7월) *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상품 개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 ○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사적 채무조정 지원이 어려운 분에 대한 공적 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재기지원 강화('14.8.19) **<향후 추진계획>** □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상담·지원 창구 운영 ○ 신복위 지부(전국), 국민행복기금 지점(서울)에 창구를 마련·운영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휴면예금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14.7월 입법예고) ○ 채무조정, 서민금융 상품 지원 등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서민금융 서비스의 원스톱 지원 등 추진 ○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 법무부 주관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한 「통합도산법」 개정 추진 예정
23. 현재 민간 추심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행복기금 채권관리를 공적 추심기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위탁업무 체계 개편('13.11월) ○ 채무자 중심으로 위탁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 등 개선 ○ 채무조정 과정에서 과도한 추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지속 **<향후 추진계획>** □ 휴면예금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14.7월 입법예고) ○ 채무조정, 서민금융 상품 지원 등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서민금융 서비스의 원스톱 지원 등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4.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서민금융정책들이 실효성 있게 서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 서민상품별 건전성 강화방안 시행 ①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 인하 (95%→90%, '14.1.1) * 저축은행업권의 햇살론 임의출연금 부과 등을 통해 건전성 제고('13.10 MOU체결) ② (바꿔드림론) DTI(40%) 적용 확대 및 대출심사기준 강화('13.10월) ③ (미소금융) 복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및 창업전·후 교육과 컨설팅을 내실화하는 등 관계형 금융서비스 확대 **<향후 추진계획>** □ 동태적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한 상품 설계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14.7.16) 발표
25.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지속적으로 서민금융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서민금융지원 ○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취업·창업 연계 등 금융채무연체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 회수금 중 일부 활용 **<향후 추진계획>** □ 휴면예금법 전부개정안 국회 제출 추진 ('14.7월 입법예고) ○ 채무조정, 서민금융 상품 지원 등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한 서민금융 서비스의 원스톱 지원 등 추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26. 대출모집법인의 영업실태를 확인하고,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매분기별 대출모집인의 영업관련 현황*을 점검중(금감원) * 권역별 대출모집인 수, 모집실적, 수수료 등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개정('14.2.28)을 통해 불법유통 정보를 활용한 대출모집인에 대해 즉시 전속계약 해지 및 재등록을 제한(2년→5년, 사실상 금지) **<향후 추진계획>** □ 대출모집인의 금지행위 위반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출모집인 이력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중('14.9월 개통 예정) □ 체계적인 대출모집인 관리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12.7월 국회제출, 현재 법안소위 계류중)을 추진중 * 대출모집인의 등록의무 도입,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부여 등
27. 동양 관련 투자자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고,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동양그룹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旣 발표('13.11.21) ○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완 ○ 유사사례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감독, 시장규율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분기별로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상황 점검 * 이행점검회의('13.12.5, 사무처장), 제1차~3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13.12.27, '14.3.27, 6.26 부위원장)
28.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	**<처리결과>** □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13.11월)」,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14.2월)」 등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개선,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 동양증권의 계열사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특별검사 실시('13.10월~'14.7월) □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결정('14.7월) **<향후 추진계획>** □ 동양그룹 투자 관련 분쟁조정 지속 진행 □ 계열사증권 불완전판매 특별검사에 따른 제재 조치('14.하반기)
29. 동양사태와 관련 확인된 경영진 및 금융투자업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	**<처리결과>** □ 동양그룹 경영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 후,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14.1~2월) □ 동양증권의 계열사증권 불완전판매 관련 특별검사 실시('13.10월~'14.7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계열사증권 불완전판매 특별검사에 따른 제재 조치('14.하반기)
30. 동양그룹의 동양파이낸셜을 이용한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 추진(2.26일 입법예고) * (대기업 계열)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 (금융회사 계열) 전면 금지 □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에 대한 규제체계 개선방안 마련 등 정비 추진 **<향후 추진계획>** □ '14.4분기중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 □ '14년 말까지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 규제개선을 위해 입법예고 등 관련 법령 개정절차 추진 ※ 금융규제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일괄 개정을 추진할 예정
31. 동양 등 최근 계열사가 많이 증가한 회사들이 위기를 겪는 경향이 있는점을 고려하여 순환출자 금지·출자총액제한 금지 등 금산분리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처리결과>** □ 동양과 같이 시장성 차입금 증대를 통해 은행 관리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채무계열 확대 등 기업부실 관리 방안을 차질없이 마무리('14.3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금산분리 강화 등 금융분야 후속입법 추진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지분보유제한 강화(9%→4%)* *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완료('14.5월) ○ 재무구조가 부실한 대주주 등의 대주주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추진 **<향후 추진계획>** □ 국회 심의 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이 조기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
32. 대기업 중 제2금융권을 소유하고 동양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는 기업이 다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대주주 적격성심사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동양그룹 문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13.11.21)*」 마련 *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 대부업 등에 대한 규제 체계 정비 등 대주주 우회지원 가능성 차단 등 **<향후 추진계획>** □ 「동양그룹 문제 재발방지 종합대책」상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 □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국회 심의 중인 만큼, 동 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

<table>
<tr><th>시정·처리요구사항</th><th>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th></tr>
<tr><td>33. 동양 관련 부실신용평가에 대한 검사·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td><td><처리결과>
□ 금감원이 동양 관련 신용평가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완료(검사기간 : '13.11.26.~'14.1.29.) 하고 제재 등의 처분 절차가 진행 중

<향후 추진계획>
□ 금감원 현장 검사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사에 대한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 예정</td></tr>
<tr><td>34. 동양 관련 주채무계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td><td><처리결과>
□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을 하향조정하여 주채무계열 대상을 확대
○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의 0.1%에서 0.075% 이상으로 선정기준 조정
-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완료('14.2월)

<향후 추진계획>
□ 해당 사항 없음</td></tr>
<tr><td>35. 동양사태로 비우량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td><td><처리결과>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13.7.8)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유동성 공급
○ '14.3월 현재 총 5회에 걸쳐 1.46조원의 "시장안정 P-CBO" 발행
<실적>
(단위 : 억원)
<table><tr><th>2013년</th><th>2014년*</th><th>합계</th></tr><tr><td>12,616</td><td>1,941</td><td>14,557</td></tr></table>* '14.3.7일 발행 예정</td></tr>
</table>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하이일드펀드 투자자 세제지원('14.1월 조특세법 개정) 등 비우량 회사채 수요 기반 마련 **<향후 추진계획>**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13.7.8)을 차질없이 추진 ○ "시장안정 P-CBO"를 수요에 따라 안정적으로 발행 ○ 하이일드펀드 출시(3월중 예정) 및 회사채 펀드 규제완화 등 추진
36.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CP발행 현황 등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동양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방안('13.11.21) 발표 ○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거래내역 공시 강화 **<향후 추진계획>** □ 금투업자가 CP 등 계열사 발행증권 거래잔액 등을 분반기·결산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관련규정 개정('14년 하반기)
37. CP 등의 편입이 많은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영업 관행을 개선할 것	**<처리결과>** □ 특정금전신탁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투자자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14.1.1)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개인투자자에 대한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적극적 상품홍보행위 차단,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등 □ 특정금전신탁이 신탁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1:1 맞춤형 운용의 취지를 살리도록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 ('14.8.11) ○ 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을 지정할 때 운용대상 자산의 종류, 비중, 위험도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의무화 **<향후 추진계획>** □ 신탁업자가 고객의 의사와 무관히 신탁재산을 자의적으로 운용하거나 펀드처럼 집합 운용하는 행위는 명시적 규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엄격히 차단하도록 검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
38. 금융계열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대부업자의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해 대부업법 개정 추진(2.26일 입법예고) * (대기업 계열) 자기자본의 100% 범위 내 (금융회사 계열) 전면 금지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여전사의 대주주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합리화하기 위해 여전법 개정 추진(7.17일 입법예고) * 대주주 등의 신용공여 한도 축소(자기자본 100%→50%) 등 **<향후 추진계획>** □ '14.4분기중 대부업법 및 여전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
39. 대기업이 계열 비상장 대부업체를 탈법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제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대부업법 전부개정안 마련('14.2월 입법예고) ○ 대기업집단에 속한 대부업체 등은 금융위(금감원)에서 직접 관리·감독 ○ 대기업집단 및 금융회사 소유 대부업체의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향후 추진계획>** □ '14년 중 국회제출 추진
40. 계열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한 자금조달행위 등 내부거래정보에 대한 공시대상·범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 증권의 인수, 모집주선, 매입, 보유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중 ○ 현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규정개정(금융투자업규정) 규개위 심사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규개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시행세칙· 공시 시스템 등 관련 사항도 병행 준비
41.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현장 검사・조사 시 인지사항에 대한 환류(feedback)가 이뤄지도록 유기적 연계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 개정 추진(규정 변경예고 완료('14.6~7월)) ○ 시스템리스크,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조사 종료 후 지체없이 금융위 보고 □ 예금자보호법 개정 완료('14.5.28일 시행) ○ 예보가 금감원에 단독조사 및 공동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금감원은 동 시정요청에 따른 조치결과 등을 예보에 송부하도록 함 □ 금감원·예보 공동검사 MOU 개정 체결 ('14.7.31일 완료) ○ 시급한 조치가 필요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 요청 등 공동검사 시정조치 결과 공유 및 **<향후 추진계획>** □ 금융기관 검사·제재규정 개정(8월말)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2.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기업집단의 시장성 차입금 관련 공시 방안 검토 **<향후 추진계획>** □ 기 마련된 공시방안을 바탕으로 후속 조치 추진
43. 통합도산법상 기존경영인유지제도(DIP)가 부실경영에 악용될 여지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DIP제도 개선방안을 고위 실무급 면담 형식*으로 법무부에 기 전달('13.11.14) * 금융위 사무처장, 구조조정 지원팀장, 법무부 법무실장, 상사 법무과장 **<향후 추진계획>** □ 향후 통합도산법 개정 논의시, 법무부와 DIP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
44. 금융상품의 위험 설명 및 투자자 고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동양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방안('13.11.21) 및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종합대책('14.2.20) 발표 **<향후 추진계획>** □ 기 발표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 투자설명서 위험고지 명확성 강화 ○ 판매후 사전확인제도 도입 ○ 불완전판매 검사·자체점검 강화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45.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13.11월)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14.3.24일) ○ 약정 거부 시 공시를 통해 간접 강제하고, 미 이행 시 이자 인상 등 제재 수단을 추가 - 주 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운영 준칙 개정 완료('14.3.24일) **<향후 추진계획>** □ 해당 사항 없음
46. 독자신용등급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독자신용등급제도 도입 포함 신용평가 관련 제도개선 T/F 운영('14.3.27,7.1) **<향후 추진계획>** □ '15년 중 도입을 목표로 독자신용등급 모범규준 등 제도 도입방안 마련
47.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전세 수요의 자가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고, 주택자산 유동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금융 비전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14.2.26) 및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14.2.27)을 마련하여 정상 추진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정책모기지 공급*, 고액전세에 대한 공적지원 조정**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자가구입을 지원하고 전세 쏠림을 완화 * '14년중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자가 전환 촉진 ** 전세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보증제한('14.5월) → 전세보증을 서민층 중심으로 운용 ○ 모기지증권에 대한 투자수요 기반을 확충*하여 주택자산 유동화시장 활성화 추진 * 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에 MBS 포함('14.3월), 커버드본드법 시행('14.4월) 등 **<향후 추진계획>** □ 금융규제 개혁방안('14.7.10)에서 발표한 부동산금융(주택연금, 부동산펀드, 리츠 등)에 대한 규제합리화 추진 *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개편 및 부동산펀드·리츠 등의 운용제한 완화('14년中)
48. 전세가격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	**<처리결과>** □ 관련 통계 및 동향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등 전세관련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 □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14.2월)'의 일환으로 고액전세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제한 * 전세보증금 4억원(지방 2억원) 초과시 보증제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세시장 동향 및 가계부채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49. 정책금융의 시장마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방안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13.8.27일 발표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산은 시장마찰 해소 계획 포함 □ 관계부처 TF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산은-정금공 통합의 타당성을 검토 **<향후 추진계획>** □ 산은-정금공 통합하되, '통합산은'의 시장마찰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지속 예정 ○ 시장마찰 소지가 있는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생명)들은 시장여건 등을 보아가며 매각 ○ 소매금융 부문은 고객불편 등 고려하여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 (다이렉트예금 신규유치 및 지점 확대 중단 등) 등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0. 정책금융체계 개편 등과 같은 정부의 주요 정책변경에 따른 법률 개정 시에는 정부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산은-정금공 통합을 위한 산은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13.12.30일 강석훈 의원 대표발의) ○ 정부 주요정책과 관련한 법률 개정도 국회에서 사안의 중요성 등에 공감한다면 의원입법도 고려가능하다고 생각됨 ○ 또한,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3개월 넘게 운영하면서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므로 정부내의 필요한 절차를 상당부분 거쳤다고 볼 수 있음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는 정부 주요정책과 관련한 법안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
51. 해외시장에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 결과>** □ 旣 발표('13.11)한 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月1회) 중 **<향후 추진계획>** □ 국내외 금융상황 분석과 주기적인 국내 금융회사 건의사항 수렴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 경쟁력 제고 노력 지속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52. 실효적인 금융중심지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 결과>** □ 「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수립 중 *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 있는 금융중심지 구축을 위한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기본계획 마련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16) 에 따른 지속적 정책 추진
53. 증권업계 등을 비롯한 금융산업의 수익성 악화 관련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자본시장 활력 및 증권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 * 자본시장 활력 제고 방안('13.12월), 증권사 M&A 촉진 방안('13.12월), 증권사 NCR제도 개선 방안('14.4월),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14.4월), 금융규제 개혁 방안('14.7월), 인가제도 개선방안('14.7월) 등 마련 **<향후 추진계획>** □ 旣발표한 추진과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관련법령 개정 등)를 차질없이 추진
54.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복수거래소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것	**<처리결과>** □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한국거래소가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선정된 점을 고려하여, ○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기로 결정('14.1)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다만,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정부지침에 따라 방만 경영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지정해제를 검토하기로 결정 **<향후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지속 협의
55. 증권업계의 업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장리스크 등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할 것	**<처리결과>** □ 시장리스크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증권사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필요시 적기 시정조치 부과 □ 증권사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증권사 M&A 촉진 방안」 마련('13.12월) **<향후 추진계획>** □ 증권사 건전성 관리 및 자본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56. 공매도 관련 주가종목별 0.01% 초과시 보고하는 것과 관련 제도 정착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개선 및 잔고 공시제도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旣 발표 ('13.11월) ○ 현재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공매도 잔고 공시 의무 도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14.2월 김종훈의원 발의)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지원노력 지속 추진 ○ 법률 개정시 시행령, 규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신속히 정비
57. 시장안정유동화회사보증(시장안정 P-CBO)의 부실 위험에 대해서 모니터링 및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것	**<처리결과>** □ "시장안정 P-CBO"의 경우 일반 P-CBO에 비해 강화된 리스크 관리 시행중 ○ 차환발행심사위원회를 통해 리스크가 높은 기업은 사전 차단하고, 기업 부담분을 상향하여 리스크 완충 확보 * 후순위비중 : 차환기업·건설사 9%, 일반 3% **<향후 추진계획>** □ 상시 리스크관리체계 구축 ○ 편입시에는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심층 심사를 진행 ○ 기 편입기업의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상시관리
58. 정책금융공사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선박금융·해양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형 투자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처리결과>** □ 당초 정책금융공사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 ○ 그러나,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산은의 정책기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 이에 따라, 산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중인 정금공은 존립이유가 사라져 대내 정책기능의 효율화 및 정책재원 낭비 요인 제거를 위해 산은과 통합이 불가피함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정금공은 '13.8.27일 발표한 방침에 따라 산은과 통합 추진 □ 선박·해양금융 강화를 위해 기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 * '해양금융 종합센터' 및 '해운보증기구' 설립 등
59.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처간 이해관계가 다양한 만큼 국무조정실 갈등현안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선박금융공사 설립시 통상분쟁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연구용역과 더불어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 등을 통해 심도있게 논의함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13.8.27일)' 등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함께 발표한 것으로 부처간 이견은 해소됨 ※ 갈등영향분석 :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경우 등 실시(「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향후 추진계획>** □ 향후에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기 발표한 선박금융 강화대책들*을 추진할 예정임 * '해양금융 종합센터' 및 '해운보증기구' 설립 등
60. 공정거래위원회와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다시 체결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금융회사 부담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위-공정위간 업무협약(MOU) 개정을 위한 기관간 협의 실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업무협약(MOU) 개정 연내 완료 예정
61. 금융위원회에서 관리 감독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상시감사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12.11) ○ 일정 기준 이상* 및 금융위 위탁 업무 수행 기관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사 실시 * 상시 인원 5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예산 100억원 이상 등 **<향후 추진계획>** □ 「상시감사 대상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사단법인(13개)에 대해서는 주기적(3~4년)으로 감사를 실시 ○ 기타 필요 기관에 대해서도 자체감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등 감사를 강화
62. 금융연구원 등 특정 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주요 정책결정에 관련된 연구용역 보고서인 경우 정책 결정이 끝난 후에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경쟁입찰 추진 독려를 통해 특정기관에 연구용역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 금융연구원 비중 : ('13년) 62% →('14년) 44% □ 주기적인 프리즘 정비를 통해 비공개 보고서의 공개전환을 유도하고 있음 ※ '08~'13년 연구용역 공개율 : 81% (99개/122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경쟁입찰 확대 및 프리즘 관리 철저 추진
63.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관련 조세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우리금융 민영화를 위한 우리금융지주 분할·합병시 조세특례를 인정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완료 ○ '13.10.25 안종범 의원 대표발의 → '14.4월 국회 통과
64. 공제회의 자산운용 부문을 금융위원회가 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공제회는 기본적으로 각 부처가 소관 분야 종사자에 대해 운영하는 복지사업인 바 자산운용의 관리도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 ○ 금융위는 통일적인 공제회 자산운용 기준을 제정하거나, 필요시 공제회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실시해 소관부처의 공제회 관리를 보조할 필요 **<향후 추진계획>** □ 「공제회의 자산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강석훈의원 발의·상정)될 경우 '공제회 자산운용 기준' 마련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5. 외부감사인 의무교체제도 도입에 대하여 회계시장 구조 및 유착관계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관계기관 및 협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및 해외사례조사 등 사전조사 작업 실시 의무교체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 **<향후 추진계획>** □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외부감사 독립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66. 초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 촉진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코넥스시장 보완대책('13.10.10)*, 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14.4.15)**, 코넥스시장 향후계획('14.7.1)*** 마련 및 방안 시행 * 투자제한 완화(창업지원법) 및 세제혜택 부여(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 개정, 지정자문인 확대 ** 신속이전상장제 마련, 투자대상 확충(IB, 일임형 하이일드펀드), 예탁금 산정기준 합리화, 매매제도 개선 *** 투자수요 확충(증권사 일임형 랩어카운트), 매매수량단위 완화('14년중) **<향후 추진계획>** □ 투자 수요 및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 ○ 증권사 일임형 랩어카운트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간접투자 확충('14.하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7.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ATS 도입이 지연되는 것은 주식 거래량 감소 등 시장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큰 만큼, 인위적인 규제완화 등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조원) : ('11)6.9→('12)4.8→('13)4.0→('14.1-6월)3.7 **<향후 추진계획>** □ 증시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으로서, ATS 도입여건 조성 * 상장활성화 방안 추진, 신시장 개설 등
68. 증권회사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처리결과>** □ 「증권회사 M&A 촉진 방안」 마련·발표('13.12월) * M&A추진 증권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경영부진 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강화 * 증권사간 인수를 제약하는 NCR제도 개선 **<향후 추진계획>** □ 「증권회사 M&A 촉진 방안」의 세부과제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개정 추진('14년 하반기)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69. 경남은행·광주은행 매각기준과 관련하여 지배구조, 소유구조,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공자위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우리금융지주 매각 3대 원칙* 등을 고려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 * 빠른민영화, 공적자금 회수극대화,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동 선정기준에 따라 BS금융지주 및 JB금융지주를 각각 경남·광주은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13.12월) ※ '14.6월 BS·JB지주와 예보는 경남·광주은행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4.10월경 주식양도 및 매매대금 수령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과 별도로 '14.1월에는 BS·JB지주, 경남·광주은행 및 노조가 3자간 상생협약 형태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을 마련
70.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조치를 취할 것	**<처리결과>** □ 중소기업이 과도한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적 노력 경주 ○ 신용보증약관을 개정하여 신용가산금리 부과를 금지 ○ 온라인 대출장터, 금리캐스터 운영 등을 통해 정보제공 확대 □ 보증부대출중 고금리 통보건에 대해 채권은행 확인 및 금감원에 통보 등 사후관리 실시 중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고금리 통보건 사후관리 지속 실시 □ 금리캐스터 등을 통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 지속
7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보증 관련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상생협약보증 실적 제고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 ○ 신·기보 내부평가기준에 상생보증 실적을 반영토록 개정 **<향후 추진계획>** □ 상생보증 활성화 방안 검토 ○ 지원대상을 3차이하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협약서 개정(기존 2차까지) ○ 보증기관이나 은행도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약서 개정 ○ 신규 참여 대기업 발굴 등
72. 중소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기술평가인증서부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기술평가인증서 제공 및 신용대출 확대 * 인증서 제공건수 : '12년 2,575건 → '13년 3,297건 * 은행권 인증서부 신용대출 : '12년 2,500억 → '13년 5,264억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향후 추진계획> □ 중소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인증서부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강구
73. 특례보증이 외형적 실적쌓기로 이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상시화가 필요한 특례보증은 일반보증 등으로 전환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향후 추진계획>** □ 상시화된 특례보증을 일반 우대보증으로 전환 검토 ○ 실효성이 없는 경우 특례 폐지
74. 중국계회사 고섬에 대한 조사 등과 관련해서 외국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제38회 IOSCO 연차 총회에서 증선위 상임위원은 중국 감독기관과 면담('13.9.16일) * 국내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중국 감독기관의 협조 당부 **<향후 추진계획>** □ 해외 금융당국과 MOU 체결 지속 및 旣체결된 MOU 이행수준 제고를 위해 국제회의 및 면담 등을 통한 외국당국과의 교류 적극 강화 ※ 증권관련 정보공유 및 협조 등의 사항은 한·중, 한·싱가포르간 MOU, IOSCO MMOU 등을 통해 마련되어 있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5.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한 우회투자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불법 차명거래 등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조세회피지역을 활용한 탈세·불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사분석 강화 □ 역외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외국 FIU와의 MOU 체결 확대 (계속추진) ○ “프로젝트 합의서 방식의 정보교환 협정” 체결도 추진(계속추진)
76.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는 금융투자업의 인허가 단위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14.7월)」 마련·발표 **<향후 추진계획>** □ 동 방안의 세부과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및 행정조치 시행
77. 재형저축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금융권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및 가입유인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서민층(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및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3년으로 완화 ('14년 세법개정안) **<향후 추진계획>** □ 조세특례제한법령이 개정(기재부)된 이후 금융권 상품 출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78. 창업자 본인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제도 시행 ('14. 2월) ○ 창업실패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우수 인력의 창업을 촉진 **<향후 추진계획>** □ 일정기간 제도 운용 후 지원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보완
79. 유암코가 자산관리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재위탁하지 못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 미등록 업체에 대한 재위탁을 금지하고, ○ 이후 관련 자산관리는 유암코가 직접 수행하도록 업무프로세스 개선 완료
80. 금융기관 사외이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 사외이사의 기능을 강화하는「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 대상 설명 등 추진 ○ 자산 2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업자도 사외이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중 **<향후 추진계획>**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국회 심의 중인 만큼, 동 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81. 자동차보험의 만성 적자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 '10.12월 정부는 자동차보험이 교통 관련 제도와 의식 수준, 의료·정비업계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점을 감안, 관계 부처 합동(복지부, 국토부, 공정위,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으로 「자동차 보험 개선대책*」을 마련, 발표 * (ⅰ) 보험사 사업비 절감, (ⅱ)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ⅲ) 보험사기 방지기반 마련, (ⅳ) 보험금 절감(정비요금, 의료비 등 포함), (ⅴ) 교통사고 줄이기 등 ○ 총 21개 과제 중 요율체계 합리화 등 18개 과제 완료, 1개 과제는 규개위 부결로 중단, 2개 과제*는 이해관계 집단 간 이견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진료수가 체계 개선, 자동차 정비요금 관련 상생협력 협의체 설치 **<향후 추진계획>** □ 향후, 총리실 등과 협조,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미완료 과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2.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 최근 3년간('12~'14) 감사원 감사결과 (총 12건)

감 사 명	감사 기간	처분 요구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12.01.09 ~ 02.28	붙임1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12.03.05 ~ 03.16	
중소기업 금융지원실태	'12.04.04 ~ 06.08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12.08.16 ~ 10.12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실태	'12.11.19 ~ 12.14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13.03.18 ~ 03.29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13.03.04 ~ 04.19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13.05.30 ~ 06.28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 감독실태	'13.11.06 ~ 12.13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14.03.10 ~ 03.21	
기업어음,회사채등 시장성 차입금 관리감독 실태	'14.01.20 ~ 03.06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검사감독 실태	'14.03.12 ~ 04.11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 : 붙임 1

<붙임 1>

12~'14년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른 조치 진행 상황

연번	처분종류	처분요구제목	시행일	감사사항	진행상황	처 리 과
1	통보(모범)	공영(건강).유사보험 관련 보험사기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	보험과
2	통보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장기 보유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중소금융과
3	통보	상호저축은행의 다른 회사의 경영권 확보 등에 대한 금지 규정 마련 미흡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중소금융과
4	통보	상호저축은행과 다른 금융회사 대주주 간 교차대출 금지에 대한 감독 미흡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중소금융과
5	통보	출자한 상호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마련 미흡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중소금융과
6	통보	금융감독기관 간 정보공유 등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	의사운영팀
7	통보	연체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서민금융과
8	통보	대출성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중소금융과
9	통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	중소금융과
10	통보	변액보험 특별계정 보수 관련 공시기준 미비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보험과
11	통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보상 등 관리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보험과
12	통보	자동차보험금 부당지급 통제를 위한 시스템구축 등 미비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보험과
13	통보	연체상환 등 신용정보 변동사항 보고지연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	서민금융과
14	통보	합병인가 심사기준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	중소금융과
15	통보	유상증자 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규정 불합리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	공정시장과
16	통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실효성 확보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공정시장과
17	통보	금융기관 사외이사 결격요건 규정 불합리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	자본/중소
18	통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미흡	2012.11.21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	조치완결	산업금융과
19	통보	중소기업 여신취급 관련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11.21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	조치완결	은행과
20	통보	2011년도 결산 및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업무처리 부적정	2013.02.18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I	조치완결	산업금융과
21	통보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부적정	2013.02.18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I	조치완결요청	산업금융과
22	통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복 조정 필요	2013.02.18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I	조치완결	산업금융과
23	통보	상시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3.02.18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I	조치완결요청	산업금융과
24	통보	상호저축은행 부실 PF사업장(채권) 매입지원제도 운용 부적정	2013.03.04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Ⅱ	조치완결	중소금융과
25	통보	상호저축은행 대출채권 건전성 감독기준 불합리	2013.03.04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Ⅱ	조치완결요청	중소금융과
26	통보	상장법인 부도발생 사실 통보의무 미이행	2013.03.04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Ⅲ	조치완결	공정시장과
27	통보	국가채권 보전 및 회수조치 부적정	2013.04.23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조치완결	행정인사과
28	통보	우리금융지주 임직원의 우리투자증권 겸직 승인 부적정	2013.05.03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실태 I	조치완결	금융정책과
29	통보	햇살론 지원사업 추진방법 및 평가운영 부적정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완결요청	서민금융과
30	통보	보증.대출기관의 부당한 서민불편 및 부담 초래 행위에 대한 감독 불철저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완결요청	서민금융과
31	통보	햇살론 대환대출 지원대상 대부업체의 채무 인정 범위 불합리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완결요청	서민금융과
32	통보	보증기관 상각채권 및 구상채권 채무조정 업무감독 부적정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완결요청	서민금융과
33	통보	서민금융지원시책과 제도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미흡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완결요청	서민금융과
34	통보	서민금융나들목, 1397 통합 콜센터 운영 및 홍보 부적정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완결요청	서민금융과
35	통보	채권 매각에 따른 신용회복 기회 상실 및 불법추심 방치 부적정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 중	서민금융과
36	통보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 중	서민금융과

37	통보	대부업자 영업 및 사업자등록 여부 관리 부적정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 중	서민금융과
38	통보	상호금융 대출과 연계된 구속성 행위에 대한 규제 미흡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I	조치 중	중소금융과
39	통보	청약증거금에 대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미지급 불합리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조치 중	자본시장과
40	통보	공매도 거래현황 공표제도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조치 중	자본시장과
41	통보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공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조치 중	공정시장과
42	통보	금융투자회사 퇴임 및 퇴직 임직원 제재근거 불합리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조치 중	자본시장과
43	통보	공공정보의 집중·활용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조치 중	서민금융과
44	통보	정보기술 보호업무 모범규준 불합리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조치 중	전자금융과
45	통보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부적정	2014.04.04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조치완결요청	공정시장과
46	통보	융역업체 보안관리 및 관련 규정 운용 부적정	2014.04.10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감독실태	조치완결예정	전자금융과
47	통보	금융권 정보보호 담당기관에 대한 역할, 기능 조정 미흡	2014.04.10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감독실태	조치완결예정	전자금융과
48	통보	금융권 정보보호 담당기관 정보공유 미흡	2014.04.10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감독실태	조치완결예정	전자금융과
49	통보	재해복구센터 구축, 운용 기준 부적정	2014.04.10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감독실태	조치완결예정	전자금융과
50	통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안관리 감독 부적정	2014.04.10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감독실태	조치완결예정	전자금융과

- 처분요구서(별도 제출)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3. 최근 3년간 내부 감사현황
- 최근 3년간 내부 감사 및 직원 징계 현황

감사담당관실

□ 최근 3년간('12~'14년) 실시한 내부 감사결과

(내부)감사명	감사 기간	결과보고서
2013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3.12.4 ~ 12.10	붙임2

* 2012년 자체회계 및 기관운영 감사는 해당연도 감사원 정기감사에 따라 미실시
* 2013년 자체감사 시 **'12. 1. ~ '13. 10.** 기간에 대한 감사 실시
* 2014년 자체감사는 12월 중 실시예정

<붙임 2>

자체감사(정기)
2013.12.4 ~ 12.10

2013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4. 2.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Ⅰ. 감사개요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나. 계약사무 및 물품관리 관련

다. 업무 관련

라. 민원업무 처리 관련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Ⅰ. 감사실시 개요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계약사무,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매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감사원은 실시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

* 「'13년 자체감사계획」('12.12.11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1 실 시 개 요

□ 감사기간 : '13.12.4(수) ~ 12.10(화), 5일간

□ 감사대상 : 以前 자체감사 대상 이후의 예산집행실태 등

○ **예산집행실태***는 '12.1월 이후, **민원처리실태**는 '12.12월 이후

* '12년에는 **재무·회계** 자체감사의 경우,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의 재무·회계 감사('13.3월) 실시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만 실시('12.12월)

□ **감사반원** : 감사담당관실 8명(감사담당관, 5급 3, 주무관 4)

□ **감사방법** : **서면점검**(필요시 현장실사)

2 감 사 중 점

□ **예산편성·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 **계약사무** 및 **물품관리**의 적정성

□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 **以前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의 적정성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예산집행·물품관리 및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

□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기한 준수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① **초과근무 관리 미흡**(본부 및 소속기관)

☞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점검 등 철저 필요**

② **일상감사 미이행**(대변인실, 행정인사과, FIU 기획행정실)

☞ **건당 5천만원 초과 이·전용 및 이월** 등은 일상감사 대상

〈계약사무 및 물품관리 관련〉

① **물품 인계·인수 및 관리**(행정인사과)

☞ **물품의 인계·인수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등 관리 철저 필요**

〈민원업무 처리 관련〉

① **서신민원 원본 관리 미흡**(금융정책과, 은행과, 중소금융과 등)

☞ **접수된 서신민원 원본을 규정에 따라 보존(10년) 필요**

② **국민신문고 민원 Q&A 관리 소홀**(은행과, 중소금융과, 자산운용과 등)

☞ **국민신문고 민원 Q&A를 적기에 업데이트하여 민원제기를 줄일 필요**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1 점검개요

□ 2012년 및 2013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중 **각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서운영경비**를 중심으로 점검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총액은 4,247억 25백만원**으로 대부분이 전출금·상환지출·이전지출* 등이며,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IBRD차관원리금상환, 모기지론이차보전, 농어가목돈마련장려기금출연 등

- **직접 집행액은 346.6억원**(8.1%)으로 이 중 **인건비**(170.9억원)**를 제외한 집행**(175.7억원)**을 중점 점검**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총액은 4,151억 69백만원**으로 대부분이 상환지출·이전지출* 등이며,

* 산은금융지주·중소기업은행 출자(설비투자펀드), IBRD차관원리금상환, 모기지론이차보전, 농어가목돈마련장려기금출연 등

- **직접 집행액은 3,438.9억원**(82.8%)으로 이 중 **인건비**(184.7억원)**를 제외한 집행**(3,254.2억원)**을 중점 점검**

□ 예산집행지침,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등 **관련 규정 부합여부** 및 **집행절차, 증빙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

○ 특히 직원들의 **위반 가능성이 많은 분야**(정부구매카드 사용, 초과근무 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

<2012년 및 2013년 일반회계 집행실적 (억원, %)>

연도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자산 취득	이전 지출	상환 지출	전출금등	계
2012	예 산 (비중)	171.4 (4.0)	157.7 (3.7)	24.9 (0.6)	489.0 (11.5)	28.8 (0.7)	3,385.3 (79.5)	4,257.1 (100.0)
	지 출 (비중)	170.9 (4.0)	151.2 (3.6)	24.5 (0.6)	487.6 (11.5)	27.5 (0.6)	3,385.3 (79.7)	4,247.2 (100.0)
	이 월	0	0.3	0	0	0	0	0.3
	불 용	0.5	6.3	0.5	1.4	1.3	0	9.8
2013	예 산 (비중)	185.5 (4.4)	173.7 (4.1)	3,124.1 (74.3)	693.2 (16.5)	27.7 (0.7)	0	4,204.5 (100.0)
	지 출 (비중)	184.7 (4.5)	168.3 (4.1)	3,085.9 (74.3)	686.1 (16.5)	26.5 (0.6)	0	4,151.6 (100.0)
	이 월	0	0.2	0	0	0	0	0.2
	불 용	0.8	5.2	38.2	7.1	1.2	0	52.7

2 점검결과 지적사항

① 정부구매카드 사용절차 미준수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 **제22조의1(정부구매카드 사용자의 실명 서명의무)**
>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여야한다.

□ 그러나 위원회 **모든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실명 서명을 하지 않고 **소속 부서명**이나, **사용자 개인의 사인** 등으로 서명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 향후 정부구매카드를 사용시에는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 보다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주의 : 본부 및 소속기관)

② 초과근무 관리·감독 미흡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서는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

□ 그러나 감사대상기간('12.1.1~'13.11.30) 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 중 일부가 규정과 달리 초과근무를 인정받아 **초과근무수당**을 수령

○ 특히, **휴일당직 근무자**의 경우, **당직수당**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여 **수당을 중복 수령**

⇒ 행정인사과는 **초과근무수당 수령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주의 및 환수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주의 및 환수 조치 : 초과근무수당 수령자, 주의 : 행정인사과)

③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미이행

□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에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집행의 경우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규정

○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

*** 일상감사대상(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
- 예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 (제3조)
- (성과관리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집행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3조)
- **일정규모 초과 계약건**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의 제조·구매: 5천만원)** (제4조)
- 건당 5천만원 초과 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 / 주거래 은행의 선정·변경 (제5조)
- **실·국 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연찬회 등 행사**
  (외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과단위 행사 포함) (제6조)

□ 그러나 감사대상기간('12.1.1~'13.11.30) 중 관련 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

⇒ 각 부서에서는 일상감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
(주의 : 대변인실, 행정인사과, FIU)

나. 계약사무 및 물품관리 관련

1 점검개요

＜계약 현황＞

□ 2012년 위원회 계약 건수는 **총 169건**(물품계약 110건 및 용역계약 58건, 기타 1건)이며, 금액으로는 **45억 8,500만원**임

○ 계약방법으로는 **경쟁입찰 91건**(12억 5,600만원), **수의계약 70건**(27억 8,200만원), **기타 8건**(5억 4,600만원)임

□ 또한, 2013년 위원회 계약 건수는 **총 166건**(물품계약 76건 및 용역계약 90건)이며, 금액으로는 **23억 2,800만원**임

○ 계약방법으로는 **경쟁입찰 4건**(3억 9,700만원), **수의계약 153건**(16억 600만원), **기타 9건**(3억 2,500만원)임

＜물품관리 현황＞

□ 2013년말 위원회 **물품 보유현황**은 일반구매 **1,895점**에 금액으로는 **2억 1,300만원**임

○ 연도별 **불용품 처리현황**은 2010년 **관리전환 97점**(8억 6,100만원), 2011년 **양여 42점**(900만원), 2012년 **기타 452점**(7억원)임

<2012년 및 2013년 계약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약유형				계약방법			
		합계	물품	용역	기타	합계	경쟁	수의	기타
2012년	건수	169	110	58	1[1)]	169	91	70	8[2)]
	금액	4,585	701	2,674	1,210	4,585	1,256	2,782	546
2013년	건수	166	76	90	-	166	4	153	9
	금액	2,328	287	2,042	-	2,328	397	1,606	325

1) 무체재산권 계약으로 임차보증금이 이에 해당

2) 시작은 경쟁입찰이었으나 복수의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계약

<보유물품 현황 (2013년말 기준)>

(단위 : 점/백만원)

구분 / 장비명	일반구매		리스구매		합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타잡기기	1,895	213			1,895	213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	2	1			2	1
사무용기기	3,705	2,144			3,705	2,144
사무용집기	3,973	720			3,973	720
산업기계	47	24			47	24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59	26			59	26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1	1			1	1
인쇄사진 및 시청각기기	28	34			28	34
전기.통신기기	486	393			486	393
합 계	10,196	3,556			10,196	3,556
비 율	100%		0%		100%	

<연도별 불용품 처리현황>

(단위 점/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관리전환	97	861					97	861
양 여			42	9			42	9
매 각								
폐 기								
기 타					452*	70	452	70
합 계							591	940

* 조립 완성품 경우, 부속품을 각자 수량으로 계산하여 관리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하나의 완성품으로 계산하여 관리

2 점검결과 지적사항

① 물품의 인계·인수 절차 미준수

□ 물품의 명확한 책임 규명을 위하여 **「물품관리법」** 제24조(표준서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재물조사), 제38조(표준서식의 인계)에서는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일 현재로 표준서식에 따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

□ 그러나 담당과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소관 물품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이 교체**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할 것 **(시정 : 행정인사과)**

② 물품 관리·운용 미흡

□ 취득한 물품에 전자태그 미발행

○ RFID(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은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유물품에 **전자태그를 발행・부착・검사**하도록 규정

- 다만, 부득이한 경우 물품 취득시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전자태그를 발행 및 부착하고 리더기로 해당 물품을 검사하여야 함

○ 그러나 감사일('13.12월) 현재 '13년에 취득한 물품 중 **188건**에 대하여 **전자태그가 미발행 및 미부착**된 상태

<전자태그 미발행 물품 목록>

물 품	물량(개)	취득일	취득가액(천원)
데스크톱 컴퓨터 등	14	2013-10-23	8,720
캐비닛·보안장비	2	2013-10-07	3,445
데스크톱 컴퓨터 등	38	2013-09-30	19,740
유선전화기	20	2013-09-27	360
문서세단기 보조용품	1	2013-09-26	730
데스크톱 컴퓨터 등	12	2013-09-16	7,260
레이저프린터	3	2013-09-12	1,392
책장·캐비닛·칸막이 등	83	2013-09-02	9,863
작업용 의자·탁자 등	15	2013-08-30	4,727
계	188		56,237

□ **불용 및 양여 물품의 RFID(물품관리시스템) 미등재**

○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불용을 결정**하고, 불용품의 활용을 위해 필요하면 불용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

○ 또한, **'불용'** 또는 이에 따른 **'양여'**의 결정을 한 물품은 RFID에 그 내역을 등재하여 불용처분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함

○ 그러나 담당 과에서는 '13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내용연수가 초과한 물품 등을 **불용결정**('13.5월)하고 **비영리법인**에 **양여**하였으나

- 동 내역을 RFID에 등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향후 취득한 물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고, **불용 및 양여 처분한 물품**에 대해서도 **RFID에 등재**하는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 : 행정인사과)

다. 업무 관련

＜점검결과 지적사항＞

① 행정규칙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 절차 누락

□ 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서는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을 제·개정** 할 경우, 각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개선·정비**하도록 규정

□ 그러나 감사대상기간('12.1.1~'13.11.30) 제·개정된 행정규칙 **80건 중 36건만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요청하여 **의뢰비율은 45.0%**에 불과

⇒ **훈령·고시 등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경우 **부패영향평가**를 자체 감사부서에 의뢰하여 법령 제·개정 절차를 준수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부패영향평가 의뢰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사후절차를 진행할 것

(주의 :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국제협력팀,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행정인사과, 규제법무담당관실, 의사운영정보팀, 기획행정실)

② 업무시간 내 외부강의 관련 복무관리 미흡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에 따라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출장처리**를 하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
> 제11장 외부강의 / 자.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
> (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 ※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그러나 감사대상기간('12.1.1～'13.11.30) 동안 외부강의 출강을 출장처리 하지 않은 일부 사례가 발견

⇒ 행정인사과에서는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출강**을 할 경우 **인사관리시스템에 출장 상신**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 : 행정인사과)**

라. 민원업무 처리 관련

1 현황 분석

① 민원 처리절차

□ 모든 위원회 민원은 **민원센터에 접수되어 처리과에 배분·처리**

【민원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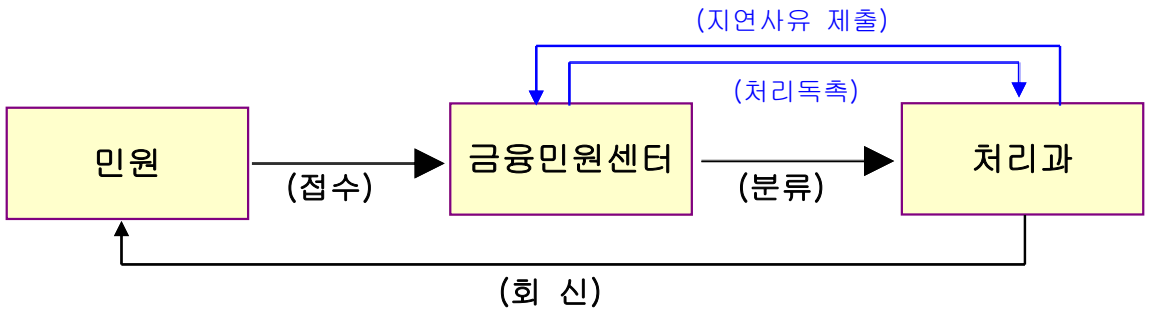

② 금융민원센터 전담인력 현황 및 역할

□ **팀장**(1), **주무관**(1), **공익**(1) 등 3명으로 구성, 민원접수·분류, 국민신문고 운영 등의 업무 담당

< 금융민원센터 업무분장 >

소 속	직위	담 당 업 무
금융위(2)	팀장 * 의사운영팀	■ 총 괄
	주무관	■ 민원·제안 접수·분류 ■ 국민신문고 관리·운영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및 자체제안심사단 운영 ■ 권익위, 행안부 및 총리실 민원업무 관련 대응 ■ 인허가, 등록·신고 민원(관련 상담 포함) 접수·분류
공 익(1)	공 익	■ 문서수발, 민원분류 등 보조

③ 민원 처리현황

□ 점검대상기간('12.12.1~'13.11.30) 중 총 5,629건 접수·처리

<접수방법별 민원 접수 · 처리 현황>

구분	신문고	홈페이지	방문	기타 (타기관에서 이첩 등)	합계
건수	2,559건	1,381건	963건	726건	5,629건

○ 통상적으로 **매월 470건 내외의 민원이 발생**하며, 국민행복기금 및 하우스푸어 등 **특정사안 발생시 일시적으로 급증**

□ **부서별 : 서민금융과 → 금융정책과 → 산업금융과** 순

○ 서민·금융·산업등 3개 과의 민원은 모두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 관련 민원**으로 총 3,575건으로 **전체 민원의 63.5%** 차지

<주요 부서별 민원 접수 · 처리 현황('12.12.1~'13.11.30)>

부서	서민금융	금융정책	산업금융	규제법무	보험	은행
건수	1,838건	1,104건	663건	472건	417건	303건
부서	자본시장	중소서민	전자금융	공정시장	자산운용	감사
건수	246건	183건	116건	87건	60건	54건

□ **속성별** : 일반민원*(4,704)→ 법령질의(696) → 제도개선(101) → 진정 등 기타(128)의 순

* 일반민원 대부분도 **현행제도 내에서 해소가 어려운 진정성 민원**

* **법령질의 만족도는 82.0%**로 전체 평균(48.6%)보다 월등히 높음

2 점검결과 지적사항

① 민원 처리기한 미준수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일반질의·상담사항은 7일 이내, 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 그러나 감사대상기간('12.1.1~'13.11.30) 중 발생된 **5,629건**의 민원 중 일부 민원은 기간 연장조치 없이 **민원처리기간을 경과**(1일 초과)**하여 처리**한 사례가 발견

⇒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법정처리기간을 잘 준수**하여 향후 **민원처리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주의 : 금융정책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② 서신민원 원본에 대한 관리 미흡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1]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2]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물관리기준표"**에서는 **민원서류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규정

1)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다.

○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접수기관은 해당 **민원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함

*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③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서류의 원본**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발견

⇒ 기록물관리기준표에 따라 **민원서류 원본**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 : 행정인사과, 금융정책과, 은행과, 중소금융과, 자산운용과)

③ 국민신문고 민원 Q&A 관리 소홀

○ 권익위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할 때, 먼저 **유사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민원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민원담당자는 민원처리 건 사례로 제공할 가치가 있는 건은 **『민원 Q&A』**에 등재하도록 하여, **감사일 현재 261건이 등재**되어 있음

○ 그러나 **이중 226건(86.6%)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게재기간 만료"로 민원인이 열람할 수 없음** (35건만 민원인이 열람 가능)

※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직원(1인)의 업무 과중(민원 상담 및 처리 연 5,629건의 민원 접수 및 분배등) 등에 따라 『민원 Q&A』 자료가 적시에 업데이트 되지 않는 측면

⇒ 각 과에서는 게재기간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는 **『민원 Q&A』에 대해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민원 Q&A』 등재 건수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 **(권고 : 본부 및 소속기관)**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분야	지 적 사 항	조치 구분
예산 집행 / 회계 처리	■ **정부구매카드 사용절차 미준수**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소속 부서명 또는 개인 사인으로 서명하지 말고 **실명으로 서명**할 것 **(본부 및 소속기관)**	주의
	■ **초과근무 관리・감독 미흡** ・행정인사과는 초과근무수당 수령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주의 및 환수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주의 및 환수 조치: 초과근무수당 수령자, 주의 : 행정인사과)**	주의
	■ **일상감사 미이행**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3조~제6조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일상감사를 이행하여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대변인실, 행정인사과, FIU 기획행정실)**	주의
계약 사무 / 물품 관리	■ **물품의 인계・인수 절차 미준수** ・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의 교체시에는 물품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등 물품의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할 것 **(행정인사과)**	시정
	■ **물품 관리・운용 미흡** ・물품을 취득할 경우, 취득 즉시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고 **불용 및 양여 물품은 RFID(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는 등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행정인사과)**	시정
업무 관련	■ **행정규칙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 절차 누락** ・향후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을 제・개정할 경우 **부패영향평가를 자체 감사부서에 의뢰**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부패영향평가 의뢰 여부를 확인**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사후 절차를 진행할 것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국제협력팀,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행정인사과, 규제법무담당관실, 의사운영정보팀, FIU 기획행정실)**	주의

분야	지 적 사 항	조치 구분
	■ **업무시간 내 외부강의 관련 복무관리 미흡** ・행정인사과는 **근무시간내 외부강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처리**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행정인사과)**	주의
민원 처리	■ **민원 처리기한 미준수** ・접수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한**(일반질의・상담 : 7일, 법령질의 : 14일)을 준수할 것 **(금융정책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주의
	■ **서신민원 원본 관리 미흡** ・접수된 **서신민원의 원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년간 보존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할 것 **(금융정책과, 은행과, 중소금융과, 자산운용과, 행정인사과)**	주의
	■ **국민신문고 민원 Q&A 관리 소홀** ・국민신문고의 **민원 Q&A를 적기에 업데이트**하여 불필요한 민원제기를 줄일 필요 **(본부 및 소속기관)**	권고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행정인사과

□ 징계현황(2012년 이후)

성 명	직급	징계일	징계사유	징계내용
○○○	서기관	‘13.02.08	금품수수	파면
○○○	서기관	‘14.02.20	음주운전	견책
○○○	서기관	‘14.09.05	금품수수	감봉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4. 소득수준별 대출 잔액 (최근 3년, 금융업권별 구분)

□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여 직접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5. 가계부채 업권별 잔액규모

□ **가계신용 잔액('14.6월말)** (자료 : 한은)

(단위 : 조원)

구 분	잔 액
가계신용	1,040.0
가계대출	982.5
예금취급기관	705.2
예금은행	489.6
비은행예금취급기관	215.6
상호저축은행	8.8
신용협동조합	24.1
상호금융	136.5
새마을금고	45.0
우체국 등	1.2
기타금융기관 등	277.3
보험기관[1)]	87.3
연금기금[2)]	14.0
여신전문기관[3)]	43.5
공적금융기관[4)]	35.7
기타금융중개회사[5)]	86.7
기타[6)]	10.2
판매신용	57.5
여신전문기관	56.5
판매회사	1.0

주1)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3) 카드사, 할부사 등 4) 국민주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5)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사업자 등 6) 한국장학재단 등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6. 가계부채 업권별 연체율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 **업권별 가계대출 연체현황('14.6월말)** (자료 : 금감원)

(단위 : %)

구 분	연체율	고정이하 여신비율
은 행*	0.65	0.64
상호금융	3.54	2.78
여 전 사	4.30	4.14
저축은행**	10.83	10.08
보 험	0.46	0.30
전체 평균	1.51	1.29

* 국내은행 대상

** 저축은행 권역 '14.6월말 수치는 잠정치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7. 자영업자 대출 추이

□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가 ①**사업자명의로 기업대출**을 받거나 ②**개인명의로 가계대출을** 받는 두가지 경우로 구분

○ 이 중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 대출현황은 파악**이 가능하나, 가계대출에 포함된 자영업자 대출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

□ **개인사업자대출(기업대출로 분류) 통계***(자료 : 금감원)

(단위 : 조원)

구 분		'12년말	'13년말	'14.6월말
전 체		197.1	215.4	224.2
은 행		173.5	190.5	198.5
비은행**		23.7	24.9	25.7
	보 험	0.8	1.0	1.0
	상호금융	8.1	9.4	10.7
	저축은행	7.0	5.7	5.3
	여전사	7.8	8.8	8.7

* 출처 :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새마을금고, 신보·기보의 대지급금, 상각채권 등은 제외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8. 다중채무자 현황

□ **금융권역별 다중채무자 현황**(자료 : NICE, 금감원)

(단위 : 만명, 조원)

('14.6말)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	기타	전금융권
차주수	212	50	111	68	240	96	43	328
대출잔액	154.5	15.1	83.2	8.2	35.3	7.7	13.2	317.3

* 다중채무자 : 3개 금융기관 이상 대출보유고객

** 여러 금융권역을 이용하는 차주의 경우 각 업권별로 집계되므로 합계가 맞지 않음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9. 최근 3년 금융권 제재 건수 및 내용

□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여 직접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0. 서민금융총괄기구 설치방안

□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서민금융 상품 개편 등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14.7.16.)하여 추진중

○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총괄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

*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추진중

※ 붙임 : 서민금융총괄기구 설치방안

[붙임] 서민금융총괄기구 설치방안

가 법적근거

□ 현행 서민금융 지원 관련 법률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 **전부개정**하여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관련 내용**을 **포괄적 규정**

○ **법률명**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현행	전부개정안
법명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① 휴면예금관리재단 관련 * 휴면예금 출연, 원권리자 보호 등 <신설> <신설> <신설>	① 좌동 ② **서민금융총괄기구 관련 조항** * 총괄기구 업무, 조직 등 ③ **개인 신용보증 관련 업무, 재원 등** ④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조항**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 구성, 업무 등

나 통합 대상기관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지신보)을 **분리·이관**('13.9월 발표방안)

*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은 출범시 이관, 채무조정 관련업무는 캠코 위탁

** 추가로 **한국이지론**(온라인 대출중개회사)도 통합(또는 자회사) 추진

○ **캠코**의 **서민금융 인프라**(서민금융 나들목, 콜센터), **담당기능**(취업·창업 알선, 소액대출 등)은 **총괄기구** 출범시 **이관**

다 기관명 및 법인성격

□ 서민금융총괄기구의 **법상 기관명**은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명칭

□ 총괄기구로 통합하는 **대상기관들의 기관 법적성격***이 **다양한 민간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 휴면예금관리재단(재단), 신복위(사단), 국민행복기금(주식회사) 등

○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민간 금융회사**(은행 등) 등이 출자하는 **'법상 특수법인(민간기구)'**으로 설립

라 조직 구성 및 운영

□ **(의결기구)** 서민금융총괄기구 내 중요사항 결정 등을 위해 **서민금융 운영위원회***를 설치

* 총괄기구 기관장, 서민금융·일자리·소비자보호 민간전문가, 관련부처 등 참석

○ 법상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는 **의결기구**로 **존치**시키되, **모든 업무**를 **서민금융총괄기구**가 **통합 담당**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를 의결기구로 존치시키는 이유

①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의결기구 구성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총괄기구의 서민금융 운영위원회에서 포괄하기 곤란

* 재단 이사회(4개부처 차관, 금융협회장 3인 등 11인) / 신복위 총회(협회장 등 8인)

②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등을 위해 **휴면예금**은 총괄기구와 **별도 관리**

③ 대출을 취급하는 총괄기구가 **채무조정도 의결**할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

□ (**기관장**) 유기적 업무수행 등을 위해 **총괄기구 長**이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 신복위 위원장**을 **법상 겸임**

□ (**업무조직**)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실제 업무(기능)를 담당**하는 **업무조직**은 원칙적으로 **모두 통합**

* 주요 담당 업무별로 사무조직을 통합 구성·운영

○ **휴면예금관리재단**(대출,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신복위**(채무조정) 사무 및 **행복기금 사무국** 업무도 총괄기구 사무조직이 담당

마 자본금

□ (**조성**) ① **휴면예금관리재단**, ② **캠코**, ③ **은행 등 금융권**이 **분담출자**하여 **약 5천억원 ~ 1조원 수준의 자본금** 조성

① **(휴면예금관리재단)** 재단이 **일반기부금**, **이익잉여금** 등을 **총괄기구에 출자**

* 휴면예금은 원권리자 보호를 위해 현행처럼 미소금융 재단에 존치

② **(캠코)** 캠코의 **행복기금 출자분**을 총괄기구로 **이관**하고, 관계기관 협의, 서민금융협의회 논의를 거쳐 **출자규모 확정** 예정

③ **(은행 등) 신복위에 기부한 금융권 기부금, 금융권의 이지론 출자분** 등 이미 서민금융 지원에 활용중인 재원을 출자

* 향후 금융권 등과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출자규모를 협의해 나갈 계획
→ 대신 총괄기구는 자본금 운영수익 등을 활용하여 미소금융은행재단 운영비, 민간 금융상품 알선 등을 지원할 계획

□ **(활용)** 자본금은 총괄기구 **운영비**(종합상담 인력 인건비 등), **임대비용**(종합지원센터 운영비등), **전산시스템 연계 투자비** 등에 활용

○ 또한, **서민금융 자금공급 재원**, **신규 사업비**(민간금융상품 중개, 서민금융 정보 집적 등) 등의 재원으로 활용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1. 신복위, 미소금융, 햇살론 개인보증운영실적

□ ‘14.7월 현재 **신복위**(’12~)는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보증을 통해 **438억원 보증지원**(6,506건)

○ **햇살론**(’10~)은 **개인보증**을 통해 **3.5조원 보증지원**(46만건)

※ 미소금융은 개인보증사업을 운영하지 않음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2. 자본시장조사단 활동 성과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검찰·금감원·거래소 등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조사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

※ 조사단(23명) : 금융위(7), 검찰청(5, 검사 2 포함), 금감원(9), 거래소(2)

○ 조사단은 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사건분류를 수행**하고 **긴급·중대사건**은 증선위가 바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실시하여 **사건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

* Fast Track 처리 건수('14.9월말 현재) : 27건

** ('12.3월~'13.3월) 223일 → ('13.4월~'14.8월) 160일로 평균 60일 단축

○ 사건분류 등을 통한 **효율적 조사활동**을 통해 금감원 및 거래소의 **적체된 불공정거래 미착수 사건을 대폭 축소**

* 조사대기 사건 : ('12말) 75건 → ('14.9월) 50건
* 심리대기 사건 : ('12말) 141건 → ('14.9월) 133건

□ 조사단은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조사함**으로써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되도록 노력**

* CJ E&M·NHN IR팀에서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에게 차별적**으로 전달하여 주식을 선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을 제재

□ 또한 금년 5월 국제증권기구**(IOSCO)**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집행위원회(C4)에 가입**하고, 미국·중국·홍콩 등 **해외 조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불공정조사의 역량**을 강화

* 중국 증권감독당국(CSRC), 미국의 증권 및 선물감독당국(SEC 및 CFTC), 홍콩 증권감독당국(SFC)과 정보교류를 통해 이를 활용하는 등 국제공조를 확대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3. 소비자보호원 설립 논의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 최근 몇 년간 금융권에 금융소비자 피해 관련 사고가 지속됨

○ '07년 키코사태, '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13년 동양증권 계열사 CP 판매, 올해 초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등

□ 이는 동일기관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상반된 감독목표를 수행**함에 따른 구조적인 이해상충 문제에 기인함

○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의 초점이 금융기관 건전성에 집중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

○ 한편,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사건들로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건전성 감독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

⇨ 따라서 **현행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여 조속히 **금소원을 설립**함으로써,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도모할 필요

※ **해외**에서도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립하는 추세**

◦ (미국)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신설

◦ (영국)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담당기구인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를 건전성 감독기구와 분리하여 설치

◦ (호주) 2001년부터 건전성 감독기구(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영업행위 감독기구(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를 분리·운영중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4. 금융업권별 부실채권 정리 실적

□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여 직접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5-1.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 **(기술금융 혁신평가)**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 및 역량을 평가하고 이와 연계하여 **다각도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 기술금융 혁신평가(案)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예)
T			40
	기술금융 비중	평가기간 중 중기대출 공급액 대비 기술금융* 공급액 비중 * 기술금융: TCB 및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서 기반 대출, 투자	20
	기술기업 비중	평가기간 중 중기차주수 대비 기술금융 중기차주수 비중	20
E			20
	기술력 반영도	차주의 신용등급 대비 기술신용등급 평균 상향폭	10
	창업기업 지원	중기차주수 대비 업력 7년 이내 기술금융 중기차주수 비중	10
C			20
	신용지원 비중	평가기간 중 기술금융 공급액 대비 신용대출·투자 공급액 비중	10
	신용지원 증가율	직전 신용지원 공급액 대비 해당기간 신용지원 공급액 증가율	10
H			20
	기술금융 전문인력	이공계 전공자 또는 기술평가 3년 이상 경력자 등 전문인력 수 기술금융 관련 자체 및 외부 위탁 교육 수료자 및 교육시간	10
	기술금융 전담조직	기술금융 전담조직 구축 여부 기술금융 평가서 산출, 기술금융 여신 시행 등 실적	5
	기술금융 심사모형	은행의 비재무평가 중 기술 항목을 TCB 평가와 연계 TCB가 우수 기술(신용)등급 평가시 은행의 신용등급 조정	5

□ **(기술금융 종합상황판) 기업금융나들목, 은행연합회**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기술신용대출실적을 공개**(10월중)

○ **기보 보증부 대출, 정금공 온렌딩 대출, 그 외 은행 자율대출**로 구분하여 **건수 및 금액을 주 단위**로 업데이트

□ **(기술금융 박람회) 「창조경제 박람회」**(11.27~30일)와 연계하여 **정책금융기관 및 VC 등의 기술금융 상담·홍보의 場** 마련

○ 기술금융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공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해 **서훈·표창 등 포상과 인센티브**를 적극 시행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15-2. 기술금융 실적

□ **'14.8월말 현재**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은 1,661건에 1조 1,400억원 수준**(승인기준, 잠정)

< 은행별 기술신용평가 기반 대출 현황 ('14.8월말, 잠정) >

(단위 : 억원, 대출승인기준)

구 분		기보		온렌딩		은행 자율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특수은행	기업	455	1,669	233	3,302	19	112	707	5,083
	산업	11	105	3	125	6	46	20	276
	정금공	-	-	-	-	4	231	4	231
	수출입	-	-	-	-	6	119	6	119
	농협	42	115	1	5	-	-	43	120
	수협	-	-	5	77	-	-	5	77
시중은행	국민	149	482	19	372	16	103	184	957
	신한	113	442	13	168	45	324	171	934
	외환	37	112	11	317	3	8	51	437
	우리	121	310	51	1,297	26	147	198	1,754
	하나	59	144	21	386	47	474	127	1,004
	씨티	10	17	-	-	-	-	10	17
	SC	5	10	-	-	-	-	5	10
지방은행	경남	16	42	-	-	3	12	19	54
	광주	12	23	-	-	-	-	12	23
	대구	24	122	-	-	21	77	45	199
	부산	19	35	1	1	28	37	48	73
	전북	5	38	-	-	1	1	6	39
	제주	-	-	-	-	-	-	-	-
합 계		1,078	3,666	358	6,050	225	1,691	1,661	11,407
(평균, 억원/건)		(3.4)		(16.8)		(7.5)		(6.9)	

신 동 우 의원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1. 최근 3년간 내부감사 및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 현황,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최근 3년간('12~'14) 외부기관(감사원) 감사결과 (총 12건)

감 사 명	감사 기간	처분 요구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12.01.09 ~ 02.28	붙임1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12.03.05 ~ 03.16	
중소기업 금융지원실태	'12.04.04 ~ 06.08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12.08.16 ~ 10.12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실태	'12.11.19 ~ 12.14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13.03.18 ~ 03.29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13.03.04 ~ 04.19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13.05.30 ~ 06.28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 감독실태	'13.11.06 ~ 12.13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14.03.10 ~ 03.21	
기업어음,회사채등 시장성 차입금 관리감독 실태	'14.01.20 ~ 03.06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검사감독 실태	'14.03.12 ~ 04.11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 : 붙임1

<붙임 1>

12~'14년 감사원 처분 요구에 따른 조치 진행 상황

연번	처분종류	처분요구제목	시행일	감사사항	진행상황	처 리 과
1	통보(모범)	공영(건강).유사보험 관련 보험사기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	보험과
2	통보	상호저축은행의 비업무용부동산 장기 보유 등에 대한 지도.감독 불철저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중소금융과
3	통보	상호저축은행의 다른 회사의 경영권 확보 등에 대한 금지 규정 마련 미흡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중소금융과
4	통보	상호저축은행과 다른 금융회사 대주주 간 교차대출 금지에 대한 감독 미흡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중소금융과
5	통보	출자한 상호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을 위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 마련 미흡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중소금융과
6	통보	금융감독기관 간 정보공유 등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	의사운영팀
7	통보	연체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서민금융과
8	통보	대출성 카드자산에 대한 위험관리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중소금융과
9	통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결정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	중소금융과
10	통보	변액보험 특별계정 보수 관련 공시기준 미비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보험과
11	통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보상 등 관리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보험과
12	통보	자동차보험금 부당지급 통제를 위한 시스템구축 등 미비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보험과
13	통보	연체상환 등 신용정보 변동사항 보고지연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	서민금융과
14	통보	합병인가 심사기준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	중소금융과
15	통보	유상증자 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면제규정 불합리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	공정시장과
16	통보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실효성 확보 부적정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요청	공정시장과
17	통보	금융기관 사외이사 결격요건 규정 불합리	2012.07.10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조치완결	자본/중소
18	통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방안 미흡	2012.11.21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	조치완결	산업금융과
19	통보	중소기업 여신취급 관련 불공정영업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2.11.21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	조치완결	은행과
20	통보	2011년도 결산 및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작성 업무처리 부적정	2013.02.18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I	조치완결	산업금융과
21	통보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부적정	2013.02.18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I	조치완결요청	산업금융과
22	통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복 조정 필요	2013.02.18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I	조치완결	산업금융과
23	통보	상시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3.02.18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I	조치완결요청	산업금융과
24	통보	상호저축은행 부실 PF사업장(채권) 매입지원제도 운용 부적정	2013.03.04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Ⅱ	조치완결	중소금융과
25	통보	상호저축은행 대출채권 건전성 감독기준 불합리	2013.03.04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Ⅱ	조치완결요청	중소금융과
26	통보	상장법인 부도발생 사실 통보의무 미이행	2013.03.04	금융공기업 경영관리 실태Ⅲ	조치완결	공정시장과
27	통보	국가채권 보전 및 회수조치 부적정	2013.04.23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조치완결	행정인사과
28	통보	우리금융지주 임직원의 우리투자증권 겸직 승인 부적정	2013.05.03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실태 I	조치완결	금융정책과
29	통보	햇살론 지원사업 추진방법 및 평가운영 부적정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완결요청	서민금융과
30	통보	보증.대출기관의 부당한 서민불편 및 부담 초래 행위에 대한 감독 불철저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완결요청	서민금융과
31	통보	햇살론 대환대출 지원대상 대부업체의 채무 인정 범위 불합리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완결요청	서민금융과
32	통보	보증기관 상각채권 및 구상채권 채무조정 업무감독 부적정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완결요청	서민금융과
33	통보	서민금융지원시책과 제도에 대한 총괄.조정기능 미흡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완결요청	서민금융과
34	통보	서민금융나들목, 1397 통합 콜센터 운영 및 홍보 부적정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완결요청	서민금융과
35	통보	채권 매각에 따른 신용회복 기회 상실 및 불법추심 방치 부적정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 중	서민금융과
36	통보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련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 중	서민금융과

37	통보	대부업자 영업 및 사업자등록 여부 관리 부적정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	조치 중	서민금융과
38	통보	상호금융 대출과 연계된 구속성 행위에 대한 규제 미흡	2013.10.22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II	조치 중	중소금융과
39	통보	청약증거금에 대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미지급 불합리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조치 중	자본시장과
40	통보	공매도 거래현황 공표제도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조치 중	자본시장과
41	통보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공시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조치 중	공정시장과
42	통보	금융투자회사 퇴임 및 퇴직 임직원 제재근거 불합리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조치 중	자본시장과
43	통보	공공정보의 집중활용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조치 중	서민금융과
44	통보	정보기술 보호업무 모범규준 불합리	2013.11.18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조치 중	전자금융과
45	통보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부적정	2014.04.04	금융위원회 재무감사	조치완결요청	공정시장과
46	통보	융역업체 보안관리 및 관련 규정 운용 부적정	2014.04.10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감독실태	조치완결예정	전자금융과
47	통보	금융권 정보보호 담당기관에 대한 역할, 기능 조정 미흡	2014.04.10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감독실태	조치완결예정	전자금융과
48	통보	금융권 정보보호 담당기관 정보공유 미흡	2014.04.10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감독실태	조치완결예정	전자금융과
49	통보	재해복구센터 구축, 운용 기준 부적정	2014.04.10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감독실태	조치완결예정	전자금융과
50	통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보안관리 감독 부적정	2014.04.10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감독실태	조치완결예정	전자금융과

- 처분요구서(별도 제출)

□ 최근 3년간('12~'14년) 실시한 내부 감사결과

(내 부) 감 사 명	감사 기간	결과보고서
2013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3.12.4 ~ 12.10	붙임2

* 2012년 자체회계 및 기관운영 감사는 해당연도 감사원 정기감사에 따라 미실시
* 2013년 자체감사 시 **'12. 1. ~ '13. 10.** 기간에 대한 감사 실시
* 2014년 자체감사는 12월 중 실시예정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현황 : 붙임2

<붙임 2>

자체감사(정기)
2013.12.4 ~ 12.10

2013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4. 2.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Ⅰ. 감사개요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나. 계약사무 및 물품관리 관련

다. 업무 관련

라. 민원업무 처리 관련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Ⅰ. 감사실시 개요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계약사무,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매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감사원은 실시여부를 기관평가에 반영)

* 「'13년 자체감사계획」('12.12.11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1 실 시 개 요

□ 감사기간 : '13.12.4(수) ~ 12.10(화), 5일간

□ 감사대상 : 以前 자체감사 대상 이후의 예산집행실태 등

○ **예산집행실태***는 '12.1월 이후, **민원처리실태**는 '12.12월 이후

* '12년에는 **재무·회계** 자체감사의 경우,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의 재무·회계 감사('13.3월) 실시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자체감사만 실시('12.12월)

□ **감사반원** : 감사담당관실 8명(감사담당관, 5급 3, 주무관 4)

□ **감사방법** : **서면점검**(필요시 현장실사)

2 감 사 중 점

□ **예산편성·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 **계약사무** 및 **물품관리**의 적정성

□ **민원업무** 처리의 적정성

□ 以前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의 적정성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예산집행·물품관리 및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

□ 예산집행 및 민원처리기한 준수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① **초과근무 관리 미흡**(본부 및 소속기관)

☞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점검 등 철저 필요**

② **일상감사 미이행**(대변인실, 행정인사과, FIU 기획행정실)

☞ **건당 5천만원 초과 이·전용 및 이월** 등은 일상감사 대상

〈계약사무 및 물품관리 관련〉

① **물품 인계·인수 및 관리**(행정인사과)

☞ **물품의 인계·인수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등 관리 철저 필요**

〈민원업무 처리 관련〉

① **서신민원 원본 관리 미흡**(금융정책과, 은행과, 중소금융과 등)

☞ **접수된 서신민원 원본을 규정에 따라 보존(10년) 필요**

② **국민신문고 민원 Q&A 관리 소홀**(은행과, 중소금융과, 자산운용과 등)

☞ **국민신문고 민원 Q&A를 적기에 업데이트하여 민원제기를 줄일 필요**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1 점검개요

□ 2012년 및 2013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중 **각 부서에서 직접 집행하는 관서운영경비**를 중심으로 점검

○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총액은 4,247억 25백만원**으로 대부분이 전출금·상환지출·이전지출* 등이며,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IBRD차관원리금상환, 모기지론이차보전, 농어가목돈마련장려기금출연 등

- **직접 집행액은 346.6억원**(8.1%)으로 이 중 **인건비**(170.9억원)**를 제외한 집행**(175.7억원)**을 중점 점검**

○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총액은 4,151억 69백만원**으로 대부분이 상환지출·이전지출* 등이며,

* 산은금융지주·중소기업은행 출자(설비투자펀드), IBRD차관원리금상환, 모기지론이차보전, 농어가목돈마련장려기금출연 등

- **직접 집행액은 3,438.9억원**(82.8%)으로 이 중 **인건비**(184.7억원)**를 제외한 집행**(3,254.2억원)**을 중점 점검**

□ 예산집행지침, 감사원 계산증명규칙 등 **관련 규정 부합여부** 및 **집행절차, 증빙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

○ 특히 직원들의 **위반 가능성이 많은 분야**(정부구매카드 사용, 초과근무 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

<2012년 및 2013년 일반회계 집행실적 (억원, %)>

연도	구 분	인건비	물건비	자산 취득	이전 지출	상환 지출	전출금등	계
2012	예 산 (비중)	171.4 (4.0)	157.7 (3.7)	24.9 (0.6)	489.0 (11.5)	28.8 (0.7)	3,385.3 (79.5)	4,257.1 (100.0)
	지 출 (비중)	170.9 (4.0)	151.2 (3.6)	24.5 (0.6)	487.6 (11.5)	27.5 (0.6)	3,385.3 (79.7)	4,247.2 (100.0)
	이 월	0	0.3	0	0	0	0	0.3
	불 용	0.5	6.3	0.5	1.4	1.3	0	9.8
2013	예 산 (비중)	185.5 (4.4)	173.7 (4.1)	3,124.1 (74.3)	693.2 (16.5)	27.7 (0.7)	0	4,204.5 (100.0)
	지 출 (비중)	184.7 (4.5)	168.3 (4.1)	3,085.9 (74.3)	686.1 (16.5)	26.5 (0.6)	0	4,151.6 (100.0)
	이 월	0	0.2	0	0	0	0	0.2
	불 용	0.8	5.2	38.2	7.1	1.2	0	52.7

2 점검결과 지적사항

① 정부구매카드 사용절차 미준수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경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 **제22조의1(정부구매카드 사용자의 실명 서명의무)**
>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용에 따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카드전표 등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카드전표 등에 서명란이 없는 경우에는 여백을 이용하여 서명하여야한다.

□ 그러나 위원회 **모든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실명 서명을 하지 않고 **소속 부서명**이나, **사용자 개인의 사인** 등으로 서명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됨

⇒ 향후 정부구매카드를 사용시에는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 보다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주의 : 본부 및 소속기관)

② 초과근무 관리·감독 미흡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서는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

□ 그러나 감사대상기간('12.1.1~'13.11.30) 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 중 일부가 규정과 달리 초과근무를 인정받아 **초과근무수당**을 수령

○ 특히, **휴일당직 근무자**의 경우, **당직수당**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여 **수당을 중복 수령**

⇒ 행정인사과는 **초과근무수당 수령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주의 및 환수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주의 및 환수 조치 : 초과근무수당 수령자, 주의 : 행정인사과)

③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미이행

□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에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집행의 경우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규정

○ 일상감사는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을 수행

*** 일상감사대상(금융위 일상감사 실시지침)**
- 예산이 5억원 이상인 사업 (제3조)
- (성과관리계획상 주요 정책과제 (집행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3조)
- **일정규모 초과 계약건**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기타공사: 8천만원, **용역·물품의 제조·구매: 5천만원)** (제4조)
- 건당 5천만원 초과 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 / 주거래 은행의 선정·변경 (제5조)
- **실·국 단위 이상에서 개최하는 워크숍, 연찬회 등 행사** (외부 참석인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과단위 행사 포함) (제6조)

□ 그러나 감사대상기간('12.1.1~'13.11.30) 중 관련 부서에서는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

⇒ 각 부서에서는 일상감사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
(주의 : 대변인실, 행정인사과, FIU)

나. 계약사무 및 물품관리 관련

1 점검개요

＜계약 현황＞

□ 2012년 위원회 계약 건수는 **총 169건**(물품계약 110건 및 용역계약 58건, 기타 1건)이며, 금액으로는 **45억 8,500만원**임

○ 계약방법으로는 **경쟁입찰 91건**(12억 5,600만원), **수의계약 70건**(27억 8,200만원), **기타 8건**(5억 4,600만원)임

□ 또한, 2013년 위원회 계약 건수는 **총 166건**(물품계약 76건 및 용역계약 90건)이며, 금액으로는 **23억 2,800만원**임

○ 계약방법으로는 **경쟁입찰 4건**(3억 9,700만원), **수의계약 153건**(16억 600만원), **기타 9건**(3억 2,500만원)임

＜물품관리 현황＞

□ 2013년말 위원회 **물품 보유현황**은 일반구매 **1,895점**에 금액으로는 **2억 1,300만원**임

○ 연도별 **불용품 처리현황**은 2010년 **관리전환 97점**(8억 6,100만원), 2011년 **양여 42점**(900만원), 2012년 **기타 452점**(7억원)임

<2012년 및 2013년 계약 현황>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계약유형				계약방법			
		합계	물품	용역	기타	합계	경쟁	수의	기타
2012년	건수	169	110	58	1[1)]	169	91	70	8[2)]
	금액	4,585	701	2,674	1,210	4,585	1,256	2,782	546
2013년	건수	166	76	90	-	166	4	153	9
	금액	2,328	287	2,042	-	2,328	397	1,606	325

1) 무체재산권 계약으로 임차보증금이 이에 해당

2) 시작은 경쟁입찰이었으나 복수의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계약

<보유물품 현황 (2013년말 기준)>

(단위 : 점/백만원)

구분 / 장비명	일반구매		리스구매		합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타잡기기	1,895	213			1,895	213
물리시험 및 측정기기	2	1			2	1
사무용기기	3,705	2,144			3,705	2,144
사무용집기	3,973	720			3,973	720
산업기계	47	24			47	24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	59	26			59	26
의료 및 화학분석기기	1	1			1	1
인쇄사진 및 시청각기기	28	34			28	34
전기.통신기기	486	393			486	393
합 계	10,196	3,556			10,196	3,556
비 율	100%		0%		100%	

<연도별 불용품 처리현황>

(단위 점/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관리전환	97	861					97	861
양 여			42	9			42	9
매 각								
폐 기								
기 타					452*	70	452	70
합 계							591	940

* 조립 완성품 경우, 부속품을 각자 수량으로 계산하여 관리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하나의 완성품으로 계산하여 관리

2 점검결과 지적사항

① 물품의 인계·인수 절차 미준수

□ 물품의 명확한 책임 규명을 위하여 **「물품관리법」** 제24조(표준서식)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재물조사), 제38조(표준서식의 인계)에서는 **물품관리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

○ 전임자는 그 교체된 날의 전일 현재로 표준서식에 따라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도록 규정

□ 그러나 담당과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소관 물품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

⇒ **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이 교체**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할 것 **(시정 : 행정인사과)**

② 물품 관리·운용 미흡

□ 취득한 물품에 전자태그 미발행

○ RFID(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은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유물품에 **전자태그를 발행・부착・검사**하도록 규정

- 다만, 부득이한 경우 물품 취득시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전자태그를 발행 및 부착하고 리더기로 해당 물품을 검사하여야 함

○ 그러나 감사일('13.12월) 현재 '13년에 취득한 물품 중 **188건**에 대하여 **전자태그가 미발행 및 미부착**된 상태

<전자태그 미발행 물품 목록>

물 품	물량(개)	취득일	취득가액(천원)
데스크톱 컴퓨터 등	14	2013-10-23	8,720
캐비닛·보안장비	2	2013-10-07	3,445
데스크톱 컴퓨터 등	38	2013-09-30	19,740
유선전화기	20	2013-09-27	360
문서세단기 보조용품	1	2013-09-26	730
데스크톱 컴퓨터 등	12	2013-09-16	7,260
레이저프린터	3	2013-09-12	1,392
책장·캐비닛·칸막이 등	83	2013-09-02	9,863
작업용 의자·탁자 등	15	2013-08-30	4,727
계	188		56,237

□ **불용 및 양여 물품의 RFID(물품관리시스템) 미등재**

○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불용을 결정**하고, 불용품의 활용을 위해 필요하면 불용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

○ 또한, **'불용'** 또는 이에 따른 **'양여'**의 결정을 한 물품은 RFID에 그 내역을 등재하여 불용처분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함

○ 그러나 담당 과에서는 '13년 정기재물조사 결과 내용연수가 초과한 물품 등을 **불용결정**('13.5월)하고 **비영리법인**에 **양여**하였으나

- 동 내역을 RFID에 등재하지 않아 효율적인 물품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향후 취득한 물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시에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고, **불용 및 양여 처분한 물품**에 대해서도 **RFID에 등재**하는 등 물품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 : 행정인사과)

다. 업무 관련

＜점검결과 지적사항＞

① 행정규칙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 절차 누락

□ 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지침**』에서는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을 제·개정** 할 경우, 각 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검토하고 개선·정비**하도록 규정

□ 그러나 감사대상기간('12.1.1~'13.11.30) 제·개정된 행정규칙 **80건 중 36건만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요청하여 **의뢰비율은 45.0%**에 불과

⇒ **훈령·고시 등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경우 **부패영향평가**를 자체 감사부서에 의뢰하여 법령 제·개정 절차를 준수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부패영향평가 의뢰여부를 확인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사후절차를 진행할 것

(주의 :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국제협력팀,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행정인사과, 규제법무담당관실, 의사운영정보팀, 기획행정실)

② 업무시간 내 외부강의 관련 복무관리 미흡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에 따라 근무시간내 **외부강의**는 직무수행과의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출장처리**를 하여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예규)**
> 제11장 외부강의 / 자. 외부강의 출강시 복무관리 철저
> (1)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
> ※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그러나 감사대상기간('12.1.1～'13.11.30) 동안 외부강의 출강을 출장처리 하지 않은 일부 사례가 발견

⇒ 행정인사과에서는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 출강**을 할 경우 **인사관리시스템에 출장 상신** 여부를 점검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 : 행정인사과)**

라. 민원업무 처리 관련

1 현황 분석

① 민원 처리절차

□ 모든 위원회 민원은 **민원센터에 접수되어 처리과에 배분·처리**

【민원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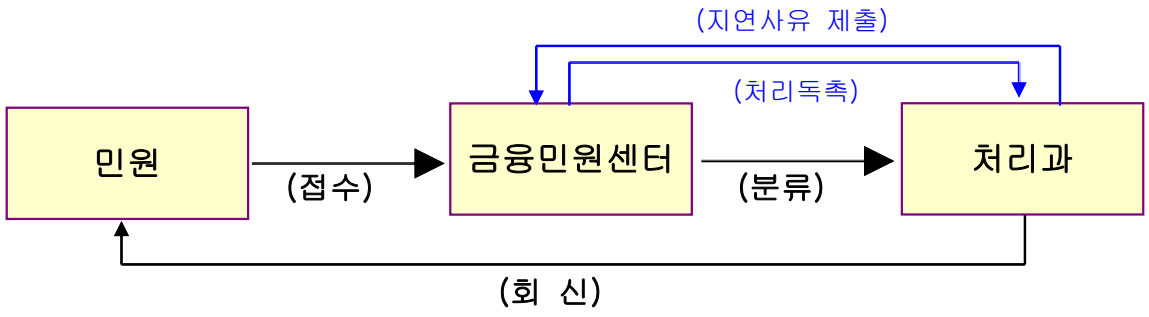

② 금융민원센터 전담인력 현황 및 역할

□ **팀장**(1), **주무관**(1), **공익**(1) 등 3명으로 구성, 민원접수·분류, 국민신문고 운영 등의 업무 담당

< 금융민원센터 업무분장 >

소 속	직위	담 당 업 무
금융위(2)	팀장 * 의사운영팀	■ 총 괄
	주무관	■ 민원·제안 접수·분류 ■ 국민신문고 관리·운영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및 자체제안심사단 운영 ■ 권익위, 행안부 및 총리실 민원업무 관련 대응 ■ 인허가, 등록·신고 민원(관련 상담 포함) 접수·분류
공 익(1)	공 익	■ 문서수발, 민원분류 등 보조

③ 민원 처리현황

□ **점검대상기간('12.12.1~'13.11.30) 중 총 5,629건 접수·처리**

<접수방법별 민원 접수 · 처리 현황>

구분	신문고	홈페이지	방문	기타 (타기관에서 이첩 등)	합계
건수	2,559건	1,381건	963건	726건	5,629건

○ 통상적으로 **매월 470건 내외의 민원이 발생**하며, 국민행복기금 및 하우스푸어 등 **특정사안 발생시 일시적으로 급증**

□ **부서별 : 서민금융과 → 금융정책과 → 산업금융과** 순

○ 서민·금융·산업등 3개 과의 민원은 모두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 관련 민원**으로 총 3,575건으로 **전체 민원의 63.5%** 차지

<주요 부서별 민원 접수 · 처리 현황('12.12.1~'13.11.30)>

부서	서민금융	금융정책	산업금융	규제법무	보험	은행
건수	1,838건	1,104건	663건	472건	417건	303건
부서	자본시장	중소서민	전자금융	공정시장	자산운용	감사
건수	246건	183건	116건	87건	60건	54건

□ **속성별** : 일반민원*(4,704)→ 법령질의(696) → 제도개선(101) → 진정 등 기타(128)의 순

* 일반민원 대부분도 **현행제도 내에서 해소가 어려운 진정성 민원**

* **법령질의 만족도는 82.0%**로 전체 평균(48.6%)보다 월등히 높음

2 점검결과 지적사항

① 민원 처리기한 미준수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일반질의·상담사항은 7일 이내, 법령에 대한 질의는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 그러나 감사대상기간('12.1.1~'13.11.30) 중 발생된 **5,629건**의 민원 중 일부 민원은 기간 연장조치 없이 **민원처리기간을 경과**(1일 초과)**하여 처리**한 사례가 발견

⇒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법정처리기간을 잘 준수**하여 향후 **민원처리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주의 : 금융정책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② 서신민원 원본에 대한 관리 미흡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1]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2]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물관리기준표"**에서는 **민원서류의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규정

1)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운영하여야 하다.

○ 또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접수기관은 해당 **민원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함

* **제1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③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서류의 원본**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례가 발견

⇒ 기록물관리기준표에 따라 **민원서류 원본**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 : 행정인사과, 금융정책과, 은행과, 중소금융과, 자산운용과)

③ 국민신문고 민원 Q&A 관리 소홀

○ 권익위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할 때, 먼저 **유사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민원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민원담당자는 민원처리 건 사례로 제공할 가치가 있는 건은 **『민원 Q&A』**에 등재하도록 하여, **감사일 현재 261건이 등재**되어 있음

○ 그러나 **이중 226건(86.6%)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게재기간 만료"로 민원인이 열람할 수 없음** (35건만 민원인이 열람 가능)

※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직원(1인)의 업무 과중(민원 상담 및 처리 연 5,629건의 민원 접수 및 분배등) 등에 따라 『민원 Q&A』 자료가 적시에 업데이트 되지 않는 측면

⇒ 각 과에서는 게재기간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는 **『민원 Q&A』에 대해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민원 Q&A』 등재 건수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 **(권고 : 본부 및 소속기관)**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분야	지 적 사 항	조치 구분
예산 집행 / 회계 처리	■ **정부구매카드 사용절차 미준수**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소속 부서명 또는 개인 사인으로 서명하지 말고 **실명으로 서명**할 것 **(본부 및 소속기관)**	주의
	■ **초과근무 관리・감독 미흡** ・행정인사과는 초과근무수당 수령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주의 및 환수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주의 및 환수 조치: 초과근무수당 수령자, 주의 : 행정인사과)**	주의
	■ **일상감사 미이행** ・**「금융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3조~제6조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일상감사를 이행하여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함으로써 시행착오 및 사전 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대변인실, 행정인사과, FIU 기획행정실)**	주의
계약 사무 / 물품 관리	■ **물품의 인계・인수 절차 미준수** ・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의 교체시에는 물품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는 등 물품의 인계・인수 절차를 준수할 것 **(행정인사과)**	시정
	■ **물품 관리・운용 미흡** ・물품을 취득할 경우, 취득 즉시 **전자태그를 발행·부착**하고 **불용 및 양여 물품은 RFID(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하는 등 물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행정인사과)**	시정
업무 관련	■ **행정규칙 제・개정시 부패영향평가 절차 누락** ・향후 **행정규칙**(훈령, 고시 등)을 제・개정할 경우 **부패영향평가를 자체 감사부서에 의뢰**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부패영향평가 의뢰 여부를 확인**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사후 절차를 진행할 것 **(금융정책과, 산업금융과, 국제협력팀,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행정인사과, 규제법무담당관실, 의사운영정보팀, FIU 기획행정실)**	주의

분야	지 적 사 항	조치 구분
	■ **업무시간 내 외부강의 관련 복무관리 미흡** ・행정인사과는 **근무시간내 외부강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장처리**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행정인사과)**	주의
민원 처리	■ **민원 처리기한 미준수** ・접수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한**(일반질의・상담 : 7일, 법령질의 : 14일)을 준수할 것 **(금융정책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주의
	■ **서신민원 원본 관리 미흡** ・접수된 **서신민원의 원본**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년간 보존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할 것 **(금융정책과, 은행과, 중소금융과, 자산운용과, 행정인사과)**	주의
	■ **국민신문고 민원 Q&A 관리 소홀** ・국민신문고의 **민원 Q&A를 적기에 업데이트**하여 불필요한 민원제기를 줄일 필요 **(본부 및 소속기관)**	권고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2. 최근 3년간(2012년 ~ 2014년 9월) 직원 징계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 - 직급, 주요업무, 징계사유, 부적절행위 적발기관, 징계사항 및 결과 등

□ 징계현황(2009년 이후)

직급	주요업무	징계사유	부적절행위 적발기관	징계결과
서기관	중소서민금융 정책관 과장	금품수수	검찰	파면 ('13.2)
서기관	금융정책국 팀장	음주운전	경찰	견책 ('14.2)
서기관	중소서민금융 정책관 과장	금품수수	대통령비서실	감봉 ('14.9)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3. 최근 3년간(2012년 ~ 2014년 9월) 퇴직자 중 산하 단체나 직할기관, 금융사 등으로 재취업한 현황 -성명, 퇴임당시 직책 등 경력, 재취업 직장명 및 직책, 퇴직 및 재취업 일시

□ 재취업 현황(2012년 이후)

연번	성 명	직위/직급	주요이력	재취업기관	직위	퇴직 및 재취업 시기
1	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행정인사과장 감사담당관	금융결제원	감사	12.03
2	김○○	행정사무관	금융소비자과 운용기획팀	예금보험공사	-	12.05
3	이○○	감사담당관	제도운영과장 공정시장과	신용보증기금	이사	12.05
4	김○○	사무처장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정책국장	예금보험공사		12.05
5	전○○	서기관	국가정보원 파견 기획행정실	IBK캐피탈	부사장	12.08
6	김○○	일반계약직	자산운용과	한국증권금융	-	12.08
7	박○○	금융정보분석원장	기재부 국고국장 우본 보험사업단장	한국증권금융	사장	12.11
8	홍○○	상임위원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서비스국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13.11
9	유○○	증선위 상임위원	기재부 국고국장 대변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13.11
10	이○○	제도운영과장	기획행정실 국가정보원 파견	전국은행연합회	감사	14.01
11	김○○	자본시장조사단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공정시장과장	삼성화재	상무	14.01
12	진○○	금융정보분석원장	자본시장국장 대변인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14.02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4. 금융위가 감사를 나갈 수 있는 기관 목록 및 최근 5년간('10~'14) 감사 현황 및 결과

□ 최근 5년간('10~'14)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총 18건

감 사 명	감사 기간	감사결과 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종합감사	'10.03.29 ~ 04.06	붙임1
금융결제원 종합감사	'10.05.31 ~ 06.14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감사	'10.11.15 ~ 11.26	
신용회복위원회 종합감사	'11.08.25 ~ 09.07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감사	'11.11.21 ~ 11.29	
미소금융중앙재단 종합감사	'11.10.20 ~ 10.28 / '11.12.05 ~ 12.16	
한국금융연구원 종합감사	'12.05.30 ~ 06.08	
여신금융협회 종합감사	'12.09.06 ~ 09.14	
금융보안연구원 종합감사	'12.10.29 ~ 11.06	
한국공인회계사회 특정감사	'13.02.20 ~ 02.21	
자본시장연구원 종합감사	'13.05.23 ~ 06.07	
보험연구원 종합감사	'13.07.15 ~ 07.23	
금융연수원 종합감사	'13.09.24 ~ 09.30	
금융결제원 종합감사	'13.11.05 ~ 11.18	
금융결제원 특정감사	'14.02.04 ~ 02.21	
코스닥협회 종합감사	'14.02.18 ~ 02.28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감사	'14.05.12 ~ 05.27	
신용정보협회 종합감사	'14.09.15 ~ 09.19*	

* 신용정보협회 감사는 현재 실지감사내용 내부검토 중이며 감사결과 처분요구일은 미정

※ 금융위원회는 감사원, 금감원 등과의 중복감사를 배제하고 감사인력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13개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 중

- 미소금융중앙재단, 공인회계사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금융결제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연수원, 금융연구원, 회계기준원, 금융보안연구원, 신용회복위원회,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2010년 한국회계기준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0. 4.

금 융 위 원 회
감사담당관실

- 목 차 -

Ⅰ. 감사개요 ····· 1

Ⅱ. 한국회계기준원 현황 ····· 2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5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조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7

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8

다.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10

3. 조치계획 및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 12

4. 감사결과 처리요령 ····· 13

Ⅰ 감사 개요

〈 목 적〉

◇ 한국회계기준원의 위탁사무 처리현황 및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업무처리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

□ 법적 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14조**(지휘·감독)

*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

※ 외감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금융위는 회계처리 기준에 관한 업무(제·개정, 해석, 질의회신)를 회계기준원에 위탁

□ 감사성격 : 정기 업무감사

※ (舊)금융감독위원회는 **2005년 11월 회계기준원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 동 기관에 대한 감사는 미실시

□ 실시기간 : 2010. 3. 29 ~ 4. 6 (7일간)

□ 대상범위 : '06.1.1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의 **조직운영·관리, 예산집행·회계처리 및 위탁업무 처리상황**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4명*

* 감사담당관실 2명, 공정시장과 2명

Ⅱ 한국회계기준원 현황

□ 설립목적 및 연혁

○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 1999. 9. : 한국회계기준원 설립
- 2000. 7. :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업무 등 수탁(외감법시행령)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 **원장(서정우, 55년생)** :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現),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 **회 원** : 13개 기관(공인회계사회, 상장사협의회, 은행연합회등)

□ **조직·정원 : 1**실 5팀, 23명(원장, 상임위원, 직원 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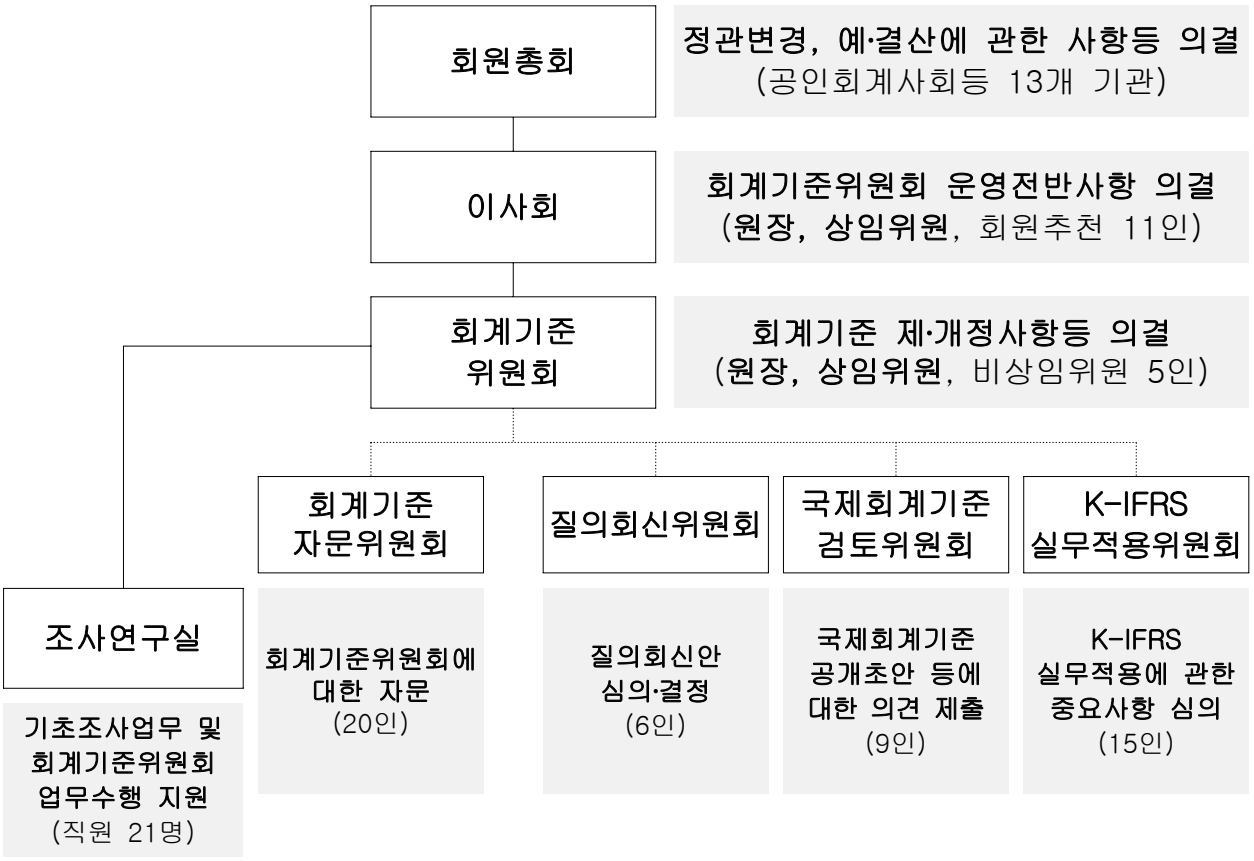

□ 주요업무

○ 회계처리기준 제·개정

○ 회계처리기준 해석 및 질의회신

□ 연도별수입 · 지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E)
운영수익(a)	2,475	2,880	3,400	3,720	3,692
• 법정분담금[1]	693	775	1,306	1,661	2,310
• 회원분담금[2]	1,560	1,690	1,268	1,317	1,093
• 기타(이자 등)	222	415	826	742	289
운영비용(b)	2,477	2,851	3,359	3,242	3,692
• 인력관리비	1,750	2,039	2,155	2,167	2,399
• 연구관리비	334	374	354	451	550
• 일반관리비등	393	438	850	624	743
차이(c=a-b)	△2	29	41	478	0

1) **법정분담금:** 외감법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유가증권발행분담금의 5%)중 법정적립금('06년까지는 50%, 07년부터는 30%)을 제외한 금액

(단위: 백만원)

연도별 법정분담금	'04	'05	'06	'07	'08	'09	'10(E)
운영경비	800	750	693	775	1,306	1,661	2,310
적립금	800	750	693	418	560	712	990
합 계	**1,600**	**1,500**	**1,386**	**1,193**	**1,866**	**2,373**	**3,300**

2) **회원분담금:** 각 회원사는 '02년 이후 동결된 분담금액에 따라 연2회 균등분납(1.31, 7.31)하여 왔으나, 2008년부터는 법정분담금 증액(4% → 5%)에 따라 회원 분담금 축소 조정

'10년 회원별 분담금 예산규모	금액(백만원)	분담율(%)
코스닥협회, 상공회의소,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212	19.2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61	24.0
전국경제인연합회	135	12.4
한국금융투자협회	154	14.1
한국거래소	331	30.3
회원별분담금 총액	**1,093**	**100.0**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한국회계기준원은 정부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정(해석, 질의회신 포함)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민간 독립기구(비영리 사단법인)로서

○ 기업회계기준의 제·개정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음

【2009년 주요 위탁업무 처리현황】

①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개정 관련 업무

- 회계기준 개정·공포(6건), 공개초안 심의·의결(9건), 일반 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 발표(7건), 회계기준 적용 의견서 발표(2건)등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개정 관련 업무

- 제·개정(7건), 공개초안 의결(11건), 국제회계기준 검토의견 제출(27건)등

③ 질의접수·회신 건수 : 총 65건 접수(35건 회신, 30건 철회)

□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의 정원(2010년 4월 현재)은 원장, 상임위원(1), 조사연구실(21명)등 총 23명으로,

○ '06 ~ '09 기간중 연간 평균 집행경비는 29.8억원이며 인건비(연평균 20.3억원, 68%), 연구개발비 및 일반관리비로 구성됨

⇒ 감사결과 조직운영·관리, 예산집행·회계처리 및 위탁업무 수행 부분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다만, 각 부문별로 **일부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조직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원장, 상임위원(1) 및 조사연구실(5팀, 21명)등 23명으로 운영되며, 조직관리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시간외근무·연차유급휴가제도 운용, 급여결정시스템 및 직원연수제도 등 일부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① 시간외근무 및 연차유급휴가제도 운용 부적정

○ '06년~'09년 기간중 직원 22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 178.5일과 '07.12~'09.12 기간중 직원 22명의 초과근무 12,600 시간 발생 및 관련 보상 미실시

⇒ **휴가사용 촉진을 통해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차후 불가피한 시간외근무 및 휴가 미사용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 필요**(개선통보)

② 급여결정시스템 미흡

○ 매년 직원과의 연봉계약 체결시 전년도 개인별 연봉금액에 당해연도 인건비 총액 인상율 및 다면평가 등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직원의 연봉액을 결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직급별 연봉등급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급여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직급별 연봉등급 및 연봉결정기준 등이 반영된 시스템 마련을 통해 급여결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필요**(개선통보)

③ 직원의 국내외 연수제도 운영 개선 필요

○ ‘04년 이후 기준원의 지원을 받아 연수를 완료한 직원은 4명(국내연수 2명, 국외연수 2명)으로 이들에게 지원된 경비는 3.2억원에 달하나 이 중 3명(국내연수 1, 국외연수 2)은 의무복무기간(연수기간의 2배)을 채우지 못하고 1년여만에 퇴직함으로써 연수효과 퇴색

⇒ **연수전 최소 복무기간, 연수기간 및 지원금반환규정 개선등 연수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개선통보)

나. 예산집행·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연간 평균 운용경비는 29.8억원이며, 운용경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집행(연평균 20.3억원, 68%)되고 있고, 05년도 검사결과에 따라 ‘업무추진비집행시행세칙’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부분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 다만, 인건비예산 편성방식,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지급방식 및 업무추진비 집행방식 등 일부에 개선이 필요함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① 예산 편성시 인력관리비 비목의 구체화 필요

○ 지출예산의 인력관리비중 상근임직원 급여 과목에 직급별 세부 인건비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인건비 총액으로만 계상하여 예산 승인을 받음

⇒ **직급별 인건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계상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심의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개선통보)

②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지급수당 개선 필요

○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안건심의 및 회의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시 이를 인건비 항목에 포함하여 편성하고 실제 지급에 있어서도 매월 월정액(275만여원)을 급여성으로 지급

⇒ **관련 예산 편성시 '안건심의·검토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으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안건심의 및 회의참석 실적에 따라 실비로 지급토록 개선**(개선통보)

③ 클린카드 도입등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

○ '업무추진비 집행 시행세칙'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심야시간대(밤 12시 이후)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며, 사용장소에 제한이 없는 일반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집행

⇒ **클린카드 도입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현지조치)

다.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처리절차·과정·내용 등에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다만, 질의회신위원회 의결절차 등 일부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

① 질의회신위원회 의결절차 개선 필요

○ 질의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질의회신위원의 의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 등이 미비

⇒ **질의회신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질의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의견제출 및 의결참여를 제한토록 관련 규정 개정**(개선통보)

② 장기 미상환 차입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이자비용 발생 개선

○ '05년도 발생한 차입금(5.4억원)이 '10년 3월 현재까지도 상환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발생

⇒ **차입금 상환자금을 검토하여 조기 상환계획 마련 필요** (개선통보)

③ 회계기준위원회 회의 관련

○ 회계기준위원회는 공개가 원칙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외부인이 공개회의에 참여한 경우가 거의 없음

⇒ **회계기준 제·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안건 관련 자료의 사전 홈페이지 공개 확대등 외부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함이 필요**(현지조치)

3. 조치 계획 및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제14조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일련번호	지 적 내 용	조치구분
1	시간외근무 및 연차유급휴가제도 운용 부적정	개선통보
2	급여결정시스템 미흡	개선통보
3	직원의 국내외 연수제도 운영 개선 필요	개선통보
4	예산편성시 인력관리비 비목 구체화 필요	개선통보
5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에 대한 지급수당 개선 필요	개선통보
6	업무추진비 집행 개선(클린카드 도입 등)	현지조치
7	질의회신위원회 의결절차 개선 필요	개선통보
8	장기 미상환 차입금으로 인한 불필요한 이자비용 발생 개선 필요	개선통보
9	회계기준위원회 회의 공개 관련	현지조치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통보 :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기종합감사
2010.5.31~6.14

2010년 금융결제원
감사 결과 보고서

2010. 8.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Ⅰ. 감사개요 ····· 1

Ⅱ. 금융결제원 현황 ····· 2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4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기본재산 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5

나.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7

다. 예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8

라. 급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10

마.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 12

3. 감사결과 처리요령 ····· 13

Ⅰ 감사 개요

〈 목 적〉

◇ 우리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제고**

□ **법적 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 **감사성격 :** 정기 업무감사

※ 금융결제원에 대하여는 그 기능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03년, '05년, '07년등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왔음

□ **실시기간 : 2010. 5. 31(월) ~ 6. 14(월)** (10일간)

□ **대상범위 :** '07.1.1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의 **내부통제, 고유·수익사업, 예산·회계, 급여·복지, 중요시설 관리**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7명*

* 감사담당관실 3명, 금융정책과 1명, 규제법무담당관실 1명, 금융감독원 2명

□ **중점 감사사항** : **기본재산 관리, 고유·수익사업 운영, 예산·회계처리, 급여·복지, 정보시스템** 등

Ⅱ 금융결제원 일반현황

□ 연 혁

○ '86. 6.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설립

* 전국어음교환관리소('84.5)와 은행지로관리소('77.6) 통합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7(한국은행 강남지점 건물)

□ **조직 및 인원(정원) :** 4본부 7부 8실 1연구소 2센터 6지역본부, 615명(임원 7명)

* 원장 : 송창헌(59세) / 서울대(법학과), 한국은행 부총재보('07.4 ~ '10.3)

감사 : 진석규(56세) / 연세대, 기재부 FTA국내대책본부 전략기획단장

【조직 및 인원(현원 기준)】

부산경남지역본부(4명) / 충청지역본부(3명) / 광주전남지역본부(5명) / 경기강원지역본부(4명) / 대구경북지역본부(5명) / 전북지역본부(4명)

□ 주요업무

○ 어음교환소 설립·운영 및 지로제도 운영
○ 금융공동망(CD, 전자금융, 타행환등) 구축·운영
○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공인인증등)
○ 신용카드 관련 부가통신사업(VAN) 등 수익사업

□ 고유사업 및 수익사업 운영현황('09년도)

고유사업: 1,077억원		수익사업: 869억원	
회 비 (898억원)	■ 기본회비 (134억원) * 11개 사원은행(한은 40%) ■ 업무별회비 (764억원) * 사원(11), 준사원기관(10), 참가기관(43)이 서비스망 이용실적에 따라 분담	매 출 (745억원)	■ 상품매출 (27억원) ■ 카드VAN수수료 (439억원) ■ CMS수수료 (228억원) ■ 전자금융수수료 (48억원) ■ 전자어음수수료 (2억원)
수익사업 잉여 전입 (102억원)		영업외수익 (124억원)	
기본재산 운용수익 (75억원)			
잡수입등 (2억원)			
⇩		⇩	
인건비 (51.5%) 경 비 (26.6%) 전산비 (14.0%) 잉 여* (7.9%)		원 가 (39.5%) 인건비 (12.8%) 경 비 (17.6%) 잉 여** (30.1%)	

수익사업 매출증가 현황	'07	'08	'09
(억원 / 증가율, %)	527(7.3)	610(15.7)	745(22.1)

* **고유사업 잉여:** 전액 차기년도 회비로 전입(회비경감)

** **수익사업 잉여:** 50%는 고유사업 전입, 나머지는 이익준비금 및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09말 현재 이익준비금 125억원, 임의적립금 246억억원)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구축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간 자금결제 및 정보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키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 공동망 참가기관의 지속적인 확대 등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잠재적 리스크 증대 등 다양한 내·외적 금융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2,300만건, 76조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지급결제업무량을 심각한 시스템 장애나 오류 없이 처리**하는 등 고유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금융결제원 업무처리실적】

(단위: 백만건, 조원)

구 분	2007		2008		200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어음교환	805	4,406	748	5,180	649	5,445
지 로	1,108	335	1,157	374	1,120	394
금융공동망*	3,320	10,102	3,875	12,912	4,218	15,998
e사업**	1,183	133	1,201	156	1,189	162
합 계 (일평균)	6,417 (21)	14,975 (52)	6,982 (23)	18,622 (65)	**7,175** **(23)**	**21,999** **(76)**

* CD, 타행환, 전자금융, K-CASH, 계좌이체PG, CLS

** CMS, 직불카드, 전자어음, 물품대금, 신용카드

□ 다만, ①기본재산 관리, ②수익사업 운영, ③예산집행·계약, ④급여·복지, ⑤정보시스템 등의 부분에 있어 **일부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기본재산 관리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 ‘10년 5월 현재 가입금, 참가금 등으로 구성된 기본재산은 **2,323억원**으로 이의 **처분·사용에 관한 규정 없이 총회 의결로 사용**

- ‘09년도에 33개 참가기관의 금융기관 공동코드 체계개편 소요비용(419억원)을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전하는 등 **’01 ~ ‘10.5월 기간중 1,004억원 규모의 기본재산을 총회 의결로 사용**

- 특히, ‘01년 및 ’09년에는 각각 110억원 및 237억원의 **직원 퇴직금을 기본재산으로 지급**(정관 30조제1항* 위배)

* **(정관 제30조 제1항)** “결제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운영수익과 사원, 준사원, 특별참가기관의 회비 및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기본재산(예산외) 적립·사용현황】 (단위: 억원)

	‘01~’06	‘07	‘08	‘09	‘10.1~5
적 립	835.9	8.2	57.1	659.1	627.4
사 용	298.0	43.1	4.5	653.8	5.2
잔 액	1,672.3	1,637.0	1,696.9	1,702.8	**2,322.5**

* ‘09년 이후 적립액 증가는 증권사의 참가금에 기인(4천억, 5~7년간 분납)
* ‘09년 사용은 퇴직금(237억원) 지급 및 금융기관 공동코드 개편(419억원)

⇒ i)**기본재산의 처분·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고 ii)**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엄격히 관리할 필요 **(개선)**

②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 원장 및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된 업무는 결제원이 직접 수행함이 타당하나, 모집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를 한국은행이 수행**

○ 또한, 원장후보추천위원회규정 제2조에는 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으나 **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 제8조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나 '04.3.31, '07.3.22, '10.3.16 위원회에서는 **자체결의로 의사록 미작성**

⇒ i)원장 및 원장후보추천위원 선임과 관련한 사무는 **결제원이 직접 수행**하고, ii)원장후보추천위원 선임시 **적격성 심사** 및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의사록 작성 등을 철저히 수행 [주의]**

③ 전자금융위원회등 각급 위원회 운영 부적정

○ 결제원은 정관 제22조에 따라 본부에 어음교환심사, 지로운영, 전자금융, 전산, 기획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설치·운영

- '07.1~'10.5 기간중 5개 위원회는 총 227회 개최되었으며, 이 중 **63%가 전자금융위원회***(78회) **및 전산위원회****(64회)**에 집중**

* **전자금융위:** 금융공동망, 모바일, 공인인증, PG, B2B, 금융IC, 전자어음 등
** **전산위:** CD공동망, 타행환 공동망, 무역망, 금융정보보호, 주택청약, CLS 등

- 한편, 같은 기간 5개 위원회의 회의는 66%(150회)가 서면결의이었고 대면회의는 34%(77회)에 불과했음

⇒ **전자금융 및 전산위원회를 보다 세분화하여 운영**하는 등 각급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시행 **[개선]**

나.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수익사업 범위 포괄적 규정(정관) 및 이사회 의결 없이 수행

○ 정관 제4조제2항제1호는 수익사업 범위를 “고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동 사업의 일부 또는 그 부대사업”으로 포괄·규정하여 **별도의 정관변경 없이 다양한 수익사업 수행**이 가능

* 결제원은 신용카드VAN, CMS, 전자금융, 전자어음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행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결제원의 경우 **수익사업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속화될 경우 법인의 **설립취지가 퇴색**될 우려

< 금융결제원 고유사업 수입 및 수익사업 매출현황 >

07년		08년		09년	
고유사업	수익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수익사업
934억 (64%)	527억 (36%)	1038억 (63%)	610억 (37%)	973억 (57%)	745억 (43%)

- 특히, 정부기관 통합 빌링 ASP서비스사업(‘08) 등을 **이사회 의결 없이 추진**(정관 37조 위배)

○ 한편, ‘08년 이후 **수익사업 이익잉여금**(임의적립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의 **구체적인 사용기준이 미흡**

구 분	‘07	‘08년	‘09년
수익사업 이익잉여금	42억원	147억원	262억원

⇒ i)**정관상 수익사업 범위를 사업단위로 구체화**하고, ii)**‘중장기 수익사업 관리방향’ 마련**을 통해 수익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iii)**이익잉여금의 사용기준(계획)을 마련·시행**할 필요 **(개선)**

다. 예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

①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업무추진비는 결제원 회계규정(제16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사전에 건별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결의서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그러나 **건별 지출원인행위 없이** 1개월간의 카드사용전표를 지출결의서에 일괄·첨부하였고, **사용목적도 부실**하게 기재

⇒ **집행건별로 집행품의**를 하고, 지출결의서에 업무관련성 입증이 가능토록 **사용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개선 **(개선)**

② 용역비에서 직원의 사내 면접위원회등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 용역비는 결제원 회계규정(시행세칙 별표 제1호 과목해설)에 따라 시설관리·유지 용역 등 외부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함

- 그러나 결제원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회의체* 운영시마다 **참석 직원에게 각각 10 ~ 30만원씩의 참석수당을 용역비에서 지급**

* '신입채용면접위원회', '직무별연수평가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등

⇒ 용역비는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외부용역 대가에 한정하여 집행**되어야 함 **(주의)**

③ 6시그마컨설팅 계약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등 부적정

○ 결제원 회계규정(제36조)에 따라 수의계약은 엄격히 제한되며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그러나 결제원은 추정가격 22억원 규모의 '6시그마컨설팅 사업('05.1.27 원장 전결)'을 1~5차에 걸쳐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을 전부 내부직원으로만 구성**하여 1차 사업자를 선정(제한경쟁)하고, **2~5차 사업은 1차 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 향후 거액의 장기·연속계약 체결시에는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및 입찰에 있어 전문성·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 **〔주의〕**

④ 분당신축공사 설계변경 과다

○ 분당센터 신축공사('04.12~'07.3)와 관련, **총 64건의 설계변경**(62건은 시공사 요청)이 있었고 이로 인해 10.1억원의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

⇒ 향후 공사 추진시에는 **엄격한 설계관리로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주의〕**

⑤ 입찰공고방법 및 공고기간등 개선 필요

○ 결제원 회계규정(시행세칙 제54조)에 의할 경우 입찰공고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로부터 10일(긴급한 경우나 재공고는 5일) 전에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조달청)를 이용토록 규정

- 그러나 결제원은 상당수 계약을 **1개의 일간신문에 회계규정상의 최소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함으로써 **입찰참가자들의 참여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 입찰공고는 일간신문 및 G2B를(조달청)**를 함께 활용**하는 한편 **공고기간도 국가계약법령 수준(최장 40일)으로 개선 〔권고〕**

라. 임직원 급여 및 복지에 관한 사항

①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운용 부적정

○ 기업회계기준(제27조)상 퇴직급여충당금은 회계연도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함

- 그러나 결제원의 적립비율은 **'07(37.8%), '08(40.2%), '09(11.4%) 등으로 매우 저조**하며 이마저도 **일부**(약 21억원)**를 직원주택 구매 지원**(무상대여)**으로 운용**

- 특히, '01년 및 '09년도에는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액이 부족하여 각각 **110억원 및 237억원의 직원 퇴직금**(퇴직금 중간정산 및 희망퇴직금)**을 기본재산으로 지급**(정관 제30조 위배)

⇒ **적정수준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확보**하고 **적립목적에 부합토록 관리 [개선]**

②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부적정

○ '08년부터 성과상여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을 부서장 및 팀장급으로 한정**하고 5개 등급중 **최고등급**(340%)**과 최저등급**(290%)**간 지급율 차이가 50%에 불과**

구 분	E	A2	A1	A0	B
배분율(%)	5	10	15	40	30
지급율(%)	340	320	310	300	290

⇒ 성과상여금 제도의 도입취지 및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 및 '등급간 지급격차' 확대 [개선]**

③ 학자금 및 전세보증금 지원 관련 규정 불합리

○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해당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사망직원에 대하여도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해당 직원의 정년퇴직 예정시까지 지원**

○ 한편, 학자금 및 전세보증금 지원시 **기혼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직장에서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

⇒ 사망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은 **사망원인에 따라 차등화**하고, 학자금, 전세보증금 지원시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 개선 (개선)**

④ 자가운전보조비 지급 부적정

○ 소득세법(시행령 12조)은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자가운전보조비'를 비과세소득(실비변상적 급여)으로 인정

- 이에 따라 결제원은 직원들이 교통비(월 15만원)와 자가운전보조비(직급별 월 15만원 ~ 40만원)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 그러나, '09년도 자가운전보조비 수령자 305명(퇴직자등 제외)중 **254명(83.3%)은 당해 연도 시내출장이 0회**였고, 시내출장이 확인되는 나머지(51명) 또한 연중 출장횟수가 10회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자가운전보조비는 업무특성상 시내출장 업무가 많은 영업사원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함이 타당

⇒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토록** 개선 **(개선)**

마.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① 정보시스템 도입시 규모산정방식 부적정

○ '전자세금계산서 WAS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교체의 경우, 규모산정시 **'교체'에 대한 규모산정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에 따라 시스템 교체시 '신규도입시의 규모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규모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

⇒ 정보시스템 교체시 합리적인 규모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산정방법에 '교체'에 관한 사항 반영 (개선)**

② 전자인증센터 정보시스템 관리 미흡

○ 유사시 업무중단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이 되어 있음에도 **전자인증센터 정보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사례* 발생

* 2007년(3회 / 185분), 2008년(3회 / 223분)

⇒ 업무정지 발생으로 금융기관 및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 **(주의)**

③ 전산기기 도입시 기술평가위원 구성 개선 필요

○ 전산기기 도입에 따른 기술평가시 외부전문가를 기술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부전문가 참여사례는 미미**

구 분	2007	2008	2009	2010.4
○ 전산기기 도입건수	22	88	81	26
■ 기술평가건수	4	16	16	7
■ 외부전문가 위촉 건수	-	1	-	1

⇒ 기술평가위원 구성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방안** 마련 **(권고)**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기 종합감사
2010.11.15~11.26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1. 1.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전국은행연합회 현황 ····· 2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4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신용정보집중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 5

나. 예산·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 7

다. 임직원 복리에 관한 사항 ····· 8

라. 임직원 임용·복무에 관한 사항 ····· 9

마. 문서보안에 관한 사항 ····· 9

3. 분야별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10

4. 감사결과 처리요령 ····· 11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舊재경부는 '07년 3월 은행연합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감독·검사등)

*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금감원에 위탁 → 2년 주기로 정기검사)

□ 감사기간 : 2010. 11. 15(월) ~ 11. 26(금)(10일간)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예산·회계, 임직원 복지, 조직·인력,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5명(서민금융팀 및 금감원 각 1명 포함)

□ 감사중점

○ 고유사업* 운영의 적정성

* 금융기관간 업무협의, 신용정보 집중업무 등

○ 의사결정기구(총회 등) 구성·운영의 적정성

○ 예산편성·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 사내복지기금 및 복리후생 운영의 적정성

○ 정관등 제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II. 은행연합회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28.11. 1.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 설립
○ ‘75. 4. 5. 사단법인 서울은행협회로 개편
○ ‘84. 5. 9.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

□ 소재지 : 서울 중구 명동 3길 9(명동 1가 4-1)

□ 조직 및 인원 : 8부 2실, 130명(임원 6명)

* 회장 : 신동규(59세) / 서울대(경제), 한국수출입은행장(‘03 ~ ’06)
감사 : 전병렬(55세) / 고려대(경영대학원), FIU 제도운영과장(‘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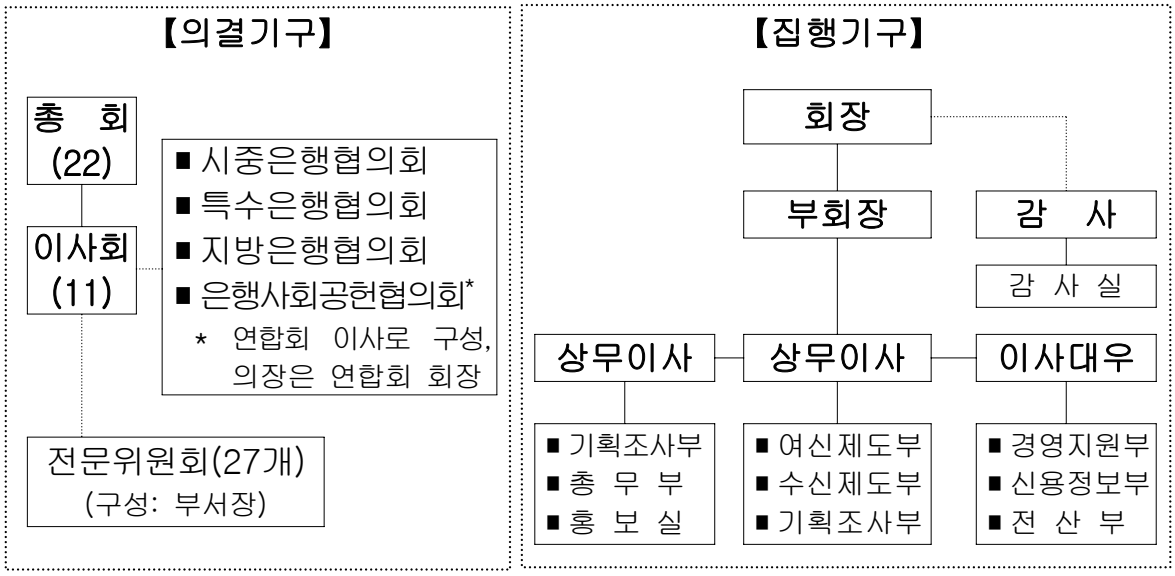

□ 주요업무

○ 금융기관간 업무협의, 정보교환
○ 금융 및 은행경영에 관한 조사연구
○ 신용정보 관리 및 이에 대한 조사연구
○ 금융기관 직원 등에 대한 연수 등

2. 예산 및 재산현황

□ 연도별 수입·지출내역

(고유목적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2008	2009	2010. 6월말
수입(a)		**237.9**	**226.9**	**178.7**
	사원분담금	217.4	209.0	164.2
	전기잉여금	5.7	6.0	9.3
	기 타	14.8	11.9	5.2
지출(b)		**209.2**	**205.8**	**109.6**
	인건비	101.9	96.5	51.7
	업무추진비, 회의비	9.4	7.1	3.9
	기타(전산비 등)	97.9	102.2	54.9
차이(c=a-b)		**28.8**	**21.1**	**69.1**

* '10년 예산 : 228.4억원(인건비 100.2억원)

(수익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매출액	18.2	18.5	20.1	21.3
•영업이익	-4.4	-4.3	-3.2	0.8
•당기순이익	- 0.5	0.3	2.1	3.3

* 수익사업 매출의 대부분은 건물임대 매출임

□ 순재산 현황

(단위: 백만원, '09.12말 현재)

구 분	일반사업	신용정보사업	소 계
•출 자 금*	3	-	3
•가 입 금*	3,570	-	3,570
•기금(건물)	10,134	-	10,134
•적 립 금	2,943	8,549	11,492
•기 타	2,618	1,338	3,956
합 계	**19,268**	**9,887**	**29,155**

* 출자금은 설립초기 8개기관이, 가입금은 이후 31개 기관이 납입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 상호협조, 금융문제 조사연구** 및 **신용정보집중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및 금융리스크에 대응하여 금융기관간 정보공유, 금융제도에 대한 대정부 건의 및 국내외 금융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함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써의 업무* 등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 '09년도말 현재 127.6 백만건의 신용정보 집중·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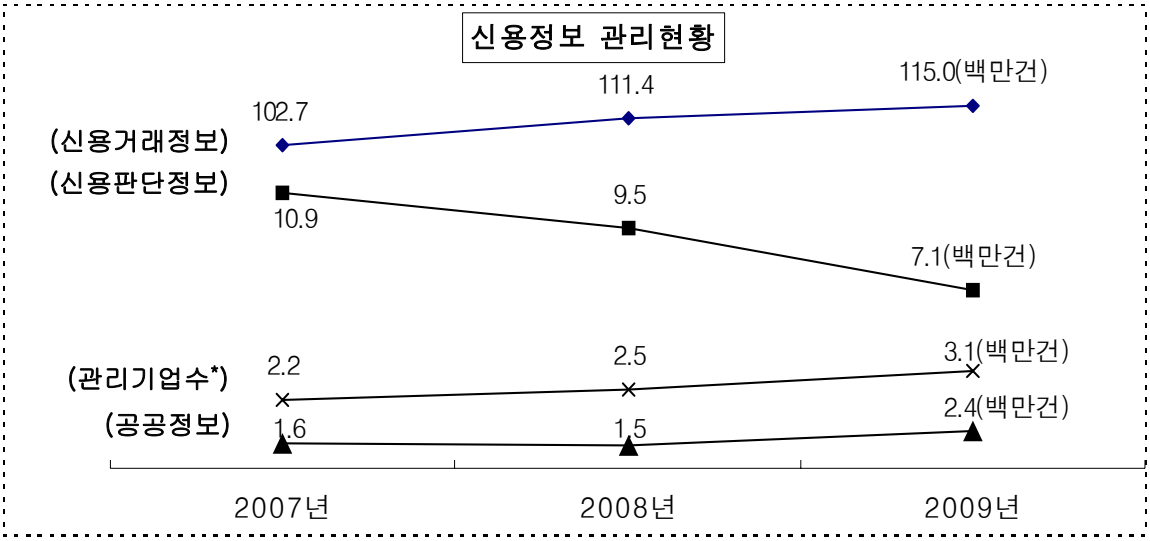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법인 수임

□ 다만, **신용정보협의회 구성, 임직원 복리** 및 **자금관리** 등의 부분에 있어 **일부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신용정보집중업무 관련

① 신용정보협의회 구성·운영 부적정

○ **경비분담율이 33%를 초과하는 신용조사회사**의 경우 **대표회사 1사만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법령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신용정보법시행령 제22조제2항)종합신용정보지부중기관의 장은 **집중관리·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규모, 경비분담비율, 업권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에서 신용정보협의회를 구성

○ 법령·규약 등에 근거가 없는 **서면의결이 대부분***으로 경비분담 등 업권별 **이해관계가 민감한 사안까지 서면의결**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과정이 생략**됨

* '07년부터 '10년까지 총 **23건중 22건이 서면의결**

⇒ 신용정보협의회 규약에 **협의회 구성기준, 위원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협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개선)**

② 신용정보 제공시 대상자 성명과 주민번호 일치 여부 확인절차 미비

○ 공공기관(세무서) 등의 조회요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에 확인절차가 없어 대상자가 아닌 타인의 신용정보가 제공될 소지

⇒ 신용정보 제공시 **대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업무개선 **(개선)**

③ 개인대출정보 집중·관리 개선 필요

○ 개인대출정보를 집중·제공함에 있어 **개인별 총잔액 및 주택담보대출 보유 여부**만이 관리

-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신용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담보여부 등 채무의 세부적인 조건**을 감안할 필요

⇒ 금융회사 등이 개인의 신용도를 정확히 보다 판단할 수 있도록 **개인대출정보 집중·제공 방식 개선 (개선)**

나. 예산·회계 및 자금관리 관련

① 기본자산 관리·운용 관련 규정 미비

○ 기본자산을 포함하여 **연간 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매년 부회장 전결의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별도의 관리·운용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회계연도말 기준 예치금 현황(억원)>

구 분	'06말	'07말	'08말	'09말	'10(11.17 현재)
투자자금 (정기예금등)	362.5	362.5	386.0	374.0	399.0*
수시입출자금	37.1	39.1	35.1	31.6	37.2
합 계	**399.6**	**401.6**	**421.1**	**405.6**	**436.2**

⇒ 연합회 존립의 근간인 기본재산(출자금, 가입금, 적립금등)의 경우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방향 등을 규정화**하여 안정적이고도 투명하게 관리·운용 **(개선)**

② 물품(비품·소모품) 구분 모호 및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 '고정자산 및 물품관리규정' 및 '예산·회계규정' 상의 **물품·비품·소모품 구분이 서로 다르며** 이의 **재무제표(B/S) 반영 기준 또한 이들 규정과 다르게 운용**함

* '물품관리규정' 제3조는 취득가액 20만원 미만을 소모품으로 분류하나, '예산·회계규정'은 100만원 미만을 '소모품비'로 규정

⇒ 물품(비품·소모품)에 대한 구분을 **일관성 있게 명확히 규정**하고 동 규정에 부합하게 회계처리 **(개선)**

다. 임직원 복지 관련

① 사내복지기금 출연 및 개인연금 지원 과다

○ 2010년 10월 현재 **기금잔액은 83억원**(1인당 평균 6,433만원) 수준으로 **공공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음**

* 기금 누적액이 **1인당 평균 2,000만원** 초과시 추가 출연 제한

- 이처럼 기금잔액이 상당함에도 '07~ '10.10말 기간중 매년 기금 출연액의 59.8 ~ 68.6% 정도가 적립되도록 과다 출연

○ 또한 개인연금신탁 가입직원에 대하여 매월 통상임금의 15%를 지원하는 등 **회원사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연금 지원**

* **10개 사원기관은 폐지**, 지원중인 기관중 **연합회보다 많은 경우는 2개사**

⇒ 사원기관에 비하여 **과도한 개인연금 지원 및 사내복지기금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 **(개선)**

② 학자금 지원 및 의료보조비 지원기준 부적정

○ 사망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순직 등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지원**토록 하고 있고, 배우자가 직장에서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 **이중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함**

○ 본인 및 부양가족에게 연 5백만원내에서 의료비를 보조하면서 **직장 단체보험 수혜직원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규정 없음**

⇒ ○사망직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시 **순직 등 사망원인을 구분하여 엄격히 지원**토록 하고, 학자금 및 의료비 지원시 **중복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선 **(개선)**

라. 임직원 임용 및 복무

□ 이사대우제도운영규정 등 부적정

○ 이사대우제도운영규정(제3조)은 이사대우 임면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결격자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복무규정(제23조)은 '표창과 징계의 양정은 회장이 행한다.'고 규정할 뿐 표창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 **흠결이 치유되지 아니한 자가 이사대우로 임명되거나 표창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 개선 **(주의 및 개선)**

마. 문서보안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중요문서 보안관리규정 미흡

○ 개인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신용정보 조회회답서’를 생산·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보안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 ‘신용정보 조회회답서(책자)’ 제작시 인쇄업무 감독확인서 징구 등 체계적인 외부유출 방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

⇒ 보안이 필요한 문서의 경우 생산·관리·파기에 이르기까지 **보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수립·시행 (권고)**

3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용

지적분야	지 적 내 용	조치수준
신용정보 집중업무	■ 신용정보협의회 구성·운영 부적정	(개선)
	■ 신용정보 제공시 대상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미비	(개선)
	■ 개인대출정보 집중방식 개선 필요	(개선)
예산·회계 및 자금관리	■기본재산 관리·운용 관련 규정 미비	(개선)
	■물품(비품·소모품) 구분 및 관련 회계처리 부적정	(개선)
임직원 복지	■사내복지기금 출연 및 개인연금 지원 과다	(개선)
	■복지규정(학자금 지원 및 의료비보조) 부적정	(개선)
기 타	■이사대우운영규정 등 부적정	(개선)
	■중요문서 보안관리 관련 규정 미흡	(권고)

□ 조치계획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제14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기 종합감사
2011.8.25~9.7

신용회복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1. 11.

금 융 위 원 회

- 목 차 -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신용회복위원회 현황 ····· 2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5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고유사업 운영 관련 ····· 6

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 7

다. 계약사무에 관한 사항 ····· 8

3. 분야별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9

4. 감사결과 처리요령 ····· 10

I. 감사실시 개요

〈 목 적〉

◇ 우리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제고**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 신용회복위 **설립('03.11) 이후 외부감사는 금번 감사가 최초**임

□ 감사기간(10일간) : **2011. 8. 25(목) ~ 9. 7(수)**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의결기구,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5명(서민금융팀 1명, 외부전문가* 1명 포함)

* 회계법인 소속 회계감사 전문 회계사

* 소요예산 : 약 150만원(1명 * 30만원 * 5일)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채무조정, 소액금융, 교육·상담 등 업무 처리실태

○ 예산집행, 회계처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조직관리 및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등

II. 신용회복위원회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02.10.1. '금융기관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출범
○ '03.11.1 비영리사단법인 인가

□ 소재지 : 서울 중구 명동 1가(명동센트럴빌딩 6층)

□ 조직 및 인원 : 2본부 4부 1원 1센타 17지부 200명

* 위원장(상근): 이종휘(49년생) / 서울대(경영), 우리은행장, 서울장학재단 이사
감사(비상근): 황유노(58년생) / 홍익대(경영), 현대캐피탈 경지원본부장(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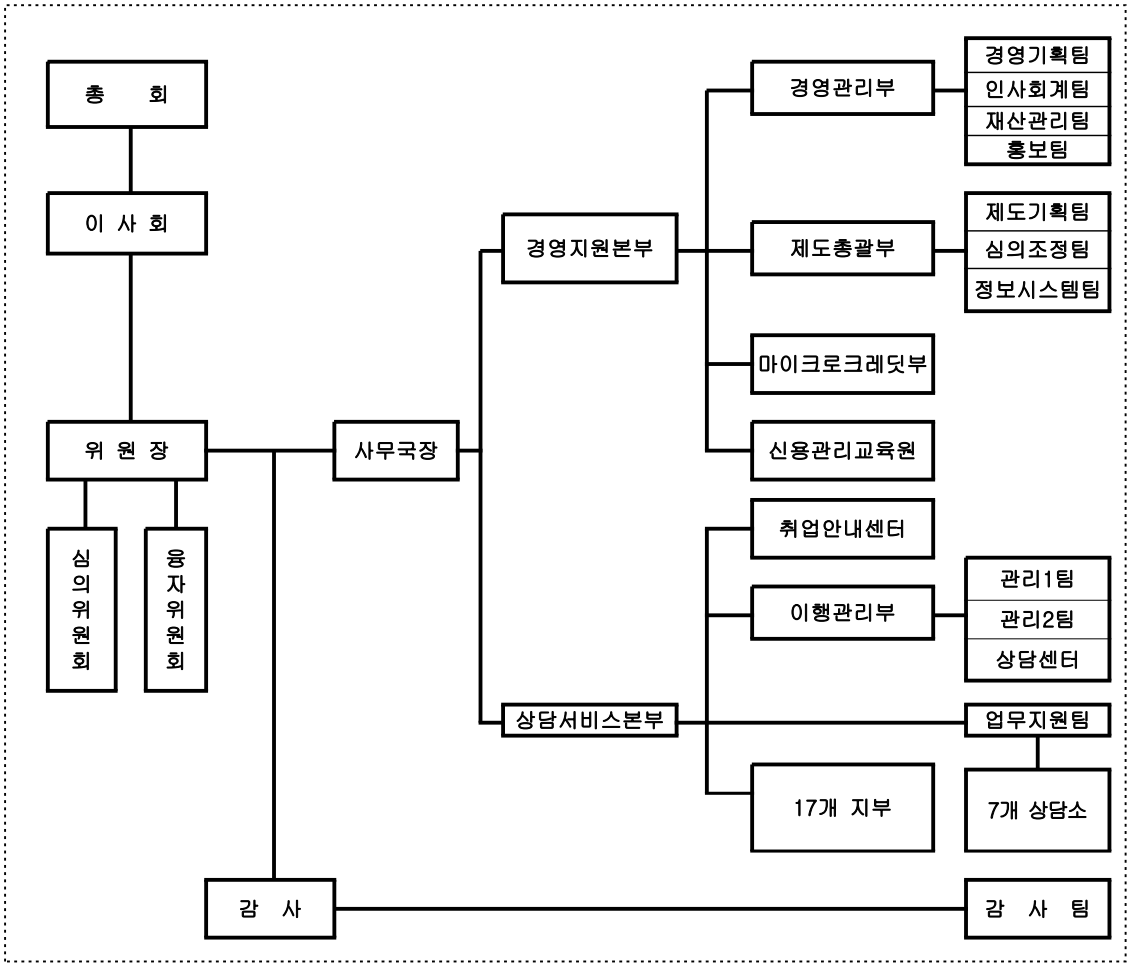

2.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신용회복상담** : 총 387,648건 (1일 평균 1,538건)

□ **개인채무조정** : 총 84,590명 신청 → 72,329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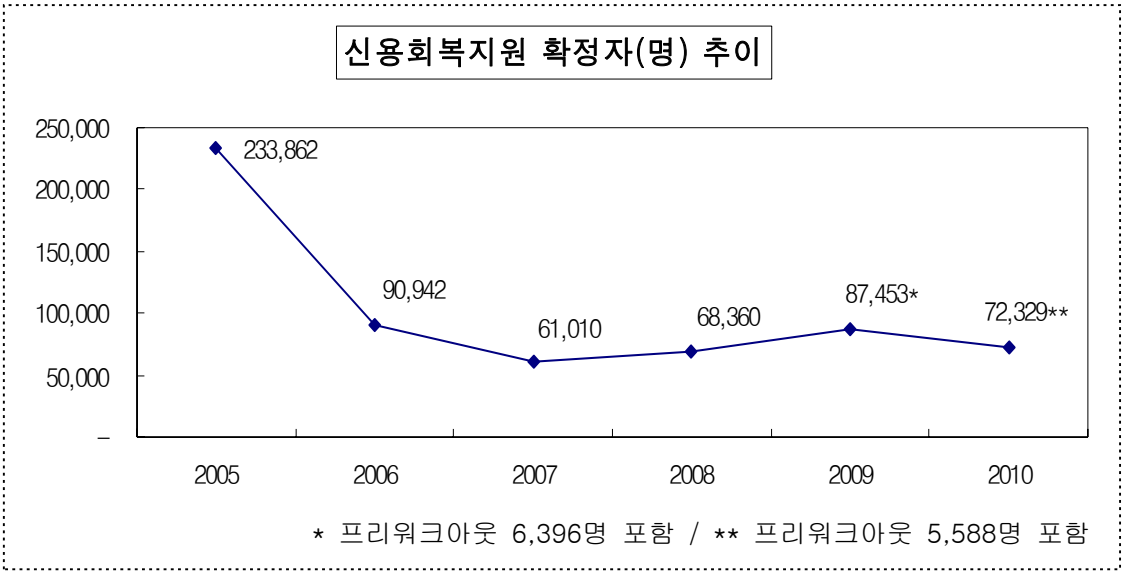

□ **신용관리교육** : 총 416,109명('09년 대비 11.7% 증가)

□ **취업안내 :** 총 3,169명 취업 확정('09년 대비 56.3% 증가)

□ **소액금융지원 :** 총 17,071건, 522.2억원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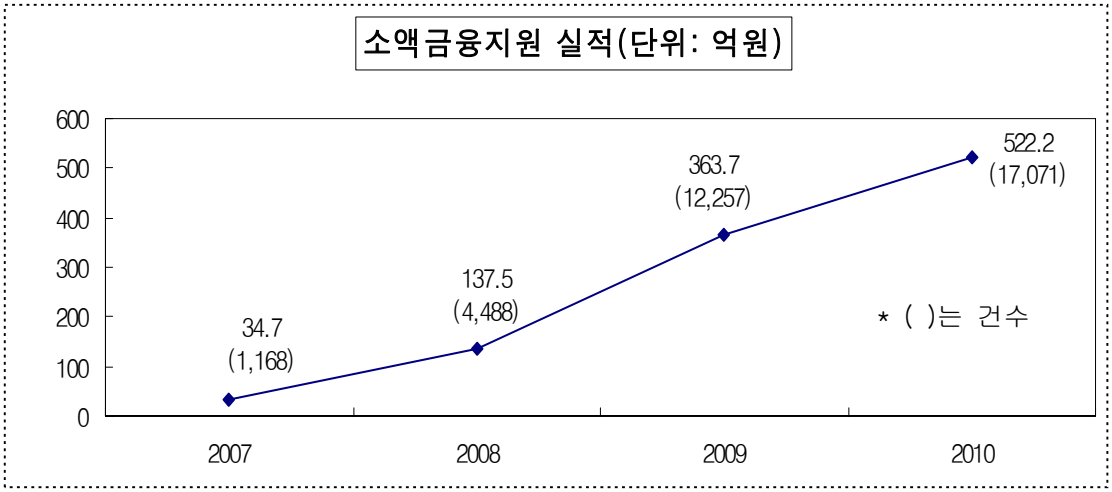

* 대출잔액 기준 연체율: 3.4%(17.9억원 / 이자연체 15.8억원, 원금연체 2.1억원)
* 2006.11.13. 소액금융지원 업무 개시

3. 2010년도 수입·지출 및 재무상태

□ 수입·지출내역

(고유목적사업)

수 입 : 347억원		지 출 : 347억원	
▪ 전기잉여전입 :	55.6	▪ 인 건 비 :	124.8
▪ 회원분담금 :	203.6	▪ 경비·전산업무비 :	149.3
▪ 신용회복지원신청금 :	54.0	▪ 자산취득비 :	8.7
▪ 기 타 :	11.4	▪ 당기잉여 :	64.5

(소 액 금 융)

수 입 : 24억원		지 출 : 24억원	
▪ 예금이자 :	7.2	▪ 인 건 비 :	5.7
		▪ 경 비 :	2.4
		▪ 보 험 료 :	10.4
		▪ 대손상각 :	2.7
▪ 대출자산이자 :	16.8	▪ 고유사업준비금 :	5.2
		▪ 당기순손실 :	2.4

□ 재무상태

자 산 : 1,034억원		부채·자본 : 1,034억원	
▪ 현금 및 예금 :	**460.1**	**▪ 부 채 총 계 :**	**707.4**
▪ 대 출 채 권 :	**499.5**	- 장기차입금	565.2
- 생활안정자금대출	444.7	- 변제금수납예수금	136.3
- 학 자 금 대 출	17.1	- 대출변제예수금	0.7
- 시설개선자금대출	5.5	- 예 수 금	1.2
- 운영자금대출	19.8	- 미 지 급 금	0.6
- 고금리차환대출	16.5	- 미지급비용	3.4
- 대 환 대 출	0.9	**▪ 자 본 총 계 :**	**326.8**
▪ 유 형 자 산 :	**17.5**	- 자 본 금	0
▪ 기 타 자 산 :	**57.1**	- 자본잉여(고정자산조정금)	55.9
		- 미처분이익잉여금	270.9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에 관한 상담, 과중채무자의 채무조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소액금융 지원, 신용관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위원회 출범('02.10) 이후 '11년 6월 현재까지 **총 1,003,961명으로부터 채무조정신청**(프리워크아웃 포함)을 접수하여 이 중 914,745명(91.1%)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을 확정**하고,

(단위 : 명, %)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분기	'11년 2분기	누 계
신청	629,931	63,706	79,144	101,714	61,882	22,706	22,170	1,003,961
확정	587174	61,010	68,360	87,453	72,329	17,744	20,675	914,745

◦'06년 11월 소액금융업무를 시작한 이래 '11년 6월말까지 **총 43,393명에게 1,306.9억원의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등 정관상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분기	'11년 2분기	누계
신청인원		38	1,507	5,131	12,867	17,773	4,729	**4,053**	46,098
대출 실행	인원	17	1,168	4,488	12,257	17,071	4,425	**3,967**	43,393
	금액	54	3,468	13,751	36,367	52,214	13,023	**11,815**	130,693

□ 다만,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운영, 채무조정신청비, 예산집행 관행** 및 **계약 관련 제도** 등의 부분에 있어 일부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고유사업 운영 관련

① 심의·융자위원회 운영 등 개선 필요

○ '02년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사역의 숙련도 및 심사시스템 개선으로 **심의비율('09이후 6~7%) 및 부결율('09이후 0.08%)은 지속 감소**반면, **위원수('09이후 14명) 및 운영비용('10년 3.3억원)은 오히려 증가**

○ 융자위원회의 경우 소액대출신청이 급증하였으나 전체 대출건의 50%를 심의하고 있어 심의량이 크게 증가(회의당 평균 150건 이상)한 반면, **'09년 이후 부결된 안건은 全無**

⇒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융자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 **(개선)**

② 채무조정신청비 적정성 검토 필요

○ 신규조정 및 재조정시 각각 5만원씩 신청비 납부. 제도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직·병원비등 추가적 경제곤란으로 재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5만원을 추가 납부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채무재조정의 사유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채무재조정 신청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시행 **(개선)**

나. 예산집행·회계처리 관련

□ 예산집행 부적정

○ **교육훈련비, 조사연구비 등 집행 부적정**

- 교육훈련비는 '직원교육 및 제반경비'에, 조사연구비는 '신용회복 제도 조사연구'에 집행되어야 하나, 일부 **임원 교육비 지원에 사용**

- 또한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무국장에게 파견수당 이외에 **차량운행보조금, 지급근거 없는 상여금 등 지원**

○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 **직원의 후생복리와 무관**한 위원장, 사무국장, 심의·융자위원 퇴임시 기념품등 제작비용을 **복리후생비에서 지급**

○ **예비비 사용 부적정**

- 2010년도 「신복위 명칭 변경 컨설팅」 비용(2,800만원)을 지급함에 있어 **용역비 예산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예비비 사용**

⇒ **교육훈련비, 조사연구비,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은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토록 엄격히 집행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발생으로 예산내에서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토록 하며 **(주의)**

⇒ **주요 목별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 기준(예산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 **(개선)**

다. 계약 및 정보시스템 관련

① 경쟁입찰 불성립에도 재입찰 절차 없이 낙찰자 결정

○ 입찰조건 불비 및 입찰설명회 불참 등으로 단 1개社만이 요건을 갖추는 등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나 재입찰 절차 없이 당해 1개社를 낙찰업체로 선정**

⇒ **계약규정 제15조(재입찰) 위반 (주의)**

② 수의계약, 제한경쟁입찰 등에 관한 규정 개선 필요

○ 계약규정상 **제한경쟁에 대한 근거규정 없이** 제한경쟁입찰 실행, **수의계약 사유 포괄적 규정**, **입찰공고기한 추상적 규정** 등

⇒ 제한경쟁의 근거 마련, 수의계약사유 명확화 등 **계약규정을 보완·개선**할 필요 **(개선)**

3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용

지적분야	지 적 내 용	조치수준
고유사업	■ 심의·융자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 ■ 채무조정신청금 개선 필요	(개선) (개선)
예산·회계	■ 예산집행 부적정 · 교육훈련비·조사연구비 등 집행 부적정 · 복리후생비 집행부적정 · 예비비 사용 부적정	(주의/개선)
계 약	■ 경쟁입찰 불성립에도 낙찰자 결정 부적정 ■ 계약관련 규정 개선 필요	(주의) (개선)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개선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기 종합감사
2011.11.21~11.29

한국공인회계사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2. 1.

금융위원회

- 목 차 -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한국공인회계사회 현황 ····· 2

Ⅲ.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5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고유사업 운영 관련 ····· 6

나.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 7

다.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 8

3. 분야별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10

4. 감사결과 처리요령 ····· 11

I. 감사실시 개요

〈 목 적〉

◇ 우리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기관운영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제고**

□ **법적근거**

○ **공인회계사법 제47조**(감독)

*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

* '01, '04, '07년 각각 舊재정경제부로부터 감사를 받음

□ **감사기간**(7일간) **: 2011. 11. 21(월) ~ 11. 29(화)**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예산·회계,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4명(공정시장과 1명, 외부전문가* 1명 포함)

* 회계사(회계기준원 소속)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회원의 지도·감독, 회계감사 등 직무기준 제정, 윤리기준의 제·개정 및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 회원에 대한 교육방침 수립 및 이행 점검 등

○ 예산집행, 회계처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조직관리 및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등

II. 한국공인회계사회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45.10. 조선계리사회 설립
○ ‘54.12. 계리사법에 의한 한국계리사회 설립
○ ‘66. 9. 한국공인회계사로 재발족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5-10

□ **조직 및 인원 :** 6팀2실1위원회, 80명(정원)

*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19명) 제외(기재부 위탁사업 수행)

* 회장: 권오형(47년생) / 경희대(경영),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現), 세발심위원(現)
감사: 최종만(57년생) / 연세대(경영), 신한회계법인 대표이사(現)
감사: 최문원(58년생) / 성균관대(경제학),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조직도: 현원 7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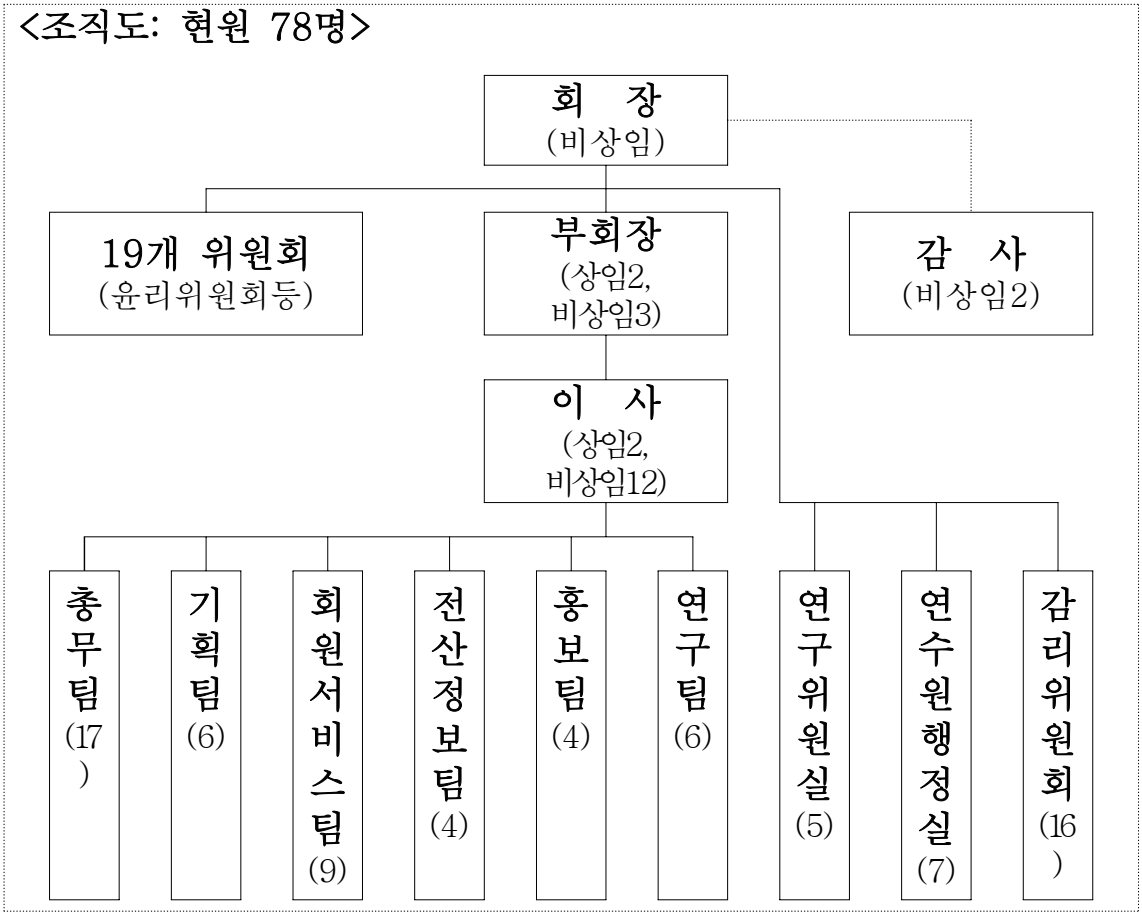

2. 2010FY 주요업무 추진실적

□ 제도개선

○ 금융위의 '회계감독제도 선진화' 관련 개선방안 마련·추진
○ '온실가스검증기관' 지정요건에 회계법인 포함
○ 금융거래조회 및 회신절차 간편화 방안 추진 등

□ 업무영역 개선

○ 외부감사대상기준에 '매출액' 신설 추진
○ 비외감 중소기업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인증업무 확대 추진
○ 새마을금고 의무외부감사제 도입 추진 등

□ 회원권익 보호

○ 감사인 위협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신설 추진 등

□ 공적기능 수행 등

○ 기획재정부 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 IFRS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와 '회계투명성 제고사업' 공동 추진(MOU 체결)

□ 회계감사품질관리 감리

○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및 품질관리 위탁감리 실시
○ 「감리결과 직무연수의무자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 등

※ 등록회원 현황('11.3.31 현재, 명)

개 업 회 원			휴업회원	합 계
감사인소속	개업일반	소 계		
9,135	373	9,508	4,562	14,070

* 수습공인회계사 : 1,350명(회계법인 1,055명, 금감원 19명 등)

3. 2010FY 수입·지출 및 재무상태

□ 수입·지출('10.4.1 ~ '11.3.31)

구 분(억원)		고유사업	수익사업	기금운용	합 계
수입(A)	회원수입*	109.9	-	76.5	18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8.3	-	18.6	26.9
	연수수입	-	11.1	-	11.1
	간행물 판매	-	15.2	-	15.2
	수입이자	-	17.5	16.2	33.7
	기 타	1.1	20.8	2.4	24.3
	수입총계	**119.3**	**64.6**	**113.7**	**297.6**
지출(B)	사업비	42.4	28.0	86.6	156.9
	· 연구비(개발비)	17.8	0.3	-	18.1
	· 회의비	6.5	0.3	-	6.8
	· 자료발간비	4.5	13.8	-	18.2
	· 국가회계결산지원비	-	5.9	-	5.9
	· 손해배상공동기금반환금	-	-	58.7	58.7
	· 기 타	13.6	7.7	27.9	49.2
	일반관리비	64.0	36.5	2.7	103.2
	· 급여	39.0	12.0	-	51.0
	· 유지관리비	7.2	2.0	-	9.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	17.7	-	17.7
	· 기 타	17.8	4.8	(세금공과)2.7	25.3
	지출총계	**106.4**	**64.5**	**89.3**	**260.1**
잉여(A-B)		12.9	0.1	24.5	37.5

□ 재무상태('11.3.31 현재)

◆ 자 산 : 1,035억원

· 고유사업 : 124억원
· 수익사업 : 38억원
· 기금사업 : 874억원*

* 회관(154), 공제회부조(23), 공제회복지(333), 손해배상공동(364)

◆ 부 채 : 41억원

· 고유사업 : 7억원
· 수익사업 : 33억원
· 기금사업 : 1억원

◆ 자 본 : 994억원

· 기 금 : 851억원
· 수지차액 : 143억원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의 사명의식·품위·자질향상, 직무의 질적 개선·확충, 회원의 지도·감독, 회원복지 및 상호간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속적인 회원 증가로 '11.10.31 현재 **14,492명의 회원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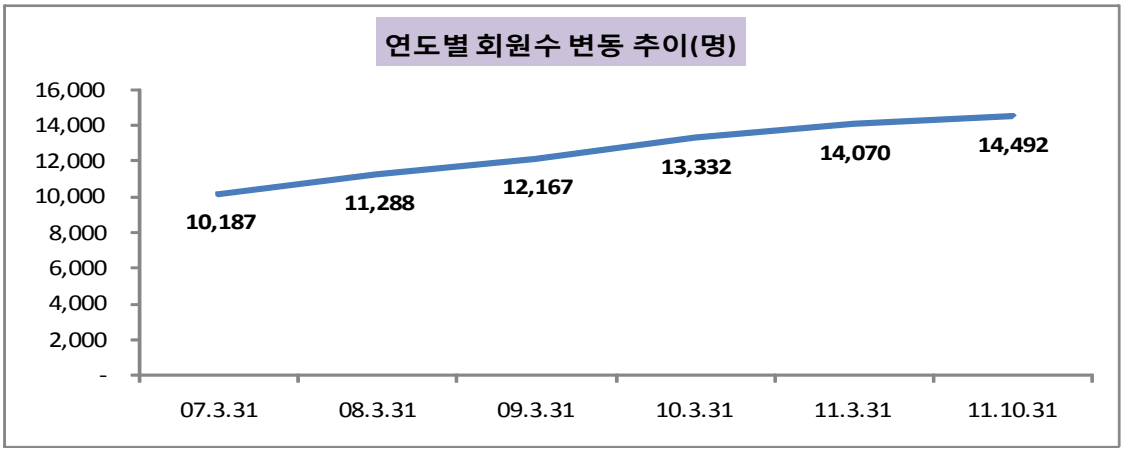

◦제도개선, 업무영역 개선, 공적기능 수행 및 회원권익 보호 등 정관상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함**

* 「외감법」에 의한 위탁감리, 직무연수의무자에 대한 연수 실시, 기재부 위탁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운영, IFRS 순회설명회 등 공적기능 및 감사인 위협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규정 신설 추진 등 회원권익 보호업무 등 고유업무를 원활히 수행

□ 다만, **윤리기준위원회 등 위원의 위촉,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감독·평가, 인사위원회 운영, 예산집행 관행** 등에 있어 일부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분야별 감사결과

가. 고유사업 운영 관련

① 연수프로그램 감독·평가 미흡

○ 「연수규정시행세칙」 제4조제5항은 직원을 파견하여 교육위원회에 등록된 연수프로그램의 실시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10년 이후 현장 실사 미실시**

○ 「연수규정」 제12조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자는 **연수 종료 후** 강사와 수강자에게 평가를 받아 이를 교육위에 제출, 교육위는 **프로그램의 연수목적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미실시**

⇒ 연수프로그램의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현장 실사** 및 **프로그램 종료 후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주의)**

② 윤리기준위 및 세무조정감리위 등 부적격자 위촉사례 발생

○ '07년 연수시간 미이수로 인해 윤리위에 회부되어 **회원권리 정지중인 자를 윤리기준위 위원으로 위촉**

○ **세무조정감리위**는 '08년 위촉위원 중 **회원권리가 정지된 자를 위원으로 계속 존치**하였으며, '10년에는 증선위에서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계속 위원으로 활동**

* 위원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제7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위원회 위원 위촉시 또는 위촉후 **대상자의 징계이력 등을 철저히 점검하지 아니한 관련자 인사자료 통보 (통보 : 인사자료)**

③ 윤조위의 징계요구 의결건 윤리위 회부 지연 (요구기한 없음)

○ 윤조위에서 윤리위 징계요구 의결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면 **회장은 이를 윤리위에 회부하여야 하나 회부기한 규정 없음**

* **(사례)** 장시간(101시간 이상) 연수미이수자에 대해 윤리위 징계요구를 하였음에도 **최장 약 10개월 경과 후 윤리위에 회부**

○ **단기간 미이수자가 윤조위 의결로 바로 1년 이하 등의 회원권리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형평성에 맞지 아니함**

⇒ **회장의 윤리위 징계의결 요구기한을 정**함으로써 윤조위 조치로 종결되는 조치대상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 **(개선)**

④ 기업진단감리업무 수행 관련

○ 「기업진단 감리업무규정」에는 상근감리위원의 자격, 임기만을 규정하고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제한 규정이 없으며**, 담당인원 또한 상근감리위원 1명으로, **유사시(업무제한 등) 대체인력 없음**

⇒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유사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개선)**

나.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 참석 인사위원 서명 미필 및 심의자료 미비

○ '10 ~ '11년도중 개최된 3번*의 인사위원회시 **승진서열명부 등 심의자료가 없고, 인사위원 서명없이 회장의 '확인서명'만으로 의결**

* '10년도 제5차 인사위원회('10.11.29, 승진 5명), '11년도 인사위원회('11.7.4, 특별승진 1명), '11년도 제2차 인사위원회('11.10.19, 승진 2명)

⇒ 승진심사에 필요한 **심의자료(서열명부 등) 구비** 및 **참석인사위원 전원의 서명에 의한 심의의결**로 인사의 공정성을 기할 필요 **(주의)**

다.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① 예산집행시 사전품의 미비 및 집행증빙 부적정

○ **(업무추진비)** '08 ~ '10 회계연도에 **연간 1.5억여원씩 현금으로 집행**하면서도 **품의서 및 사용영수증 등을 남기지 않음**

* **'04년 및 '07년 舊재정경제부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개선되지 않음

○ **(회의비)** 비상근 임원들에게 **회의 참석시 회당 15만원씩의 거마비*(회의수당)를 지급**하였으나 **회의일시·장소·내용 등이 반영된 품의 없음**

* **'08~'10년간 지출현황: 매년 최저 69,810천원 ~ 최고 81,110천원 집행**

○ **(접대비)** 연간 8,500여만원(680여건)을 집행하면서 **사용목적·집행대상 등이 반영된 사전품의 없이 집행**하고 사용영수증만 첨부

○ **(업무연구개발비)** 업무연구개발비('10예산 6.7억원) 예산중 '제도개선업무개발비·신규업무개발비('10예산 3.5억원)'의 대부분을 접대성 경비로 집행하면서 **사용목적·대상 등이 반영된 품의서 없이 집행**

⇒ 예산집행은 법인카드·계좌이체 등 외부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 집행시에는 목적·대상·일시·장소 등에 대한 **결재권자의 품의에 의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의)**, 예산집행 **증빙의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관련자**(회계담당자 및 책임자) 인사자료 통보 **(통보: 인사자료)**

② 업무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 '08~'10 회계연도 기간중 **업무연구개발비로 매년 5~6.7억원을 집행**하여 왔으며, '10년 예산은 8.3억원으로 그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

* 동 예산은 '법령등 제도개선 업무개발비', '신규업무개발비', '국제관련 업무연구개발비', '유관기관 파견자 인건비', '간담회 및 홍보비'로 구성되며, 이 중 **제도개선 및 신규업무개발비는 매년 3~3.5억원**을 차지

○ 한편, 제도개선 및 신규업무개발비 집행내역을 보면 선물·상품권 구입, 골프장 이용, 간담회경비 등 **대부분이 접대성(섭외성)으로 집행**

⇒ 업무연구개발비는 그 명목에 맞게 **업무연구개발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 한하여 지출**토록 하고 **접대성(섭외성) 경비는 접대비 예산에서 지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주의)**

③ 비상임 임원에 대한 차량유류비 지원 과다

○ 비상임 임원(회장, 부회장3, 감사2, 이사12)에게 회의참석시마다 15만원의 회의참석수당(거마비)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월 정액(회장 100, 부회장·감사 60, 이사 55만원)의 유류비를 지급**

* 총 지급액은 **연간 1.3억여원**으로 **전체 여비교통비 집행액의 90%이상**을 차지

⇒ 회의참석시마다 회의수당(거마비)을 지급받는 비상근 임원에게 **별도의 차량유류비를 월정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복 지원의 소지**가 있고 **그 내용 또한 과다**함으로 합리적으로 개선 필요 **(개선)**

3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용

지적분야	지적내용	조치수준
고유사업 운영	■ 연수프로그램 감독·평가 미흡	주의
	■ 윤리기준위 및 세무조정감리위 등 부적격자 위촉사례	통보(인사자료) (○○○ 외 4명)
	■ 윤조위의 징계요구 의결건 윤리위 회부 지연	개선
	■ 기업진단감리업무 이해관계에 따른 업무제한 미비 등	개선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참석위원 서명 미필 및 심의자료 미비	주의
예산집행 / 회계처리	■ 예산집행시 사전품의 미비 및 집행증빙 부적정	주의 / 통보(인사자료) (○○○ 외 3명)
	■ 업무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주의
	■ 비상임 임원에 대한 차량유류비 지원 과다	개선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 통보(인사자료)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종합감사	특별점검
‘11.10.20~10.28	‘11.12.05~12.16

미소금융중앙재단 감사 결과 보고서

2012. 1.

금융위원회

I. 감사실시 개요

〈 목　　적〉

◇ 우리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인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별점검을 통해 기관운영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제고**

□ 법적근거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금융위원회는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 재단 **설립('08.4) 이후 외부감사는 금번 감사가 최초**임

□ 감사기간

○ 정기감사 : **2011. 10. 20(목) ~ 10. 28(금), 7일**
○ 특별점검 : **2011. 12. 05(월) ~ 12. 16(금), 2주**

□ 감사대상

○ 정기감사 : **고유사업 수행 및 기관운영 전반**
○ 특별점검 : **복지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

□ 감사요원

○ 정기감사 : **감사담당관 외 5명**(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 포함)
○ 특별점검 : **감사담당관 외 6명**(금융감독원 조사역 3명 포함)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휴면예금 관리·운용, 원권리자 지급, 복지사업자 지원·감독 등

○ 예산집행·회계처리, 자금관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조직운영 및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등

II. 미소금융중앙재단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07. 8.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공포
○ ‘08. 4.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기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삼공빌딩 7층)

□ **조직 및 인원 :** 2본부 5부 1담당 34명(정원)

* 이사장(비상근): 김승유(43년생) / 고려대(경영),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現)
감사(비상근): 황덕남(57년생) / 서울대(법학),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現)
본부장(상근): 장훈기(49년생) / 성균관대(행정학),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장

<조 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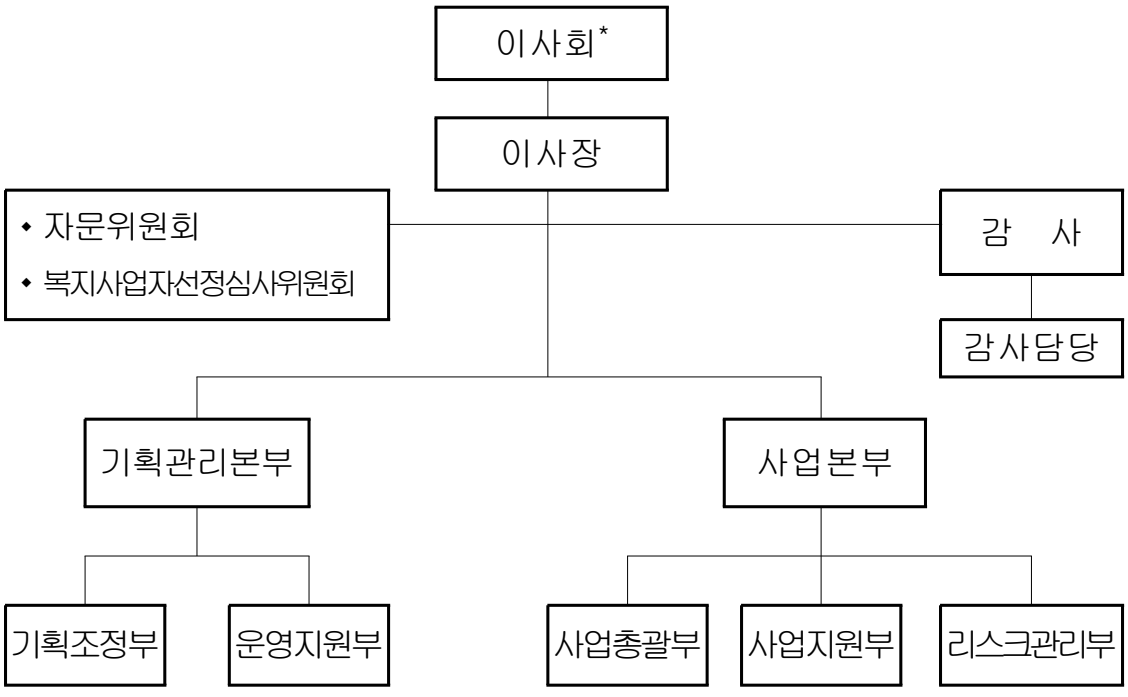

* 기재부·복지부·노동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보·손보협회장, 임명직(4인)

2.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재원확보 : 총 4,253억원(누계 1조44억원)

휴면예금(억원)			기부금(억원)			합 계
은행권	보험권	소계	지정 (기업·은행)	일반	소계	
659	417	1,076	1,490	1,687	3,177	4,253

* 휴면예금·보험금 원권리자 지급액 : 206억원(71,370건)
* 자금운용 수익 : 211억원 발생

□ 미소금융 : 총 795.6억원(7,770명)

미소금융 (억원)	기업재단	은행재단	지역지점	합 계
	465.9	259.1	70.6	795.6

* 2011년 상반기 : 1,252억원(8,639건) / 누적 : 3,252억원(44,543건)
* 31일 이상 연체율('11.6월 현재) : 2.5%(기업·은행 2.3%, 지역 6.1%)

□ 복지사업자 지원 : 총 352억원(7,426명)

(단위 : 억원)

창업지원	사회적기업지원	신용회복지원	전통시장상인대출
38.6	50.5	130	133.5

* 2011년 상반기까지 누적 지원액 : 1,205억원(28,134건)

□ 소액보험사업 : 49억원(10,264명)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08년부터 3년간 114억원 지원

□ 미소금융사업 인프라 구축 등

○ **전국 네트워크 구축(106개 지점:** 수도권 48, 지방 58),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중복수혜 방지등), **지원활성화**(신용평가시스템 및 신규상품 개발), **홍보활동 강화**('찾아가는 미소금융' 서비스 개시등)

3. 2010년도 운영성과 및 재무상태

□ 운영성과(2010년 결산)

수 익	비 용	성 과
◆ 사업수익: 213.0 · 이자수익: 211.0 · 보험사업비환입: 2.0	◆ 사업비용: 69.9 · 소 액 보 험: 49.5 · 지정기부금: 9.0 · 일반기부금: 11.4	◆ 사업총이익: 143.2
	◆ 운영비용: 58.1 · 인 건 비: 13.5 · 대손상각비: 9.6 · 감가상각비: 6.3 · 전산업무비: 5.6 · 홍 보 비: 5.6 · 지급임차료: 3.6 · 용역수수료: 2.5 · 복리후생비: 1.4 · 기 타: 10.0	◆ 당기순이익: 85.0

※ '11년도 운영비 예산: 82.4억원(인건비 15.9, 일반관리비 59.7, 예비비 6.8)

* 교육센터 운영비 신규편성(7.9억), 감가·대손상각비 증가(4.2억원) 등으로 '10년도 집행실적(58.1억) 대비 41.8% 증가

□ 재무상태(2010년末 현재)

◆ 자 산 : 7,847억원
- 유 동 자 산 : 7,120억원
- 대 출 채 권 : 715억원
- 기타(비품등) : 12억원

◆ 부 채 : 5억원
- 퇴직급여충당금 : 1.8억원
- 미 지 급 금 : 3.2억원

◆ 자 본 : 7,842억원
- 자 본 금 : 7,666억원
- 이익잉여금 : 176억원

III.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용 등을 통해 예금자 보호,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2010년도에 4,253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10년말 누계기준 총 1조44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원권리자 보호, 미소금융 사업 등 설립목적상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 휴면예금 1,076억원, 기부금 3,177억원

□ 미소금융 사업의 경우 **2010년 796억원(7,770건)**에 이어 **2010년 상반기에는 1,252억원(8,639건)**의 지원하는 등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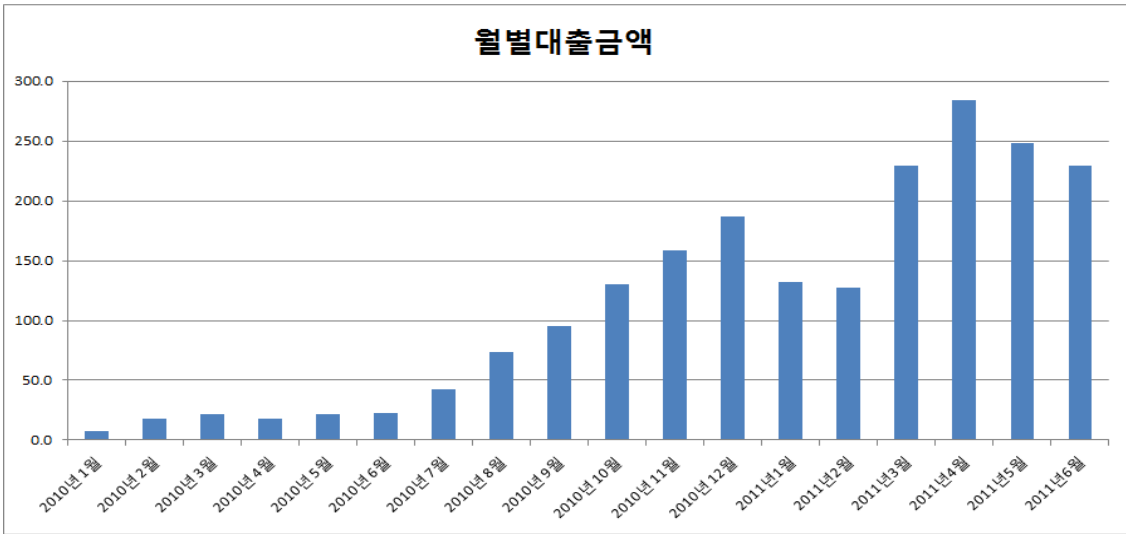

□ 다만, **복지사업자 선정** 및 **관리·감독** 등의 부분에 있어 일부 **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 감사결과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부적정 및 사전현장실사 개선 필요

○ 평가지표가 공신력(30%), 재정능력(25%), 사업수행능력(45%) 등 **정성적 지표 위주, 평가자의 주관이 과도하게 개입될 소지**

○ **사전 현장실사**의 경우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고, 실사내용 또한 신청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부족

⇒ 평가자의 주관 개입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개선 및 현장실사의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개선)**

□ 기존복지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필요

○ '08년 이후 **매년 1회씩 정기 방문감독을 실시**하였으나 체계적인 감독계획의 수립 등이 미흡하여 **형식적 감독활동에 그침**

⇒·기존복지사업자 **관리·감독 개선방안 마련·시행 (개선)**
·**문제가된 복지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환수등 적정조치 (시정)**
·감독업무 담당자 적의 **인사조치 (통보: 인사자료)**

□ 통합정보시스템 보완·개선 필요

○ 미소금융은 지역지점, 은행·기업재단, 지자체, 사회적기업 등 사업주체* 및 지원상품이 다양. **이를 반영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11.9월말 현재 미소금융 복지사업자: 26개 지역지점, 5개 기업재단, 6개 은행재단, 12개 기존 복지사업자(신나는 조합 등), 전국 113개 지자체 등

⇒ 전통시장 상인회 등 미소금융사업의 지원정보를 반영한 통합정보시스템 조속히 구축·시행 **(권고)**

□ **미소금융 특성화상품 운영 개선 필요**

○ **화물차구입자금 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화물운송차량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 방지 측면에서 **대출원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는 사례**

⇒ 은행·기업재단이 보다 다양한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한 특성화 상품을 개발토록 지도, 무보증·무담보 소액대출의 취지에 맞게 대출자금에 대한 담보 설정 관행 개선 **(개선)**

□ **휴면예금 출연기관 확대 등 필요**

○ **은행,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만 재단과 협약**을 맺어 출연, 또한 협약에서 **'개인명의' 휴면계좌만을 출연대상으로 제한**

⇒ **출연대상 기관 확대** 및 **출연대상 계좌 제한 축소** 등 출연유도 노력을 제고할 필요 **(권고)**

3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용

지적분야	지적내용	조치수준
복지사업자 선정 관련	■ 사업자 선정 평가지표 등 부적정 및 사전현장 실사 부실	개선
복지사업자 관리·감독	■ 기존복지사업자 관리·감독 부실	시정 / 개선 / 통보(인사자료)
	■ 통합정보시스템 보완·개선 필요	권고
	■ 미소금융 특성화상품 운영 개선 필요	개선
미소금융 인프라	■ 휴면예금 출연기관 확대 등 필요	권고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 권고, 시정 및 통보(인사자료)**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기종합감사
2012.5.30~6.8

한국금융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2. 5.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한국금융연구원 현황 ····· 2

1. 일반현황 ····· 2

2.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3

3. 2012년도 수입·지출예산 및 2011년도 결산 ····· 4

Ⅲ. 감사실시 결과 ····· 5

1. 분야별 감사결과 ····· 5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9

3. 감사결과 처리요령 ····· 10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사, 감독한다.
* 금융연구원에 대한 直前 외부감사는 2006년 10월 舊 재경부가 실시

□ 감사기간 : 2012. 5. 30(수) ~ 6. 8(금), 7일(근무일 기준)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4명(외부전문가* 1명 포함)

* 회계법인 소속 회계감사 전문 회계사
* 소요예산 : 약 150만원(1명 * 30만원 * 5일)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금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 예산집행·회계처리, 자금관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조직관리 실태

○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 정관등 제규정 준수여부

○ 종전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II. 한국금융연구원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91. 4. 9.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 설립 인가(재무부령 1653호)
○ '91. 4. 25. 사단법인 한국금융연구원 설립등기

□ **소재지 :** 서울 중구 명동1가 4-1 (은행회관 5~8층)

□ **조직 및 인원 :** 7실, 1팀 109명(정원)

* 원장 : 윤창현(60년생) / 서울대(경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現)
감사 : 정병기(55년생) / 영남대(행정학),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前)

<조 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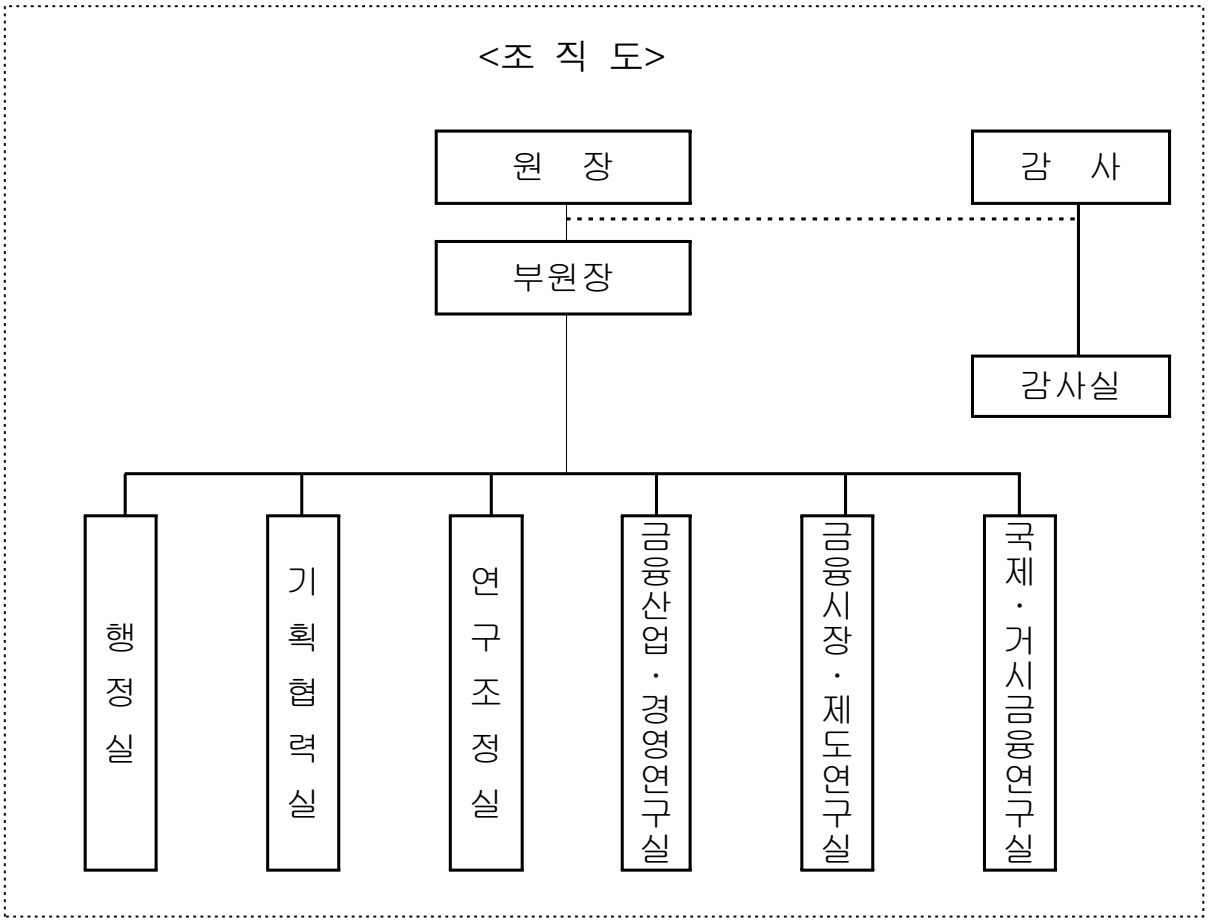

2.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연구사업 : 총 195건

수시과제	선제과제	용역과제*	연구과제**	합계
136건	34건	19건	6건	195건

* 금융위(6), 기재부(6), 국토부(1), 금감원(1), KDI(2), KIEP(2), 은행연합회(1)

** 은행 수익기반 다변화의 효과 분석 및 시사점 등

□ 회의사업 : 총 130회

포럼, 심포지엄, 정책간담회 등	한국경제의 분석 패널	주례세미나	합계
48회	19회	78회	130회

□ 발간사업 : 총 137권

○ 정기간행물 : 69권

- 주간 금융브리프(Weekly Financial Review)
- 계간 금융동향(분석과 전망)
- KEFR(Korea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 금융연구(금융학회와 공동발간)
- 한국경제의 분석, 경제전망 등

○ 연구간행물 : 68권

연 구 보고서	정 책 보고서	금 융 VIP 시리즈	금 융 CEO 에센스	Issue Analysis	Working paper	금 융 리포트	합 계
5권	3권	26권	2권	3권	18권	11권	68권

3. 2012년도 수입·지출예산 및 2011년도 결산

□ 2012년도 수입·지출 예산

수 입	지 출
○ 수입총액 : 186.5억원 ▸ 사원분담금 : 159.8억원 ▸ 전기이월금 : 10.4억원 ▸ 잡 수 입 : 1.3억원 ▸ 전입금수입 : 15.0억원	○ 지출총액 : 186.5억원 ▸ 인 건 비 : 105.9억원 ▸ 자산취득비 : 2.6억원 ▸ 경 비 : 73.0억원 ▸ 전산업무비 : 3.9억원 ▸ 예 비 비 : 1.0억원

* **2011년 수지예산 대비 0.49% 증가**한 수준임

□ 2011년도 결산

○ 재무상태(B/S)

◆ 자 산 : 93.4억원

· 유동자산(예금등) : 85.3억원
· 투자자산(보증금등) : 6.0억원
· 유형자산(집기등) : 2.1억원

◆ 부 채 : 34.4억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 26.6억원
· 예수금·미지급금 등 : 7.8억원

◆ 자 본 : 59.0억원

· 임 의 적 립 금 : 43.3억원
· 미처분잉여금 : 15.7억원

○ 수입·지출현황

◆ 수입총액 : 181.0억원

· 사원분담금 : 152.4억원
· 전기이월금 : 22.7억원
· 잡 수 입 : 0.7억원
· 전입금수입 : 5.2억원

◆ 지 출 : 165.3억원

· 인 건 비 : 91.5억원
· 경 비 : 70.5억원
· 전산업무비 : 2.6억원
· 자산취득비 : 0.7억원

◆ 당기잉여금 : 15.6억원

III. 감사실시 결과

1 분야별 감사결과

가. 인사제도 운영 관련

① 인력수급계획 수립 관련

○ 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연구조정실장과 행정실장은 **매년 직급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원을 확정**하고 이를 예산심의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 동 조항은 2006년도 **舊 재정경제부 감사시 지적되어 개정**('07.4.1 시행)

○ 그러나, 연구원은 매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 인력수급계획에 **직급별 정원의 증감만을 표기***하였을 뿐 증감 사유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내용은 전혀 반영하지 아니함

* 정원 증감표에 **승진연수 도래 연구원의 승진 등을 위한 직급별 수요**를 반영

* 인력운용의 경우에도 **매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2010년도의 경우 연구위원 정원은 3명에 불과했으나 현원은 8명으로 당해 직급 정원의 2.5배를 운영

⇒ 인사규정에 부합토록 연도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정원을 확정**토록 하고,

인력수급계획에는 정원의 증감뿐만 아니라 **당해 증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인력을 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주의: 기관, 개인)**

② 직원 채용시 필요절차 등 미이행

○ 별정직 채용은 **공모에 의하여야 함**(별정직운용요령 제5조), 또한 **2급이상 일반직 채용시 인사위 심의**를 거쳐 함(인사규정 제58조)

- 그러나, '07.2.1 및 '10.6.1 별정직 이○○ 및 조○○을 **공모 없이 채용**하였고, '08.9.1 **인사위 심의 없이** 이○○을 일반직 2급으로 임용

⇒ 직원 채용 및 임용시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한 **공모절차 및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직원 채용·임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 기관)**

나. 성과평가제도 운영 관련

□ 업적연봉 및 연구장려금 지급을 위한 평가체계 부적정

○ 연봉제보수규정 제3조에 따라 연구원의 연봉은 기본연봉, 업적연봉, 연구장려금 및 조사연구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업적연봉과 연구장려금은 성과평가에 따라 결정**됨

- 그러나, **평가등급별 배분비율의 총합이 현원의 140%가 되도록** 함으로써 **하위등급 평가대상자가 거의 없도록** 성과평가제도 운영

- 또한, 연구장려금의 경우 **평가등급별 기준금액 규정이 없고, 지급근거 및 지급기준이 없는 가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

⇒ 연구장려금에 적용되는 **가산금액 지급근거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업적연봉 및 연구장려금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배분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 (개선통보)**

다.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관련

□ 일부 회계처리 관행 개선 필요

○ 예산회계규정 제56조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발생의 사실에 따라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

- 그러나, 미수이자 및 Database 이용료 선납분 등의 회계처리에 있어 **실제 수익·비용의 발생년도가 아닌 현금수입·지급연도의 수익·비용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 일부 **현금주의 회계처리 관행을 실제 수익·비용의 발생사실에 기초하여 회계처리토록 개선**할 필요 **(권고통보)**

라. 임·직원 복리후생 및 내부통제 관련

① 주택구입자금·임차보증금 대출 운영 부적정

○ 복지규정 제10조는 **자택이 없는 직원에 대하여** 주택 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요령'에서는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토록 규정

⇒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은 무주택 직원에 한하여 지원**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 **(개선통보)**

② 학자금 지원 부적정

○ 복지규정 제9조에 따라 **직원 자녀의 중·고교 및 대학교 등록금**에 대하여 **총 4인 한도로 예산에서 지원**

- 그러나, **일반공사립과 특수학교(국제중, 민족사관고)간 지원항목이 달라 지원금액 차이 과다** 발생

<2011년도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현황>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공·사립)	특수(국제중)	일반(공·사립)	특수(민족사관고)
수업료	×	○	○	○
학교운영비	○	○	○	○
학생활동비	×	○	×	○
분기별 지원액	62천원	1,575천원	449천원	1,793천원

* 일반 공·사립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학비(학교운영비+수업료) 전액 면제

⇒ 일반학교와 특수학교간 **지원항목의 차이가 없도록** 하고,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액 또한 **일반학교 평균 지원액과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 **(개선통보)**

③ 연간감사계획 미수립 및 정기감사 미실시

○ 감사규정 제5조(2012.1.15 개정전)에 따라 **연도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업무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 2008년 이후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함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감사계획 수립 여부	○	○	×	×	○
감사실시 여부	○	×	×	×	×

⇒ 연도별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계획 수립 및 정기감사 실시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 기관)**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역

지적분야	지적내용	처분내용
인사운영	■ 인력수급계획 수립·운영 부적정	주의(기관·개인)
	■ 직원 채용시 필요절차 미이행	주의(기관)
성과평가	■ 업적연봉 및 연구장려금 지급을 위한 평가체계 부적정	개선통보
예산집행 / 회계처리	■ 일부 회계처리 관행 개선 필요	권고통보
복리후생 / 내부통제	■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 대출운영 부적정	개선통보
	■ 학자금 지원 부적정	개선통보
	■ 연간감사계획 미수립 및 정기감사 미실시	주의(기관)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통보, 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기종합감사
2012.9.6~9.14

여신금융협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2. 12.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여신금융협회 현황 ····· 2

1. 일반현황 ····· 2

2.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3

3. 2011년도 결산내역 ····· 4

Ⅲ. 감사실시 결과 ····· 5

1. 분야별 감사결과 ····· 5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9

3. 감사결과 처리요령 ····· 10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여신금융협회에 대한 直前 종합감사는 2009년 7월 실시

□ 감사기간 : 2012. 9. 6(목) ~ 9. 14(금), 7일(근무일 기준)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4명(금융감독원* 1명 포함)

*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검사국 소속 검사 전문가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회원에 대한 지도·권고, 회원의 재무상태 분석, 회원간 신용정보 교환,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관리, 표준약관의 제·개정 등

○ 예산집행·회계처리, 자금관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조직관리 실태

○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 정관 등 제규정 준수여부

○ 종전 외부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등

II. 여신금융협회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98. 3. 31. 사단법인 한국여신전문금융협회 설립 인가
○ '99. 5. 24. 협회 감독권 이관 (재경부 → 금감위)

□ **소재지 :** 서울 중구 다동 70번지 (한외빌딩 13층)

□ **조직 및 인원 :** 2본부, 8부, 1센터 47명(정원)

* 회장 : **이두형**(52년생) / 서울대(사회복지), 한국증권금융 사장
상무 : 한백현(56년생) / 연세대(경영), 금감원국장, 신복위 사무국장
감사(비상임) : (공 석)

<조 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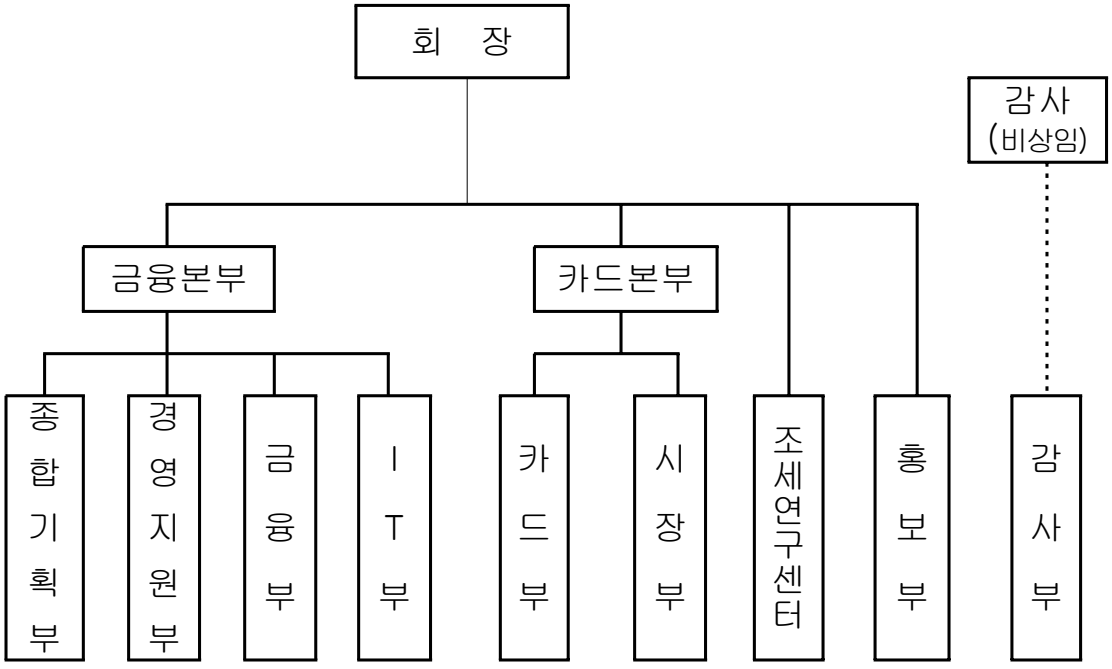

□ **회원 : 60개사**(신용카드사 7, 리스사 24, 할부금융사 18, 신기술금융사 11)

2. 주요 수행업무 및 2011년 업무추진 실적

□ 주요 수행업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 회원에 대한 법령준수 지도·권고
○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 개선권고
○ 회원 재무상태 분석 및 이용자 민원 상담·처리
○ 회원간 신용정보 교환 및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관리
○ 표준약관의 제·개정 및 회원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

□ 2011년 주요 업무추진 실적

○ 소상공인을 위한 **"인터넷대출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 역경매방식으로 소상공인이 대출신청을 한 후 최적의 대출조건을 제시한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 (2011.8.29 개설)

○ **'연말정산용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 의무발송' 폐지**

☞ 카드업계는 연간 약 70~80억원의 비용절감효과 기대 → 국세청은 비용절감분 사회환원 요구(협의중)

○ 업계 현안 대응을 위한 **분석자료 제공 및 해외 사례 조사**

☞ 가계부채 증가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편방향 등

○ **사회공헌기금 조성**(年200억원 목표) **및 운용기본방침*** **수립·운영**

* 신용카드 채무불이행자(40%), 저소득층(30%), 영세가맹점(15%), 공익활동·학술(15%)

☞ '11년중 160.6억원 조성 ⇒ 신복위를 통한 신용카드 채무불이행자 등 지원(70억원 → 2,300명), 영세가맹점 자녀 장학금 지원(1천만원)

○ **소비자 민원접수 및 처리 등**

☞ 부당대우가맹점 신고(2,854건), 위장가맹점 신고(543건), 상속인조회(52,232건), 신용카드발급 중지서비스(224건), 단순민원(519건) 등 처리

3. 2011년도 주요 결산내역

□ 2011년도 수입·지출(P/L)

수 입	지 출
○ 수입총액 : 115.9억원	○ 지출총액 : 99.4억원
▸ 협회비 수입 :108.8억원	▸ 인 건 비 : 43.4억원
▸ 수입이자 : 3.4억원	▸ 업무추진비 : 3.2억원
▸ 출판사업매출 : 1.5억원	▸ 홍 보 비 : 4.4억원
▸ 전산용역매출 : 1.0억원	▸ 보안용역비 : 14.8억원
▸ 목적사업준비금 환입 : 1.0억원	▸ 기타경비 : 33.6억원
▸ 기타수입 : 0.2억원	○ 당기순이익 : 16.5억원

* **2012년 예산 : 105.2억원**(인건비 49.8억원, 가맹점수수료 체계개편 연구용역 14억원 등)
* 수입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아니함 → **지출예산만 편성·운영**

□ 2011년도말 현재 재무상태(B/S)

◆ 자 산 : 230.5억원	◆ 부 채 : 154.5억원
· 유동자산(예금등) : 141.8억원	· 사회공헌기금수탁금 : 125.5억원
· 투자자산(장기대여금등) : 52.1억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 15.2억원
· 유형자산(토지·건물등) : 36.6억원	· 장기차입금·미지급금 등 : 13.8억원
	◆ 자 본 : 76.0억원
	· 출 연 금 : 26.1억원
	· 임의적립금 : 1.1억원
	· 미처분이익잉여금 : 48.8억원
	· 기 타 : 0.6억원

III. 감사실시 결과

1 분야별 감사결과

가. 고유업무 수행 관련

① 표준강의교재 관리업무 미흡

○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협회는 신용카드 모집인 교육시에 활용하는 **표준강의교재를 제·개정하여 신용카드사에 제공**하여야 하나, 2008.12. 표준강의교재 제정 이후 개정하지 아니함

* 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모집인에 대하여 해당 **모집인 등록시점 직전 1개월 동안 1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 협회의 표준강의교재를 활용**하여야 함

⇒ 여전법상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처벌(제72조), 개인정보보호법('12.3.30 시행) 주요내용 및 카드불법모집합동기동점검반 점검결과 주요 위반사례 등 **카드 모집인 활동 관련 중요사항 등을 표준강의교재에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하고 **표준강의교재를 개정**하여 신용카드사에 제공할 것 **(기관주의)**

② 신용카드 사회공헌기금 조성 및 활동 부진

○ 2011.3.25 '신용카드사사장단회의'를 통해 7개 전업 카드사로부터 **매년 2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키로 결정

- 그러나, **납부기한('11.5.31)을 대부분 준수하지 않고**, 모금액도 '12.9.14 현재 195.4억원으로 전액 모금이 되지 않았음

- 또한 **집행된 금액은 조성된 기금(195.4억원)의 56.3%인 110.1억원에 불과**

○ 2012년에도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조성방침 등 확정된 사항이 없는 상황**

<신용카드사회공헌기금 집행현황('12.09.14 기준)>

구 분	사업내용	지원기관	지원액(억원)	집행일
①	소액금융지원(신용카드 사랑론)	신용회복위원회	70	'11.09.06
②	창업 및 사회적기업 운영자금 지원	사회연대은행(복지사업자)	10	'12.05.10
③	소상공인 자녀 장학금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5.1	'11.12.05 '12.06.15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8	'12.09.04
④	경제금융관련학회 학술연구활동 지원	한국신용카드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경영학회	1	'12.03.27
	공익광고	보이스피싱 예방광고 공익광고 협찬 사회공헌활동 광고	16	'12.06.11 ~ '12.09.30
소 계			110.1	

⇒ 사회공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위원회를 내실화하는 등 **기금조성 및 집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권고통보)**

2 인사제도 및 회의체 운영 관련

① 인사위원회 운영 및 성과급 지급체계 부적정

○ 인사규정상 **표창과 징계사항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직원승진에 관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또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없이** 해당건 발생시에 회장 및 본부장으로 인사위를 구성하여 운영

* '09년 이후 인사위 심의사례는 직원 징계 1건에 불과

○ **성과급 지급**의 경우 개인별 종합근평 결과에 따라 지급토록 규정할 뿐 **평정등급, 등급별 배분율 및 지급액 등 미 규정**

⇒ 승진 등 **직원의 신상에 관한 중요사항은 인사위 심의대상**으로 하고, **인사위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성과급 지급기준(평정등급, 등급별 배분율 및 지급액 등)을 마련**할 것 **(개선통보)**

② 신용카드사사장단 회의 운영 부적정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은 협회 「정관」 제15조제1항에 의거 **총회 승인사항**

- 다만, 「정관」 제15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특정업권의 특수목적사업을 위해 해당회원사간 합의·결정된 사항은 총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이에 따라 협회는 **신용카드회계 예·결산의 승인** 등 신용카드 업권의 중요사항을 **신용카드사장단 회의에서 최종 결정**

- 그러나 총회 승인을 갈음하는 기구인 신용카드사장단 회의의 의결정족수, 심의사항, 회의록 작성·관리 등 **회의체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 미규정**

⇒ **신용카드사사장단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선통보)**

3 예산집행 · 회계처리 및 회비징수 관련

① 공로금 지급방법 및 고문급여 지급 등 부적정

○ 前부회장 퇴임시 이사회('10.3.16)에서 결정된 **공로금 지급을 인건비가 아닌 용역비 예산에서 집행**하였으며,

- 同人의 상임고문 재임 시 고문료를 지급함에 있어 '10.4.9부터 채용되었음에 **4월 급여는 급여규정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어야 했으나 보수월액 전액을 지급**

○ 또한, '09년도 및 '10년도에 협회 이사회에 참석한 **상임임원에게도 거마비 지급**

⇒ 공로금 등 **인건비성 경비는 인건비 예산에서 집행**하고 신규 임용자의 **임용월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상근임원에게 이사회 등 참석을 이유로 거마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기관주의)**

② 회비 납부지연 회원에 대한 적정조치 미이행

○ 회비징수규정에 따라 연체회원에 대하여 **이사회가 결정한 연체이자율로 가산한 금액을 추가 납부**토록 하여야 하나, 협회는 **적용할 연체이자율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상정하지 아니함**

<회비납부 지연현황>

구 분	일반회비			신용카드특별회비		
	납부대상 회원사수	납부지연	3개월 이상 납부지연	납부대상 회원사수	납부지연	3개월 이상 납부지연
2010년	41	22	5	8	8	2
2011년	42*	16	5	8	7	4
2012년	54	28	12	8	8	4

* 신규회원사(11개사) 제외

⇒ 정상납부 회원과의 형평성 및 협회 운영의 안정성 등을 위해 **회비납부 지연 방지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시행할 것 (개선통보)**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역

지적분야	지적내용	처분내용
고유업무	■ 표준강의교재 관리업무 미흡	주 의 (기관)
	■ 신용카드 사회공헌기금 조성 및 활동 미흡	권고통보
인사제도 / 회의체 운영	■ 인사위원회 운영 및 성과급 지급체계 부적정	개선통보
	■ 신용카드사사장단 회의 운영 부적정	개선통보
예산집행 / 회비관리	■ 공로금 지급방법 및 고문급여 지급 등 부적정	주의(기관)
	■ 회비 납부지연 회원에 대한 적정조치 미이행	개선통보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권고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기종합감사
2012.10.29~11.6

금융보안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2. 1.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금융보안연구원 현황 ····· 2

1. 일반현황 ····· 2

2.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3

3. 2012년도 예산 및 2011년도 결산 ····· 4

Ⅲ. 감사실시 결과 ····· 5

1. 분야별 감사결과 ····· 5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9

3. 감사결과 처리요령 ····· 10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금융보안연구원에 대한 감사는 '06.10 조직 설립 후 처음임

□ 감사기간 : 2012. 10. 29(월) ~ 11. 6(화), 7일(근무일 기준)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5명(외부전문가* 2명 포함)

*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소속 IT·전산 전문가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금융 IT 및 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연구·개발, 금융부문 정보보호제품 개발 및 적합성 테스트, 금융회사 OTP* 통합인증센터 운영·관리 등)

* One Time Password :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시 고정된 비밀번호 대신 매번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일회용 비밀번호

○ 예산집행·회계처리, 자금관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조직관리 실태

○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 정관 등 제규정 준수여부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

II. 금융보안연구원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05. 9. 「전자금융거래 안정성강화 종합대책*」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

* '05.5 국내최초 인터넷뱅킹 해킹사고를 계기로 당시 산자부, 정통부, 금감위 등이 공동으로 수립

○ '06. 10. 사단법인 『금융보안연구원』 설립 등기

□ 소재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36-1 (키움파이낸스스퀘어빌딩 15층)

□ 조직 및 인원 : 4본부 1실 8팀, 64명

* 원 장 : 김광식(58년생) / 성균관대(경영),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前)
감사(비상임) : 김도완(65년생) / 한국외대(경영), 키움증권 이사(現)

<조 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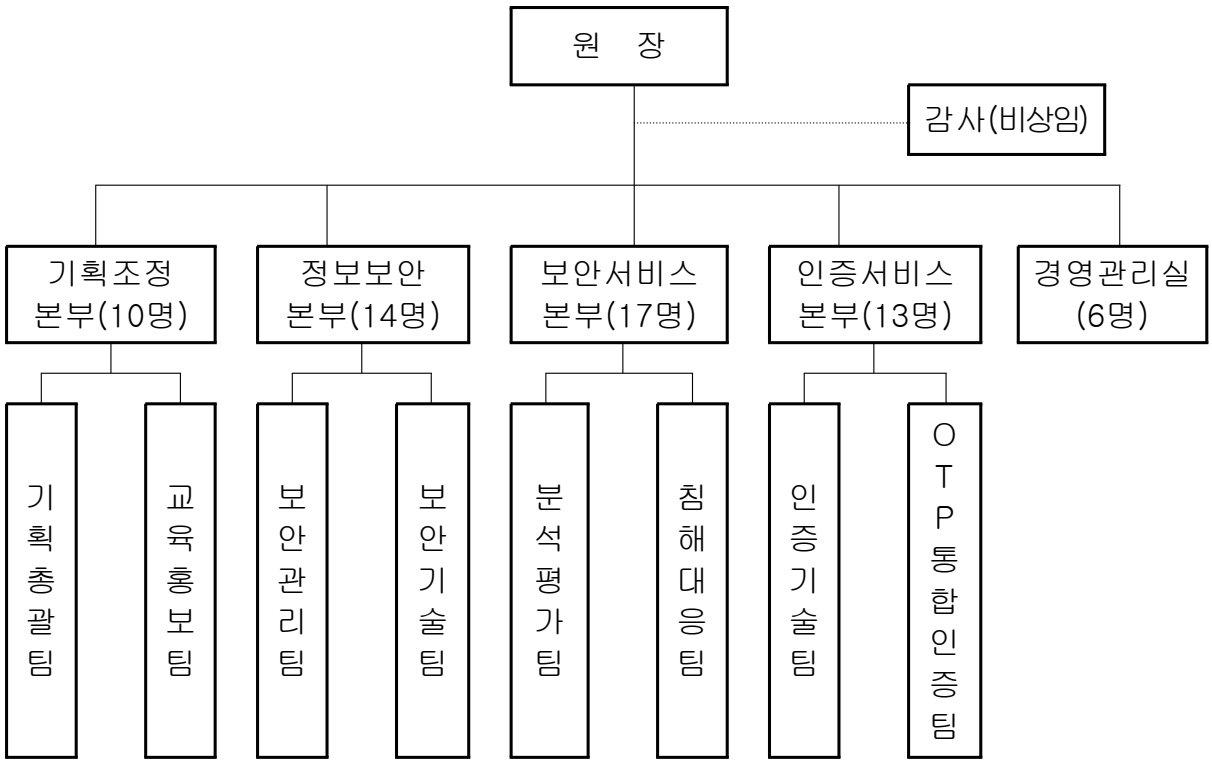

2. 201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수준 제고

○ 전자금융 취약성 분석, DDoS 모의훈련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회원사의 전자금융 안정성 확보

(단위 : 건)

구 분	금융보안 적합성 시험	취약점 분석					모의훈련 (사이버공격)
		PC보안	HTS	스마트폰	무선랜	홈페이지	
2010년	11	325	55	27	36	86	38건
2011년	**4**	**351**	**61**	**29**	**47**	**120**	**55건**

○ 금융회사 제휴사업자(VAN 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합동점검 지원

구 분		2010년		2011년	
		대상기관	회원사	**대상기관**	**회원사**
전자금융보조업자 안전성 합동점검 지원	카드VAN	16	13	**16**	**13**
	기업CMS	16	17	**12**	**12**
	자동화기기	7	23	**7**	**22**

○ OPT(One Time Password)통합인증센터의 보안성·안정성을 확보하여 무장애 인증서비스 제공

* OTP센터 안정성 점검(1회), RSA社(美 보안업체) 정보유출사고 관련 공동대응방안 마련·배포(62개사), OTP업체 공동점검(2건)

□ 금융이용자 대상 보안의식 제고

구 분		2010년	2011년
금융정보보호 아카데미	교 육 (온라인 포함)	8,328명	40,003명
	교육컨텐츠	9종	9종
금융보안·인증기술 세미나		3회	3회
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		558명	650명
대학생금융보안캠프		97명	97명
금융보안 포럼		84회원	84회원
금융보안 순회교육		-	11건

* **기타 연구활동 등 :** 보고서(15건), 이슈리포트(21건), OTP 표준개발(6건), 해외동향 165회, 뉴스레터(50회) 등

3. 2012년도 예산 및 2011년도 결산

□ 2012년도 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 예산총액 : 60.3억원 ▸ 인 건 비 : 29.7억원 ▸ 복 리 비 : 2.1억원 ▸ 임 차 료 : 6.3억원 ▸ 용 역 비 : 5.9억원 ▸ 업무추진비 : 1.1억원 ▸ 기타경비 : 15.2억원	○ 예산총액 : 29.6억원 ▸ 인 건 비 : 7.9억원 ▸ 통 신 비 : 5.8억원 ▸ 임 차 료 : 7.9억원 ▸ 수선유지비 : 2.7억원 ▸ 업무추진비 : 0.1억원 ▸ 기타경비 : 5.2억원

* OPT통합인증센터 운영·관리를 위해 별도 회계 운영

□ 2011년도 결산

○ 재무상태(B/S)

◆ 자 산 : 78.2억원
- 유동자산(예금등) : 23.9억원
- 조직안정화기금 : 25.1억원
- 유형자산(집기, 시스템구축등) : 10.3억원
- OTP벤더가입비 : 12.1억원
- 기 타 : 6.8억원

◆ 부 채 : 10.4억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 6.9억원
- 예수금·미지급금 등 : 3.5억원

◆ 자 본 : 67.8억원
- 안정화기금적립금 : 24.5억원
- 미처분잉여금 : 34.9억원
- 임의적립금 : 3.4억원
- 운영예산이월금 : 5.0억원

○ 수입·지출현황

◆ 수입총액 : 85.2억원
- 회 비 수 입 : 79.4억원
- 수 입 이 자 : 4.2억원
- 기 타 : 1.6억원

◆ 지 출 : 80.5억원
- 인 건 비 : 36.3억원
- 통 신 비 : 6.1억원
- 임 차 료 : 12.1억원
- 용 역 비 : 4.3억원
- 기타경비 : 21.7억원

◆ 당기잉여금 : 4.7억원

III. 감사실시 결과

1. 분야별 감사결과

가. 인사·정원 관리 및 위원회 운영 실태

① 정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조직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정원 조정 시에는 ① 정원 조정 필요성, ② 관련 업무 내용 및 업무량에 관한 구체적 자료, ③ 직무기술서 등을 작성하여 총회 등의 승인을 얻어 정원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 2009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정원을 증원하면서 상기의 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사업계획서상 간략한 증원 요구만으로 정원을 확정하여 예산에 반영

☞ 정원의 증원 시, 증원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고, 인건비 예산의 증액이 수반되는 경우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것 **(기관주의)**

② 직원 채용 관리 미비

○ 「인사관리규정」 제71조에 따른 투명한 채용관리를 위해서는 서류 및 면접심사기준, 면접대상자 결정방법, 심사위원 구성, 동점자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하나, 일정한 기준 없이 관행에 따라 직원을 채용함

☞ 직원 채용 시 심사기준·심사위원 구성·면접대상자 결정방법·동점자 처리방법 등 채용 관련 중요사항은 **내부 규정화**하는 등 **채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개선통보)**

나. 예산편성 · 집행 실태

① 『회의행사비』 사용 용도 부적합

○ 통상적으로 「회의행사비」는 외부기관과의 회의, 행사비 등 **회의 및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비목**임에도,

- 직원 애로사항 청취 등의 명분으로 임·직원 간담회 비용 및 부서내 업무 협의 등으로 예산을 편성 하여 「업무추진비」와 차별성 없이 사용

☞ 임직원 간담회 비용 및 부서 내 업무협의 비용은 기존에 **기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고, 「회의행사비」는 공식회의 및 행사 시 등에 사용토록 할 것 **(기관주의)**

② 임·직원들에 대한 과다한 복지제도 운영

○ 임·직원 자녀들의 중·고생 이외 대학생 학비를 전액 지원하며, 특히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한도액 제한** 등 일정기준 없이 예산에서 학자금을 전액 무상지원하고 있음

○ 또한 매년 건강검진비로 직원과 별도로 원장에 대해 특별종합검진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

☞ 회원사들의 회비에 전액 의존하여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다한 복지후생제도를 축소**하여 회원사들의 회비를 경감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만들어 시행 할 것 **(개선통보)**

다. 고유 업무 운영 실태

①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ISAC(금결원, 코스콤)의 업무 중복

○ 금융보안연구원의 정관 제34조(업무법위의 제한)에 의하면, 해킹(Hacking), 피싱(Phishing) 등 금융부문 전자적 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및 방안 수립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한 금융ISAC 업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 금융보안연구원은 금융회사 요청에 의해 **은행·증권사**의 취약점 분석·평가, 사이버공격 대응 모의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금융보안연구원의 고유 업무인 정보보안 교육·연수, 보안기술 연구·개발, OTP통합인증센터 운영 등 **금융보안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금융ISAC과의 기능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개선통보)

② OTP통합인증센터 안전성 점검 방안 개선

○ OTP통합인증센터를 운영하는 금융보안연구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외부주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점검을 받은 사실이 없음

* 외부주문기준 : 정보처리시스템 설치 장소 통제, 중요 데이터 변경 금지 및 유출 금지, 해킹 등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재무건전성 평가 등

○ 또한, 금융보안연구원은 OTP통합인증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체 5개 OTP업체 중 2개 업체가 재무상태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여 **2개 업체의 OTP운영 설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임.

☞ 금융보안연구원은 OTP통합인증센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점검이 가능한 기관을 통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의 준수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받고, OTP업체에 대해서도 재무상태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부도 등으로 인한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 할 것 **(개선통보)**

③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안전성 합동 점검 개선

○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에 따라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재무건전성, 서비스 품질을 매년 점검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금융보안연구원은 금융회사 요청에 의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면서 안전성 합동 자체 점검 기준 마련 등 합동점검의 기획·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에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 점검기준은 「금융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융보안연구원이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 점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함

☞ 금융보안연구원의 자체적인 점검기준은 **소관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금융회사 요청에 의한 전문인력 지원 등의 업무만 수행할 것 **(개선통보)**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역

지적분야	지적내용	처분내용
인사/정원 관리 및 위원회 운영	■ 정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 ■ 직원 채용 관리 미비	주 의(기관) 개선통보
예산 편성 및 집행	■ 회의행사비 사용 용도 부적합 ■ 임·직원들에 대한 과다한 복지제도 운영	주 의(기관) 개선통보
고유 업무 운영	■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 ISAC의 업무 중복 문제 ■ OTP통합인증센터 안전성 점검 방안 개선 필요 ■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부적절한 안전성 합동 점검	개선통보 개선통보 개선통보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금융보안연구원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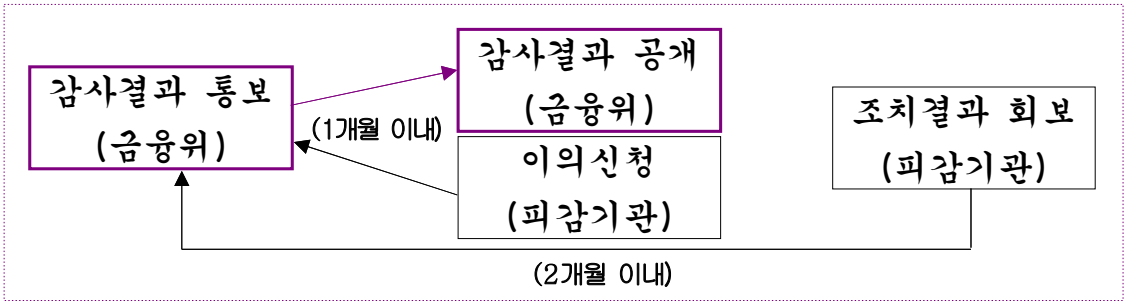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권고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특정 감사
2013.2.20~2.21

한국공인회계사회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2013. 5.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한국공인회계사회 현황 ····· 2

1. 일반현황 ····· 2

2.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3

3. 예·결산 현황 ····· 4

Ⅲ. 감사실시 결과 ····· 5

1. 분야별 감사결과 ····· 5

2.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8

3. 감사결과 처리요령 ····· 9

I. 감사실시 개요

□ 실시 배경

○ 공정시장과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위탁 사무*의 처리 **실태를 자체 점검('12.10.4~10.5)**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의뢰 요청

*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 및 증선위로부터 비상장법인 감사보고서 감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일부 징계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

□ 감사 근거 : 공인회계사법 제47조 및 민법 제37조

*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회는 금융위원회가 감독한다
(민법)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감사 기간 : 2013. 2. 20(수) ~ 2.21(목), 2일

□ 감사 사항 : **위탁사무 처리실태**(특정감사)

○ 업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업무와 관련된 특정감사 실시

□ 감 사 반 : 감사담당관(반장) 외 4명*

* 감사담당관실 1명(5급), 공정시장과 3명(5급 2, 6급 1)

□ 감사 중점

○ **공인회계사 등록, 징계업무** 처리의 적정성

* 윤리위원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 **위탁 감리업무** 처리의 적정성

* 위탁감리위원회

II. 한국공인회계사회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45.10. 조선계리사회 설립
○ ‘54.12. 계리사법에 의한 한국계리사회 설립
○ ‘66. 9. 한국공인회계사로 재발족

□ 소재지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7길 12

□ 조직 및 인원 : 11팀3실2위원회, 89명

*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23명) 제외(기재부 위탁사업 수행)

* 비상근회장 : 강성원(48년생)/서울대(상학), 국세청 국세행정위원회 위원(現), 세발심위원(現)
상근부회장 : 이광남(50년생)/성균관대(경제학),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現),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現)
상근부회장 : 신용인(52년생)/ 연세대(경영학), 이화학당 감사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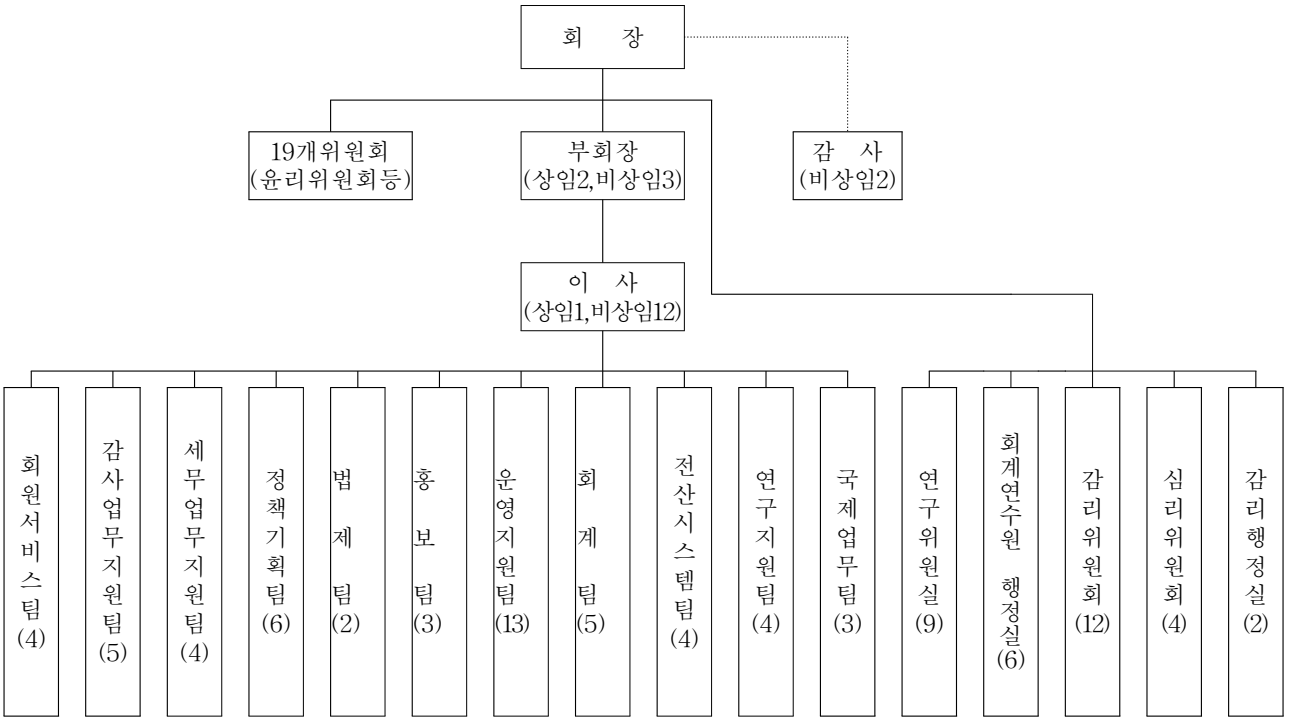

2.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제도 개선

○ 감사인의 비례책임제 도입 추진
○ 금융위의 '회계산업 선진화' 관련 합리적 추진 건의

□ 업무영역 확대

○ 새마을금고 및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외부감사제 도입 추진
○ 인증서한(Comfort Letter) 제도의 합리적 도입 추진
○ 사회적기업 회계컨설팅 및 중소기업 FTA닥터(컨설턴트) 사업 실시

□ 회원권익 보호 및 신장

○ 감사품질제고를 통한 보수현실화 추진(Time Charge제 유도)
○ 공인회계사의 정부기관 및 정부위원회 참여 활성화
○ 저축은행사태 등 관련 대회원 법률서비스 지원

□ 공적기능 및 홍보활동 강화

○ 국가회계·결산 지원사업 수행
○ IFRS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재능나눔 참여

□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사업

○「외감법」에 따른 감사보고서 및 품질관리 위탁감리 실시
○ 금감원과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위탁감리업무 협조체계 구축

3. 예·결산 현황

□ 2012년도 예산(2012.4.1~2013.3.31)

일반회계	감리회계	특별회계(수익사업)
○ 예산총액 : 125.3억원 ▸인건비 : 52.9억원 ▸연구및교육비 : 4.8억원 ▸업무추진비 : 1.0억원 ▸회비및분담금 : 4.8억원 ▸유지관리비 : 7.5억원 ▸세금과공과금 : 3.4억원 ▸기타경비 : 50.9억원	○ 예산총액 : 23.7억원 ▸인건비 : 16.0억원 ▸유지관리비 : 2.3억원 ▸세금과공과금 : 1.4억원 ▸기타경비 : 4.0억원	○ 예산총액 : 59.9억원 ▸인건비 : 6.4억원 ▸출판비 : 16.4억원 ▸연수비 : 7.0억원 ▸국가회계지원단운영비 : 6.4억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 18.2억원 ▸유지관리비 : 0.8억원 ▸세금과공과 : 0.6억원 ▸기타경비 : 4.1억원

□ 2011년도 결산(2011.4.1 ~ 2012.3.31)

○ 재무상태(B/S)

• 자산 : 159.4억원
- 유동자산 : 99.4억원
- 투자자산 : 57.1억원
- 유형자산 : 2.9억원

• 부채 : 34.9억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19.6억원
- 미지급금 : 9.8억원
- 예수금 및 가수금 : 4.8억원
- 장기차입금 등 : 0.7억원

• 자본 : 124.5억원
- 기 금 : 2.8억원
- 준비금 : 7.4억원
- 임의적립금등 : 114.3억원

○ 수입·지출현황

• 수입총액 : 171.6억원
- 회비수입 : 114.1억원
- 수입이자 : 19.6억원
- 용역수입 : 4.9억원
- 교육수입 : 11.0억원
- 출판수입 : 13.0억원
- 기타수입 : 9.0억원

• 지 출 : 168.7억원
- 인건비 : 69.3억원
- 출판비 : 17.5억원
- 연구 및 교육비 : 8.1억원
- 회의비 및 업무개발비 : 9.1억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 19.6억원
- 유지관리비 : 8.6억원
- 세금과공과 : 4.7억원
- 각종회비(국제기구회비등) : 4.8억원
- 기타경비 : 27.0억원

당기잉여금 : 2.9억원

III. 감사실시 결과

1. 분야별 감사결과

1. 공인회계사 징계처리 업무 부적정

□ 금융위(증선위)는 (주)○○○○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공인회계사 박○○ 및 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고 필요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공인회계사회는 사유발생 시점으로 부터 3년 이내(징계 제척기한)에 이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감사인의 공인회계사법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조사 및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 제척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징계조치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경고)**

※ 관련 업무를 소홀이 한 담당자에 대하여는 감급(6월) 등 기 조치

2.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한 미준수

□ 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 등의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실 사례 확인 시에는,

○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당해 회계사에 대한 징계 등을 14일(또는 연장시 30일) 이내에 요구하여야 하나, 상당 기간이 지나 일괄하여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징계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음

☞ 감사인에 대한 조사·징계 등 조치의결 요청시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한을 철저히 준수**할 것 **(주의)**

※ 관련 업무를 소홀이 한 담당자에 대하여는 1계급 강직 등 기 조치

3. 위탁 감리 업무 소홀

□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는 (주)○○○○의 '09년도 감사인(○○회계법인)에 대하여 일부 감사절차 소홀을 사유로 외감법에 따라 조치(주의) 후, 그 처리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

□ 증선위는 위 업체에 대한 감리과정에서 '07년 및 '08년에도 동 업체의 또 다른 감사인(○○회계법인)이 동일한 위반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 이를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였으나, 공인회계사회는 동 감사인에 대한 추가감리 실시 및 적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증선위 등으로부터 감사인의 부실감사 혐의 등을 통보받은 경우 **즉시 동 감시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감리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 위탁감리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주의)**

4. 공인회계사 징계 제척기한 처리 업무 미흡

□ 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김○○ 및 설○○가 허위 기업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증선위로 부터 이첩 받아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 이 경우 건 별로 징계 제척기한(3년) 이내에는 조사완료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일괄 처리함

⇒ 공인회계사회(윤리위원회 및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징계 제척기간 이내에 징계 등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주의)**

5.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업무처리 지연

□ 공인회계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 발생(예 : 금고이상의 형 확정 등)시 동법 제9조에 "공인회계사의 등록을 취소한다" 라고만 되어 있고, **등록 취소를 위한 처리 내부 규정**은 미비하여,

○ 실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내역을 경찰청이 통보한 날로부터 등록 취소일까지 최소 3일~최장 96일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 발생사실 확인 시 지체없이 등록을 취소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 할 것 **(개선 통보)**

6. 증선위 지시 및 명령에 따른 직권재심 규정 미비

□ 위탁감리위원회는 『위탁감리위원회의 운영 규정』 제13조의2(직권재심)에 의거, 기 조치한 의결 사항에 대해 직권 재심하여 기 조치한 의결사항에 대한 취소나 변경이 가능

○ 그러나 증선위의 지시 또는 조치 명령의 경우에는 **직권재심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직권 상정이 불가능함

⇒ 공인회계사회는 증선위의 지시 또는 명령이 있는 경우 위탁감리위원회의 직권재심이 가능하도록 **내규를 개정** 할 것 **(개선 통보)**

2.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역

지적 내용	처분내용
■ 공인회계사 징계 처리 업무 부적정	경 고
■ 윤리조사심의위원회 회부기한 미준수	주 의
■ 위탁감리업무 소홀	주 의
■ 징계 제척기간 처리 업무 미흡	주 의
■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 업무처리 지연	개선 통보
■ 증선위 지시 및 명령에 따른 직권재심 규정 미비	개선 통보

□ 조치계획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제14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권고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기종합감사
2013.5.23 ~ 6.7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3. 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현황 ····· 2

1. 일반현황 ····· 2

2.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3

3. 2013년도 수입·지출예산 및 2012년도 결산 ····· 4

Ⅲ. 감사실시 결과 ····· 5

1. 분야별 감사결과 ····· 5

2.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계획 ····· 11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사, 감독한다.

□ **감사기간 : 2013. 5. 23(목) ~ 6. 7(금), 11일**(근무일 기준)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6명(외부전문가* 1명 포함)

*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전문 인력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자본시장 관련 정책연구, 자본시장에 관한 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 등

○ 예산집행·회계처리, 자금관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조직관리 실태

○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 정관 등 제규정 준수여부

○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

II.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97. 9. 27. 사단법인 한국자본시장연구원(舊 한국증권연구원) 설립 허가(총리령 제556호)

○ '97. 9. 30. 사단법인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설립 등기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금융투자협회빌딩 (9층, 10층, 18층, 19층)

□ **조직 및 인원 :** 8실 2팀, 95명 (정원)

* 원장 : 김형태(1961년생)/서울대(경영학), 한국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前)
감사(비상임) : 박재식(1958년생)/금융정보분석원장(前), 증권금융 사장(現)

<조 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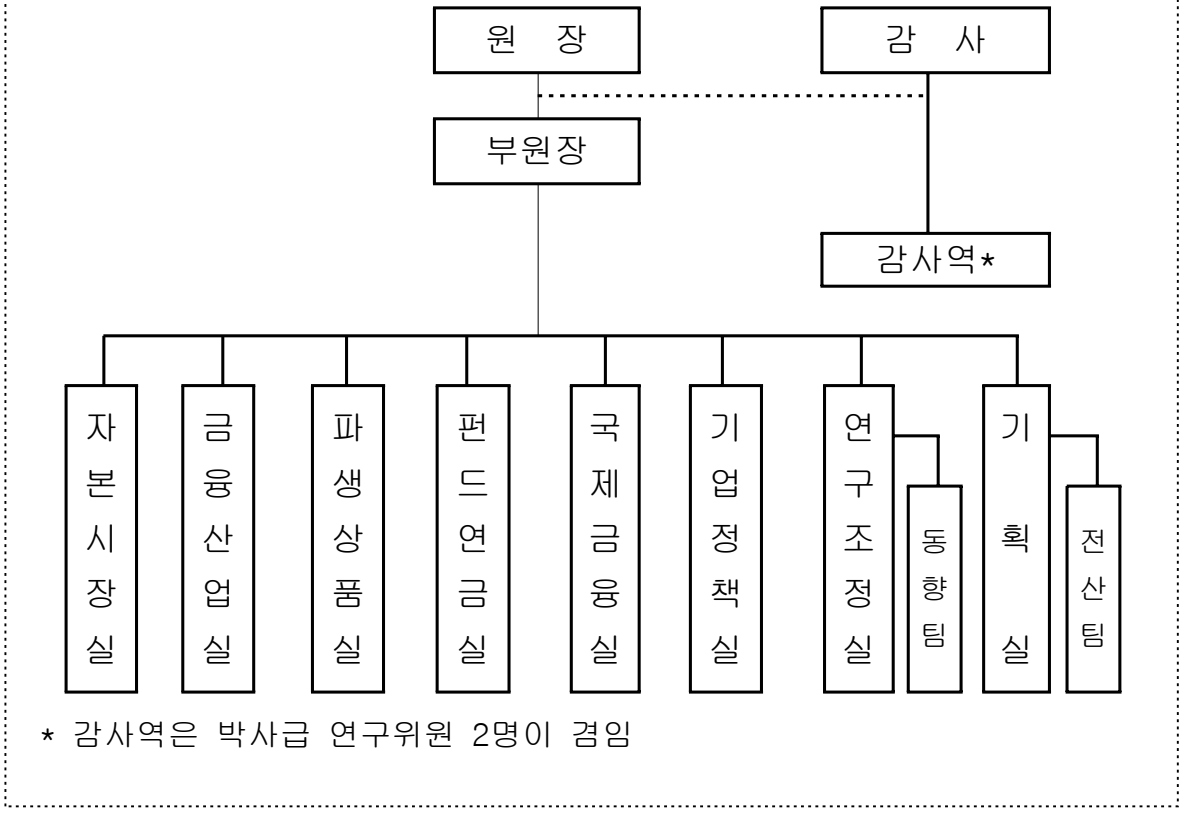

* 감사역은 박사급 연구위원 2명이 겸임

2.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연구사업 : 총 80건

정책과제	T/F 수시과제	용역과제*	연구과제**	합계
18건	19건	24건	19건	80건

* 금융위(2), 기재부(3), 금감원(1), 지경부(2), 고용노동부(1), 국회정무위(1), 금융투자협회(4), 거래소(4), 수출입은행(1), 예탁결제원(1), 증권금융(1), 한국벤처투자(1), 연금학회(1), ADB(1)

** 2012년도 연구사업 대주제 : 미래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의 역할

□ 회의사업 : 총 56회

포럼, 심포지엄, 정책간담회 등	릴레이 정책세미나	연구회* 세미나	합계
26회	8회	22회	56회

* ABMF연구회(8회), VCPE연구회(5회), CSR연구회(4회), 녹색금융연구회(5회)

□ 발간사업 : 총 26권

○ 정기간행물 : 7권

- Capital Market Perspective 한글/영문 (계간)
- 자본시장 Weekly (주간)
- 글로벌 금융리더에게 듣는다 (격주)
- 중국 금융시장 포커스 (계간)
- 유럽 금융시장 포커스 (계간지)
- 자본시장 제도동향 (월간, 년간)
- Fund Review (월간, 년간)

○ 연구간행물 : 19권

연구 보고서	조사 보고서	이슈 & 정책 보고서	Working Report	합 계
5권	5권	8권	1권	19권

3. 2013년도 수입·지출예산 및 2012년도 결산

□ 2013년도 수입·지출 예산

수 입	지 출
○ 수입총액 : 117.5억원	○ 지출총액 : 117.5억원
▸ 사원분담금 : 109.6억원 ▸ 연구용역이익 : 4.5억원 ▸ 전기이월금 : 2.7억원 ▸ 수입이자 : 0.7억원	▸ 인 건 비 : 68.6억원 ▸ 연구사업비 : 12.8억원 ▸ 일반경상비 : 35.8억원 ▸ 예 비 비 : 0.3억원

* **2012년 수지예산 대비 3.3% 증가**한 수준임

□ 2012년도 결산

○ 재무상태(B/S)

◆ 자 산 : 49.9억원
- 유동자산(예금 등) : 12.6억원
- 투자자산(보증금 등) : 33.9억원
- 유형자산(집기 등) : 3.4억원

◆ 부 채 : 4.2억원
- 예수금, 미지급금 등 : 3.2억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 1.0억원

◆ 자 본 : 45.7억원
- 기 본 재 산 : 11.8억원
- 적 립 금 : 33.9억원

○ 수입·지출현황(I/S)

◆ 수입총액 : 118.1억원
- 회 비 수 입 : 100.8억원
- 연구용역이익 : 16.7억원
- 이자수입 등 : 0.6억원

◆ 지 출 : 125.1억원
- 인 건 비 : 63.1억원
- 연구사업비 : 21.0억원
- 일반경상비 : 37.9억원
- 기 타 : 3.1억원

◆ 당기순손실 : 7억원

III. 감사실시 결과

1 분야별 감사결과

가 인사관리

① 직원 승진 및 채용시 필요절차 미이행

□ 연구원 「인사위원회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직원 승진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임

○ 그러나, 연구원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21명의 승진자 결정시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2010년 이후 승진자 현황>

선임연구위원	선임연구원	책임사무역	대 리	소 계
4명	10명	1명	5명	21명

○ 또한, 같은 기간 중 총 53명을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위원 채용(17명)시에만 인사위원회 심의를 실시**

- 규정상 직원 채용시는 모두 심사를 거쳐야 하나 **연구원 및 행정직 채용시에는 미실시**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직원 채용현황 (명)>

구 분	연구위원	연구원	행정직	연구보조원 (RA)	소 계
2010년	3	1	0	14(9)	18
2011년	7	1	1	6(5)	15
2012년	7	3	1	4(4)	15
2013.5월	0	3	0	2(0)	5
소 계	17	8	2	26(18)	53

⇒ 직원 승진이나 채용시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기관경고)**

② 직원 채용 관련 채용심사절차 등 규정 미비

□ 직원 채용시 **채용심사위원의 구성, 심사항목, 심사등급 부여 등 채용절차에 대한 근거규정 없이** 관례적으로 채용

○ **연구위원**은 홈페이지 상시모집 및 해외 채용시장을 통해 모집 후 「서류심사 → 채용세미나・면접심사」의 절차를 거쳐 채용

○ **기타 연구원, 행정직 등**은 공모를 통해 모집한 후 실장 등의 추천 및 전결권자의 결재에 의해 채용

⇒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관리를 위해 **직종(또는 직급)별로 채용심사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시행**할 필요 **(개선)**

나 복무관리

① 특별휴직자 관리 부적정

□ 인사관리규정 제28조에 따라 특별휴직신청건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승인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 **국외에서 연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별도의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묵인한 사례**

⇒ 특별휴직 승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친 후 **승인된 내용에 따라 특별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휴직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개인・기관주의)**

② 국외출장계획 수립 및 출장보고서 작성 미흡

□ 출장일정에 **방문자 및 논의주제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방문 등으로 일정을 수립하고,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출장성과 확인 불가능

○ 출장보고서는 제출하나, 대부분 **○○세미나참석, ○○논의 등으로 간략히 작성**(4~5줄)

⇒ 국외출장계획 수립시 **일정을 명확히 기재**하고 복귀후 **출장보고서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출장보고서는 **출장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할 것 **(기관주의)**

③ 직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관리 미흡

□ 연구원 「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직원이 **다른 직업을 겸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그러나 사외이사 겸직허가신청서 등 **허가와 관련한 증빙서류 없이 통상 구두 승인으로 갈음**하고 있음

⇒ 투명한 겸직관리를 위하여 **겸직허가신청서 등 겸직허가와 관련한 증빙서류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기관주의)**

④ 초빙연구위원제도 운영 개선 필요

□ 직제규정 제5조 및 「초빙연구위원제도 운영세칙」에 초빙연구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대 임용기한 등 규정 없이 원장 임의적으로 운용**

○ 이에 따라 매년 연장을 통해 **최대 4년7개월 근무한 사례**도 발생

⇒ 초빙연구위원의 **임용기간 원칙을 준수**하고 불가피하게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합리적으로 제한된 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필요 **(개선)**

다 성과급여 지급 관리

□ 성과연봉 및 연구장려금 지급 기준 미비

○ 연구원 「보수규정」에 따라 **성과연봉* 및 연구장려금**은 직원의 근무성적(연구실적)에 따라 결정**

* 전전년도 12월부터 전년도 11월까지의 1년간 업적을 평가하여 전년도 12월에 다음연도 성과연봉을 결정

** 전년도 12월부터 지급년도 11월까지의 업적을 평가하여 지급년도 12월에 지급

- 그러나, 성과연봉 및 연구장려금이 **근무성적과 다르게 지급된 사례** 다수

○ 또한, 연구실적 등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연봉 및 연구장려금 지급을 위한 **평가등급별 기준금액, 평가등급별 배분비율 등을 규정함이 없이 지급시마다 원장이 결정**하여 지급

⇒ 성과급여체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성과연봉 및 연구장려금 지급을 위한 평가 등급별 기준금액, 등급별 배분비율 등을 마련·시행**할 필요 **(개선)**

라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필요

□ 매년 **1.3 ~ 1.5억원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으나, **섭외성 경비의 집행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처 등 제한 없이 사용**중

<업무추진비 집행현황(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130	128	140	136	140	138	150	139	150	집행중

□ 위임전결규정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100만원 초과는 원장, 50만원 초과는 부원장, 기타는 실장이 전결권자**로 되어 있으나,

○ 회계규정에서 **업무추진비의 경우 품의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동일한 지위(이사회 의결)에 있는 규정 간 충돌** 발생

* 연구원은 회계규정에 따라 금액에 관계 없이 업추비 품의서를 생략. 단, 개별 사용자가 사용자 서명이 된 1개월간의 사용내역 및 사용영수증을 경리부서에 제출

⇒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위임전결규정과 회계규정 간 **상충되는 규정 개선** 필요 **(개선)**

② 연구장려금 회계처리 부적정

□ 연구원의 회계는 **일반회계, 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회계**로 구성

○ 이 중 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수익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익·비용만을 반영**하여야 함

○ 그러나, 수익사업 수행과 관계없이 매년 전직원에게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장려금(연간 2.4억원)을 특별회계의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익사업 성과가 왜곡***

* 수익사업의 비용이 과다 계상됨으로써 **수익사업 순익이 줄어드는 효과**

** 연구장려금은 수익사업 수행과 관계 없는 **경비**로 **일반회계에서 처리**함이 타당

⇒ **수익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을 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반영**할 것 **(기관주의)**

③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등 회계처리 관행 개선 필요

□ 법인세법(제29조)에 따른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등의 회계처리 없이 매 회계연도별 **추정된 수익사업(수탁 연구용역) 수익을 일반회계 수입·지출예산에 반영·집행**

○ **실제 수입과의 차이 발생**으로 일반회계 결산시 **당기 순손익 발생**

일반회계	2009	2010	2011	2012
당기순익(손실)	(112)	107	(260)	(701)

⇒ 추정된 수익사업 수익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에 반영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및 이의 일반회계 전입 등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할 필요 **(권고)**

마 기타사항

□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 마련 필요**

○ 2011.2.22 개최된 총회에서 의장(금투협회장)은 차기 원장의 선임과 관련하여 대외적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이후 총 5명의 외부인사으로 구성된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5명의 원장 후보를 추천**, 2011.3.25 개최된 총회에서 現 원장이 선임됨

○ 그러나, 현재까지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원장 선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필요 **(개선)**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역

지적분야	지적내용	처분내용
인사관리	■ 직원 승진 및 채용시 필요절차 미이행	경고(기관)
	■ 직원 채용 관련 채용심사절차 등 미비	개선통보
복무관리	■ 특별휴직자 관리 부적정	주의(기관개인)
	■ 국외출장계획 수립 및 출장보고서 작성 미흡	주의(기관)
	■ 직원의 겸직허가 관리 부적정	주의(기관)
	■ 초빙연구위원제도 운영 개선 필요	개선통보
성과평가	■ 성과연봉 및 연구장려금 지급기준 미비	개선통보
예산집행 / 회계처리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마련 필요	개선통보
	■ 연구장려금 회계처리 부적정	주의(기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등 회계관행 개선 필요	권고통보
기 타	■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 마련 필요	개선통보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한국자본시장연구원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통보, 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기종합감사
2013.7.15 ~ 7.23

보험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3. 9.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보험연구원 현황 ····· 2

1. 일반현황 ····· 2

2.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3

3. 2013년도 수입·지출예산 및 2012년도 결산 ····· 4

Ⅲ. 감사실시 결과 ····· 5

1. 분야별 감사결과 ····· 5

2.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계획 ····· 11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사, 감독한다.

* 보험연구원에 대한 直前 외부감사는 없었음.

□ 감사기간 : 2013. 7. 15(월) ~ 7. 23(화), 7일(근무일 기준)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5명(외부전문가* 1명 포함)

*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전문 인력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보험제도 및 보험정책에 관한 연구, 자산운용에 관한 연구 등

○ 예산집행·회계처리, 자금관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조직관리 실태

○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 정관 등 제규정 준수여부

○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

II. 보험연구원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08.02 보험개발원 부설 보험연구원 설치

○ ’10.11 사단법인 보험연구원 창립

○ ’13.04 3대 강호 원장 취임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 8층

□ **조직 및 인원 :** 6실, 62명 (’13.6.30 현재)

* 원장 : 강호(1958년생)/서울대(경영학), 보험개발원 부원장(前)
부원장 : 안철경(1963년생)/연세대(사회학), 리스크관리학회 상임이사(現)

<조 직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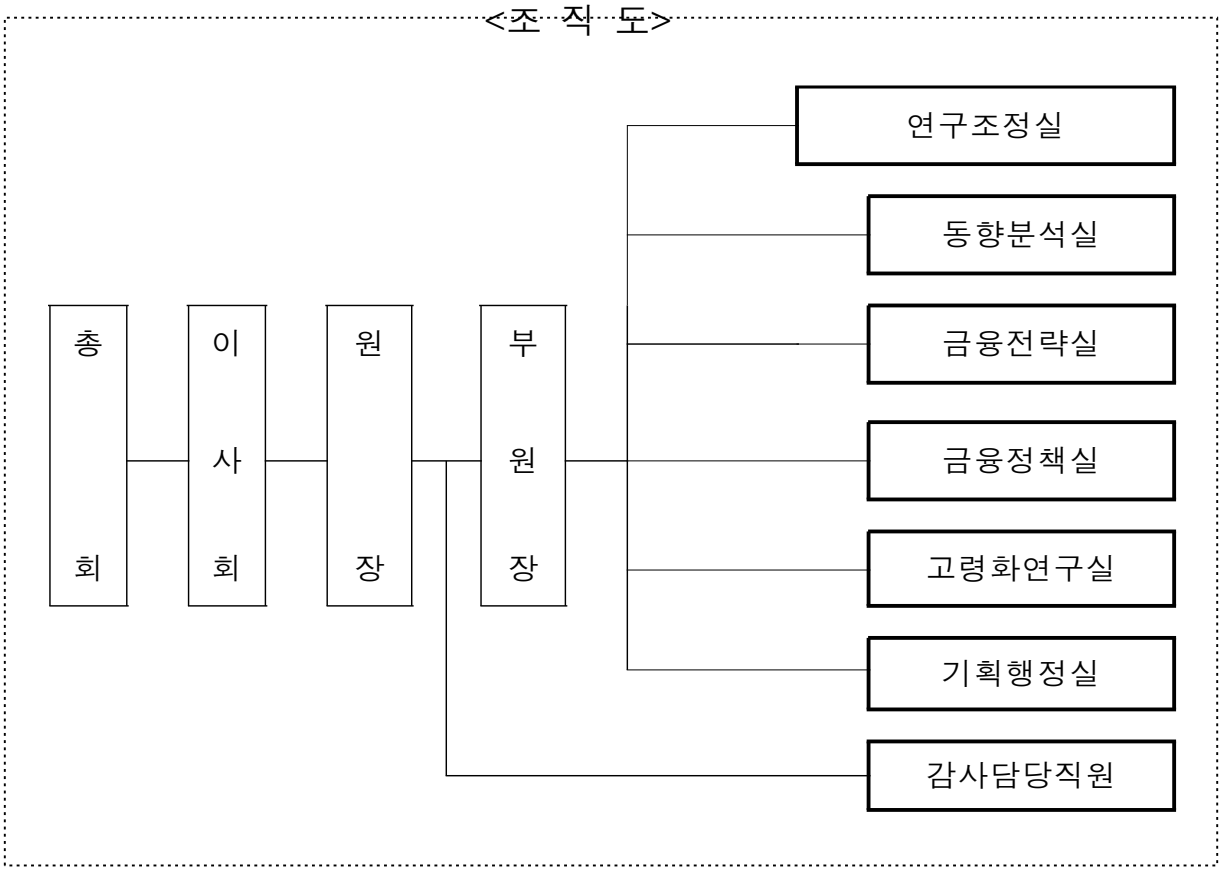

2.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연구사업 : 총 40건

연구과제*	수시과제	용역과제**	합계
16건	16건	8건	40건

* 발간기준, 2012년도 연구사업 목표 : 고령화종합연구, 리스크종합연구, 제도개선연구, 신성장분야연구

** 금융위(1), 금감원(2), 산림청(1), 서울지방조달청(1), 중소기업중앙회(1), 서울보증보험(1), 한국연금학회(1)

□ 회의사업 : 총 40회

조찬행사	업계현안 세미나, 연구직원 간담회	국제세미나, 공동세미나	비공개세미나	포럼*	합계
4회	10회	8회	8회	10회	40회

* IAIS포럼(6회), 리스크관리 선진화포럼(3회), 고령화 포럼(1회)

□ 발간사업 : 총 24권

○ 정기간행물 : 8권

- 계간보험 동향 한글/영문 (계간)
- 연차보고서 (년간),
- 영문보고서 (년간)
-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년간)
-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년간)
- 보험금융연구 (계간)
- CEO 리포트
- KiRi Weekly (주간지)

○ 연구간행물 : 16권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	합 계
7	7권	2권	16권

3. 2013년도 수입·지출예산 및 2012년도 결산

□ 2013년도 수입·지출 예산

수 입	지 출
○ 수입총액 : 77.9억원	○ 지출총액 : 77.9억원
▸ 수 입 회 비 : 74.9억원	▸ 일반사업비 : 7.0억원
▸ 수 입 이 자 : 0.2억원	▸ 일반관리비 : 20.5억원
▸ 이 월 잉여금 : 2.5억원	▸ 인 건 비 : 48.5억원
▸ 타회계전입금 : 0.3억원	▸ 자 본 예 산: 2.0억원

*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2013회계연도는 9개월('13.4.1-12.31)만 반영되어 2012회계연도 수지예산 대비 9.3% 감소한 수준

□ 2012년도 결산

○ 재무상태(B/S)

◆ 자 산 : 12.8억원

· 유동자산(예금 등) : 7.0억원
· 고정자산(투자자산) : 5.8억원
· 고정자산(유무형자산): 1.0억원

◆ 부 채 : 3.8억원

· 예수금 등 : 2.1억원
· 선수수익, 미지급금 등 : 1.7억원

◆ 자 본 : 8.9억원

· 보 통 재 산 : 5.8억원
· 미처분잉여금 : 3.1억원

○ 수입·지출현황(I/S)

◆ 수입총액 : 87.2억원

· 수 입 회 비 : 81.5억원
· 사 업 수 익 : 3.5억원
· 사업외 수익 등: 2.2억원

◆ 지 출 : 87.8억원

· 일반사업비 : 9.3억원
· 일반관리비 : 21.7억원
· 인 건 비 : 54.6억원
· 기 타 : 2.2억원

◆ 당기손실금 : 0.6억원

III. 감사실시 결과

1 분야별 감사결과

가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부적정

①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규정 불합리

□ 상여금 지급기준(12조)에서는 평정 **등급간 배분비율 합계가 120%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위등급(C등급 이하) 평가 없이도 운용이 가능

<평정등급 분포 및 조정율>

등급	S	A	B+	B	C+	C	비고
인원분포	25%이하		25%이상	30%이상 50%미만	20%이하		

○ 동 규정대로 하면 성과급 지급 대상자 모두에게 **B등급 이상 평정이 가능**

⇒ 향후 직원의 직무평가 과정에서 관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등급 간 배분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개선통보)**

②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 상여금 지급기준(7조 내지 8조)에 따라 「**성과연동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시 근거가 되는 **성과측정은 당해 회계연도 인사고과 평가결과**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직원들의 경우, **자율연구자** 및 **육아휴직자**로 당해 회계연도 인사고과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 성과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전결로 성과급 및 추가성과급을 지급**함

※ 인사고과가 없는 자의 성과연동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원장이 매년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여금 지급기준 15조(보칙))

⇒ **성과연동상여금**은 당해연도 성과치에 대한 임금 성격임을 감안, 인사고과가 없는 직원에 대해 **원장 전결로 지급**하는 규정 및 관행을 개선할 것 **(개선통보)**

나 연구사업 운영 관련

□ 연구사업 운영·관리 미흡

○ 이사회규정(8조) 및 연구관리규정(5조)에 따라 **연구사업계획은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임

- 한편, 연구관리규정 제5조는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연구사업계획을 원장이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매년 이사회 의결로 확정된 연구사업계획을 **원장 전결로 폐기·변경 추진**하였으며, 이마저도 **지연 이행된 사례**가 다수

<연구사업계획 대비 이행현황 (건수)>

구 분	계 획	폐 기	추 가	이행(추가과제 포함)			
				정 상	지 연	이 월	소 계
FY 2010	21	10	6	9	7	1	17
FY 2011	17	4	2	2	13	-	15
FY 2012	16	9	3	2	7	1	10

⇒ 연구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보다 **내실있게 연구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사업 운영·관리**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할 것 **(기관주의)**

다 임직원 복리후생 관련

① 자격수당 지급 규정 부적정

□ 급여규정(24조)에 따라 **업무관련 전문 자격증 보유 직원에게 월 6만원~15만원의 자격수당 지급**

○ 그러나, **연구위원 임용요건인 박사학위 소지자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인 월 15만원의 자격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

<자격수당 지급현황(2013.7.16 현재)>

구분	자격증 종류	보유자수	자격증수당(개인별)
연구책임자	박사학위	22명	월 15만원
연구원	박사학위	2명	월 15만원
	변호사	1명	월 15만원
	정보처리기사	2명	월 8만원
행정직	정보처리기사	2명	월 8만원

⇒ **임용요건인 박사학위**를 **업무관련 전문자격증**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격수당 지급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향후에는 자격수당 지급 대상을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할 것 **(개선통보)**

② 유급휴가제도 과다 운영

□ 근로기준법(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최대 25일)외에 추가로 **특별휴가**(6일), **복리휴가**(5일) **등의 유급휴가제도**를 운영함에 **입사 첫해부터** 연차휴가(15일) 이외에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

○ 또한, 근로기준법(60조)에 따른 임직원의 **연차휴가 사용실적**은 극히 부진하며, 이에 따라 **연가보상액**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임

※ 임직원의 총 연차사용일수는 '10년에 10일뿐 '11년 및 '12년에는 실적이 없음

⇒ 복리휴가 폐지 등 **과도한 유급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임직원의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개선통보)**

③ 휴직자에 대한 급여제도 운영 부적정

□ 인병휴직 등 휴직제도를 운영하면서 **개인적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청원휴직자** 및 고용보험에서 일정부분 급여가 보장되는 **육아휴직자*에게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 고용보험법 제70조 및 동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월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월)의 40%까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청원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중지**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람 **(개선통보)**

④ 직원 후생비 지급규정 미비

□ 급여규정(29조) 및 후생비지급관련세부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후생비 지급을 위해 매년 7.7~9.1억원의 복리후생비 예산을 운용**

○ 그러나, 복리후생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회계연도 및 2011 회계연도에는 **'기타지급'**, 2012 회계연도에는 **'연구업무활동장려금**(전산기기 구입비용)' 명목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

⇒ 향후, **근거규정 없이 복리비 항목을 신설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기관주의)**

라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①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개선 필요

□ 업무추진비 집행시, 회계규정(21조)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하여는 지출원인행위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집행건별로 개별 품의(내부결재) 없이 업추비를 집행**하고 매월 업추비 사용카드 결제시 일괄 지급결의

⇒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집행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시행** 할 것 **(제도개선)**

②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매년 **업무추진비 예산 중 일정 비율을 골프장에서 집행**

○ 특히, **일부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평일 업무시간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발견됨

⇒ **평일 업무시간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골프장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비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기관경고)**

마 기타사항

① 보안관리규정 준수 철저 필요

□ 보안관리규정에 의할 경우 관리책임자인 감사담당직원은 보안자료에 대한 **'보안자료 이용의뢰서', '전산자료 관리자현황', '보안자료 파일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그러나, '보안자료 이용의뢰서'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보안자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회원사의 업무보고서** 등 보안이 필요한 자료의 보안관리를 **보안자료 관련규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할 것 **(권고통보)**

② 기본감사계획 미수립 및 정기감사 미실시

□ 감사규정(8조)에 따라 **매년 기본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에 실시한 **감사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그러나, '10.11월 설립 이후 감사계획은 단 1회 수립('13.5월)하였고, **정기감사를 실시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음**

○ 또한, 직제규정 상 **원장 직속의 감사담당직원을 운영**하여야 하나 규정과는 달리 **연구조정실 소속의 직원을 감사담당직원으로 지정하여 다른 업무를 병행 수행**토록 함

⇒ **직제규정에 맞게 감사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연도별 감사 기본계획 수립, 정기감사 실시 등 **감사업무가 충실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제도개선)**

③ 국외출장 준비금제도 운영 부적정

□ 연구원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분리되기 이전인 2005년 이후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되지 않아 **체재비** 등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금제도를 운영

직급	여비지급기준(US$)		
	항공임(실비)	1일 체재비(일·식·숙박)	준비금
원 장	퍼스트	260	800
부원장	이코노미	210	700
선임연구위원	이코노미	200	650
연구위원/부장 등	이코노미	190	550
선임연구원 이하	이코노미	180	500

*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준비금은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에 한정하여 실비로 지급되고 있음

○ 그러나, **출장지·출장기간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되는 준비금으로 **체재비를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장·단기해외출장자간에도 **형평성에 문제** 발생

⇒ **필요시 해외출장여비를 현실화**하고 **준비금제도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제도개선)**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역

지적분야	지적내용	처분내용
성과상여금 (2)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규정 불합리	개선통보
	■ 성과상여금 지급 부적정	개선통보
연구사업 운영(1)	■ 연구사업 운영 · 관리 미흡	주의(기관)
복리후생 (4)	■ 자격증수당 지급 규정 부적정	개선통보
	■ 유급휴가제도 과다 운영	개선통보
	■ 휴직자에 대한 급여제도 운영 부적정	개선통보
	■ 직원 후생비 지급규정 미비	주의(기관)
예산집행/ 회계처리 (2)	■ 업무추진비 집행 · 관리 개선 필요	개선통보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경고(기관)
기 타 (3)	■ 보안관리규정 준수 철저 필요	권고통보
	■ 기본감사계획 미수립 및 정기감사 미실시	개선통보
	■ 국외출장 준비금제도 운영 부적정	개선통보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보험연구원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통보, 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기종합감사
2013.9.24 ~ 9.30

한국금융연수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3. 12.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한국금융연수원 현황 ····· 2

1. 일반현황 ····· 2

2.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 3

3. 2013년도 수입·지출예산 및 2012년도 결산 ····· 4

Ⅲ. 감사실시 결과 ····· 5

1. 분야별 감사결과 ····· 5

2.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계획 ····· 11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사, 감독한다.
* 한국금융연수원에 대한 直前 외부감사는 2009년도에 실시

□ 감사기간 : 2013. 9. 24(화) ~ 9. 30(월), 5일(근무일 기준)

□ 감사대상 : 고유사업,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5명(외부전문가* 1명 포함)

* 예금보험공사 검사업무 전문 인력

□ 감사중점

○ 수행사업의 설립목적 부합성

* 교육훈련 지원체계의 효율성 및 효과성, 교재출판물 발간절차 및 관리, 자격검정사업의 시험관리 및 등록 등

○ 예산집행·회계처리, 자금관리, 계약사무의 적정성

○ 인력·조직관리 실태

○ 임직원 보수·복리후생의 적정성

○ 정관 등 제규정 준수여부

○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

II. 한국금융연수원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76. 5. 17.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 설립 허가(재무부령 916호)
○ '76. 6. 5. 사단법인 한국금융연수원 창원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1

□ 조직 및 인원 : 6부 3실 89명 (정원)

* 원 장 : 이장영(1955년생) / 서울대(경제학), 美뉴욕대(경제학 박사), 금융감독원 부원장/부원장보(前)

감 사 : 정병기(1955년생) / 영남대(행정학), 기획재정부 부이사관(前), 전국은행연합회 감사(現) 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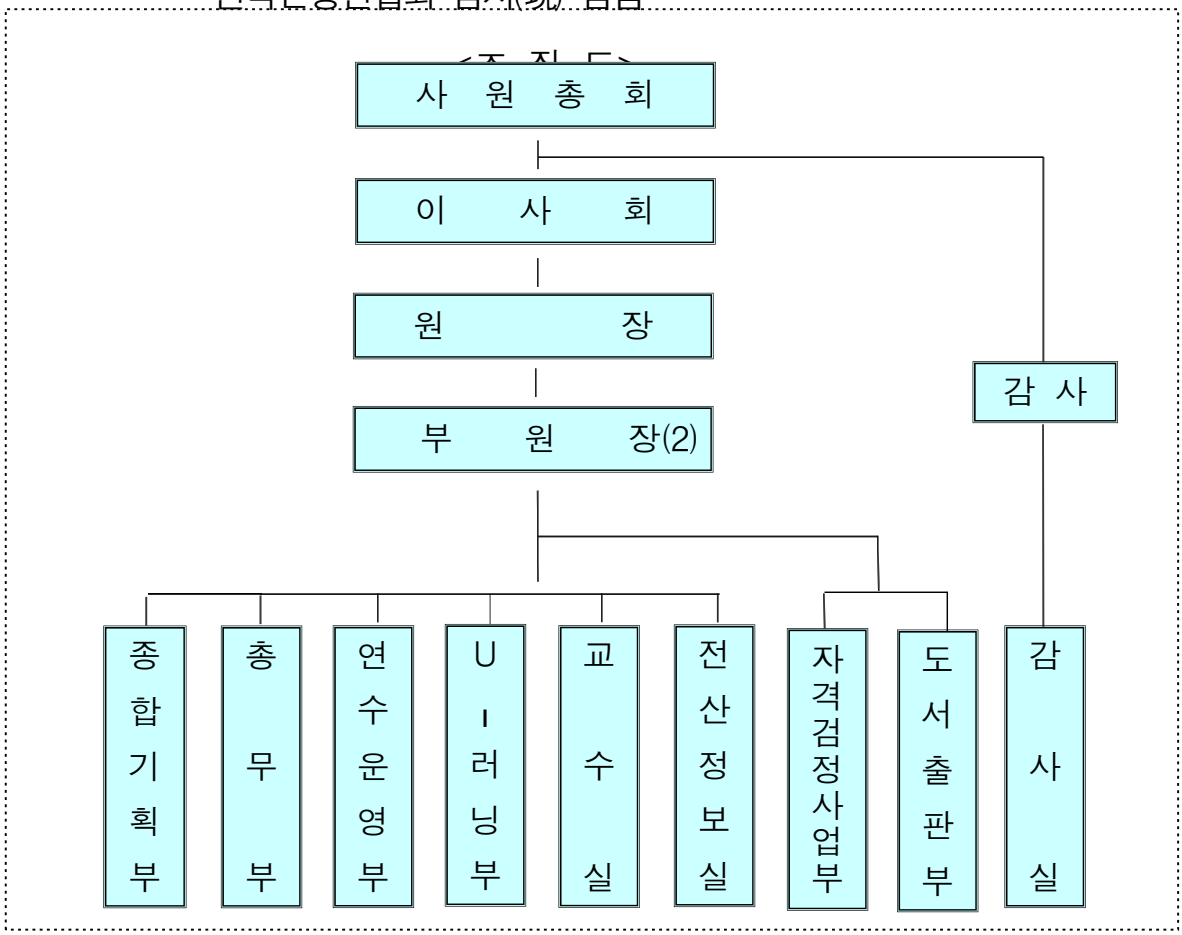

2.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연수사업 : 총 370개 과정에 197,318명이 참가

(단위 : 명)

구 분	과 정 수	인 원		
		사원기관	비사원기관	계
집 합 연 수	224개 과정	9,318	1,899	11,217
통 신 연 수	77개 과정	49,440	10,209	59,649
사 이 버 연 수	64개 과정[주2)]	82,676	43,656	126,332
기 타[주1)]	5개 과정	27	93	120
계	**370개 과정**	**141,461**	**55,857**	**197,318**

주1) 국제초청연수 및 연수담당책임자 해외연수
주2) 국가공인 자격증 관련 보수교육(9,741명) 포함

□ 자격검정사업 : 총 30회 자격시험에 29,211명 응시

(단위 :명,%)

구 분	자 격 명	응시인원	시행 횟수
국가공인	신용분석사 등 8개 자격	21,960	18
자체자격	은행텔러 등 3개 자격	6,644	7
자격시험 대행	NH보험모집자격	365	4
	농협외환전문역	242	1
계		**29,211**	**30**

□ 도서발간사업 : 54종 92,330부 발간, 88종 82,801부 판매

발 간 부 수	판 매		
	시중판매	연수교재	합 계
해지펀드의 이해와 운용전략 등 **54종 92,330부**	**55,727부**	**27,074부**	**82,801부**

3. 2013년도 수입·지출예산 및 2012년도 결산

□ 2013년도 수입·지출 예산

수 입	지 출
○ 수입총액 : 233.2억원 ▸ 사원분담금 : 190.2억원 ▸ 전입금 : 38.0억원 ▸ 전기이월금 : 5.0억원	○ 지출총액 : 233.2억원 ▸ 자산취득비 : 2.0억원 ▸ 인 건 비 : 72.7억원 ▸ 경 비 : 158.5억원

* **2012년 수지예산 대비 5.9% 증가**한 수준임

□ 2012년도 결산

○ 재무상태(B/S)

◆ 자 산 : 442.0억원

· 유동자산(예금 등) : 228.9억원
· 투자자산(제가입권 등) : 18.3억원
· 유형자산(토지 등) : 191.7억원
· 기타비유동자산 : 3.1억원

◆ 부 채 : 43.1억원

· 예수금, 미지급금 : 14.6억원
· 퇴직급여충당부채 : 28.5억원

◆ 자 본 : 398.9억원

· 출연금, 가입금 : 27.2억원
· 자본적지출분담금 : 178.5억원
· 적 립 금 : 150.3억원
· 잉 여 금 : 42.9억원

○ 수입·지출현황(I/S)

◆ 수입총액 : 274.0억원

· 전기이월금 : 10.8억원
· 사원분담금 : 177.2억원
· 전 입 금 : 38.0억원
· 추가분담금 : 46.5억원
· 잡 수 입 : 1.5억원

◆ 지 출 : 231.1억원

· 자산취득비 : 7.4억원
· 인 건 비 : 61.3억원
· 경 비 : 125.3억원
· 추가교육비 : 37.1억원

◆ 당기잉여금 : 42.9억원

III. 감시실시 결과

1 분야별 감사결과

가 인사제도 운영 관련

①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필요

□ 「**인사규정**」 **제58조**에 의거 인사에 관한 원장의 자문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 또한, 「인사규정」 제59조에서 위원회는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사항**", "**기타 인사에 관한 원장 자문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

□ 그러나, '10년 이후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징계에 관한 사항**", "**대학원 위탁교육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포상 대상자 선정**" 안건만 심의

<인사위원회 상정·심의 안건 현황>

년도	심의안건			
	징계관련	위탁교육 대상자 선정 관련 등	정기포상 등 관련	합계
2010	1건	2건	1건	4건
2011	2건	2건	1건	5건
2012		2건	2건	4건
2013		3건	1건	4건

⇒ **연도별 인력수급계획, 채용·승진직원 확정** 등 실질적으로 인사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개선통보)**

② 전문자문교수 운용·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자문교수 등 운용지침』에 따라 **위촉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재위촉**토록 하는 전문자문교수를 운용하고 있으며, 전문자문교수에 대한 자문료 및 연구비 명목으로 월별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자문교수의 자문 및 연구 실적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 **전문자문교수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자문·연구실적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시행 할 것 (개선통보)**

나 임직원 복리후생 관련

① 보상휴가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보상휴가제도**는 휴일근무 등 과도한 **초과근무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득이 한도를 초과한 초과근무는 **보상휴가를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년부터 도입·시행

□ 그러나 보상휴가 사용 실적이 부진하여 **예산절감** 및 **근무환경 개선** 등 당초 도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보상휴가제도 운용 현황>

연도	대상 인원	휴가일	사용일	미사용일
2010년	12명	61일	12일	49일
2011년	15명	107일	54일	53일
2012년	22명	97.5일	45일	52.5일
2013.9. 현재	11명	39.5일	10.5일	29일

⇒ **직원들이 보상휴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상휴가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권고통보)**

②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필요

□ 2013.3월 중학교 의무·무상교육 실시, 고등학교 유형별 교육비 편차 심화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부족 등에 따라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방법 개선안"**을 마련·시행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방법 개선안 주요 내용>

지원대상	문제점	개선안
① 중학교	○ 중학교 의무교육 등으로 지원 근거 부족	○ 중학교 학자금 지원 중단
② 고등학교	○ 일반고와 특목고의 학자금 지원 형평성 문제	○ 특목고 등의 학자금 지원액을 직전 년도 일반고 지원액의 1.5배로 제한
③ 대학교	○ 일반 및 의학 계열(6년), 건축학과(5년) 간 학자금 지원 기간 형평성 문제	○ 일반 대학 편제인 4년 (8학기)로 제한

□ 그러나 여전히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액의 경우, **의학계열**(의예과, 치의예과 등)의 지원액이 **일반계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직원간 형평성 문제가 있음

⇒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액에서 일반계열과 의학계열등 간에 과도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개선통보)

다 고유업무(연수사업, 자격검정, 도서발간)

① 연구년제도 운영 부적정

□ **「연구년제도운영요강」 제3조**에 따라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연구년제도를 도입·운영

□ 그러나, 교육내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된 취지와 달리 **일반직원까지 대상자격에 포함**(교수직원 : 근속기간 5년 이상, 일반직원 : 근속기간 10년 이상)시키는 등 **지원대상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으며, 최근 4년('10~'13년)간 연구년 신청자도 전혀 없는 실정

⇒ 향후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자 자격을 재검토하고, 교수직원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 할 것 (개선통보)

② 외래강사 선정 등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매년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외래강사**를 아래와 같이 활용하고 있음

<외래강사 활용 현황>

연도별	집합연수 과정 수	교·강사수*	외래강사 수	비율
2010	186개	806명	794명	98.5%
2011	242개	850명	840명	98.8%
2012	224개	914명	903명	98.8%
2013	234개	869명	855명	98.4%

* 내부교수, 실무전문교수, 외래강사 등 활용

□ **내부교수** 및 **실무전문교수**에 대해서는 「**교수실운영요강**」 및 「**실무전문교수운용요강**」을 마련하여 내실있게 운영 중

□ 그러나, **외래강사**에 대한 선정, 변경 등은 매년 원장 결재를 거쳐 「과정별 교·강사 선정 계획」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 선정된 교·강사의 변경 및 추가 선정은 **일정 기준없이 연수운영부장 전결**로 처리

⇒ **외래강사 선정, 변경 등이 보다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외래강사관리지침」 등 객관적인 규정을 마련·시행 할 것 (권고통보)**

③ 해외연수 보고서 관리 미흡

□ **연수규정 제22조**(연수결과 보고)의 해외연수를 받은 자는 **귀국 후 2개월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총무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연수원은 **예비경영자과정**, **선박금융과정** 등의 해외연수를 운영하면서 인솔 직원들이 「**연수보고서**」를 제출

○ 그러나 연수보고서 내용이 해외연수에 관한 의견만 간략하게 기재하거나, 「연수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11년 이전에는 다수 미작성)가 있는 등 **부실하게 운용**

⇒ **향후 규정에 따라 해외연수 보고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기관주의)**

④ 도서발간비 절감 방안 마련 필요

□ 금융연수원은 **연수용 교재, 금융전문도서** 등을 **매년 50여종에 9만부 이상**의 도서를 발간

<연도별 도서발간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도서발간	67종, 107,241부	56종, 94,003부	54종, 92,330부	53종, 93,510부
도서제작비	482,306	483,435	466,212	368,369

□ 그러나 기 제작된 도서 중 수정발간 등에 따라 구판도서 및 불용도서 **폐기로 인한 손실**이 매년 **도서 제작비의 7% 정도** 발생

⇒ **향후 연도별 연수인원 예측을 신중하게 하는 등 구판도서 및 불용도서 발생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 (권고통보)**

라 기타 사항

① 포상비 예산 집행의 부적정

□ 금융연수원은 **포상비 예산을 기념품 구매비, 우수직원 포상금, 연수생 포상비, 우수교강사 기념품 등 비목별로 구분**하여 편성·집행

□ 그러나 매년 포상비 비목 예산 중 **기념품 구매비** 및 **우수직원 포상금**은 **구체적인 편성 근거없이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집행 과정에서 비목간의 금액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

⇒ **향후 퇴직직원 기념품 및 우수직원 포상비 예산은 회계규정·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비목별로 편성하고, 비목간의 금액변동이 있을 경우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집행할 것 (기관주의)**

② 해외출장 관련 준비금제도 운용 부적정

□ 금융연수원은 해외여행자에 대해 **「여비규정」 제24조** 및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 준비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지원을 위해 **직급기준으로 고정비로써 '준비금'을 지급**

<직급별 여비 및 준비금 기준(단위 : US$)**>**

구 분		임 원	1·2급	3·4급	5·6급
준비금		600	500	400	300
일당체재비 (일,식,숙박비)	출장	290	260	230	200
	연수	-	140	120	100

* 임원의 체재비에는 숙박비가 제외(임원의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

□ 그러나 준비금의 성격(여권발행비, 보험료 등)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의 목적, 기간, 목적지에 관계없이 오로지 직급에 따라서만 차등하여 정액으로 지급**

⇒ 향후 필요시 여비기준의 현실화 및 준비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 (개선통보)

③ 지방 휴일근무 출장기간 산정기준 과대 계상

□ 금융연수원은 평가감독 및 휴일연수 진행 등 직원의 휴일근무에 대한 운영 및 보상기준을 정하기 위해 **「휴일근무 운영 및 보상기준」을 제정·운용**

○ 이에 따라「휴일근무 운영 및 보상기준」제4조에서는 **왕복교통 소요시간, 업무수행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산정(매 9시간마다 1일씩 가산)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별 왕복교통 소요시간은 최단시간 육상교통수단 기준으로 별도로 정함

□ 그러나 **강릉 지역**의 경우, 교통망의 발전 및 교통수단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출장기간(3일)을 계상**

□ 또한, 제주 지역의 경우, **항공기 결항에 따른 업무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출장기간 1일을 가산**하고 있음

* '13.1~8월 제주공항 결항률 : 0.5%(79,111건의 운항 중 398건 : 한국공항공사)

⇒ 향후 교통망 및 교통수단 변화를 반영하여 지방휴일근무 출장기간 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시행 할 것 (개선통보)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역

지적분야	지적내용	처분내용
인사제도 운영 (2)	■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개선통보
	■ 전문자문교수 운용·관리 방안 마련 필요	개선통보
복리후생 (2)	■ 보상휴가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시행 필요	권고통보
	■ 직원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필요	개선통보
고유업무 (연수사업, 자격검정, 도서발간) (4)	■ 연구년제도 운영 부적정	개선통보
	■ 외래강사 선정 등에 대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권고통보
	■ 해외 연수보고서 관리 미흡	주의(기관)
	■ 도서발간비 절감 방안 마련 필요	권고통보
예산집행 (3)	■ 포상비 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기관)
	■ 해외출장 관련 준비금제도 운용 부적정	개선통보
	■ 지방 휴일근무 출장기간 산정기준 과대 계상	개선통보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금융연수원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통보, 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정기종합감사
2013.11.5 ~ 11.18

금융결제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4. 1.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금융결제원 현황 ····· 2

1. 일반현황 ····· 2

Ⅲ. 감사실시 결과 ····· 4

1. 분야별 감사결과 ····· 4

2.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계획 ····· 15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감사, 감독한다.
* 금융결제원에 대한 直前 외부감사는 2010년도에 실시

□ 감사기간 : 2013. 11. 5(화) ~ 11. 18(월), 10일(근무일 기준)

□ 감사대상 : 고유수익사업, 의사결정기구, 예산·회계, 조직·인력, 중요시설관리,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7명(외부전문가* 3명 포함)

* 금융감독원 검사·회계·IT 업무 전문 인력

□ 감사중점

○ 고유사업 및 수익사업 운영의 적정성
* 어음교환, 지로, 금융공동망, 공동전산업무 및 기타 수익사업등

○ 의사결정기구(총회, 이사회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예산편성·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 금융공동망등 중요시설 관리 및 보안업무 추진실태

○ 사내복지기금 적립 및 운영의 적정성

○ 정관등 제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II. 금융결제원 현황

□ 연 혁

○ '86. 6.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설립

*전국어음교환관리소('84.5)와 은행지로관리소('77.6) 통합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 조직 및 인원 : 4본부 11부 8실 1연구소, 622명(임원 7명)

※ 원장 : 김종화(54세) / 서울대(경제학과), 한국은행 부총재보('12.3 ~ '13.4)

감사 : 원중희(55세) / 동국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직 및 인원(현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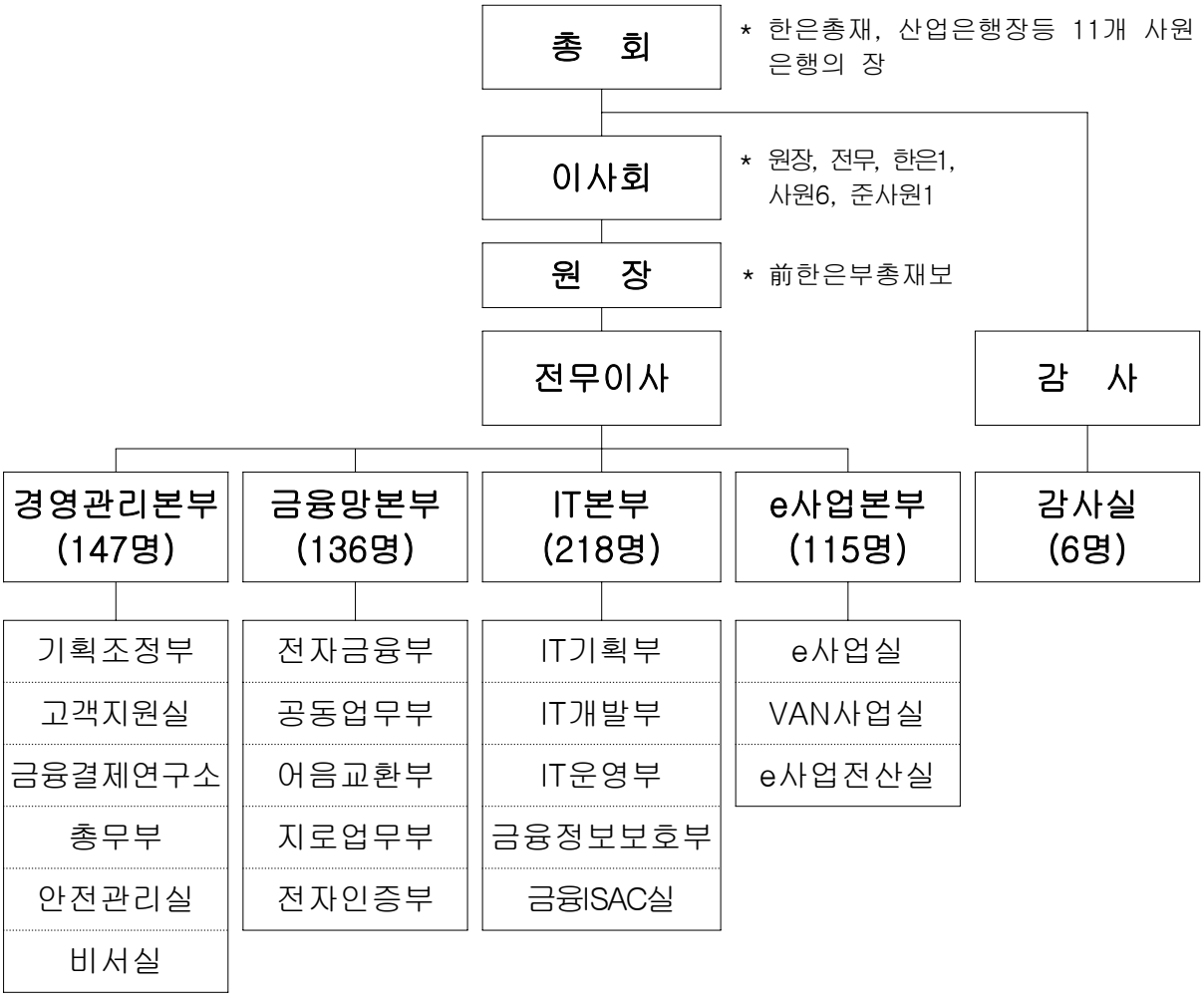

□ 주요업무

○ 어음교환소 설립·운영 및 지로제도 운영

○ 금융공동망(CD, 전자금융, 타행환등) 구축·운영

○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공인인증, 금융ISAC등)

○ 신용카드 관련 부가통신사업(VAN등) 등 수익사업

□ 연도별 수입·지출내역

(일반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E)
수입총액(a)	**1,031**	**1,010**	**1,178**	**1,085**
•기본회비[1]	116	83	117	175
•실적회비[2]	606	625	639	649
•자체조달자금[3]	309	302	422	261
지출총액(b)	**951**	**933**	**1,050**	**1,079**
•인 건 비	571	563	567	574
•전산경비	148	147	180	215
•기타경비	232	223	303	290
차이(c=a-b)	**80**	**77**	**128**	**6**

1) 사원・준사원기관이 분담

*한국은행 40%, 여타사원 10%균등분담, 여타사원・준사원 50% 규모분담

2) 사원, 준사원 및 참가기관이 어음교환, 지로, 전자금융 등의 업무실적에 따라 납부

3) 예금 및 국공채 이자, 잡수입, 수익사업 이익전입금, 임대수입전입금

(수익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E)
•매출액	785	836	793	799
•영업이익 (영업이익율, %)	210 (26.8)	176 (21.1)	140 (17.7)	125 (15.6)
•당기순이익[1]	227	195	37	55

1) 2012년부터 일반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 : 수익사업 소득 중 일반사업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012년 101억원, 2013년 95억원)을 제외

III. 감시실시 결과

1 분야별 감사결과

가 인사제도 및 성과상여금제도 운용 관련

① 성과상여금제도 운용 방식 개선 필요

□ 금융위원회의 2010년도 정기감사 지적(감사담당관-766, 2010.8.13)에 의거 『보수규정시행세칙』을 개정(2013.2.6)하여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운용

○ 그러나 **팀원급의 경우, 차등 등급수는 3개로 단순**하며, **지급률**은 최고등급(310%)과 최저등급(290%)간 **차이가 20%**이고, 배분율은 합계가 100%이지만 **최고등급**(15%)과 **최저등급**(25%)을 **달리 운용**

○ 또한, **팀장급 이상의 경우**에도 지급률은 최고등급(370%)과 최저등급(290%)간 **차이가 80%**이나, 중간(A0) 초과 등급(E+A2+A1)의 합과 중간 미만 등급(B)의 **지급액을 달리 운용**

<성과상여금 지급률표>

1. 팀장급 이상

구 분	E	A2	A1	A0	B
배분율(%)	5	10	15	40	30
지급률(%)	370	340	310	300	290

2. 팀원급

구 분	E	A0	B
배분율(%)	15	60	25
지급률(%)	**310**	300	**290**

⇒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등급수, 차등 수준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개선통보)**

② 각종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필요

□ 정관 제23조 및 위원회규정에 근거하여 기획위원회를 비롯한 **총 12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에 있음

○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규정 제7조에 따라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도록 규정

- 다만, 의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실제 위원회 소집건수는 총 77회 중 16건(20.8%)에 불과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서면의결 비율**(79%)이 여전히 높은 실정임

<위원회 운영방식 현황>

구분		'07.1 ~ '10.5	'10.6 ~ '11.10	'11.11* ~ '13.10
위원회	회의소집	77(34%)	9(23%)	16(21%)
	서면결의	150(66%)	31(77%)	61(79%)
	합 계	227	40	77

* 2011년 11월부터 12개 위원회로 세분하여 운영

⇒ 각종 위원회가 실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집비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권고통보)

나 임직원 복리후생 관련

① 자녀 학자금 및 보육 지원제도 개선 필요

□ 「**복지규정**」 제11조(학자금 지급) 및 동「**시행세칙**」등에 따라 **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및 **취학전 자녀에 대해서도 보육지원료**(월 15만원)**를 지원**

□ 2004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교육기본법 제8조)이 도입된 이후에도 **중학생에 대해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 특수목적 중·고 및 특수계열 대학생에 대해 한도규정 없이 입학금, 수업료, 육성(기성)회비, 학생(자치)회비, 실험실습비와 이에 준하는 학자금을 실비로 지원하고 있음

□ 또한, 2013.1.1. 부터 정부 차원에서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영유아가구의 **만0~5세 해당연령 아동**에게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394,000원~100,000원)하고 있음에도 월 15만원의 보육지원료를 지급하고 있음

⇒ **현행 자녀 학자금 및 보육 지원제도의 도입취지, 일반과 특수학교의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할 것 (권고통보)**

② 전세보증금 지원제도 개선 필요

□ 「**복지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무주택직원에게 최고 88백만원까지 10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 **무상*으로 대여**

* 연말정산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6.9%)을 대출금액과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는 부담함

□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 이용자가 **14명**이며, 이용자 중에는 **차장 및 팀장급도 12명**임

○ 또한, 지원조건(지원기간 장기 등)도 **유사기관**들과 비교해 볼 때 과도하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임

<전세보증금 지원 현황('13.9월말 현재)>

지원기간	인 원
10년이상~20년이하	14명
10년미만	75명
합계	**89명**
차장/팀장급	**12명**

⇒ 전세보증금 지원제도의 지원조건을 재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개선통보)

③ 연차휴가 보상제도 운용 개선 필요

□ 「**인사관리규정**」제1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최대 25일)외에 추가로 특별휴가(5일), 안식년휴가(6일)*, 청원휴가(사유별 1-5일) 등의 **무급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근속 연수 15년, 20년, 25년, 30년 도래시 각각 6일씩 부여

□ 연도별 연차사용실태를 살펴보면, '10년도에는 노사협의를 통해 연 10일 이상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실적이 다소 양호하나,

○ **2011년 및 2012년**에는 **대부분 직원이 연차를 활용하지 않았고 연차 미사용분은 연차휴가보상액으로 지급**됨

<연차 사용내역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대상자	1일 이상 사용자	미사용자
2010년	547	516	31
2011년	565	100	465
2012년	567	68	499

⇒ 2010년 노사협의(연차휴가 10일 의무 사용) 사항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원들의 연차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개선통보)

④ 안식년휴직제도 개선 필요

□ 「**인사관리규정**」 **제26조(안식년휴직)**에 따라 안식년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으로 **휴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

□ 그러나 안식년휴직제도는 주로 **연구직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재충전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므로 안식년휴직제도의 **도입취지**에 다소 맞지 않은 측면

⇒ **안식년휴직제도의 도입취지 등을 감안하여 재충전 등이 필요한 직원으로 한정하는 등 안식년휴직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권고통보)**

다 예산 편성·집행/회계처리

① 포상비 항목의 격려금 지급 부적정

□ 「**인사관리규정**」에 근거,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대상 및 내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연말 부서별 격려금**을 **포상비내 세부항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집행**하고 있음

<'10년 이후 금융결제원 '격려금' 지급 내역>

연도	격려금 세부 지급 내역
	지급대상*
2010년	76개 팀 중 26개 팀
2011년	78개 팀 중 40개 팀
2012년	84개 팀 중 40개 팀

* 팀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 대상 중 일부는 소규모 부서

⇒ 연말 부서별로 지급하는 격려금에 대해 인사관리규정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에 세부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할 것 (개선통보)

② 해외출장 관련 준비금제도 개선 필요

□ 공무상 국외여행자에 대해 「**여비규정**」 및 「**여비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국외여행의 목적지, 기간, 직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체재비**와 직급별로 차등하여 정액으로 **준비금**을 지급

□ 그러나 준비금은 **여행 준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지원**(여권, 입국사증 수수료 및 보험료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해외에서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도 지급 되고 있는 실정임

< 여비규정 시행세칙의 준비금제도 현황>

구 분	임 원	1·2급	3·4급	5급 이하
준비금 지급액	600$	500$	400$	300$

* 여비규정 시행세칙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동일 국가 출장 시 미지급

⇒ 향후 필요시 여비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준비금제도가 도입목적에 맞도록 운용할 것 (개선통보)

③ 소송패소비용의 회계처리 부적정

□ 금융결제원(이하 “결제원”이라 함)은 VAN 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매출전표 수거비용 관련하여 VAN 사업자간 담합을 이유로 **190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음

○ 이에 담합에 따른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한 VAN 대리점들이 금융결제원 및 VAN 사업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함

- 소송 결과, 2012년과 2013년에 결제원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3,445백만원**임

□ 그러나, 결제원은 소송패소비용이 회사 영업상 중요한 항목임에도 재무제표에 구분하여 표시(충당부채)하지 않고 **잡손실로 계상**함

< VAN 대리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지급내역 >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회계계정과목(2012년)	
		회사처리	회계기준상
2012.03.09	138,172,256	잡손실	소송패소비용
2012.12.28	3,179,110,071	잡손실	소송패소비용
2013.01.10	81,296,944	-	소송충당부채
2013.02.04	24,322,238	-	소송충당부채
2013.02.27	22,138,820	-	소송충당부채
계	3,445,040,329		

⇒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상기 수익사업과 관련한 계정분류오류 및 충당부채 계상 누락에 대해 시정 조치할 것 (시정통보)**

라 고유업무(일반사업, 수익사업) 관련

① "중장기 수익사업 관리방향" 이행 관련

□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의 2010년도 정기감사 지적(감사담당관-766, 2010.8.13.)에 의거 **"중장기 수익사업 관리방향"**을 마련(2011.12.27)·시행

□ 관리방향의 주요 내용은 수익사업 범위를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총 수익사업비중** 및 **수익사업별 영업이익율**을 2015년까지 일정비율로 축소하여 관리

□ 2013년말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총 수익사업 비중은 41.8%**이며, **카드VAN사업 영업이익율은 3.3%, CMS영업이익율은 25.0%**로 축소하는 등 **"중장기 수익사업 관리방향"**을 비교적 순조롭게 이행 중

< 중장기 수익사업 관리방향 추진 현황 >

관리분야	세부사업명	'10년말 현 황	'11년말 현 황	'12년말 현 황	'13년말 현 황	2015년 목 표
○수익사업 비 중	○비 중(%)	43.2	45.9	43.1	41.8	39.8
	·일반사업매출액(억원)	925	931	996	1,056	1,176
	·수익사업매출액(억원)	(702)	(791)	(755)	(758)	(778)
	-카드VAN 수수료 인하(%)	향후 5년간 약 10% 인하		2.8	3.1	1.0
	-CMS 수수료 인하(%)	향후 3년간 매년 수수료 인하		6.0	0.3	0.3
	-기타 수수료 인하(%) (공인인증, 채권정보중계 등)	2013년까지 수수료 추가 인하		인증 20.0 채권 15.0	정부납품 대금 9.5	1.0
○영 업 이익율	○카드VAN 영업이익율(%)	8%수준 관리	10.6	6.9	3.3	8.0
	○CMS영업이익율(%)		38.4	33.1	25.0	20.0

* VAN(Value Added Network), CMS(Cash Management Service : 이용기관이 고객계좌에서 대량의 자금을 인출 또는 고객계좌로 지급하는 서비스)

□ 그러나 **카드VAN사업 영업이익율**의 경우, 당초 8%대 유지를 목표로 정하였으나 2013년말 현재 이미 3.3%대 진입하였고,

○ **CMS영업이익율의 경우도 당초 목표치의 25.0%**에 빠르게 근접하는 등 계획 수립시 예상 못한 시장상황 변화가 발생

⇒ "중장기 수익사업 관리방향"에서 정한 목표치를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하고, 연도별로 시장상황 변화 등을 분석·평가하여 필요시 그 결과를 반영할 것 (권고통보)

② VAN사업 관련 영업지원금 등에 대한 채권보전 소홀

□ 「**VAN사업 채권 등 관리지침**」의하면 대리점에 대한 영업지원금 지원시 신용한도는 대리점수수료의 최근 3개월 총액을 한도로 하고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행보증보험, 근저당권 및 예금질권 등의 방법으로 추가담보를 설정**하도록 규정

□ 그러나 대리점에 대한 영업지원금 지원시 일부 대리점에 대하여 **신용한도 초과분에 대한 담보설정을 과소하게 설정**한 사례가 있음

<영업지원금 신용한도 초과분에 대한 담보설정 사례>

	계약일	지원금액	한도액	담보설정액	비 고
○○○사	2011.5.27. (3년간 계약)	174,495천원	-	150,000천원 (보험증권)	△24,495천원

⇒ 영업지원금을 신용한도대비 과다 지급한 대리점에 대하여 추가담보 등을 확보할 것 (기관주의)

③ 시스템 인시던트 등록 관리 소홀

□ 「**IT업무규정 시행절차**」제44조에 향후 유사한 **인시던트***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인시던트 내역과 해당 처리결과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IT서비스관리시스템(ITSM)에 등록·관리하도록 규정

* 정상적인 IT서비스를 방해하거나 IT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써 장애(IT서비스의 계획되지 않은 중단)와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항

□ 그러나 '13.1~10월 중 발생한 인시던트 **5건**에 대해 IT서비스 관리시스템에 등록을 누락한 사례가 있음

<시스템 인시던트 등록 누락 사례>

일시	발생 내용	발생시간	관련 부서
'13. 2.12	PG(전자상거래)업무 서비스 일부 지연	11:26~13:40	전자금융운영팀
'13. 5.15	인터넷 지로 국민은행 계좌이체납부 지연	07:00~08:44	어음지로운영팀
'13. 7. 7	고객센터 standby DB서버(ICC_DB2) 보드 장애	01:50~11:00	시스템관리팀
'13. 5.19	대전사무소 MPLS회선 인터페이스 장애	10:16~11:56	네트워크팀
'13. 8. 7	광주사무소 업링크(MPLS회선) 다운	18:11~20:36	

⇒ 향후 동일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시행할 것 (기관주의)

④ 프로그램 긴급변경 절차 강화 필요

□ 「**IT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에 **프로그램 개발과 유지보수 사항**은 프로젝트관리시스템(PMS)을 통하여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수행하도록 하고,

○ 예외적으로 **'개발과 유지보수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경미한 유지보수'** 등은 사후보고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 한편, '13.1~10월 기간중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프로젝트관리시스템에 등록·처리된 788건 중 117건이 긴급변경으로 등록되어 **전결권자의 사전승인**없이 시스템에 적용되었음

□ 그러나 긴급변경 117건 중 **71건은 전결권자의 사전승인이 가능한 근무시간(09~18시) 중에 처리**되었으며,

○ 또한, 경미한 유지보수로써 프로그램을 수정한 22건은 등록 시점이 늦었고(수정 후 10~20일), 코드 관리도 **"경미한 유지보수"**가 없어 **긴급변경 코드**로 처리함

⇒ **프로그램 긴급변경 절차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경미한 유지보수는 긴급변경과 분리하여 별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프로젝트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유형(사후보고)을 추가하는 등의 프로그램 변경 절차를 보완·시행할 것 (개선통보)**

⑤ 국가간 ATM 공동이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금융결제원은 국내고객의 해외 현금인출시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네트워크이용료(거래금액의 1%[주])를 절감하고,

○ 향후 국제 지급결제시스템간 상호연계에 대비하여 **"국가간 ATM 공동이용시스템"**을 한국은행 금융정보추진분과위원회의 위탁(2009.2.27)으로 구축·운용 중

□ 그러나 **은행들의 소극적인 참여***로 "서비스 가능 카드의 제한적 발급"과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국가의 제한****" 등으로 시행 후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실정*****

* 4개 은행사 ** 말레이시아,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 현재 국가간 ATM 업무량은 약 16천건, 5.2백만 달러('13.10월 기준)로 내국인의 전체 해외현금인출 시장(약 1천만건, 30억달러 수준, '12년 기준) 대비 약 0.2% 수준

주) 내국인의 해외현금인출 시장규모(약 30억달러, 2012년 기준)를 고려하면, 국제 브랜드사에 지급하는 네트워크 이용료는 연간 약 3천만 달러

⇒ 동 제도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은행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권고통보)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역

지적분야	지적내용	처분내용
인사제도/성과상여금 (2)	■ 성과상여금제도 운용 방식 개선 필요	개선통보
	■ 각종 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필요	권고통보
복리후생 (4)	■ 자녀 학자금 및 보육 지원제도 개선 필요	권고통보
	■ 전세보증금 지원제도 개선 필요	개선통보
	■ 연차휴가 보상제도 운용 개선 필요	개선통보
	■ 안식년휴직제도 개선 필요	권고통보
예산 편성·집행/회계처리 (3)	■ 포상비 항목의 격려금 지급 부적정	개선통보
	■ 해외출장 관련 준비금제도 개선 필요	개선통보
	■ 소송패소비용의 회계처리 부적정	시정통보
고유업무 (일반사업/수익사업) (5)	■ "중장기 수익사업 관리방향" 이행 관련	권고통보
	■ VAN사업 관련 영업지원금 등에 대한 채권보전 소홀	주의(기관)
	■ 시스템 인시던트장애 등록 관리 소홀	주의(기관)
	■ 프로그램 긴급변경 절차 강화 필요	개선통보
	■ 국가간 ATM 공동이용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권고통보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금융결제원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통보, 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특정감사
2014.2.4 ~ 2.21

금융결제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

2014. 4.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금융결제원 현황 ····· 2

1. 일반현황 ····· 2

Ⅲ. 감사실시 결과 ····· 4

1. 분야별 감사결과 ····· 4

2.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계획 ····· 10

I. 감사실시 개요

□ 실시 배경

○ 은행과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이체 서비스(CMS : Cash Management Service)제도의 부적정 운영 가능성 인지**('14.1.29)

- 이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정식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

□ **감사 근거 :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금융위원회)이 검사·감독한다.
* 直前 감사(종합감사)는 2013년 11월에 실시된 바 있음

□ **감사 기간 : 2014. 2. 4(화) ~ 2. 21(금), 14일**(근무일 기준)

□ **감사 사항 :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서비스제도(CMS)의 운영 실태 및 피해자 보호대책 등**

□ **감사 요원 :** 감사담당관 외 6명(은행과 1명, 금감원 IT전문가 1명 포함)

□ 감사중점

○ **"CMS 이용약관"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

○ 이용업체와 **계약 절차 준수**(구비서류 접수 및 확인 절차 준수) 여부

○ **신용평가**의 적정성 여부

○ CMS**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 **월간 출금한도** 준수 및 **보증보험 기간** 초과 여부 등

II. 금융결제원 현황

□ 연 혁

○ '86. 6.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설립

*전국어음교환관리소('84.5)와 은행지로관리소('77.6) 통합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2(역삼동)

□ 조직 및 인원 : 4본부 11부 8실 1연구소, 622명(임원 7명)

※ 원장 : 김종화(54세) / 서울대(경제학과), 한국은행 부총재보('12.3 ~ '13.4)
감사 : 원중희(55세) / 동국대,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직 및 인원(현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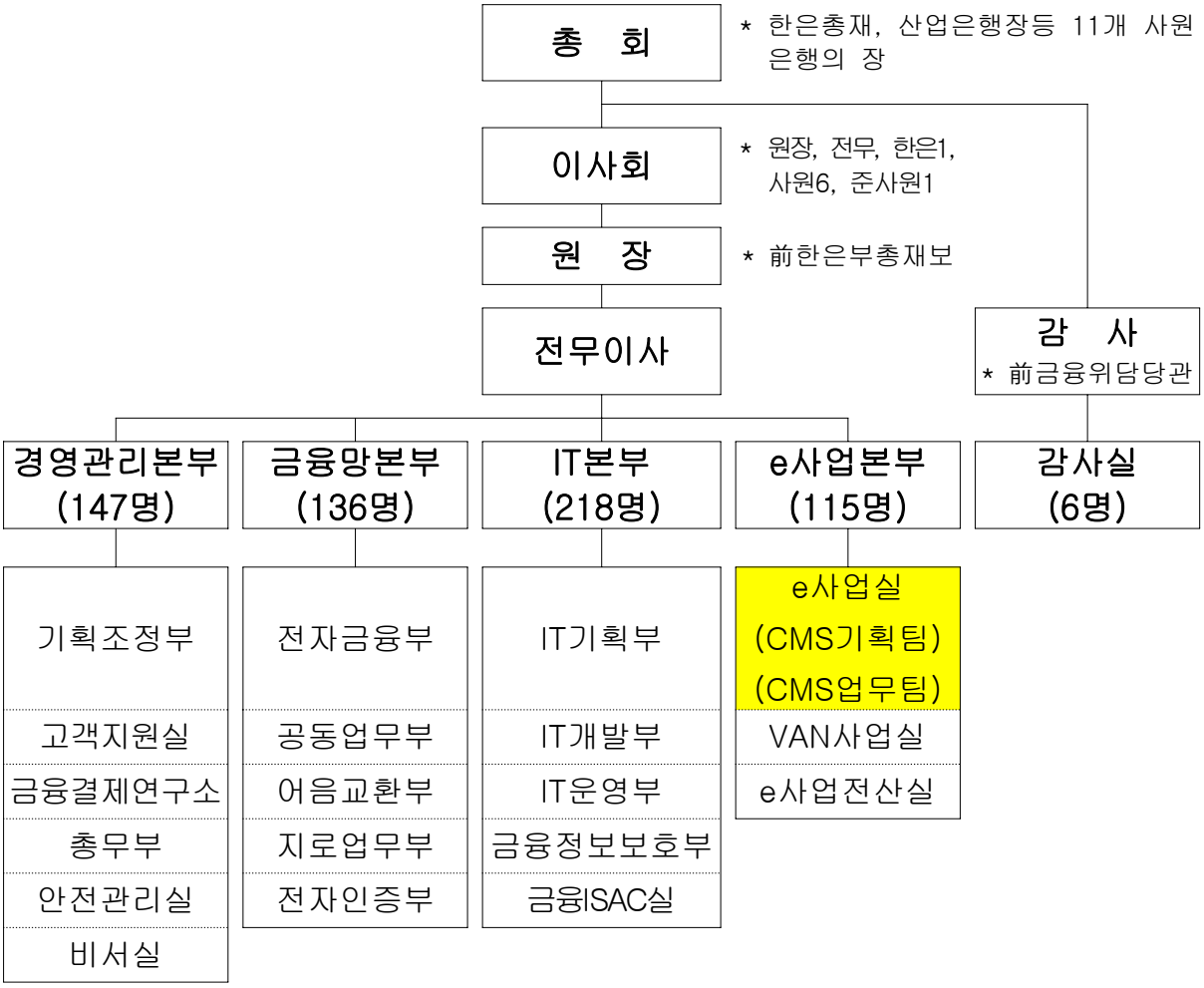

□ 주요업무

○ 어음교환소 설립·운영 및 지로제도 운영

○ 금융공동망(CD, 전자금융, 타행환등) 구축·운영

○ 금융기관 공동전산업무(공인인증, 금융ISAC등)

○ 자동이체서비스제도(CMS) 등 수익사업

□ 연도별 수입·지출내역

(일반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E)
수입총액(a)	**1,031**	**1,010**	**1,178**	**1,085**
•기본회비[1]	116	83	117	175
•실적회비[2]	606	625	639	649
•자체조달자금[3]	309	302	422	261
지출총액(b)	**951**	**933**	**1,050**	**1,079**
•인 건 비	571	563	567	574
•전산경비	148	147	180	215
•기타경비	232	223	303	290
차이(c=a-b)	**80**	**77**	**128**	**6**

1) 사원・준사원기관이 분담

*한국은행 40%, 여타사원 10%균등분담, 여타사원・준사원 50% 규모분담

2) 사원, 준사원 및 참가기관이 어음교환, 지로, 전자금융 등의 업무실적에 따라 납부

3) 예금 및 국공채 이자, 잡수입, 수익사업 이익전입금, 임대수입전입금

(수익사업)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E)
•매출액	785	836	793	799
•영업이익 (영업이익율, %)	210 (26.8)	176 (21.1)	140 (17.7)	125 (15.6)
•당기순이익[1]	227	195	37	55

1) 2012년부터 일반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 : 수익사업 소득 중 일반사업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2012년 101억원, 2013년 95억원)을 제외

III. 감시실시 결과

1 분야별 감사결과

가 보증금 관리에 대한 내부규정 위반

□ 금융결제원의 『**CMS직접접수기관 보증금액 관리기준**』에서는 **이용기관**은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

○ 또한, **보증금**은 통상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 통상 1년)으로 대체하고, **보증기한 만료** 시에는 **보증보험을 갱신** 하도록 규정

□ 그러나 결제원은 **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보증보험 갱신**이나 **이용중지** 등의 조치없이 **장기간 무담보로 이체출금**이 이루어진 사례가 **'13.1~12월 기간 동안 64건** 확인

(단위 : 만원)

이용기관명	신용등급	보증금액	보증기간 만료일	만료 이후 출금액(횟수)	출금기간	비 고
0000 000	B1	500	**'11. 5.17.**	21,449(198)	**'11.5.20~'14.2.10**	'14.2.10.장구
00000000000(유)	NG	14,000	**'12. 6.30.**	47,593(33)	**'12.7.5~'13.12.26**	'14.2.6.중지
000000	B2	500	**'13. 6.30.**	5,897(49)	**'13.7.1~'14.2.10**	'14.2.13.장구

□ 또한 00000(주) 등 **10개 이용기관**에 대해 **보증금 징구 없이 이체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보증금 관리가 부실**

이용기관명	보증금 징구하지 않은 사유	신용하락	변경일	받아야할 보증금액
00000(주)	외부감사대상기관*(B3등급)	C1	'10.5.15	**4억원**
00000000(주)	외부감사대상기관(B1등급)	C2	'10.9.1	**5억원**

* 외부감사대상기관은 B3등급까지 보증금을 징구하지 않아도 됨

⇒ **향후, 보증금 관리시 『CMS직접접수기관 보증금액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내부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문책요구 : 업무담당자·담당팀장·담당부서장, 인사자료 통보 : 담당임원, 경고 : 기관)

나 신용등급 관리에 대한 내부규정 위반

□ 금융결제원의 **『CMS직접접수기관 보증금액 관리기준』**에서는 이용기관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결제원은 이를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을 추가 징구**하여야 함

○ 만약 이용기관이 보증금액을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존 보증액 기준으로 **월간 출금한도를 축소**"토록 규정

□ 그러나 결제원은 이용기관 신용등급이 변동되었음에도 **보증금을 추가 징구**하지 않고 **이체 출금이 허용된 사례**가 '13.1~12월 기간 동안 **58건** 확인

(단위 : 만원)

이용기관명	연간이체 출금액	기존신용 등급	보증 금액	변경된 신용등급	변경 일자	받아야할 보증금액	비 고
00000000 0000	128,870	A3	면제	B1	'13.9.2	**8,250***	'14.2.10. 보증보험징구
######	2,400	A3	면제	B2	'13.9.2	**500****	'14.2.14 중지

* 0000 월한도액 5억5,000만원, ** ###### 월한도액 3,000만원

□ 또한 신용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월 한도액을 조정하지 않아 **월 출금한도액이 초과된 사례**도 확인

(단위 : 만원)

이용기관명	기존신용 등급	월출금 한도액	신용등급 변경 (변경일자)	신규 월 출금 한도액	출금액	비 고
00000 0000	C2	1,000	**NG** ('13.10.21)	**500**	**512** ('13.11월) **589** ('13.12월)	보증보험 500
(재)000 0000 00	A3	1억 6,000	**B1** ('13.10.21)	**8,000** (보증보험 1,200징구*)	**1억463** ('14.1월)	14.2.7. (보증보험 2,400 증액

* 보증보험 1,200만원은 월 출금한도액이 8,000만원 까지만 가능

⇒ **향후,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금 관리시 『CMS직접접수기관 보증금액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내부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문책요구 : 업무담당자·담당팀장·담당부서장·인사자료 통보 : 담당임원, 경고 : 기관)

다 가입시 이용기관의 신청서류 미비 및 심사 부실

① 신청서류 접수 미비

□ 금융결제원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자동이체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경우 『CMS 이용약관』 제7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징구**하도록 규정

* **(공통)** CMS 이용신청서, 통장사본, 주거래은행과 계약한 CMS이용 계약서, **(법인사업자)** 법인 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인감증명서

□ 그러나 결제원이 이용기관으로부터 접수(2013.1~12)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2,983건)를 확인한 결과 **일부 부실사례 확인**

※ 부실접수 유형 (총 90건)

① 인감증명서 미제출(6건), ② 법인이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등(24건), ③ 신청서·인감증명서 원본 미제출(10건), ④ 신청서 원본 미제출(25건), ⑤ 인감증명서 원본 미제출(25건)

② 이용기관의 적정성 심사 부실

□ 금융결제원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CMS 이용약관』**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용기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

□ 그러나 결제원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도 없고, **실제 심사한 사례**도 없이 **형식적으로 서류심사**만 실시

※ 이번 H소프트사 사건을 볼 때 **신용등급이 부실**(B_3 이하)하거나 **신규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사무실 존재 및 영업 능력여부에 대해 좀더 세밀한 확인이 필요

⇒ **향후, 신청서류 접수시 『CMS 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징구토록 하고 이용기관 적정성 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을 마련·시행할 것**

(문책요구 : 업무담당자·담당팀장·담당부서장, 인사자료 통보 : 담당임원, 경고 : 기관)

라 보증보험제도 운용 부적정

□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서비스 이용기관**들에 대해 **신용정보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월 출금한도액에 대한 **보증요율을 차등 적용**

<신용등급별 보증금액 내역>

신용등급	요 율	의미
A1~A3	**면제**	우수
B1~B2	**15%**	양호
B3	**30%**	보통
C1~C3	**50%**	열위
D, NG	**100%**	부실

○ **신용등급별 보증요율**은 **부당 출금이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

□ 그러나 현행 신용정보회사의 **창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평가 기준은 "**대표자의 신용도**"에 주로 의존하므로 **신용등급만을 기준으로 보증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창업 개인사업자가 **타인명의 도용**(바지사장)을 통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증요율**을 책정할 경우 사고발생시 **피해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 **정보회사의 개인사업자 평가 지표** (나이스 D&B)
① **대표자 신용도**, ② **비재무**(업력, 종업원수),
③ **여신**(은행한도증액, 은행신용공여비율, 담보율, 여신거래건수 등)

□ 따라서 사고발생시 **피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추가적인 보조지표 개발** 또는 **보증요율을 대폭 상향조정** 할 필요

⇒ **신규 개인사업자의 보증요율 결정시 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외에 추가적인 보조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이용기관에 대해 적정한 보증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개선통보)**

마 운영과정에서 출금이체에 대한 고객동의 확인 미흡

□ 현행 **자동이체서비스**는 매번 **고객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언제나 **부당 출금이체 가능성이 있는 구조**

○ 이에 따라 고객이 **부당 출금이체를 인지**하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한 부당 출금이체 결과를 알 수 없음

□ 금융결제원은 고객들이 **부당 출금이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용기관에 대해 직접 실사 등을 통해 **『고객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CMS 이용약관』을 개정***('13.6.26)

* **제 5 조 (이용기관의 의무)**⑧ 직접접수기관은 출금이체신청서 징구시 납부자로부터 출금동의 관련 개인정보를 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납부자가 출금동의에 관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확인해 주어야 한다.

□ 그러나 금융결제원은 실제 이용기관에 대한 실사는 "00000000에 대해서만 **한차례 실시**하는 등 자동이체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출금이체에 대한 **"동의여부"** 확인을 소홀

⇒ 이용기관에서 출금이체 요청이 있을 경우, 고객이 출금이체에 동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개선통보)

바 납부자 통장의 이체내역 기재 심사 미흡

□ 금융결제원 『**CMS이용약관**』 제10조에서는 이용기관이 「CMS 이용 신청서」에 납부자 고객의 통장기재 내역을 기재토록 하고, **결제원은 이를 심사하고 필요시 정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 ※ **이용약관 제10조** (납부자의 통장기재내역)
> ① 이용기관은 납부자의 통장기재내역에 **사전 등록된 이용기관 상호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원은 이용기관의 수납자금 특성상 통장기재내역을 이용기관의 상호로 특정하기 곤란할 경우 이를 심사하여 예외 적용할 수 있다.

○ 동 규정은 납부자가 통장에서 출금이체 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쉽고 대표성 있는 통장기재내역**을 기재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그러나 결제원은 '13년도에 접수한 2,983건에 대해 심사는 하였으나, **납부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통장기재내역**을 신청서에 기재하였음에도 **알기 쉽게 정정하지 않은 사례 다수**(33건) 발견

이용기관명	자금종류	통장 기재내용
00000	할부원금	**서비스 이용료**
0000000	후원금	**장애인 자립협회**
00000000	어플이용료	**어플이용료**
0000	정수기 렌탈료	**정수기**
00000	교육비	**교육비**

⇒ 납부자 통장에서 출금이체가 발생할 경우, 출금이체 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에 기재하는 이체내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 (기관주의)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역

지적분야	지적내용	처분내용
CMS제도 운영(6)	■ 보증금 관리에 대한 내부규정 위반	- 문책 요구 (담당자, 팀장, 담당부서장) - 인사자료 통보 (담당임원) - 경고(기관)
	■ 신용등급 관리에 대한 내부규정 위반	- 문책 요구 (담당자, 팀장, 담당부서장) - 인사자료 통보 (담당임원) - 경고(기관)
	■ 가입시 이용기관의 신청서류 미비 및 심사 부실	- 문책 요구 (담당자, 팀장, 담당부서장) - 인사자료 통보 (담당임원) - 경고(기관)
	■ 보증보험제도 운용 부적정	개선통보
	■ 운영과정에서 출금이체에 대한 고객동의 확인 미흡	개선통보
	■ 납부자 통장의 이체내역 기재 심사 미흡	주의(기관)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금융결제원에 통보하여 1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1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통보, 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종합감사
2014.2.18 ~ 2.28

코스닥협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4. 4.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코스닥협회 현황 ····· 2

1. 일반현황 ····· 2

Ⅲ. 감사실시 결과 ····· 4

1. 분야별 감사결과 ····· 4

2.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계획 ····· 12

I. 감사실시 개요

□ 실시 배경

○ 자본시장과는 코스닥협회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 실시 필요성**을 인지하고,

- 감사담당관실에서 **정식 감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14.2.8)

□ **감사 근거 : 민법 제37조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규칙**(총리령) **제9조**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금융위원회)이 검사·감독한다.
* 直前 감사(종합감사)는 1999. 6월 설립 이후 실시된 바 없음

□ **감사 기간 : 2014. 2. 18(화) ~ 2. 28(금), 9일**(근무일 기준)

□ **감사 사항 :** 코스닥협회의 기관운영 실태 등 종합감사

□ **감사 요원 :** 감사담당관 외 7명(자본시장과 1명, 금감원 2명 포함)

□ 감사중점

○ 의사결정기구(총회, 이사회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예산편성·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 일반회계 및 연수회계의 예산편성·집행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 사내복지기금 적립 및 운영의 적정성

○ 정관등 제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 회원사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 및 연수사업의 적정성

II. 코스닥협회 현황

□ 연 혁

○ '99. 6. 사단법인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현 코스닥협회) 설립
* 2000.1.17. 재정경제부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승인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국거래소 별관 7층)

□ **조직 및 인원 :** 3본부 7팀, 25명(임원 4명) ※ 비상근 임원 제외

※ 회장 : 정지완(59세) / 성균관대(화학공학), 솔브레인 대표이사(2013~현)
부회장 : 김원식(60세) / 성균관대(무역학과), 금융감독원 증권검사국장
감사 : 정승환(52세) / 서울대(경영학과), 위즈정보기술 대표이사(2010~현)
신경철(59세) / 서울대(기계설계), 유진로봇 대표이사(2012~현)

【조직 및 인원(현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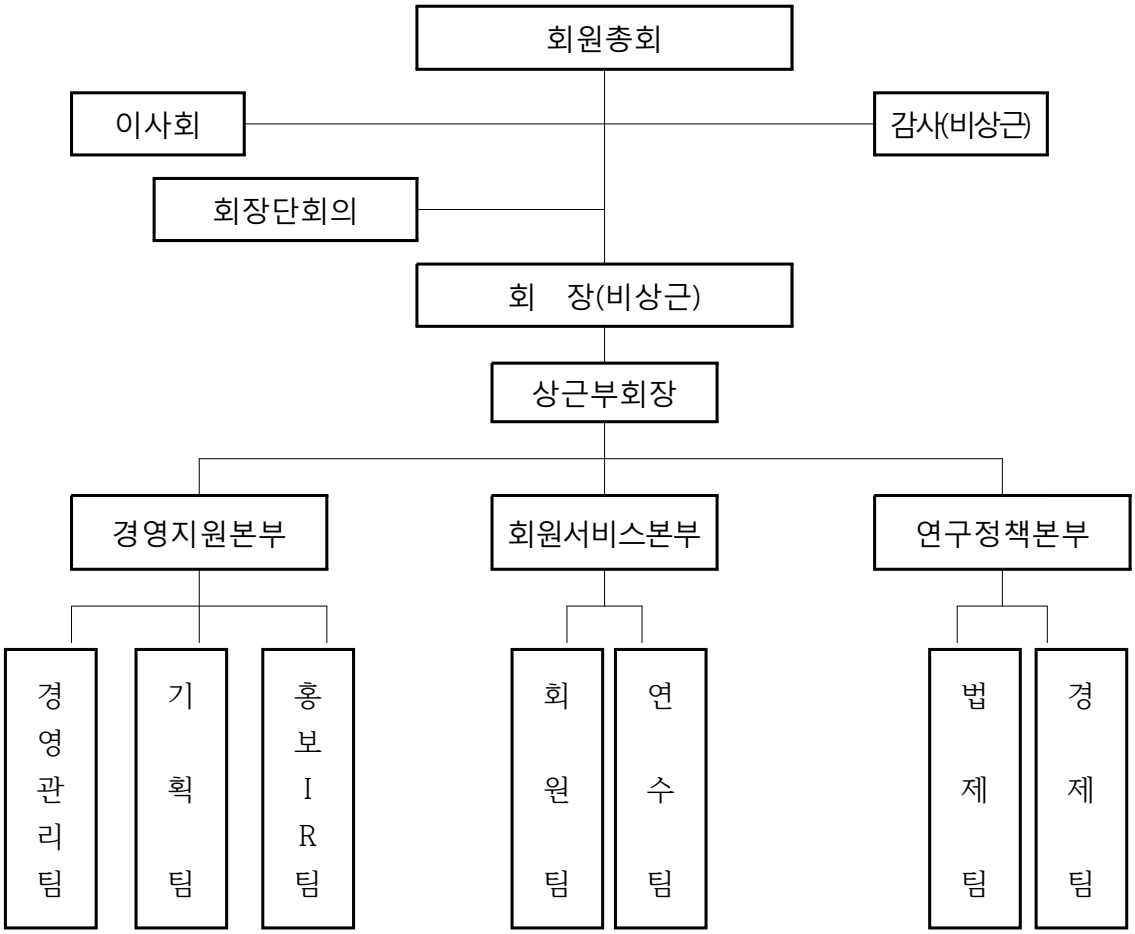

□ 주요업무

○ 코스닥상장법인 기술사업화, 자금 및 해외진출 등 성장동력지원
○ 회원사 권익옹호와 코스닥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건의
○ 회원사 공시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상담 및 각종 자료 발간·배포
○ 회원사 임·직원들의 역량강화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실시
○ 회원사 홍보 및 IR, 사회공헌활동 지원

□ 연도별 수입·지출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수입총액(a)	**3,895,043**	**4,066,926**	**3,998,894**	**3,976,802**
•회비수입[1]	3,740,291	3,874,494	3,766,919	3,809,610
•수입이자	130,182	162,878	228,376	165,692
•잡수입 등[2]	2,672	12,400	3,599	1,500
•연수회계전입금[3]	21,898	17,154	0	0
지출총액(b)	**3,338,685**	**3,533,969**	**3,508,144**	**3,840,858**
•사업비	1,147,167	1,192,230	1,104,158	1,243,167
•관리비	903,876	993,628	969,766	1,004,348
•인건비	1,237,948	1,316,272	1,406,389	1,567,974
•사업외비용[4]	49,694	31,839	27,831	25,369
차이(c=a-b)	**556,358**	**532,957**	**490,750**	**135,944**

1) 연회비 및 가입회비, 2) 설명회 참가비 및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3) 연수회계 지원금 중 환입액, 4) 감가상각비 및 유형자산처분손실 등

(연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수입총액(a)	**808,153**	**901,572**	**983,603**	**1,003,121**
•사업수입[5]	788,084	901,330	868,932	881,310
•수입이자	69	242	70	67
•일반회계전입금[6]	20,000	0	114,601	121,744
지출총액(b)	**808,153**	**901,572**	**983,603**	**1,003,121**
•사업비	478,347	531,543	581,575	553,335
•관리비	53,541	61,711	137,031	142,707
•인건비	254,217	291,164	264,997	307,079
•사업외비용[7]	150			
•일반회계전출금[8]	21,898	17,154		
차이(c=a-b)	**0**	**0**	**0**	**0**

5) 연수 수강료, 6) 일반회계에서 지원한 금액, 7) 잡손실(수강료 미입금분)
8) 연말결산시 일반회계 지원금 환입 (2012년부터 강당사용료를 계상)

III. 감시실시 결과

1 분야별 감사결과

가 인사 · 급여 제도 운영 관련

① 코스닥 임원회의 운영 부적정

□ 코스닥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이사 모임은 협회 정관 제10조에 근거가 있는 **이사회**(40명 이내)와 정관상 근거가 없이 이사회 멤버로 구성된 사적 친목모임인 **「코스닥 임원월례회」**로 구분·운영

○ 정관상 근거가 있는 「**이사회**」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협회 예산에 **'회의비'** 명목으로 편성

○ **「코스닥 임원월례회」**는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이사가 소속된 협회 임원사로부터 매년 150~200만원의 회비를 납부** 받아 충당

□ 그러나 성격상 **비공식적인 모임**인 **「코스닥 임원월례회」**의 최근 5년간('09.1.1~'13.12말) **운영 현황**과 **경비 집행내역**을 보면,

○ 협회 운영을 위한 안건 처리 실적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워크숍 명목 등으로 **총 38회 골프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골프비용**(4,447만원)**을 협회 예산에서 지원**

⇒ **향후, 공적 업무와 사적 친목모임간 회계처리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적 친목모임에 협회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할 것 (기관경고)**

② 상근부회장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 과다 지원

□ 코스닥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급여규정**」 제16조(퇴직금)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의한 **월평균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

□ 또한, 협회 「**급여규정**」 제16조의2(퇴직연금)에 따라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지급**

□ 그러나 **상근 부회장 등 임원**의 경우, 「**퇴직금 지급배율**」을 일반직원들에 비해 **최대 2배**까지 많게 책정·지급하고 있어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과다 지급**

○ 또한, 유사기관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과도한 측면이 있음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배율 현황>

직 위	퇴직금 지급배율	
	기 존	현 행
상근 부회장	1	2
상무 등 상근임원	1	1.5
직 원	1	1

* 급여규정 제16조(퇴직금) 별표 2, 2013.4.1. 시행 (현재 퇴직금은 '06. 3월부터 퇴직연금으로 지급)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상근부회장 등 임원에 대해서도 직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퇴직금 지급배율」을 조정·집행할 것(개선통보)

③ 인사제도 운영 부적정

□ 코스닥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인사규정**」 제8장에 따라 인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검토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

○ 인사위원회는 **상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임원 및 위원장이 지정하는 팀장 이상의 자 약간 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 또한, 위원회에서는 **직원의 표창 및 포상·승진·징계와 인사고과의 결과에 대한 조정** 등을 심의하고 간사(인사담당팀장)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

□ 그러나 '09년 이후 위원회는 **임원들만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11년에 개최된 1차 위원회 회의록에는 **서명**이 일부 누락

○ 또한, 위원회 심의사항인 **우수사원 선정·포상**과 관련하여 **'09년** 및 **'10년**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

○ 아울러 **직원채용**은 회장이 그때마다 따로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서도 제외**하고 있어 **공정한 선발**을 해칠 우려

<'09년 이후 코스닥협회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연도	횟수	심의사항
2009	1	승진
2010	1	승진
2011	2	승진, 우수사원 포상
2012	3	승진, 우수사원 포상, 전문인력 채용 관련 급여 심의
2013	2	승진 및 전보, 인사고과 결과 조정 및 성과급 지급

⇒ **향후, 규정에 맞게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직원채용 등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개선통보)**

나 임직원 복리후생 관련

① 직원 연수비 지원 부적정

□ 코스닥협회는 '급여 및 복리후생기준' 제5장에 **'직원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연수비를 지원

<직원의 연수에 관한 규정 내용>

1. 연수기관 : 공공기관, 학원, 방송통신 및 사이버 교육기관 등
2. 연수과목 : 경영, 경제, 법학, 전산, 어학 등 직원의 업무능력향상에 필요한 분야
3. 신청자, 소속팀장, 경영관리팀장은 연수 내용이 본 기준과 상충되지 않는지를 확인·검토해야함

□ 그러나 '09년 이후 직원 연수비의 상당수가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에 지원되고 있어 **연수기관**과 **과목이 당초 규정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운영

○ 또한, 연수개시 전 수강증 사본, 연수 종료 후 수료증 등을 확인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만을 근거로 **연수 종료 전에 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는 등 **관리 상태**도 부실

<09년 이후 코스닥협회 직원 연수비 지원 현황>

연 도	지원 대상(명)					지원금액(천원)
	골프	헬스 등	어학	기타	계	
2009	3	20	2	5	30	7,278
2010	2	16	7	7	32	8,663
2011	5	14	5	9	33	8,794
2012	8	12	4	7	31	8,937
2013	10	14	5	3	32	9,874
계	28	76	23	31	158	43,546

⇒ 향후 직원 연수비가 부적절한 연수기관과 과목에 지원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연수비 관리를 철저히 할 것(기관경고)

다 예산집행/회계처리 관련

① 골프 등 섭외성 경비 지출 과다

□ 코스닥협회(이하 협회라 함)는「정관」제2조(목적)를 위하여 **「정관」 제4조**에 따라 **코스닥상장법인 육성, 코스닥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건의, 코스닥상장법인 관련제도와 업무의 개선·통일** 등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규정

□ 최근 5년간('09.1.1～'13.12말) 협회는「정관」제2조(목적) 및 제4조에 따라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사업비 예산을 **연 평균 11억 1,265만원을 집행**

○ 그러나 사업비 집행액의 **33.0%**에 해당하는 **3억 6,737만원**은 회의비, 업무추진비, 기부경조비, 행사비 및 홍보비 등 **섭외성 경비**로 지출

□ 협회의 사업비 대비 **섭외성 경비 비율**(33.0%)은 유사한 **타 비영리법인에 비해 높은 수준**

○ 특히 최근 5년간('09.1~'13.12월) **골프행사** 비용으로 **2억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골프관련 비용이 섭외성 경비 대비 약 54.0% 치지

○ 또한, **업무추진비**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규정** 없이 운영

<연도별 사업비 및 섭외성경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평균
사업비 총계(A)	1,060,983	1,104,757	1,154,380	1,066,344	1,176,790	1,112,651
섭외성 경비(B)	314,448	333,083	436,851	351,512	400,945	367,368
B/A(%)	29.6%	30.1%	37.8%	33.0%	34.1%	33.0%

⇒ 사업비 예산 중 섭외성 경비 비율을 적정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주중 골프장 사용 기준 등이 포함된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투명하게 집행할 것 (시정통보)

② 국외출장 운영·관리 미흡

□ 코스닥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국외출장자에 대해 **「여비규정」 제14조** 및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 준비에 소요되는 추가 비용 지원을 위해 **직급기준으로 고정비로써 '준비금'을 지급**

<직급별 여비 및 준비금 기준>

(단위 : US$)

구 분	임 원	1·2급	3·4급	5급
준비금	700	600	500	400
일당체재비(일,식,숙박비)	350	260	230	190
교통비	실비	실비	실비	실비

* 동일지역내 30일, 60일 초과시 초과되는 기간은 일당체제비를 각각 30%, 50% 감액 지급

□ 또한, 협회 **「복무규정」** 제24조(출장결과보고)에서는 직원이 출장을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즉시 출장결과를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하도록 규정

□ 그러나 협회는 준비금을 해외여행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체재비와는 달리 **해외여행의 목적, 기간, 목적지에 관계없이 직급에 따라서만 차등하여 정액으로 지급**

※ 협회는 여비규정 제16조(여행수속비)에 따라 국외출장시 **준비금*** 성격의 비용을 지원

* **(준비금)** 공무원여비규정에서는 준비금의 성격에 대해 외국을 여행하는 임직원의 여권 및 입국사증발급, 여행자보험 가입 등에 직접 소요되는 제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최근 5년간('09.1.1~'13.12말) 직원이 국외 출장(연수 포함)에서 귀임하면서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한 사례는 없음

○ 특히, 매년 실시하는 **코스닥 해외시장 투자환경 조사**를 위한 연수의 경우에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

⇒ 향후, 준비금제도를 목적에 맞도록 운용하시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임시에는 반드시 출장보고서를 작성·관리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시정통보)

③ 연구용역 수행·관리 부적정

□ 코스닥협회 「**회계규정**」 제59조(계약방법)에서는 계약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다른 방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에 의한다고 규정

□ 또한, 동 규정 제75조(검수)에서는 계약 또는 발주를 의뢰한 부서는 소정의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경영관리담당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러나 최근 5년간('09.1.1~'13.12월말) 수행한 **8개 용역과제**는 특별한 이유없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수행되었으며, **계약 이행 과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수한 실적**이 없음

<연도별 연구용역 수행 현황>

(단위 : 만원)

연도	용역과제명	용역수행기관	입찰방법	금액
2009	- 코스닥시장 발전을 위한 공동학술연구	0000학회	수의계약	3,200
2010	- 세계일류기업 지원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0000연구원	수의계약*	1,960
	- 코스닥 상장폐지기업의 부실화 패턴 및 경로분석에 관한 연구	00대학교 (양00 교수)	수의계약	800
2011	- IR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00대학교 (김00 교수)	수의계약	2,000
	- 외국기업의 국내상장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00000대학 (000000단)	수의계약	1,000
2012	- 코스닥의 가치제고에 관한 연구	0000대학교	수의계약	2,000
2013	-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코스닥상장기업 지원 정책	0000대학교	수의계약	2,500
	- 코스닥상장기업의 수익모델 방법론 개발연구	000000학회	수의계약	1,200

* 00000, 000000진흥원과 공동으로 수행

⇒ 연구용역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회계규정에 일반경쟁 대상금액 기준을 설정하는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개선통보)

라 기 타

① 직원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 코스닥협회(이하 협회라 함)는 정관에 따라 코스닥상장법인의 **기업내용 공시** 및 **IR에 관한 사업**, 코스닥상장법인의 **증자 및 배당정책에 관련 협의·지도**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

○ 따라서 상기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코스닥상장법인의 중요한 기업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인지하여 이를 **임직원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활용할 가능성**이 존재

□ 그러나 협회의 경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관리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 등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 매매 등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시행할 것 (권고통보)**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역

지적분야	지적내용	처분내용
인사·급여 제도 운영 (3)	■ 코스닥 임원회의 운영 부적정	경고(기관)
	■ 상근 부회장 등 임원에 대한 퇴직금 과다 지급	개선통보
	■ 인사제도 운영 부적정	개선통보
복리후생 (1)	■ 직원연수비 지원 부적정	경고(기관)
예산집행/ 회계처리 (3)	■ 골프 등 섭외성 경비 지출 과다	시정통보
	■ 국외출장 운영 · 관리 미흡	시정통보
	■ 연구용역 수행 · 관리 부적정	개선통보
기 타 (1)	■ 직원 주식 등 거래에 관한 기준 마련 필요	권고통보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코스닥협회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통보, 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종합감사
2014.5.12 ~ 5.27

전국은행연합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

2014. 7.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 1

Ⅱ. 전국은행연합회 현황 ····· 2

1. 일반현황 ····· 2

Ⅲ. 감사실시 결과 ····· 5

1. 분야별 감사결과 ····· 5

2. 분야별 지적내용 및 조치계획 ····· 21

I. 감사실시 개요

□ 법적근거

○ **민법 제3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감독

※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하여는 '03년, '05년, '07년, '10년 등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왔으며, 최종감사('10.11) 이후 3년 5월 경과

□ 감사기간 : 2014. 5. 12(월) ~ 5. 27(화) (12일간/근무일 기준)

□ 감사대상 : 고유·수익사업, 의사결정기구, 예산·회계, 조직·인력, 임직원 복리, 내부통제 등

□ 감사요원 : 감사담당관 외 6명(금감원 및 회계기준원 파견 2명 포함)

□ 감사중점

○ 고유사업* 및 수익사업** 운영의 적정성

* 금융기관간 업무협의, 신용정보 집중업무 등

** 사옥 임대수익 등

○ 의사결정기구(총회, 이사회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예산편성·집행, 계약사무의 처리 및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 조직관리 및 인력운용의 적정성

○ 임·직원 복리후생 운영의 적정성

○ 정관등 제 규정의 적정성 및 준수여부

○ 청년창업재단 운영의 적정성(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II. 전국은행연합회 현황

1. 일반현황

□ 연 혁

○ 1928. 11. 1. 사단법인 경성은행집회소 설립
○ 1975. 11. 1. 사단법인 전국은행협회로 개편
○ 1984. 5. 9.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로 개편
○ 1995. 7.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19(명동 1가)

□ **조직 및 인원 :** 7부 2실(직원 141명, 임원 6명)

* 회장 : 박병원(52년생) / 서울대(법학), 행시 17회, 재경부 제1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감사 : 이정하(60년생) / 고려대경영대학원, FIU 제도운영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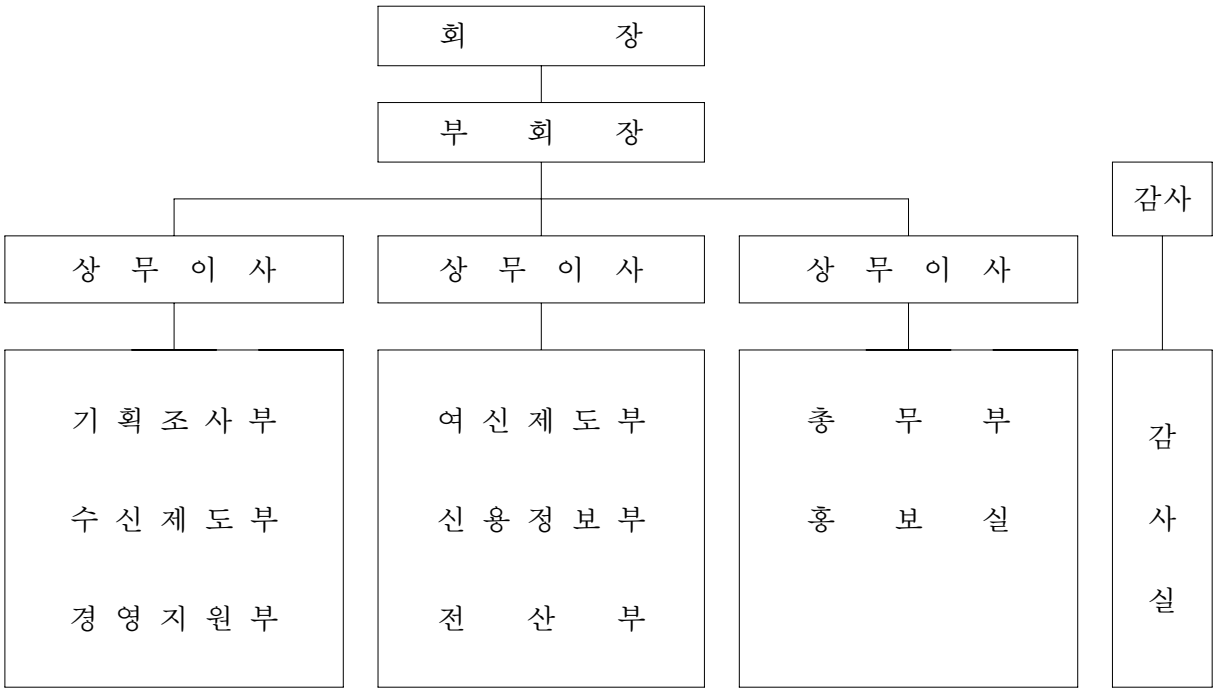

□ 주요업무

○ 금융기관간의 업무협의, 정보교환 등 효율적인 금융활동을 위한 조치의 수립 실시
○ 금융 및 은행경영에 관한 조사연구, 대정부건의 및 그 자문에 대한 답신
○ 신용정보관리와 신용평가업무 및 동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 금융에 관한 관계기관 및 국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조
○ 금융기관 대외홍보 및 공동이익을 위한 조치의 수립 실시
○ 사회공헌사업 등

2. 예산 및 재산현황

□ 연도별 수입·지출내역

(일반사업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2)]
수입총액(a)	**10,092,695**	**10,428,926**	**10,766,442**	**13,407,030**	**13,293,423**
•분담금	9,215,654	9,521,976	9,839,227	12,005,812	11,863,023
•전기이월금	185,201	200,000	200,000	250,000	700,000
•전입금수입[1)]	660,508	673,333	700,883	1,137,906	730,400
•잡수입	31,332	33,617	26,332	13,312	-
지출총액(b)	**9,002,503**	**9,202,917**	**9,414,721**	**11,514,212**	**13,293,423**
•고정자산취득비	46,302	32,407	37,298	46,955	60,475
•인건비	4,694,314	4,833,700	5,172,027	5,595,930	5,974,016
•경비	4,116,760	4,190,682	4,082,636	4,108,454	4,756,294
•사회공헌사업비	-	-	-	1,536,631	2,000,000
•전산업무비	145,127	146,128	122,760	226,242	267,638
•예비비	-	-	-	-	235,000
당기잉여금(a-b)	**1,090,192**	**1,226,009**	**1,351,721**	**1,892,818**	**-**

1) 전입금수입란에 '이자수익'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을 기재
2) 2014년도 내역은 예산편성금액 기준으로 작성

(신용정보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2)]
수입총액(a)	**13,218,983**	**13,519,296**	**14,231,322**	**14,050,217**	**14,274,967**
•분담금	11,968,680	12,272,289	12,622,822	12,775,536	13,035,267
•전기이월금	744,670	770,000	1,100,000	920,000	950,000
•전입금수입[1)]	481,265	452,669	485,668	346,991	289,700
•잡수입	24,368	24,338	22,832	7,690	-
지출총액(b)	**11,834,447**	**12,215,670**	**12,364,567**	**12,820,378**	**14,274,967**
•고정자산취득비	47,605	51,337	130,764	53,309	73,638
•인건비	5,318,489	5,469,663	5,637,822	5,977,150	6,290,744
•경비	3,797,841	3,830,583	3,884,241	3,615,651	4,459,449
•사회공헌사업비	-	-	-	8,367	19,073
•전산업무비	2,670,512	2,864,087	2,711,740	3,165,901	3,312,063
•예비비	-	-	-	-	120,000
당기잉여금(a-b)	**1,384,536**	**1,303,626**	**1,866,755**	**1,229,839**	**-**

1) 전입금수입란에 '이자수익'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을 기재

2) 2014년도 내역은 예산편성금액 기준으로 작성

III. 감사실시 결과

1 분야별 감사결과

가 인사제도 및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① 성과(특별)상여금제도 운용 방식 개선 필요

□ 은행연합회는 『보수규정』 제25조(상여금 등의 지급)에 따라 직원에 대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성과상여금 형태로 **'특별상여금'***을 지급

* 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600% 지급 외에 특별상여금으로 통상임금의 100~150% 지급

○ **팀장급 이상**은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 간 격차는 **12%**이며, 최고 및 최저 등급 간 격차는 **24%**임

○ **팀원급**은 **5개 등급**(세부 7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 간 격차는 **12%**에 해당하며 최고 및 최저 등급 간 격차는 **90%**임

<성과상여금 지급률 현황>

① 팀장급 이상(평균 : 통상임금의 146%, 개인등급 간 차이 : 12%)

부서 \ 개인	S	A	B
S	168	156	144
A	158	146	134
B	148	136	124

② 부서원(일반직·전문계약직 등, 평균 : 통상임금의 134%, 개인등급 간 차이 : 12%)

부서 \ 개인	3S	2S	1S	A	B	C	D
S	210	189	168	156	144	132	120
A	200	179	158	146	134	122	110
B	190	169	148	136	124	112	100

□ 그러나, 은행연합회의 특별상여금제도는 **등급수, 등급 간 격차, 최저 및 최고 등급 간 격차, 최저 등급에 지급되는 비율** (팀장급 이상 : 124%, 팀원급 : 100%) 등을 볼 때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운영**

⇒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급율,등급수, 차등 수준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개선통보)**

② 휴직제도 운영 부적정

□ 은행연합회 「**인사규정**」 **제37조**에서는 직원에 대한 휴직의 종류로 **청원휴직, 인병휴직, 입영휴직 및 명령휴직**으로 구분

○ 동 규정 **제46조**(근무통산)에서는 **휴직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를 모두 **근무 연수에 합산하도록 규정**

○ **공직선거 입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중 2회에 걸쳐 **3개월 이내에서 유급휴직**(기준봉급*의 25%)를 부여

* 직급에 따라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본봉+직급수당)

○ 또한, 본인 질병(부상)휴직자에게도 **재직기간에 따라 휴직기간을 차별하여 부여**하도록 규정

□ 그러나 **공직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유급휴직 부여 및 재직기간 산정, 재직기간에 따른 휴직기간의 차별 산정** 등은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려움

<주요 청원휴직의 종류 및 기간>

구분	휴직기간	비고
○ 질병외 일신상 사유	6개월	
○ 국제기구/외국기관 임시고용	3년 이내	
○ 학위취득	3년(2년) 이내	해외유학(국내박사학위) * 업무연관성 있을 경우 인정
○ 가족간호	1년 이내	
○ 본인 질병 또는 부상	1년 이내	10년 이상 근속자는 2년 이내
○ 공직선거 입후보	3개월 이내	재직기간 중 2회

⇒ **개인적인 사유(공직선거 입후보자 등)로 인한 휴직 등은 유급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질병휴직 기간을 차별 부여하는 불합리한 휴직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할 것 (시정통보)**

나 임직원 복리후생 관련

①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필요

□ 은행연합회에서는 「**복지규정**」 제10조(장학금 지급) 등에 근거하여 **직원 자녀에 대해 학자금**을 지원

○ **지원대상**은 중학생(의무교육에 따라 지원 중지) 이상의 자녀 등으로 **지원범위**는 **중고교생** 및 **대학생**에 대하여 **등록금의 100%**임

□ 그러나 특수목적고 재학생 및 특수계열 대학생에 대해 **한도 규정** 없이 입학금, 수업료, 학생(자치)회비 등과 이에 준하는 **학자금을 실비로 지원**

○ 이에 따라 일반고 및 특목고 재학생과 일반계열 및 특수계열 대학생간 지원액의 현저한 차이로 인해 직원들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연도별 학자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고등학교		대학교		합 계
	일반고	특목고	일반계열	특수계열*	
2011년	22,706(13명) (평균:1,747)	13,166(3명) (평균:4,389)	96,443(17명) (평균:5,673)	42,113(7명) (평균:6,016)	174,428(40명)
2012년	21,728(13명) (1,671)	15,177(4명) (3,794)	78,248(15명) (5,216)	38,409(5명) (7,682)	153,562(37명)
2013년	22,622(14명) (1,616)	17,869(4명) (4,467)	61,806(11명) (5,619)	64,355(7명) (9,193)	166,652(36명)
2014년 (1/4)	2,304(5명) (461)	7,112(5명) (1,422)	25,942(8명) (3,243)	24,419(5명) (4,884)	59,777(23명)

* 의학계열(의대, 치대 등), 한약계열(한의대 등), 공대

※ 2011년 및 2012년 대학생 학자금 평균은 한 학기분만 지급한 점을 고려할 필요

⇒ **특목고 및 특수계열 대학 재학 직원 자녀의 등록금 전액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 할 것 (시정통보)**

② 연차휴가보상제도 운영 부적정

□ 은행연합회는 복지규정 제17조(지급대상), 제18조(지급기준) 및 제19조(지급대상기간 구분)에 따라 **연차휴가보상제도**를 운영

○ 연차휴가보상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83/183** (1.83 = 임금지급가산율(183%) / 183 = 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지급대상기간 구분 및 지급시기를 회장이 정**하도록 함

□ 그러나 타 기관보다 **월 소정근로시간**(183시간)을 적게 적용하고 **임금지급 가산율**(1.83배)은 높게 적용하여 **시간당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지급**됨

* 유관기관 연차보상금 지급기준 : 월 근무시간은 통상 209시간이며, 임금지급 가산율은 1～1.5배

□ 또한, 연차휴가보상금 지급도 **매년 초**에 전 직원에게 **일괄 지급** 후 연말에 연가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한 연차보상금을 정산하여 환수**

○ 따라서 직원들은 기 지급받은 연차휴가보상금을 반납해야 하는 부담으로 **휴가사용을 자제**할 가능성이 큼

<연도별 연차휴가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 일, 천원)

구분	직원 수	연가일(평균)	미사용일(평균)	사용일(평균)	지급총액	보상액(평균)
'11년	128	21.8	17.1	4.7	559,149	4,368
'12년	126	21.9	21.1	0.8	713,914	5,666
'13년	131	21.4	20.8	0.6	774,472	5,912
'14년	137	20.4			760,151	

⇒ **현행 연차보상금의 월 소정근로시간, 보상 수준 및 지급 시기를 합리적으로 시정하고,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 할 것 (시정통보)**

③ 사원복지연금 지원 부적정

□ 은행연합회는 **「복지규정」 제7장**에 따라 만 20세 이상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일정금액(매월 통상임금의 9%)*을 지원하는 **「사원복지연금제도」**를 도입·운영

* '11.4(15%→14%), '12.1(14%→13%), '12.11(13%→11%), '13.11(11%→9%)

○ 「사원복지연금」의 지원 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지원***한다고 **「복지규정」 제26조**에서 규정

* '95년 개정 당시 부칙에서는 '규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서 필요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충당될 때 까지는 연합회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복지규정 제25조는 '지원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2014년 3월말)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액은 100억 원** (1인당 평균 7,143만원) 수준으로 **공공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

* 기금 누적 액이 **1인당 평균 2,000만원** 초과 시 추가 출연 제한

<사원복지연금 지원 및 재원 현황(단위 : 백만 원)>

재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 3월 현재
□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액	8,677	9,171	9,290	9,988
○ 예산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1,048	988	599	832
○ 사원복지연금 지출액	622	583	532	118

⇒ 은행연합회 예산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추가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현 잔액 수준내에서 관련 사업을 운영할 것 (시정통보)

④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기준 부적정

□ 은행연합회는 「**보수규정**」 **제24조**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의 1.83*/18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시간 당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249일(평일)×8시간) + (52일(토요일)×4시간) / 12월 = 183.3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고려없이 주 6일 근무를 기초로 일요일, 공휴일을 전부 제외

□ 그러나 현행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기준은 유급휴일을 고려하지 않은 과거 **주 6일 근무제**를 기초로 마련된 것으로 현재 은행연합회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중이고,

○ 「복무규정」 제20조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또는 243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 월 소정근로시간 = [(주중 근로시간+유급휴일 인정시간(1일 또는 2일)×52주 + 8시간(1일)]/12개월

○ 또한,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액 지급기준**을 시간 당 **통상임금의 83%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도 **유관기관***과 비교할 때 그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유관기관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 : OOOOO·OOOOO(통상임금×근무시간×1.5/209)

<연도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시간외근무수당		
	최근 3년간 실제 지급액 (1.83/183)	월 243시간 적용시 (1.5/243)	월 209시간 적용시 (1.5/209)
2011년도	**227,783**	140,607	163,481
2012년도	**220,463**	136,088	158,227
2013년도	**196,125**	121,067	140,762

* 월 근로시간을 '243시간' 또는 '209시간'으로 적용 시, 시간외수당 가산비율은 50%로 산정함

⇒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시 월 소정근로시간 및 보상액 가산율 등을 합당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할 것 (시정통보)

⑤ 휴가보조비 지급 방법 부적정

□ 은행연합회는 「복지규정」 제12조*에 따라 임직원 대상으로 **휴가보조비를 매년 일정액**(임원 : 100만원, 직원 : 50만원) 지급

○ 휴가보조비는 기존에 직원들의 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던 **'연성장'**(숙박시설)을 노사합의에 의해 폐지함('03.04.14)에 따라 그에 대한 **보전적 성격**으로 지급

* **[복지규정]** 제12조(휴가보조비 지급) 직원의 여가선용 및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휴가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휴가보조'라는 목적과 달리 **휴가 사용 여부, 사용일수** 등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매년 **전 임직원**(휴직자는 제외)에게 휴가보조비를 **정액으로 지급**

○ 또한, 규정에 휴가보조비의 구체적인 **지급일, 지급액수** 등 지급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내부결재를 통해 매년 결정**하고 있어 **임의적으로 증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

<연도별 휴가보조비 지급내역>

(단위 : 천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인원(명)	집행액	인원(명)	집행액	인원(명)	집행액
인원 및 집행액	130	65,000	131	68,500	139	72,500

⇒ **휴가보조비의 합리적인 지급을 위해 임직원의 휴가 사용 여부 및 사용 일수 등과 연계된 세부기준을 '복지규정'에 마련·시행할 것 (시정통보)**

다 예산 편성 · 집행/회계처리 관련

① 회계제도(수시분담금특별회계) 운용 부적정

□ 은행연합회는 「예산·회계규정」 제4조(회계의 구분)에 따라 1개의 일반사업회계와 **6개의 특별사업회계*** 예산으로 구분·편성

* 신용정보사업특별회계, 신용정보사업제재금특별회계, 수익사업특별회계, 세금우대특별회계, 고액현금거래특별회계, 수시분담금특별회계

○ 각 회계별 예산은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수, 사무실 면적** 등에 따른 비율에 의거 **편성·집행**

○ **공통지원부서의 예산**은 수행한 업무의 성격에 따라 **관련 회계 예산에서 집행**하거나 **성격이 모호한 경우에는 각 회계별 비율** 등으로 예산을 배분하여 집행

□ 그러나 **'수시분담금특별회계'***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반사업회계** 및 **신용정보사업특별회계**와 관련성이 있으나

○ 연결재무제표 작성 없이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사업별 성과 측정**이 곤란

* 회계연도 중 **예측이 곤란한 사업 추진** 필요성과 사업별로 **분담금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목별 편성 없이 통합으로 편성/집행/회계처리

<2014년도 은행연합회 통합예산서>

(단위 : 만원)

구분	일반	신용정보	수익	세금우대	고액현금거래	수시분담금	총 계
○ 자산취득비	6,047	7,365	353	476	59		14,300
○ 인건비	597,402	629,074	22,513	121,553	16,092		1,386,634
○ 경비	**475,629**	**445,945**	**429,339**	**86,226**	**10,022**	**196,284**	1,643,445
○ 사회공헌사업비	200,000	1,907	-	383	48		202,388
○ 전산업무비	26,764	331,206	2,519	185,042	36,457		581,988
○ 예비비	23,500	1,200	-	3,599	1,000		40,099
○ 합 계	1,329,342	1,427,497	454,724	397,279	63,679	196,284	3,868,804

⇒ '수시분담금특별회계'의 사업별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일반사업회계 및 신용정보사업특별회계와 연계하여 예산 편성 및 회계처리 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개선통보)

② 비품예산 집행의 부적정

□ **은행연합회**는「예산·회계규정」제8조 제3항 별표1에 따라 일반사업 및 신용정보사업 예산의 **자산취득비 항내에 비품 목**을 편성·집행

○ **세목별 편성 내역**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비품(업무용PC, 복사기, 레이저프린터 신규 구입 및 교체 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

▷ 〔**별표1**〕 **비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부적으로 **비품의 종류****를 명시

* 내용연수 1년 이상의 감가상각을 요하는 비품류 또는 별도로 정한 중요한 물품

** 컴퓨터 및 주변기기류, 기계류(사무기기), 가구류 등

□ 그러나 **'문화예술시장 조성 동참'** 및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예산서상 **비품 목**에 편성되지 않은 **'예술품(서화) 구입비'***를 지속적으로 집행

* 연도별 예술품 구입액 : '12년(1,700만원), '13년(4,180만원), '14년 4월 현재(2,139만원)

□ 또한, 예술품(서화) 구입과 같은 **공통사업**의 경우, 비용은 **각 회계별 종사자 등에 대한 비율**에 의거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13년의 경우, **집행 기준**(회계별 배분비율 : 약 일반(1)/신용(1)) **을 위반**하여 회계별 예산을 집행(집행비율 : 일반(1) / 신용(1.6)

<2013년 예산편성 중 공통사업예산 배분비율>

구분	일반	신용정보	세금우대	고액현금	수익	계
인원	0.4475	0.4441	0.0964	0.0120	0	1.0000
면적	0.1698	0.1895	0.0474	0.0048	0.5885	1.0000

⇒ 향후 예산은 목별·세목별 편성 내역에 맞게 집행하고, 회계별 집행 기준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 (기관주의)

③ 국외 출장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은행연합회는 **해외여행자**에 대해 **「여비규정」 제8조**(직원이외의 출장), **제22조**(여비의 지급), **제24조**(체재비)를 적용

○ **제8조 제1항**에서는 **임원 출장** 시 특히 필요한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에게는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해외출장 시 지급하는 **교통비**와 현지에서 활동비 보조를 지원하는 성격의 **체재비**(일당체재비, 월당체재비) 및 **해외교섭비***에 대해서 규정

* **(해외교섭비)** 기밀비나 업무 관련 도서자료의 구입비 등 기타 특수경비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에서는 **체재비**를 **기본체재비, 일당체재비, 월당체재비로 구분**하여 규정

□ 그러나 **제8조**는 임원이 배우자를 동반하는 데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이 없으므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 **제22조** 및 **제24조**에서는 **성격이 비슷한 '기본체재비', '일당체재비', '해외교섭비'를 중복하여 지급**

□ 나아가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외출장에 대한 관리 등이 부실**

< 여비규정에 따른 국외여비 지급 내역 >

(단위: USD)

구 분		임 원	1·2급	3·4급	5급이하
교통비(항공임기준)		실비(1등)	실비(2등)	실비(2등)	실비(2등)
일당체재비	출 장	290	260	230	200
	연 수	-	155	135	110
월당체재비(연수여행자)		-	1,000	1,000	1,000
기본체재비	1개월(30일)이내	600	500	400	300
	1개월(30일)초과	-	1,700	1,500	1,300
해외교섭비		100~600	* 해외교섭비 지출기준(1일당) - 회 장: 600, 부회장: 200 - 상 무: 100, 감 사: 200		

* 임원의 일당체재비는 숙박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

⇒ 향후, '여비규정'에 직원이외의 출장 요건 명확화, 임직원의 해외출장 시 같은 성격의 여비 중복 지급 금지,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의 작성·보고·관리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시행할 것 (시정통보)

④ 퇴직급여충당금부채 회계처리 부적정

□ 은행연합회의 회계업무에 대해 「**예산·회계규정**」 제1장 제2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과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

○ 또한, 은행연합회는 내부 퇴직금규정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금)에 관련된 **회계처리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를 대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할 필요

* (제21장 '종업원급여' 문단 21.8)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

□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매 보고기간(2011년~2013년) 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부채인 **퇴직급여충당부채**(퇴직급여충당금)를 모두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 계상**

< 퇴직급여 충당부채 과소계상 내역 >

(단위 : 원)

사업명	연도말	회사제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필요액	재무제표상 금액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금액
일반사업	2011	2,383,634,739	1,322,729,459	1,060,905,280
	2012	2,456,400,756	1,735,124,709	721,276,047
	2013	3,058,291,499	2,392,141,833	666,149,666
신용정보 사업	2011	2,523,484,261	1,749,340,788	774,143,473
	2012	2,628,996,464	980,833,479	1,648,162,985
	2013	3,043,268,135	1,063,364,383	1,979,903,752

⇒ **향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할 것 (시정통보)**

라 신용정보사업 관련

① 사망자정보 수집 및 제공 주기 단축 필요

□ 은행연합회는 집중 관리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강화하고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망자정보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공 받고 있음***

* (사망자정보의 수집횟수) '11년 · '12년(연1회), '13년(연2회), '14년(연4회 예정)

□ 또한,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은 은행연합회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사망자정보를 이용**하고 있고, **개인신용정보회사**(CB : Credit Bureau)는 **신청에 의해 처리된 사망자정보를 제공**받아 이용

□ 그러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DB에서 2014.4월말 기준으로 **"사망자 중 사망일 이후에 발생된 신용정보 등록 내역"**을 조회해 본 결과,

○ 사망자에게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대출 취급한 사례 등과 같이 **명의도용 또는 오류가 의심**되는 신용정보가 아래 표와 같이 **총 6.4만 명**(12.6만 건)**이 추출**

<사망자 관련 신용정보 등록 내역>

구 분	인 원 수	건 수
신용도판단정보*	46,182	89,452
공공정보	1,809	1,846
개인대출정보	25,917	32,019
채무보증정보	2,025	2,051
개설발급정보	345	345
계	**64,374****	**125,713**

* "해제 후 기록보존" 중인 건 제외, ** 중복을 제거한 순 인원수

※ 상기 통계자료에는 은행연합회가 사망자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2011.11월 이전 내역도 포함되어 있음

⇒ 사망자 명의도용 또는 오류의심 신용정보의 최소화를 위해서 실제 업무처리 절차를 최대한 효율화하고 수집주기를 현재의 분기별에서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시행 할 것 (권고통보)

② 신용정보제재금특별회계 적립금 활용방안 마련 필요

□ 은행연합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는 **신용정보의 정확도 제고** 및 **최신성 확보**를 위해 등록·해제의 **지연·누락**, **오등록** 및 **거짓등록**에 대해 신용정보 등록기관에게 **제재금**을 부과

□ 또한, 부과된 **제재금은 제재금특별회계로 별도 구분계리***되고 있으며, 적립된 제재금은 신용정보협의회 의결을 거쳐 **신용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확도 제고**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

* 제재(부담) 대상이 신용정보제공자로서 신용정보이용자가 제외되므로 2000년부터 기존 신용정보사업회계(제공·이용자 모두 포함)에서 제재금특별회계로 분리

<신용정보제재금 용도(신용정보제재금부과기준 제4조)>

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② 신용질서 확립을 위한 세미나·행사 개최
③ 신용정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④ 신용정보 교육, 교재발간 및 포상
⑤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확충
⑥ 신용정보의 제공·이용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구입 및 특별용역비
⑦ 기타 신용정보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 그러나 최근 신용정보 제재금은 **매년 1억 원 발생**하고 있으나, 적립금에 대한 적정한 활용 실적 없이(신용정보관리규약집 발간에만 사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3년 말 현재 적립금 잔액은 **17억 8,400만원** 수준

<연도별 신용정보 제재금 수입 및 적립액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분	'09	'10	'11	'12	'13
제재금 수입액	115	138	151	125	189
사용액	0	46	0	49	0
적립금잔액	1,100	1,229	1,420	1,547	1,784

* 적립잔액은 결산서 기준으로 운용이자 포함금액임

⇒ 적립된 제재금을 신용정보제재금 용도에 근거하여 신용정보 제공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시행 할 것 (권고통보)

마 IT업무 관련

① 전산실 보호대책 강화 필요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출·반입 통제**를 포함한 **전산자료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도록 규정

□ 또한 은행연합회 규정 「**물리적보안절차**」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외부방문자의 보안구역 출입** 시 중요 정보자산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트북, USB 확인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및 세금우대·비과세 정보를 집중·처리하는 **중요한 신용정보시스템**을 전문 전산센터가 아닌 **일반 사무용 건물에 설치·운용***

* **본관 13층에 위치한 전산부에 전산실을 배치**하여 출입통제구역 지정, 지문인식시스템 및 CCTV 설치를 통해 출입통제 및 모니터링을 실시

○ 감사기간('14.5.12.~5.27.) 중 전산실 보호대책을 점검한 결과 외부인이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통해 전산실이 위치한 13층까지 **검문검색, 출입통제 및 모니터링 없이 쉽게 접근이 가능**

○ 또한, 전산실에 **휴대용 정보통신 및 저장기기*** **반출·입이 용이**한 바, **전산자료 보호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폰, 노트북, USB메모리, 하드디스크 등

⇒ **휴대용 정보통신 및 저장기기의 소지여부를 검색·통제하는 장비 또는 시설의 도입·운용 등을 통해 전산실의 반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시정통보)**

② 정보처리시스템 정보보호 대책 수립·시행 필요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에 의하면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 등 중요 단말기에 대해서는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운용하도록 규정

* 업무 전용단말기 지정・사용, 인터넷 접속 금지, 메일 송・수신 금지, 그룹웨어 접속 금지 등

□ 그러나 은행연합회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용 단말기**(2대)를 **중요 단말기로 지정**하지 않고 사용

○ 내부업무용 단말기의 경우에는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및 사내메신저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외부메일 송·수신 기능을 허용**한 상태로 운영

□ 또한, 전산실내 오퍼레이터룸을 점검한 결과 신용정보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모니터용PC 8대의 **USB포트**가 차단되어 있지 않는 등 **보안 취약점이 존재**

□ 아울러 **정보처리시스템 단말기**(가상화PC)는 전자문서 미 암호화 저장, 스마트폰 저장매체 쓰기 미 차단 등 개인정보, 신용정보 등의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미흡**

○ **내부업무용PC**의 경우에도 **복합기를 통한 이메일 발송** 기능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등 **보안 취약점이 존재**

⇒ 정보처리시스템 단말기(가상화PC)에 대한 "강화된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시정통보)

바 기타 업무 관련

① 민원처리기간 산정 기준 부적정

□ 은행연합회의 「민원상담업무처리규정」 제10조에서는 **'민원처리기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

○ 동 규정 **제10조 제2항**에서는 **민원처리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휴일'과 관련된 항목으로는 '공휴일'**만을 명시

□ 그러나 은행연합회의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를 경우 **'토요일'**을 '공휴일'과는 별개의 휴일로 규정·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민원처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7일을 '7영업일'로 좁게 해석**하여 「민원상담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제3항에 나열되지 않은 **'토요일'**도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민원상담업무처리규정]	[복무규정]
제10조(민원처리기간) ② 문서민원 및 인터넷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2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공휴일**	제20조(휴일)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1. 토, 일요일** **2.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임시공휴일** 5. 임시휴무일

⇒ 민원처리기간 산정에 있어 토요일을 제외하는 근거를 「복무규정」 또는 「민원상담업무 처리규정」에 마련·시행 할 것 (권고통보)

2 분야별 지적내역 및 조치계획

□ 분야별 지적내역

지적분야	지적내용	처분내용
인사제도/성과상여금 (2)	■ 성과(특별)상여금제도 운영 부적정	개선통보
	■ 휴직제도 운영 부적정	시정통보
복리후생 (5)	■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 필요	시정통보
	■ 연차휴가보상제도 운영 부적정	시정통보
	■ 사원복지연금 지원 부적정	시정통보
	■ 시간외근무수당 산정기준 부적정	시정통보
	■ 휴가보조비 지급 방법 부적정	시정통보
예산편성·집행/회계처리 (4)	■ 수시분담금특별회계 운용 부적정	개선통보
	■ 비품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기관)
	■ 국외 출장 관련 규정 개정 필요	시정통보
	■ 퇴직급여충당금부채 회계처리 부적정	시정통보
신용정보사업 (2)	■ 사망자정보 수집 및 제공 주기 단축 필요	권고통보
	■ 신용정보제재금특별회계 적립금 활용방안 마련 필요	권고통보
IT 업무 (2)	■ 전산실 보호대책 강화 필요	시정통보
	■ 정보처리시스템 정보보호 대책 수립 · 시행 필요	시정통보
기타 업무 (1)	■ 민원처리기간 산정 기준 부적정	권고통보

□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2개월 이내에 적의 조치토록 요구

3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가. 문책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변상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개선통보, 권고통보 : **2개월 이내**에 조치 또는 조치계획 마련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금융위(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5. 2014년 9월 현재 은행권 수수료 개편 논의 진행 상황 및 경과보고

□ 수수료 등 가격변수는 **금융회사간의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적정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정부는 **시장 메커니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은행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수수료 안내 강화('14.6) 등 정보 제공 강화, 계좌이동제 도입 추진 등

□ 다만, 은행들의 수수료 **부과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합리**하게 부과되고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예시 : **중도상환수수료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은행연합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은행법학회, '13.6~) **진행중**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6. 최근 3년간(2012~2014년 9월) 정보공개 접수목록 사본 및 처리결과

□ 최근 3년간(2012~2014년 9월) 정보공개처리대장 : 별도제출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7. 최근 3년간 신용카드사별 과태료 부과현황

□ 과태료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건)

연도	신용카드사	부과일자	납기일자	수납일자	부과액
`12	삼성카드㈜	2012-08-22	2012-09-06	2012-09-06	4,800
	하나SK카드㈜	2012-08-22	2012-09-06	2012-09-06	4,800
`13	하나SK카드㈜	2013-11-13	2013-11-29	2013-11-29	4,000
`14	롯데카드(주)	2014-01-15	2014-02-03	2014-02-03	4,000
		2014-02-16	2014-03-09	2014-03-06	4,800
		2014-02-26	2014-05-02	2014-05-02	10,000
	(주)케이비국민카드	2014-02-05	2014-02-24	2014-02-24	4,000
		2014-02-16	2014-03-09	2014-03-05	4,800
	현대카드(주)	2014-02-05	2014-02-24	2014-02-24	8,000
	하나SK카드㈜	2014-02-05	2014-02-24	2014-02-24	8,000
	비씨카드(주)	2014-03-24	2014-04-22	2014-04-18	8,000
	신한카드(주)	2014-03-24	2014-04-22	2014-04-22	8,000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8.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9월) 해외겸용카드 발급 건수 및 수수료 지급 현황, 카드발급 후 해외 사용 실적이 없는 카드 수

□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이첩하여 직접 제출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9.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9월) 금융위가 해외국가(정부기관)와 체결한 MOU 체결현황 및 MOU 체결의 성과와 의미, 향후 추진 계획

□ (**MOU 현황**) 금융위는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9월), **해외 8개국·13개 기관**과 **금융감독협력**,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지원 등에 관한 MOU를 체결

< 최근 3년간 해외 금융당국과의 MOU 체결 현황 >

순번	국명	상대기관명	협정명	시기
1	베트남	M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2.3.29
2	태 국	OIC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2.6.11
		TSEC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2.6.11
3	우즈베키스탄	M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2.9.20
		CB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2.9.29
		MOF	KSP MOU	13.10.28
4	카자흐스탄	NBK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3.2.1
		MEDT	KSP MOU	13.2.1
5	영 국	FCA[주1)]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3.11.5
		PRA 및 영란은행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4.4.1
6	인도네시아	BI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2.6.6
			Letter of Understanding[주2)]	13.12.30
7	몰도바	중앙은행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4.1.15
8	인 도	중앙은행	Memorandum of Understanding	'14.6.9

주1) FSA와의 최초 MOU 체결('99.11.10) 후 FSA가 FCA와 PRA(영란은행 소속)로 분리됨에 따라 각각 별도 MOU 체결

주2) BI와의 기존 MOU('12.6.6)에 대한 개정 체결

□ (**MOU 체결의 의미**) 베트남 등 **신흥국과의 MOU 체결**은 금융정책 수립·감독에 관한 **정보교류, 고위급 회의 개최, 상호 역량강화 지원** 등을 골자로 하며,

○ 글로벌 **금융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및 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 수출**에 기여

* 인도네시아, 인도 등 일부 신흥국은 외국 금융회사의 자국진입 인가시 금융당국간 MOU 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

* '13.12월 인니 중앙은행과의 MOU를 통해 우리은행의 현지은행 인수 인가 취득, '14.7월 인도 중앙은행과의 MOU를 통해 신한·외환·기업은행 등의 지점설립 인가 취득

○ 또한, 영국 등 **선진국과의 MOU 체결**은, **금융당국간 정보교류를 위한 MOU 체결 등 금융안정위원회**(FSB) 합의사항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 불법·불공정 거래 관련 **감독정보 교류**에도 기여

□ (**향후계획**) 앞으로 금융위는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 해외 금융당국과의 **MOU 체결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이에 근거한 **구체적 협력 프로그램**도 **지속 강화**할 계획임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10.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9월)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금융위가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 또는 내부 검토보고서

□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금융위가 실시한 연구용역 보고서(주요 신흥국과의 전략적 금융협력 강화 방안)는 별첨과 같습니다.

- 별도제출 : 연구결과보고서
  - 주요 신흥국과의 전략적 금융협력 강화 방안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11. 최근 3년간(12년~14.9월) 금융위원회 민원현황 및 처리결과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 접수현황

(단위 : 건)

구 분	민원(진정 등)	법령질의, 제도개선 건의	합 계
2012년	2,376	1,060	3,436
2013년	4,155	776	4,931
2014.1월~9월	1,190	587	1,777

○ 처리결과

(단위 : 건)

구 분	처리완료	민원취하 등	합 계
2012년	3,071	365	3,436
2013년	4,484	447	4,931
2014.1월~9월	1,581	196	1,777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12. 최근 3년간 위원회별 개최현황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연도	회의개최 횟수	회의방식		상정 안건수
			참석	서면	
금융위	2012년도	36	29	7	458
	2013년도	28	25	3	459
	2014년도 (9월말까지)	21	18	3	296
증선위	2012년도	29	29	-	361
	2013년도	23	21	2	355
	2014년도 (9월말까지)	18	17	1	214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13.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9월) 금융위가 규제 개혁위원회에 심사요청한 규정 및 주요내용, 결과

□ 해당 없음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14.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9월) 금융위가 규제 개혁위원회에 심사요청한 규정 및 주요내용, 결과

□ [붙임] “2012년 이후 금융위 규개위 심사요청 건” 참고

<붙임 1>

2012년 이후 금융위가 규개위에 심사요청한 규정 등 현황

연번	연도	안건제목	주요내용
1	201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준수사항
2	201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신용협동조합의 여유자금 운용 등 5건
3	2012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금보험공사의 단독조사 대상 금융회사
4	20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농협 조합의 민원 전담창구 운영 고지 자회사 채무보증 요건 확인 위한 자료제출 의무 등 4건
5	20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내부통제 위험관리 등 10건
6	201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정하는 회사규모 설정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세부 자격요건 설정
7	201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8	201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동일기업 신용보증한도
9	201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대출모집인 신설 등 6건
10	201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 확보 등 4건
11	20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기준 설정 모집주선인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등 4건
12	201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부동산신탁회사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펀드판매사의 계열사펀드에 대한 차별적인 판매촉진행위 금지
13	20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익증권 발행신탁에 대한 규제 관리형신탁의 수익증권을 금융투자상품에 포함 등 3건
14	2012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대주주 직접 검사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제재 등 9건
15	20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모집·매출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투자매매업자 등의 환매조건부매매 제한 등 6건
16	2012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계좌부 등록, 기록사항 추가 초과분 발생 시 채권자의 발행인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 내용 구체화 등 4건
17	20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18	2012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중협박관련 금융거래등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의 예외적 금융거래허가
19	201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고시 등 개정안	신용카드 발급 및 모집관련 준수사항 신용카드 이용한도 제한 등 5건
20	2012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대손준비금 산정방식 변경 경영실태평가 운영방법 변경
21	201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조합원 등에 대한 보장한도 신용협동조합 리스크 관리
22	2012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이해관계인 부실책임조사 불응시 처벌 강화
23	201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공매도 보고기준 및 보고방법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24	20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시이율 산출체계 개선 등 변액보험 등의 제도 개선 등 11건
25	20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의무 기준금액 폐지 전신송금 시 송금인정보 제공근거 신설
26	201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개정안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등 5건
27	201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신용평가회사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내부통제

연번	연도	안건제목	주요내용
28	2012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 축소 등 집중투자한도 설정 내부통제기준 설정 및 점검 의무화 등 4건
29	2012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기초서류변경에 대한 신고
30	2012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설정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등
31	201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세분화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자본보전 완충자본 도입 등 3건
32	2012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커버드본드의 적격발행기관 커버드본드 기초자산집합의 구성 및 관리 등 6건
33	201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기업어음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34	201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ABCP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양도성예금증서(CD) 수익률 보고 의무화 등 3건
35	2013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비율 유지 신협관련 공제상품 목록 제출
36	201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사인의 제한 품질관리제도 개선 등 5건
37	2013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 , 고시 등 개정안	우회적인 여신·투자한도 회피 차단 업무준수사항 신설 등 11건
38	2013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 상한액 상향조정
39	201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계열회사 발행 증권의 인수관련 규제 정비 자산운용시 계열회사와 거래에 대한 기준 마련 등 5건
40	20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영업정지사유구체화 심사분석을위해요청할수있는자료범위확대
41	201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신용정보의 집중관리기관 변경
42	20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대부조건의 게시 및 광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43	201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조합이사장의 상근화 대형조합 등 상임이사 설치 조합기준 마련 등 3건
44	20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조치 의무화에 따른 책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처벌 등 3건
45	2013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정보처리 위탁계약에 대한 기준 설정
46	20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등 7건
47	201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장외거래의 청산의무에 관한 요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절차 등 4건
48	2013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신용카드 연회비 반환 기준 마련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강화 등 6건
49	20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ATS의 경쟁매매방식 거래에 대한 한도 설정 ATS 업무기준 등 18건
50	201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매출신고서면제요건구체화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평가업무 제한 등의 조치기준 등 4건
51	201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업무기준 등 부실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자문(일임)업자의 인가(등록) 취소 규제 회피 방지 등 6건
52	201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자산운용 제한 MMW(수시입출입 방식의 투자일임)의 자산운용 제한 등 3건
53	20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자율 등의 제한
54	2013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중협박(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제한 테러자금조달 관련 범죄화의 범위 확대 정밀금융제재대상자의 개인정보 요청

연번	연도	안건제목	주요내용
55	201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56	2013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홍보 제한 파생상품등의 신탁 편입시 투자권유 자격 제한 자전거래 규제
57	20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전신송금 기준금액 설정
58	201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상 주요의무 적용배제 이용자의 고의 중과실 범위 조정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전자금융기반 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 해킹 등 방지 대책 침해사고 대응 기관 지정 및 업무 범위
59	2013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보수 신설 및 신계약비 이연 한도 제한(계약체결비용 분급비중 확대) 방카슈랑스 및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 인하
60	201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기본과징금 산정방식 변경 재적발된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가중부과
61	2013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보험회사의 예보료 등 산정기준 조정 예금보험기금 출연금 납부기준 개선
62	2013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에 따른 과징금 조정비율 세분화 기초서류 위반기간 등에 따른 기간별 가중, 감경
63	2013	은행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과태료 부과 예금의 구속 금지
64	2014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할부금융업 취급한도 및 기준 마련 감사(위원)의직무활동보고서 제출의무화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구성·운영기준 마련
65	2014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출자금 환급시 조합 경영실적 반영 상임이사의 직무 명시
66	2014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은행의 리스크관리기준 설정 대기업 부도발생 보고
67	201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68	2014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보험감독규정 개정안	임원의 자격기준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69	2014	이종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안	적격발행기관의 요건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및 평가
70	2014	이종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업무 감독규정 제정안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중요사항 발생시 보고사항
71	20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의무화
72	201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저축가입대상 농어민의 범위 조정 저축가입 제한요건
73	2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적정성의 원칙 적용 확대 투자성있는 보험계약의 부당권유 금지
74	201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지명감사인 선임요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대상 확대
75	2014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기초서류변경에 대한 신고
76	201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기준
77	2014	은행법 개정안	정관변경 및 자본금 감소의 신고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78	2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과태료부과체계 개선

연번	연도	안건제목	주요내용
79	2014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차별행위 금지 및 상품제공금리 공시
80	2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고시 등 개정안	퇴직연금 신탁의 자사예금 및 자사 발행증권 편입에 대하여 별도규율 적용
81	20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특례 집합투자재산의 자산운용한도 제한

신동우 의원(새누리당)

15. 최근3년간(2012~2014.8월) 공적자금 연도별, 대상별 지원 및 회수현황 및 회수계획

< 최근3년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 현황 >

1 공적자금 I

○ '12년부터 '14.8월말까지 **금융권**에 추가로 **지원**된 **공적자금 I** 은 **총 87억원**이며, 회수금액은 **4조 8,518억원**임

* '14.8월말 총지원액은 168.7조원, 총회수액은 107.5조원임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12년 ~ '14.8월말, 단위 : 억원)

구분	지원액	회수액
2012	87	27,108
2013	0	16,339
2014.8월	0	5,071
합 계	**87**	**48,518**

대상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12년 ~ '14.8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액	회수액
은 행		94	22,119
제2금융권	증권·투신		11,500
	보 험	1	5,317
	종 금	△6	7,697
	저축은행		1,085
	신 협		114
	소 계		25,713
기 타		△1	687
합 계		**87**	**48,518**

* 지원액 감소는 사후정산조건부로 인수한 부실채권의 정산 감액분임

2 공적자금Ⅱ

○ '12년부터 '14.8월말까지 추가로 지원된 공적자금Ⅱ는 총 △320억원이며, 회수금액은 3조 8,007억원임

* '14.8월말 총지원액은 6.2조원, 총회수액은 5.4조원임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12년 ~ '14.8월말, 단위 : 억원)

구분	지원액	회수액
2012	△122	22,205
2013	△164	8,660
2014.8월	△34	7,142
합 계	**△320**	**38,007**

* 지원액 감소는 사후정산조건부로 인수한 부실채권의 정산 감액분임

대상별 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현황

('12년 ~ '14.8월말, 단위 : 억원)

구 분		지원액	회수액
은 행			4,383
제2금융권	증권·투신		305
	저축은행	△320	29,216
	캐피탈		411
	소 계		29,932
비금융권	해운사		3,585
	건설사		107
	소 계		3,692
합 계		**△320**	**38,007**

< 향후 회수계획 >

1 공적자금 I (주요 보유 주식 매각 진행 현황)

('14.8월말 기준, 단위 : 천주, 억원)

기관	기업명	보유 주식수	지분율	상장 여부	매각계획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MOU)	385,286	56.97%	상장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13.6.26. 공자위 의결)에 따라 분리매각 추진중
	경남은행	44,678	56.97%	상장	주식매매계약 체결('14.6.30) '14.10월중 매매대금 수령 예정
	광주은행	29,236	56.97%	상장	주식매매계약 체결('14.6.13) '14.10월중 매매대금 수령 예정
	한화생명	214,962	24.75%	상장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블록세일 등 실행 예정
	수협(MOU)	115,810	-	-	(우선출자증권)
	서울보증보험 (MOU)	32,764	93.85%	비상장	보증시장개방 등을 고려하여 매각방안 마련 예정
㈜케이알앤씨	한국자금중개	621	31.03%	비상장	구체적인 매각 방안 검토 후 매각 추진
공적자금상환기금	대우조선해양	23,256	12.15%	상장	주가 등 매각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 매각방안 마련 예정

2 공적자금 II (주요 자산 매각 진행 현황)

('14.8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기관	구분	보유 매입액	회수 계획
자산관리공사	PF채권	8,376	저축은행과 사후정산을 통해 정리 추진
	혼합형채권 (JV-SPC)	389	'14.12월까지 유동화자산 정리를 통해 유동화사채 회수 추진
	미분양펀드 출자금	-	'12.7월 전액 회수 완료

<참 고> 공적자금 Ⅰ, Ⅱ

□ **(공적자금Ⅰ)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조성**

○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 마련

□ **(공적자금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구조조정기금을 설치

○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

※ 2009년 조성된 공적자금은 기존 공적자금과 목적, 성격 등이 달라 운용 실적 관리 등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Ⅰ**', **신규 조성**된 공적자금을 '**공적자금Ⅱ**'로 구분하여 관리

공적자금 Ⅰ, Ⅱ 개요

구 분	공적자금 Ⅰ	공적자금 Ⅱ
조성시기	1997년~2002년	2009년~2010년
재 원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예금보험공사) 2) 부실채권정리기금(자산관리공사) 3) 공공자금관리기금(정부)* 4) 국유재산* 5)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출자금* 6) 공공차관(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아래의 재원으로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 1)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

* '02년 공적자금상환대책 당시 별도 상환대책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분류된 공적자금
** 금융안정기금은 법상 공적자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 운용되고 있지는 않음

유 의 동 의원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1. 최근 3년간 내부감사 결과보고서

□ 최근 3년간('12~'14) 실시한 자체감사(산하기관포함)는 총 11건

감 사 명	감사 기간	감사결과
한국금융연구원 종합감사	'12.05.30 ~ 06.08	별도제출
여신금융협회 종합감사	'12.09.06 ~ 09.14	
금융보안연구원 종합감사	'12.10.29 ~ 11.06	
한국공인회계사회 특정감사	'13.02.20 ~ 02.21	
자본시장연구원 종합감사	'13.05.23 ~ 06.07	
보험연구원 종합감사	'13.07.15 ~ 07.23	
금융연수원 종합감사	'13.09.24 ~ 09.30	
금융결제원 종합감사	'13.11.05 ~ 11.18	
금융결제원 특정감사	'14.02.04 ~ 02.21	
코스닥협회 종합감사	'14.02.18 ~ 02.28	
2013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13.12.04 ~ 12.10	

* 2012년 자체회계 및 기관운영 감사는 해당연도 감사원 정기감사에 따라 미실시
* 2013년 자체감사 시 **'12. 1. ~ '13. 10.** 기간에 대한 감사 실시
* 2014년 자체감사는 12월 중 실시예정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2. 최근 3년간 감사원 등 외부감사 결과 보고서

□ 최근 3년간('12~'14) 감사원 감사결과는 총 12건

감 사 명	감사 기간	처분요구 및 집행전말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12.01.09 ~ 02.28	별도제출
금융위원회 재무감사('11년 회계연도)	'12.03.05 ~ 03.16	
중소기업 금융지원실태	'12.04.04 ~ 06.08	
금융공기업 경영관리실태	'12.08.16 ~ 10.12	
우리금융지주 및 자회사 경영관리실태	'12.11.19 ~ 12.14	
금융위원회 재무감사('12년 회계연도)	'13.03.18 ~ 03.29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실태	'13.03.04 ~ 04.19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감독실태	'13.05.30 ~ 06.28	
금융권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 관리 감독실태	'13.11.06 ~ 12.13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14.03.10 ~ 03.21	
기업어음,회사채등 시장성 차입금 관리감독 실태	'14.01.20 ~ 03.06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검사감독 실태	'14.03.12 ~ 04.11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3. 최근 3년간 징계 및 징계의결 요구 현황(사법처리, 내부징계 구분 요망 / 징계 사유 포함)

□ 징계현황(2012년 이후)

성 명	직급	징계일	징계사유	비고
○○○	서기관	‘13.02.08	금품수수	사법처리 및 중앙징계위 징계
○○○	서기관	‘14.02.20	음주운전	사법처리 및 중앙징계위 징계
○○○	서기관	‘14.09.05	금품수수	중앙징계위 징계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4. 최근 3년간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이 原告 또는 피고인 소송현황

※ 피고로 소를 제기당한 현황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 없음)

□ **최근 3년간 당해 기관 및 기관 직원이 피고인 소송현황** : 붙임 엑셀 자료 참조

<별첨>

소송현황 (진행사건, 행정소송은 접수일 기준)

소 구분	원고 (소송 상대)	피고 (금융위 또는 대한민국)	사건명	세부내용	소 제기일	1심 결과	1심 종국일	2심 결과	2심 종국일	3심 결과
국가	김** 외 9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11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김** 외 9명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출자 주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1-07-15	진행중				
국가	이**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11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이**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출자 주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1-08-11	진행중				
국가	김** 외 23명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외 9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김** 외 23명은 파산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1-06-07	승소	2013-11-08	진행중		
국가	강** 외 18명	신** 외 8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강** 외 18명은 파산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1-07-13	승소	2013-11-08	진행중		
국가	강** 외 140명	신** 외 11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강**외 140명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출자 주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1-08-24	승소	2014-05-16	진행중		
국가	고** 외 11명	신** 외 12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고** 외 11명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출자 주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2-01-11	승소	2014-04-25	진행중		
국가	강** 외 123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19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강** 외 123명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출자 주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1-06-13	승소	2014-02-14	진행중		
국가	강** 외 73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19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강** 외 90명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출자 주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1-06-13	승소	2014-02-14	진행중		
국가	강** 외 93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19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강** 외 93명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출자 주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1-08-10	승소	2014-02-14	진행중		
국가	강** 외 192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19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강** 외 192명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출자 주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1-08-16	승소	2014-02-14	진행중		
국가	진**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15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진**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출자 주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1-10-11	승소	2014-02-14	진행중		
국가	진**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12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진**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출자 주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1-10-11	승소	2014-02-14	진행중		
국가	강** 외 31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19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강** 외 31명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출자 주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2-01-20	승소	2014-02-14	진행중		
국가	강** 외 26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19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강** 외 26명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출자 주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2-01-20	승소	2014-02-14	진행중		
국가	이** 외 9명	김* 외 7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대한민국은 ① 금융감독원의 적정적 운영 여력없 ②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등에 대한 원시검증 역할 방치 ③ 감사원의 회계검증 적발 사실 등을 알은 입증이 없음	2012-02-03	진행중				
국가	강** 외 38명	박** 외 16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등은별 등의 주 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2-05-25	승소	2014-02-14	진행중		
국가	김** 외 12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16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등의 주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2-05-25	승소	2014-02-14	진행중		
국가	전** 외 5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외 3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 저축은행 후순위채 매입자	2012-06-05	진행중				
국가	조**	대한민국 외 15명 (**저축은행)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매입자	2012-10-22	진행중				
국가	안** 외 16명	금융감독원 외 8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redacted]	2014-02-17	진행중				
국가	김** 외 195명	대한민국 외 17명 (**저축은행)	손해배상(기)	대한민국 ㅇ ***대주주로부터 실제 조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ㅇ ***대부업법 실제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4-02-14	진행중				
국가	박** 외 8명	대한민국 외 7명 (***저축은행)	손해배상(기)	[redacted]	2014-02-18	진행중				
국가	양** 외 17명	대한민국 외 17명 (**저축은행)	손해배상(기)	대한민국 ㅇ ***대주주로부터 실제 조순위 채권 실제 매입자로서 ㅇ ***대부업법 실제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4-03-17	진행중				
국가	강** 외 125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3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매입자	2012-06-29	진행중				
국가	강** 외 117명	**회계법인 외 2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최**은 ***저축은행 출자 주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회계법인은 상시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단독 및 합동조사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3-01-25	진행중				
국가	김** 외 2명	금융감독원 외 1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대한민국 ㅇ***저축은행 실제 조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상시 및 정기조사를 게을리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수사관 ㅇ 박정서 조사단서 손해배상판결 제기	2014-02-03	진행중				
국가	강** 외 42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3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 은행 등의 주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의 및 금융감독원등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2-06-11	진행중				
국가	경** 외 40명	**회계법인 외 2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대한민국 ㅇ***대주주로부터 실제 조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ㅇ***회계법인의 상시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3-01-25	진행중				
국가	강** 외 189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3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매입자	2012-08-20	진행중				
국가	김** 외 41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3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매입자	2012-12-13	진행중				
국가	강** 외 66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3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저축은행 후순위채 매입자	2012-12-13	진행중				
국가	강** 외 78명	**회계법인 외 2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대한민국 ㅇ***대주주로부터 실제 조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ㅇ***회계법인의 상시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3-09-05	진행중				
국가	강** 외 19명	대한민국 외 2명 (***저축은행 관련)	손해배상(기)	원고들은 ***대주주로부터 실제 조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대부업법의 상시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2013-09-05	진행중				
국가	김** 외 133명	대한민국 외 2명 (***저축은행 관련)	손해배상(기)	[redacted]	2012-05-24	진행중				

국가	정**	**회계법인 외 2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 매입자	2012-05-27	진행중				
국가	강** 외 54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외 3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 매입자	2012-06-29	진행중				
국가	고** 외 105명	대한민국 외 3명 (***저축은행 관련)	손해배상(기)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 매입자	2012-06-11	진행중				
국가	이**	대한민국 외 2명 (***저축은행 관련)	손해배상(기)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 매입자	2012-10-31	진행중				
국가	강** 외 242명	대한민국 외 3명 (***저축은행 관련)	손해배상(기)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 매입자	2012-11-08	진행중				
국가	김** 외 2명	대한민국 외 2명 (***저축은행 관련)	손해배상(기)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 매입자	2012-11-14	승소	2014-06-27	진행중		
국가	권** 외 20명	주식회사 ***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외 3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 매입자	2012-12-11	진행중				
국가	사회복지법인 *** *** 복지재단 외 1명	대한민국 외 2명 (***저축은행 관련)	손해배상(기)	증권중 ***대표이사의 주요위 개정 계업과에서 ***대계인간이 상사회크이한 위하여 기재하고, 증권위원회 및 증권업협회은 상사 및 국사조하후 개한의 위하 손해가 날생되지고 아판하지 소 제기	2013-02-06	진행중				
국가	강** 외 120명	**저축은행 주식회사 외 3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증권중 ***대표이사의 주요위 개정 계업과에서 ***대계인간이 상사회크이한 위하여 기재하고, 증권위원회 및 증권업협회은 상사 및 국사조하후 개한의 위하 손해가 날생되지고 아판하지 소 제기	2013-02-28	진행중				
국가	김** 외 29명	**저축은행 주식회사 외 4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증권중 ***대표이사의 주요위 개정 계업과에서 ***대계인간이 상사회크이한 위하여 기재하고, 증권위원회 및 증권업협회은 상사 및 국사조하후 개한의 위하 손해가 날생되지고 아판하지 소 제기	2013-02-28	진행중				
국가	강** 외 111명	**저축은행 주식회사 외 4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증권중 ***대표이사의 주요위 개정 계업과에서 ***대계인간이 상사회크이한 위하여 기재하고, 증권위원회 및 증권업협회은 상사 및 국사조하후 개한의 위하 손해가 날생되지고 아판하지 소 제기	2013-02-28	진행중				
국가	김** 외 30명	대한민국 외 3명 (**저축은행 관련)	손해배상(기)	증권중 ***대표이사의 주요위 개정 계업과에서 ***대계인간이 상사회크이한 위하여 기재하고, 증권위원회 및 증권업협회은 상사 및 국사조하후 개한의 위하 손해가 날생되지고 아판하지 소 제기	2013-09-05	진행중				
국가	김** 외 27명	대한민국 외 2명 (**저축은행 관련)	손해배상(기)	증권중 ***대표이사의 주요위 개정 계업과에서 ***대계인간이 상사회크이한 위하여 기재하고, 증권위원회 및 증권업협회은 상사 및 국사조하후 개한의 위하 손해가 날생되지고 아판하지 소 제기	2013-09-05	진행중				
국가	김** 외 42명	대한민국 외 4명 (**저축은행 관련)	손해배상(기)	증권중 ***대표이사의 주요위 개정 계업과에서 ~ 및 ***대계인간이 상사회크이한 위하여 기재하고, 증권위원회 및 증권업협회은 상사 및 국사조하후 개한의 위하 손해가 날생되지고 아판하지 소 제기	2013-07-17	진행중				
국가	강** 외 53명	대한민국 외 4명 (**저축은행 관련)	손해배상(기)	증권중 ***대표이사의 주요위 개정 계업과에서 ~ 및 ***대계인간이 상사회크이한 위하여 기재하고, 증권위원회 및 증권업협회은 상사 및 국사조하후 개한의 위하 손해가 날생되지고 아판하지 소 제기	2013-07-17	진행중				
국가	권** 외 44명	대한민국 외 3명 (**저축은행 관련)	손해배상(기)	증권중 ***대표이사의 주요위 개정 계업과에서 ~ 및 ***대계인간이 상사회크이한 위하여 기재하고, 증권위원회 및 증권업협회은 상사 및 국사조하후 개한의 위하 손해가 날생되지고 아판하지 소 제기	2013-09-30	진행중				
국가	강** 외 56명	**회계법인 외 3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증권중 ***대표이사의 주요위 개정 계업과에서 ~ 및 ***대계인간이 상사회크이한 위하여 기재하고, 증권위원회 및 증권업협회은 상사 및 국사조하후 개한의 위하 손해가 날생되지고 아판하지 소 제기	2013-09-30	진행중				

국가	강** 외 115명	**저축은행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외 4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illegible]	2013-10-08	진행중				
국가	강** 외 63명	**회계법인 외 2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illegible]	2013-10-25	진행중				
국가	강** 외 67명	**회계법인 외 2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illegible]	2013-10-25	진행중				
국가	김**	예금보험공사 외 2명(대한민국)	보험금	[illegible]	2014-01-10	진행중				
국가	구** 외 92명	주식회사 **은행 외 9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2012-11-29	진행중				
국가	고** 외 97명	주식회사 **은행 외 9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2012-11-21	진행중				
국가	김** 외 75명	**은행 주식회사 외 14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2012-12-06	진행중				
국가	권** 외 23명	주식회사 **은행 외 11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보이스피싱 피해자	2012-12-06	진행중				
국가	김*	대한민국 외 4명	손해배상 등	[illegible]	2013-04-03	진행중				
국가	조** 외 15명	대한민국 외 4명	손해배상	[illegible]	2013-09-26	진행중				
국가	원** 외 5명	**증권 주식회사 외 1명(대한민국)	손해배상	[illegible]	2013-11-15	진행중				
국가	강** 외 55명	**증권 주식회사 외 6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illegible]	2014-01-21	진행중				
국가	강** 외 114명	**증권 주식회사 외 6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illegible]	2014-01-21	진행중				
국가	강** 외 329명	**증권 주식회사 외 6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illegible]	2014-01-29	진행중				
국가	가** 외 86명	**증권 주식회사 외 6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illegible]	2014-02-11	진행중				
국가	강** 외 185명	**증권 주식회사 외 6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illegible]	2014-01-24	진행중				
국가	김** 외 1명	**카드 외 2명(대한민국)	손해배상(기)	[illegible]	2014-02-06	진행중				
행정	㈜****	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이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으로 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을 받자 증선위를 상대로 소제기	2010-10-27	패소	2011-06-01	승소	2012-05-10	진행중
행정	**생명보험 주식회사	금융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illegible]	2011-11-04	일부패소	2013-01-25	승소	2013-10-18	진행중
행정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금융위원회 외 1명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illegible]	2011-11-11	승소	2013-04-19	승소	2013-12-05	진행중
행정	박** 외 1명	금융위원회	징계처분취소	공인회계사인 원고들이 ㈜***의 외부감사업무 수행 중 에스크로 계약에 대한 선급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소 제기	2012-02-14	패소	2013-01-11	진행중		
행정	주식회사 ******	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선급금 허위 계상으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자 선급금의 원인인 에스크로 계약의 실제 존재 여부 [illegible]	2012-06-14	승소	2013-11-07	진행중		
행정	정** 외 1명 (중국**** 유한공사)	증권선물위원회 외 1명 (금융위)	과징금부과처분취소	[illegible]	2012-07-09	승소	2013-08-23	승소	2014-05-29	진행중
행정	**증권 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illegible]	2012-07-11	진행중				
행정	이**	금융위원회	제재처분취소	[illegible]	2012-07-16	승소	2013-05-23	승소	2014-06-11	진행중
행정	주식회사 ******	증권선물위원회	시정명령처분취소	선수금 과소계상, 소액공모 형약관유서류 거짓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증권발행제한 등 조치를 받자 소 제기	2012-09-27	일부패소	2013-03-29	승소	2013-12-11	진행중
행정	**회계법인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처리사업무정지등조치에대상공동기준주가적합처분취소	㈜***** 감사업무 수행 중 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존재한 선급금에 대한 거래처 확인 등의 소홀로 회계감사 업무정지처분 등의 처분받자 소 제기	2012-12-24	승소	2013-10-22	진행중		
행정	****** 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	회계감리결과 제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증선위는 원고 회사가 우회매출을 통해 매출을 과대 계상하였으므로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원고 회사에 조사 및 감리 결과 조치를 통보. 이에 대해 원고 회사는 정상적인 당사자로서 거래를 하고 정상적인 회계	2013-02-08	승소	2013-10-10	진행중		
행정	주식회사 ***** 외 2명	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던 원고들이 상장법인 등의 신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니 원고들은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2013-01-28	승소	2013-11-15	진행중		
행정	주식회사 ****	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가 최대주주의 지분률을 허위 기재하는 등 상장법인 등의 신고 및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니 원고는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2013-01-29	진행중				
행정	**증권 주식회사	증권선물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증권이 주식회사 ***의 유상증자에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업으로 참여하면서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니 원고는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의 일	2013-01-31	승소	2013-07-26	승소	2014-03-20	진행중
행정	**회계법인 외 1명	증권선물위원회	감리결과조치내용처분취소	선급금 허위 계상으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자 선급금의 원인인 에스크로 계약이 실제 존재하여 회계처리시 감사인 자문 등을 통한 것으로 허위계상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2012.5.1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03-13	진행중				
행정	**회계법인 외 2명	증권선물위원회	회계감리결과조치 취소 청구	심형인(합고)들은 ㈜*******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증선위가 1년간 감사업무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함. 이에 원고들은 처분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	2013-04-25	진행중				
행정	**전자 주식회사	금융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는 ㈜****와 사업적 제휴관계인데 금융위원회는 원고의 최대주주 ***이 ㈜***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원고가 제출한 반기보고서의 중요사항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기재하였다고 지분시	2013-05-02	진행중				
행정	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업무정지처분취소	공인회계사인 원고가 *****건설㈜의 및 *****건설㈜의 2009년 재무제표 감사업무 수행 중 실질적인 감사절차를 미실시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공인회계사 직무정지 처분을 받자 집행정지 신청하고 소 제기함	2013-04-26	패소	2013-10-24	진행중		
행정	주식회사 ****저축은행	금융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는 2011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및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등으로 경영개선명령 처분 등 사전통지를 받아서 유상증자 및 부동여신 회수 등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하여 최	2013-06-13	승소	2014-02-28	진행중		

행정	주식회사 *****투자증권	금융위원회 외 1명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는 *****빌딩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이고 주식회사 ***는 이 빌딩의 소유자이고 임차인인데, 원고는 ***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임대료 및 관리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정환에 올 것을 요청받고 ****에게 수기로 지급채는 임대차보	2013-07-15	승소	2014-05-30	진행중		
행정	양**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계감리결과조치 취소 청구	신청인(원고)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등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 했으므로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중	2013-08-26	진행중				
행정	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계감리결과조치 취소 청구	신청인(원고)는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등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 했으므로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중	2013-08-26	진행중				
행정	정**	금융위원회 외 1명(금감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가 금융위원회 외 1인에게 *** 및 *** 저축은행 회계감사 관련 정보의 공개청구를 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를 하자 정보공개 거부한 부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소 제기	2013-08-30	일부승소	2014-02-13	진행중		
행정	주식회사 ***** 외 1명	금융위원회	등록취소처분취소	피고는 보험대리점인 원고가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에 보험모집을 위탁하고 모집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업법 제99조 위반을 근거로 보험대리점인 *****에 대하여는 등록취소처분을, 대표이사 ***에 대	2013-11-15	진행중				
행정	고**	금융위원회	징계처분무효확인등	공인회계사인 원고가 ****㈜에 대한 감사소홀을 이유로 금감원의 감사업무 제한 조치사항등지서를 받았는데도 ㈜**** 감사업무에 참여하여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피고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자 집행정지 신청하고 소 제기	2013-12-20	진행중				
행정	**증권 주식회사	금융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증권이 ********의 증권예탁증권 상장에 대표주관회사 겸 인수인으로 참여하면서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부실기재 발생을 방지하지 못 하였다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	2013-12-03	진행중				
행정	**투자증권 주식회사	금융위원회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원고는 ********의 증권예탁증권 상장에 공동주관회사로 참여하면서 **증권의 실사에 의존하여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 기재누락 등을 방지하지 못 하였다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 이	2013-12-30	진행중				
행정	최*	금융위원회	정직요구조치처분취소	**투자증권에 재직 중인 원고는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혐의로 금융위로부터 정직 4월 요구조치 처분을 받았음.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의 영업이익 관련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에	2014-04-29	진행중				
행정	김**	증권선물위원회	정직(제재)처분취소	**투자증권에 재직 중인 원고는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위반혐의로 금융위로부터 정직 7월 요구조치 처분을 받았음.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이 있고, *******의 영업이익 관련 정보는 미공개중요정보에	2014-06-02	진행중				
행정	박**	금융위원회	감봉처분취소	**은행에 재직 중인 피신청인은 명의인(***)의 요구나 동의 없이 증장의 잔고를 타인(이**)에게 알려줘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감봉 4개월 명령 처분을 받았음. 이에 신청인은 이**은 그 동안 잘***의 위임장, 인감증	2014-06-16	진행중				
행정	조**	금융위원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증권의 직원인 원고는 자본시장법 제63조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매매제한을 위반하여 피고로부터 과태료 25백만원 부과받았음.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공범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	2014-06-18	진행중				

소송현황 (종결사건, 종결일 기준)

소 구분	원고 (소송 상대)	피고 (금융위 또는 대리인)	최종 결과	종결일	사건명	세부내용	소 제기일	1심 결과	1심 종결일	2심 결과	2심 종결일	3심 결과	3심 종결일	환송심 결과	환송심 종결일
행정	허** 외 1명	금융위원회	각하	2012-04-03	부작위위법확인	[illegible]	2011-09-02	승소	2012-01-13	항소취하	2012-04-03				
행정	백**	금융위원회	승소	2012-04-05	공인회계사직무정지2년부과처분취소	공***회계법인***에서3년이상에서***에서 직무정지2년이상 부과처분을 받아 이에 불복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소 제기	2011-11-08	승소	2012-04-05						
행정	공** 외 2명	금융위원회 외 1명	승소	2012-04-06	감사보고서에대한감리결과조치처분 취소	공** 외 2명이 ㈜**의 재무제표 부실감사로 증선위로부터 직무정지 2년 등의 제재를 받자 금융위 위원장을 상대로 소 제기	2010-03-29	승소	2011-06-03	승소	2012-04-05				
행정	****㈜	금융위원회	승소	2012-04-20	대주주 변경승인 조치통보 취소	*****㈜가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자산운용㈜ 주식 44만주를 추가 취득한 데 대해 금융위가 과징금을 폐한하자 소 제기	2009-09-17	승소	2010-01-14	승소	2011-11-15	상고취하	2012-04-30		
행정	**회계법인 외 3명	증권신물위원회	승소	2012-05-03	감리결과조치통보처분 취소	**회계법인 외 3명이 ㈜*****의 재무제표 부실감사로 증선위로부터 감사업무제한 직무정지 2년 등의 제재를 받자 증선위를 상대로 소 제기	2010-06-18	승소	2011-08-18	승소	2012-05-03				
국가	이**	대한민국 외 1명	승소	2012-05-09	손해배상(기)	금융위원회에서 인증서발급 및 전자서명 소프트웨어 등 공동인증에 필요한 제품 중소 사업성과 평가에 따른 중소 사업성과 제품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 제기	2011-04-12	승소	2011-08-26	승소	2012-01-25	승소	2012-05-09		
국가	**** 주식회사 외 1명	대한민국	소취하	2012-05-24	손해배상(기)	금융위원회가 원고 ****이사회로부터 개최의 사전통보없이도 긴급하게 열고 금융감독원에 현장 검사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 제기	2011-03-24	소취하	2012-05-24						
행정	****은행 우리사주 외 4명	금융위원회	승소	2012-06-14	주식취득승인처분무효확인등	[illegible]	2011-11-25	승소	2012-06-14						
국가	주식회사 ***	**은행 주식회사 외 1명	소취하	2012-07-11	손해배상(기)	가. 이번 소송의 원고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 중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원고 주장과 같은 기재 잘못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재내용이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기재내용이 원고 주장과 같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고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믿고 이 사건 증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가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가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가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행정	유*	금융위원회	승소	2013-10-11	영업정지처분취소	[illegible]	2013-02-27	승소	2013-10-11						
행정	주식회사 ***	증권선물위원회	승소	2013-10-24	조사·감리결과조치등취소	[illegible]	2012-06-27	승소	2013-01-29	승소	2013-10-24				
행정	주식회사 ***저축은행	금융위원회	항소취하	2013-11-20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청구의 소	금융감독원은 원고에 대한 검사 결과 6건의 대출이 대주주 신용공여 또는 부당취득이라는 전제 하에 BIS 비율이 -12.3%이고 부채가 자산을 5조9억원 초과하므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음. 하지만 원고는 문제가 된 7건의 대출은 대주주 신	2013-06-17	승소	2013-09-13	항소 취하	2013-11-20			
행정	남**	감사원장 외 2명	소송종료선언	2013-11-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음향입찰을 내역 등 포청사기와 관련한 입증자료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허청피 포유 관리 정보가 아님을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자 소개기	2011-09-27	소송종료선언	2013-11-22						
행정	주식회사 유니언인슈 외 1명	금융위원회 [전자]	일부승소	2013-11-29	집행정지		2013-11-15	일부승소	2013-11-29						
행정	******* 주식회사 외 2명	증권선물위원회	항소장 각하	2013-12-04	체제처분등취소	[illegible]	2012-12-20	승소	2013-09-27	항소장 각하	2013-12-04				
행정	김** 외 1명	한국인터넷진흥원 외 2명	소취하	2013-12-1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망 박***은 피고 금융위원회에게 금융****법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일부분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거부처분의 사유로 명시한 정보공개법 조항 등은 적합하지 않고 위법이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2013-07-04	소취하	2013-12-18					
행정	고한용	금융위원회 [전자]	폐소	2014-01-13	집행정지		2013-12-20	폐소	2014-01-13						
행정	**회계법인 외 2명	증권선물위원회	승소	2014-01-14	회계감리결과조치 취소 청구	원고들은 라*******에 대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부감사법 및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며 중선위가 감리결과 처분을 함. 이에 원고들은 회계감사의 전문가적 책임을 다했다고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 제기	2013-02-08	승소	2014-01-14					
행정	주식회사 ******	금융위원회	소취하	2014-01-22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와 오상인 구 라*******장 간 이혜미사가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등으로 인하여영업에서 회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고, 복수를 할아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받음. 하지만 원고는 투자자운업 및 투자일임업은 정업상 영도인체	2013-09-16	소 취하	2014-01-22					
국가	이**	대한민국 외 2명	소취하	2014-03-27	손해배상(기)	이**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 [illegible]	2012-06-28	소취하	2014-03-27						
행정	**회계법인	증권선물위원회	승소	2014-04-24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라******* 제147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태스키 포함명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받자 소개기	2012-08-01	승소	2013-06-13	승소	2013-11-20	승소	2014-04-24		
행정	최훈	금융위원회 [전자]	승소	2014-05-19	집행정지		2014-04-29	승소	2014-05-19						
행정	오**	금융위원회	소취하	2014-06-03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원고는 ******보험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서 업무정지 61일 처분을 받았음. 하지만 이는 회사에서 교육 받은 그대로 고객에게 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소 제기	2014-05-28	소취하	2014-06-03					
행정	**회계법인 외 3명	증권선물위원회	승소	2014-06-12	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	라******감사업무 수임 등 제재 및 회사기관경고 처분 관련 적법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유없다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이 선고된 사례	2011-12-21	승소	2012-11-06	승소	2013-09-12	승소	2014-06-12		
행정	**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23	금융위원회	소 취하	2014-07-03	부실금융기관결정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신청인들(합고3)은 **투자증권㈜ 그 대표이사, 사내이사, 주주로서 금감원의 **투자영업의 업무위탁회사 적정 주주 요건에 대한 약 417억원의 이행제재를 손실로 본 평가결과에 대한 금융위가 **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한, 하	2014-06-09	소 취하	2014-07-03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 최근 3년간 발주한 연구용역 목록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최근 3년간(2011~2014.7월 현재) 연구용역 목록

붙임1 2011년~2014년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

□ 2011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담당부서
1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	11.01.27~ 11.06.02	금융연구원 (이명활)	40	금융정책과
2	금감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11.04.06~ 11.05.30	금융연구원 (이병윤)	20	산업금융과
3	회계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11.05.02~ 11.06.30	한국회계학회 (이창우)	30	공정시장과
4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백서	11.06.27~ 11.09.26	금융연구원 (정찬우)	15	중소금융과
5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백서	11.07.01~ 11.12.30	KDI (고영선)	50	금융정책과
6	대형 IB 자기자본규제에 관한 연구	11.07.11~ 11.11.04	자본시장연구원 (장정모)	30	자본시장과
7	금융소비자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 연구	11.07.26~ 11.11.30	KDI (천규승)	25	금융소비자과
8	금융회사의 금융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연구	11.08.19~ 11.10.31	법무법인 태평양 (정의종)	29	금융정보분석원
9	자산운용산업내 각종 상품·계약간 규제체계 비교 및 개선방안	11.09.23~ 11.12.15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30	자산운용과
10	법인설립과 신탁계약 등이 자금세탁 등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위험과 그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11.10.04~ 11.12.20	김&장법률사무소 (서문식)	39	금융정보분석원
11	비금융전문직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도 분석에 관한 연구	11.10.12~ 11.12.20	금융연구원 (이윤석)	44	금융정보분석원
12	금융회사간 단기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관리감독 개선 방안	11.10.19~ 11.12.16	금융연구원 (이규복)	30	금융시장분석과
1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 도입방안	11.10.19~ 11.12.20	금융연구원 (김동환)	30	금융정책과
14	ETF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11.10.25~ 11.12.15	금융연구원 (연태훈)	30	자산운용과
15	부동산개발금융 제도개선방안 연구	11.10.26~ 11.12.25	건국대산학협력단 (고성수)	30	금융정책과
16	외은지점 규율체계 정비관련 주요 검토사항	11.10.27.~ 11.12.27.	금융연구원 (서병호)	30	은행과
17	외환, 자본시장 관련 자금세탁 사례 및 방지대책 연구	11.07.15~ '12.02.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용)	35 (이월)	금융정보분석원
18	청년창업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방안	11.12.22~ '12.04.21	금융연구원 (구본성)	30 (이월)	산업금융과
19	금융전문인력 수급현황	11.10.21~ 11.12.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돈)	45	국제협력팀

□ 2012년

연번	과 제 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담당부서
1	보이스피싱 근절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2.4. 6~ 12.6. 3	형사정책연구원 (윤해성)	20	전자금융과
2	ELS 및 DLS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	12.4.24~ 12.9.23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26	자본시장과
3	고령화 대비 공·사보험의 유기적 협력 방안	12.4.30~ 12.8.31	보험연구원 (김대환)	30	보험과
4	금융세제 현황 및 발전 방향	12.5. 4~ 12.8.31	금융연구원 (연태훈)	30	신성장금융팀
5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12.5.18~ 12.10.31	한국채권연구원 (박창균)	39	중소금융과
6	기업 공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12.5.25~ 12.9.24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35	공정시장과
7	대학생 고금리 대출 이용실태조사	12.6. 8~ 12. 7. 7	갤럽연구소 (박병일)	10	서민금융과
8	주요 신흥국과의 전략적 금융협력 강화 방안	12.6.25~ 12.10.31	대외경제연구원 (강대창)	26	글로벌금융과
9	금융감독분담금의 성격규명 및 그에 따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	12.7. 6~ 12.10. 5	한국재정학회 등 (김성수)	20	기획재정담당관실
10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주요국 사례분석	12.7.17~ 12.11.20	금융보안연구원 (김영태)	40	전자금융과
11	공사연금의 역할 재정립 및 규제·감독체계 개편방향 연구	12.7.26~ 12.11.26	한국연금학회 (신성환)	30	보험과
12	가계부채 미시분석	12.8.16~ 12.11.15	금융연구원 (서정호)	40	금융정책과
13	핵·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금지 국제기준 이행 방안	12.8.31~ 12.12.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숙)	35	금융정보분석원
14	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방안	12.9.10~ 12.11.30	서울대 산학협력단 (나종연)	34	금융소비자과
15	新 FATF 국제규범 주요 내용과 대응전략(금융부문 중심)	12.9.13~ 12.12.30	금융연구원 (김자봉)	35	금융정보분석원
16	서민금융 지원 체계 개선 방안	12.10.15~ 12.12.15	금융연구원 (구정한)	20	서민금융과
17	대부업 관리·감독 효율성 제고 방안	12.7.30~ 12.10.29	금융연구원 (서병호)	20	서민금융과
18	자금세탁방지 교육 강화 방안	12.9.21~ 12.11.21	삼일회계법인 (이창주)	18	금융정보분석원

연번	과 제 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담당부서
19	자금세탁방지 홍보 강화 방안	12.9. 5~ 12.10. 5	(주)버네이스 애플트리PR 컴퍼니 (이기욱)	12	금융정보분석원
20	국내외 조기경보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시장 조기경보모형 개선	12.9.20~ 12.12.17	금융연구원 (김정한)	40	금융시장분석과
21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방안	12.10.8~ 12.12.30	삼일회계법인 (이성한)	30	중소금융과
22	상호금융의 향후 발전방향	12.11.7~ 12.12.15	금융연구원 (이재연)	20	중소금융과
2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개선 방안	12.11.7~ 12.12.31	서울대 산학협력단 (정순섭)	25	공정시장과
24	금융전문인력 수급현황	12.7.24~ 12.12.2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상순)	43.3	국제협력팀

□ 2013년

연번	과제명	계약 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담당부서
1	선박금융 지원강화 방안	13.2.8 ~ 13.12.27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30	산업금융과
2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	13.5.13 ~ 13.8.30	한국금융연구원,인하대 산학협력단, 산업연구원 공동 (손상호)	30	산업금융과
3	금융지주회사제도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및 역할 정립 방안	13.6.20 ~ 13.9.19	한국금융연구원 (구본성)	30	금융정책과
4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역할 강화방안	13.4.1 ~ 13.6.30	산업연구원 (최봉현)	30	산업금융과
5	우체국 예금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3.9.10 ~ 13.12.20	한국금융 연구원,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김우진)	44	은행과
6	전자금융거래 인증체계 구성 방안	13.7.8 ~ 13.10.16	금융보안연구원 (강우진)	26.5	전자금융과
7	연금저축 활성화 방안	13.6.20 ~ 13.9.18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26.4	보험과
8	D-SIB 규제체계 국내도입 방안 연구	13.9.26 ~ 13.12.24	한국금융연구원 (이시연)	35.3	은행과
9	저축은행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 연구	13.10.21 ~ 13.12.15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35	중소금융과
10	자산관리회사(채권추심회사) 현황 및 관리·감독 체계 개선 방안(대부업제도개선방안)	13.8.26 ~ 13.9.30	한국금융연구원 (노형식)	30	서민금융과

11	개별법상 펀드 규제체계 개선 방안	13.5.10 ~ 13.8.30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30	자산운용과
12	M&A 시장 활성화 방안	13.10.1 ~ 13.12.31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30	자본시장과
13	국가적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위험도 평가와 효율적 방지체계구축 방안 연구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개편 방안 연구)	13.6.27 ~ 13.12.24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35	금융정보분석원
14	엔화환율의 시나리오별 예상경로와 대응전략	13.7.1 ~ 13.7.31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20	금융시장분석과
15	금융권역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 조사 및 중장기 제도운영 개선 방안	13.8.9 ~ 13.11.26	삼일회계법인 (이창주)	39.2	금융정보분석원
16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	13.10.7~ 13.12.9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25	산업금융과
17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3.10.11~ 13.12.20	한국금융연구원 (김병덕)	25	국제협력팀
18	보험상품 사업비 부과 체계 합리화 방안	13.11.15~ 14.2.28	숭실대 산학협력단 (이창수 교수)	19	보험과
19	여신전문금융업 체계 개편 방안 및 신용카드 결제리스크 분석	13.10.10 ~ 13.12.25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20	중소금융과
20	중위험·중수익 금융투자상품 활성화 방안	13.10.21~ 13.12.20	자본시장연구원 (김준석)	19	자본시장과
21	금융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13.5.31~ 13.12.13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박병일)	45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22	금융네비게이션 수정,보완을 위한 기초자료 연구용역	13.8.20~ 13.12.13	한국개발연구원 (천규승)	15	금융소비자과
23	금융상품 비교공시 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대금지급	13.10.18~ 13.12.15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재준)	27	금융소비자과
24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 개발 및 예비조사 연구용역 계약체결	13.7.8~ 13.11.15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성숙)	35	금융소비자과
25	공적금융상담서비스표준매뉴얼개발연구용역	13.3.4~ 13.6.30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25	금융소비자과
26	2013년 금융인력 현황조사 및 수급전망	13.7.30~ 13.12.24	한국금융연구원 (장민 박사)	39.8	글로벌금융과

□ 2014년

연번	과제명	계약기간	계약자 (책임연구원)	용역비 (백만원)	담당부서
1	금융감독체계 해외 주요국 현황 조사 연구	14.03.06- 14.05.02	금융연구원 (임형석)	20	금융시장분석과
2	수협 사업구조 개편방향 연구	14.03.13~ 14.06.30	한국개발연구원 (김영일)	15	산업금융과
3	신용보증 출연요율체계 개선방안	14.03.18~ 14.07.17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15	산업금융과
4	해운보증기금 타당성 및 설립시 운영방안 연구	14.04.16~ 14.10.15	산업연구원 (강동수)	50 (10)	산업금융과
5	신용정보 집중관리체계 등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	14.04.30~ 14.07.31	금융연구원 (김영도)	30	서민금융과
6	금융회사의 장수리스크 관리능력 제고방안 연구	14.05.08~ 14.11.07	보험연구원 (이태열)	25	연금팀
7	1:1 노후설계상담을 위한 콘텐츠 개발	14.05.08~ 14.09.07	한국FP학회 (이회숙)	15	연금팀
8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제도 도입 및 개인회생시 주택담보대출 채권자의 별제권 배제 타당성 연구	14.05.02~ 14.08.01	서울대 산학협력단 (박준)	30	은행과
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 연구	14.05.01~ 14.10.30	금융연구원 이화여대산학협력단 (김동환/오수근)	30	구조조정팀
10	공모펀드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14.05.15~ 14.08.14	자본시장연구원	20	자산운용과
11	FATF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대비 이행전략 연구	14.06.05~ 14.10.07	금융연구원 (이윤석)	26	금융정보분석원
12	금융전업가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14.04.18~ 14.07.17	금융연구원 (송민규)	30	금융정책과
13	금융규제체계 네거티브 전환 연구	14.05.28~ 14.07.31	서울대 산학협력단 (정순섭)	20	은행과
14	통일시 금융의 역할과 정책과제	14.06.03~ 14.08.31	금융연구원 (이상제)	20	금융시장분석과
15	은행의 효율적인 채널·점포 운영방안 연구	14.06.19~ 14.09.18	금융연구원 (송치훈)	25	은행과
16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의 국내외 사례분석	14.06.23~ 14.09.22	금융연구원 (김자봉)	35	금자본시장조사단
17	복수국간 서비스협상(TISA) 금융서비스분야 검토 연구용역	14.06.27~ 14.09.10	금융연구원 (이상제)	20	글로벌금융과
18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신뢰적 한계 극복방안	14.06.26~ 14.12.25	보험연구원 (송윤아)	30	보험과
19	금융상품 판매관련 개선	14.02.17~ 14.04.30	금융연구원 (이규복)	35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20	금융광고 규제	14.3.26~ 14.07.31	금융연구원 (노형식)	45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21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및 운영 해외사례	14.5.30~ 14.9.30	한국개발연구원 (강동수)	40	금융소비자과
22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개선방안	14.5.30~ 14.9.30	금융연구원 (구정한)	43	금융소비자과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6.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7.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 지시사항 및 조치 결과

□ 대통령 지시사항

연번	지시제목	지시일	이행 상황
1	주가조작 방지관련(2건)	13.3.11 13.4.3	진행중
2	국민행복기금운영관련	13.4.3	진행중
3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활성화	13.4.3	진행중
4	연대보증관행철폐	13.4.3	종료
5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공유	13.4.3	종료
6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협약가입 독려 등	13.5.23	종료
7	서민금융사업자간연계강화	13.5.23	진행중
8	국민행복기금지원시 채무 경감과 취업 등 자활지원 연계	13.5.23	종료
9	채무조정자 사후관리 프로그램 마련	13.5.23	진행중
10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신속 추진(3건)	13.12.20 14.4.4 14.4.10	진행중
11	전자금융사기 등 종합대책마련	14.2.4	진행중

연번	지시제목	지시일	이행 상황
12	텔레마케팅 금지 등 조치보완	14.2.4	진행중
13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조속추진	14.2.20	진행중
14	창조적 금융시스템 구축	14.2.20	진행중
15	금융교육 및 소비자보호 강화	14.2.20	진행중
16	금융거래 정보유출 대책 마련	14.2.20	진행중
17	금융부문 규제개혁 적극 추진	14.3.20	진행중
18	유망 창업기업들의 코스닥 상장 촉진방안	14.7.17	진행중
19	금융분야 평가 및 감독체제 개편	14.7.24	진행중
20	간편한 온라인 결제방안 마련	14.7.24	진행중

□ 국무총리 지시사항

연번	지시제목	지시일	이행 상황
1	동양그룹의 금융사고수습관련	13.10.29	종료
2	금융정보유출피해예방 및 재발방지관련	14.1.21	진행중
3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관련	14.1.28	진행중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8. 정부업무평가결과

□ '13년도 정부업무평가의 경우 상위 3개 기관*만 발표하였으며, '10~'1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관급) 국방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차관급) 경찰청, 소방방재청, 특허청

연도별 정부업무평가 결과

평가부문		'12년 평가등급	'11년 평가등급	'10년 평가등급
자체평가		관리과제별 상대평가		
국조실 특정평가	① 핵심과제	우수	보통	미흡
	② 서민생활안정	보통	보통	-
	③ 녹색성장	우수	우수	미흡
	④ 일자리 창출	보통	(금융위 제외)	보통
	⑤ 정책관리역량	보통	미흡	보통
	⑥ 정책홍보	보통	미흡	보통
	⑦ 규제개혁	보통	미흡	미흡
	⑧ 정책만족도	보통	보통	보통
	⑨ 민원만족도	보통	미흡	미흡
계		우수2, 보통7	우수1, 보통3, 미흡4	보통4, 미흡4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9~10. 2013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 2013년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2013년도 성과계획서 1부 : 별도제출

(붙임 2) 2013년도 성과보고서 1부 : 별도제출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11. 최근 3년간 판공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별도제출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12. 최근 3년간 퇴직자 현황

□ 퇴직자 현황(2012년 이후)

이○○	외신대변인	12.01.01
박○○	일반계약직5호	12.02.27
원○○	부이사관	12.03.14
이○○	전문계약직 가급	12.03.21
김○○	행정사무관	12.05.18
이○○	서기관	12.05.21
김○○	고위공무원	12.05.26
김○○	일반계약직5호	12.08.02
전○○	서기관	12.08.13
김○○	일반계약직5호	12.08.17
김○○	일반계약직5호	12.08.31
오○○	전산사무관	12.09.04
제○○	5급상당	12.11.05
이○○	일반계약직5호	12.11.05
박○○	고위공무원	12.11.19
남○○	일반계약직5호	12.12.10
배○○	서기관	13.02.08
윤○○	행정사무관	13.02.27
정○○	전문계약직나급	13.03.01
추○○	행정사무관	13.07.17
임○○	전문계약직가급	13.08.29
홍○○	고위공무원	13.11.18
유○○	고위공무원	13.11.28
이○○	서기관	14.01.06
김○○	부이사관	14.01.22
진○○	고위공무원	14.02.28
이○○	고위공무원	14.03.28
김○○	고위공무원	14.06.10
성○○	고위공무원	14.07.06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13. 최근 2년간 4급이상 퇴직자 취업심사 현황
14. 최근 2년간 5급이하 재취업 심사결정 사유 및 심사결과

□ '13~'14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통보 현황

통보일	성 명	퇴직전 직위	취업예정 기관	취업예정 직위	심사결과
'13.01.07	이00	전문계약직 가급	우리투자증권	이사대우	취업확인
'13.06.04	권00	고위공무원	한국자금중개	대표이사	취업확인
'13.11.25	배00	서기관	김앤장법률사무소	금융전문위원	취업확인
'14.01.28	김00	서기관	삼성화재해상보험	상무	취업확인
'14.06.03	임00	전문계약직 가급	우리종합금융	사외이사	취업확인
'14.07.28	김00	고위공무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취업확인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31조 등에 의거 **'취업심사 대상자'는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해당되며, **5급 이하 퇴직자는 취업심사 대상이 아님**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15. 2010년 이후 연도별 기관평가 및 기관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현황

□ 해당사항 없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16. 언론해명자료 및 정정보도 요청 목록 (2013년 10월-현재)

□ 언론해명자료

연번	보도일자	해명자료 제목	담당과
1	20140806	서울신문(2014.8.7) "금융당국부터 '보신주의' 벗어나야" 제하 기사 관련	중소금융과
2	20140806	헤럴드경제 2014.8.6일(수) 「저축銀도 사외이사 과반 의무화」, 「공시부담만 더 늘어난 금융권...지배구조 리스크는 새 위험부담」 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3	20140806	한국경제(2014.8.7.)「재무상태 나쁜 기업... 외부감사 강제 지정」 제하 기사 관련	공정시장과
4	20140801	서울경제 8.2일자「주가 하루 상하한 폭 25%이상으로 넓힌다」 제하의 기사 관련	자본시장과
5	20140801	이데일리 8. 1.(금) 「감사원의 보험協 특별감찰 소문에… 금융위'발끈'」 제하의 기사 관련	보험과
6	20140730	중앙일보 7.30일자「증시 상,하한가 15%제한 풀기로」 제하의 기사 관련	자본시장과
7	20140729	경향신문(2014.7.29) 1면"공인인증서 탓에 중국서 '천송이 코트' 못산다"는 대통령 말... 사실이 아니었다", 3면 '천송이 코트' 잘못된 지시에 금융당국 '헛발질' " 제하 기사 관련	전자금융과
8	20140725	한국경제(2014.7.26. 가판), 매일경제(2014.7.25.)"정부, 한국판 알리페이 만든다", 아시아경제(2014.7.25)	전자금융과, 중소금융과
9	20140717	연합인포맥스 (2014. 7.17)의 「대주보 공사 추진…금융위 침묵 이유는」 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10	20140717	연합인포맥스(2014.7.17.)의「대주보 공사 추진… 금융위 침묵 이유는」 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11	20140716	한겨레(7.16.)「보험사 사모펀드 투자 확대... "재벌 위한 규제 완화" 논란 관련」	보험과
12	20140716	한국경제(7.16.)『연금저축 세제혜택 늘린다. 금융위, 세	연금팀

		액공제한도 400만원→500만원 이상』, 서울경제(7.16.) 『연금저축 세액공제 두배 확대 추진』	
13	20140715	한국경제(2014.7.16.)「내년부터 LTV·DTI 은행 자율로... 총당금 규모 따라 효과 갈릴 듯」, 조선비즈(2014.7.15.일자) 경향신문(2014.7.16.) 제하 등 다수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14	20140714	한국경제(2014.7.15.)의「1억 집 살 때 7000만원까지 대출」, 「DTI엔 이견… 기재부 "60%로 완화" 금융위 "50%로"」 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15	20140713	한국경제(7.14.가판)『분리형BW, 공모 발행은 다시 허용』	자본시장과
16	20140709	파이낸셜뉴스(2014.7.9.)의 "기술금융 성공 여부 '인센티브'에 달렸다" 제하 기사 관련	산업금융과
17	20140707	조선비즈(2014.7.7.) "금융위 국장사의, 흔들리는 공무원 사회" 제하 기사 관련	행정인사과
18	20140707	한국경제(2014.7.7.)의 "'건당100만원'… 이달부터 의무화된 기술력 평가 수수료 논란" 제하 기사 관련	산업금융과
19	20140705	서울경제7.5일자『대형 증권사, 기업에 달러 대출 길 열려』	자본시장과
20	20140704	한국경제(7.4.가판)『빅5 증권사, 지급보증 한도 16조 확대』	자본시장과
21	20140703	파이낸셜뉴스(2014.7.3.)의 "지역中企 기술력 대출 '그림의 떡' 되나" 제하 기사 관련	산업금융과
22	20140702	경향신문('14.7.2.),「금융위, 대우증권도 패키지 매각한다」 제하 기사 관련	산업금융과
23	20140625	아시아경제(2014.6.24.) "우리銀 경영권 매각, 신제윤, 박상용' 엇박자" 제하 기사 관련	운용기획팀
24	20140619	CBS노컷뉴스(2014.6.19.) "관피아로 본 진짜 권력... 靑보다 쎈 부처 어디?" 제하 기사 관련	감사담당관실
25	20140617	파이낸셜뉴스(2014.6.17.) "보험사 '헤지용' 파생상품투자 늘린다." 제하 기사 관련	보험과
26	20140609	서울경제(2014.6.9.) "보험·증권사, 해외은행인수 허용한다." 제하 기사 관련	은행과, 보험과
27	20140609	한국경제(2014.6.6.) "우리銀 '확실한주인' 찾기 시동" 제하 기사 관련	운용기획팀
28	20140602	머니투데이(2014.6.2.) "당국, 은행의 장내 파생참여 허용 방침 논란" 제하 기사 관련	자본시장과
29	20140530	디지털타임스(2014.5.30.) "정보유출 금융사에 '보안 투자 보류' 지침 논란" 제하 기사 관련	전자금융과
30	20140522	한국경제5.22.(목)『상장社에 상속. 증여세 혜택 추진』,	자본시장과

		『기업공개 3년 새 절반이상급감... 세제지원 '당근' 으로 상장유도』 제하의 기사 관련	
31	20140522	한국경제(2014.5.22.) "우리銀 '확실한주인' 찾아 준다." 제하 기사 관련	운용기획팀
32	20140521	머니투데이(2014.5.21.)의 "없애도 '없어지지 않은' 공인인증서, '반쪽짜리' 규제완화 대명사 됐다" 제하 보도 관련	전자금융과
33	20140515	조선비즈(2014.5.15.) "우리銀 지분 '10%이상' 일반경쟁, '10%미만'은 희망수량 방식검토" 제하 기사 관련	운용기획팀
34	20140514	한국경제신문(2014.5.15.) "금융위 상임위원 김학균, 증선위원 서태종" 제하 기사 관련	행정인사과
35	20140514	이데일리(2014.5.14.)의"세월호, 선거에 밀려… 서민금융지원 개점 휴업" 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서민금융과, 연금팀
36	20140514	한국경제(2014. 5.14.(수) 가판)의 "유동성 위험 기업 '동아줄' 회사채 신속 인수제 연장 없다" 제하 기사	산업금융과
37	20140507	한국경제('14.5.8) "우리은행 지분 두 갈래로 매각 추진..." 제하 기사 관련	운용기획팀
38	20140507	매일경제('14.5.7.인터넷) "은행도 사모펀드 운용 한다… 금융위 허용" 제하 기사 관련	자산운용과
39	20140416	아주경제(2014.04.16.) "금융위는 금투협 자격을 의심해" 제하 기사 관련	자본시장과
40	20140416	서울경제(2014.4.16.)"속도 내는 우리금융민영화" 제하 기사 관련	운용기획팀
41	20140410	한국경제(2014.4.10)"씨티銀등 외국계, 개인금융정보 해외본사가 본다."제하 기사 관련	전자금융과
42	20140407	매일경제(2014.4.7) "5000만 원 이하 특정신탁'OK'"제하 기사 관련	자산운용과
43	20140404	서울경제"증권사 대출 채권 영업용 순자본 인정"파이낸셜뉴스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기준 전면 개편" 제하 기사 관련	자본시장과
44	20140402	파이낸셜뉴스(2014.4.2.)"보험료규제완화... 금융당국 간섭 최대한 배제"제하 기사관련	보험과
45	20140330	조선비즈(2014.3.30) "정부, 우리銀 '30% 경영권 매각 후 희망 수량'방식검토"제하 기사 관련	운용기획팀
46	20140326	연합뉴스(2014.3.26) "우리은행'희망 수량 경쟁 입찰'방식	운용기획팀

		매각 추진” 제하 기사 관련	
47	20140321	매일경제(2014.3.21.인터넷판)「인증서 없이 50만원전자결제」제하 기사관련	전자금융과
48	20140317	한국경제“재 통지 필요 없다는 금융당국 속내는,,, 비난여론우려에‘덮기’급급…”제하보도관련	중소금융과
49	20140310	머니투데이(2014. 3. 9.) “자산운용업계숙원‘ 자전거래 ’족쇄풀린다” 제하 기사 관련	자산운용과
50	20140307	서울경제(’14.3.7,가판)의“잠자는 카드 많이 갖고 있으면 벌금 물린다.”제하 기사관련	중소금융과
51	20140304	서울경제(2014.3.5.가판)「‘종이증권’역사 속으로」제하 기사관련	자본시장과
52	20140228	한겨레(14.2.28)「단기변동금리→장기 고정금리로 부채구조 변화유도」제하 기사관련	금융정책과
53	20140227	한국경제(’14.2 .28),「1조 펀드 만들어 부실中企 매입」제하기사관련	산업금융과
54	20140227	서울경제(2014.2.27)「상장사 계약공시 부담 확 줄인다」제하 기사관련	공정시장과
55	20140225	한국경제(14.2.26가판)「수도권 주택. 대출 한도 확대.LTV60%로...DTI는 지방도 적용」,「LTV, DTI 10여년 만에 전면 손질...1000조 가계빚 관리가 관건」제하 기사관련	금융정책과
56	20140225	연합인포맥스「LTV·DTI규제완화하나」,헤럴드경제「부동산마지막대못DTI·LTV도 손본다.」,한국경제TV「3년내 가계빚 최대 50조 감축..LTV·DTI조정」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57	20140225	한국경제(14.2.25)“PEF설립‘사후 보고제 ’전환논란” 제하 기사 관련	자산운용과
58	20140225	한국경제취재수첩「봉숭아학당금융발전민관TF」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은행과
59	20140224	한국일보(2014.2.24.)의 “해운보증기구 설립은 부산 표심 잡기 위한 정권의 선물 보따리” 제하 기사 관련	산업금융과
60	20140223	파이낸셜뉴스(14.2.24가판)「상호금융고정금리대출비중 20%까지 확대」,「주담대 프리워크아웃 ‘2금융확대’…장기 분할로 전환」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61	20140222	한국일보「4개 증권사‘기관경고’중징계 받을 듯」제하 기사 관련	자본시장조사단
62	20140221	문화일보「내달부터3억 초과전세는 대출금지」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63	20140221	한겨레('14.2.21)「개인정보 유출회사 문닫게 하라?」제하	서민금융과

		기사관련	
64	20140219	매일경제(2014.2.20가판) “우리銀, 3~4개 주주에 매각… 정부 ‘공동경영권’은 보장” 제하 기사 관련	운용기획팀
65	20140218	매일경제(2014.2.18가판)「고정금리 대출유도 약발 안 먹혀」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66	20140217	파이낸셜뉴스, 조선비즈, 머니투데이 등의“카드사 600만원 과태료, 명백한 봐주기” 제하 보도 관련	중소금융과, 서민금융과, 금융제도팀
67	20140213	한국경제(2014.2.14가판)「한은, 저금리 주택 대출확대 지원 나선다」,「공기업 부채 줄인다더니 한은 발권력까지 동원하나」제하 기사 및 사설관련	금융정책과
68	20140213	SBS(2014.2.12)「‘개미’울린CJE&M…고강도제재방침」·「공매도차익까지…비도덕한 기관투자자」보도관련	자본시장조사단
69	20140211	서울신문(2014.2.11)「고객성병·수술부위까지 무차별… 인권침해‘사각지대’」제하 기사관련	보험과
70	20140210	이데일리(2014.2.10)「정부, 고정금리·비거치식 주담대 비중30%→40%확대」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71	20140210	파이낸셜뉴스(2014.2.10.)의 “정부, 주민등록번호·공인인증서 대체방안 고민” 제하 보도 관련	전자금융과
72	20140207	중앙일보14.2.7(금)「암호 쓰는 금융사 3,000개중 47곳뿐」제하 기사 관련	서민금융과
73	20140205	한국경제(2014.2.5자가판) “회계법인 등급 매긴다.” 제하 기사 관련	공정시장과
74	20140203	머니투데이('14.2.3)'TM 영업금지, 빠르면 다음 주부터 재개허용' 제하 기사 관련	서민금융과
75	20140202	한국경제(2014.2.3가판)「한은, 주택 금융公에추가출자」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76	20140124	조선일보(2014.1.24.)의 “털린 개인금융정보 이미 팔리고 있다” 제하 기사 관련	중소금융과
77	20140122	서울신문(2014.1.22.,가판)의 “법인카드 유출 건수는 집계조차 못했다” 제하 기사 관련	중소금융과
78	20140121	세계일보(2014.1.22.,가판)의 “‘정보유출경고’ 금융위서 뭉갰다”제하 기사관련	금융제도팀
79	20140121	한국경제TV(2014.1.21.)의 “정보유출2차 피해 추정 계속 늘어”제하 기사 관련	중소금융과
80	20140121	조선닷컴(2014.1.21.)의 “카드재발급 비용 최대 1만원, “이걸 왜 또 내야해? ”네티즌비난봇물”제하 기사관련	중소금융과
81	20140121	여성신문(14.1.21)'카드사정보유출책임... 신제윤 금융위원	행정인사과

		장도 사의 표명' 제하기사 관련	
82	20140121	서울경제신문(2014.1.21.)의 “카드개인정보유출 2차 피해 주장 쏟아져”제하 기사관련	중소금융과
83	20140121	한겨레신문(2014.1.21) “얼빠진 금융당국…2주 지나도록 피해자 수 파악도 못해”제하 기사관련	중소금융과
84	20140121	국민일보(2014.1.21) “해외에선 비번·CVC 없어도 쉽게 결제… 2차 피해대책 전무” 제하 기사 관련	중소금융과
85	20140119	한국경제(2014.1.20가판) “정책금융공사 사장에 진웅섭씨 내정”제하 기사관련	행정인사과
86	20140115	한국경제(2014.1.16가판)성장 사다리펀드 법인화 꼼수 제하 기사관련	신성장금융팀
87	20140107	파이낸셜뉴스(2014.1.7) “금리인상대비 상한제 검토… 은행도 함께 이자 부담” 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88	20140102	서울경제(2014.1.2가판) “공자위, 지방은행매각대금 예보 회수액 축소 검토” 제하 기사 관련	운용기획팀
89	20131226	일부언론의「정부올해85만 명, 개인 빚 갚아줬다」제하 기사 관련	서민금융과
90	20131226	경향신문(2013.12.26) “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부과 없던 일로" 제하 기사 관련	중소금융과
91	20131222	서울경제신문(2013.12.23가판)“기업은행장 인선 막판혼전” 제하 기사 관련	행정인사과
92	20131222	서울경제('13.12.23자 가판), 「공기업 개혁바람에 청년 일자리 된서리」 제하 기사 관련	산업금융과
93	20131220	연합뉴스('13.12.20)코넥스 출범 6개월, 내년 정책자금 2천억 원 투입 제하 기사 관련	자본시장과
94	20131219	서울경제(2013.12.20) “사공 많아 산으로 가는 증권 범죄 수사” 기사 관련	자본시장조사단
95	20131219	서울경제50만원 미만 인터넷 결제 공인인증서 없어도OK? 제하 기사 관련	전자금융과
96	20131216	한국경제('13.12.16,가판) “사모펀드'이자놀이'사실상허용?” 제하 기사 관련	자산운용과
97	20131213	조선일보(2013.12.13) “기업은행장에 허경욱前기재부차관 내정”제하 기사관련	행정인사과
98	20131212	경향신문(2013.12.12) “비자·마스터카드규제" 금감원장의 헛발질 제하 기사 관련	중소금융과
99	20131206	한국경제(2013.12.6.)「금융지주·은행 '사전유언장' 만든다」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100	20131125	경향신문(11.25), “신제윤의 ‘자기 말 뒤집기’, 금융당국, 대부업체 금융기관 지정 없던 일로” 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서민금융과
101	20131121	서울신문(2013.11.22) “김광수 차기 기업은행장 유력” 제하 기사 관련	행정인사과
102	20131118	매일경제(’13.11.18) “금융위, 집행임원도 연봉 공개 검토(인터넷)” 제하 기사 관련	공정시장과
103	20131118	연합뉴스(’13.11.18) “정부 재벌총수 일가 보수 공개 회피하면 제도 보완” 제하 기사 관련	공정시장과
104	20131111	연합인포맥스(2013.11.11) “불공정거래조사…금감원 역할 단계적 축소” 기사 관련	자본시장조사단
105	20131111	한국경제(2013.11.11) “우투증권계열 4社 판 돈, 우리금융에 유보” 기사 관련	운용기획팀
106	20131107	서울경제(’13.11.8) “개인도 헤지펀드 설립 가능해진다” 제하 기사 관련	자산운용과
107	20131031	헤럴드경제(’13.10.31),「통합 산은 내년 말에나 출범」 제하 기사 관련	산업금융과
108	20131031	아시아경제(‘13.10.31)「기금 형 퇴직연금 무산 위기」 제하 기사 관련	연금팀
109	20131031	동아일보(’13.10.31),「정부, 산은에 최대 2조 2,000억 출자 검토」 제하 기사 관련	산업금융과
110	20131028	연합인포맥스(’13.10.28)「증권사, 1억 있는 개인에 A1 A2급 CP만 팔 수 있다」제하 기사 관련	자본시장과
111	20131028	조선일보(10.28일자)48개 금융투자업 認可, 10개로 통폐합제하 기사 관련	금융정책과, 자본시장과
112	20131027	서울경제(13.10.28)「행복기금사업전망 부실하게 한 정부」 및 「금융공약도 줄줄이 표류」 기사 관련	서민금융과
113	20131023	SBS CNBC(2013.10.23) “금융위, 동양쇼크 털고 금융비전 올인?” 제하 방송 관련	금융정책과
114	20131015	한국일보(2013.10.15.) “금융 공공기관 수장 돌고 돌아 ‘모피아’ 제하 기사 및 한국경제(2013.10.15.) “캠코 기보 예탁원 수장 누가?”제하 기사 관련	행정인사과
115	20131013	일부언론 등(2013.10.13.) 지난해 금융공기업 임직원 외부강연 서 6억 원 수입 제하 기사 관련	감사담당관실
116	20131013	연합뉴스 등(2013.10.13.) 지난해 금융공기업 임직원 외부강연 서 6억 원 수입제하 기사 관련	감사담당관실

117	20131009	중앙일보(2013.10.9)재취업 고위공무원 1263명 중 133명이 기업 감사로 제하 기사 관련	감사담당관실
118	20131008	중앙일보(2013.10.8.) 공직자 감찰하는 감사원 재취업률 5위 제하 기사 관련	감사담당관실
119	20131007	국민일보(10.7일자가판)코넥스, 中企 '돈줄' 기대했는데... 거래량 대금 곤두박질 제하 기사 관련	자본시장과
120	20131002	헤럴드경제(2013.10.2.)"회사채 CP도 신용공여 포함… 금감원 VS 금융위 충돌" 제하 기사 관련	구조조정지원팀

□ 정정보도 요청 목록

○ 해당없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17. 2014년도 업무계획

□ 별도제출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18. 2013년도 기관업무평가실적(경영실적보고서)
19. 최근 5년간 기관업무평가실적 평가등급변동현황

□ 해당사항 없음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20. 수의계약 현황(2013.1월 ~ 현재)

□ 5천만원 초과하는 수의계약 현황('13.1월 ~ '14년)

연도	사업명	계약기간	계약상대/ 과거 수의계약 체결여부(○,×)	계약금액 (백만원)
13년	13년도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사업 계약체결	'13.1.1~'13.12.31	한국언론진흥재단/ ○	100
14년	14년도 뉴스저작물 통합이용사업 계약체결	'14.1.1~'14.12.31	한국언론진흥재단/ ○	100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21. 최근 3년간 직원해외연수 현황(파견자명, 소속, 파견국가 및 기관, 파견목적, 파견기간, 경비사항 포함)

□ 최근 3년간 직원해외연수 현황

성명	소속	국가	훈련기관	파견목적	파견기간
김○○	국조실 파견	미국	Univ. of Kansas	교육훈련	2009-06-27 2011-06-24
고○○	금융소비자과	미국	Univ. of Washington	교육훈련	2009-07-13 2011-07-12
이○○	은행과	미국	California Economic Forecast	교육훈련	2009-08-02 2011-07-16
이○○	국제협력팀	중국	Ernst and Young	교육훈련	2009-11-17 2011-05-16
이○○	제도운영과	미국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교육훈련	2010-01-04 2011-12-31
손○○	글로벌금융과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교육훈련	2010-01-05 2011-12-31
김○○	산업금융과	미국	Pricewaterhouse Coopers LLP	교육훈련	2010-06-16 2012-06-15
박○○	산업금융과	미국	Univ. of Southern California	교육훈련	2010-06-28 2012-06-27
이○○	대변인실	미국	Univ. of Texas, Austin	교육훈련	2010-07-21 2012-06-20
김○○	공정시장과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교육훈련	2010-07-22 2012-01-21
최○○	보험과	영국	Univ. of Oxford	교육훈련	2010-08-02 2011-01-11
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중국	Shanghai Unite Develop Law Firm	교육훈련	2010-09-29 2012-09-28
조○○	중소금융과	일본	Nomura Securities CO.Ltd.	교육훈련	2010-09-30 2012-09-29
김○○	산자부 파견	영국	카디프대학교 BRASS센터 (BRASS, Cardiff Univ.)	교육훈련	2010-10-24 2011-04-03

성명	소속	국가	훈련기관	파견목적	파견기간
송○○	대통령 비서실	호주	맥쿼리금융그룹(Macquarie Financial Group)	교육훈련	2010-12-13 2012-06-12
변○○	사무처	미국	Univ. of Washington	교육훈련	2011-01-05 2012-12-31
정○○	창조기획 재정담당관실	영국	City University London	교육훈련	2011-06-13 2011-12-03
주○○	자본 시장과	미국	Price Waterhouse Coopers	교육훈련	2011-06-19 2013-06-18
오○○	창조기획 재정담당관실	네덜란드	Duisenberg School of Finance	교육훈련	2011-06-20 2012-12-31
최○○	대변 인실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교육훈련	2011-06-27 2011-12-23
김○○	보험과	말레이지아	Univ. of Malaya	교육훈련	2011-07-05 2013-07-04
김○○	전자 금융과	미국	Texas A and M University	교육훈련	2011-07-17 2013-06-30
윤○○	금융소비자 보호기획단	캐나다	KPMG LLP	교육훈련	2011-07-25 2013-01-24
김○○	이수중	카타르	Qatar Faculty of Islamic Studies	교육훈련	2011-09-09 현재
전○○	금융시장 분석과	일본	Nomura Securities CO.Ltd.	교육훈련	2011-09-26 2013-09-25
김○○	은행과	중국	Ernst and Young	교육훈련	2011-11-15 2012-05-04
박○○	중소 금융과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	교육훈련	2012-01-30 2013-12-31
이○○	기획 행정실	베트남	RMIT University Vietnam	교육훈련	2012-02-06 2013-12-05
변○○	산업 금융과	모로코	Qalam WA lAWH Center for Arabic Studies	교육훈련	2012-04-02 2013-04-01
김○○	자본시장 조사단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교육훈련	2012-06-06 2014-06-05
김○○	이수중	영국	Univ. of Kent at Canterbury	교육훈련	2012-07-23 현재
남○○	전자 금융과	미국	Saint Louis University	교육훈련	2012-07-25 2014-07-09
신○○	신용 정보팀	영국	Univ. of York	교육훈련	2012-07-29 2014-07-28
전○○	검찰청 파견	영국	Univ. of Reading	교육훈련	2012-09-06 2013-02-27

성명	소속	국가	훈련기관	파견목적	파견기간
권○○	자본시장조사단	말레이지아	Palm Oligo sdn.bhd.	교육훈련	2012-12-31 2014-06-29
서○○	이수중	프랑스	Sciences Po	교육훈련	2013-02-14 현재
유○○	이수중	일본	Kyoto University	교육훈련	2013-04-01 현재
김○○	이수중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교육훈련	2013-07-20 현재
김○○	이수중	영국	Univ. of York	교육훈련	2013-08-09 현재
임○○	이수중	남아공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교육훈련	2013-08-12 현재
차○○	심사분석3과	미국	법무부	교육훈련	2013-11-03 2013-11-14
김○○	기획행정실	미국	법무부	교육훈련	2013-11-03 2013-11-14
배○○	국제협력팀	호주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교육훈련	2013-12-10 2014-05-25
나○○	이수중	미국	New York Univ.	교육훈련	2014-08-03 현재
이○○	이수중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교육훈련	2014-08-07 현재

※ **(경비)**「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9조 및「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학비, 체재비, 항공료 등 지급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22. 최근 3년간 국외출장현황

□ 붙임 참조

<붙임>

구분	출장지 (출장기관)	출장기간	명 단			출 장 사 유	비 용			
			출장자	소속	직위(직급)		항공비	숙박비	식 대	기타비용
대변인실	태국, 홍콩	12.06.09~12.06.13	이병래	대변인실	대변인	한-태국 금융당국 MOU 체결	₩2,107,700	$559	$388	$175
	태국, 홍콩	12.06.09~12.06.14	윤종규	대변인실	계약직		₩1,417,800	$386	$245	$130
행정인사과	호주 브리즈번	2012.08.19.~08.25	최윤정	행정인사과	사무관	ICA(국제기록관리협의회) 총회 참석	₩1,798,900	$546	$308	$210
	벨기에 브뤼셀	2013.11.21~2013.11.26	이철현	행정인사과	기록연구사	ICA 연례회의 참석	₩2,159,900	$433	$294	$156
	브뤼셀	2014.3.22~2014.3.29	최정헌	행정인사과	행정서기보	FATF(Policy Development Group) 실무회의 참기	₩1,916,800	$615	$343	$182
기획조정관실	스웨덴, 핀란드	13. 6. 12.~6. 19	김태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중앙행정기관 법제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2,190,000	$580	$472	$240
금융정책국	파리	2012.4.17~4.21	김시목	금융정책과	사무관	제22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	₩2,387,200	$450	$405	$150
	파리	2012.4.25~4.29	송헌지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제114차 OECD 금융시장위원회 참석	₩2,387,200	$669	$405	$150
	싱가포르, 태국	2012.6.25~6.29	윤창호 황기정	산업금융과	과장 사무관	산업은행 민영화 및 IPO 추진	₩3,138,000	$772	$500	$300
	탄자니아, 케냐	2012.8.14~8.20	서재홍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2012년 탄자니아 예금보험제도 정책자문 사업(KSP 일환) 개시와 함께 탄자니아 금융당국과 KSP 사업내용 및 일정 논의	₩3,566,900	$364	$264	$180
	싱가포르	2012.8.26~9.1	이진영	산업금융과	사무관	권역별 규제개혁, 대형 금융회사 규제개혁 등 글로벌 금융규제 개편 관련	187000 (주최: IMF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프랑스 파리	2012.10.3~10.6	정태호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제115차 OECD 금융시장위원회 참석	₩2,332,100	$325.78	$324	$120
	캐나다 토론토	2012.11.9~11.13	유성재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캐나다 국제지배구조혁신센터(CIGI) 주최 컨퍼런스 참석	₩2,695,700	$274	$790	$350
	파리	2013.4.14~4.18	최상아	산업금융과	사무관	제24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회의 참석	₩2,268,100	$450	$405	$150
	파리	2013.4.23~4.28	김윤희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제116차 OECD 금융시장위원회 참석	₩2,330,700	$704	$486	$180
	시드니,홍콩,발리	2013.9.28~10.5	한송희	금융정책과	사무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IPAG회의 소집	₩7,160,400	$938	$463	$253
	베트남,중국	2013.10.23~10.27	김정각 전치활	산업금융과	과장 사무관	해외진출 중소기업 및 금융회사와의 간담회 개최 참석	₩3,565,600	$616	$352	$300
	인도 뉴델리	2013.12.4~12.8	현지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제4차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참	₩1,898,600	$411	$295	$150
	홍콩	2013.12.15~12.17	오형록	신성장금융팀	사무관	벤처캐피탈 및 사모투자관련 시장흐름 등 동향파악 및 투자유지 사례 등 성공요인 분석	₩601,500	$493	$243	$90
	스위스 바젤	2013.12.15~12.19	현지은 공윤정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주무관	금융안정위원회 LEI 규제감독위원회 회의 참석	₩4,389,200			
	호주	2014.1.26~1.30	마순 최지은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 주무관	해외 금융감독체계 사례 수집을 위해 호주의 APRA, ASIC 기관 방문	₩4,332,300	$499	$405	$280
	브뤼셀, 런던	2014.3.30~2014.4.2	김용범 윤원철	구조조정지원팀	국장 사무관	해외 금융감독체계 개편 동향 사례 조사	₩6,354,400	$1,010	$650	$330
	파리	2014.4.1~2014.4.6	강성호	금융정책과	사무관	제118차 OECD 금융시장위원회 회의 참석	₩2,129,600	$378	$486	$180
	바젤	2012.01.07~01.11	이상제 최유삼 염재희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과장 사무원	FSB 총회 참석	₩8,963,600	$1,352	$1,094	$510
	홍콩	2012.01.15~01.19	이상제 류근하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아시아금융포럼(AFF) 참석	₩654,600	$523	$856	$280
	런던	2012.01.29~02.01	이헌석 김수호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FSB 감독규제협력상임위원회 참석	₩4,555,900	$407	$750	$330
	LA	2012.02.03~02.06	이상제 박미리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주무관	제24차 한미 재계회의 참석	₩1,930,400	$265	$684	$226
	하노이	2012.02.12~02.15	최유삼	글로벌금융과	과장	한국-베트남 금융당국간의 MOU 체결 관련 실무협의	₩586,700	$182	$132	$135
	베트남,인니	2012.02.28~03.04	김석동 이병래 최유삼 김수호 신상훈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의원장실	위원장 대변인 과장 사무관 사무관	금융위원회와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 금융당국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10,548,180	$3,636	$1,460	$925
	바젤, 홍콩	2012.03.04~03.09	이상제 류근하 김성진	글로벌금융과 자산운용과	상임위원 사무관 사무관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및 국제금융정책포럼	₩10,328,000	$1,364	$1,175	$450
	뉴욕	2012.03.28~04.01	나혜영 염재희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사무원	금융안정위원회(FSB) CBCM 워크숍 참석	₩4,509,800	$993	$740	$280
	워싱턴	2012.04.11~04.15	박정훈	글로벌금융과	과장	금융안정위원회(FSB) SIE 회의 참석	₩2,297,600	$512	$324	$120
	브뤼셀	2012.04.15~04.18	이상제 류근하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Global Financial Services Integration" 컨퍼런스 참석	₩3,249,700	$232	$632	$280
	바젤	2012.04.25~04.28	이상제 김수호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금융안정위원회(FSB) ReSG 회의 참석	₩10,238,800	$343	$632	$280
	방콕, 아부다비	2012.05.03~05.08	박정훈	글로벌금융과	과장	제3차 한국-UAE 경제공동위원회(5.7 장관급, 5.6 실무급)에 참	₩2,644,900	$435	$324	$180
	바젤	2012.05.06~05.10	이상제 류근하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및 신흥국 리뷰 그룹 회의 참	₩9,685,400	$974	$790	$350
	베이징	2012.05.13~05.14	박정훈 박미리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과장 주무관	한-중 FTA 제1차 협상 참석	₩1,486,400	$307	$216	$112
	쿠알라룸푸르	2012.05.13~05.15	김수호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FSB 아시아지역협의체 회의 참	₩820,400	$137	$132	$90
	쿠알라룸푸르, 베이징	2012.05.13~05.18	이상제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FSB 아시아지역협의체 회의 참석 및 IFC와 중국 은행감독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녹색금융 포	₩2,574,200	$173	$540	$240
	런던	2012.05.17~05.20	임형석 류근하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영국 런던 금융청(FSA)에서 개최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감독·규제협력 상임위원회(SRC) 회의 참석	₩9,001,300	$1,198	$752	$260
	베이징	2012.05.22~05.24	이상제 나혜영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2012 중국금융포럼(China Financial Summit) 참석	₩570,700	$284	$474	$210
	상하이,홍콩	2012.05.27~05.30	추경호 박정훈 김수호 염재희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부위원장 과장 사무관 사무원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4,203,800	$3,006	$1,079	$544
	태국,홍콩	2012.06.09~06.13	김석동 이병래 배준수 박정훈 이동훈 김수호 윤종규	중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위원장실 대변인실	위원장 대변인 과장 과장 비서관 사무관 계약직	금융위원장 태국,홍콩 출장	₩8,280,200	$2,903	$1,805	$880
	암스텔담	2012.06.14~06.17	임형석		국제협력관	금융안정위원회(FSB) 국경간 위기관리그룹(CBCM) 회의 참석	₩6,664,000	$320	$312	$140

글로벌금융과	바젤	2012.06.27~06.30	임형석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금융안정위원회(FSB) LEI 이행 그룹(Implementation Group) 회의 참석	₩7,009,500	$439	$312	$140
	카자흐, 우즈벡	2012.07.02~07.07	박정훈	글로벌금융과	과장	카자흐 및 우즈벡 금융당국간 협력	₩1,721,000	$548	$354	$180
	인니	2012.07.11~07.13	박미리	글로벌금융과	주무관	한·인니 CEPA 제1차 협상 참석	₩1,288,300	$77	$111	$103
	뉴욕	2012.07.24~07.28	박정훈	글로벌금융과	과장	금융안정위원회(FSB) LEI 이행 그룹(Implementation Group) 회의 참석	₩2,590,800	$528	$405	$150
	라오스	2012.07.31~08.03	나혜영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라오스 경제발전정책 공유사업(KSP) 고위정책결정자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1,625,000	$150	$148	$120
	탄자니아,케냐	2012.08.14~08.20	정은보 서재홍	글로벌금융과	사무처장 서기관	탄자니아 및 케냐 금융당국간의 협력 강화	₩11,337,400	$920	$696	$420
	중국	2012.08.21~08.23	서재홍 박미리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주무관	한·중 FTA 제3차 협상 참석	₩826,000	$336	$243	$168
	워싱턴	2012.08.29~09.01	박정훈	글로벌금융과	과장	금융안정위원회(FSB) OTC Derivatives 워킹그룹 회의 참	₩2,429,200	$352	$324	$120
	러시아	2012.09.03~09.07	임형석 나혜영 오윤정	글로벌금융과 자본시장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사무관	금융안정위원회(FSB) LEI 이행 그룹(Implementation Group) 회의 참석	₩9,856,900	$1,725	$1,345	$475
	미얀마	2012.09.13~09.16	이상제 박정훈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과장	미얀마와의 금융협력방안 논의	₩3,044,800	$350	$392	$280
	런던	2012.09.25~09.28	임형석			금융안정위원회(FSB) 규제감독 협력상임위(SCSRC) 회의 참석	₩5,674,900	$446	$428	$140
	우즈벡	2012.09.28~10.01	김석동 이병래 박정훈 손주형 서재홍 유종그	글로벌금융과 위원장실 글로벌금융과 대변인실	위원장 대변인 과장 비서관 서기관 계약직	금융위원장 우즈베키스탄 출장	₩13,956,600	$2,232	$1,760	$844
	도쿄	2012.10.09~10.11	추경호 박정훈 서재홍 영재희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부위원장 과장 서기관 사무원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2,841,500	$1,792	$1,167	$408
	브뤼셀, 바젤	2012.10.15~10.19	박정훈	글로벌금융과	과장	한-EU FTA 무역위원회 회의 및 금융안정위원회(FSB) LEI 이행 그룹 회의 참석	₩3,615,000	$411	$295	$150
	런던	2012.10.28~11.01	임형석		국제협력관	금융안정위원회(FSB) CBCM(Cross-border Crisis Management) 회의 참석	₩7,458,100	$669	$535	$175
	멕시코	2012.11.02~11.07	서재홍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2,637,100	$411	$354	$180
	몽골 울란바타르	2012.11.07~11.10	이병래		대변인	몽골 당국 간 금융협력 강화 및 지식공유사업(KSP) 논의	₩598,700	$237	$196	$140
	캐나다 토론토	2012.11.09~11.13	이상제 유성재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캐나다 국제지배구조혁신센터(CIGI) 주최 컨퍼런스 참석	₩2,695,700	$274	$790	$350
	필리핀	2012.11.21~11.25	박정훈	글로벌금융과	과장	필리핀 금융당국과의 금융협력 및 KSP 사업 관련 논의를 위한	₩722,000	$300	$185	$150
	홍콩	2012.11.26~11.30	임형석 윤동윤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홍콩 IR 및 FSB LEI 이행그룹 회의 참석	₩2,502,800	$1,244	$778	$265
	뉴욕	2012.11.28~12.01	이상제 양병권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금융시장분석과	FSB 운영위원회	₩10,617,900	$458	$856	$280
	이태리,독일,스페인	2013.01.01~01.09	임형석		국제협력관	국회정무위 유럽출장 동행	₩7,400,300	$1,120	$702	$315
	벨기에 브뤼셀	2013.01.20~01.24	이상제		상임위원	아시아 유럽 경제포럼 참석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495	$200
	캐나다 토론토	2013.01.23~01.27	임형석		국제협력관	FSB LEI 규제감독위원회 회의 참석	₩10,051,800	$320	$390	$175
	스위스 취리히	2013.01.26~01.30	이상제 나혜영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FSB 총회 참석	₩9,291,000	$1,032	$790	$350
	카자흐스탄 알마티	2013.01.30~02.02	김석동 이병래 박정훈 손주형 유성재 유종그	글로벌금융과 위원장실 글로벌금융과 대변인실	위원장 대변인 과장 비서관 사무관 계약직	금융위원장 카자흐스탄 출장	₩12,636,000	$2,232	$1,760	$844
	베트남, 캄보디아	2013.02.05~02.10	추경호 서재홍 조대성 박미옥	글로벌금융과 부위원장실	부위원장 서기관 사무관 서기관	부위원장 베트남,캄보디아 출장	₩5,416,880	$1,423	$1,054	$720
	런던	2013.03.03~03.06	임형석		국제협력관	금융안정위원회(FSB) 규제감독 협력상임위(SCSRC) 회의 참석	₩7,406,000	$446	$428	$140
	파리	2013.03.11~03.15	임형석		국제협력관	금융안정위원회(FSB) LEI 규제감독위원회(ROC,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 회의	₩6,357,100	$669	$535	$175
	제네바	2013.03.19~03.22	서재홍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WTO/DDA 금융서비스위원회 회의 참석	₩2,864,000	$274	$236	$120
	쿠알라룸푸르	2013.03.27~03.29	이상제 류근하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FSB 아시아지역협의체(RCG) 참석	₩3,071,700	$230	$348	$210
	워싱턴 D.C.	2013.04.17~04.21	서재홍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	₩2,240,300	$528	$405	$150
	중국 하르삔	2013.04.26~04.27	서재홍 박미리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주무관	한중 FTA 5차 협상	₩1,110,000	$168	$162	$112
	싱가포르	2013.05.08~05.11	임형석		국제협력관	FSB SIE 회의 참석	₩2,249,700	$320	$312	$140
	워싱턴 D.C.	2013.05.20~05.24	임형석 이진호 최치연 류근하	금융제도팀 은행과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IMF/WB FSAP 회의	₩14,213,700	$2,253	$1,750	$625
	베트남 하노이	2013.05.22~05.25	서재홍 박미리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주무관	한·베트남 FTA 제2차 협상 참석	₩2,978,440	$518	$500	$344
	스위스 바젤	2013.05.23~05.26	이상제 나혜영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금융안정위원회(FSB) ReSG(Steering Group on Resolution) 회의 참석	₩8,196,000	$688	$632	$280
	스위스 바젤	2013.05.29~05.31	김홍식	글로벌금융과	과장	금융안정위원회(FSB) EMDE(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momies) 회의 참석	₩2,405,600	$137	$177	$90
	미국 뉴욕	2013.06.09~06.12	임형석		국제협력관	금융안전위원회(FSB) 규제감독 협력상임위(SCSRC) 회의 참석	₩7,877,300	$223	$428	$140
	벨기에 브뤼셀	2013.06.11~06.14	서재홍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한·EU FTA 서비스 무역위원회 회의 참석	₩3,444,100	$274	$236	$120
	미얀마	2013.06.18~06.21	이상제 김홍식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과장	제1차 한·미얀마 경제공동위원회 참석	₩1,509,400	$275	$257	$250
	스위스 바젤	2013.06.22~06.26	이상제 서재홍 나혜영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서기관 사무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Plenary) 회의 참석	₩15,554,500	$1,443	$1,085	$500
	워싱턴 D.C.	2013.06.26~06.28	김홍식 현지은 김윤회	글로벌금융과 은행과 금융시장분석과	과장 사무관 사무관	IMF/WB FSAP 은행핵심준칙(BCP) 평가팀 및 스트레스 테스트 팀과의 회의	₩8,987,100	$879	$891	$330
	인도네시아 발리	2013.7.19~2013.7.23	서재홍 박미리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주무관	한·인니 CEPA 제4차 협상 참석	₩3,277,000	$504	$405	$280
	터키 앙카라	2013.8.19~2013.8.24	서재홍	글로벌금융과	서기관	한·터키 FTA 서비스 협상 참석	₩2,746,200	$364	$264	$180

북경, 싱가포르	2013.9.4~2013.9.7	정찬우 김홍식 고철수 조성조 양수연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팀 부위원장실 금융감독원	부위원장 과장 사무관 주무관 사무원	한중 은행산업 발전방향 포럼 참석 및 중국-싱가포르 금융당국 고위급 면담	₩8,910,700	$2,290	$1,273	$618
미국 뉴욕	2013.9.11~2013.9.15	서재홍 현지은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FSB SIE 회의 참석	₩10,200,500	$798	$752	$325
인도 뉴델리	2013.9.25~2013.9.29	서재홍		국제협력관	금융안정위원회(FSB) LEI 규제감독위원회(ROC,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 회의	₩2,830,600	$480	$390	$175
홍콩, 발리, 시드니	2013.9.28~2013.10.5	신제윤 이상제 김홍식 이한샘 유성재 한송희 양수연	글로벌금융과 위원장실 글로벌금융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위원장 상임위원 과장 사무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원	금융위원장 국제정책자문그룹 회의(IPAG) 참석 및 해외 금융당국간 협력 강화	₩36,196,600	$4,267	$2,926	$1,408
미국 워싱턴 DC	2013.10.2~2013.10.5	서재홍 현지은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금융안정위원회(FSB) 규제감독협력상임위(SCSRC) 회의 참석	₩9,884,700	$798	$752	$260
미국 워싱턴 DC	2013.10.13~2013.10.17	이상제 류근하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금융안정위원회(FSB) 정리체계 운영그룹회의(ReSG) 및 한-미 금융협력 고위회의 참석	₩2,300,200	$0	$1,469	$470
우즈베키스탄	2013.10.27~2013.10.30	이상제 김홍식 박정훈 신윤석	글로벌금융과 보험과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과장 과장 주무관	한.우즈벡 보험산업 발전 포럼 참석	₩6,983,900	$1,208	$1,064	$504
일본 동경	2013.10.29~2013.10.30	서재홍		국제협력관	금융안정위원회(FSB) 아시아 지역협의체(RCG) 회의 참석	₩592,900	$223	$214	$70
영국 런던	2013.11..4~2013.11.8	정찬우 김홍식 류근하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부위원장 과장 사무관	영국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논의	₩11,808,900	$2,223	$1,448	$490
러시아 모스크바	2013.11.7~2013.11.10	신제윤 서재홍 김홍식 강영수 현지은	글로벌금융과 위원장실 글로벌금융과	위원장 국제협력관 과장 비서관 사무관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19,236,400	$2,444	$2,144	$740
인도 뉴델리	2013.12.4~2013.12.7	현지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참석	₩1,535,000	$411	$295	$150
스위스 바젤	2013.12.15~2013.12.18	현지은 공운정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주무관	금융안정위원회(FSB) LEI 규제감독위원회(ROC) 참석	₩4,389,200	$780	$540	$280
베트남, 인도	2014.1.5~2014.1.10	이명호 신윤석	자본시장국 글로벌금융과	부이사관 주무관	한-인도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베트남 증권거래소 방문	₩6,161,000	$856	$486	$280
중국(시안)	2014.1.8~2014.1.10	서재홍 이태훈 양수연	국제협력팀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관 국제협력팀장 사무원	한-중 FTA 제9차 협상 참석	₩2,587,800	$560	$417	$273
스위스, 몰도바, 독일	2014.1.12~2014.1.19	이상제 유성재	글로벌금융과	상임위원 사무관	FSB 회의 참석 및 몰도바 중앙은행과의 MOU 체결	₩10,967,000	$1,726	$1,084	$560
중국(홍콩)	2014.1.27~2014.1.29	서재홍		국제협력관	금융안정위원회(FSB) LEI 규제감독위원회(ROC) 참석	₩838,800	$446	$321	$105
미국(로스앤젤레스)	2014.2.2~2014.2.6	서재홍 현지은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제26차 한미재계회의 분과위원회 합동회의 참석	₩8,611,800	$0	$940	$325
스위스(제네바)	2014.2.19~2014.2.23	손성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협상 참석	₩3,659,500	$411	$295	$150
중국(홍콩)	2014.2.27~2014.3.1	탁윤성	글로벌금융과	과장	IMF-HKMA 공동주최 컨퍼런스 참석	₩546,100	$176	$243	$90
미국(뉴욕)	2014.3.5~2014.3.8	서재홍 현지은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FSB 규제감독협력상임위(SCSRC) 회의 참석	₩8,277,400	$798	$752	$260
프랑스(파리)	2014.3.15~2014.3.20	고철수	국제협력팀	사무관	OECD 한국경제검토회의(EDRC) 참가	₩2,130,600	$880	$486	$180
미국(워싱턴 D.C)	2014.3.18~2014.3.21	서재홍 현지은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FSB LEI 규제감독위원회 집행위원회(EC; Executive Committee) 참석	₩9,813,900	$798	$752	$260
영국(런던)	2014.03.30.~2014.04.02.	신제윤 서재홍 탁윤성 이한샘 태현수 현지은 양수연	글로벌금융과 위원장실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금융감독원	위원장 국제협력관 과장 비서관 사무관 사무관 사무원	FSB 총회 참석 및 한-영 금융협력포럼 개최	₩16,910,200	$5,124	$3,004	$1,258
터키(앙카라)	2014.04.02.~2014.04.05	손성은 양수연	글로벌금융과 금융감독원	사무관 사무원	한-터키 FTA 서비스 협상 참석	₩4,929,300	$646	$317	$198
캐나다(토론토)	2014.04.13.~2014.04.17.	서재홍		국제협력관	금융안정위원회(FSB) SIE 회의 참석	₩8,054,700	$480	$390	$175
필리핀(세부)	2014.04.23.~2014.04.26.	서재홍		국제협력관	FSB 아시아 지역협의체(Regional Consultative	₩1,573,600	$158	$147	$140
스위스(제네바)	2014.04.28.~2014.05.01.	손성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협상 참석	₩3,017,500	$274	$236	$120
미국(뉴욕)	2014.04.28.~2014.05.04.	탁윤성	글로벌금융과	과장	금융안정위원회(FSB) ReSG(Steering Group on Resolution) 회의	₩2,294,600	$528	$405	$180
미얀마(얀곤)	2014.05.14.~2014.05.17.	탁윤성 태현수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과장 사무관	한-미얀마 정책금융포럼 개최를 위한 사전답사	₩2,013,320	$300	$296	$240
중국(메이샨)	2014.05.25.~2014.05.29.	손성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한-중 FTA 제11차 협상 참석	₩1,135,000	$273	$176	$150
미얀마(얀곤)	2014.06.01.~2014.06.04.	신제윤 탁윤성 윤현철 태현수 이주원 윤종규 양수연	글로벌금융과 위원장실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대변인실 금융감독원	위원장 과장 비서관 사무관 파견(과장) 계약직 사무원	한-미얀마 금융포럼 개최	₩6,786,100	$1,276	$1,144	$912
미국(워싱턴 D.C)	2014.06.02.~2014.06.05.	서재홍 현지은	글로벌금융과	국제협력관 사무관	금융안정위원회(FSB) 규제감독협력상임위(SCSRC) 회의 참석	₩9,784,500	$798	$752	$260
터키(이스탄불)	2014.06.08.~2014.06.11.	서재홍		국제협력관	금융안정위원회(FSB) LEI 규제감독위원회(ROC) 참석	₩6,060,000	$224	$232	$140
스위스(바젤)	2014.06.21.~2014.06.25.	탁윤성	글로벌금융과	과장	금융안정위원회(FSB) CBCM 그룹 회의 참석	₩2,076,400	$411	$295	$150
스위스(제네바)	2014.06.22.~2014.06.27.	손성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협상 참석	₩2,954,700	$548	$295	$180
스위스(바젤)	2014.06.29.~2014.07.02.	서재홍		국제협력관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회의	₩7,283,500	$320	$312	$140
몽골(울란바토르)	2014.07.17 ~ 2014.07.20	정찬우 이병래 이동훈 조성조	금융시장분석과 보의원장실	부위원장 국장 과장 주무관	몽골과의 금융협력 성과 점검 및 협력 파트너십 유지·강화	₩4,000,400	$636	$567	$564
스위스(제네바)	2014.07.23 ~ 2014.07.27	손성은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복수국간서비스협상(TISA) 회기간 회의 참석	₩2,494,800	$348	$295	$150
베트남	2014.07.30 ~ 2014.08.02	손성은 박미리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사무관	한-베트남 FTA 서비스 협상 참석	₩1,628,200	$548	$264	$240
중국(베이징)	2014.07.31 ~ 2014.07.31	탁윤성 이주원	글로벌금융과 글로벌금융과	과장 과장(산은 파견)	RQFII 對中國 투자준비 관련 중국 당국과의 면담	₩1,104,600	$0	$108	$56
스위스(바젤)	2014.08.05 ~ 2014.08.08	탁윤성	글로벌금융과	과장	금융안정위원회(FSB) CBCM(Cross-Border Crisis Management) 회의 참석	₩2,234,100	$274	$177	$120

	중국(베이징)	2014.08.18 ~ 2014.08.20	손성은 박미리	글로벌금융과	사무관 사무관	한-중 FTA 회기간 협상 참석	₩1,056,600	$548	$236	$180
국제협력팀	북경	2012.05.15~2012.05.17	양병권	국제협력팀	사무관	국제 녹색금융포럼 참석	₩570,700	$0	$177	$90
	시드니	2012.07.01~2012.07.04	석선영	국제협력팀	사무관	현지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 방문을 통해 호주 금융인력 양성	₩1,851,300	$182	$176	$120
	홍콩	2012.09.11~2012.09.13	안형익	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장	12년 서울 금융중심지 해외IR	₩619,600	$300	$243	$90
	런던	2012.12.10~2012.12.13	안형익	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장	런던 금융중심지 사례조사	₩2,243,000	$352	$324	$120
			윤동욱	국제협력팀	사무관		₩2,243,000	$352	$324	$120
	중동	2013.01.08~2013.01.16	안형익	국제협력팀	국제협력팀장	13년 중동금융협력을 위한 Roundtable 등 행사참여	₩2,100,100	$959	$531	$270
	상해	2013.04.23~2013.04.24	임형석		국제협력관	서울시 금융중심지IR	₩981,300	$112	$116	$70
			윤동욱	국제협력팀	사무관		₩586,800	$91	$88	$60
	호주 시드니, 멜버른	2013. 9. 21(토) ~ 27(금)	이태훈	국제협력팀	서기관(팀장)	서울 금융중심지 호주 IR 참석	₩1,823,000	$680	$308	$210
			전희규	자산운용과	사무관	및 발표, 호주 자산운용사 방문	₩1,823,000	$680	$308	$210
	중국 (상해)	2014.03.21(금) ~ 25(화)	고철수	국제협력팀	사무관	상해 Job Fair 참가	₩746,600	$182	$132	$90
금융서비스국	러시아 모스크바	2012.04.09~2012.04.13	정종식	금융소비자과	사무관	APEC 전문가 워크숍 참석	₩2,028,200	$450	$405	$150
	프랑스 파리	2012.06.03~2012.06.10	마순	보험과	사무관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참석	₩2,471,500	$900	$648	$240
	태국 홍콩	2012.06.09~2012.06.13	배준수	은행과	과장	태국, 홍콩 금융당국간 전략적 파트너쉽 구축 등	₩1,417,800	$449	$294	$150
	브라질 시카고	2012.06.15~2012.06.23	정지원	금융서비스국	국장	IIS 및 시카고 한인경제인협회 세미나 참석	₩12,901,800	$960	$624	$280
	브라질 뉴욕	2012.06.15~2012.06.24	제종옥	보험과	사무관	IIS 참석 및 미국 보험시장 조사	₩3,588,800	$764	$619	$270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2012.06.25~2012.06.29	안유진	금융소비자과	사무관	APEC 주관 컨퍼런스 참석	₩2,625,900	$348	$295	$150
	미국 뉴욕	2012.07.01~2012.07.07	송희경 장보영	서민금융과 서민금융과	사무관 주무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본회의 참석	₩5,198,000	$1,572	$1,036	$392
	호주	2012.08.07~2012.08.11	박정훈 정종식	글로벌금융과 금융소비자과	과장 사무관	한.호주 금융당국간 협력강화방안 논의 및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법제 및 제도현황 등 조사	₩3,829,800	$822	$440	$300
	스위스 벨기에 영국	2012.09.01~2012.09.08	전치활	보험과	사무관	환경배상책임보험의 해외운영 사례검토	₩2,834,700	$730	$516	$240
	미국 일본	2012.09.22~2012.09.28	김진홍	전자금융팀	팀장	전자금융 정책 및 감독 선진화를 위한 사례조사	₩2,922,200	$750	$567	$210
	미국 워싱턴	2012.10.09~2012.10.14	심인숙 손용민	금융위 보험과	비상임위원 사무관	IAIS 연차총회 참석	₩10,620,900	$2,532	$1,284	$420
	베트남 하노이	2012.11.26~2012.11.29	이해선 이동욱	금융위 중소금융과	중소금융정책관 사무관	동아시아 금융안정 컨퍼런스 참석 및 베트남 금융정책 협의	₩2,880,200	$344	$306	$195
	스위스	2013.03.12~2013.03.16	권기순	보험과	사무관	FSB Workshop 참석 및 IAIS, IADI 관계자 면담	₩2,247,400	$470	$295	$150
	방콕	2013.05.19~2013.05.22	이병래 위형준	금융위 보험과	금융서비스국장 사무관	Global Forum on Remittances 2013 참석	₩3,003,000	$609	$408	$260
	프랑스 파리	2013.06.02~2013.06.08	심현준	보험과	주무관	제91차 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참석	₩2,212,600	$775	$469	$182
	몽골	2013.08.15~2013.08.17	이병래 정종식	금융위 은행과	금융서비스국장 사무관	한-몽골 금융협력 MOU 후속조치 논의 및 몽골 예금보험공사 창립기념식 참석	₩2,215,200	$308	$258	$195
	영국 런던	2013.10.20~2013.10.27	박재오	전자금융과	주무관	런던 집합연수 참여 및 BOE, FCA, PRA 등 관계기관 면담	₩2,374,900	$930	$536	$208
	프랑스	2013.12.01~2013.12.04	박주영	보험과	연금팀장	제31차 사적연금작업반 회의 참	₩2,869,100	$352	$324	$120
	홍콩	2013.12.15~2013.12.17	이은미	은행과	주무관	홍콩 사모투자 관련 시장흐름 등 동향파악 및 투자유치 사례 등 성공요인 분석	₩601,400	$310	$201	$78
	몽골	2013.12.22~2013.12.25	이병래 이범헌	금융위 은행과	금융서비스국장 주무관	한-몽골 자본, 보험시장 분야 금융협력 강화	₩1,154,800	$450	$316	$244
	미국 워싱턴	2014.03.12~2014.03.17	최치연	은행과	사무관	한-미 FATCA 협상	₩2,189,390	$704	$486	$180
	미국 워싱턴	2014.03.19~2014.03.23	이동엽	은행과	금융분쟁대응팀장	한-벨기에 투자협정 분쟁 관련 포럼 및 관계부처 회의 참석	₩2,190,900	$528	$405	$150
중소서민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2013.5.29~2013.6.2	최성규	중소금융과	사무관	세계저축은행협회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참석	₩649,400	$231	$161	$120
	체코 (프라하)	2013.5.14~2013.5.19	최정운	금융소비자과	주무관	INFE Meeting 및 OECD 금융교육 컨퍼런스 참석	₩2,531,700	$195	$148	$104
	오스트리아 (비엔나)	2013.7.20~2013.7.24	김영대 박주영	서민금융과	사무관 주무관	제46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참석	₩5,075,000	$663	$540	$280
	일본 (동경)	2013.9.4~2013.9.7	김태훈	서민금융과	사무관	일본 금융당국의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조사	₩594,400	$450	$324	$120
	프랑스 (파리)	2013.10.27~11.2	윤영은 민인영	금융소비자과	과장 사무관	INFE 총회 및 워크숍과 정책 심포지엄 참석	₩4,943,200	$2,112	$972	$360
	일본 (동경)	2013.11.28~11.30	이해선 윤현철	중소금융과	국장 사무관	일본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 정책 및 모범사례 연구	₩1,630,100	$707	$564	$195
	홍콩	2012.03.07~09	김성진	자산운용과	사무관	국제금융정책포럼 참석	₩691,000	$300	$243	$90
	프랑스 파리	2012.04.17~22	윤혜원	자본시장과	주무관	제22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참석	₩2,386,400	$528	$335	$130
	캄보디아 프놈펜	2012.04.17~19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캄보디아 증권시장 출범식 참석	₩1,991,000	$85	$122	$80
			이한샘	자본시장과	사무관		₩927,000	$64	$74	$60
	중국 북경	2012.05.13~17	진웅섭	자본시장국	국장	2012년 IOSCO 연차총회 참석	₩1,319,600	₩1,673,320 (₩1,160/$)	$390	$175+₩10,000 (비자발급)
			김승민	자본시장과	사무관		₩802,300		$295	$150+₩10,000 (비자발급)
	프랑스 파리	2012.06.03~08	조성조	자본운용과	주무관	제89차 OECD IPPP, IOPS 관련 회의 참석	₩2,267,600	$422	$402	$156+₩14,920 (여행자보험)
	프랑스 파리	2012.06.03~06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OECD 회의 참석	₩6,623,300	₩1,550,200 (₩1,200/$)	$532	$160
			오유정	자본시장과	사무관		₩2,424,200		$324	$120
	싱가포르, 태국 방콕	2012.06.24~28	김정각	자본운용과	과장	제5차 APEC 펀드 상호인증 워크숍 참석	₩951,000	$626.5 (₩738,600)	$206	$120
			김성진	자본운용과	사무관		₩951,000		$206	$120
	러시아 모스크바	2012.09.03~07	오유정	자본시장과	사무관	금융안정위원회(FSB) LEI 이행그룹 회의 참석	₩1,902,500	$767.27 (₩884,667)	$405	$150
	필리핀 마닐라	2012.09.04~06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ADB 한국자본시장 세미나 참석	₩1,509,000	$526	$183	$120
			국주성	공정시장과	사무관		₩568,400		$111	$90
	스위스 인터라켄	2012.09.04~08	김학수	자본시장과	과장	제33회 SFOA 국제파생상품시장 포럼 참석	₩2,137,300	$348	$295	$150+₩373,525 (철도우임)
	홍콩	2012.09.24~25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한국기관투자자포럼(KIIF) 참석	₩1,402,000	$282	$266	$80
	칠레 산티아고	2012.10.21~26	조성조	자산운용과	주무관	IOPS 연차총회 및 OECD/IOPS 글로벌 포럼 참석	₩3,956,300	$154 (₩172,780)	$111	$78+₩35,970(비자 및 여행자보험)
	태국 방콕, 일본 도쿄	2012.11.28~12.1	김용범	자본시장국	국장	IOSCO APRC 및 ADBI 회의 참석	₩3,282,500	$1,163 (₩1,285,530)	$330	$140
			신장수	자산운용과	사무관		₩2,579,700		$250	$120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	2012.12.3~12.6	김정각	자산운용과	과장	제6차 fund passport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	₩1,643,300	$364 (₩401,120)	$147	$90
			이한샘	자산운용과	사무관		₩1,643,300		$147	$90
	홍콩	2013.01.22~2013.01.24	김홍식	공정시장과	과장	IFRS Foundation Trustees Meeting 참석	₩648,400	$300	$243	$90
	루마니아(부카레스트)	2013.02.27~2013.03.03	손성은	자산운용과	사무관	IOPS 전문위원회 및 세미나 참석	₩2,408,800	$410	$176	$120+₩17,800
	미국(워싱턴 DC)	2013.03.10~2013.03.13	김학수	자본시장과	과장	World Bank 및 SEC 방문	₩2,439,500	$352 (₩453,310)	$324	$134

자본시장국	프랑스(파리)	2013.04.14~2013.04.18	오유정	자본시장과	사무관	제24차 OECD 기업지배구조위원회 참석	₩2,415,700	$450	$405	$150
	터키(이스탄불)	2013.05.05~2013.05.09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청소년 금융 국제회의 참석	₩6,646,900	$625	$360	$200
			김승민	공정시장과	사무관		₩2,068,700	$409	$220	$150
	호주(퍼스)	2013.05.08~2013.05.12	김광일	자산운용과	사무관	Fund Passport Working Group Meeting 참석	₩3,662,000	$231	$176	$120
	프랑스(파리)	2013.06.02~2013.06.07	신현준	핵심정책추진과제지원단	부이사관	제30차 WPPP, IOPS 관련 회의 참석	₩2,213,400	$979	$486	$180+₩22,400
			이인규	자산운용과	주무관		₩2,213,400	$902	$402	$156+₩26,770
	터키(이스탄불)	2013.06.17~2013.06.22	정석우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터키 은행감독청(BRSA) 및 자본시장위원회(CMB)청 컨퍼런스 참석	₩6,625,500	$614.34 (₩642,940)	$432	$240
			송희경	자본시장과	사무관		₩2,703,700	$614.34 (₩642,940)	$264	$180
	대만(타이베이)	2013.06.26~2013.06.27	김진홍	자산운용과	과장	제2차 아시아 지역 펀드 패스포트 워킹그룹 회의 및 제7차 APEC 워크숍 참	₩444,000	$116	$118	$60
		2013.06.25~2013.06.29	김광일	자산운용과	사무관		₩543,400	$464	$295	$150
	중국 북경	2013.08.29~2013.08.31	이명호	자본시장조사심의관	국장	중국자본시장연구회 공동세미나 참석	₩557,000	$232 (₩264,016)	$177 (₩201,426)	$90+₩35,000(비자신청)
			구의정	공정시장과	사무관		₩557,000	$232 (₩264,016)	$177 (₩201,426)	$90+₩35,000(비자신청)
	룩셈부르크, 프랑스 파리	2013.09.14~2013.09.21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제38회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 연차총회 참석 및 프랑스 금융시장기관(AMF) 방문	₩7,563,400	$2,976,5 (₩3,266,920) *숙박비2/1추가정산	$860 (₩948,580)	$320+₩272,949(철도운임) (₩514,189)
			손성은	자산운용과	사무관		₩3,067,700		$516 (₩569,148)	$240+₩249,469(철도운임) (₩514,189)
	인니 빌리	2013.09.18~2013.09.21	김진홍	자산운용과	과장	APEC 펀드 패스포트 공동의향서 서명식 참석	₩1,279,500	$182 (₩290,370)	$176 (₩193,600)	$120 (₩132,000)
			조대성		사무관		₩1,279,500	$182 (₩290,370)	$176 (₩193,600)	$120 (₩132,000)
	홍콩	2013.11.19~2013.11.21	유재훈	증선위	상임위원	아시아증권금융산업시장협회(ASIFMA) 연례총회	₩1,390,100 (ASIFMA부담)	$1,083 (₩1,175,055) (ASIFMA부담)	$399 (₩432,910) *기월조정관실 예산	$120 (₩130,200) *기월조정관실 예산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	2014.02.26~2014.03.02	정현미	자산운용과	주무관	IOPS전문위원회 및 세미나 참석	₩3,688,000	$1,048 (₩496,760)	$196 (₩213,640)	₩29,540
	쿠알리룸푸르	2014.03.03~2014.03.07	이호영	자산운용과	사무관	펀드패스포트 워킹그룹회의 및 APEC워크숍 등 참석	₩1,156,600	$1,080 (₩482,540)	$220 (₩239,960)	
	필리핀 마닐라	2014.03.16~2014.03.19	고선영	자본시장과	사무관	CSIF 및 ABMF 회의 참석	₩576,400	$214 (₩232,652)	$148 (₩160,876)	
	워싱턴	2014.04.06~2014.04.11	홍승미	공정시장과	주무관	IFIAR 제14차 워싱턴 정기총회 참석	₩2,278,000	$841 (₩912,235)	$156 (₩169,104)	$402 (₩435,769)
	스페인 마드리드	2014.06.10~2014.06.15	이현철	자본시장국	국장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국제회계기준(IFRS) 감독이사회 회의 참석	₩6,484,100	$1,188 (₩1,235,520)	$468 (₩486,720)	$210 (₩218,400)
			황기정	자본시장과	사무관		₩2,109,900		$354 (₩368,160)	$180 (₩187,200)
공자위사무국	워싱턴DC	2012.3.27~2012.3.31	김용범	공자위사무국	국장	미국 공적자금 투입,회수사례 및 Dodd-Frank법 시행에 따른 금융회사 합병 관련 규제변화	₩7,533,600	$1,004	$535	$175
			송병관		사무관		₩2,255,200	$806	$405	$164
	싱가폴	2013.9.8~2013.9.10	손병두	공자위사무국	국장	우리투자증권 주최 기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우리금융 민영화의 의미를 설명하고 해외투자자와	₩2,260,200	$320	$312	$140
			김원태		사무관		₩787,000	$274	$236	$120
	프랑스	2012.01.08~2012.01.15	이천세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장	FATF 제23기 특별총회 참석	₩11,383,900	$2,910	$2,175	$750
			이귀웅	지획행정실	사무관					
			차정헌	기획행정실	사무관					
	필리핀	2012.01.29~2012.02.05	이정하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	에그몽 그룹 실무회의 참석	₩2,726,400	$1,512	$987	$812
			금종익	기획행정실	사무관					
			고기성	심사분석2과	사무관					
			정봉균	심사분석1과	주무관					
	프랑스	2012.02.12~2011.02.19	박재식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FATF 제23기 2차 총회 참석	₩15,804,100	$3,612	$2,821	$1,008
			송재근	제도운영과	제도운영과장					
			이귀웅	기획행정실	사무관					
			김병국	기획행정실	사무관					
			변원정	심사분석실	관세주사					
	싱가포르	2012.04.15~2012.04.21	황금천	심사분석실	정보분석팀장	FATF WGEI 평가방법론 작성실무회의 참석	₩1,643,600	$1,160	$881	$420
			이귀웅	기획행정실	사무관					
	말레이시아	2012.04.24~2012.04.29	신션묵	심사분석2과	심사분석2과장	APG 실무회의 참석	₩1,640,200	$616	$440	$300
			남택중	기획행정실	사무관					
	미얀마, 태국, 베트남	2012.05.27~2012.06.01	박재식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동남아 후발국 기술지원 및 MOU체결	₩4,567,700	$1,640	$642	$420
			김병국	기획행정실	사무관					
	미얀마	2012.05.28~2012.06.01	금종익	기획행정실	사무관	동남아 후발국 기술지원	₩4,453,800	$437	$555	$450
			차정헌	기획행정실	사무관					
			이동은	기획행정실	에디터					
	이탈리아	2012.06.13~2012.06.23	권기대	심사분석실	심사기획팀장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제23기 3차 총회 및 OECD Tax and Crime Forum 2012 참가	₩1,948,700	$1,120	$858	$385
	이탈리아	2012.06.16~2012.06.24	박재식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FATF 제23기 3차 총회 참석	₩11,837,300	$3,354	$2,109	$1,000
			김근익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장					
			박재형	제도운영과	담당					
			이귀웅	기획행정실	사무관					
			이동은	기획행정실	에디터					
	러시아	2012.07.07~2012.07.15	이천세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장	제20차 에그몽 연차총회 참석	₩12,213,500	$4,016	$2,484	$1,170
			송원영	심사분석실	사무관					
			김효신	제도운영과	사무관					
			차정헌	기획행정실	사무관					
	호주(브리즈번, 시드니)	2012.07.14~2012.07.21	박재식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제15차 APG 연차총회 참석 및 경제전문가 면담	₩8,867,500	$2,145	$1,004	$630
			남택중	기획행정실	사무관					
			이동은	기획행정실	에디터					
	호주(브리즈번)	2012.07.14~2012.07.21	임병호	심사분석1과	심사분석1과장	제15차 APG 연차총회 참석	₩4,611,700	$2,046	$704	$480
			이귀웅	기획행정실	사무관					
	프랑스	2012.09.02~2012.09.08	이귀웅	기획행정실	사무관	FATF 평가방법론 개정 실무회의 참석	₩2,817,200	$822	$567	$210
	스페인	2012.09.12~2012.09.16	윤영은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	FATF WGTM 회의 참석	₩9,144,400	$806	$590	$300
			차정헌	기획행정실	사무관					
	태국	2012.09.30~2012.10.07	김은영	심사분석3과	주무관	ILEA(SAC) 교육 참석	₩1,121,000	$462	$296	$208
	프랑스	2012.10.13~2012.10.20	이명순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장	FATF 제24기 1차 총회 참석	₩14,305,300	$2,674	$2,288	$815
			황금천	심사분석실	전략분석팀장					
			남택중	기획행정실	사무관					
			신상록	기획행정실	사무관					
	홍콩	2012.11.04~2012.11.10	김현영	심사분석3과	경감	Financial Investigation Course 참석	₩1,258,900	$2,457	$938	$364
			손성훈	심사분석1과	경정					

금융정보분석원	베트남	2012.11.18~2012.11.24	배성범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장	APG 유형론 및 역량강화 워크샵 참석	₩5,227,400	$1,648	$1,379	$882
			신승희	심사분석실	심사기획팀장					
			김춘규	제도운영과	사무관					
			강석진	기획행정실	주무관					
			오동균	심사분석실	담당					
	세네갈	2012.11.24~2012.12.02	김수희	심사분석3과	심사분석3과장	FATF-GIABA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유형에 대한 전문가 회의 참석	₩11,959,800	$1,148	$1,188	$810
			전영성	심사분석3과	사무관					
			김일권	심사분석1과	경정					
	룩셈부르크	2012.12.09~2012.12.16	윤영은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장	FATF WGEI 회의 참석	₩15,368,700	$4,335	$1,258	$960
			김정현	기획행정실	사무관					
			이수진	기획행정실	에디터					
			이귀웅	기획행정실	사무관					
	홍콩	2013.01.13~2013.01.18	김정현	기획행정실	사무관	FATF ICRG Asia/Pacific Regional Review Group 회의 참석	₩1,296,800	$1,760	$972	$360
			이민섭	제도운영과	사무관					
	브뤼셀	2013.01.21~2013.01.27	윤영은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FIU원장 및 실무자회의 참석	₩13,930,690	$4,120	$1,259	$840
			금종익	기획행정실	사무관					
			임준빈	기획행정실	사무관					
			이수진	기획행정실	에디터					
	파리	2013.02.16~2013.02.24	김정현	기획행정실	사무관	AML/CFT 국제기구(FATF) 제24기 제2차 총회 참가	₩15,299,200	$6,544	$2,873	$1,395
			김현수	기획행정실	사무관					
			윤영은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					
			이귀웅	기획행정실	사무관					
			황금천	심사분석실	전략분석팀장					
	콜롬보	2013.04.03~2013.04.08	김정현	기획행정실	사무관	FATF ICRG 점검대상국(스리랑카) 현지실사	₩1,626,700	$452	$148	$120
	쿠알라룸프르	2013.04.21~2013.04.26	김기재	심사분석2과	심사분석2과장	APG/ASEAN AML/CFT 규제 감독 워크샵 참석	₩3,108,600	$659	$660	$450
			김효신	제도운영과	사무관					
			한은구	기획행정실	사무관					
	린던	2013.04.24~2013.04.27	진웅섭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AML/CFT 이행과제 관련 FATF 민간협력 회의	₩11,203,200	$2,047	$1,330	$400
			이귀웅	기획행정실	사무관					
			이수진	기획행정실	에디터					
	방콕	2013.05.08~2013.05.13	김정현	기획행정실	사무관	FATF 아태지역 RRG 회의 참석	₩872,200	$548	$220	$150
	린던	2013.05.11~2013.05.17	황금천	심사분석실	전략분석팀장	FATF 민간협력회의 참가 및 영국FIU 방문	₩4,796,200	$1,360	$877	$390
			진형구	기획행정실	사무관					
	오슬로	2013.06.15~2013.06.23	탁운성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	제24기 제3차 FATF 총회 참석	₩12,782,900	$5,768	$1,574	$1,080
			이귀웅	기획행정실	사무관					
			윤우근	기획행정실	사무관					
			이수진	기획행정실	에디터					
	남아공화국	2013.06.29~2013.07.08	임준빈	기획행정실	사무관	제21회 에그몽 그룹 총회 참석	₩3,628,100	$1,236	$413	$270
	상하이	2013.07.13 ~ 2013.07.20	진웅섭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APG 총회 참석	₩4,141,000	$4,822	$1,638	$2,059
			탁운성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					
			신승희	심사분석실	심사기획팀장					
			이귀웅	기획행정실	사무관					
			김정현	기획행정실	사무관					
			김도원	심사분석2과	주무관					
			이정하	제도운영과	제도운영과장					
	부탄	2013.09.02 ~ 2013.09.07	강석진	기획행정실	주무관	부탄 AML/CFT 기술지원 관련 출장	₩2,059,100	$334	$150	$191
		2013.09.02 ~ 2013.09.07	탁운성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	부탄 AML/CFT 기술지원 관련 출장	₩4,118,200	$673	$370	$300
			이민섭	제도운영과	사무관					
	말레이시아	2013.09.09 ~ 2013.09.14	김정현	기획행정실	사무관	FATF ICRG 아태지역 RRG회의 참석	₩779,300	$548	$220	$200
	몽골	2013.09.22 ~ 2013.09.27	장철호	심사분석1과	과장	유형론 작업반(Typologies WG) 워크숍 참석	₩1,637,800	$930	$290	$438
			이호식	심사분석2과	주무관					
	파리	2013.10.14 ~ 2013.10.19	진웅섭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FATF 제25기 제1차 총회 참석	₩9,056,300	$5,169	$1,701	$969
		2013.10.11 ~ 2013.10.20	윤우근	기획행정실	사무관					
		2013.10.13 ~ 2013.10.20	이귀웅	기획행정실	사무관					
	워싱턴DC, 뉴욕	2013.11.03 ~ 2013.11.14	윤학식	심사분석실	실장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미국 FIU의 정보활용 실태 조사	안행부 부담	안행부 부담	안행부 부담	안행부 부담
			차정현	심사분석3과	사무관					
			황종규	심사분석1과	주무관					
			김경희	기획행정실	주무관					
	시드니	2013.11.09 ~ 2013.11.16	김정현	기획행정실	사무관	APG 평가자 훈련 참가	₩1,819,000	$822	$352	$305
	북경	2013.11.21 ~ 2013.11.23	탁운성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	DELA-CKGSB 중국금융산업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석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이정하	제도운영과	제도운영과장					
	브루나이	2014.1.4~2014.1.10	진형구	기획행정실	사무관	브루나이의 에그몽 가입후원을 위한 현지실사(on-site)	₩4,650,400	$916	$559	$387
			임준빈	기획행정실	사무관					
	영국	2014.01.12 ~ 2014.03.02	장광호	심사분석2과	경정	영국의 범죄정보 분석 시스템 훈련	안행부 부담	안행부 부담	안행부 부담	안행부 부담
	브뤼셀,린던, 베를린,프라하	2014.1.11~2014.1.18	이명순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장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대비 선진 AML 제도 운용 현황 파악	₩7,777,590	$2,153	$869	$510
			윤우근	기획행정실	사무관					
	하노이	2014.1.14~2014.1.20	김정현	기획행정실	사무관	FATF ICRG Asia/Pacific Regional Review Group 회의 참가	₩753,100	$822	$308	$268
	파리, 부다페스트	2014.2.9~2014.2.21	김충우	심사분석실	심사분석실장	FATF 총회, 에그몽 총회 참가	₩23,505,100	$11,678	$3,277	$1,907
		2014.2.8~2014.2.21	윤우근	기획행정실	사무관					
		2014.2.9~2014.2.21	이귀웅	기획행정실	사무관					
		2014.2.16~2014.2.21	임홍기	심사분석 3과	과장					
		2014.2.10~2014.2.13	진웅섭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장					
	브뤼셀	2014.3.22~2014.3.29	김경관	기획행정실	사무관	FATF(Policy Development Group) 실무회의 참가	₩1,916,800	$1,030	$413	$240
	베이징	2014.4.17~2014.4.19	이태훈	제도운영과	과장	중국금융산업 테크워크 프로그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주최측 부담
	몽골	2014.5.13~2014.5.17	김정현	기획행정실	사무관	FATF 아태지역 RRG 회의 참석	₩573,200	$339	$148	$150
	말레이시아	2014.5.18~2014.5.24	이정봉	심사분석실	전략분석팀장	FinCen 주최 전략분석 워크숍	₩1,540,800	$975	$696	$420
			장원봉	심사분석실	사무관					
	파루(리마)	2014.5.31~2014.6.9	최명수	기획행정실	기획협력팀장	제22차 에그몽총회	₩11,022,200	$1,582	$493	$540

체부(터키)	2014.5.31~2014.6.5	이영우	기획행정실	사무관	제22차 핵심협의회	₩11,022,200	$1,362	$993	$340
파리	2014.6.21 ~214.6.29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25기 제3차 FATF 총회	₩24,737,800	$9,263	$4,191	$1,560
		연태훈	금융위원회	자문관					
		이해선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변영환	기획행정실	기획행정실장					
		이귀웅	기획행정실	사무관					
		윤현철	금융위원회	사무관					
		윤우근	기획행정실	사무관					
		강민지	기획행정실	에디터					
호주,뉴질랜드	2014.6.21~2014.6.28	이민섭	제도운영과	사무관	은행부문 AML 위험평가시스템 구축 관련	₩5,139,200	$924	$704	$480
		김효신	제도운영과	사무관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23. 2014년도 대통령 업무보고 기관자료

□ 별도제출

유의동 의원(새누리당)

24. 최근 3년간 해킹 및 보안사고 발생 현황

□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하여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유 일 호 의원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1. 최근 10년간 금융채무불이행자 관련

A.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채무액 월별 증감 추이

B.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 선정 기준관련 법령/규정 사본(변동연혁 포함, 민간기구의자체 기준 등도 포함)

C.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정부/금융기관의 직/간접적 지원제도 현황 및 성과

□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하여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2. 최근 5년간 사금융 시장 현황
A. 등록업체수, 대출자 수 증감추이
B. 대부업 전체 대출규모, 이익 규모

□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하여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3. 최근 5년간 대부업체 관련

A. 연도별 업체별 자산총액, 대출액, 연체액, 연체율, 순이익 변화 추이

B. 외국계 대부업체의 국내진출 현황 및 사업규모

C. 일본계 자금이 투자된 대부업체의 상호명, 회사별, 자산총액, 대출액, 연체율, 순이익 변화 추이

□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하여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4. 가계부채 관련
A. 최근 10년간 가계부채 추이

□ **연도별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현황(자료 : 한은)

(단위 : 조원)

구 분	'02	'03	'04	'05	'06	'07	'08
가계신용	464.7	472.1	494.2	542.9	607.1	665.4	723.5

(단위 : 조원)

구 분	'09	'10	'11	'12	'13	'14.3말	'14.6말
가계신용	776.0	843.2	916.2	963.8	1,021.4	1,024.8	발표 예정*

* 가계신용통계는 '02년부터 산출, '14.6말 가계신용은 8월중 발표예정

4. 가계부채 관련
B. 한국은행 등 가계부채 관련 통계 생산 부처(청) 현황 및 차이점

□ **한국은행**은 **국제기준에 따라 국가경제 활동을 반영하는 통계**를 작성

○ **가계부채와 관련하여 자금순환표 상 개인금융부채 및 가계신용 통계**를 생산

○ 이를 통하여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가계·기업·정부 중 **가계의 재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대출통계**를 생산

□ 따라서 **한국은행 통계에는 비제도권금융회사*의 차입금도 포함**되어 있음

* 연기금, 공적금융기관(주금공·국민주택기금),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사업자, 한국장학재단 등

[붙임 1] 자금순환표 통계설명(한국은행)

<붙임 1>

조사개요

통계명	자금순환표
최초작성연도	1965년
통계종류	지정통계-가공통계
법적근거	한국은행법 제86조, 통계청승인(제30111호)
조사(작성)목적	국민경제의 경제주체별 자금조달 및 운용 상황, 금융자산 및 부채의 변동 등을 파악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금융거래를 분석하기 위함
조사(작성)주기	분기 및 연간
조사(작성)대상	
-조사(작성)범위	금융,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별 금융거래
-조사(작성)지역	국내
조사(작성)방법	조사대상기관으로부터 대차대조표 및 자금순환통계 조사표 입수
작용분류	2008 국민계정체계(2008 SNA)
조사(작성)기간	
-조사(작성)대상기간/시점	매 분기말 및 연말
-실제조사(작성)기준시점	매 분기말 후 약 85일이내
-실제 준비조사기간	자료 요청시점으로부터 약 2개월 소요
사용한 자료	금융, 정부, 기업 등 경제주체의 대차대조표 및 자금순환통계 조사표

주요 연혁	1965년 : 자금순환통계 편제 시작 1975년 : 부문 및 형태 세분화 (부문: 5 대분류 및 11 소분류 → 5 대분류 및 13 소분류, 형태: 24개 → 26개) 1985년 : 1968 SNA 이행에 의한 자금순환통계 개편 (부문 조정 및 형태 세분화, 금융 및 실물계정 분리 추계) 2006년 : 1993 SNA 이행에 의한 자금순환통계 개편 (부문: 5 대분류 및 28 세분류, 형태: 40개) 2014년 : 2008 SNA 이행에 의한 자금순환통계 개편 (부문: 5 대분류 및 31 세분류, 형태: 47개)
계속여부	계속

조사 방법론

조사표 설계	
-조사표 형태	조사대상 경제주체들에 대해 공문발송 후 우편 또는 e-mail로 자료입수
표본설계	
-모집단	목표모집단 : 전국 모든 기업 조사모집단 : 다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기업 ⑴ 금융, 보험업 등의 업종 ⑵ 외국기업 국내지사 ⑶ 비영리 및 공공법인 ⑷ 자산규모가 백만원 이하인 기업
-추출틀	국세청 법인세 신고업체 리스트
-추출단위	기업
-층화	업종 및 자산규모별 층화 (Lavallee-Hidiroglou법 이용)

-표본추출법	층화계통추출법 사용. 업종별 자산규모별로 층화하여 가장 규모가 큰 층은 전수조사, 나머지 표본층에서는 계통추출을 하여 표본조사
-표본규모	1,501개 업체(법인기업), 1,590개(비법인기업)
-표본오차	표본설계시 자산 규모에 대하여 3% 내외의 목표 CV를 적용하였으며, 추정량에 대한 표본오차는 내부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중임
-표본관리	
・조사구 관리	조사대상 업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며 입수가 지연될 경우 전화 등으로 자료제출을 촉구
・표본 관리	표본 개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하는 부도, 휴폐업, 업종 변경, 이사 등으로 인한 표본 유출입 등에 대하여 매년 조사 후 주소록을 새롭게 정비. 또한 정기적으로 전면적인 표본개편을 실시
・비표본오차 관리	자료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는 대차대조표와 자금순환조사표의 대조작업, 해당업체 문의 등을 통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추정	
-추정 기법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로 집계하여 부모집단을 추정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모집단 값을 추정

자료제공

공표방법	보도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공표범위	경제주체별 금융거래표 및 금융자산·부채 잔액표
공표주기	분 기

간행물명	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
자료검색	
-보도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보도,법령자료 >보도자료>자금순환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ecos.bok.or.kr)>자금순환
-KOSIS	KOSIS (http://www.kosis.kr)>국내·국제통계>기관별통계>금융기관>한국은행>자금순환표
-온라인간행물	자금순환, 조사통계월보, 경제통계연보

조사표 (보고서 서식)

조사표(보고서) 항목	대차대조표, 현금 및 예금명세서, 차입금명세서, 유가증권 보유명세서 등
조사지침서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 >보도,법령자료 >조사표>자금순환통계>2008SNA기준 자금순환통계조사표 작성편람

용어 해설

용어 해설	자금순환표는 경제주체들이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필요 자금을 조달하고 잉여자금을 운용했으며, 이러한 과정 중에 발생한 다양한 금융활동이 경제주체 사이에 어떠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금융자산 및 부채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나타내주는 통계표이다. < 경제 부문 > 신탁회사는 금전, 부동산 및 동산, 기타 재산권을 고객(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수익자(고객 또는 제 3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운영, 관리, 처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다. 투자펀드는 지분증권을 공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집합적 투자기구로 단기자금시장펀드(MMF)와 비단기자금시장펀드(Non-MMF)로 분류된다. 단기자금시장펀드(MMF)는 MMF 수익증권, 은행예금, 단기자금시장 상품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비단기자금시장펀드(Non-MMF)는 주식, 채권 등 단기자산 이외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투자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여신전문기관은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주로 채권 발행과 금융기관 차입금 등에 의해 자금을 조달하여 소비자금융, 리스, 벤처금융 등에 운용하는 기관으로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시설대여사, 신기술금융사가 포함된다. 전속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나 금융시장에서 자산이나 부채가 공개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금융기관으로 지주회사, SPC, 대부업체로 구성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집단의 자산만을 보유하는 회사로 주 활동이 자회사 집단을 소유하는 것이며 자회사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SPC는 모회사로부터 자산을 인수받아 유동화시켜 모회사가 사용할 자금을 조달한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가계(소규모 개인기업 포함)와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소비자단체, 자선구호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등)로 구성되어 있다. <상품>

기타

이용시 유의점	2008 SNA에 따른 편제방법의 개편으로 제도부문, 금융상품의 종류 및 포괄범위가 변경되어 1993 SNA 및 1968 SNA기준의 시계열과 단절
연락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 - 전화번호 : 02-759-4334 - 이메일 : foft01@bok.or.kr

4. 가계부채 관련
C. 금융권역별/만기구조별 가계대출 현황 (저축은행 구분)

□ 업권별 가계부채 규모(자료: 한은)

(단위 : 조원)

구 분	'13년말	'14.3말
가계신용	**1,021.4**	**1,024.8**
가계대출	**962.9**	**967.6**
은 행	481.1	481.3
비은행	335.3	337.5
상호금융	195.5	199.1
보 험	86.4	86.3
여전사	42.9	41.9
저축은행	**9.2**	**9.0**
우체국 등	1.3	1.2
기 타*	146.4	148.7
판매신용	**58.5**	**57.2**

* 연기금, 공적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국민주택기금), 증권사, 자산유동화회사, 대부사업자, 한국장학재단 등

□ 은행권 약정만기별 주택담보대출 비중(자료: 금감원)

(단위: %)

	5년이하	5～10년	10년초과
’09말	35.7	8.8	55.5
’10말	31.8	10.8	57.4
’11말	29.8	9.3	60.9
’12말	26.9	9.0	64.1
13말	25.6	8.4	66.0
’14.3말	**25.3**	**8.3**	**66.4**

* 평균 약정만기는 16.7년

4. 가계부채 관련
D. 최근 3년간 발표한 가계부채 관련 대책 및 각 대책별 효과

[붙임 2] '11년 이후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14.2.27)

□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이 상당히 완화**되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

○ **IMF**는 경제 충격시에도 한국 **가계부채의 부실 확대 가능성 미미**하다고 평가('14.1월)

○ **S&P**는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5% 감축하는 **중기적 관점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및 **제2금융권 등에 대한 건전성 강화** 등으로 향후 **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14.4월)

○ **OECD**는 한국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가처분소득 대비)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 목표가 효과를 거둘 경우, **성장률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발표('14.5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후속조치 발표 이후 **은행권의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등 **대출구조도 점차 개선**

* 고정금리 대출 비중(신규취급액 기준, %) : ('14.3월)33.1 (4월)37.5 (5월)42.6 (6월)42.3

붙임 2-1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2011. 6. 29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1. 현황

2. 가계부채 증가 추이

3. 평가

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기본방향>

<금융부문 대응방안>

1.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2. 가계대출구조 개선방안

3.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4. 서민금융기반 강화방안

Ⅲ. 추진 계획

(별첨) 금융부문대책 추진일정

I.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1 현 황

□ **11.3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4조원**으로 **가계대출이 752.3조원***(은행권 435.1조+비은행권 317.2조), **판매신용이 49.1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364.9조**(은행 289.9조, 비은행 75.0조)로 **전체 가계대출의 48.5%**

□ **가계부채**는 **99년~10년중 연평균 13.0%** 증가하여 **경상 GDP 증가율**(7.3%)을 **상회**

□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경제·소득규모 대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 **09년 기준으로 GDP대비 86%(12위), 가처분소득 대비 153%(9위)**이며, **OECD 국가 평균을 상회**

	한국	미국	영국	일본	OECD평균
▪ 가계부채/GDP(%)	**85.9 (12위)**	100.2	110.0	80.4	**77.0**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152.7 (9위)**	132.0	171.5	129.5[1)]	**134.1**

주) 자금순환표상 개인금융부채(09년, 통계가 공표된 27개국 기준), 1) 08말 기준

< 가계부채 추이 >

* 한은 가계신용기준

(조원)	'99말	'02말	'05말	'07말	'09말	'10말	'11.3말
가계신용	214.0	439.1	521.5	630.7	733.7	795.4	**801.4**
가계대출	191.9	391.1	493.5	595.4	692.0	746.0	**752.3**
- 은 행	76.3	222.0	305.5	363.7	409.5	431.5	**435.1**
주담대	-	-	190.2	221.6	264.2	284.5	**289.9**
- 비은행	115.6	169.1	188.0	231.7	282.5	314.5	**317.2**
(상호금융)[1)]	37.8	45.7	77.8	101.4	132.2	154.8	**157.4**
(여전사)	16.2	57.1	23.8	30.7	31.5	36.3	**36.9**
주담대[2)]	-	-	-	46.6	64.6	73.1	**75.0**
판매신용[3)]	22.1	47.9	28.0	35.3	41.7	49.4	**49.1**

1) 단위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2) 보험사·여전사 등 제외,
3) 카드사 신용판매, 여전사 및 판매회사(백화점 등) 제공 신용

2 가계부채 증가 추이

◇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99~02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기, 05~06년 주택시장 호황기**에 급증

(연평균 증가율)	'99~'02	'03~'04	'05~'06	'07~'10
▪ 가계 부채 (%)	**24.3**	4.0	**10.7**	8.1
▪ 경상 GDP (%)	9.5	7.1	4.8	6.6

□ **(99~02년) 시중유동성 증가**, 기업대출수요 감소, **가계수지 악화** 등에 따른 **저축률 하락**과 함께 **가계부채 급증**(연평균 24%)

○ 금리급락 등으로 **시중유동성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은 **구조조정·재무구조 개선** 추진으로 **대출수요가 감소**

* 유동성 증가율(L) - GDP 증가율(%) : (99년)△0.3, (00년)2.1, (01년)4.0, (02년)3.0
* 제조업 부채비율(%) : (97년) 396, (99년) 215, (01년) 182, (02년) 135

- **가계대출 수요**가 **기업대출수요 감소**를 **점진적으로 대체**

* 은행대출 증가율(%) : [가계] (99년)44.2, (00년)40.5, (01년)46.1, (02년)41.7
[기업] (99년)18.1, (00년)18.0, (01년)△1.0, (02년)24.8

○ 외환위기이후 **소득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교육비·통신비 등 지출부담은 증가**하면서 **저축률이 급감**

* 개인 저축률(%) : (99년) 21.6, (00년) 8.6, (01년) 4.8, (02년) 0.4
* 가계지출 중 교육비+통신비 비중(%) : (97년)13.6, (99년)15.6, (01년)17.2, (02)17.6

○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으로 **카드사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 및 **판매신용**도 **30%대 증가세**를 시현

* 여전사 가계대출 증가율(%) : (99년)35.0, (00년)107.4, (01년)30.0, (02년)30.8
* 여전사 판매신용 증가율(%) : (99년)30.9 (00년) 35.5, (01년)62.3, (02년)29.2

□ **(03~04년) 카드사태** 등에 따른 **신용경색**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연평균 4.0%)

○ **여전사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판매신용은 감소**

* 03~04년중 연평균 증가율(%) : (은행대출)11.6, (비은행대출)1.2, (판매신용)△27.4

□ **(05~06년) 부동산경기 과열**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연평균 10.7%)

○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의 대출확대 경쟁** 등 시중자금의 **주택시장 쏠림현상** 발생

* 수도권 아파트가격/은행 주담대 증가율(yoy, %) : (05년)7.2/12.4, (06년)24.6/14.1

□ **(07년 이후) 주택대출 규제 강화, 기업 자금수요회복** 등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증가세는 지속**(연평균 8.1%)

○ **은행권은 경제성장률 이내**로 조정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비은행권의 증가폭은 확대**

*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 : (07년)5.5, (08년)6.8, (09년)5.4, (10년)5.4

* 07~10년 연평균 증가율(가계대출/주담대, %) : (은행)5.7/7.0, (비은행)11.4/16.2

*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비중(%) : 06말 37.1% → 10말 42.2%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증가세 지속**(9.1%)

<시기별 가계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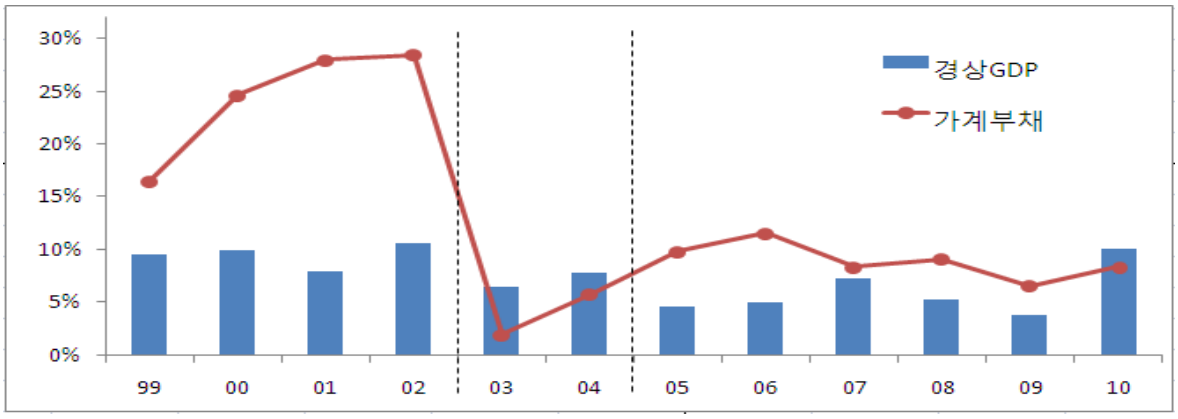

〈 참고 :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동향 〉

□ 07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연평균 11.4%**)

(yoy, %)		'07	'08	'09	'10	('07~'10 평균)
* 은행 가계대출	:	5.0	6.8	5.4	5.4	**5.7**
* 비은행 가계대출	:	13.5	12.1	8.7	11.3	**11.4**
(주택담보대출)		(-)	(20.1)	(15.4)	(13.1)	**(16.2)**
:						

○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비중**도 **상승**(06말 **37.1**%→10말 **42.2**%)

□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0년들어 여전사·저축은행**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상호금융**) 세제혜택* 등에 따른 **수신 증가 등**의 영향으로 **07년이후 평균 15.4% 증가**

*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09.1월부터 비과세한도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확대)

* 07~10년 연평균 상호금융 예금 증가율 : 15.9%(대출 증가율 15.4%)

○ (**저축은행**) 아직까지 가계대출 규모는 크지 않으나 **PF대출 시장 위축**에 따라 **가계대출이 확대**(10년중 11.3% 증가)

○ (**여전사**) **10년중 카드론**(35.2%)을 중심으로 **가계대출**(15.2%) 증가,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신용판매**(12.3%)도 **급증**

< 비은행권 가계대출 추이(한은, 가계신용) >

	'06말	'07말	'08말	'09말	'10말	'11.3말
비은행권 합계	204.2	231.7	259.8	282.5	314.5	317.1
(전년동기비)	(10.7%)	(13.7%)	(15.4%)	(10.9%)	(16.4%)	(10.8%)
상호금융[1)]	87.5	101.4	118.	132.2	154.8	157.4
보험	50.9	55.9	61.7	64.2	66.0	66.7
여전사	25.2	30.7	31.3	31.5	36.3	36.9
저축은행	7.7	6.8	6.9	7.3	8.2	8.4

1)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3 평 가

□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부동산가격 상승**(및 추가상승 기대심리),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가계부채는 **경제성장 및 금융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

> ※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속 증가추세
>
> * 한국 : (01) 61.2% → (09) 85.9% (+24.7%p)
> * OECD 평균 : (01) 51.8% → (09) 77.0% (+25.2%p)

○ 특히, 외환위기 이후 **내수회복 등 위기극복·경제성장**에 기여

* 99년~02년중 GDP 증가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율: **74.4%** (90년 이후 평균 48%)

○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과거 기업에 편중된 대출이 시정되면서 가계의 금융이용이 확대된 측면도 있음

- 외환위기 이전 **기업부문**에 **집중**되고 **가계부문**에는 **위축**되었던 **기업과 가계간 자금배분의 불균형**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 이에 따라 **기업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기업 부채비율도 크게 개선**

*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 :
(98말) 27.7 → (02말) 47.1 → (10말) 43.7 [美(04말) 45.2, 英(03말) 46.0]
* 기업부채비율(%) : (98년) 303.0, (02년) 135.4, (05년) 100.9, (09년) 109.6

□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으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감안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broadly manageable) 수준으로 판단

○ **금융권 연체율 등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유지

* 가계대출 연체율(전업권, %): (06)2.44, (07)1.94, (08)1.91, (09)1.76, (10)1.68
(은 행, %): (06)0.70, (07)0.55, (08)0.60, (09)0.42, (10)0.61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전업권, %) : (10.12월) 0.87, (美, 10.4/4) 8.22

○ 그동안 가계대출의 증가는 주로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신용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과거에 비해 이들 계층의 대출비중이 증가**

* 고신용등급(1~4등급) 대출 비중(%) : (06말) 62.0, (08말) 62.4, (10말) **70.2**

※ **美 서브프라임 사태**의 경우, 비우량 대출인 **서브프라임 대출 비중이 01년 8.6%에서 06년 20%까지 확대**

○ 가계대출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담보인정비율**(LTV)**이 상당히 낮음**

* **韓 47%,** 美 75%, 英 61%, 佛 80%, 獨 74%, 홍콩 64% ('09말 기준)

- BIS 비율·당기순이익 등 **금융회사의 충격흡수능력도 높아진 상황**

* BIS 비율(은행, %) : ('06말)12.8, ('08말)12.3, ('10말)**14.6** (글로벌 20대 은행 13.6)
* 당기순이익(은행, 조원) : ('07년) 15.0, ('08년) 7.7, ('09년) 6.9, ('10년) **9.3**

○ 또한 최근 수년간 가계금융부채 증가와 동시에 금융자산은 더욱 크게 증가하여 **가계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비율**은 **오히려 상승**

* 가계금융자산 / 부채(배) : ('08말) 2.09, ('09말) 2.28, ('10말) 2.32, ('11.3말) 2.33

※ 가계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비율은 **02년 이후 OECD 평균 △0.67배 감소**한 반면, **우리는 +0.12배 증가**

□ 다만,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 잠재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경제·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가계대출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

-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고, 금리 적용기간이 짧음**

*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09말, %) : **(韓)95**, (美)10, (英)62, (佛)13, (獨)10
* 금리적용기간(변동주기)는 통상 3개월 수준(美은 통상 1년, 日은 6개월 이상)

- **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만기시 상환부담이 크고 차환위험**에 노출

▪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도 **거치기간 연장 관행** 지속

* 일시상환 비중(은행) : **(韓) 41%**('10말), (美) 9.7%('10말), (EU) 7.5%('09말)
* 주담대 중 이자만 내는 대출(일시상환+거치기간중인 분할상환) 비중 : 80%('10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환유형별 현황('10년말)>

일시상환	분할상환		합계
	거치기간중	원금상환중	
117.4조	**108.8조**	58.3조	284.5조
(41.3%)	**(38.2%)**	(20.5%)	(100%)

: '10년말 현재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

○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고 **경기·금리여건**에 대한 **민감도가 큰 저신용층**의 **어려움**이 상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 금리1%p 상승시 순이자부담(만원)	16.1	13.0	9.8	9.0	17.1	12.4
(가처분소득대비)	(3.2%)	(1.0%)	(0.4%)	(0.4%)	(0.3%)	(0.4%)

주) 통계청 2010년 가계신용조사,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금리민감 자산 및 부채 기준

➡ 지금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응여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기본 방향>

◇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방안 강구**

①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주택시장 안정기조 지속,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자금의 생산적인 흐름을 유도**

②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한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

※ ①, ②과제의 세부 정책대안("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참조)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정책운용 등을 통해 지속 대응

③ 거시경제 환경조성의 지속적인 뒷받침하에 **가계부채 관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부문의 정책대응을 강화**

○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증가요인 차단, 신중한 가계대출 관행유도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증가 도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및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를 개선**

○ 가계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

④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15일 발표)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

➡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안정화**

1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

□ 은행 가계대출 적정증가 유도

①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도와 무관하게 은행별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

※ 고위험 대출(例示) :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별도 마련

①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총대출금/연소득)이 500%를 넘는 경우

② 3건 이상 대출 보유자에 대한 대출

○ **특정부문**(예 : 주택담보대출) **편중대출**(예 : 자기자본의 2배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 **영향분석 · 검증**을 거쳐 **세부시행방안** 결정

②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개편

○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토록 지도

③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 정착

○ 현재 **DTI 의무적용 대상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27.1%** 수준(은행기준, 10.1~6월)

*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대출의 경우, LTV 비율만 감안하고 소득 등 상환능력에 대해서는 확인업무가 소홀

○ 앞으로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을 통해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CAMELS 반영 등)

○ 자율정착 추이를 보면서 **DTI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검토

* 단, 충분한 예고 및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행상의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

□ **은행 예대율 관리 강화**

○ **100% 초과 은행** : 100% 준수기한(13년말)을 **12.6월말**까지 **1년 6개월 단축** 지도

○ **100% 미달 은행** : **준수기한**(12.6월말)중 다시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 11.3월말 현재 일반은행(13개) 예대율 : 97.1%

나.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되,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전사의 외형 확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

①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증가율 설정·관리**(6.7일 旣발표)

○ **회사별 목표수준**에 대해 **정기점검**

○ 과도한 외형확장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규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

②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와 여타 여전사간 규제수준**을 **차등화**

○ 규제 한도를 초과한 여전사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점진적인 규제준수**를 유도

* 레버리지 현황(평균/최고, 11.3말, 배) :
(카드사) 4.1 / 7.7, (할부사) 8.4 / 20.1, (리스사) 7.2 / 18.0

③ **회사채 발행 특례**(자기자본대비 10배) **폐지**(6.7일 旣발표)

* 자본금이 영세한 여전사에 대한 지원성격으로 도입(98년 여전법 시행) 되었으나 도입당시에 비해 자본규모가 18.3배(98년말 1.4조→10년말 24.9조) 증가한 상황에서 과다차입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폐지 필요

□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단계적으로 강화

○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6.15일 규정개정 완료, 상반기 결산부터 적용)

* 정상 여신 : 1.5% → 2.5%, 요주의 여신 : 40% → 50%

○ **여타 여전사**의 경우에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

- **요주의 여신**('12년) : 2%(할부대출), 8%(가계대출) → **10%**

- **정상 여신** : 1%(은행과 동일) → 적립비율 상향폭은 **리스크 수준 및 레버리지 규제도입 효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 신용카드사간 건전한 영업경쟁 유도(3.30일 旣발표)

○ **카드 모집실태 및 마케팅 경쟁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제재 강화

* 모집실태 점검주기 단축(매반기→매분기), 여신금융협회 합동기동점검반 강화(20명→30명, 금감원 참여(월1회))

○ 다중채무자 발생 억제 및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3장→2장이상 소지자)

* 현재 신용카드 3개 이상 소지자의 카드 사용실적, 이용한도 등에 대해 카드사간 정보공유

[상호금융]

□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확대**(09.1월, 2천→3천만원) 되면서 **수신이 급증**하고 **가계대출이 확대**

* 09~10년중 예수금 증감 (증가율) : (상호금융) 57.5조(29.1%) (은행) 191.8조(21.9%)
가계대출 증감(증가율) : (상호금융) 36.8조(31.2%) (은행) 42.9조(11.0%)

※ **<참고> 상호금융회사 비과세 예금 개요**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예탁한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 이자소득세(15.4%)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89의3)

- 혜택 : 비과세(~'12말) → 5%과세('13) → 9%과세('14~)

⇒ 비과세 혜택은 **12년말 예정대로 종료**하여 **가계대출 확대요인**이 된 **상호금융 수신증가**를 **최대한 정상화**

□ 상호금융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등 **타금융권 수준**으로 **강화**

○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현 행>		<개 선(안)>
* 정상여신	: 3개월미만 연체	→	1개월미만 연체
* 요주의여신	: 3~6개월미만 연체	→	1~3개월미만 연체
* 고정이하여신	: 6개월이상 연체	→	3개월이상 연체

○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 상향조정**

* 정상여신 (0.5% → 1%), 요주의여신 (1% → 10%)

⇒ **2년 유예**후 **3년간 단계적**으로 **건전성 분류기준 및 비율 상향조정**(유예기간 중 최소적립률 이상으로 적립토록하여 충격흡수 유도)

□ **상호금융 대출한도 강화**

①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 현재는 자산총액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5억원)는 있으나 **자기자본기준 한도가 없어 합리적 수준의 최고한도 설정**

* 동일인 한도 :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
* 자기자본/동일인 대출한도('11.3말, 억원) : 신협 44/9, 농협 147/30, 산림조합 34/7

② **신협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한도 강화**

*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간주

- 간주조합원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 총한도**(연간 신규대출 취급액의 1/3로 제한)에 포함해서 **적용**

다.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

□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우대**

* 현재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중 신용카드 20%, 체크카드 25%까지 소득공제

□ **개인신용평가시** 신용카드 이용실적외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

* 현재 신용카드는 장기간 연체 없이 이용한 경우 신용등급 향상요인이 되나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음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3월말 旣 시행)

* 2.0~2.5% → (중소가맹점) 1.0%, (일반가맹점) 1.5~1.7%

2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축소**(신규대출부터 적용)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공제제도 개선 방안>

구 분	현 행	개선안
주택보유수	무주택자	좌 동
대상주택	3억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	좌 동
상환기간	15년 이상	좌 동
소득공제 한도	1,000만원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 **1,500만원** ▪ 기타 대출 : **500만원**

□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차등화**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

* (**현행**) 고정금리대출은 연 **0.125%**(거치식·비거치식 구분 없음)
변동금리대출은 연 **0.260%**

□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유도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유도

- 은행은 **자체 정상화 연차 목표***(예 : 매년 3년주기)를 설정하고 감독당국은 **이행실적**을 **점검**

*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분리 운영도 가능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 및 혼합대출***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 대출금의 일정부분(예 : 20%~50%)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상품 (상기 목표대출 실적에 포함)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T/F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데스크 설치 등 on-off 라인을 통한 상품 안내·홍보 강화(은행연합회)

나.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지원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매입·유동화**(MBS발행) **지원**

□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추진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기초자산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일정비율**(예 : 20%~50%) **이상 포함**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증가추이를 보아가며 편입비율 확대

□ **MBS·커버드본드 발행여력 확대**를 위한 **자본금 확충**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및 유동화 수요**를 보면서 **자본금 확충**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①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시 **고지의무** 등 강화

- 차주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 **필수사항 규정**

※ 고지의무사항(예시) :
- ⓘ **금리·금리변동주기·금리변동사유** 등 기본적 사항
- ⓘⓘ 금리변동상품의 **위험성 고지 및 차주 확인**
- ⓘⓘⓘ 금리변동폭에 따른 **차주 부담 증가액**(월간, 연간)
- Ⓜ 최근 5년간 최대금리 변동폭 및 부담 증가액

- **금리변동시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 부여**(예 : 최소 1개월전)

* 현재는 서비스를 신청한자에 한해 1~2주전 고지

②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현재 은행은 대출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상환시 약 1.5% 수수료 부과

③ 변동성이 낮은 **COFIX**(잔액기준) **연동대출을 확대**하고 **대출금리 변동폭을 축소**하는 **옵션부 대출상품 개발** 유도

<금리상한 옵션 대출상품 종류>

全기간한도(lifetime cap)	대출 전기간 중 인상한도 설정
기간한도(periodic cap)	금리조정시마다 1회 인상한도 설정
상환한도(payment cap)	금리조정시 월 상환금액 증가 한도를 설정

- **CD(3개월) 등 여타 금리 연동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변동 상한을 제시**(금리상한 옵션 대출 상품 판매 등)토록 유도

- **금리변동주기 확대**(3개월 → 6개월 또는 1년 이상) **유도**

* 통상 금리변동주기는 3개월(미국은 1년, 일본은 6개월 이상)

※ 분기별 추진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 점검(은행 등 가능한 업권부터 先시행)

□ **대출모집인의 불법·부정행위** 등에 대해 **수시 점검**

○ 대출모집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및 필요시 **법적 규제장치** 마련(협회별 T/F 구성)

○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대출중개 행태 및 중개수수료** 등 실태조사 강화 등 관련 대출모집인의 불법·부당행위 **엄정 제재**

□ **불법·허위광고 및 과장광고 근절**

○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일선점포 불법·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본점의 책임 강화

4 서민금융 기반 강화 방안 (신규과제는 밑줄)

◇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이 심화된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

◇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

※ 11.4.15일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

□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

○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접근이 곤란한 서민들에게 **대출**과 더불어 **자활컨설팅** 지원(10.1~11.6 : 2,521억원 대출)

- **미소금융** 컨설팅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직능 단체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중**

* 금년중 미소아카데미를 통해 컨설팅 전문인력 4천명 교육
* 현재 세탁업중앙회, 미용사 협회 등으로부터 적격자를 추천받고 있는 것을 여타 단체로 확대

○ **(햇살론) 정부 및 민간출연금**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 (10.7~11.6 : 1조6,368억원 대출)

- 서민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기준 등 개선**

* (예시) 소득대비 채무상환액비율 탄력적용, 보증지원절차 간소화 등

○ **(새희망홀씨)** 기존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의 **지원대상 확대 등 개선**(10.11~11.5 : 6,867억원)

- **새희망홀씨 지원기준, 지원목표액** 등을 포함한 **자율규약** 제정

□ **금리·수수료 인하** 등 서민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를 **대형마트·백화점 수준으로 인하**

*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 : 2.0~2.2% → 1.6~1.8%
기타 중소 가맹점 : 3.3~3.6% → 2.0~2.15%

- 수수료 인하대상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10.4) 9,600만원미만 → (11.5) 1.2억원미만 → (12.1) 1.5억원미만)

○ **(고금리 대부업 피해 방지) 대부업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연49%→연44%(10.7)→연39%(11.6)**)하였으며,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따른 **서민피해 방지 방안** 마련·추진

○ **(금리비교공시 확대)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상호금융·대부업**에도 **비교공시제도 도입**

○ **(대출중개비용 경감)** **여신금융협회**의 **온라인 대출중개 기능** 수행, **불법 대출중개 단속강화, 다단계 대출중개 행위 금지*** 등을 통해 서민층 고금리부담 완화

*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준비중

○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조회기록** 및 **10만원 미만 연체정보 미반영, 단기연체정보 반영기간 축소**(5년→3년)

* 현재 금융위·금감원 공동으로 세부시행기준 마련을 위한 T/F 운영중,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 예정

- 금융회사가 보유한 차주의 **우량정보**를 **모든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고 신용평가시 적극 반영**

* 4.28일부터 정보집중 개시, 10월부터 신용평가시 반영 예정

□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만기 연장**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전환대출** 등 **지원노력 강화**

○ **(신용회복)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으로 **원리금 감면 및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지원(08년 이후 47.6만건 지원)

-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2년간 연장 시행** 중(당초 11.4월 종료 예정)

- 6.1일부터 **채무 상환기간(8년→10년) 및 상환 유예기간(1년→2년) 연장** 시행 등 신용회복 제도 보강

- **"사이버 지부" 활성화, 안내·홍보활동 강화, 신용회복지원협약 참여기관**(현재 3,523개) **확대** 등을 통해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추진

○ **(소액대출·취업지원)** 신용회복지원자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지원** 및 **취업지원**

-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 재활자금**(4%) **지원규모 확대**(10년 700억원→11년 1,000~1,200억원)

  * 은행 등의 추가 기부금 출연 등 재원확대방안 강구

- 신용회복기금에서 운용중인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펀드**를 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500억원**까지 **확대**

○ **(전환대출) KAMCO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해 **6등급이하** 서민층의 고금리대출을 **12%내외**의 **은행대출로 전환**(08년이후 4,697억원 지원)

- **지원대상 확대 및 창구 확대** 등 **전환대출 지원 보강**

  * 지원대상(6.10 시행) : (현행) 6~10등급 → (개선) **연소득 2,600만원 이하**
  * 지원창구(6.30 예정) : (현행) 6개 은행 창구 →(개선) **전국 모든 은행 창구**

Ⅲ. 추진 계획

□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7월중** 추진

○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등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 실무 T/F**를 구성·검토후 **하반기중 시행**

○ **법령·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중 개정완료**

- **법률 개정사항**은 **금년중 국회 제출** 추진

□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 대책의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추가검토후 보강대책을 추진**

① **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예 :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예 : 10%~50%)을 **준비금**의 형태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

* 준비금 적립시 배당이 제한되므로 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 (당기손익 및 배당을 제한하는 현행 대손충당금과는 달리 당기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고 배당만 제한 ; 대손준비금과 유사)

⇨ **적정수준 기준, 적립률**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영향분석,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② **은행 예대율 준수비율**(현행 100%) **하향** 조정

③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

④ **고위험·편중대출 관리 추가강화 등**

별 첨 **금융부문 대응방안 추진 일정**

추진 과제	필요 조치	시행시기	소관부처
1. 가계부채 적정증가 방안			
나. 은행권			
1 고위험 및 편중대출 BIS 규제 강화	시행세칙 개정	11년중	금감원
2 영업점 성과평가 개선	지도공문 발송	11.7월중	금감원
3 대출상환능력 확인 강화	지도공문 발송	11.7월중	금감원
4 예대율 관리 강화	지도공문 발송	11.7월중	금감원
가. 비은행권			
1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도입 및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 추진	여전법 등 개정	11년중 국회제출	금융위
2 여전사 충당금 규제 강화	감독규정 개정	11년중	금융위
3 상호금융 대출한도 설정	시행령 등 개정	11년중	금융위
4 상호금융 충당금 규제 강화	감독규정 개정	11년중	금융위
다. 체크카드 활성화			
1 체크카드 세제혜택 우대	소득세법 개정	11년중 국회제출	기재부
2 신용평가 개선	지도공문 발송	11.7월중	금감원
2.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가. 고정금리·분할상환 활성화			
1 소득공제 차등화	소득세법 개정	11년중 국회제출	기재부
2 주신보 출연료율 차등화	시행규칙 개정	11년중	금융위
3 은행별 목표관리 강화	지도공문 발송	11년중	금감원
나. 장기자금조달 여건 마련			
1 MBS 및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11년이후	금융위·금감원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1 변동금리대출 설명의무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11년중	금융위·금감원
2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가이드라인 마련	11년중	
3 잔액기준 COFIX 유도	실적점검	11.7월중	
4 금리상한상품 활성화	가이드라인 마련	11년중	
5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실태점검	11년중	
6 불법·허위 광고 억제	실태점검	11년중	
4 서민금융 기반강화 방안			
1 서민우대금융 자금지원기준 등 개선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선	11.7월	금융위
2 과다 허위 대부광고 피해방지	대부업법 개정	11년중 국회제출	금융위
3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실적점검	11년중	금융위

붙임 2-2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2012. 2. 27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I. '11년중 가계대출 현황

II. 기본방향

III.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방안

1. 예대율 관리 강화
2.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3.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4.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5.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 개선
6. 강화된 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

IV. 보험사 가계대출 관리방안

1.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 상향조정
2. 가계대출 취급 및 영업활동 관리감독 강화

V. '12년도 서민금융 추진방안

1.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 강화
2. 고금리 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
3. 서민의 주택금융 이용부담 완화

VI. 향후 추진 계획

Ⅰ. '11년중 가계대출 현황

1. 일반현황

□ 한은 가계신용 기준으로 20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2010년말 대비 **7.6% 증가한 858.1조원**

○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455.9조원**으로 **2010년말 대비 5.7% 증가**한 반면, 제2금융권은 **402.3조원**으로 **9.9% 증가**

□ 2007년 이후 은행권에 비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

< 연도별 가계대출 증가율(%) >

(괄호안은 연도별 증가액, 조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체	9.7 (45.5)	11.4 (58.7)	9.7 (55.6)	8.7 (54.8)	7.7 (53.0)	8.1 (59.6)	7.6 (60.6)
은행	10.6 (29.2)	13.3 (40.7)	5.0 (17.5)	6.8 (24.9)	5.4 (20.9)	5.4 (22.0)	5.7 (24.4)
제2금융권	8.4 (16.3)	8.6 (18.0)	16.7 (38.1)	11.2 (29.9)	10.8 (32.1)	11.5 (37.7)	9.9 (36.2)

○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은행권에 비해 수년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결과 **규모면에서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

* 2011년말 가계대출 잔액(한은기준, 조원)

: (은행) '04말 276.3 → '11년말 455.9 (제2금융권) '04말 193.8 → '11년말 402.3

- 제2금융권 중 (상호금융) 175.0 (보험) 74.7 (저축은행) 10.2 (여전) 38.8

2. 부문별 현황

□ (**보험**)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74.7조원**으로 ’10년말 대비 **6.4조원(9.3%)**이 증가하여 **빠른 증가세**

○ 특히 ’11년 들어 가계대출 증가율이 **예년 대비 빠르게 상승**

*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 : (’09) 4.9% → (’10) 3.0% → (’11) 9.3%

□ (**상호금융**)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175.0조원**으로 ’10년말 대비 **20.2조원(13.1%)이 증가**하여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업권별 증가율 : 신협 15.1%, 농・수협・산림조합 11.5%, 새마을금고 17.5%

○ **’02년말 45.7조원**에 불과하던 상호금융 가계대출은 ’11년말까지 불과 **9년 사이에 네 배 가까운 규모로 급속히 증가**

* 2003~2011년 상호금융 가계대출 연평균 증가율은 16.1%에 달함

□ (**저축은행**)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10.2조원**으로 ’10년말 대비 **2.0조원(24.9%) 증가**

○ 증가속도가 빠른편이나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 **구조조정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좀 더 추이를 보아가며 대응방안 검토

□ (**여전사**) ’11년말 가계대출 잔액은 **38.8조원**으로 ’10년말 대비 **2.5조원(7.0%)이 증가**

○ ’11년중 **카드사에 대한 대책*등으로** ’10년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 (’10년 15.1% → ’11년 7.0%)

* 카드사 대손충당금 기준 상향(’11.6월 시행), 레버리지 규제 도입방안 발표, 카드발급 등에 대한 점검 강화 등 카드시장 건전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추진

〈 참고 : 6.29 대책 이후 가계대출 동향 〉

□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 발표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제2금융권은 증가세가 확대**

○ (**은행권**)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은 **11.6조원(+2.7%)이 증가**하여 상반기 12.8조원(+3.0%)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

○ (**제2금융권**) 반면 제2금융권은 하반기 **20.5조원(+5.6%)이 증가**하여 상반기 15.7조원(+4.3%)에 비해 **증가세가 확대**

- 특히 **보험사(1.6%→7.7%), 상호금융(5.5%→7.6%)**의 경우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상반기에 비해 크게 높아짐**

2011년 분기·반기별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

(전년말비, %)

	'11.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하반기
가계대출	1.4%	2.2%	1.6%	2.4%	3.6%	4.0%
은행권	0.9%	2.1%	1.2%	1.5%	3.0%	2.7%
제2금융권	1.9%	2.4%	2.1%	3.5%	4.3%	**5.6%**
(보험)	0.8%	0.8%	4.4%	3.3%	1.6%	**7.7%**
(상호금융)	1.7%	3.8%	3.1%	4.5%	5.5%	**7.6%**

※ 증가율은 2010년말 잔액대비 기간별 증가액으로 산출

Ⅱ. 기본방향

◇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상호금융**과 **보험사**에 대한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및 건전화 방안**을 추진

○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예대율 관리,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충당금 조기적립 등을 통해 **가계대출의 건전화를 유도**

○ **보험사**는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

◇ 이와함께 가계부채 규모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29)**도 차질 없이 추진

○ 가계부채 증가가 **실물경제 성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리노력 강화

○ **부문별 가계대출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가 거시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신규대출 위주**로 시행

◇ 또한 **서민금융 추진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등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도 병행 추진

Ⅲ. 상호금융 가계대출 관리방안

1 예대율 관리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상호금융 수신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최근들어 **예대율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

* 상호금융 예대율 현황 (한은 비은행기관 여수신자료 · 분기말 잔액 기준)

	2010년		2011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신협	65.2%	65.8%	68.1%	68.7%	69.4%	71.1%
상호금융[1]	68.9%	68.2%	67.9%	68.7%	69.3%	69.4%
새마을금고	55.1%	56.4%	58.1%	60.5%	62.8%	66.8%

1) 단위 농 · 수협, 산림조합

⇨ 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예대율 관리를 강화**할 필요

대응방안

□ **정책자금 및 서민대출(햇살론 · 희망드림론)을 제외**한 일반대출의 **예대율을 관리**

* FTA 후속조치에 따른 정책자금 집행 필요성, 서민대출 중심 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자금 및 서민대출을 제외하고 예대율 산정

① **예대율을 80%이내로 운용***토록하고, 80%초과 조합은 **2년내에 80%이하로 조정**하도록 이행계획 징구**

* 은행과 동일하게 예대율 규제를 법제화하여 시행
('12년 3/4분기까지 시행령 · 감독규정 개정)

** 금감원이 각 상호금융 중앙회를 통해 이행계획 징구 ('12년 1/4분기중)

② 2011년말 기준 **해당 업계 예대율 평균을 초과한 조합 · 금고**는 **2011년말 예대율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도 · 감독하고 **위반시 우선 검사하는** 등 건전성 점검을 강화

* 단 지역 경제사정 악화 등의 이유로 예수금 절대액이 감소하여 자연스럽게 예대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일부예외 인정

2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다중채무자 대출 등은 **신용위험이 일반 대출에 비해 높은 만큼** 보다 강화된 건전성 관리가 필요

○ 은행권은 일시상환·거치식 주택담보대출, 다중채무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BIS 위험가중치를 35%→50%로 상향 조정

⇨ 상호금융에 대해서도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를 통해 **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

대응방안

□ **고위험 대출 유형을 설정**하고, 고위험 대출이 과다한 조합에 대해서는 **충당금 추가 적립·중점검사**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
(상호금융업감독규정·새마을금고감독기준 개정, '12년 3/4분기 중 개정)

* 사업자금 성격임이 증명된 대출은 고위험 대출 분류시 제외

* 고위험 대출에 포함되는 일시상환·거치식 대출 금액·다중채무자 대출기준은 조합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② 신규 고위험 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
(2012. 3/4분기부터 적용)

- **신규 고위험 대출부터 우선 적용**하되, 기존 대출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차환시부터** 고위험 대출 충당금 기준을 적용

* 세부적인 충당금 적립기준은 조합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후 확정
  - (예) 정상, 요주의, 고정분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에 20%를 가산

③ **고위험 대출 과다 조합**에 대해서는 **중점 검사·감독**

3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축소

현황 및 문제점

□ 상호금융 대출 증가과정에서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지속 상승

* 단위농협 비조합원 대출비중 : (08말)29%→(09말)31%→(10말)32%→(11.11월)33%
단위수협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비중은 66% 수준

⇨ **조합원간 상호부조**라는 상호금융의 취지, **원격지 대출 관리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한 비조합원 대출은 바람직하지 않음

□ 상호금융은 **비조합원 대출의 연간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단위 농·수협**의 경우 **타 업권에 비해 높은 한도**를 적용

* 상호금융 비조합원 대출한도 : (농협) 신규대출의 1/2, (수협) 대출한도 미적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규대출의 1/3

⇨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큰 상황**

대응방안

□ 상호금융의 **비조합원**에 대한 연간 신규대출 한도를 **연간 신규 대출 총액의 1/3이내**로 일원화

○ **단위농협**은 금년부터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신규 대출의 1/3 이내로 축소**하도록 지도·감독 (행정지도, '12년 1/4분기중)

○ 비조합원 대출한도가 없는 **단위수협**의 경우 **법 개정**을 거쳐 **2015년부터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신규대출의 1/3이내**로 제한
(수협법·수협법시행령 개정, '15년부터 시행)

- 다만, 비조합원 신규 대출 비중을 2011년말 기준으로 **standstill**하고, 비조합원 신규 대출 **단계적 감축계획**을 감독당국에 제출

□ 정관·업무방법서 등으로 규율하고 있는 상호금융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규제의 일관성·실효성을 확보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새마을금고법 개정, '12년중 개정안 국회제출)

* 현재 신협을 제외한 다른 상호금융의 경우 정관(단위 농·수협, 산림조합)이나 여신업무방법서(새마을금고) 등에서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규정

4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현황 및 문제점

□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실질적으로 권역외 대출**임에도 **조합원 대출로 분류**되어 대출한도가 미적용

*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 조합원과 동일세대, 준조합원(농·수협), 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

⇨ 권역외 대출의 확대는 **대출관리의 부실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해당지역 공동유대에 기반한 상호금융 운영**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음

대응방안

□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 범위에서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삭제**
(신협법·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 개정, '12년중 개정안 국회제출)

○ 삭제시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되어 **비조합원 대출한도의 적용**을 받게 됨

- 상호금융의 사업 중 **신용사업(대출업무)**에 한하여 적용

*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경제사업 등 신용사업 이외의 사업 이용시에는 계속 조합원의 이용으로 간주

□ 법령 개정 전에도 상호금융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산정시 **다른 조합의 조합원은 비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지도·감독

5 상환능력 확인 등 대출심사 관행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상호금융 대출 중 **담보대출**(11.9월말 총 대출의 86.4%)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높은 상황

□ 상호금융은 업권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

○ 상호금융의 경우 상용근로자 보다 농어업인·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분명한 고객비중이 높음**

○ 한정된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권역외 대출 등의 경우 **원격지의 담보를 충실히 관리하는데 한계**

⇨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대응방안

□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상환능력)을 **서면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
(금감원이 가이드라인 마련 → 업권별 여신업무방법서에 반영, '12년 2분기 시행)

○ 금감원이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협의하여 소득 증빙 자료의 인정범위 등 **상환능력 확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

-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여신업무방법서**에 가이드라인을 반영

○ 소득 확인방법 및 인정대상 증빙자료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준용

- 단, 소득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농림어업인 등의 경우 보유재산의 소득환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방식***도 허용

* (예) 행정안전부(재산등록 매뉴얼)의 독립생계 소득기준 및 소득계산법 등

○ 금감원·중앙회의 검사시 **상환능력 확인 여부 중점 점검**

6 강화된 자산건전성 · 대손충당금 기준 단계적 상향 적용

현황 및 문제점

□ 지난해 6.29 대책에서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2015년까지 은행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연체기간 : (정상) 3개월 미만 → 1개월 미만
(요주의) 6개월 미만 → 3개월 미만, (고정) 6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연체

* 대손충당금 적립율 : (정상) 0.5%→1%, (요주의) 1%→10%

○ 다만, 시행시기와 방법은 **2013.6월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3년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함

□ 그러나 유예기간중 **상호금융 자체적인 사전준비 없이 2013.7월부터 강화된 기준을 일시에 적용**할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 또한 상호금융 **건전성 확보**차원에서도 **강화된 기준을 점진적으로 조기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유예기간 중에 **단계적으로 기준을 상향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대응방안

□ **상호금융 자산건전성 ·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유예기간(~2013.6말) 중에도 **강화된 수준**(2013.7월부터 적용되는 수준)까지 자산건전성 · 대손충당금 기준을 **단계적 상향 적용**

○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자산건전성 · 대손충당금 기준의 단계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각 조합의 이행여부**를 점검
('12년 1분기 중 이행계획 제출 → 6월 반기결산시 이행여부 점검)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조기적용 예시 (단위 :%)

구 분	현 행	'12.7	'13.1	'13.7	'14.1	'14.7	'15.1	'15.7
정 상	0.5	0.55	0.6	0.65	0.7	0.8	0.9	1.0
요 주 의	1.0	2.0	3.0	4.0	5.5	7.0	8.5	10.0

※ 굵은 테두리 부분은 강화된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

Ⅳ. 보험사 가계대출 관리방안

1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 상향 조정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중 보험사 가계대출이 **예년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 시현

*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 : ('09) 4.9% → ('10) 3.0% → ('11) 9.3%

○ 특히 **2011.6월 이후의** 증가속도가 빠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증감액 (증가율)	0.6조원 (0.8%)	0.5조원 (0.8%)	**3.0조원 (4.4%)**	**2.3조원 (3.3%)**

※ 증가율은 2010년말 잔액 대비

⇨ 보험사의 경우에도 가계대출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대응방안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12년 2분기 규정개정, 6월 보험사 결산시 적용)

* 정상 : 0.75% →1.0%, 요주의 : 5% → 10%, 회수의문 : 50% → 55%

□ **은행의 BIS 규제에 해당하는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신용위험액 산출시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상향조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2년 2분기 세칙개정, 6월 보험사 결산시 적용)

○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4% → 2.8%**로 상향조정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은 **현행 1.4% → 4.0%**로 상향조정

* 일시상환조건 대출, 3건이상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 거치식 대출
→ 은행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범주와 동일(은행의 경우 BIS위험가중치 상향)

- 고위험 대출에 대한 위험계수 상향조정은 **신규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기존대출은** 은행권과 동일하게 **차환시부터 적용**

2 가계대출 취급 및 영업활동 관리감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사의 경우 **보험모집과정에서 대출권유·알선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전단지 배포 등 **공격적인 대출영업행위**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측면

⇨ 건전성 규제 강화 및 **공격적인 대출영업을 억제** 등 보험사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

대응방안

□ **보험회사 등의 대출영업 억제**

○ **전단지 배포, 문자메시지** 등의 발송, **보험모집·상담 과정에서의 대출권유·알선** 등 보험회사나 설계사의 **대출권유행위 제한** (행정지도, '12년 1분기 중 시행)

○ 보험회사의 대출모집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과도한 대출모집인 운용을 제한** (행정지도, '12년 2분기 중 시행)

○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은 보험사를 **선별적으로 집중검사**하여 대출영업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

□ **위험평가제도(RAAS) 평가지표에 가계대출 관련 항목을 추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12년 2분기 중 시행)

○ **상환능력 확인** 등 **'가계대출 취급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비계량평가 항목)하여 보험사의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강화**

Ⅴ. '12년도 서민금융 추진방안

1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 강화

□ (미소금융) **쇄신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 ('12년 상반기 중)

○ 특히, **전통시장 상인** 및 신용등급은 양호하지만 **소득수준이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

□ (햇살론) **대환대출** 및 **자영업 서민**에 대한 지원 강화 ('12.2.13 旣 시행)

○ 서민금융기관이 고금리 채무상환 용도의 대환대출을 적극 취급하도록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비율을 95%**(현행 85%)**로 확대**

○ **신용 6등급이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중기청 고시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시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

○ 서민금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대출취급 前 **현장실사를 신용보증 지역재단에서 수행**토록 개선

□ (새희망홀씨 대출) 연간 자금지원 규모를 **1조 5천억원으로 확대**
('11년 공급목표 1조 2천억원)

2 고금리 부담 경감 및 신용회복지원 강화

□ 서민의 금리부담 경감

○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11%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의 지원 규모와 지원 대상을 확대

- '12년중 4,000억원 지원 목표 ('09~'11년중 연평균 2,623억원 지원)

- 바꿔드림론 지원 후 **3년이 경과한 서민**에 대해 총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12.2.1 旣 시행)

○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주)의 **대출중개기능을 활성화**하여 서민들에 대한 **맞춤형 대출안내, 환승론 서비스** 등을 확대

□ **신용회복 지원 강화**

○ 성실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저금리(4%) 재활자금 지원규모를**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09~'11년중 연평균 648억원 지원)

○ 인터넷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신청을 활성화하는 등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이용절차를 개선**하고 홍보도 강화

3 서민의 주택금융 이용부담 완화

□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 지원**을 **확대** ('12.1.16 旣 시행)

○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2,5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대해 공급 신설('12년 1.5조원 이내 공급)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신설** ('12.2.27일부터 시행)

○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중인 부부합산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3,000만원 이하 전세거주 가구**에 대해 공급

□ **오피스텔**(주거 목적) **및 노인복지주택 전세거주자**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신규로 지원
('12.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의결)

○ **국민주택기금·은행**을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보증대상**을 **확대**

Ⅵ. 향후 추진 계획

□ 1/4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행정지도 등 **조기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1/4분기 중 추진**

○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련기관 협의 후 **3/4분기까지** 시행

○ 법률 개정사항은 **금년 중 국회 제출** 추진

□ 앞으로 **제2금융권 등 부문별 가계대출 동향, 대책의 시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추진**

< 추가 대응방안 예시 >

○ **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등**

*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예: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일정부분을 적립금 형태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 (은행권 도입 여부와 연계하여 검토)

참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추진일정**

추진과제	필요조치	시행시기	소관부처
1. 상호금융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① 예대율 관리 강화			
▪ 예대율 규제 제도화	시행령 개정 감독규정 개정	2분기 3분기	금융위 행안부
▪ 예대율 관리 이행계획 징구	지도공문 발송 이행계획 징구	1분기	금감원 중앙회
▪ 평균 예대율 초과조합 지도·감독	지도공문 발송	1분기	금감원 중앙회
② 고위험 대출 규제·감독 강화			
▪ 고위험 대출 충당금 기준 강화	감독규정 개정	3분기	금융위 행안부
▪ 고위험 대출 과다조합 감독강화	검사·감독	3분기	금감원 중앙회
③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 농·수협 비조합원 대출한도 관리	지도공문 발송	1분기	농식품부 금감원 중앙회
▪ 수협 비조합원 대출한도 신설	수협법·시행령 개정	2015년	농식품부
▪ 비조합원 대출한도 법정화	농·수·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개정	금년 중 국회 제출	관계부처
④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농·수·신협법 산림조합법 개정	금년 중 국회 제출	관계부처
⑤ 상환능력 확인 강화	여신업무방법서 개정	2분기	금감원 중앙회
⑥ 강화된 자산건전성, 대손충당금 기준 적용 준비	이행계획 제출 검사·감독	1분기 2분기	금감원 중앙회
2.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			
① 건전성 규제기준 강화			
▪ 대손충당금 기준 강화	감독규정 개정	2분기	금융위
▪ 가계대출 신용위험 계수 상향조정	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감원
② 가계대출 관리·감독 강화			
▪ 과도한 대출영업 억제	지도공문 발송 검사·감독	1분기 2분기	금감원
▪ RAAS 평가지표 개선	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감원

붙임 2-3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 -

2014. 2. 27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현 황

Ⅱ. 그간의 정책 대응

Ⅲ. 평 가

Ⅳ. 향후 정책대응 방향

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추진과제

1. 가계부채 목표 관리

2.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환구조 개선

3. 전세대출 안정화 유도

4. 신용대출등 채무조정 지원

5. 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Ⅵ. 기대 효과

< 별첨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추진일정

Ⅰ. 현 황

◇ **'13년말** 기준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초과**
(한은 가계신용 기준, 1021.3조원)

1 (**현황**) '13년중 가계부채는 **57.5조원 증가**(전년말대비 6.0% 증가)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제2금융권 가계대출 등이 늘면서 전년대비 **증가폭은 확대**('12년 +47.6조원 → '13년 +57.5조원)

*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말대비, %) : ('05~'09년)9.4 ('10)8.7 ('11)8.7 ('12)5.2 ('13)6.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증감액(조원) : ('12년) 1.1 → ('13년) 7.7

○ 다만, **가계부채 증가율과 명목GDP 성장률**간의 **격차**는 **전년대비 축소**('12년 +2.2%p → '13년 +2.0%p^{e})

2 (**증감요인**) 가장 큰 비중(52%)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신용대출등**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판매신용 증가폭**은 **감소**

○ (**주택담보대출**) 주택거래량 증가, 전세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포함) **증가폭**이 확대(전년말 대비 +6.1%)

○ (**신용대출등**) **소득개선 지연** 등의 영향으로 **신용대출등**은 **'12년**에 비해 **크게 증가**

- **금융권역별**로는 저소득·저신용층이 주로 이용하는 **비은행권 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비은행 신용대출등 증가율(7.6%)은 은행 신용대출등 증가율(2.1%)보다 3배이상

가계부채 증감 및 잔액(단위 : 조원)

	'12년중 증감	(증감율)	'12년말 잔액	'13년중 증감	(증감율)	'13년말 잔액
가계부채	47.6	(5.2%)	963.8	57.5	(6.0%)	1,021.3
- 주택담보대출	26.8	(5.7%)	497.1	30.5	(6.1%)	527.6
(전세대출)	5.5	(28.4%)	24.9	5.6	(22.5%)	30.5
- 신용대출등	17.8	(4.5%)	408.8	26.6	(6.5%)	435.4
- 판매신용	3.1	(5.6%)	57.9	0.5	(0.8%)	58.3

Ⅱ. 그간의 정책 대응

◇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

1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11.6월)」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대응방향 및 정책수단** 마련

< 주요 내용 >

▸(은행) **가계대출 적정증가 유도**

* 고위험 주담대 BIS위험가중치 상향적용 /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 정착 /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에서 가계대출 실적지표 삭제 / 예대율 준수시한 단축

▸(은행) **대출구조 개선**

* '16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을 은행권 주담대의 30%로 확대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신보 출연료율 인하

▸(은행) **소비자 보호 강화**

* 변동금리 대출상품 설명의무 강화 / 고정금리 대출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비은행) **상호금융 및 여전사 대책**

* 여전사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 강화 /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

2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12.2월)」을 통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속도 관리 및 건전화 방안** 추진

* (상호금융권) 예대율 관리 강화, 고위험대출 규제·감독 강화,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대출심사 관행 확인 의무화
* (보험권) 가계대출 건전성 규제기준 상향조정,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 억제

3 '13년에는 **국민행복기금,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강화

* '13년중 국민행복기금 23만명,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21만명(주택담보대출 13만, 신용대출 8만)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
* 서민금융 공급 실적(조원) : ('11년) 2.2 ('12년) 2.9 ('13년) 4.1

Ⅲ. 평 가

◇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위험은 **완화**되었으나, **취약계층 상환능력 약화** 등 **부문별 취약성**은 상존

□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점차 개선**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의 **경제시스템 리스크 확산 위험**은 **크게 완화**

가계부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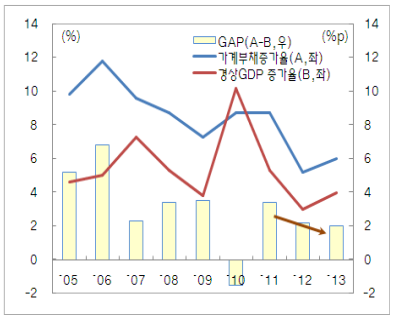

* 가계부채 : 가계신용 기준

대출구조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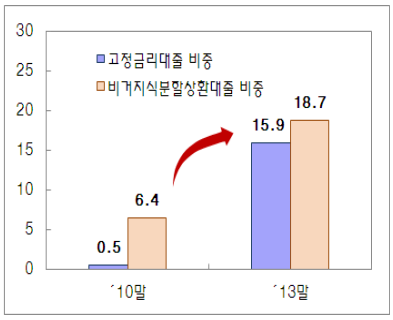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시스템리스크 평가

▸ **모건스탠리**('13.10월) : 안정적인 가계자산 구조, LTV·DTI규제 등으로 한국 가계부채 리스크는 관리가능

▸ **IMF 스트레스테스트**('14.1월) : 경제충격시에도 한국 가계부채의 부실 확대 가능성 미미

□ 다만, **가계소득 대비 부채 부담**이 높아 민간소비를 제약하고 있으며, **부문별 취약요인**이 여전히 존재

○ 대출구조 개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아직까지 **높은 수준**

○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제2금융권 대출, 전세대출 증가 등의 **잠재적 불안요인**도 잔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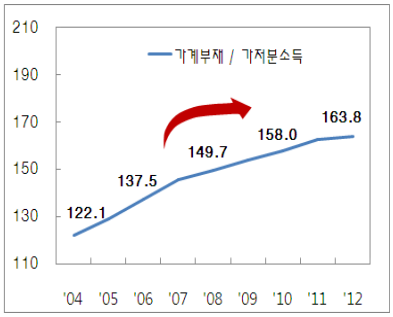

* 가계부채 : 자금순환 기준

주택담보대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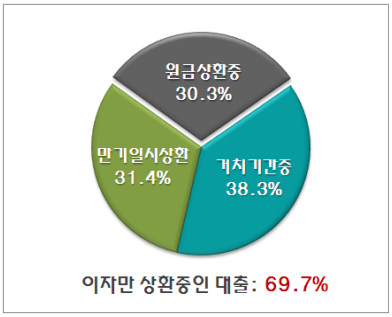

* 은행권, '13년말 기준

소득분위별 부채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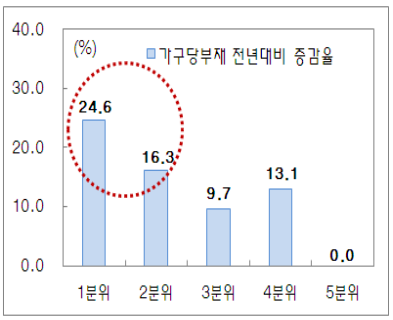

* '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Ⅳ. 향후 정책대응 방향

1 (**가계부채 인식**) 가계부채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위험**으로 기업부채와 달리 **단기간 해결이 어려운 문제**

○ **시스템리스크 완화**를 위한 **단기 대책**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중장기적 구조개선 노력**을 착실히 병행 추진

2 (**향후 대응**)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가계부채 조정 과정에서 민간소비·주택시장 등 **여타 경제부문에 악영향**이 없도록 **점진적 위험해소** 추진

○ **가계'부채'** 측면의 **구조개선 촉진** 노력과 함께, 가계소득 증대 등 **가계건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 병행

○ 이를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하고,

- **2017년까지 동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가계소득 개선, 부채부담 경감 등 **범부처 차원의 대응** 추진

* 가계부채/가처분소득('12년말) : (한국) 163.8% (OECD평균) 134.8%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2.26일)",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2.27일)"을 **우선 추진**하고, 가계소득 개선 등을 위한 **부문별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순차적으로 마련**

가계건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응 방향

Ⅴ.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추진과제

< 기 본 방 향 >

◇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환구조 개선**)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거래와 연동**되므로 주택거래 증가에 따라 **거래수요를 뒷받침하는 대출증가**는 **불가피**하고 **필요한 측면**

○ 따라서, **만기상환위험**을 완화시키고(일시상환→분할상환),

○ **금리변동**의 영향을 덜 받게 하면서(변동금리→고정금리),

○ **원리금은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도록(거치식→비거치식) 유도

◇ (**전세대출 안정화**) 전세→월세 전환 등 **임대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전세수요 쏠림을 완화**하도록 금융지원 제도를 정비

○ **저리의 공적보증부 전세대출**은 **서민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여타 계층**은 **시중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

◇ (**신용대출등 채무조정 지원**) **고위험·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인 취약차주의 **대출구조 개선·금리부담 경감** 지원

○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지속**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서민금융 지원 체계**로의 개편 추진

◇ (**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건전성 제고, 구조개선** 등을 추진하고 대출 취급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철저히 확인·관리**하는 **관행 정착**을 유도

1 가계부채 목표 관리

◇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가계부채 핵심 관리지표로 설정

□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관리하고, **가계소득과 성장률 격차**를 **축소**하여 **'17년까지** 동 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

* 가계부채/가처분소득('12년말, %)
: (한국)163.8 (스웨덴)172.1 (캐나다)154.3 (미국)114.9 (OECD평균)134.8

2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환구조 개선

가.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식 대출상품 공급 확대

1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14년중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을 **29조원**까지 확대

* 공급계획(조원) : ('13년) 25 → ('14년) 29

○ **기존주주 추가출자**를 통해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충**('14~'17년간 0.4조원 출자)

* 주금공 MBS잔액(조원) : ('13말)53.7 → ('17말)100.2 (+46.5조원 추가 공급)
* 주금공 출자 현황(%) : 정부 68.9(일반회계 61.5, 국민주택기금 7.4), 한은 31.1

○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모기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주금공 자기자본규제 개선**(BIS비율 8%→6%까지 적기시정조치 유예)

* 유사시 16조원 수준의 정책모기지 추가공급 가능

2 (**모기지증권 시장 활성화**) MBS, 커버드본드 등 모기지증권에 대한 **투자수요 기반을 확충**

○ **주금공 MBS**의 **만기통합발행*** **추진** (국고채는 '00.4월 기도입)

* MBS 발행은 매월 하되, 만기는 매년 6월/12월(예시)로 통합

○ 한은 **공개시장조작**(RP매매) **대상증권***에 **주금공 MBS를 포함**하고, **공적기금** 등**의 MBS 시장조성역할 강화

* (현행)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예보채 등) → (개선)주금공 MBS 추가
** 국민주택기금(여유자금 약 19조원)의 MBS 매입규모는 약 417억원 수준

3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유인체계 보완**

○ **(대출 건전성 기준)** 전액 만기연장한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한 **BIS위험가중치**를 **추가 상향**(현재 35~50%→35~70%)

* (현행) 일반 주담대 35%, 고위험 주담대 50%
(추가) 전액 만기연장한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연장 포함)의 경우 70%

○ **(구조개선 이행목표) 금융권별**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목표 이행일정을 재조정**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연도별 구조개선 이행목표**를 **조정**하고, **'17년말**까지 **40% 수준**까지 추가 확대토록 신규목표 설정

은행권 대출구조개선 이행목표(주택담보대출중 비중, %)

대출 유형	'13년말 실적	연도별 목표치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고정금리대출	15.9	17.0 → **20.0** (상향조정)	23.5 → **25.0** (상향조정)	30	**40** (신규설정)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18.7	19.0 → **20.0** (상향조정)	24.5 → **25.0** (상향조정)	30	**40** (신규설정)

*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 : '13년말 6.6% → '17말까지 15%

-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중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목표**를 **신규 설정**

* 보험권 : '13년말 현재 26.1% → '17년말까지 40%
* 상호금융권 : '13년말 현재 2.0% → '17년말까지 15%

○ **(주금공 MBS 편입대상 확대)** 원활한 구조개선 추진을 위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인정범위**를 확대

- 단, 분할상환 취지에 맞게 **대출 거치기간은 축소**(최장 2년→1년)

주금공 MBS 편입대상 대출

	현 행	개 선
대출만기	· 만기 10~30년	· 만기 5~10년 포함 (예 : 5년 만기 → 원금 25%이상 분할상환 7년 만기 → 원금 35%이상 분할상환)
대출금리	· 전기간 고정금리	· 준고정금리 포함(예 :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지원

1 **제2금융권**의 경우 장기대출에 필요한 **장기자금 조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원활한 **구조개선 지원방안**을 협의·마련(3월중)

* 예시 : 분할상환대출 인정범위 확대, 주택담보대출용 장기자금조달 지원 등

2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차주**의 **단기·일시상환 대출**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실시

○ '14년 상반기중 **주택금융공사·국민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1,000억원 내외 규모로 실시

○ **대출구조 전환의 필요성이 큰 차주**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

* 지원대상(예시) : 1가구1주택자, '14.2월 현재 6개월이상 실거주,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내 등 → '14.2분기중 신청을 받아 선별

다. 시장금리 상승위험에 대비하여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 촉진

1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현행보다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공제 대상도 추가 확대**

○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 소득공제 한도 확대(최대 1,500만원→1,800만원)

○ **만기 10~15년**인 경우 : 소득공제 혜택 신규부여(한도는 추후 결정)

※ 구체적 방안은 '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여 **'15년 이후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2 (**소비자 고지**) 대출취급시 소비자에게 **시중금리 상승시 예상되는 추가 이자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고지의무 강화**

3 (**준고정금리 대출**)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면서 금리변동 위험도 줄여주는 **다양한 준고정금리**(금리변동주기 5년이상, 금리상한 대출 등) **상품 출시** 유도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진실적 집계시, **준고정금리 대출**도 '**고정금리대출**'로 **인정***

* 금리상한 대출(예) : '1년 1%p 상한+대출만기중 3%p 상한', '3~5년 1%p 상한' 등

3 전세대출 안정화 유도

◇ **공적보증부 전세대출의 지원대상**을 **서민층 중심**으로 **개선**

□ 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 보증지원 대상**을 **전세보증금 4억원**(수도권외 지방은 2억원) 이하로 제한

* (현행) 전세보증금 6억원 이하 임차인이 전세대출시 보증지원
(개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단, 저소득·무주택자 대상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3억원 이하)

○ **여타 계층**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한 저리상품 대신 **민간 전세대출 상품**(일반은행 대출+민간 보증 등)을 이용토록 유도

4 신용대출등 채무조정 지원

◇ **고위험·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금리부담 경감 및 채무조정 지원** 지속

1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현행 연 1.0%)**를 인하**하고 대출한도 소진 추이를 보아가며 **대출한도**(현행 0.5조원) **상향**

* 금리인하폭과 대출한도 등 세부사항은 추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

○ 보증지원 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이용 차주 범위**를 **확대**

* 지원대상 고금리대출 기준 : (현행) 연 20%이상 → (개선) 연 15%이상
* '13년말 금융권 가계신용대출중 금리 연 15~20%인 대출액은 2.7조원 내외

2 **국민행복기금**의 **일괄매입 채무자**(94만명) 등 **채무조정 지원 지속**

○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 등도 **신속히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3 **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 등을 통합**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관 설립**

○ **미소금융, 보증부 저리대출**(햇살론 개인보증), **채무조정** 등 기존 서민금융 업무를 통합

5 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건전성이 취약한 **비은행권**(상호금융 등)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관행 확립**을 유도

1 (제2금융권) 상호금융권 등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및 불공정 영업행위 점검

○ **상호금융권 건전성규제 강화**를 **목표시한**('14.7월~'15.7월)대로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 기준 완화**

○ 연착륙 대책중 미이행된 **상호금융권 추진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매분기)

* ①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종료 추진 ②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및 법정화(농·수·산림조합) ③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농·수·산림조합)

○ **단기**(3~5년) **일시상환 대출 취급후 만기연장시 불공정 영업행위**(구속성 금융상품 부당수취 등)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 신설** 및 **점검**

2 (금융소비자 보호) '적합성 원칙*'을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국회 계류중)하고, '가계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

* 적합성 원칙 : 대출시 차주의 소득·재산·신용 등을 파악하여 차주의 상황에 적합한 대출을 취급해야 하는 의무

** 대출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일부 금융권(지방은행, 상호금융 등)에 확대 시행

VI. 기대 효과

1 가계부채의 만기구조가 중장기로 분산

○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17년말 40%**까지 확대하여 가계부채의 **연도별 만기도래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가계부채의 **차환위험을 줄이고** 만기집중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완화**

현 재('13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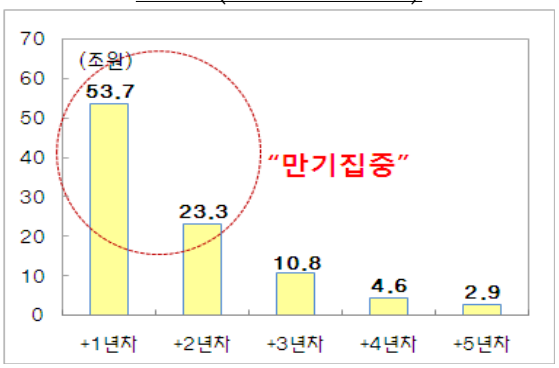

목 표('17년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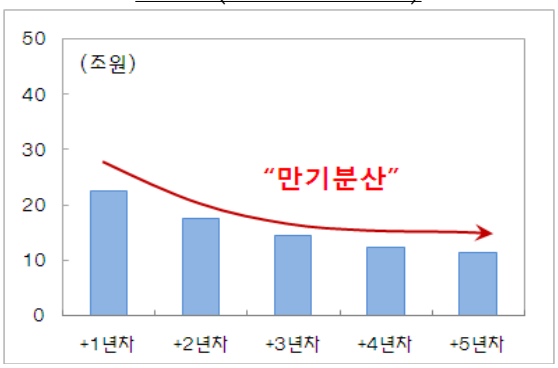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일시상환) 연도별 만기도래액

2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경감

○ **세제혜택 확대*, 주택금융공사 MBS 수요 확대**** 등으로 **고정금리 대출의 실질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의 고정금리 대출 선호유인 제고**

* 대출원금 2억원, 금리 5% 가정시 약 0.4%p 수준 실질금리 인하 효과
** MBS와 국고채간의 스프레드가 약 10bp 축소되어 추가금리인하 여력 확보

○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급증 위험이 완화**

고정금리 대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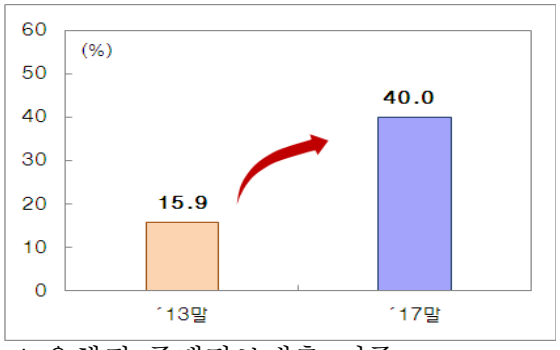

금리 1%p 상승시 추가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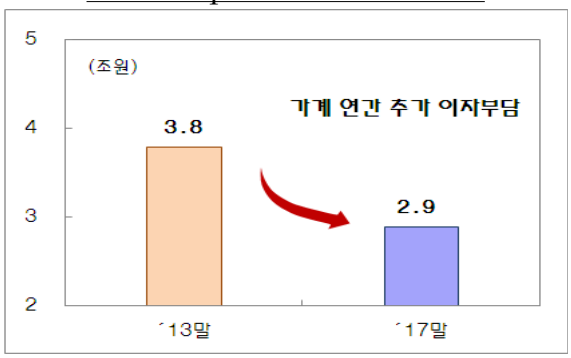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기준

3 전세쏠림 현상의 완화

○ 보증금 4억원 초과 **고액전세에 대한 정부지원을 조정**함으로써 자가-전세-월세 **점유형태간 주거비의 균형 제고**

○ 임대차시장 선진화 추진, 고액전세 제한 등을 통해 전세수요의 매매 또는 월세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과도한 전세쏠림 현상 완화**

4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여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확대**(연간 1,400억원 → **연간 2~3천억원 수준**)

○ 지원대상인 **고금리대출 기준**이 종전 연 20%에서 **15%로 완화**됨에 따라 **약 2.7조원**의 고금리대출이 **신규 지원혜택 수혜**

○ 연 15% 이상 고금리가 **연 8~12%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

5 가계부채 안정화 및 가계 채무상환부담의 실질적 축소

○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대출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가계부채의 **시스템리스크가 완화**되고, **가계 채무부담도 축소**

○ 가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의 상승세를 차단**하고,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전기 마련

가계부채/가계가처분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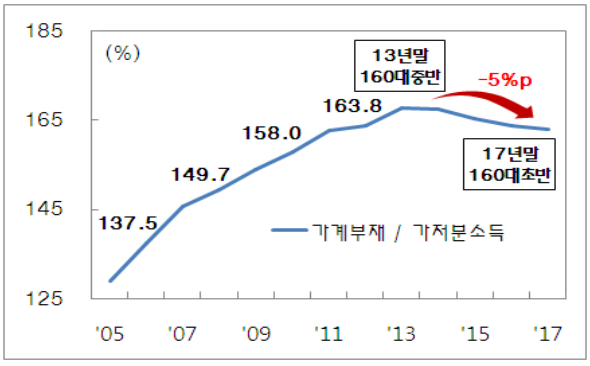

* 가계부채 : 한은 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 기준

가계 채무상환부담(DS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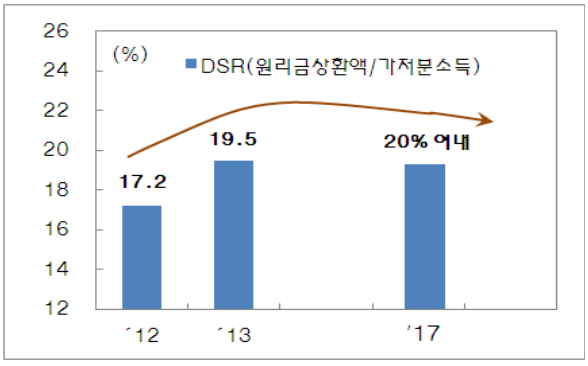

*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기준

별첨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추진일정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소관부처
1 가계부채 목표 관리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관리	가계소득 개선 가계부채 관리	'14년~	기재부, 금융위
2 주택담보대출 금리·상환구조 개선			
·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추가 출자 감독규정 개정	'14년~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한은
· 모기지증권 시장 활성화	-	'14.2분기	금융위, 한은
· 고위험 가계대출 BIS 규제 강화	시행세칙 개정	'14.2분기	금감원
· 금융업권 대출구조 개선 목표 강화	지도공문 발송	'14.2분기	금융위, 안행부, 농림부, 해수부, 금감원 등
· 주금공 MBS 편입대상 확대	주금공내규 개정	'14.1분기	금융위
· 제2금융권 대출구조 전환 지원	주금공내규 개정	'14.2분기	금융위, 국토부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소득세법 개정	'14년중 국회제출	기재부
· 금리변동 위험 소비자 고지 강화	시행세칙 개정	'14.2분기	금감원
· 준고정금리 대출 확대	지도공문 발송	'14.2분기	금감원
3 전세대출 안정화 유도			
· 서민층 중심 전세대출 보증 지원	주금공내규 개정	'14.4월	금융위
4 신용대출 등 채무조정 지원			
·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개선	국민행복기금 내규 개정	'14.2분기	금융위, 한은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확대	장학재단법 개정	'14.2분기	금융위, 교육부
· 서민금융 총괄기관 설립	관련법 제·개정	'14년중	금융위
5 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건전성규제 강화 및 미이행 과제 이행	관련법·규정 개정	'14~15년중	금융위, 안행부, 농림부, 해수부, 금감원 등
· 가계대출 불공정 영업행위 제재근거 규정 신설 및 점검	관련법·규정 개정	'14년중	관계부처 및 금감원
· 가계대출 취급 가이드라인	지도공문 발송	'14.2분기	관계부처 및 금감원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5-A. 금융위가 부과하고 있는 과징금의 종류 및 관련법률

금융정책국

□ 과징금 8개 법률

구분	법적근거
과징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등
	「금융지주회사법」 제64조(과징금)
	「은행법」 제65조의3(과징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6조(과징금)
	「보험업법」 제196조(과징금)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2(과징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과징금)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2(과징금)

5-B. 연도별 과징금 예산 및 징수현황
5-C. 연도별 과징금 체납 및 정리현황

□ 과징금 연도별 예산·징수현황 및 체납(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누적 미수납액
'09	11,872	5,122	43.1	20,985
'10	9,975	9,717	97.4	24,937
'11	8,379	13,332	159.1	26,459
'12	9,258	12,650	136.6	32,022
`13	12,366	17,971	145.3	36,493

5-D. 체납 후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재산추적 등)까지 구체적인 절차(기간 및 근거기준) 및 방법(금융위의 권리, 의무 등)에 대한 상세설명

□ 금융위는 수시로 미수납채권에 대해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미수납채권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결손처분 실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34의4,「은행법 §65의11 」등

□ 한편, 소멸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류·독촉을 실시하는** 등 **미수납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5-E. 연도별 총 결손처분 건수 및 금액

(단위 : 백만원)

연도	결손처분 건수	결손금액
‘09	(주)신ㅇㅇIT 등 57건	834
‘10	(주)경ㅇㅇㅇ랜드 등 56건	245
‘11	(주)신ㅇ크 등 86건	621
‘12	보험대리점 등 39건	163
`13	(주)조ㅇㅇ토 등 28건	530

※ 과태료 포함건임

5-F. 연도별 가산금 종류별 징수 및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수납률 (B/A)
‘09	88	88	100
‘10	98	98	100
‘11	173	173	100
‘12	82	82	100
`13	23	23	100

※ 과징금 · 과태료 체납에 따른 가산금

5-G. 과징금 부과에 따른 불복관련 규정 및 절차 설명

□ 불복관련 규정

법적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2조(이의신청)
「금융지주회사법」 제67조(이의신청)
「은행법」 제65조의6(이의신청)
「보험업법」 제196조 제4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8조의5(이의신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의2(이의신청)
「공인회계사법」 제52조의3(이의신청)

□ 불복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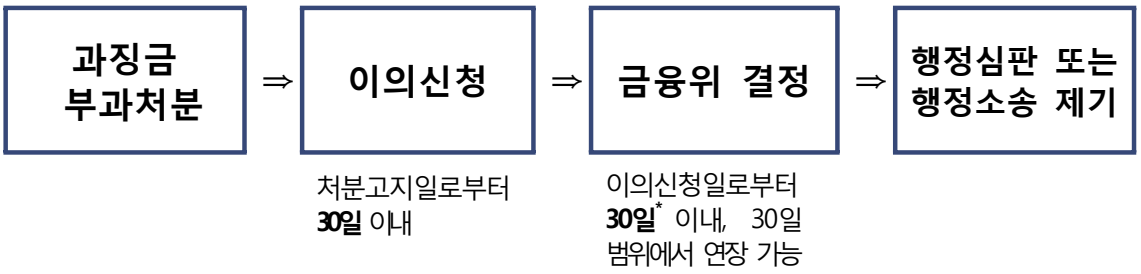

* 자본시장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은 60일

5-H. 과징금 불복절차에 따른

a) 불복접수 및 처리현황

b) 평균결정기간

c) 각각의 경우에서 결정기간을 초과한 건수 및 금액

d) 각각의 경우에서 결정기간을 초과한 건을 금융위 승 건, 금융위 패 건으로 구분하여 건수와 금액을 일치시킬 것

□ 공정시장과·자본시장조사단

과징금 부과사유 (위반사유)	구 분	불복건수			평균 결정 기간	기간내 처리 여부 (O/X)	처리 결과
		접수건수 (C=A+B)	처리건수 (A)	취하건수 (B)			
자본시장법 위반(구 증권 거래법 위반)	2010년	8	6	2	60일	O	기각
	2011년	1	1	-	84일	O	기각
	2012년	2	2	-	70일	O	기각
	2013년	1	1	-	78일	O	기각
	2014년 8월현재	-	-	-	-	-	-
	총 계	**12**	**10**	**2**			

※ 연도는 접수일자 기준으로 구분

□ 중소금융과

과징금 부과사유 (위반사유)	구 분	불복건수			평균 결정 기간	기간내 처리 여부 (O/X)	처리 결과
		접수건수 (C=A+B)	처리건수 (A)	취하건수 (B)			
상호저축은 행법 위반	2010년	-	-	-	-	-	-
	2011년	1	1	-	118일	X[3]	일부 인용 (감액)
	2012년	-	-	-	-	-	-
	2013년	6	4[1]	-	74일[2]	X[3]	기각
	2014년 8월현재	-	-	-	-	-	-
	총 계	**7**	**5**				

1) 처리완료된 4건은 기간내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절차 진행 중 (이의신청인이 관련 형사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이의신청의 처리를 유보해 달라고 요청하여 처리를 보류하였으며, '14.9.중 처리 예정)
2) 처리완료 4건 평균 처리기간
3) 관련 행정소송의 계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검사 실시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 연장

5-I. 연도별 과징금 관련 소송 현황(금융위 기준 승소/패소/부분승(패)소 등을 건수, 금액으로 명기)

연도	과징금 부과 금액(건수)	소송결과
'09	1,535백만원 (6건)	금융위 승소 6건
'10	1,326백만원 (5건)	금융위 승소 2건, 패소 1건, 소송 진행 중 1건
'11	3,326백만원 (6건)	금융위 승소 3건, 소송 진행 중 3건
'12	2,734백만원 (6건)	금융위 승소 2건, 소송 진행 중 4건
`13	12,269백만원 (10건)	소송 진행 중 10건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6. TF 관련

A. 최근 3년간 금융위 내부 설치한 T/F현황

B. T/F 통한 제도개선 등 결과물

C.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참여한 외부 T/F현황

D. 외부 T/F 발표 및 의견제시를 위해 작성한 자료 일체

□ **최근 3년간 금융위 내부 설치한 T/F현황**

(다음 페이지 참조)

□ 최근 3년간 금융위 내부 설치한 T/F현황 (2012년~현재)

연번	TF명	활동기간 (설치일~종료일)	설치목적	구성인원	회의개최일	회의내용	활동성과
1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관계기관 합동 TF	'12.07~'12.12 (6개월)	단기지표 금리 개선	금융위(금융정책국장, 은행과장, 자본시장과장, 시장분석과장), 기재부(자금시장과장), 한국은행(금융시장부장), 금감원(은행감독국장, 금융투자감독국장),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서울대 안동현 교수, 서울여대 오승현 교수	총 10차 (7.19, 7.25, 8.1, 8.14, 8.21, 9.6, 9.26, 10.25, 11.22, 12.11)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 방안 논의	'12.8.22일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논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12.10.22일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 발표 등 단기지표 금리 개선방안 논의
2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13.04~'13.06 (3개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논의	김인철(성균관대 교수, 위원장), 윤창현(금융연구원장, 간사), 김경수(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신희택(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영구(한국씨티지주회장), 김대식(한양대 교수), 신성환(홍익대 경영학 교수)	총 9차 (4.18, 4.22, 4.29, 4.30, 5.12, 5.27, 6.3, 6.10, 6.18)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등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논의	'13.6.21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3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	'13.04~'13.08 (5개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방안 마련	고승범(금융위 사무처장, 단장), 김용범(금융위 금정국장), 최상목(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남기만 (산업부 무역정책관), 전기정(해수부 해운물류국장), 김진형(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 김동석(KDI 부원장), 이병윤(금융연 부원장), 유진근(산업연 부원장), 신진영(연세대 교수), 안덕근(서울대 교수), 강경훈(동국대 교수)	총 11회 ('13.4.30 ~ '13.8.26)	- 창업·기술기업, 해외프로젝트 등에 지원 강화 방안 -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간 마찰 요인 최소화 방안 - 정책금융기관간 협의·조정 강화 및 기능중복 해소 방안 등	'13.8.27일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발표

연번	TF명	활동기간 (설치일~종료일)	설치목적	구성인원	회의개최일	회의내용	활동성과
4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	'13.04~'13.06 (3개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	김용범(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권인원(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박경서(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박창섭(SC금융지주 전무), 박영석(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양일수(삼일회계법인 전무), 구본성(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 송옥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웅(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총 7차 ('13년 4.19, 4.30, 5.9, 5.16, 5.23, 5.30, 6.13)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방안, 주주 및 외부통제 강화방안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논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 발표 ('13.6.17)
5	단기자금시장 개편 관련 관계기관 TF	'13.07~'13.11 (5개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마련	금융위 시장분석과장 기재부, 한은, 금감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담당 실무자	총 5차 (7.30, 8.21, 8.28, 9.13, 11.20)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은행 중심 시장으로 개편하는 방안 마련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발표('13.11.20)
6	금융회사 정리체계 개선 TF	'14.02~현재	국내 금융회사 정리제도 개편방안 논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글로벌금융과), 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 한국은행(금융검사분석실), 예금보험공사(정리제도개선 TF), 서울대(정순섭 교수), 이화여대(오수근 교수), 상명대(정지만 교수) KDI(김영일 박사), 금융연구원(임형석 연구위원, 이재연 연구위원)	총 6차 ('14.2.7, 3.14, 4.18, 5.16, 6.20, 7.18 ~)	국내 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한 개편방안 논의	진행중

연번	TF명	활동기간 (설치일~종료일)	설치목적	구성인원	회의개최일	회의내용	활동성과
7	통일금융 TF	’14.05~현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금융의 역할과 정책과제 논의	금융위(금융정책국장, 산업금융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자문관), 기재부(통일경제기획팀장), 통일부(남북협력과장), 한국은행(국제경제연구실 부국장), 금감원(거시감독국장), 예보(보험정책부장), 금융연(이상제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윤덕룡 박사), 산업연구원(이석기 박사), 산업은행(조사분석부장), 정책금융공사(조사연구실장), 기업은행(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수석연구원), 자산관리공사(창조전략개발원장), 수출입은행(남북협력기획실장), 서울대 경제학부(김병연 교수), 서울대 경제대학원(이영섭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장형수 교수), 골드만삭스(권구훈 박사)	총 3차 (5.26, 6.25, 7.9 ~)	주요 체제이행국 사례 조사, 남북한 금융제도 통합방안, 통일재원 규모 및 조성방안 등	진행중

□ T/F 통한 제도개선 등 결과물(붙임 1)

□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참여한 외부 T/F현황** (2012년~현재)

연번	TF명	활동기간 (설치일~종료일)	설치목적	구성인원	회의개최일	회의내용
1	외환분야 규제개선 추진단	'14.04 ~ 06	외환분야 규제개선 추진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한은, 금감원, 외국환은행 등 외환분야 실무 담당자	총 5차 (4.15. 등)	외환분야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논의
2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	'14.07~현재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정책과제 이행	기재부·산업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 관계당국, 협회,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	1차 : '14.7.11	T/F 구성, 운영방향 및 향후 논의과제 논의

□ **외부 T/F 발표 및 의견제시를 위해 작성한 자료 일체(붙임 2)**

<붙임 1-1>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2. 10. 22(월) 브리핑시(14:00)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소비자보호총괄국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책 임 자	최용호 과장 (2156-9730) 양현근 국장 (3145-8020) 박세춘 국장 (3145-7050) 김용우 국장 (3145-5700) 김평섭 부장 (3705-5704)	담 당 자	이인욱 사무관 (2156-9731) 권창우 팀 장 (3145-8045) 이성원 팀 장 (3145-7110) 정영석 부국장 (3145-5688) 이열강 대 리 (3705-5223)	
배 포 일	2012. 10. 22(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8)	총 1 매

제 목 :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

□ 은행연합회가 **9.17일 공시한 코픽스**('12.8월 기준)에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 향후 유사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음

□ 同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은행의 검증강화**를 위한 **코픽스 내부통제 표준절차** 마련
② **은행연합회**의 공시前 **사전검증 강화**
③ 협회 내 수정공시 등을 심의하는 **코픽스 관리위원회(가칭) 신설**
④ 은행 내부통제 준수 등에 대해 **사후검사 강화** 등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별첨>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이 자료는 2012년 10월 22일(월) 금융위원회 브리핑(14:00 예정)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

2012. 10. 22.

관 계 기 관 합 동

목 차

Ⅰ. 검토배경

<참고1> 코픽스 관련 현황

Ⅱ. 현행 코픽스 문제점

Ⅲ. 개선방안

Ⅳ. 추진계획

<참고2> 코픽스 제도개선 전후 비교

Ⅰ. 검토배경

□ '10.1월 도입된 **코픽스(COFIX)***는 주택담보대출 등 만기가 긴 대출의 **기준금리**로서 **활용도****가 **지속 증가**

* 코픽스(Cost of Funds Index)는 9개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서 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경 공시

** '12.6말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41%(127조원), 원화대출의 14%(156조원)가 코픽스 연동

○ 금년중 **단기코픽스**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어 **대출시장**에서 **코픽스(단기코픽스)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전망

□ 그러나 최근 **은행의 정보제공 과정에서 입력오류**로 인하여 9.17일 공시된 **코픽스**('12.8월)가 **실제보다 높게 잘못 공시***된 사실이 발견

* 실제 보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1bp,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3bp 높게 공시

○ 은행연합회는 잘못 공시된 코픽스를 **수정공지**(10.8일)하였고, 은행들은 **고객이 실제보다 추가납부한 이자**에 대해 **환급** 조치

* 은행연합회, 은행권(10.4), 타 금융협회(10.17)에 환급 관련 협조공문 송부

* 금감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은행권에 공문 송부(10.11)

□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조달한 비용**을 기초로 산출하는 금리로 LIBOR 등 호가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높은 금리**

○ 그러나 이번과 같은 **공시오류**가 재차 발생할 경우 **대출기준금리**로서 **신뢰성**이 **저하**되고, **대출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 현행 **코픽스 금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향후에는 **유사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금년중 도입되는 **단기코픽스**도 코픽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단기코픽스 공시 前에 신뢰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

참고 1 **코픽스 관련 현황**

1. 코픽스 운영근거

□ **은행연합회(협회)와 9개은행간 협약**을 통해 마련한 **「코픽스 운용지침」**에 따라 매월 **산출 및 공시***

* 매월 15일경 협회 홈페이지에 잔액기준 코픽스 및 신규취급액 코픽스 2종 공시

2. 절차

① 9개은행 단계: 산출 및 제출

○ (산출) **은행**들은 금리조사표(한은 제출) 등을 기반으로 **코픽스 계산시 포함**되는 **수신상품별 금액 및 가중평균금리**를 산출

○ (자체검증) 은행들은 협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대차대조표, 금리조사표 세부자료 등과 비교하여 **자체검증 실시**

○ (제출) 은행들은 **「코픽스 기초자료 입력시스템」**을 통해 **4개 기초정보***만 공시 직전일(매월 14일경)에 협회에 제출

* ① 월말 잔액합계, ② 잔액합계의 가중평균금리
③ 월중 신규취급액합계, ④ 신규취급액합계의 가중평균금리

② 협회 단계: 공시

○ (검증) **협회**는 은행이 입력한 **기초정보**가 전월과 비교하여 **변동폭이 과도***한 경우에만 **해당 은행에 검증을 요청**

* 잔액(전월비 ±15%), 신규취급액(전월비 ±70%), 가중평균금리(전월비 ±40bp)

○ (공시) **협회**는 홈페이지에 **매월 15일경 코픽스 공시**

3. 활용현황

□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로 주로 활용중

<'12.6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중 코픽스 연동 비중(금감원)>

	총 원화대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비중	14%	34%	41%	0.2%

Ⅱ. 현행 코픽스 문제점

1. 은행별로 코픽스 산출·검증 절차가 상이

□ 코픽스 자체검증 등 **내부통제 표준절차가 없어 은행**에 따라 기초정보 검증 절차 및 내부통제 강도 등이 **상이**

2. 은행연합회 사전검증 효과가 미미

□ 협회는 '코픽스 운용지침'에 따라 은행에게 **4개 기초정보**만 받고 있어, 전월 대비 **과도하게 변동**된 경우만 은행에 **검증을 요청**

○ 그 결과 협회는 이번 공시오류와 같은 **은행 입력실수** 등을 **공시 前에 검증하지 못하는 상황**

3. 수정공시 관련 근거 및 절차가 부재

□ 현행 **'코픽스 운용지침'**은 **기초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어도 **수정하지 않도록** 규정

○ 따라서 이번과 같이 **은행의 입력실수 등 오류**가 발견되어도 지침상 **수정공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수정공시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정함에 따라 **수정공시 결정**과 관련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

* 이번 코픽스 수정공시는 협회가 9개은행에 개별동의를 받아 시행

4.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 운용지침 개정, 절차 검증 등 코픽스 관련 주요사안에 대해 **협회**가 사안별로 **은행들과 개별협의**를 통해 **대응**

Ⅲ. 개선방안

◇ **코픽스(단기코픽스)** 관련 **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사전검증 강화**

○ **업계 자율**로 **코픽스** 관련 **내부통제 표준절차** 마련

○ 공시 前 **은행연합회의 사전검증** 강화

◇ 은행연합회 내 **독립적인 「코픽스 관리위원회(가칭)」** 신설

○ 위원회가 **코픽스(단기코픽스) 수정공시** 여부 **심의**

○ 위원회에서 **코픽스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

◇ **코픽스(단기코픽스) 내부통제 준수** 등과 관련 **사후검사 강화**

1. 내부통제 표준절차를 마련하여 은행 자체 검증강화

□ (현행) **은행별**로 금리 산출, 자체검증, 제출 등의 절차가 **상이**

□ (개선방안)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의 **코픽스(단기코픽스) 내부통제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은행 내규**에 반영

* 현재 CD금리는 금투협 주관으로 금리제출 기본원칙 마련중(8.22일 발표)

* 英 LIBOR 개혁 최종안(9.28)에도 기초금리 제출 관련 행동규범 마련 포함

○ 코픽스 검증 등과 관련 **은행들이 최소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내부통제 절차**에 반영하여 **오류 발생**을 **최소화**

< 표준절차에 포함되는 검증강화 내용(예시, 은행연합회) >

① 협회 제출 前에 은행이 산출한 코픽스 관련 정보와 **재무상태표·금리조사표 세부자료** 등과 **비교**하여 **자체검증 강화**

② 코픽스 관련 정보를 **산출담당자(실무자)가 입력**하고 나서, **확인책임자(팀장급)**가 **확인한 후에 협회에 제출**

③ 산출한 코픽스 정보를 부서장(부장급)에게 **사전보고**하고, 정보입력後 사전 보고자료와 입력자료를 **사후보고**하여 **부서장 확인**

2. 협회 사전검증체계 강화

□ (현행)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제출한 4개 기초정보가 전월에 비해 **변동폭이 과도한 경우**에만 **은행에 검증**을 요청

□ (개선방안) 은행들이 **코픽스(단기코픽스) 기초정보** 뿐만 아니라 **기초정보 산출을 위한 세부자료***도 **공시 前****에 **협회**에 전산 **제출**

* 코픽스 산출시 포함되는 수신상품별 조달금액 및 금리

** 코픽스 관련 자료(→매월 14일경), 단기코픽스 관련 자료(→ 매주 화요일)

< 코픽스 공시 전 은행이 협회에 제출하는 자료 개선 前後 비교 >

개선 前	개선 後
○ 4개 기초정보 수치만 제출	○ 4개 기초정보(현행과 동일) ○ **(신설) 코픽스 산출 관련 세부정보*** * 수신상품별 조달금액 및 금리

○ **협회**는 전산시스템(코픽스 자료 입력시스템)을 통해 **은행이 제출한 세부자료**를 기초로 **코픽스 수치를 별도로 산출**하고,

- 이를 **은행이 입력한 수치와 교차검증***한 후 공시

* 은행의 입력·계산 실수 등을 협회가 공시 전에 검증 가능

3. 「코픽스 관리위원회(가칭)」 신설

□ (현행) 협회 및 은행간 체결한 COFIX 운용지침 상 **수정공시**는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 **수정공시** 관련 **객관적인 기준 및 결정절차** 등이 **없는 상황**

○ 또한, **코픽스(단기코픽스)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없어** 협회와 은행 등이 사안별로 결정

* 예) 은행이 신규 개발한 수신상품을 코픽스(단기코픽스) 산정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 코픽스(단기코픽스) 운용지침 개정 등

□ (개선방안) 은행연합회 내 별도의 **「코픽스 관리위원회(가칭)」 신설** (협회, 은행 등에 독립적인 민간위원회로 설치)

○ 위원회는 **학계,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및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 등 **5~7인**으로 구성 (위원장은 민간인 중 1인이 담당)

○ **위원회**는 **수정공시 기준, 수정공시 여부, 운용지침 개정** 등 코픽스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 등을 담당

< 「코픽스 관리위원회(가칭)」의 역할(예시) >

① 코픽스(단기코픽스) **운용지침 개정사항**에 관한 **심의**
② 수정공시 기준 및 수정공시 여부 등 **수정공시 관련 심의**
③ 코픽스(단기코픽스)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완방안 권고
④ 은행 신규상품 개발시 **코픽스(단기코픽스) 산정대상에 포함 여부 심의**
⑤ 기타 코픽스(단기코픽스) 운영에 관한 권고 및 자문

○ 위원회는 **금년중 구성을 완료**하고, **'13년초**부터 **운영**

4. 사후검사 강화

□ **코픽스(단기코픽스)** 관련 **내부통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후검사** 실시(금감원)

○ 특히, 이번 오류사태와 관련 **소비자 피해방지 조치**, **내부통제 강화** 등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집중검사** 실시(금감원, 금년중)

5. 지표금리 개선 지속 추진

□ **관계기관 합동TF*** 주관으로 코픽스, CD금리, 코리보 등 **기준금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 학계전문가, 연구기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운영중(7.19~)

Ⅳ. 추진계획

◇ 추가적인 **코픽스 공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을 가급적 조기**에 **적용 완료**할 계획

○ 금년중 도입되는 **단기코픽스**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同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

추진과제	조치 필요사항	주관	일정
1. 표준절차 마련	**코픽스(단기코픽스) 내부통제 표준절차** 마련	은행연합회, 9개은행	10월중
	은행별 내규에 반영	9개은행	11월중
2. 협회 사전검증 강화	은행이 협회에 제출할 코픽스·단기코픽스 **세부자료 선정**	은행연합회, 9개 은행	10월중
	코픽스·단기코픽스 세부자료 **전송시스템 개선**	은행연합회, 9개 은행	금년중
3. 코픽스 관리위원회 신설	**위원회 설치** 및 **수정공시** 관련 **코픽스 운용지침 개정**	은행연합회	11월중
	위원회 구성	은행연합회 등	금년중
	위원회 활동 개시	코픽스 관리위원회	'13년초
4. 사후검사 강화	**코픽스·단기코픽스 내부통제 절차 준수** 등 **정기검사 실시**	금융감독원	수시
	코픽스 내부통제 강화 등과 관련 **집중검사**	금융감독원	금년중
5. 지표금리 개선방안 지속 마련	지표금리 관련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TF	금년말

참고 2 코픽스 제도개선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선
공시前	은행	• 은행별로 코픽스 산출, 검증, 제출 등 절차가 상이	• **9개은행**이 **내부통제 표준절차**에 규정된 **검증** 준수
		• 은행이 코픽스 관련 기초정보 4개*만 협회에 제출 * 신규취급총액 및 가중평균금리, 잔액총액 및 가중평균금리	• **기초정보**와 함께 코픽스 산출 관련 **세부정보***도 제출 * 코픽스 산출시 포함되는 수신상품별 조달금액 및 금리
	협회	• 전월과 비교하여 변동폭이 과도한 경우만 사전검증 가능	• 세부정보를 기초로 **수치를 자동산출**하여 **은행 입력수치**와 **공시前 교차검증** * 은행의 입력오류 실수 등 방지
공시 당일	협회	• 매월 15일경 공시	左同
공시後	금융감독원	• 은행업무 전반의 내부통제 준수 여부 검사 실시	• **코픽스·단기코픽스** 관련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사후검사**
수정공시	코픽스 관리위원회	• COFIX 운용지침 상 **수정공시가 불가능**	• **코픽스 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수정공시 기준 및 수정공시 여부** 등 심의
코픽스 관련 사안	코픽스 관리위원회	• 은행연합회에서 사안별로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	• **코픽스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 * 운용지침 개정, 신규상품의 코픽스 산정대상 포함 여부 등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2012. 8. 22(수) 브리핑시(15:00)부터 보도가능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은행과, 자본시장과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금융투자감독국 (한국은행) 금융시장부			
책 임 자	최용호 과장 (2156-9730) 배준수 과장 (2156-9810) 김학수 과장 (2156-9870) 이형일 과장 (2150-2750) 양현근 국장 (3145-8020) 이은태 국장 (3145-7580) 서영경 부장 (759 -4521)	담 당 자	이인욱 사무관 (2156-9733) 서나윤 사무관 (2156-9814) 오유정 사무관 (2156-9875) 양윤영 사무관 (2150-2753) 권창우 팀 장 (3145-8045) 박학순 팀 장 (3145-7600) 민좌홍 팀 장 (759 -4473)	
배 포 일	2012. 8. 22(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8)	총 2 매

제 목 :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논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T/F***를 구성(7.19)

*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합동T/F 회의 개최」 보도참고자료 참조(7.19)

○ T/F에서 검토 중인 다양한 방안 중 **5차 TF회의(8.21)**를 통해 확정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우선 발표**

□ **주요 개선내용**

①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3개월물 조달평균비용**을 **반영**하고 **매주 발표**되는 **단기코픽스**를 **신규도입**

- **단기코픽스**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 가계 신용대출** 등의 **단기지표금리**로서 **활용**될 전망

-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단기코픽스**는 **금년 11월 첫째주(잠정) 공시** 예정(은행연합회)

*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코픽스 연동상품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추진

② **시장성CD 발행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 시장성CD를 당분간 일정수준(약 2조원) 발행**키로 협의

③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인 호가제출 기본원칙** 마련, **CD 관련 정보공시 강화** 등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 **CD금리 산정**의 **유효성 및 투명성 제고**

- 금년 9월중 **기본원칙** 마련 **및 정보공시 강화**를 시행하고, 금년 하반기에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 **향후 TF 논의과제 및 추진계획**

○ 향후 관계기관 합동TF를 중심으로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모색** 등을 **지속 추진**

○ 금번 개선방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별첨>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논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이 자료는 2012년 8월 22일(수) 금융위원회 브리핑(15:00 예정)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논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012. 8. 22.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계기관 합동T/F

목 차

Ⅰ. 그동안 추진경과

<참고1> 그동안 발표된 단기지표금리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Ⅱ.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Ⅲ. 시장성CD 발행 활성화 추진

Ⅳ.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Ⅴ. 향후 TF 논의과제 및 추진계획

<참고2> 자금시장 대안 지표금리별 장단점 비교

Ⅰ. 그동안 추진경과

□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T/F**를 구성(7.19 보도참고자료 배포)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학계전문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참여

○ 합동T/F는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현재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

⇨ **(기본방향)** 1. **대출시장**에서 CD금리를 대신할 수 있는 **지표금리** 마련
2.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3. 금리스왑시장 등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모색

* 다양한 이해관계자, CD연동 상품잔액('12.3말 은행대출 327조원, 금리스왑 4,211조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유효한 CD금리가 고시**될 필요

□ 그동안 T/F는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단기코픽스 도입, CD금리 유효성 제고,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등을 다양하게 논의

○ 또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토론회, 전문가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장참가자 의견***을 **적극 수렴**

* T/F회의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가 참여하여 은행·증권사 의견을 전달
*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8.20, 금융연구원 주최)
* 은행 실무담당자(8.7), 은행 부행장(8.13) 등 간담회 개최

□ 현재 T/F에서 검토 중인 다양한 방안 중 **5차 회의(8.21)**를 통해 확정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우선 발표**하기로 결정

○ **단기대출 지표금리**로서 **①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한 **② 시장성CD 발행 활성화** 및 **③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참고 1 그동안 발표된 단기지표금리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 그동안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단기지표금리**를 포함한 **단기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

○ **시장참가자**들이 CD금리를 대신하여 **코픽스, 통안채 금리, RP금리**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구분	주요 내용
1. 코픽스 신규도입 ('10.1월)	□ **대출시장**에서 CD금리를 대신할 수 있는 **코픽스**를 신규도입(은행연합회 매달 공시중) ○ 도입이후 **코픽스 연동 대출비중**이 **+14.3%** 증가 * '09말→'12.3말 비중: CD(49.6→30.0%), 코픽스(0.0→14.3%)
2. 단기지표금리 육성방안 마련 ('10.7월)	□ 단기국채 발행을 통해 **단기국채금리***를 단기지표금리로 육성 * 원활한 단기국채 발행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 □ **통안채 금리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매주 일정규모 이상의 **통안채 정례발행** 지속
3. 단기자금시장 구조적 개선방안 ('11.6월)	□ 콜시장 위주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시장을 **기관간 RP시장** 등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 **기간관 RP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효성 있는 RP금리**가 도출되도록 유도
4. RP시장 활성화 등 RP금리 육성방안 ('12.6월)	□ **RP거래 인프라 보완, 증권금융의 RP거래 시장조성자 기능 강화** 등 RP거래 활성화 세부방안 마련 ○ **예탁결제원 RP거래 시스템(SAFE+)**을 통해 **주요 일물별 RP금리**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12.7월)

Ⅱ.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1. 검토배경

□ '10.1월, 대출시장에서 CD금리를 대신하기 위해 **코픽스***를 도입

* 9개 국내은행들의 '자금조달 가중평균비용지수'이며, 매월 1회(매월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발표중

○ **코픽스**는 **대출지표금리**로서 **은행 자금조달비용 반영도**가 **높은 장점** 등이 있어,

- 만기가 상대적으로 장기인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활용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존 CD연동 대출 비중**이 **축소**

* 주택담보대출 코픽스 비중(%): ('10.1월)코픽스도입, ('10말)21.5, ('11말)40.1, ('12.3말) 41.3

(%, %p)		'09.12말(A)	'12.3말(B)	B-A	'12.3말 잔액
원화대출	CD금리 연동	49.6	30.3	△19.3	327.3조원
	코픽스 연동	-	14.3	+14.3	153.9조원
가계대출	CD금리 연동	72.1	37.0	△35.1	166.2조원
	코픽스 연동	-	34.0	+34.0	152.8조원
기업대출	CD금리 연동	32.8	24.5	△8.3	146.8조원
	코픽스 연동	-	0.1	+0.1	1.0조원

* 출처: 금융감독원

* '12.3말 총잔액: 원화대출 1,079.6조원, 가계대출 448.8조원, 기업대출 599.6조원

□ 다만, **코픽스**는 총 자금조달의 가중평균비용으로 **평균만기**가 **9~10개월 수준**이고 **월 1회만 발표**됨에 따라,

○ 은행들은 **만기가 1~2년내로 짧은 변동금리부 단기대출***의 경우 여전히 코픽스 보다는 **CD금리**를 **선호**하는 경향

* 예: 운전자금용 기업대출, 가계 신용대출 등

◇ CD금리를 대신할 **단기대출 지표금리 개발 필요성**이 제기

⇨ 현행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추진

2. 단기코픽스 도입방안

◇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3개월물 조달평균비용을 반영**하고 **매주 발표**되는 **단기코픽스**를 **신규도입**

□ **[산정 대상은행]** 현행 코픽스 산정대상인 **9개 국내은행***

* 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SC·씨티·농협·기업은행 등

○ 9개은행 수신이 **국내은행 총수신의 대다수**를 차지('12.7말 87.3%)하고 있어 **금리의 대표성 확보**가 가능

□ **[산정범위]** 현행 코픽스 산정시 포함되는 조달상품 중 **만기가 3개월물*인 조달상품**을 대상으로 산정

* '11.1월~'12.6월중 9개은행이 매주 신규취급한 총 조달액 중 3개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4.8% 수준

□ **[공시주기]** **단기대출 지표금리**로서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주 공시*** 추진

* 예) 前주 조달평균금리를 月요일·火요일 점검한 후, 水요일 공시

□ **[공시유형]** 9개은행이 **매주 신규취급한 3개월물 자금조달**의 **가중평균금리**를 지수화하여 발표 (신규취급액 기준만 발표)

〈 코픽스와 단기코픽스 비교 〉

구분	코픽스('10.1월~)	단기코픽스
개념	**총 조달상품**의 가중평균비용지수	**3개월물 단기조달상품**의 가중평균비용지수
산정 대상은행	9개 은행	左同
산정대상 조달상품 범위	**모든 조달상품** (단, 수시입출금식·요구불예금, 전환사채 등 제외)	코픽스 산정대상 조달상품 중 계약만기 **3개월물 상품** * 3개월 정기예금, 회전식예금, CD 등
공시주기	**매월 1회**(매월 15일)	**매주 1회**(매주 수요일)
공시유형	잔액기준 코픽스 및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단기코픽스**
산정방식	수기입력 방식	전산입력 방식

3. 기대효과

□ **단기코픽스**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 가계신용대출** 등의 **단기지표금리**로서 **CD금리**를 상당부문 **대신**할 전망

○ **은행** 입장에서 **단기코픽스**는 **단기 자금조달비용 반영도***가 CD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편**

* 단기코픽스는 전체 3개월물 조달의 가중평균금리인 반면, CD금리는 3개월물 조달에서 극히 일부만 차지하고 있는 CD를 대상으로 산정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단기코픽스**는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의한 **과도한 금리 변동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대출**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정금리** 및 변동성이 적은 기존 **코픽스**로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

* '11.6.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속 추진중

4. 추진일정

□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 및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기코픽스 세부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9월초)

* 수신상품 세부범위, 은행별로 상이한 3개월물 개념 통일 등

□ 단기코픽스 **연동 대출상품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추진 (~10월말, 9개은행·은행연합회)

* 은행 의견수렴 결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약 2개월 소요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시 전까지 수기방식으로 단기코픽스를 산출하여 금리 적정성 등을 검증할 계획(9월 이후)

□ **단기코픽스 공시**(11월 첫째주 잠정, 은행연합회)

Ⅲ. 시장성CD 발행 활성화

□ **예대율 규제 계획 발표**('09.12월), 풍부한 은행예금유입 등으로 '10년 이후 은행이 발행하는 **시장성CD 잔액**이 **지속 감소**

○ 특히, 금년 7월 중순 이후에는 **은행들의 시장성CD 발행이 크게 위축**된 상황

(조원, 말잔)	'08말	'09말	'10말	'11말	'12.6말	8.21
시장성 CD	20.0	13.6	6.6	3.2	2.4	0.3

* 출처: 한은, * 시장성CD: 증권사인수를 통해 거래되는 CD(→CD금리 산정 대상)

□ 이 경우 **증권사**들이 잔액이 거의 없는 **시장성CD**의 **금리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CD금리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기존 CD연동 상품잔액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유효한 CD금리가 고시**될 필요

◇ **CD금리 연동 대출잔액이 많은 은행들이 시장성CD**를 **당분간 일정수준 발행**키로 협의

○ 은행들이 **월평균 잔액**이 **총 2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성CD를 발행**

○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해 최소 **50%(1조원)**는 **3개월물 시장성CD**로 발행

⇨ CD금리 산정의 직접대상이 되는 **3개월물 시장성CD**가 **과거 수준의 평잔**을 유지하게 되면서 **CD금리 유효성 제고** 효과

Ⅳ.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1. 검토배경

□ 최근 CD금리의 유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행 CD금리 산정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

○ CD 유통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권사*가 제출하는 호가**를 기준으로 금리가 산정됨에 따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매 6개월마다 CD 거래실적 상위 10개 증권사를 호가제출기관으로 선정

○ 특히, **CD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거래가 없는 경우 금리산정 기준이 없어** 금리의 투명성 및 정확성이 결여된다는 비판

□ 한편, 일부 증권사는 **금리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호가 제출을 기피**하고 있어 **금리산정의 안정성**에도 문제

○ 현재 증권사 호가 제출은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증권사가 호가제출 거부시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

2. CD금리 산정방식 개선방안

□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인 CD금리 호가제출 기본원칙** 마련

< 호가제출 기본원칙(예시) >

① CD호가의 공정하고 성실한 제출
② CD호가는 CD거래내역 및 기준금리, 유사채권 수익률, 은행 조달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

□ **CD 발행 및 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 공시 강화**

○ (**발행정보 공시**) 은행의 **CD발행내역 실시간 공시시스템** 구축

* (현행)CD발행내역이 비공식적으로 집계·유통되고 있어 속보성 및 정확성 결여 →(개선)은행이 발행 즉시 보고하고, 금투협은 채권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 공시

○ (**거래내역 공시**) 증권사의 **건별 CD거래내역 공시를 강화***하고 **만기별·잔존기간별 세분화**된 **집계정보**를 제공

* (현행) '09년 제도개선으로 건별 CD거래내역이 공개되고 있으나, 거래 CD의 발행은행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개선) 발행은행도 공시

□ **증권사**에 대한 **호가제출 의무 및 인센티브 부여**

○ 협회가 지정하는 **증권사**에 대한 **호가제출의무 부여**

* (현행)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상 협회에는 금리를 관리·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증권사는 관련 의무가 없음 → (개선) 증권사에 호가제출의무 부여

○ 필요시 호가제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3. 기대효과

□ 기본원칙 등을 통해 **시중금리 등 시장여건**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된 금리산정**을 **유도**

□ **세부정보 공시 강화***를 통해 **금리산정의 투명성 제고**

* 공시된 자료는 증권사 금리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금리산정의 정확성 제고에도 기여

□ 증권사 호가제출 의무부여를 통해 **안정적·지속적 금리산출** 도모

4. 추진일정

□ **협회 기본원칙** 마련 및 **CD관련 정보 공시강화** 시행(9월중, 금투협)

□ **증권사 호가제출 관련 감독규정 개정**('12년 하반기, 금융위)

Ⅴ. 향후 TF 논의과제 및 추진계획

1.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모색

□ 금리스왑거래 등 **자금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정한 단기지표금리** 검토 필요

○ 그동안 T/F에서 **기존 지표금리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대체지표금리를 검토하였으나, **단기지표금리별로 한계***가 존재

* 통안채금리(은행 신용위험 반영도가 낮음), 은행채금리(3개월물 발행금리가 없음), 코리보(은행 호가에만 의존), RP금리(3개월물 거래가 거의 없음) 등

□ 향후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결과, LIBOR 개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존금리 보완*** 또는 **새로운 단기지표금리 육성** 등 추진

* 예) 3개월물 이상 RP거래 활성화를 통해 3개월물 RP거래금리 육성 등

2. 금번 개선방안 관련 후속조치

□ 금번 개선방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 **단기코픽스 도입 및 CD발행 활성화 방안** 등이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 점검

□ 신규도입되는 단기코픽스의 활용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의견수렴을 거쳐 **단기코픽스 활성화 방안** 마련 검토

□ 시중은행들의 **시장성CD 발행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 향후 관계기관 합동TF를 중심으로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모색** 등을 **지속 추진**

참고 2 자금시장 대안 지표금리별 장단점 비교

◇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로 활용되기 위한 특징(요건)

① 전반적인 **시중 자금상황**을 적절히 **반영**
② **실시간**으로 **금리 수준의 탐색·산출**이 가능
③ 이해관계에서 **중립성(공정성)**이 보장
④ **금융기관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 등

금리	장점	단점
1.통안증권 금리(91일물)※	• 거래량이 많아 **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잘 반영**(실제 거래금리) • **공정성** 높음(조작가능성 적음) • 매일 공시(금융투자협회)	• 무위험금리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못함**
2. 은행채 금리(3개월)	• 금리스왑거래의 주 거래자인 **은행의 신용위험을 반영** • 매일 공시(민간평가기관)	• 은행채 발행만기 제한(1년 이상)으로 **3개월물 발행금리 산출**이 곤란
3. KORIBOR (3개월)	• LIBOR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적 통용성**이 높은 편 • 매일 공시(연합인포맥스)	• 현재 **은행들의 호가**에만 **의존**하는 문제
4. RP금리 (3개월)	• 은행, 2금융권 등 모든 금융기관의 **실제 거래금리** 반영 • 매일 공시(예탁결제원)	• 현재 **국내 RP거래**가 7일 이내 **초단기물에 편중** • 담보부거래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잘 반영하지 못함
5. 단기코픽스	• 은행 자금조달사정 및 신용리스크 반영도가 높음 • 조작가능성은 적은 편	• **매주 1회 고시**됨에 따라 **자금시장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지 못함**(후행성)

※ 향후 단기국채금리가 산출되면 통안채 금리와 장단점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

<붙임 1-2>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2013. 7. 23.

금 융 위 원 회

금융위원회는
2013.3.17일 국회가 요청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정부 입장을 마련하여
2013.7.23일 제12차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합니다.

2013.7.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목 차

Ⅰ. 검토배경 및 경과

Ⅱ. 우리나라 금융행정체계 연혁

Ⅲ. 2008년 이후 제기된 금융행정체계 관련 쟁점 개요

Ⅳ. 쟁점① : 금융행정체계 개편 관련

1.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여부
2.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통합 여부

Ⅴ. 쟁점②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관련

1.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립 방식
2.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
3.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권한
4.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재원조달 방식
5.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위상
6.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시 부작용 방지 방안

〈최종방안〉 정부가 제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방안

Ⅵ. 향후 계획

Ⅰ 검토배경 및 경과

가. 검토배경

□ 우리 금융행정시스템은 **금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어 옴

○ '97년말 IMF 경제위기 직후, **감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설립

- 또한, **금융감독원을 신설**하여 종전 **은행/증권/보험 등 권역별로 분산**되었던 감독·검사 기능을 **단일기구**로 통합

○ '08.2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舊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舊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을 현재 **금융위원회**로 통합

□ 현행 시스템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상존**하는 가운데, 정치권·학계 등에서 **금융행정 및 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제기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효과적 극복 등으로 IMF 등은 한국의 금융행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

○ 반면, '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감독, 업계유착 및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등의 문제 표출

⇨ 이에 따라 정치권·언론·학계 등에서 **금융행정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 지난 3월 국회는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 제출을 정부에 요구

※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야 합의사항(3.17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하여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나. 그동안의 검토 경과

□ **4.18일**, 금융위는 객관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를 발족시키고, 동 TF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여부 등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논의를 요청

* TF의 객관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TF에 참여하지 않음**

□ **6.21일**, TF는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금융위에 제출

○ 금감원內 준독립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 설립을 제안

□ **6.28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위원장(김인철 교수) 및 간사(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의견청취

○ 감독기구 개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이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감독체계를 설계할 필요성을 제시

□ **7.3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회장 : 한창희 교수) 의견수렴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독립기구로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여 금융교육, 금융분쟁뿐만 아니라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까지 총괄하고 검사·제재권 등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제시

□ **7.18~22일**, 기재부·금감원 등 관계기관 협의

○ 금융위가 마련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초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협의*

*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별첨한 <참고8>「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참고

□ **7.23일**, 국무회의 보고

Ⅱ 우리나라 금융행정체계 연혁

〈 개 요 〉

◆ 한국의 금융행정체계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되어 1994년 이후 크게 **세차례 개편**됨

가. 1994년 개편

< 과거 문제점 >

□ '70~80년대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이 **마무리**되면서, **경제기획원의 역할** 및 상대적으로 권한이 집중된 **재무부의 기능 재정립** 필요

□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제화·개방화**가 진전되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정부조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대두

< 개편 요지 >

□ (**정부부문**)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을 설립, **재정경제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토록 함

□ (**민간부문**) 해당사항 없음

나. 1997년 개편

< 과거 문제점 >

□ 재정경제원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부처간 견제기능이 상실**되고 기민한 **정책대응능력이 취약**해 지면서 **IMF 경제위기 사전차단 실패**

□ 금융권의 겸업화·융합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권역별 감독기능 분산에 따른 감독상 비효율** 확대

< 개편 요지 >

□ (**정부부문**)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예산기능(기획예산위원회*)과 금융감독기능(금융감독위원회)을 분리**하여 부처간 견제와 균형 관계 도입

* 1999년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획예산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변경

○ **금융감독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립

□ (**민간부문**)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으로 구분되어 있던 **금융감독 집행기구를 통합**하여 **금융감독원 설립**

* 은행감독원이 분리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단일목표로 통화정책을 담당하면서 상당수준의 독립성을 확보

다. 2008년 개편

< 과거 문제점 >

□ **예산기능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조정기능이 약화**되어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필요성 제기

□ 2003년 신용카드 문제를 계기로 **거시정책으로부터 금융정책의 분리** 필요성 및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금융부문의 독립부처 필요성 제기

□ 통합감독기구인 **금감원의 권한 확대**에 기인한 부작용 및 재경부금정국/금감위/금감원의 3층적 금융행정구조에 따른 업계 불만 누적

< 개편 요지 >

□ (정부부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 신설

○ 예산기능 통합으로 비대화가 우려되는 **재정경제부로부터 금융정책국을 분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하여 **금융위원회** 신설

□ (민간부문) **금융위원장의 금융감독원장 겸임을 금지**함으로써 **정책과 집행기능 분리**

Ⅲ 2008년 이후 제기된 금융행정체계 관련 쟁점 개요

〈 주요 쟁점 〉

◆ 2008년 정부조직개편 이후 지난 5년간 정치권/학계/언론 등에서 제기된 금융행정체계 관련 주요 쟁점은 다음 세가지로 요약

<**금융행정체계** 관련>

①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정책기능'** 분리의 타당성

② 금융위원회가 수행하는 **'국내금융정책기능'**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국제금융정책기능'** 통합의 필요성

<**금융감독체계** 관련>

③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건전성 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기능'** 분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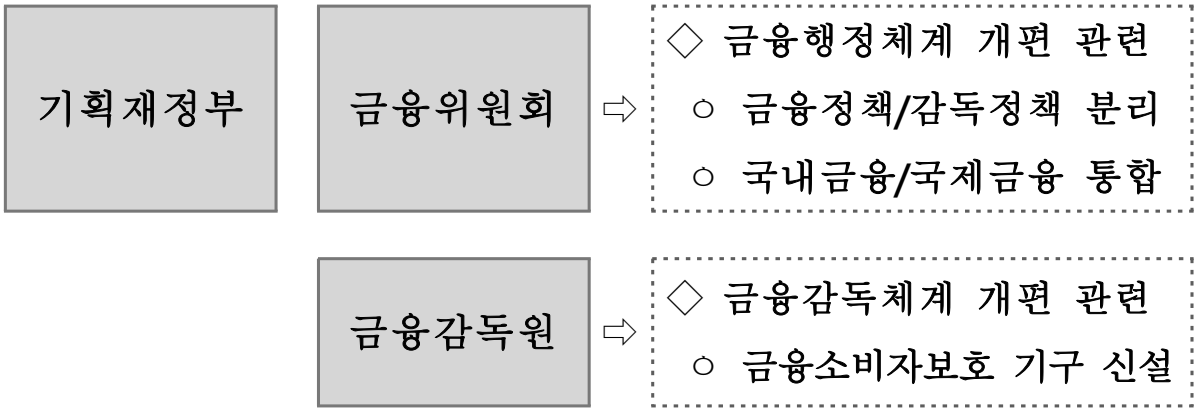

◆ 상기 쟁점사항에 대한 학계 및 국회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을 보고

가. 2011.10월, 총리실 주관 금융감독혁신 TF

(1) 검토배경

□ **저축은행 부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소홀, 비리 및 유착 등으로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불신 초래**

○ 수차례의 금감원 검사에도 불구하고, 차명을 이용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및 불법대출 사실 등을 파악하지 못해 감독부실 문제 유발

○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수사(대검) 과정에서 감독기구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연이은 검찰기소로 감독기구의 신뢰 하락

□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감독을 포함한 **금융감독 기능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리실에 **「금융감독 혁신 TF」** 구성('11.5.9)

(2) 주요내용

□ **감독·검사의 독립성, 투명성, 책임성 제고**

○ 금감원의 권역별 조직(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을 기능별(검사, 감독 등) 조직으로 전환하여 검사 기능 강화

○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예보의 공동검사를 의무화하고, 예보의 단독조사 대상 저축은행의 범위를 확대

○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중 확대 등 운영방식 개선

○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영업정지) 유예결정 관련 요건·절차 구체화* 및 예보의 서면의견제출 제도화

* 유예여부 결정시한(예: 2개월) 및 최대 유예기간(예: 3개월) 명시 등

○ 금융위 임명직 위원의 임기보장 및 준수, 금융위 담당과장 재직기간 확대

□ **금감원 임직원의 인적 쇄신**

○ 비리 발생 위험부서에 대한 순환배치 기간 축소(3년→2년), 감찰기능 강화(감찰팀→감찰실), 내부고발자 인센티브 및 보호장치 마련

○ 재산등록 대상 확대(2→4급 이상) 및 금융회사 감사 추천 관행 철폐

○ 재교육·퇴출 프로그램 내실화, 외부인력 충원 및 유관기관과의 인사교류 활성화

□ **감독·검사 역량 제고**

○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 전체 여신 내역(매월 제출)을 분석하여 이상징후 여신을 조기 파악하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민간전문가 영입·외부위탁 확대 추진

○ 저축은행, 대부업, 신용카드 등 금융사고 위험이 큰 감독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금감원의 검사인력 및 금융위의 전담부서 확대

□ **업무관행·절차의 획기적 개선**

○ 검사 全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검사종합관리시스템 도입

○ 제재결과의 공개대상 및 공개수준 확대*, 피검기관을 위한 권익보호담당역 신설

* (대상) 현행 공개 제외 대상인 '기관·개인주의' 등 경징계까지도 공개
(수준) 제재대상 사실, 조치내용, 관계법규 등 요약 공개 → 전체 공개

○ 금감원내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되, 중장기적으로 독립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검토

□ **변화된 금융감독시스템의 효과적 정착 및 제도화 지원**

○ 금융감독·검사 업무에 대한 상시적 외부평가 실시

○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예보간 상설협의체 법제화

나. 2012.6월,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1) 검토배경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실패로 저축은행 사태 초래**

○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감독기구의 적기시정조치 유예 또는 저축은행권 활성화 조치로 인해 상호신용금고 및 상호저축은행 업계 부실이 확대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인 만큼,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영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체계를 대폭 개편 중**

○ 국제적으로 진행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금융부문과 금융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한국도 차제에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금융감독체계로 개편 필요

□ **통합감독체계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 통합감독체계 출범 이래, 감독업무의 독립성 결여, 전문성 부족, 감독유관기관간 정보공유 미흡,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부실 감독과 비리 등 문제점 노정

○ 특히, '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과거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금융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를 함께 부여한 것이 저축은행 사태를 키운 주요 원인의 하나임

(2) 주요 문제점

□ 금융정책업무가 감독정책업무를 압도

○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업무와 감독정책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정책을 압도하고 감독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감독업무 부실화를 초래

* 2003년의 카드사태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는 정부의 거시정책과 금융산업정책이 금융감독정책의 작동을 유예시킴으로써 금융시장의 위험을 확대시킨 사례로 지적

□ 금융감독의 정책업무와 집행업무 분리에 따른 비효율

○ 위험발생 책임이 정책과 집행 중 어디에 있는가를 가리는 것이 대체로 어려워 금융위 사무처와 금감원간 업무중복이 불가피함에 따라 피감기관 업무부담 가중 및 상호 책임소재 전가 우려

□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의 분리에 따른 문제

○ 한국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주로 국제금융시장과 외화시장에서 비롯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각각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을 분담하는 정부조직체계는 국내외 금융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위기시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취약

○ 금융의 발달에 따라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재 금감원은 건전성 규제에 치중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

□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미비

○ 미시건전성 감독과는 별개로 시스템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감독 및 정책 체계 수립이 전 세계적으로 금융감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

(3) 개편방향

□ 금융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 분리로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

○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국제금융정책 업무에 추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금융정책 업무를 인수받아 금융정책 전반을 총괄토록 함

- 단, 기획재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가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예산기능을 기재부에서 분리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

□ 쌍봉형 감독체계(Twin Peaks)를 도입하여 건전성 감독기능과는 별도로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 금융감독원을 가칭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여, 각각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토록 함

○ 분리된 두 감독원은 금융정책 부처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로 설립하고, 각각의 최고 의결기구로 금융건전성감독위원회와 금융시장감독위원회를 두도록 함

□ 금융안정위원회 신설로 감독유관기관들간 정책공조 및 업무협력체계 구축

○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걸친 주요 이슈를 관장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시스템 위기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대응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을 담당

○ 금융안정위원회는 기재부장관을 의장으로 한국은행 총재, 두 감독위원회 위원장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구성하여, 다원화된 금융감독기구의 협력체계 구축을 법제화함

다. 2012.10월, 총리실 주관 외부용역(서울대법학연구센터)

(1) 검토배경

□ 상호저축은행 부실감독

○ 상호저축은행 부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소홀, 비리 및 유착 등으로 금융감독에 대한 불신 초래

□ 금융소비자 보호 경시

○ 기존 금융규제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매우 부적정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급속히 변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거시건전성감독 강화를 포함하여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등 금융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속화

□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 특히 영국의 금융감독제도 개편은 국내에서도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규제목적의 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개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2) 주요 문제점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여부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관계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는 측면[1]과 상호 보완적인 측면[2]을 동시에 내포

1) 금융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금융감독의 감독·검사 수행
2) 금융감독을 통한 금융시장과 산업에 관한 정보의 확보 없이 실효성 있는 금융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

□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의 관계

○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구분하는 것은 현재의 글로벌한 금융환경에서 가능한 구조라고 할 수 없음

□ 금융범죄 조사기능의 별도 조직화

○ 금융범죄 조사기능이 검찰,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로 다원화되어 있어 조사의 효율성을 제약

□ 규제목적별 일원화 모델

○ 시스템 보호 목적(건전성 규제)과 금융소비자 보호 목적(영업행위 규제)을 단일 기관에서 수행함으로써 금융감독기구가 전자의 목적 수행에 치중하여 후자의 목적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

□ 거시건전성감독과 금융감독기관 및 중앙은행

○ 구체적인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별로 금융감독기관과 한국은행의 역할과 권한을 명기할 필요

□ 금융감독과 절차적 정당성의 확보

○ 제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법적 근거의 부족, 검사자와 심판자의 동일성, 금융위 통제의 유명무실화 등의 문제 제기

(3) 개편방향 (1안 中心)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관계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조직을 일체화하고 정부조직화 ⇨ 금융부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상호 분리된 경우에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각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양자가 완전히 분리 독립된 관계는 생각하기 어려움

□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의 관계

○ 국제금융에 대한 별도규제를 외국환규제로 한정한다면, 이를 금융감독과 분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음

□ 금융범죄 조사기능의 별도 조직화

○ 금융범죄 조사기능은 금융부내 금융조사국에서 담당하고 검찰 직원의 파견을 통해 금융감독당국과 검찰 및 금융시장기구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제도화

□ 규제목적별 이원화 모델

○ 규제목적의 충돌과 감독전문성 확보 등의 관점에서 건전성 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로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

□ 거시건전성감독과 금융감독기관 및 중앙은행

○ 한국은행은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하여 금융부의 거시건전성 담당기관과 업무 협의를 활성화하고, 금융감독정보의 집중관리와 열람권을 보장

라. 2012.11월, 한국경제학회 감독체계 심포지엄

(1) 검토배경

□ 현행 금융감독제도의 근원적 문제점

○ 1997년 금융위기로 한국정부와 IMF가 체결한 대기성차관협약에 의거 합의한 의향서에서는 운영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보유한 통합감독기구 설립을 권고

- 그러나 1997년말 법개정을 통해 출범한 정부 행정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 제기되었으며,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신관치금융 논란이 끊임없이 대두

□ 반복되는 금융부실 파동

○ 거대 통합감독제도 하에서 감독의 비효율 및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 금융부실 파동이 반복적으로 발생*

* 2001~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등 환경 변화

○ 시스템 위기의 사전 예방을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의 중요성 대두, 위기시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중요성 대두

(2) 주요내용

□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 금융정책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정책이고 감독정책은 금융산업 안정을 위한 규제정책으로 상호 대립적 관계인 만큼,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

□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조화 도모

○ 개방경제하에서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간 조화로운 정책추진 또는 보다 유효한 정책 추진체계 필요성

□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를 도입하자는 입장과 통합형 금융감독체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 상존

○ (쌍봉형) 금융시장감독원(증권/보험 감독·집행, 금융시장감독원내 금융소비자보호처 존속)을 독립기구화하고 한국은행내에 금융건전성감독원(거시건전성 규제와 금융안정 기능 관장) 설치

○ (통합형) 금융감독원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고 조직·예산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

□ 감독당국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 감독업무에 대한 정기적인 국회 보고, 국회의 국정감사,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책임성을 강화

○ 내부통제 감시기능 강화, 독립적 외부 금융감독평가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감독당국의 투명성을 강화

마. 제18대 국회 관련법안 발의 현황

(1) 김영선의원 대표발의 법안('09.9.2일 발의)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을 포함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

- (임원) 원장 1인, 부원장 1인, 이사 7인 이내, 감사 1인

  * 금융소비자보호원장 :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부원장 및 감사 : 금융위원회 임명, 이사 : 금융소비자보호원장 임명

- (이사회)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 (업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금융소비자 상담기구 설치·운영,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건의, 금융교육 등

- (권한)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의뢰

- (예·결산)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필요

- (재원) 정부·금융기관의 출연금 및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

(2) **권택기의원 대표발의 법안**('09.11.9일 발의)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금융소비자의 교육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금융위원회 산하에 무자본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

- (집행간부) 원장 1인, 부원장 4인 이내, 감사 1인

* 금융소비자보호원장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부원장 : 금융위원회가 임명, 감사 :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 (업무)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 행태에 대한 감독·검사에 관한 사항,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금융정보 제공, 금융교육 등

- (권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서면·실지조사권, 금감원의 검사 및 공동검사 요청권, 시정조치 요구권, 제재 요청권 등

- (예·결산)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예산과 결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필요

- (재원) 정부 출연금 및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으로 충당

(3)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법안**('11.7.3일 발의)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

○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금융거래의 건전성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 설치

- (위원)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금융위원장 및 금융소비자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기능)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수립,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종합적 추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 금융소비자 보호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 (임원) 원장·부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 감사 1인(원장·부원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사는 상임, 그 밖의 임원은 비상임)

  * 원장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부원장 및 이사 : 원장 제청 → 금융위원장 임명, 감사 : 금융위원장 임명

- (이사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에 이사회를 둠

- (업무) 금융소비자의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금융상품의 내용과 거래조건에 대한 조사·분석,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안전 및 금융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협력, 금융교육·홍보 및 방송사업, 금융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

- (권한)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의뢰

  * 금융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에 조사를 의뢰

- (예·결산) 예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산보고서와 이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 (재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바. 제19대 국회 관련법안 발의 현황

(1) 정부발의 법안('12.7.6일 제출)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금융분쟁의 공정한 조정을 위하여 금융감독원내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

- (임원) 원장 1인, 부원장 1인

* 금융소비자보호원장 :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후보추천위원회 추천 → 금융감독원장 제청 → 금융위원회 임명
부원장 :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임명

※ 금융소비자보호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부원장 1명
- 금융회사, 금융 관계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감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감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단체, 그 밖의 소비자 관련 전문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금감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

- (업무) 금융관련 분쟁 조정,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민원 처리, 금융소비자 교육,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등

- (권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조사권, 금융감독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및 사실 확인 요청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대한 조치건의권

- (예·결산)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이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김기준의원 대표발의 법안('12.11.9일 발의)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의 위원(총 9인)

* 금융감독위원장(금융감독원장 겸임)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임명(국회인사청문 要)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그 밖의 위원 : 대통령 임명

- (업무) 금융감독 관련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금융기관 인·허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

- (감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둠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 ⇨ 위원장
- 「금융소비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1명
-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이 경우 국회는 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1명을 추천)

- (금융감독 관계 법령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감독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을 수립하고 금융감독기관 등의 금융소비자 관련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설치

- (위원) 위원장 1인, 국회추천 4명(상임위원), 대통령 지명 3인, 대법원장 추천 3인(총 11인)

* 금융소비자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제청→대통령 임명(국회 인사청문 要)
그 밖의 위원 : 대통령 임명

- (업무) 금융소비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검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관련된 제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관련된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등

- (권한)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요청권, 국가기관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 및 자료제출·사실조회 요구권,관계기관에 금융소비자 보호정책과 관련된 제도개선 권고·의견 표명 및 이행실태 확인·점검,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관련 처분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취소 또는 집행정지 명령권,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조치에 대한 재의 요구권, 금감원에 대해 금융기관의 검사 요구 및 검사결과 송부요청·시정조치 요구 등

(3) 정호준의원 대표발의 법안('13.3.12일 발의)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기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분야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금융정책부를 신설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

- (위원) 금융감독위원장, 부위원장, 금융정책부차관,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보호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국회 추천 2인, 시민단체 추천 1인(총 10인)

* 금융감독위원장 : 국무총리 제청 → 대통령 임명(국회인사청문 要)
부위원장 : 금융감독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그 밖의 위원 : 해당 기관의 추천 → 대통령 임명

- (업무) 금융소비자보호 감독정책 및 제도, 금융기관 감독·검사·제재,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감독·검사·제재,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금융기관 인·허가, 외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 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관련 법령·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금융기관 및 자본시장 관련 법령·규정의 제정·개정·폐지 요청 및 협의 등

○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및 금융 관련 분쟁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

- (집행간부) 원장 1인, 부원장 3인 이내, 부원장보 6인 이내, 감사 1인

* 원장, 감사 : 금융감독위원회 의결→금융감독위원장 제청→대통령 임명(원장은 국회인사청문 要)
부원장 : 원장 제청→금융감독위원회 임명
부원장보 : 원장 임명

- (업무) 금융상품 및 그 판매행위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금융관련 분쟁 조정,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민원 처리, 금융소비자 교육 등

- (권한) 검사 대상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시정명령 및 징계요구권, 검사 대상 기관 임원의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 건의, 금융감독위원회에 검사대상 기관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 건의

- (예·결산)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르며, 예산과 결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

- (재원) 정부·한은·금융기관 출연금, 금융기관의 분담금,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

(4)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법안('13.6.12일 발의) 주요내용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 확보 및 국내외 금융정책 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금융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

- (위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기획재정부 차관, 예금보험공사 사장, 국회 추천 1인, 금융감독위원장 추천 1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1인, 한국은행 부총재(총 9인)

* 금융감독위원장(금융감독원장 겸임) : 국무총리 제청 → 대통령 임명(국회인사청문 要)
증선위원장 겸임 부위원장 :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임명
금융소비자보호위원장 겸임 부위원장 : 국회 추천 → 대통령 임명
그 밖의 위원 : 해당 기관의 추천 → 대통령 임명

- (업무) 금융기관 감독 관련 규정의 제·개정, 금융기관 인·허가, 금융기관 검사·제재, 자본시장 관리·감독 및 감시,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 등

- (금융감독 관계 법령의 협의 및 제·개정 요청권)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감독에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

- (위원) 위원장 1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국회가 추천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 국회 추천 2인, 금융감독위원장 추천 1인, 법무부장관 추천 1인(총 7인)

  * 금융소비자보호위원장 :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
    그 밖의 위원 : 해당 기관의 추천 → 금융감독위원장 임명

- (업무) 금융소비자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

Ⅳ 쟁점① : 금융행정체계 개편 관련

〈 주요 내용 〉

◆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여부

○ (**분리주장 논거**) ①금융산업 육성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하여 금융부문에 리스크 누적, ②금융감독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필요 등

○ (**분리반대 논거**) ①감독정책은 금융정책의 일부로 현실적으로 구분 곤란, ②업무소관 및 책임소재 불분명 우려, ③시의적절한 금융정책 추진 애로 등

⇨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여부에 대한 이견이 상존하고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 **현행체제 유지**

◆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통합 여부

○ 국내외 금융시장 동조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대외부문 불안요인의 국내전이 가능성도 점증

○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담당부처가 분리·운영되어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기재부·금융위·한은간 공유가능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인사교류 등을 통해 관계기관간 **협업 시스템 강화**

1.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여부

가. 문제제기 주요내용

□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여부와 관련하여, **분리를 주장하는 입장과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이 상존하고 있음

□ **분리 주장의 주요 논거**

○ 2003년 신용카드 문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등은 **금융감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주로 기인

○ 이처럼 동일기관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수행할 경우, **금융산업 육성정책이 감독정책을 압도하여 금융부문에 리스크가 누적**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움**

○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을 **감독하는 기능**에 대해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긴요함

□ **분리반대 주장의 주요 논거**

○ 2003년 신용카드 문제 등은 **금융정책**이 **경기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된데 기인한 것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여부**와는 **관련성이 적음**

○ 또한, **감독정책은 금융정책의 일부분**으로 **현실적으로는 양 성격이 혼재**되어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업무소관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시의적절한 금융정책 추진이 어려움**

○ 보다 근원적으로, **독립성 보장**이 강조되는 **통화정책과 달리 감독정책**은 **금융정책의 일부분**인 만큼 독립성보다는 **유기적 관계가 보다 중요**

나. 검토의견

◆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리 필요성 및 가능여부**에 대한 **이견이 상존**하고,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2003년 **신용카드 문제**,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원인을 **금융정책/감독정책 통합 여부**에서 찾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분석**

○ 일부 학계의 주장대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분석틀을 적용한다면, 2003년 **신용카드 문제**는 물론 2011년 **저축은행 부실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PF대출 확대 용인(2005~2007)은 금융정책(舊재경부)과 감독정책(舊금감위)이 분리되어 있던 시기**에 발생

○ 오히려 2003년 **신용카드 문제**는 **금융정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거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2008.2월 정부조직 개편시 **거시정책**(舊재경부)으로부터 **금융정책**(舊재경부금융정책국)**을 분리**한 바 있음

□ 보다 근본적으로 **금융행정**을 **금융정책/감독정책/감독집행**의 세가지로 나눈다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양 성격이 혼재되어 명확한 구분이 사실상 어려움**

○ 일반적으로 **'감독정책'**이란 인·허가, 감독규정 제·개정, 제재 업무를 통칭하며, **'감독집행'**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업무를 의미함

○ 이중 인·허가, 감독규정 제·개정 등 **'감독정책'** 기능은 금융산업 및 제도 설계, 금융인프라 조성, 시장안정 관리 등을 의미하는 **'금융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작용 발생 우려**

○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인위적으로 분리할 경우 **업무소관이 불분명**해지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하여 금융행정의 비효율성이 높아질 우려

○ 금융정책이 감독정책과 괴리될 경우, 금융당국이 시장 및 산업 정보에 대한 생생한 정보 취득이 어려워져 **시의적절한 금융정책 추진이 불가능**

□ 오히려, 금융부문 시스템리스크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정책/감독정책의 분리보다는 **금융감독집행(검사) 업무의 독립성 확보**가 더욱 중요

○ **금융감독 집행업무**가 외부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기구 수장의 임기보장, 검사업무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감독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하나, 금융감독도 **정부정책**(또는 금융정책)**의 큰 틀 내에서 조화롭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 마지막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경제부처간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안

* 금융위의 금융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시, 기획재정부는 1995~1997년중 운영되었던 재정경제원 기능과 유사해져 예산기능 분리 문제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검토될 필요

⇨ 따라서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금융정책/감독정책 분리를 하드웨어 측면의 개편 문제로 재논의** 하는 것은 **그 편익보다는 비용이 과도**한 만큼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2.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통합 여부

가. 문제제기 주요내용

□ 세계경제 통합, 금융국제화 심화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동조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대외부문 불안요인의 국내전이 가능성**도 점증

○ 1970년대 오일쇼크를 끝으로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는 대부분 실물부문이 아닌 금융부문**에서 촉발

* (예) 1989년 미국 S&L 부실, 1995년 영국 베어링스 파산, 1995년 북유럽 금융위기,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리만브라더스 등 초대형 금융기관 파산 등

○ 대외의존도가 높고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 금융부문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불가피

* 주식시장내 외국인 투자자 비중 : 34.8% (12년말)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중 주요국 통화의 달러대비 변동율(전년동기비)
: 한국(△25.7%), 유로(△4.2%), 대만(△1.2%), 중국(7.1%), 홍콩(0.6%), 태국(△2.8%)

□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담당부처**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로 **분리**되어 운영중

○ 외환시장과 여타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높은 상황에서 **종합적인 금융시장정책 추진시 양 부처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

○ 또한, 한은(기재부)과 금감원·예보·정책금융공사의 소관부처(금융위)가 상이한 만큼, 이들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 시스템 필요**

나. 검토의견

◆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된 점을 감안하여 현 시점에서는 국내금융·국제금융 관련 **현행체제를 유지**하되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

○ 금융정책 수립·추진시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 담당기관간 **정책 공조 및 정보·인사 교류를 강화**

< 거시경제금융회의 내실화 >

□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이 참여하여 **국내외 경제·금융동향** 등을 논의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

○ 현재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설치된 동 회의체는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및 정책공조**를 위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 **동 회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경제·금융 관련 국제논의 동향, 국내외 시장동향**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점검 추진**

※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요**

- (근거) 거시경제금융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12.9월 제정)
- (목적) 국내외 경제 및 금융·외환시장의 동향 및 위험요인 등 거시건전성을 효율적으로 분석·점검하고 관계기관간 원활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긴밀한 협조구축
- (구성) 기재부 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부원장 등
- (기능) 거시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상황의 분석·점검에 관한 사항, 외환제도 선진화 및 외환시장 발전방안, 기관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등

< 정보공유 체계화 >

□ 관계기관간 **보유정보 현황을 파악**하여 **공유가능한 정보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 현재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예보는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정보공유 **MOU를 체결**('09.9월)**하여 필요 정보를 공유중**

○ 그러나, 현행 정보공유시스템의 접근권한이 일부 제한되어 있고, 가공된 분석정보는 접근하기 어려워 공유되는 정보양에 비해 **직접 활용가능한 정보**는 **제한**되어 있음

⇨ **정보공유 MOU를 개정**하여 관계기관간 정보공유시스템을 현행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내에서 정보공유 범위를 **양적·질적으로 확대**

< 인사교류 활성화 >

□ 기재부·금융위·한은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및 관계기관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공고한 협업체계 구축**

○ 현재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기재부·한은간 인사교류는 있으나, **기재부·한은과 금융위간의 인적교류는 부재**

⇨ 직원 수요를 바탕으로 **기재부·금융위 및 금융위·한은간 실무자급 인사교류 정례화**를 추진

Ⅴ 쟁점②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관련

〈 주요 내용 〉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여부**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

○ 건전성 감독기구와 별도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설립할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은 다음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

① **설립방식** :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립할지 금감원 내부에 준독립기구로 설치할지 여부

② **기능** : 분쟁조정, 민원처리 및 금융교육 기능 이외에 영업행위 감독 및 투자자 보호기능을 부여할지 여부

③ **권한** :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비롯하여 검사권 및 제제권을 어느 수준까지 부여할지 여부

④ **재원**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주요 재원을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조달할지 정부예산으로 충당할지 여부

⑤ **위상**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장 및 집행간부의 선임절차 및 임기 등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 여부

⑥ **부작용 방지** : 별도의 기구 신설시 발생가능한 금융회사 수검부담 증가, 업무 중복/공백 발생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별도의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을 추진**

○ 이와 함께 **신설기구에 충분한 범위의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되, 수검부담 완화 등 **예상되는 부작용 방지 장치를 마련**

1.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립 방식

가. 문제제기 주요내용

□ 동일기관이 '건전성 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수행할 경우 **두 개의 상이한 정책목표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

○ 지금까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보다는**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에 주력**

* 1997년말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탄생한 통합감독기구인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부여받았고, 1997년말 실제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 1~2단계 금융구조조정을 대과없이 수행하였음

□ 이에 따라 그 동안 현행 통합감독시스템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는 **일반국민이 감독기구에 기대하는 수준**에 비해 미흡

○ 현행 시스템하에서 **KIKO 파생상품 및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가 지속 발생

○ 특히, 현행 시스템은 금융사고 발생 후 민원분쟁 등이 제기될 경우 이를 수습하는 **사후적 보호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전적 피해 예방에 한계**

* 현재 건전성 관련 감독 프레임은 체계적으로 정비된 반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감독 프레임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

□ 이러한 감독시스템하에서는 금융회사 자체의 금융소비자 보호도 영업 확대 및 수익 극대화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음**

나. 검토가능 대안 비교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 상존

○ (**제1안 :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건전성감독 담당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 담당기구를 각각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

○ (**제2안 : 금감원內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강화**) 건전성감독/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분리에 따른 업무중복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한 기관에서 두 개 업무를 동시 수행**

	<제1안>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제2안> 금감원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장점	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질적 강화 달성 ② 양기관간 책임소재 명확 ③ 감독 사각지대 해소 가능	① 현행 감독체계의 급격한 변화 없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취지 달성 ② 건전성 감독 및 소비자 보호 기능간 갈등 조정 용이
단점	① 금융회사 수검부담 증대 가능성 ② 양 기관간 업무중복 및 마찰 우려	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건전성 감독 기능과 상충되어 독립성 확보 애로 ② 금융소비자 보호 실효성 약화 우려

□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1안>이 바람직**하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여 우선 <2안>**을 시행한 이후 성과평가를 통해 **3년 후 재검토**할 것을 제시

□ 반면, 한국금융학회 등은 양 기능간 이해상충 해소를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 제시

다. 검토의견

◆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두가지 목표의 **이해상충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별도의 기구로 **독립적으로 설립**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마련

□ 최근 금융정보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정보열위에 있는 예금자·투자자의 **부당한 금융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제도정비 필요**

○ '07~08년중 은행권의 파생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수출 중소기업에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켜 우량기업의 흑자도산 유발

* 은행권의 파생투자상품(KIKO) 판매 : 740여개 기업, 약 3.2조원

○ '11년중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심각한 고통** 유발

* 저축은행 피해 규모 (20개 저축은행 기준)
- 5천만원 순초과 예금 : 4,229억원, 71,253명(1인당 594만원)
- 후순위채권 : 6,062억원, 17,676명(1인당 3,430만원)

□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능'과 상충되어 **동일 기구내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움**

○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시** 시스템리스크가 유발될 수 있어, **감독기구**는 최우선적으로 **건전성 감독에 주력**하게 됨

○ 이 경우 불가피하게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거나 **소홀히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짐

○ 반대로, **금융감독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나치게 **역량을 집중**할 경우, **건전성 감독에 소홀**해질 위험성도 내포

□ **국제적**으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설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추세

* **(미국)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을 신설**하였으며, 동 기구는 FRB내에 두었으나 **예산·인사 등에 있어 사실상 독립된 별도의 기구**

* **(영국)**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는 **건전성감독기구**(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담당기구**(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를 **분리하여 설치**

* **(호주)** 2001년부터 **건전성 감독기구**(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와 영업행위 감독기구**(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를 분리 설치**하여 운영중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한 <참고3> <참고4> <참고5> 美·英·濠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현황 참고

□ 일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은 어느정도 감수**하더라도, 건강한 금융시스템의 핵심가치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

○ 따라서 금감원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주력**하도록 하고,

-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에 조직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 방지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수행

○ 한편, 조직 신설에 따른 금융회사 수검 부담 증가, 업무중복 및 공백 발생에 따른 문제에 대한 **각종 보완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도모**

2.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

가. 문제제기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는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구제**로 구분

○ **사전적 규제제도**는 영업행위 준칙 준수,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공시·광고·약관 규제, 금융상품 판매 규제 등이 해당

○ **사후적 구제제도**는 민원, 분쟁조정, 소송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 해소 관련 제도, 금융회사의 규제 위반시 제재 등이 해당

□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의 개념을 투자자 보호까지로 확대할 경우, 자본시장내 공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기능도 포괄 가능

□ 이처럼 광범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가 사각지대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동 기구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나. 검토가능 대안 비교

□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①분쟁조정, ②민원처리, ③금융교육 등의 기능을 기본적인 업무로 부여

○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④금융약자 지원, ⑤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 ⑥증시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시감독 업무로 확대 가능

<1안>	<2안>	<3안>
▪ 분쟁조정업무 ▪ 민원처리업무 ▪ 금융교육, 조사, 연구업무 ▪ 금융약자 지원 ▪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 ▪ 증시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공시감독	▪ 분쟁조정업무 ▪ 민원처리업무 ▪ 금융교육, 조사, 연구업무 ▪ 금융약자 지원 ▪ 금융상품 판매행위 감독	▪ 분쟁조정업무 ▪ 민원처리업무 ▪ 금융교육, 조사, 연구업무

다. 검토의견

◆ 신설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기능**을 부여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시 동 기구가 금감원으로부터 분리되는 초기에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

○ 이를 위해 **업무중복 및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긴요

○ 또한, 향후 금융환경 변화 및 신설기구 정착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가 **주기적**으로 양 기관의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업무 및 인력 정비를 지속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다음의 두가지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을 설계

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업무**는 **positive 방식**으로, **금감원의 업무는 negative 방식**으로 설계하여 업무 중복 및 공백 최소화

-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업무를 정부가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율하는 사항으로 규정

* 정부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12.7월 국회제출, 국회정무위 계류중)

② **금융회사 건전성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시스템리스크 최소화

- 예를들어 신용평가·IT감독 등 양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업무는 일단 금융회사 건전성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에서 수행토록 함

□ 이러한 원칙하에 **신설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i)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ii)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등 금융소비자 보호 인프라 구축

(iii) 금융약자 지원

* (예) 새희망홀씨론 등 서민금융 지원, 불법사금융·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등

(iv) 금융상품 판매관련 영업행위 감독*

* 금융상품 판매시 금융회사가 지켜야할 기본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의 준수여부 감독
* 금융상품 약관심사 등의 업무는 금감원이 수행하되 금소원과 사전협의 의무화

(v)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 다만, 신설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자본시장 조사 등 투자자 보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일단 유보**

○ 새로운 조직 신설에 따른 이해관계자 반발, 업무혼선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우선 판매행위 감독 등 협의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만을 부여

○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안착여부를 보아가며, **투자자 보호 기능 부여 여부는 추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해외 주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업무범위>

		금소원 (정부안)	ASIC (호주)	FCA[1] (영국)	CFPB (미국)
업무 범위	민원처리	○	○	○	○
	분쟁조정[2]	○	x	x	○
	금융교육	○	○	○	○
	자본시장 규율	x	○	○	x
	상품심사	x	○	○	x
	판매행위	○	○	○	○[3]
권한 및 기능	인사권	○	○	○	○
	예산권	○	○ (의회심의)	○	○ (형식상 FRB통제)
	감독·검사	○	○	○	○

1) 영국 FCA는 작은 규모의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감독 업무도 수행
2) 호주·영국의 경우 별도의 산하기구에서 담당
3) 금융투자상품·보험상품은 제외

3.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권한

가. 문제제기 주요내용

□ 현행 통합감독시스템하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독점적인 검사권을 부여받음

○ 별도의 목적으로 금융회사 감독이 필요한 한은·예보에 대해 관련 법령은 공동검사권 및 조사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권한 범위에 대한 다음 두가지 입장이 상존

○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금소원에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뒷받침**되어야 함

○ 금융회사 수검부담 등 기구신설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가급적 **금소원의 권한을 최소화**해야 함

나. 검토가능 대안 비교

□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은 부여

□ 검사권·제재권과 관련하여 단계적으로 ①단독검사권·단독제재권, ②공동검사권·단독제재권, ③검사요청권·조치건의권 부여 가능

<1안>	<2안>	<3안>
▪ 금융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 금융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 금융기관에 자료제출 요구
▪ 검사 - 단독검사	▪ 검사 - 금감원과 공동검사 원칙 - 예외적 단독검사 실시	▪ 금감원에 검사 요청
▪ 제재	▪ 제재	▪ 금융위 또는 금감원장에 조치 건의

다. 검토의견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부여한 기능**이 실질적으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그에 상응한 권한을 부여**하되,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협력체계** 마련

□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금융회사 비용감수는 불가피**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별도로 신설한 주요국 사례를 보더라도, 금융회사 부담 등 **추가비용 발생을 감수하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중시**하겠다는 것이 최근의 국제적 추세

○ 오히려, 이는 추가적인 비용이 아니라 **그동안 간과되었던 비용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필요

□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하는 현 시점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 가장 긴요

□ 따라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금융회사 **검사·제재권**을 부여하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되, **금융회사 부담 최소화 장치**를 마련

※ 금융회사 부담 완화방안은 제6절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기술(p49)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금융회사 검사·제재권이 수반되지 않고 검사요청·제재건의권만 부여될 경우, 건전성 감독기구와의 서열이 형성되어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히 취급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어려움

□ 또한, 금감원과 동일하게 금소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 부여

○ 금감원·금소원은 규칙 제·개정시 **상대기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4.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재원조달 방식

가. 문제제기 주요내용

□ 현재 금감원 예산은 지출예산과 수입예산으로 구분·편성되며, **지출예산을 먼저 편성한 이후 이에 맞게 수입예산을 편성**

○ (지출) 인건비, 경비, 퇴직급여, 자본예산, 운영외비용 등으로 구성

○ (수입)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 운영외수입* 등으로 구성

* 수입이자, 수입임대료, CPA시험수수료, 금융중심지센터 국고보조금, 기타 운영외수입

< 수입예산 구성 >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예산	비중
감독 분담금	2,006	77%	1,887	73%	1,694	69%	1,867	71%	1,972	69%
발행 분담금	428	17%	500	19%	630	26%	613	23%	689	24%
한은 출연금	100	4%	100	4%	100	4%	100	4%	100	4%
기타	59	2%	81	3%	40	2%	52	2%	83	3%
수입 계	2,593	100%	2,568	100%	2,464	100%	2,632	100%	2,844	100%

□ 또한, 감독분담금 및 발행분담금 등으로 조달한 예산의 집행 잔액 발생시, 분담금 납부비율에 따라 납부기관에 반환하므로 당기수지차익(=수입-지출)은 발생하지 않음

□ 기구성격이 감독기구인 금감원과 유사한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경비충당을 위한 **운영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

나. 검토가능 대안 비교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운영경비를 **금융회사 분담금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과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 검토 가능

○ (**금융회사 분담금**) 금감원과 같이 금융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 등을 받아 운영재원으로 활용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본질적 업무는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영업행위 감독)이 핵심인 만큼, 금감원과 상이한 재원조달 구조를 가질 필요성이 크지 않음

○ (**정부예산**) 정부예산을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운영재원으로 활용

-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

-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경우 소요경비의 상당부분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도 정부예산을 받는 것이 타당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하는 방안	정부예산으로 하는 방안
장점	① 감독기구의 중립성·전문성 확보 ② 수익자 부담원칙 실현	① 금융회사 부담 완화 ② 국회 심의·통제 가능
단점	① 금융회사 부담 증대 ② 금융회사 포획가능성 비판	① 정부 재정부담 증대 ② 감독기구의 중립성 훼손 논란

다. 검토의견

◆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감독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운영재원**으로 **금융회사 분담금**을 활용

□ 현재 금감원이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혜기관인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수수료적 성격

○ 금감원이 제공하는 검사 및 감독 서비스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는 현재 **금감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일부를 인계**받는 것인 만큼, 감독분담금으로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자연스러움

□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운영하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감독분담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

* 英(FCA) : 금융회사의 분담금 수입으로 충당
* 濠(ASIC) : 연방예산(Commonwealth Budget)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나 동 자금은 금융회사로부터의 분담금(fees & charges) 징수를 통해 조성

○ **IMF·BCBS 등 국제기구**는 금융감독기구의 예산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

□ 따라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도 **금융회사 감독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회사 발행분담금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감원의 관련업무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동 업무는 금감원에 잔류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재원조달 방식에서 배제

○ 이와 함께, 금감원과 동일하게 정부·한은·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금감원 출연금 및 기타 수입을 재원조달원으로 설정

○ 또한,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의 사전심의·의결 및 결산보고를 통해 사전적·사후적으로 통제

5.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위상

가. 문제제기 주요내용

□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위상**을 금감원과 비교하여 어느정도로 부여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

○ 이와 연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집행간부의 선임절차, 규모, 임기 등에 대한 검토 필요

나. 검토의견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위상**은 **금감원과 대등**하게 하고, 원칙적으로 금감원 및 금소원 집행간부 총수는 원칙적으로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

□ **금소원 집행간부의 구성과 이들에 대한 임명절차 및 임기**는 **금감원 집행간부와 동일**하게 규정

○ 원장 : 금융위 의결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임기3년)

○ 부원장 : 금소원장 제청 → 금융위 임명 (임기3년)

○ 부원장보 : 금소원장 임명 (임기3년)

○ 감사 : 금융위 의결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임기3년)

※ 금감원과 금소원 집행간부(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감사) 수는 추후 조직규모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

□ **금소원장**은 금감원장과 동일하게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 다만, 금소원장이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 될 경우,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융위원회의 위원 총수가 10명으로 늘어나고 기관대표 당연직 위원(총 10명중 5명)이 과반수에 달하는 문제 내포

6.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시 부작용 방지 방안

가. 문제제기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로 **금융회사 수검부담 증대, 금감원과 마찰** 등 부작용 발생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필요

나. 검토의견

◆ 과도한 자료징구 및 중복검사 등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간 MOU 체결 등 세밀한 협력체계** 마련

□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 관련, **금감원/금소원간 MOU를 체결**하여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도모

○ 특히, 금소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만 금소원의 단독검사권 행사를 허용

□ 금융회사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권 관련, 금감원/금소원간 **중복제재 및 제재형량 등의 조정**을 위해 협력체계* 마련

* (예) 금감원/금소원 공동 제재심의위원회 설치 등

○ 이와 함께 **제재양정기준 표준화 및 일괄 공개**를 통해 제재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 부담 경감 도모

□ 금융위는 양 기관간 MOU 등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견사항 해소 및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완화** 지속 추진

○ 양 기관간 업무 중복·공백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

○ 또한, 금융위는 금융회사 불만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양 기관 업무조정에 적극 활용

〈최종방안〉 정부가 제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방안

가. 기구 성격

□ 금감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 보호원** 신설

나. 집행간부

□ **금소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 및 임기**는 **금감원 집행간부와 동일**하게 규정

○ 원장 : 금융위 의결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임기3년)

○ 부원장 : 금소원장 제청 → 금융위 임명 (임기3년)

○ 부원장보 : 금소원장 임명 (임기3년)

○ 감사 : 금융위 의결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임기3년)

※ 금감원과 금소원 집행간부(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감사) 수는 추후 조직규모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

□ **금소원장**은 금감원장과 동일하게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다. 기능

□ 조직신설 초기에 업무중복 및 공백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업무를 positive 방식**으로 명확히 규정

(i)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ii)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등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iii) 금융약자 지원

* (예) 새희망홀씨론 등 서민금융 지원, 불법사금융·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등

(iv)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 현재 국회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부발의, '12.7월 국회제출)상 규율
  - 금융상품 판매시 금융회사가 지켜야할 기본원칙(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의 준수여부 감독
* 금융상품 약관심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수행하되 금소원과 사전협의 의무화

(v) 금융위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 향후 금융환경 변화 및 기구정착 추이 등을 감안하여 금융위가 **주기적**으로 업무현황을 점검하고, 양 기관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업무 및 인력 정비 지속 추진**

라. 권한

□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을 부여

* 금감원·금소원은 규칙 제·개정시 상대기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마. 보완장치

□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 관련, **금감원/금소원간 MOU**를 통해 **중복적 수검부담 방지**

○ 특히, 금소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

□ 제재권 관련, 금감원/금소원간 **중복제재 및 제재형량 등의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

* (예) 금감원/금소원 공동자문기구로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설치 등

○ 이와 함께 제재양정기준 표준화 및 일괄 공개를 통해 제재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서 금융회사 부담 경감을 도모

□ 양 기관간의 업무 중복·공백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

바. 감독대상

□ 은행·보험·금투·여전사 등 **全 금융업권**

사. 재원

□ **정부·한은·금융회사의 출연금**과 **금융회사 감독분담금**으로 하되,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만큼 **금감원 출연금도** 재원조달 수단으로 포함

○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금융위의 사전심의·의결 및 결산보고를 통해 사전적·사후적으로 통제

아. 출범시기

□ **'14.2/4분기중 기구신설을 목표**로 추진 ⇨ 향후 입법 진행경과를 보아가며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

Ⅵ 향후 계획

◆ 과거 우리 금융권은 수익성·건전성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 금소원 조사·검사 → 시정조치(제재)」**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것이며,

- **동일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피드백 절차도 속도감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를 계기로 우리 금융부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금융회사의 행태가 점차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번 준비한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

<1단계 : 국회입법 지원>

□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신설 등 하드웨어 개혁과 병행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적극 뒷받침

<2단계 : 인프라 구축>

□ 하반기 국회 입법 동향을 보아가며,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금소원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설립을 차질없이 준비

<3단계 : 감독시스템 선진화 정착 유도>

□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출범할 경우, 금융위는 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②**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③**금감원/금소원간 업무마찰 방지** 노력을 지속 추진

○ 특히, 금감원·금소원간 MOU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이견 사항을 조정하며 업무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

○ 이를 통해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참고1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 개요 및 주요내용**

1. T/F 위원 : 총 7인

□ **김인철**(성균관대 교수, 위원장), **윤창현**(금융연구원장, 간사), **김경수**(성균관대 교수), **신희택**(서울대 교수), **하영구**(한국씨티지주회장), **김대식**(한양대 교수), **신성환**(홍익대 교수)

2. 운영 현황

□ **4월~6월**중 Kick-off 회의를 포함, **총 9회에 걸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여부 등 금융감독체계 개선방안** 논의

	일 시	논의사항	비 고
1차	4.18일 07:30~08:30	▪ 상견례 및 T/F 운영방식	▪ 김인철 교수 위원장 선정
2차	4.22일 07:00~09:00	▪ 금융행정체계 개편연혁 및 주요이슈 논의동향 설명 ▪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분리시 문제점 설명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3차	4.29일 07:00~09:00	▪ 주요 선행연구기관 의견 청취 ▪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관련 해외사례	▪ 한국금융학회(숭실대 윤석헌교수) 서울대금융법센터(서울대 정순섭교수) ▪ 금융연구원
4차	4.30일 14:30~17:00	▪ 금융소비자보호 제도현황(분쟁조정 등)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부제출) 설명	▪ 금융위원회
5차	5.12일 18:00~20:00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관련 단봉형 주장논거 청취	▪ 경상대 김홍범 교수
6차	5.27일 07:00~09:00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방안 등 논의	-
7차	6. 3일 07:00~09:00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관련 이견사항 조정	-
8차	6.10일 07:00~09:00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관련 이견사항 조정	-
9차	6.18일 07:00~09:00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 관련 이견사항 조정	-

3. TF가 제시한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금융정책·감독정책의 분리 및 국내금융·국제금융의 통합** 문제는 현시점에서 **중장기과제로 이연**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內 準독립기구**로 설치

○ 금소처는 **분쟁조정·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독립성 제고 및 위상 강화를 위해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임명**

1. 국내금융/국제금융 통합 및 금융정책/감독정책 분리 여부 관련

□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된 점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

2.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방안 관련

□ (**기구**)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는 **금융감독원內 準독립기구로 설치**(제1안)하거나, **금융감독원과 독립된 별도의 기구로 설립**(제2안)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

○ 우선적으로 **현 체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1안>**을 추천

○ 다만, **3년 후 금융소비자보호 및 감독체계의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적인 조직개편 필요성 유무를 재검토할 것을 제시

□ (**처장**)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제안

* (임명절차) 금융위원회 의결→금융위원장 제청→대통령 임명

□ (**업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쟁조정, 민원처리, 금융교육 및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

○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조사권,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 등을 부여

□ (**인사/예·결산**)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인사/예·결산**은 독립적으로 하되,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할 것을 제안

□ (**금융회사 제재심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재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위에 제재소위원회를 설립**(제1안)하거나 **금융위 사무처에 제재 전담조직을 신설**(제2안)하는 두가지 방안을 제시

○ 이와 함께 제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루는 별도의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설치를 제안

3. 기 타

□ 금융정책 및 감독기구간 협력 시스템 강화 및 업무혼선·중복자료요구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통합금융DB** 구축

□ **새마을금고, 우체국금융, 대부업, 상호금융** 등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필요

참고2 정부발의 금융소비자보호법안(12.7.6일, 국회제출) 주요내용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금융상품판매 등 영업행위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규율

□ (**감독대상**) 은행·보험·금투·여전사 등 **全 업권이 감독대상**

* 다만,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 등은 제외

○ 아울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및 **대출모집인 등 금융상품 판매채널에 대한 등록 규정**을 마련

*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운용 전략** 등에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금융업(금융소비자보호법 §2)

[영업행위 관련]

□ (**영업행위 일반원칙**) 신의성실의무, 임직원·위탁업자 관리책임, 위탁업무 관련 손해배상책임

□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하여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6대 판매행위 규제원칙」**을 규정

① (**적합성원칙**)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의 구매권유를 금지하는 원칙

② (**적정성원칙**) 금융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해당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을 경우 이를 알려주도록 하는 원칙

③ (**설명의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을 설명

④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금융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다른 금융상품도 같이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⑤ (**부당권유금지**)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하는 등 부당한 권유행위 금지

⑥ (**광고규제**) 금융상품 광고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규제

□ (**업종별 영업행위**) 미등록자 위탁 금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지행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고지의무,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주의의무 및 금지행위 등 규정

업자 / 상품	직판	중개·대리	자문	규제내용
예금성	은행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보장성	보험회사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투자성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투자권유대행인	투자자문사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대출성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할부에이전트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구속성 상품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규제내용	신의성실 관리책임 손해배상책임 미등록자 위탁금지	신의성실 관리책임 미등록자 위탁금지 금지행위 고지의무	신의성실 관리책임 손해배상책임 주의의무·금지행위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추진체계 관련]

□ **금융소비자정책 수립, 금융소비자 교육,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위의 역할** 명시

○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3년마다 금융소비자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금융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비교 공시**

○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마련**

○ **금융소비자보호규준 기준 마련**

[분쟁조정 관련]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현행제도 개선

○ **소송중지제도**를 도입하고,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예:5백만원 이하)의 경우 일단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완료되기 전까지 소송제기를 금지**

* 종전에는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면 소비자가 조정신청전 또는 조정결과가 통보되기전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사례** 발생

[감독 및 처분 관련]

□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명령권** 규정

□ 금융상품판매업자에 대한 **금감원장의 검사권한** 규정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임직원에 대한 조치권 및 퇴직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과징금 제도 관련]

□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판매행위 규제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 필요성 있는 규제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30% 범위**에서 부과

*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금지, 구속성상품계약 체결금지, 광고규제 위반

참고3 美 금융소비자보호국 (CFPB) 개요

□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조직도 ('13.2월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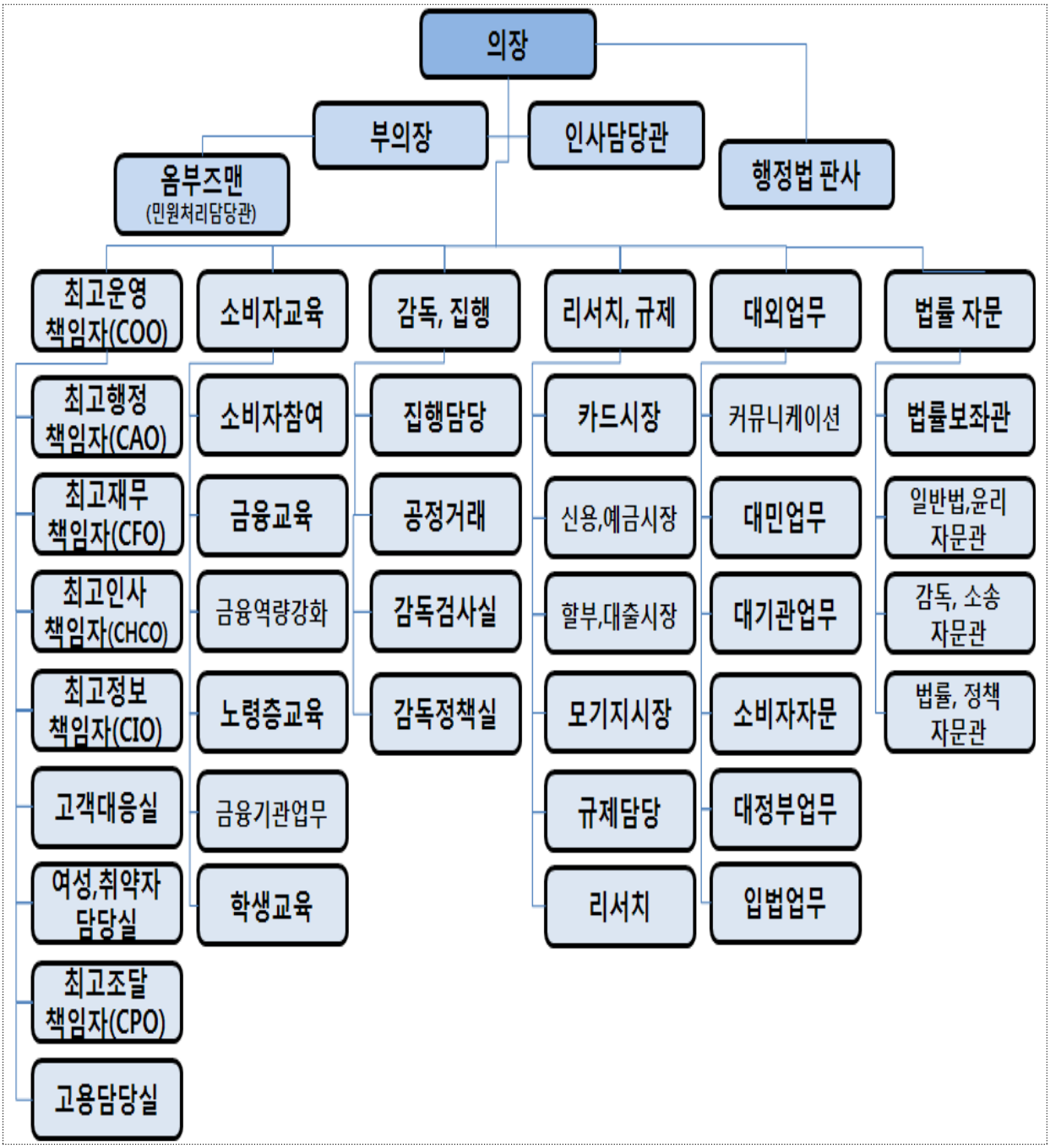

□ (감독 대상) **은행・저축은행・신협, 주택담보대출 관련 업체** 등

* SEC, CFTC, 연방보험국, 州증권감독당국 및 州보험감독당국의 규제대상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은 CFPB의 감독대상에서 제외

□ (**역할 및 권한**) 소비자 민원조사, 시장조사・연구, 소비자금융 관련 연방법률 시행을 위한 **규정 제정***, **감독**, **검사・제재**, 금융교육 등 기능 수행

* 규정 제·개정시 감독기관과 협의하고 규칙운영시 감독기구는 건전성 감독에 영향을 미칠 경우 FSOC를 통해 조정 가능

○ 검사・제재(examination and enforcement)는 총자산 **$100억 초과 은행 등 대형 예금수취기관, 주택담보대출 관련 업체** 등이 대상

* 총자산 $100억원 이하 은행 등에 대해서는 연방감독기관 및 주감독기관 등 건전성 감독기관이 검사·제재하되, CFPB는 검사참여 및 제재요구 가능

□ (**예산**) 2012년 300백만달러 (약 3,400억원)

* (계획) 2013년 541백만달러, 2014년 497백만달러

□ (**직원수**) 2012년말 831명

* (계획) 2013년 1,214명, 2014년 1,545명

참고4 英 영업행위감독기구 (FCA) 개요

□ **영업행위감독기구**(FCA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조직도** ('13.4.1일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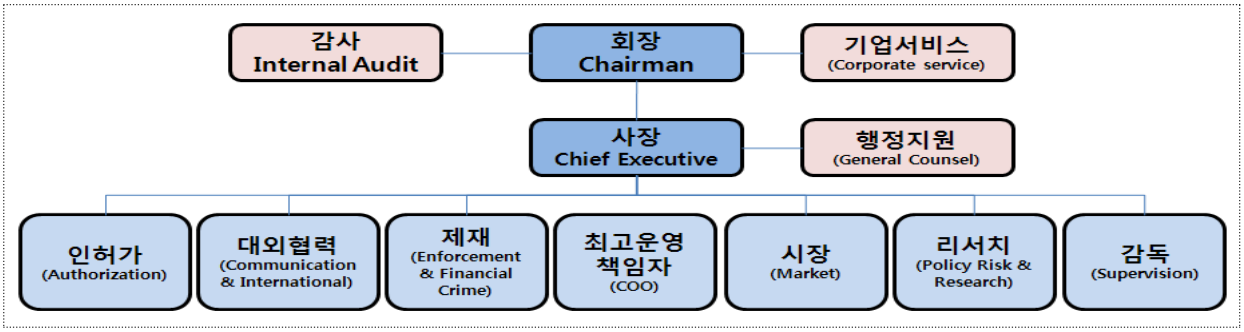

□ (**감독 대상**) 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 은행(예금수취기관), 보험, 대형 투자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

□ (**역할 및 권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유효한 경쟁촉진 등을 위한 **감독, 검사·제재** 기능 수행

○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행위규제(conduct regulation)

* 약 27,000개 금융회사가 규제대상이 되며 PRA 감독을 받는 은행, 보험사 및 주요 투자회사도 포함

○ PRA 감독을 받지 않는 여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시장감독

○ 금융옴부즈만, 금융상담기구 등에 대한 감독 등

- 금융행위 규제 : (예) 과도한 이자를 제공하는 대출 규제
- 금융상품 규제 : (예) 부당 광고에 대한 수정 및 제한
- 조사(Investigation) 및 제재(Enforcement)
- 금융소비자 보호 : (예) 보상·배상(Redress)을 위한 소송 수행
- 금융시장 거래인프라 규제 : (예) 시장의 벤치마크 금리 설정을 위한 일반원칙 마련
- PRA 감독을 받지 않는 여타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 등

□ (**예산**) 2013년(13.4~14.3월) 445.7백만 파운드 (약 7,870억원)

□ (**직원수**) 2014.3월말 FCA 직원수(목표) : 2,848명

* 2013.3월말 FSA(PRA와 분리 前) : 3,992명

참고5 濠 **증권투자위원회 (ASIC) 개요**

□ **증권투자위원회**(ASIC ;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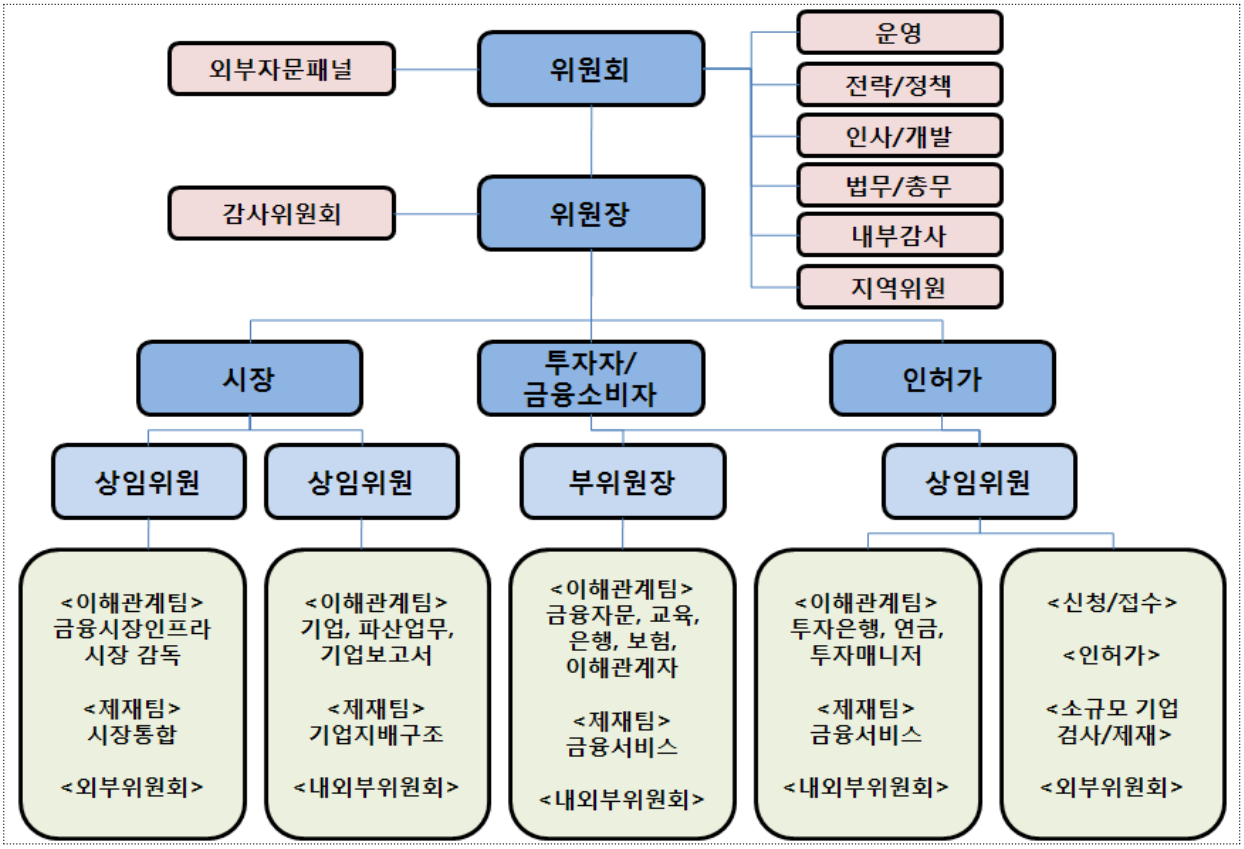

□ (**감독 대상**) 금융중개기관 및 간접투자기관, 자본시장, 일반 금융회사(영업행위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등

□ (**역할 및 권한**) **시장인프라**, 불공정행위 등 **시장감시**, **소비자보호**, 영업행위 감독 등을 수행

○ **법인 등록** 등 상법 집행, **자본시장 감시/감독**, **금융교육 등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

□ (**예산**) 2012년 (수입) 304백만호주달러, (지출) 384백만 호주달러(약 4,114억원)

□ (**직원수**) **2012년말 총 1,738명** * APRA 606명 (2012.6말)

참고6 주요국 금융감독기구의 재원조달방식 및 통제수단

기관명		재원조달방식	통제수단
미국	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금융기관 감독분담금 - 감독수수료* 등 * 특별검사 및 조사 수수료, 인허가 수수료 등	- 자체 결정
영국	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 금융기관 감독분담금 · 정기분담금 · 인허가 수수료, 특별수수료 * FCA에서 FSCS, FOS, PRA의 분담금을 대행하여 징수	- 자체 결정* * 결산보고서를 재무성 경유하여 의회 제출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캐나다	OSFI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수수료 · 금융회사 및 민간연금에 대한 감독수수료 · 공적연금에 대한 계리수수료	- 재무부 보고
호주	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 금융기관 분담금 - 수수료	- 분담금 요율은 법상 연방재무장관이 결정
독일	BaFin Bundesantalt für Finanzdienstlei Stungsaufsicht	- 금융기관 감독분담금 - 유가증권 발행수수료 등	- 행정위원회* 결정, 금융부 승인 * 정부대표, 국회의원, 업계대표 등으로 구성
일본	금융청	- 정부예산	- 의회 승인

참고7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관련 해외사례

※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TF」에서 제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인용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의 사례를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존재

□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감독기구는 정부기관이고 직원 신분이 공무원이므로 금융감독정책당국과 금융감독기구는 구분되지 않고, 금융감독정책당국이 감독업무를 함께 수행

○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해외사례**는 **감독정책당국과 감독기구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은 기본적으로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 운용

○ 영국, 호주의 경우 영업행위 감독기관이 일부 건전성 감독도 병행하여 수행함

□ **영업행위 규제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분은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영업행위 감독기구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

○ **영국, 호주, 네덜란드**는 영업행위 규제·감독기구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감독을 담당함

* 영국의 경우 FCA 산하 MAS에서 금융교육, 자문 등을 담당

○ 다만, **캐나다**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가 관련 영업행위 **감독, 교육, 정보 제공 등을 일괄 처리함**

○ **미국**은 **예금수취기관 등에 한정**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기구인 CFPB를 별도 조직으로 구성함

□ 금융소비자보호 중 **금융분쟁조정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이 통제**

○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은 FCA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며, 호주·일본 등은 민간형 금융분쟁조정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절차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 민간형과 행정형의 복합적 성격임

주요국의 금융 정책 및 감독 기능 분담

<table>
<tr><th rowspan="2">국가</th><th colspan="2">금융정책</th><th rowspan="2">금융소비자보호
(사전적)</th><th rowspan="2">금융분쟁조정
(사후적)</th></tr>
<tr><th>건전성</th><th>영업행위</th></tr>
<tr><td>미국</td><td colspan="2">FRS, OCC, FDIC, SEC,
NCUA, 州정부 등</td><td>CFPB
(예금수취기관 등에 한정하여,
규제, 감독, 교육, 조사 등 담당)</td><td>AAA</td></tr>
<tr><td>영국</td><td>PRA
(수신기관 등)

FCA
(PRA 감독대상外)</td><td colspan="2">FCA

MAS
(금융교육·자문)</td><td>FOS</td></tr>
<tr><td>호주</td><td>APRA
(은행, 보험, 연금)

ASIC
(증권, 자산운용)</td><td colspan="2">ASIC</td><td>FOS</td></tr>
<tr><td>캐나다</td><td colspan="2">OSFI(은행, 보험), 州정부(증권 등
OFSI 감독대상外)</td><td>FCAC
(규제, 교육, 조사, 정보)</td><td>FSON
(OBSI, CLHIO, GIO)</td></tr>
<tr><td>네덜란드</td><td>DNB</td><td colspan="2">AFM</td><td>KiFid</td></tr>
<tr><td>독일</td><td colspan="3">BaFin</td><td>업권별
옴부즈만기구</td></tr>
<tr><td>일본</td><td colspan="3">금융청</td><td>금융 ADR</td></tr>
</table>

국가별 기관명

국가	약칭	기관명
미국	FRS	Federal Reserve System
	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NCUA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CFPB	Com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AAA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영국	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
	MAS	Money Advice Service
호주	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SIC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FOS	Financial Ombudsman Service
캐나다	OSFI	Office of Superintendent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FCAC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OBSI	Ombudsman for Banking Services and Investment
	CLHIO	Canadian Life and Health Insurance OmbudService
	GIO	General Insurance OmbudService
네덜란드	DNB	De Nederlandsche Bank
	AFM	Authority for the Financial Markets
	KiFid	Klachteninstituut Financiële Dienstverlening
독일	BaFin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1. 미국

▣ 미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업권별 분산 감독체계를 유지
▣ 금융소비자보호 기구의 관할 범위는 예금취급기관 등에 한정
▣ 금융감독기관이 개입하는 금융분쟁조정기구는 부재

□ 미국은 2010.7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을 통해 금융감독체계를 개편

○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금융연구소(OFR),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등을 설치하고, 기존 금융감독기구간 권한을 조정하여 거시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제고하고자 함

미국의 금융감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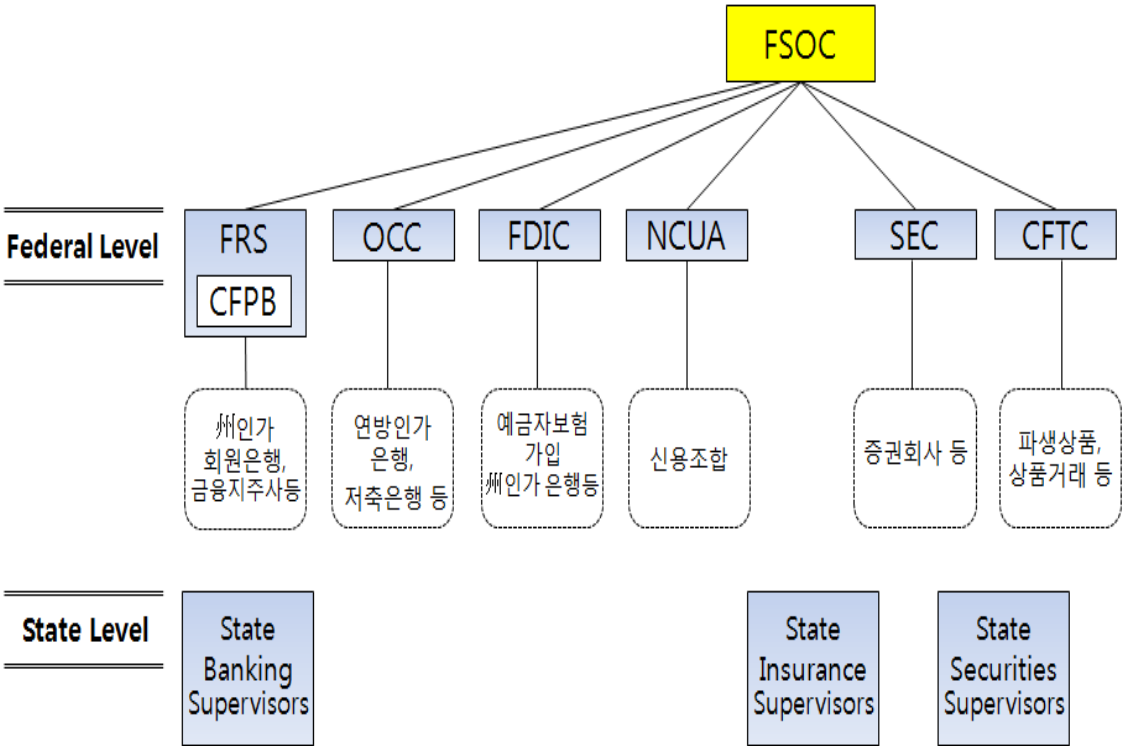

□ FSOC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한 포괄적인 감시 권한을 부여받아 독립된 감독기관간의 협의와 조정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 감독 및 감독기관간 총괄조정기능 수행

○ FSOC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으며, 의결권을 가진 정위원(10인)과 의결권이 없는 준위원(5인)으로 구성

* 정위원: 재무부(의장), FRB, 통화감독청(OCC), 금융소비자 보호국(CFPB), 증건선물거래위원회(SEC), 연방주택금융청(FHFA), 신용협동조합(NCUA)의 長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보험전문가 등

* 준위원: 금융조사국장, 연방보험국장, 州정부대표 은행·증권·보험 감독관 각 1인 등

○ 재무부 내에 OFR를 설치하여 시스템리스크와 관련한 위한 조사·분석 업무를 통해 FSOC를 보좌

□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는 FRS산하에 금융소비자 보호국(CFPB)을 신설하여 FRB·OCC·OTS·FDIC·NCUA 등에 분산되어 있던 **예금취급기관의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흡수·통합하였음

○ CFPB는 소비자 민원조사, 시장조사·연구, 소비자금융 관련 연방법률 시행을 위한 규정 제정, 감독, 검사·제제, 금융교육 등의 기능 수행

○ CFPB가 제정하는 규정은 모든 은행·저축은행·신협, 주택담보대출업체 등에 적용되고, 총자산 100억 달러 이상의 예금취급기관 및 소매대출상품 취급기관에 대해서는 CFPB가 직접 검사·제재

* 총자산 100억 달러 미만인 금융기관은 연방감독기관 및 주감독기관 등 건전성 감독기관이 검사·제재하되 CFPB는 검사참여 및 제재요구가 가능

○ SEC, CFTC, 연방보험국, 州증권감독당국 및 州보험감독당국의 규제대상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은 **CFPB**의 감독대상에서 제외하여 **금융산업 전 영역에 걸친 금융소비자보호 기구라고 할 수는 없음**

2. 영국

▣ 영국은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 정책이 분리되어 있는 쌍봉형 규제체계
▣ 영업행위 규제기구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포함
▣ 금융분쟁조정처리기구(FOS) 및 공적 금융자문서비스(MAS)는 영업행위 규제기구의 산하에 설치

□ 영국의 통합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FSA) 감독기능의 취약점이 드러남에 따라 FSA를 폐지하고 FSA의 건전성 감독 기능을 영란은행으로 이전하여 건전성 감독기능을 영란은행으로 집중

○ 통합감독기구인 FSA가 독점적인 성격과 비대해진 조직체계로 인해 금융시스템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부족했고, 형식에 치우쳐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을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또한 통합감독기구 내 감독기능 간의 이행상충이 발생하여 행위감독에 비하여 건전성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존재

○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영란은행이 미시건전성과 거시건전성 감독을 동시에 관장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 집중 체계 구축

영국의 금융감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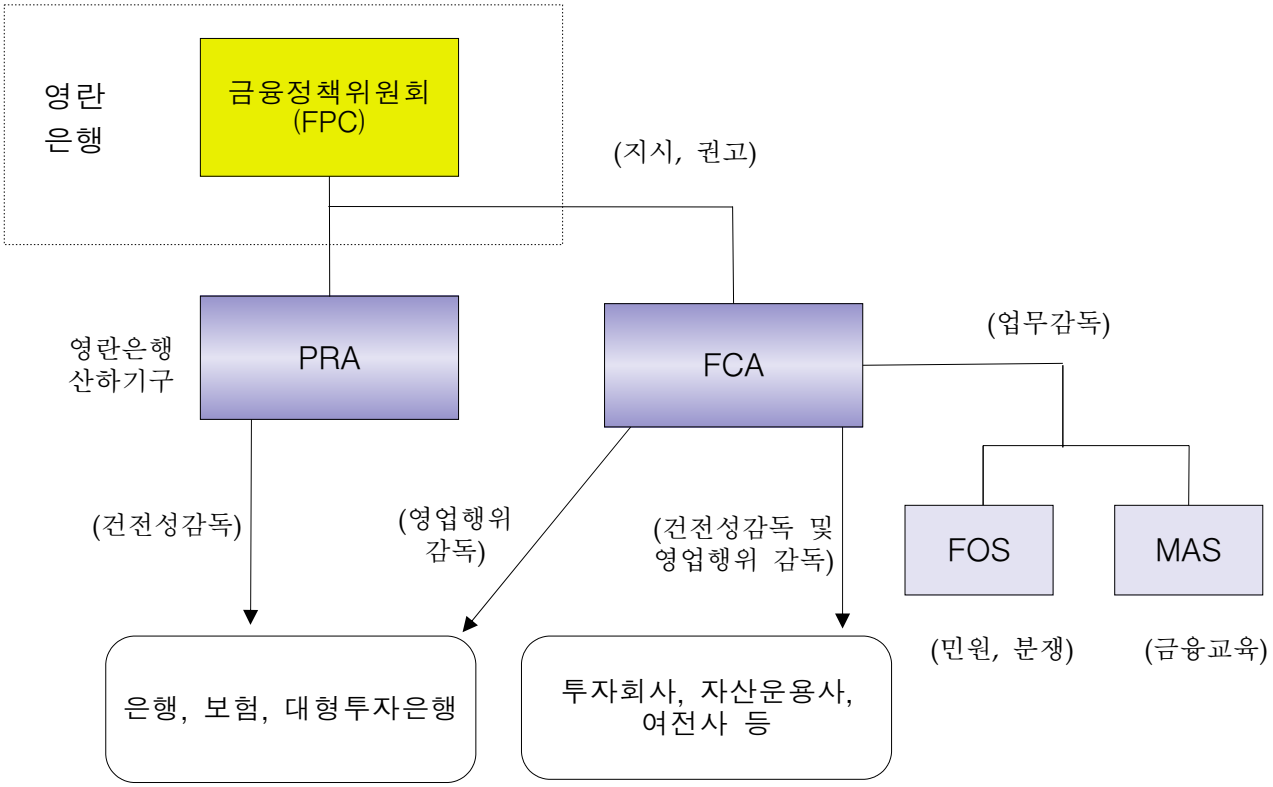

□ 영란은행 내의 건전성 감독은 다시 거시건전성과 미시건전성으로 구분하여, 거시건전성 감독은 FPC, 미시건전성 감독은 PRA가 담당

○ FPC는 영란은행 총재를 의장으로 하여 영란은행 부총재, FCA의 CEO, 영란은행 총재가 재무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2인, 재무장관이 임명하는 4인, 재무부의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기구로서, 금융시스템 감시 및 금융안정 달성 등 거시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

○ PRA는 은행, 보험 및 투자은행 등을 금융업권 전반을 대상으로 미시건전성 감독을 수행

□ 영업행위를 감독 기구로 FCA를 설립하여 금융시장에 대한 감독과 함께 금융옴부즈만, 금융상담기구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도록 함

○ FCA는 금융업권 전반에 걸쳐 약 2만 7,000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

○ 거래소, 장외시장, 내부자 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독과 함께 금융옴부즈만(FOS), 금융상담기구(MAS) 등에 대한 감독을 담당

○ PRA의 감독을 받지 않는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도 수행

□ FCA 산하에 금융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FOS, 공적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MAS 등을 설치

○ FCA산하에 FOS를 두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금융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

○ 또한 FCA 산하의 MAS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금융정보 및 지식을 제공하는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

3. 호주

▣ 호주는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 정책이 분리되어 있는 쌍봉형 규제체계

▣ 다만,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서는 영업행위 규제기구가 건전성 규제를 병행

▣ 영업행위 규제를 담당하는 증권투자위원회(ASIC)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기능을 포함

▣ 금융분쟁조정은 독립된 분쟁처리기구에서 해결

□ 호주의 감독체계는 미시건전성 위주의 호주건전성감독청(APRA)과 금융시장 영업행위 규제 위주의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로 구분된 쌍봉형 감독체제

□ APRA는 은행 등 예금수취기관, 보험사, 퇴직연금 운용자에 대한 미시건전성 감독을 담당

○ 감독대상 기관에 대한 인허가, 상시 감독/검사 및 건전성 기준 제·개정권을 보유함

□ ASIC은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병행

○ ASIC은 독립적 연방정부기관이지만, 재무부장관의 포괄적인 책임 하에 놓여있음

○ 금융상품 정보공시 요건 설정,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문 또는 거래업무 인가, 금융회사의 영업여건 제정 등 자본시장 관련 영업행위 감독

○ 이와 함께 대부업 관리·감독, 민원처리, 상담, 소비자교육, 금융정보제공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

호주의 금융감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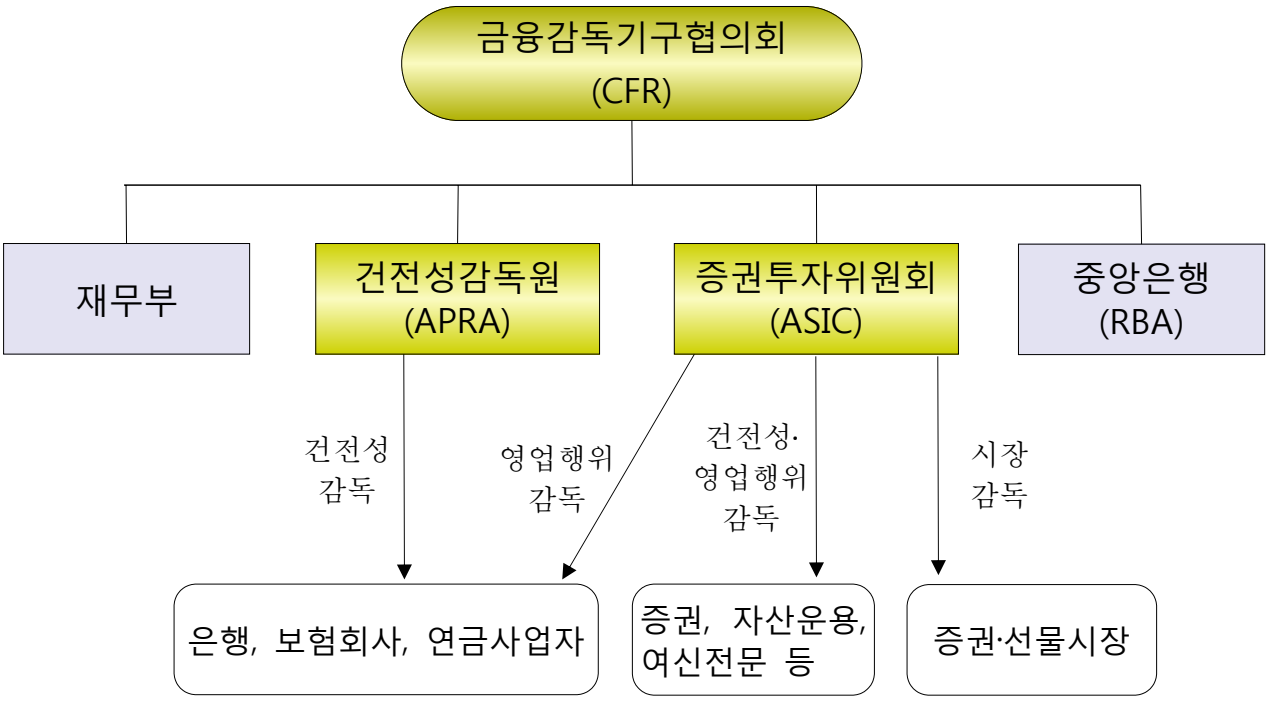

□ 금융분쟁처리는 ASIC의 승인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에 의해서 해결

○ 금융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기구와는 독립된 복수의 금융분쟁처리기구들이 존재하였으나, 2008년 각 업권별 분쟁처리기구를 통합

○ FOS는 은행, 신용조합, 주택금융조합, 보험, 주식거래 등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분쟁 해결

□ 중앙은행, 재무부, 금융감독기구들로 금융감독기구협의회(Council of Financial Regulators)를 구성하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협의

4. 캐나다

▣ 캐나다는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원(FCAC)이 존재하여 규제, 감독, 제재, 교육 등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

▣ 금융분쟁조정처리기구는 감독기구와 분리되어 운영

□ 캐나다의 경우 연방금융감독원(OSFI)와 금융소비자보호원(FCAC)으로 나누어져 쌍봉형 감독체계로 인식되고 있으나, 영국, 호주의 쌍봉형 체계와는 상이함

○ OSFI 등은 건전성 감독 중심으로 영업행위 규제를 일부 담당하며, FCAC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영업행위 규제 중심으로 역할 분담

캐나다의 금융감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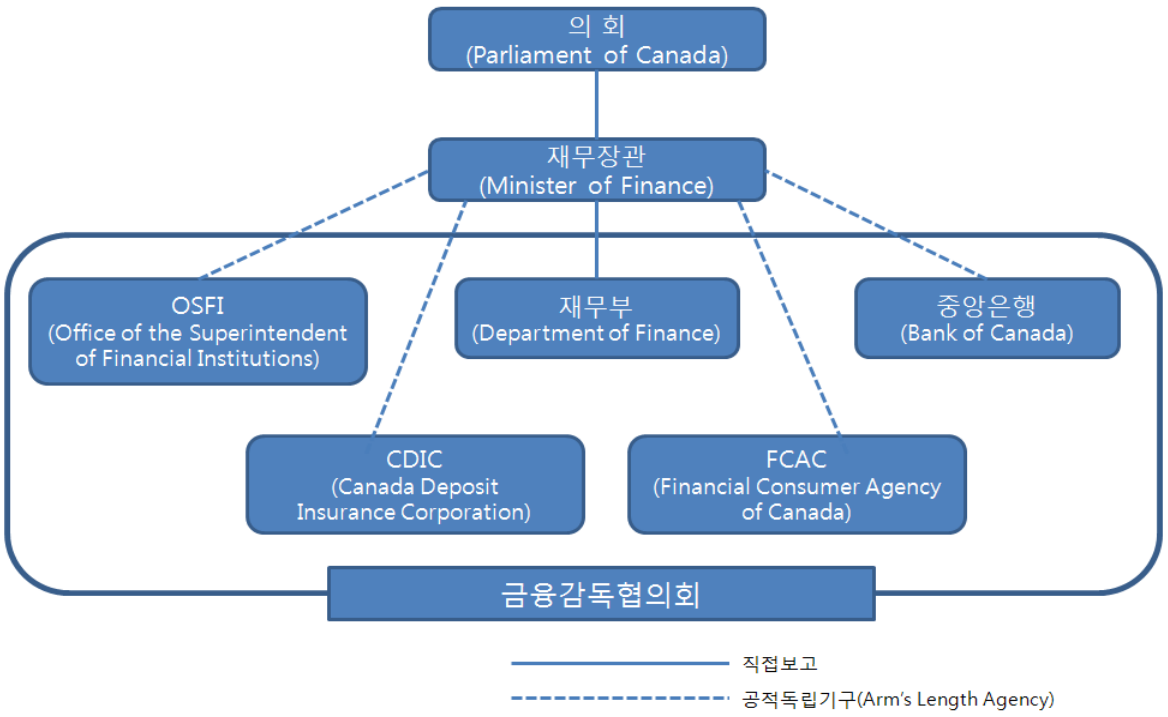

□ 연방금융감독원(OSFI)은 은행과 보험의 감독을 통합하여 감독

○ 증권부문에 대해서는 연방감독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주정부가 관할

□ OSFI와 별도로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원(FCAC)을 설립하여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감독, 제재, 교육 등을 일괄 처리

○ FCAC는 연방의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소비자에 대한 금융교육전담기구의 역할을 담당

○ 사전적 감독업무로는 소비자 관련 법규 및 자율규제시스템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금융교육관련 업무로 금융상품 제공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소비자와의 소통증진을 위한 연간보고서를 출간하고 홈페이지에 금융기관의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사후적 감독업무로 소비자 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벌과금 및 형사적 제재를 부과

□ 건전성 감독기구(OSFI) 및 금융소비자보호원(FCAC)와는 별도로 금융분쟁조정은 통합금융옴부즈만(FSON)에서 담당

○ FSON은 3개의 독립적인 기구인 OBSI, CLHIO, GIO로 구성되어 각각 은행과 신탁분야, 생명·의료보험분야, 주택 및 자동차 등과 관련된 보험분야를 전담하여 소비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

5. 네덜란드

▣ 네덜란드는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가 분리되어 있으며, 소비자보호업무는 영업행위감독기구가 담당

▣ 금융분쟁조정처리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 간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

□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담당

○ DNB 내에 "건전성감독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를 두어 각각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도록 함

□ 금융시장감독원(AFM)은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

○ 예금, 대출, 투자 및 보험 시장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을 통해 금융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

□ 금융분쟁조정처리는 금융서비스민원위원회(KiFid)에서 담당하며, 재무부의 관리·감독을 받음

○ AFM과 KiFid 간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전·사후적 소비자보호 기능 간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

네덜란드의 금융감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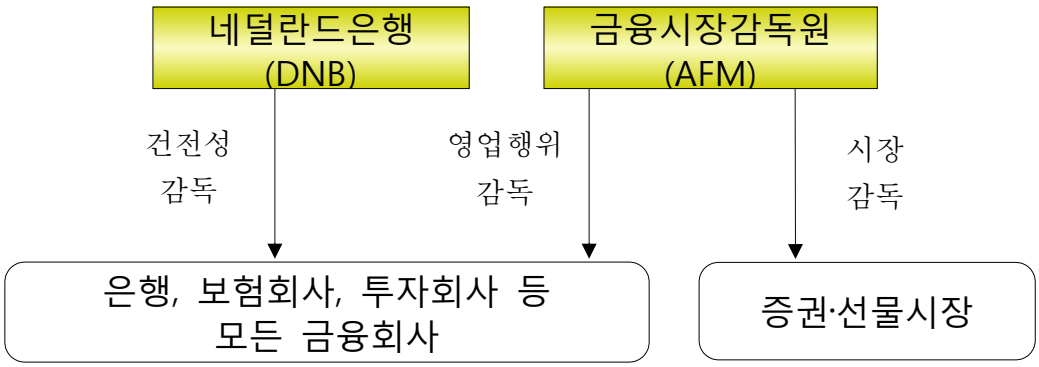

6. 독일

▣ 독일은 통합금융감독원이 건전성감독, 영업행위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를 모두 수행

▣ 금융분쟁조정은 해당 금융회사 및 업권별 옴부즈만에서 우선 처리

□ 통합 금융감독기구인 BaFin이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권역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 감독·검사업무를 수행

○ 은행의 임점검사 등은 연방은행과 분담하여 실시

독일의 금융감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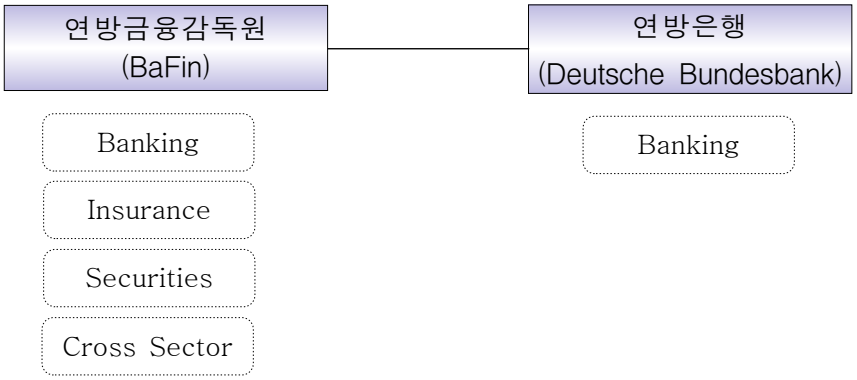

□ BaFin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한편, 금융분쟁 조정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우선 처리

○ 금융회사에서 분쟁조정 미성립시 업권별 옴부즈만이 처리

* 대다수 독일 금융회사는 BdB(상업은행), DSGV(저축은행), BVR(조합은행), BVI(증권), Versicherungsombudsmann(보험) 등 업권별 금융협회의 옴부즈만 서비스에 가입

○ 투자법(Investmentgesetz) 분쟁 중재와 관련하여 BaFin내에 분쟁중재위원회(Arbitration Board)를 설치

7. 일본

▣ 일본는 금융청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담당

▣ 금융분쟁조정은 감독기구와 분리되어 운영

□ 일본은 금융청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포함한 금융규제 및 감독 업무 수행

□ 금융청은 금융정책, 감독업무, 검사업무를 함께 수행

○ 금융청은 제도의 기획 및 입안기능을 담당하는 총무기획국, 감독기능을 담당하는 감독국, 검사기능을 담당하는 검사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융청 내에 시장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내각총리대신이나 금융청장관에게 행정처분 등에 관하여 건의

* 증권거래감시위원회는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 대해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조사, 법원에 긴급금지·정지명령의 신청 등을 수행

□ 금융분쟁조정은 민간형 분쟁조정처리 기구를 근간으로 하되 금융청의 관리・감독을 받음

○ 2004년에는 민간형 분쟁조정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2009년에는 금융상품거래법 등 광범위한 금융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형 금융분쟁조정처리 제도를 법제화

*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신용금고법, 노동금고법, 중소기업등공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농림중앙금고법, 신탁업법, 겸업법(신탁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보험업법, 금융상품거래법, 저당증권업규제법, 대금업법, 자금결제법, 상호부금업법 등 총 16개 개별 법률을 개정

참고8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 금융감독원은 7.21일 금융위원회에 아래 의견을 전달

□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강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음을 잘 알고 있으며,

○ 이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부문에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

□ 그러나 감독정책기구는 그대로 둔채 **감독집행기구**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분리 설치**할 경우에는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감독체계 개편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미흡**하며, 블랙컨슈머 양산, 중복규제 및 감독 사각지대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됨**

○ 또한, **금융정책/감독정책의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소비자보호**가 가능함을 주장하는 **학계 및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적 여론이 초래**될 소지

□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 금융정책/감독정책의 분리 등 보다 **큰 틀의 감독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 시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본래 의미의 금융소비자보호에 해당하는 **민원, 분쟁처리, 금융교육** 등으로 **신설 기구의 기능을 집중**하는 한편,

○ 민원·분쟁처리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짐으로써 실효성있는 소비자보호가 가능하도록 **건전성감독기구와의 교류협력 장치를 마련**함이 바람직

<붙임>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방안의 문제점

1. 판매행위 규제업무

□ 감독업무 현장에서 금소법상 **판매행위규제**와 개별법상 **영업행위규제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려움**

○ 이에 따라 양 감독기구가 동일 사안에 대하여 각각 감독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복규제가 불가피**한 반면,

○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감독책임 불명확*으로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일련의 연속적 행위인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권한**이 **규제정책**(금융위)-**상품개발**(금감원)-**판매권유**(금소원)-**상품공시**(금감원·금소원)-**계약이행**(금감원) 등으로 **파편화**됨에 따라 **감독책임 불명확 초래**

영업행위 규제와 판매행위 규제가 혼재되어 있는 사례

- 은행법(§52의2)상 **다수 불공정영업행위 규제 중** 꺾기 등 **구속행위**는 **금소원이 소관**하게 되고 부당한 **담보·보증요구**, **편익요구**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익침해** 등은 **금감원이 담당**하여 감독·검사권이 충돌하고 역할의 구분이 모호

  * 실제 현장에서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편익요구,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익침해 등이 동시에 발생

- KIKO의 경우에도, 은행의 고객 적합성 심사 및 위험고지 적정성 여부(**판매규제**)**외**에도 **계약 자체**가 환헤지에 **적합**한지 **여부**, 거래한도 부여를 위한 **여신심사·사후관리 적정성 여부**, 손실기업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 인식 여부** 등 **한 가지 상품의 개발·판매 과정**에 **금감원과 금소원 업무가 혼재**

- **보험상품** 관련 단계별 설명의무 중 **판매권유-계약체결 단계의 설명의무**는 **금소원**이 담당하고, **보험금 지급단계의 설명의무**는 **금감원**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양 기관간 감독·검사의 중복이 불가피

2. 상품심사 사전협의

□ 금소원이 판매행위 규제와 함께 **금융상품 심사에까지 관여**하는 경우 사실상 **영업행위 감독업무의 대부분**을 수행하게 되어 **옥상옥 규제**와 **'제2의 금감원 신설'이라는 비판이 심화**될 우려

○ **심각한 중복규제 및 책임소재 불명확** 등이 예상되며, 금융상품 심사 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금융회사 부담이 가중**

○ 나아가, 금융회사의 금융신상품 개발 유인 감소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제약**하는 결과 초래

3. 검사기능

□ 금소원에 **검사기능** 부여시 **중복검사** 및 **검사횟수 증가** 등으로 **금융회사 부담**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며

○ 소비자보호를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민원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도 충분**

4. 제재기능

□ **금소원에 제재기능 부여**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재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한은** 및 **예보**와의 **형평성 문제*** 야기

* 한은 및 예보는 공동검사 또는 단독조사권(예보)은 보유하고 있으나, 검사결과 필요조치에 대해서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 요청(한은법 §88, 예보법 §21)

○ 한은 및 예보에 대한 제재권한 부여 요구로 확대될 경우 금융회사는 **총 6개*의 분산된 검사·제재기관**에 구속될 소지

* 금융위, 금감원, 금소원, 한은, 예보, 감사원

5. 서민금융 지원기능 금소원 이관

□ **서민금융 공급**은 건전성 감독기관(금감원)에서 추진할 때에만 **지속가능한 제도**로 유지·발전 가능

○ **금소원 이관**시,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가운데 **서민지원실적 개선에만 치우칠** 가능성

○ 또한 가계부채 대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조정**하는 등 건전성감독과 서민금융지원을 **동일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6. 소비자보호기구간 형평성

□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수집·조사** 등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음

○ 금소원에 판매행위 규제기능을 부여할 경우 **한국소비자원**과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기구**로서 **정체성**과도 **상충**됨

<붙임 1-3>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8.27(화) 10:00부터 보도 가능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 임 자	금융위원회(02) 김정각 산업금융과장(2156-9750)	담당자	박재훈 사무관 (2156-9764) 정태호 사무관 (2156-9757)
	기획재정부(044) 김병환 자금시장과장 (215-2750) 강부성 대외경제총괄과장 (215-7610)		김성철 사무관 (215-2753) 박주언 서기관 (215-7611)
	산업통상자원부(02) 조영태 수출입과장 (2110-5331)		김열규 사무관 (2110-5334)
	해양수산부(044) 김성범 해운정책과장 (200-5710)		김인경 서기관 (200-5716)
	중소기업청(042) 조경원 기업금융과장 (481-4534)		박선국 서기관 (481-4544)
배 포 일	2013.8.27(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4) 총 6매

제 목 : 창조경제 지원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추진

[주요내용]

◈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여 **대내 정책금융 단일화**

◈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는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비핵심 업무를 축소**하여 **핵심부문에 지원역량 강화**

◈ **수은·무보·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선박관련 인력과 조직**을 **부산으로 이전**(약 100명)하여 **「(가칭)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

※ **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민간재원**(50% 이상)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 검토**(관계부처간 협업과제로 '14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 검토)

◈ **중기정책금융**(기업은행, 신·기보)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창업초기·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Ⅰ. 추진배경

□ **금융시장의 발전**과 **상업금융기관의 역량 확대**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방식의 정책금융기능 개선 필요성 대두**

○ **대출·보증** 등 전통적인 양적투입(debt financing) 방식을 넘어 **투자 또는 투융자 복합 지원**수요가 증가(equity financing)

○ **창업·벤처 기업 육성, 창조경제 지원**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시장선도 요구 증대**

○ 아울러, 그동안 수차례의 기능재편 노력에도 **시장마찰** 및 **정책금융기관간 업무중복**의 **근원적 해소에는 한계**

➡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 필요

※ '13.4월부터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13차례 회의 등을 거쳐 방안 마련

Ⅱ. 정책금융 패러다임 변화와 발전방향

(1) 과거의 정책금융 주요기능 및 변천

□ 그동안 경제상황 변화, 금융산업 발전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주요역할과 지원방식이 지속 변모**하여 옴

○ (**역할**) 과거 개발경제 시대에 **중화학공업, 전기·전자산업** 등 **특정산업 육성**을 통한 **실물경제 발전**에 주력하였으며,

- 50~60년대 전재복구, 70~90년대 주요산업 지원, 90년대 후반 이후 첨단산업 지원, 시장안전판 역할 등으로 **주요기능이 변화**

○ (**방식**) 과거 민간 금융자본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정부자금 활용비중이 높고**,

- 대출·보증 등 **양적투입**으로 상환기간, 금리 등에 **우대 제공**

(2) 향후 정책금융의 발전방향

□ 개도국형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정책금융으로 변모**하기 위해 **"중요산업에 투입위주 지원"**에서 **"새로운 분야에 시장친화적 방식의 지원"**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필요

○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 발달에 부응하여 **다양한 정책수요**에 **투융자 복합** 등 **선진방식의 정책금융 기능 강화**

○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지원** 등을 위해 **민간자본의 적극적 활용** 및 **상업 금융기관과의 협업 확대**

○ **WTO가입, FTA체결** 등 경제개방 진전으로 **특정산업**에 대한 **우대 및 직접지원** 방식을 피하고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

□ **경제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다음의 분야와 기능에 **정책금융 역량 집중**

전통적인 방식·분야	새로운 정책금융 수요
· 실물경제 지원에 주력	· 기업·금융 산업의 동반성장 ·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대기업이 경제성장 주도	· 중소·중견·대기업의 균형 발전 ·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 주요산업 지원에 편중	· 우수 기술·지식 산업, 창업·벤처, 해외프로젝트 및 신성장 산업 지원

Ⅲ.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1 기본 원칙

1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대내·대외·중소기업 등 **기능별·분야별**로 **명확히 재편**

2 **창업·벤처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해외플랜트** 등 **창조경제 지원**에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

3 **민간금융기관**이 영위 가능하거나 정책금융기관간 중복된 **비핵심 업무는 과감히 정리**하여 **정책재원의 효율 극대화**

2 역할 재정립 방안

가. 대내정책금융 부문 :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

□ 창업·벤처기업 지원, SOC투자, 기업구조조정 역량 등 **산은의 정책금융 전문성**을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활용**

○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하되, **벤처투자, 온렌딩** 등 정금공의 주요기능은 **통합산은내 독립부서에서 수행**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안정 기능이 중요해짐에 따라 관련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산은의 정책기능 유지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산은이 정책기능을 유지할 경우 산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여 정책재원의 비효율 유발 소지가 있는 정금공은 산은과 통합할 필요

○ **정금공의 해외업무** 자산(약 2.0조원)·부채·인력을 **수은으로 이관**

○ **통합 산은은** LP로서의 투자 확대, 관련조직 정비(확대), 연도별 투자 목표 부여 등 **'종합투자업무 역량 강화' 추진**

□ **통합 산은**의 **정책기능 유지**를 고려하여 **산은지주는 산은과 통합**하고 **불필요한 일부 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생명보험) **매각 추진**

* SOC투자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KDB인프라자산운용**은 매각대상에서 제외, **대우증권은** 정책금융기능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인 자회사 **매각 시기·방법** 등은 **시장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

○ 산은에 대한 **정부의 지배주주 지위**(50%+1주 이상)**를 유지**하되, IPO 등을 통해 **일부 지분의 매각** 또는 분산 가능

□ **소매금융 업무**는 고객불편 등 고려하여 **현재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지점 확대, 다이렉트예금 신규유치 등은 중단**

□ 현재 정금공, 산은지주, 산은은 **연결대상**이므로 통합하더라도 **BIS 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산은 BIS비율이 14.4%에서 13.7%로 약 0.7%p 하락 추정('13.6월말 기준)

** 통합시 신용공여한도 초과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산은법 개정안 통과** 후 통합 관련 절차를 거쳐 (인력구조조정은 최소화) **'14년 7월 '통합 산은'이 출범**토록 추진

나. 대외정책금융 부문 : 현 체제 유지 + 기능개편

□ **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양 기관을 **개도국 수출지원, 중장기·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 지원 중심**으로 기능 개편

* 다수 국가(일본, 독일 등)에서 대출, 보험 기능을 존중하여 2개 ECA(Export Credit Agency)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통합시 지원여력 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오히려 기업 불편이 늘어날 소지

○ 자금수요 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원스톱서비스 제공**

* ① 현행 수은·산은·정금공·무보로 구성 → 시중은행까지 참여 확대, ② 협의대상 사업범위 확대(20억불 이상 → 5억불 이상) 등

○ **수요자(기업) 편의 제고** 및 양 기관 **협업체계 유지·강화**를 위하여 **수은 대외채무지급보증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 현행 '수은지원 1억불이상 및 대출비중 55%이상'의 건별제한 중 **'1억불 이상'을 삭제**하고 **'대출비중은 50%초과'로 완화**

□ 수은·무보의 **비핵심업무 비중을 대폭 축소**

○ **정책재원 중복활용**으로 비효율 소지가 있는 **정책금융기관** (산은, 수은, 정금공) 여신에 대한 **무보 신규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

○ **고위험·장기 지원 확대**를 위해 **수은 단기여신**(1년이하) **비중**을 **'17년까지 40%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12년 단기대출 비중 77%)

- 포괄수출금융, 시설확장·증설용 자금대출, 상생자금 대출 등 시중은행이 취급가능한 **일반여신은 단계적으로 중단**

* 대기업은 즉시 중단(만기회수)하되, 수출기업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은 점진적으로 축소 유도

○ 무보가 독점적으로 영위중인 **단기수출보험**('12말 잔액기준 무보 업무의 41% 차지)을 **민간 금융회사 등에 개방·이양**

- 단기수출보험 규모중 **무보가 차지하는 비중**을 **'17년까지 60%이내 감소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축소**

○ 신보·기보의 기능과 중복되는 **무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

다. 선박·해양플랜트 금융지원 강화

□ 우선 **현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하여 **선박금융**에 대한 **지원 강화**

○ **선박채권 보증 도입***, **제작금융 규모 확대**, 정책금융기관이 **선박의 담보가치를 보증**하는 방안** 등 추진

* 국내 조선사에 선박을 발주하는 해외선주의 채권발행에 대해 수은·무보가 보증

** 선가가 하락하면서 금융권이 기존 대출금에 대해 추가 담보 또는 현금 예치를 요구함에 따라 해운기업의 자금부담 가중

○ **통상마찰** 소지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민간재원**(50% 이상)으로 **상업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해운보증기금 설립방안을 검토**

* 서비스 산업인 해운사에 대한 지원은 통상마찰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과, 해운업 지원시 실질적으로 조선사 지원효과가 발생(Pass through)하므로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병존

- **관계부처**(기재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 **협업과제**로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14년 상반기까지 설립여부를 검토**

□ 이와함께, **수은·무보·산은** 등의 **선박금융 관련 조직·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하여 **「**(가칭) **해양금융 종합센터」로 통합**

○ **수은 부행장급 본부장**을 포함하여 **약 100명 이전**

* 필요시, 이전기관들로 '해양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아울러,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8.28일 발표예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선박·해양 금융지원 기능을 강화**

○ 수은·무보에 **추가 출자·출연**을 통해 **지원여력 확대시** 수은·무보의 **선박·해양 관련 금융지원이 강화**되는 효과 기대

라. 중소기업 정책금융 부문 : 창업·벤처 기업 지원 강화

□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 투·융자 복합금융 확대 >

○ **(기은 : 투융자 복합금융)** 창조경제 선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부터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기능 강화**

- **전통적인 중소기업 융자 기능**에 IBK 캐피탈 등 **자회사의 투자 외연을 결합**하여 투·융자 복합 금융 활성화

- **창업자금 투자**(초기), **성장자금 대출**(성장기), 위기시 **긴급유동성** 공급(성장기), **회수 및 재기지원**(회수기)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 **(신·기보 : 보증연계형 투자)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지원을 병행**하여 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 **민간자본의 공동투자 유인**

- **보증연계투자*를 활성화****하고, **보증을 투자로 전환**하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투자옵션부 보증제」 도입 추진**

* 기보는 '13년도 500억원 지원 계획, 신보는 '14년부터 시행 계획

** 총투자한도(5%) 및 개별기업 투자금액 제한조치 추가완화(시행령 개정)

< 설비투자펀드 확대 >

○ **투자부진 장기화에 대응**하여 산은·기은의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액을 확대 (3조원→5조원)**

< 기술평가제도 선진화 >

○ **『기술평가 정보시장**(information MKT)**』을 형성**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다변화 유인

- 금년 하반기 기보 내 **기술평가정보조직(TB) 구축**을 통해 **기술평가 역량을 고도화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 확대**

< 성장사다리 펀드 구축 >

○ **정책금융기관의 주도적 출자**로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투자자금 공급**을 위한 母펀드**(성장사다리펀드) 조성**

- 조성목표 6조원 중 기은·통합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1.85조원 출자**

○ **창업**(스타트업·엔젤·크라우드), **성장**(지식재산·R&D·Growth Capital), **회수**(Buy Out·세컨더리·재기지원) 단계별 **다양한 매칭 子펀드 운영**

□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기은)** 기존의 수출중소기업 여신과 함께 **중소기업 해외사업 일반자금 지원**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수은은** 장기-대형자금이 소요되는 **해외 PF 및 개발금융**에 집중하고, **해외진출 중기에 대한 일반자금 공급**은 **기은**이 전담

- **글로벌 은행과의 MOU체결 등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국내기업 해외진출시 **현지 우량은행으로부터 우대금융**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신·기보) 수출기업 보증지원을 강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보증기법 전파** 등 금융한류 형성

Ⅳ. 향후 일정

□ '13년 정기국회 중 **산은법 전부개정안 등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통합 준비절차를 거쳐 **'14.7.1일 통합산은 출범**

[별첨]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 참고 : 역할 재정립 후 정책금융 모습 >

▣ 대내 정책금융 부문 (산은-정금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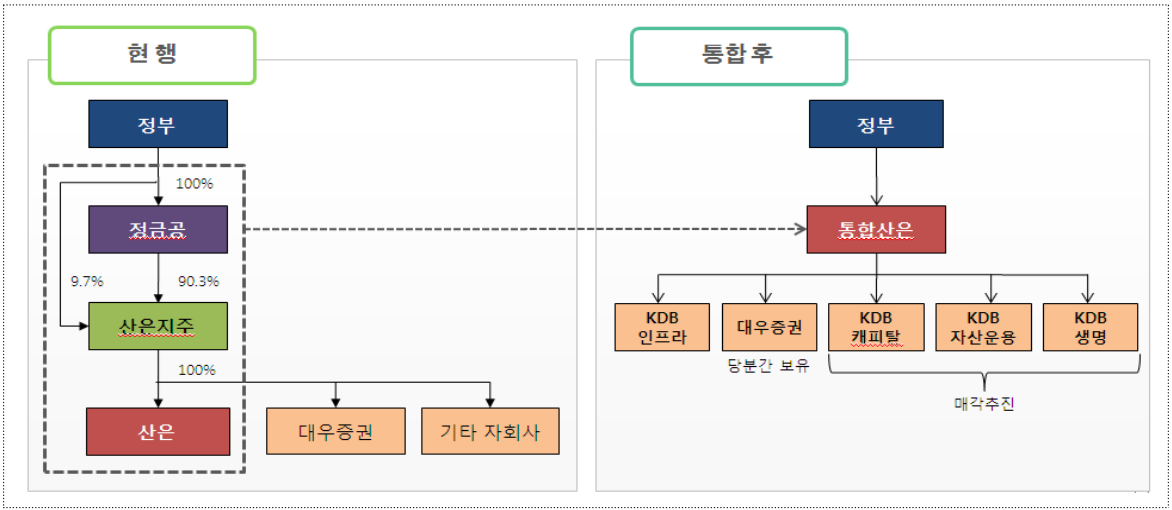

▣ 대외 정책금융 부문 (수은, 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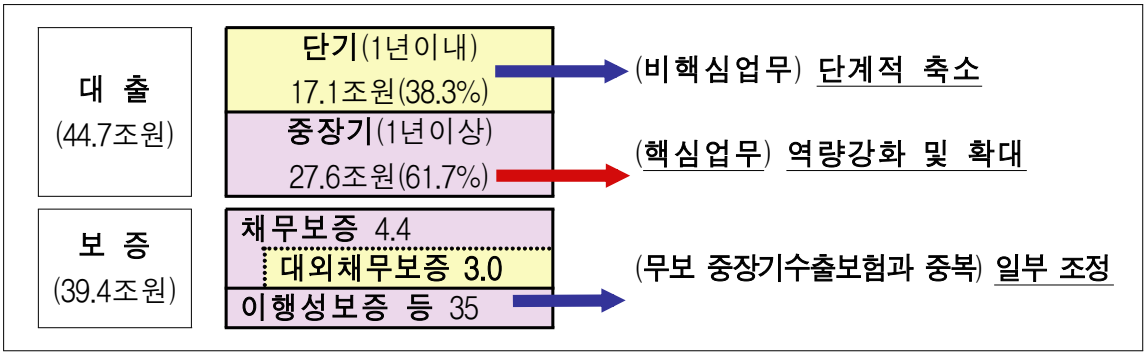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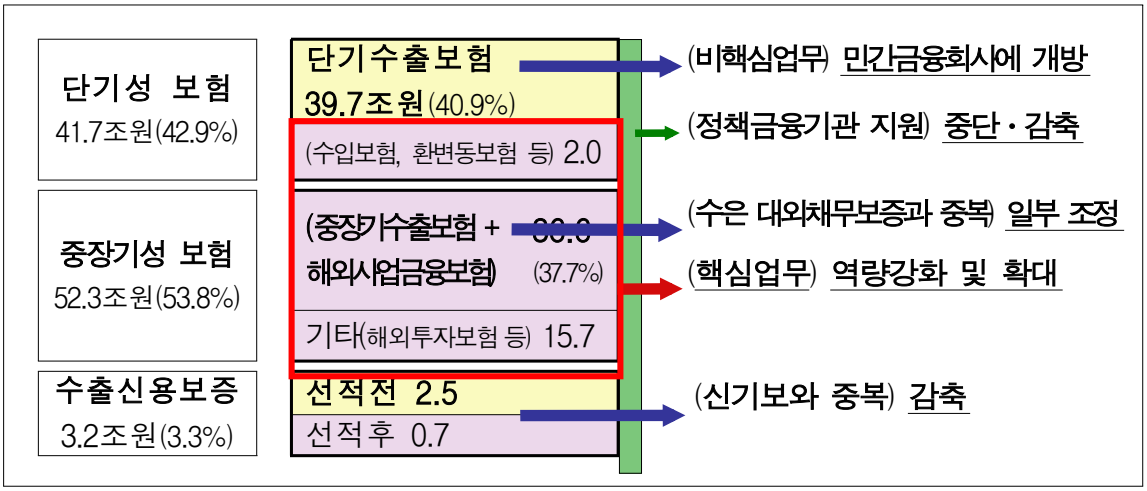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붙임 1-4>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6.17(월) 17:00부터 보도가능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책 임 자	이세훈 과장 (2156-9710) 권순찬 국장 (3145-8301)	담 당 자	송현지 사무관 (2156-9718) 이재용 팀 장 (3145-8311)	
배 포 일	2013. 6. 17(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4매

제 목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13.4.19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위원장 : 박경서 교수)」를 구성*한 바 있으며,

* 민간위원 : 박경서(고려대), 박창섭(SC금융지주), 박영석(서강대), 양일수(삼일회계법인), 구본성(한국금융연구원), 송옥렬(서울대), 김선웅(좋은기업지배연구소)

** 정부 및 유관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그동안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지배구조 관련 주요 문제점 점검과 바람직한 지배구조상 정립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동 선진화방안은 금일 15시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빠른 시일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Ⅰ. 그동안 TF 논의의 주요 내용

□ 동 TF는 우리나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경우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부분 국제규범에 근접**하고 있으나,

○ 이러한 제도적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율**의 **형식적인 준수**에 그친 채 **실제 관행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실패는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시스템의 직접적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주대표성을 강조하는 일반기업 지배구조와 달리 예금자, 금융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표성과 책임성**이 부각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 동 TF는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선진화 방안을 접근하였음

① 일회성 제도적 개선 보다, **"실제 관행의 개선"에 중점**

○ 지배구조는 '건정성 규제'와 달리 **정해진 '정답'이 없는 만큼**, 단일의 '모범적 지배구조'에 대한 합의가 곤란하고,

○ 또한, 지배구조는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람**'과 '**관행**'의 문제로, '**One fits All**'의 **해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

⇨ **최소한의 공통규범**을 제시하고 "**Comply or Explain**" 원칙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제도적 틀'** 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한편,
- 지배구조 **운영실태에 대한 정보공개를 대폭 확충**하고 지속적 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시장평판에 따른 '실제관행의 개선'**을 도모

② **지배구조의 "공익대표성"을 강화**

○ 금융회사는 일반기업과 달리 '주주' 외에도 예금자·투자자 등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 다수 존재

○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패는 단일 회사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금융시스템 안정**의 **위험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감안

⇨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배구조의 '**주주 대표성**'과 '**공익대표성**'을 조화할 수 있도록,

⇨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선임·평가·보상**에 있어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주 등에 의한 **외부감시기능 활성화** 여건을 마련

Ⅱ.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 (☞상세내용 별첨)

1 이사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을 내실화

○ 현재 경영진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금융회사 **위험관리**, **이해상충 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 수립** 등을 **이사회 권한으로 명문화**

○ 현재 비상설·임의 기구인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이사회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위상을 높이고, **잠재 CEO 후보군의 관리, 주요 임원의 추천·검증** 등의 권한·책임을 부여

- 주요 역할: ⓐCEO승계계획 수립, ⓑ상시적 CEO후보군 관리, ⓒCEO 후보추천, ⓓCEO후보 검증 역할을 수행

○ **CEO 승계원칙**을 내실 있게 수립토록 하고, 동 승계원칙과 **실제 CEO 후보 선임과정이 소상히 외부에 공시**될 수 있도록 함

2 **'사외이사 연임·보상'**과 **'역할·책임에 대한 평가'**를 **연계**

○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이사회 내 위원회 참여현황 등)·**책임도**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개인별 활동내역**(겸직업무 포함)과 **보수**를 **공시**

- **공시대상 보상범위**도 직접적 보수 뿐만 아니라 **재화·용역제공 계약** 등을 통한 간접적 이익까지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확대**

○ 사외이사 후보 선임안건을 주총에 **개인별로 분리 상정**토록 하고, 선임단계별로 추천경위 등을 공개토록 함

○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Coverage Ratio**의 **상한**(예: 80%, 다만, 자기부담 한도 최대 1억원)을 규율

3 지배구조 운영실태에 대한 **시장감시 활성화** 여건 조성

○ 주요 선진국과 같이, 지배구조 정책·운영실태를 상세하게 기재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Governance reporting) **작성·공시**를 **의무화**

○ 대형금융회사에 대하여 일반 상장기업 보다 **주주제안권과 주주대표소송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추진 (지배구조법 논의시 반영)

Ⅲ. 향후 추진계획

□ 금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 추진**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토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

□ 금번 TF에서 개선안을 도출하지 못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개선·보완방안 검토**

※ 별첨1 :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별첨2 : 관련 Q&A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2013. 06. 17.

금 융 위 원 회

I. 검토 배경

1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상당부분 국제규범에 근접**

○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외이사 제도** 도입, **이사회 역할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제적 권고를 수용**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논의 동향을 토대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제정** 등 **추가 제도개선 추진**

2 그러나, 제도적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율의 **형식적인 준수**에 그친 채 **실제 관행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최근 **CEO 공백 장기화, 경영진-사외이사간 불필요한 논란 발생** 등 지배구조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제기

○ 사외이사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경영진 견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사외이사 그룹의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점도 노정

○ 소유구조의 분산, 정부의 암묵적 보호 등으로 인해 기관투자가 등 **주요 주주**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통제에 소홀**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의 실패는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시스템 안정의 직접적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

○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배구조 제관행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실행방안 필요**

◇ 금융회사 **지배구조 현황을 점검**하고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 구성·운영**(4~6月)

II. 금융회사 지배구조 현황

1 지배구조 제도 개선 경과

◇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에 힘입어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지배구조 규범체계**는 이미 **상당부분 구축**

1 **('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거래소상장규정, '98년)

○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 및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99.12월)

○ (증권·보험업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화, **준법감시인** 제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제도 도입('00.1월)

2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지배구조 규율체계 정비와 함께,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율강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추진**

○ 증권거래법상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상법으로 일원화**('09.1월)

* 대규모 상장회사(자산 2조원이상)의 사외이사 3명 이상, 과반수 의무화 및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일괄선출방식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도입

○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보상체계·사외이사 모범규준** 제정('10.1월)

○ **저축은행업권**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10.2월)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12.6월)

2 금융회사 지배구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 지배구조 규범체계와 달리, 실제 현실에서는 **지배구조의 중요성 인식 부재** 등으로 **잘못된 행태·관행**이 **상존**

1 경영진·이사회간 '견제와 균형' 미흡

○ 경영진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를** 효율적 경영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형식적 통과절차**로 간주

○ **이사회**는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이사회 본연의 권한과 책임 수행을 못한 채 **주요 의사결정**을 **경영진 판단에 주로 의존**

2 사외이사 독립성·책임성 부족

○ 책임과 역할에 상응한 **사외이사 평가 관행 부재**

- **회사 기여도와 무관**하게 대부분 **최대 재임기간**인 **5년**까지 연임
- **사외이사 보상수준**도 능력·기여도·책임과 무관하게 **획일적 책정**

○ **주주와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적극적 책임·역할 수행 부족**

-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경영진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수동적·소극적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일부의 경우 사외이사가 주주·공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례**가 발생

3 시장감시 기능의 부재

○ 소유구조의 분산, 정부의 암묵적 보호 등으로 인해 기관투자가 등 **주요 주주**는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통제에 소홀**

○ 금융사 지배구조 현황에 대한 정보부족, 독립적 평가기관의 부재 등으로 **외부평가 활성화 여건도 미조성**

III.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향

1 고려사항

◇ (**실제관행 개선에 중점**) 최소한의 '제도적 틀'안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되, **'실제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중점

◇ (**지배구조의 공익성 강화**) '주주대표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강화하여 금융사 **지배구조의 실패**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소지 예방**

1. 실제관행 개선에 중점

1 지배구조는 '건전성 규제'와 달리 **정해진 '정답'**이 없으며, **'정형화된 모범적 지배구조' 도출이 곤란**

○ **지배구조 규율**은 회사별로 다른 내부규범과 관행·행태를 기초로 최소한의 공통점, 즉 **지배구조상 '최대공약수'를 제시하는 노력**

* OECD 등 국제기구도 지배구조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원칙 제시에 그치고, 회사별 다양성을 존중하는 모습

2 지배구조는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람**'과 '**관행**'의 **문제**로, **"One fits ALL"**의 해법을 기대하기 곤란

○ 일의적 규제의 도입보다는 '**실제 관행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규범'과 '현실'간 괴리를 좁히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2. 지배구조의 공익대표성 강화

□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패는 해당 기업의 문제만이 아닌 **금융시스템 안정의 위험요인**으로 확산될 가능성

○ 금융사 이사회는 '주주대표성' 뿐 아니라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 이익도 대변할 수 있도록 **'공익'**에 대한 **책임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

* 최근의 국제사회도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상체계 등에 있어 공익성을 감안한 보다 강화된 규율체계 도입을 추진 중

2 추진방향

1. 실제관행 개선에 중점

◇ (**지배구조 규율체계 재정립**) **'Comply or Explain' 원칙***을 도입한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최소한의 규범'을** 제시하고, **지배구조 규율의 기본 틀 재정립**

* 금융사별 모범규준과 다른 지배구조 운용 필요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고 다르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지배구조 다양성, 투명성 도모

◇ (**시장평가 활성화**) 지배구조 운용실태에 대한 **공시정보를 대폭 확충**하여 **시장평판에 따른 실제 관행의 개선**을 도모

◇ (**지속적 개선여건 조성**)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배구조 실태를 점검·보완**

	현 행	개 선
지배구조 규율체계 재정립	☞ **개별금융업법에서 규율** ▪업권별 규제차익 발생 ☞ **모범규준**(자율협약) ▪행동지침으로서의 구체성 결여 ☞ **형식적 지배구조 규범** ▪지배구조 모범규준 수준의 획일적·형식적 준수	☞ **지배구조법에서 규율** ▪통일적·체계적 규율 정비 ☞ **모범규준에 준법규성 부여** ▪Comply or Explain원칙 도입으로 실질적 규범성 확보 ▪구체적 실행지침으로서의 유용성 제고 ☞ **지배구조 내부규범의 실질화** ▪금융사별 다양성을 반영한 내부규범 마련 유도
시장평가 활성화 여건조성	☞ **공시 정보의 유용성 부족** ▪공시의무의 형식적 준수 ▪실질적 평가정보 부족 ☞ **주주의 감시역할 미흡** ▪소극적 의결권 행사에 그침	☞ **공시정보의 양적질적 수준 확충** ▪개별 금융회사의 실질적 관행개선 노력 유도 ▪실질적 평가정보 제공 ☞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 도모** ▪사외이사 추천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가능한 환경 제공
지속적 개선 여건 조성	☞ **일회성 제도개선**에 그침 ☞ **상시적 점검·평가체계 부족**	☞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의무화** ☞ **지배구조 실태점검체계 구축**

2. 지배구조의 공익성 강화

◇ (**경영진 · 이사회간 역할 · 책임 재정립**) 의사결정권한의 집중에 따른 금융사 실패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내부기관간 역할 · 책임 재정립**

◇ (**사외이사의 주주·공익 대표성 제고**) 사외이사의 **선임 · 보상 · 평가 체계 개선으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에 대한 책임성** 제고

◇ (**외부통제 강화**) 금융사별 지배구조 정책에 대한 주주, 시장 참여자 등에 의한 **외부감시기능을 강화**(Market discip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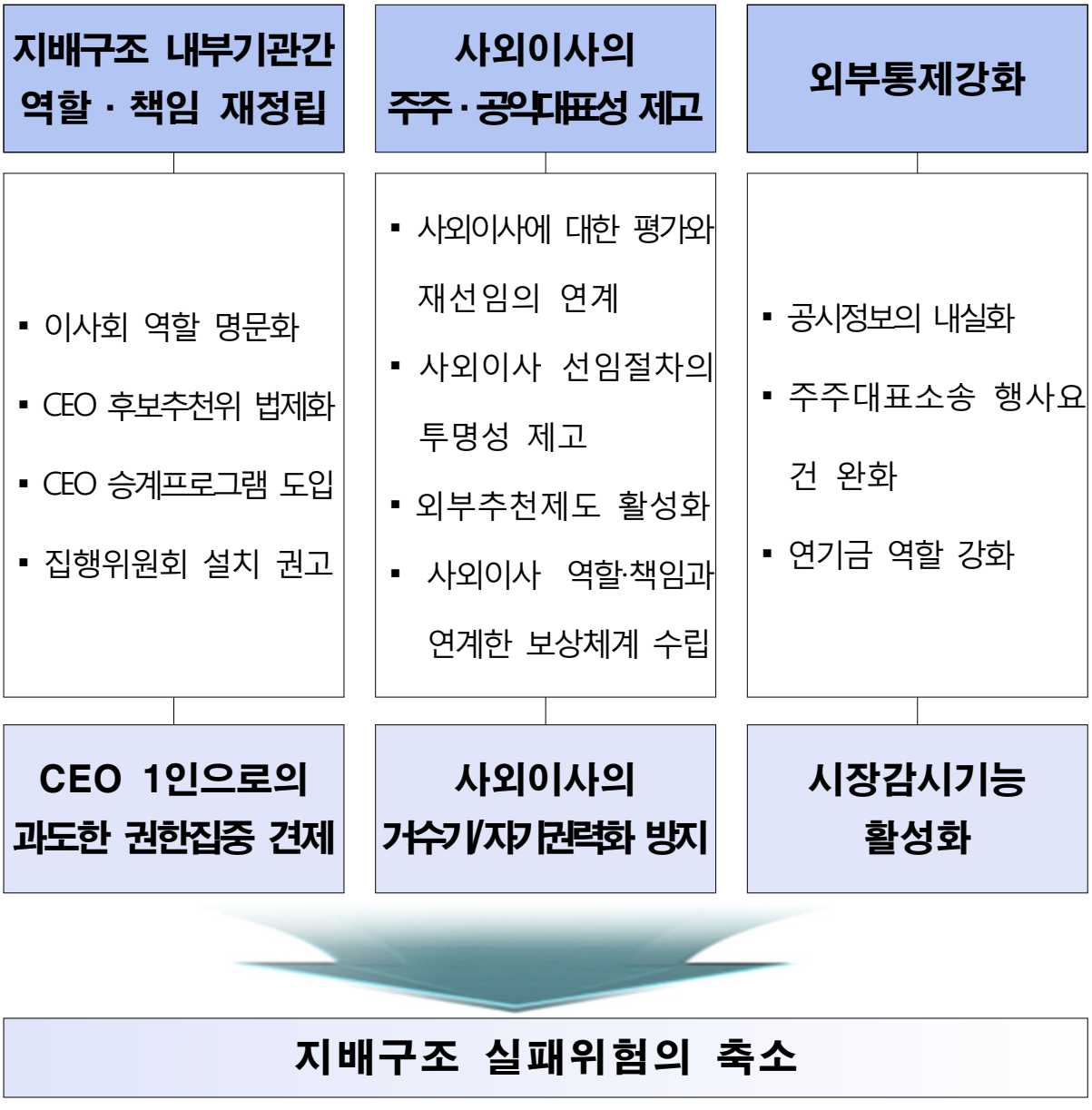

IV.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

◇ 국회계류 중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일반원칙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통규범을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반영**

1 경영진/이사회간 역할 · 책임 재정립

1 이사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

○ **위험관리, 이해상충행위 감독** 등을 이사회 권한·책임으로 명문화

-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정책 수립**, ㈁경영진, 이사의 회사 자산의 유용 등 **이해상충 행위 감독**, ㈂지배구조 **정책 수립**

2 이사회의 CEO 후보추천권한 내실화

○ CEO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변경**하여, CEO후보추천역할을 **담당**하게 함

* ㈀CEO 승계계획 수립, ㈁상시적인 CEO 후보군 관리, ㈂CEO 후보 추천(후보추천시 검토의견·검토절차의 이사회·주총보고), ㈃CEO 후보 검증

3 CEO 선임절차의 투명성 제고

○ CEO **승계원칙 수립**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주총승인 안건에 **CEO 후보추천과정**을 **상세**하게 포함하여 공시

* ㈀CEO 자격기준, ㈁후보추천 절차, ㈂승계계획의 수립, 보완, 평가 계획

4 집행위원회 제도 도입

○ 금융회사 내부기구로서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설치** 권고

* 집행임원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업무집행책임자를 중심으로 구성

-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주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사록 작성 규정**을 **준용**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2 사외이사의 주주·공익대표성 강화

1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

① **매년** 이사회의 **재신임평가** 실시, 매 2년마다 **외부평가 권고**

② **자기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 Coverage Ratio**의 **상한**(예:80%, 다만, 자기부담 한도 최대 1억원)을 규율

2 사외이사 선임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① 사외이사 추천에 대한 **절차적 규제 강화** : ㈀**본인**의 독립성 소명, ㈁ **후보추천위**의 추천경위 공개, ㈂**이사회**의 추천경위 공개

* 추천경과 공개 주요 내용 : 후보자역량(주요경력, 전문성), 추천경위(내부추천, 기타 이사, 외부자문기관), 이해상충여부(겸직업무 등)

② **후보 선임안건**을 **개인별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

3 사외이사 **외부추천제도** 활성화

① 사외이사 후보추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 완화** : 50/1만 → 10/1만

② **외부자문기관**(헤드헌터사), **주주제안** 등 **외부추천 활용 권고**

4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① 금융권·감독당국 등 협의 하에 **사외이사 인력pool 확충** 및 **활용 추천**

② 사외이사에 대한 **특화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

5 사외이사 **역할·책임과 연계한 보상체계** 정립

① 사외이사간 **활동내역·책임도**에 **상응**한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차별화된 보수 지급 현황**을 **개인별**로 공시할 것을 권고

② 사외이사 보수 공시시 **활동내역**(겸직업무 등 포함)을 함께 **공시**

③ 공시대상 **보상범위**를 **일체의 경제적 이익**(재화·용역제공 계약 등을 통한 간접적 경제적 이익 제공 포함)으로 **확대**

3 시장의 감시역할 강화

1 지배구조 공시정보의 양적·질적 수준 확충

① 개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운영실태**에 대한 **연차보고서** (Governance reporting) **작성·공개 의무화**

* 사업보고서와 별도로 작성하되,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향후 연간 사업보고서상 별도 항목으로 포함

- 이를 시장평가의 수단 뿐 아니라 **금융감독의 참고자료**로 활용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주요내용>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 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집행위원회 등 각 기관의 역할·책임
▪CEO·사외이사 선임기준 및 절차 ▪이사회 구성·활동 등 ✔내부거래 정보

※ **참고** : **英 FRC**(Financial Reporting Council)'s proposed revision to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2012 Oct.)

② 개별 지배구조를 **시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의 **충분성** 담보

- 하반기 중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공시정보 세부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2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여건 조성

① 대형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상장회사 지분 5/10만 이상 보유 주주에 대해 허용되던 **주주대표소송요건을 완화** : → 1/10만

② 상법개정안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 등의 도입 추진

3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 **사외이사 후보추천, 주주대표소송 참여**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13년 중)

참고1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 경과

□ **T/F 구성 : 총 9인** (* 밑줄은 위원장)

○ **박경서**(고려대 경영학교수), **박창섭**(SC금융지주 전무), **박영석**(서강대 경영학 교수), **양일수**(삼일회계법인 전무), **구본성**(금융연구원 연구실장), **송옥렬**(서울대 법학교수), **김선웅**(좋은기업지배구조 연구소장)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논의 경과**

○ **4월~6월** 중 **총 7주간 총 7회에 걸쳐 지배구조 개선방안** 논의

- **(1차, 4.19일) Kick-off 회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할 주요 의제를 확정

- **(2차, 4.30일) 경영진·이사회간 역할·책임 재정립, 사외이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방안** 등 논의

- **(3차, 5.09일)** 주주 및 **외부통제 강화** 방안

- **(4차, 5.16일)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검토(완전 자회사 특례, 임직원 겸직제도 개선 필요성 등)

- **(5차, 5.23일) 제2금융권 지배구조 문제** 등 기타 의제 논의

- **(6차, 5.30일)** 주요 개선과제 종합 점검

- **(7차, 6.13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안) **확정**

참고2 지배구조 관련 국제 논의 동향

1.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 OECD는 美 엔론사태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원칙을 제정('99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주요내용]

① 지배구조 규율은 **투명**하고 **실행가능**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의무를 수행할 것

② 주주는 **이사선임, 보수설정에 참여**하고 기관투자자 등 **모든 주주의 권리행사가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함

③ 주주에 대한 **평등한 대우 보장**

④ **이해관계자**(종업원 등)의 **권리 인정**, 회사와의 협력 장려

⑤ 회사의 모든 중요 문제가 **적기에 정확히 공시**되도록 함

⑥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에 대해 **책임성을 확보**해야함

2. 최근 국제 논의 동향

□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중요성**이 **재부각**

○ **OECD, BCBS, FSB** 등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추가적으로 권고**

* OECD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위기보고서('09.6월), BCBS 은행 지배구조강화 원칙('10.3월), FSB 보상원칙('09.4월) 등

○ 美·英 등 주요 금융선진국은 소수주주권, 보상 등을 규정하는 **Dodd-Frank법**(美)**,「기업지배구조규정**(英)**」**을 추가적으로 제정

□ 특히, **英·獨·伊·오스트리아·네덜란드** 등은 지배구조 규준(Code)제정을 통해 지배구조상 세세한 이슈들을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접근법'으로 규율

* 참고 : 영국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The Combined Code)', '기관투자자 모범규준(Stewardship Code)' 제정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규율을 구축

참고3 향후 보완과제

◇ 지배구조 실태 **상시적 점검·보완체계 구축**

◇ 금번 TF에서 논의되지 못한 **추가 보완과제 검토**

1 **'지배구조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시범운영 검토**

* OECD도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운영

○ 제도개선 **이행실태 점검, 보완과제 발굴**

○ 주요 금융사 **지배구조 평가** 및 **개선사항 권고**

- 정형화된 계량평가가 아닌, 실질적 관행개선을 위한 **정성적 자문**(컨설팅)에 중점

2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과제 검토**

① 금융회사 **소유지배구조**(ownership structure) 규율체계 정비

- 대주주·임원 등과의 **부당한 내부거래 제한*** 제도 점검·개선

* 주요쟁점 : (1)이해관계자의 범위(①임원 ②대주주+특수관계인 ③금융계열사)
(2)제한 방식 : ①공시 ②이사회 특별결의 ③ 금지

② **기관투자가의 역할제고 방안**

- 소수주주등의 **사전적 의결권 위임**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방안 검토

-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지침 마련** (예 : 英 Stewardship Code)

③ **지배구조 외부전문평가기관 활성화 기반 조성**

-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역량 제고 및 **평가수요 확대 여건 조성**

④ **금융지주회사 제도 발전방안**

* 금융지주회사 제도 발전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13.6~9월)

⑤ **금융공공기관**(GSE) 지배구조 개선 방안

<붙임 1-5>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11.20일(수) 브리핑(14:00)시부터 보도가능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한 국 은 행) 금융시장부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금융투자감독국, 자산운용감독실, 복합금융감독국			
책 임 자	이동훈 과장 (2156-9730) 최준우 과장 (2156-9870) 김진홍 과장 (2156-9890) 김병환 과장 (044-215-2750) 김남영 부장 (759-4521) 최성일 국장 (3145-8020) 정갑재 국장 (3145-7580) 김도인 실장 (3145-6700) 이재민 국장 (3145-8340)	담 당 자	정선인 서기관 (2156-9731) 송희경 사무관 (2156-9874) 조대성 사무관 (2156-9894) 김성철 사무관 (044-215-2753) 최낙균 팀 장 (759-4473) 권창우 팀 장 (3145-8045) 이종환 팀 장 (3145-7590) 함용일 팀 장 (3145-6702) 김진우 부국장 (3145-8325)	
배 포 일	2013. 11. 20.(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6매

제 목 :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Ⅰ. 추진 배경

□ 국내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은 **콜시장, 환매조건부매매(RP)시장, 양도성예금증서(CD)시장, 기업어음(CP)시장** 등으로 구분됨

○ 상기 4개 시장을 합친 **단기금융시장 총잔액**은 **약 72조원, 일평균 거래(발행)액**은 **약 48조원** 수준

(조원, `13.9말)	총계	콜	기관간RP	시장성CD	금융회사CP
잔액	71.9	24.3	20.6	3.9	23.1
거래·발행액(일평균)	47.8	29.9	17.3	0.1	0.5

* 콜 및 기관간RP는 거래기준, 시장성CD 및 금융회사CP는 발행액 기준

□ 그동안 정부는 단기자금시장에서 **콜시장 편중을 해소하고 지표금리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음

○ 우선,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하고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①**증권사 콜차입을 규제('11.6월)하고,** ②**전자단기사채법을 제정하여 시행('13년)** 하였음

○ 또한, 다양한 지표금리를 육성하고 지표금리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①**코픽스 및 단기코픽스를 도입('10.1월 및 '12.12월)**하였고, ②은행에 **일정 규모 이상의 CD를 발행하도록 지도('12.8월)** 하였음

□ 그 결과, 금융회사간 단기자금거래 중 **콜시장 편중현상이 다소 완화**되었고 대출시장에서 **다양한 단기지표금리가 활용되는 성과**가 있었음

○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가 감소*하는 등 콜거래 비중이 하락**하고 콜시장이 **은행간 중심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RP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음

* (증권사 콜차입 규모) `11.2월 사상최대인 15.3조원→`13.9월 6.8조원까지 축소(△8.5조원 감소)
(증권사 기관간RP매도 규모) `11.5월 4.3조원→`13.9월 8.1조원까지 확대(3.8조원 증가)

** 은행간 거래비중(월평균 거래량 기준) : ('11.12월)28.2%→('12.12월)31.6%→('13.9월)35.4%

○ 코픽스 도입 이후 변동금리대출 **CD연동 대출은 감소**한 반면, **코픽스연동 대출은 대폭 증가**

* CD연동 대출비중 : ('10년말) 41.0% → ('13.6월말) 19.9%로 감소
* 코픽스연동 대출비중 : ('10년말) 6.9% → ('13.6월말) 14.6%로 증가

□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관계기관간 TF***를 구성·운영하여, 지난 '11.6월 발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 방안」 추진 이후 2년여간의 **추진성과 및 추가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였음

* 금융위, 기재부, 한은, 금감원, 연구기관, 협회

○ 이를 토대로 **단기자금시장 및 지표금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함

Ⅱ. 문제점

1 금융회사간 단기자금 수급이 **여전히 무담보 콜시장에 편중**되어 **시장효율성이 저하**되고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를 증대**시킬 우려 상존

○ 여전히 콜시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단기자금시장 구조가 **RP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다양한 상품과 만기(기일물)가 부족**하여 효율적인 금리체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 내포

○ 콜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손쉽게 조달하여 장기영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증권사의 콜차입 관행**이 지속될 경우, 콜시장에서의 예상치 못한 신용경색 발생시 **콜시장 불안이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 상존

* ('08년 금융위기시) 리먼사태→자산운용사 펀드환매→콜론공급 규모 축소→콜시장에 의존하던 증권사의 차환위기→시장경색→증금·한은 등의 긴급 유동성공급

2 대출·자금시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단기지표금리인 CD금리를 대체할 지표금리가 부재**

○ '09년 예대율규제 시행 이후 **은행권의 자발적인 CD발행 유인이 약화**되어, CD금리의 유효성이 **행정지도*에 의해 확보**되고 있는 상황

* 은행별로 CD금리 연동대출 잔액에 비례하여 총 2.0조원(시장성CD의 월평균잔액 기준)의 원화 시장성CD 발행의무 부과

○ 특히, IRS 등 파생상품시장에서는 **3개월물 지표금리로서 사실상 CD금리만이 활용**되는 등 현실적으로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금리가 없는 실정

3 한편, 현재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관련 규정이 산재**되어 있고, 관련 사항에 대한 공시와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제발생시 일관성있는 대응에 한계**

Ⅲ. 개편 방안

◇ **콜시장 개편**을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효율성·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단기지표금리 다양화 및 관련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

1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 (**'15년부터 시행**)

○ (**콜머니측면**)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증권사 중 국고채전문딜러** 및 **한은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참여를 허용하되, **콜차입 한도규제**를 지속 부과

- 콜시장 참여가 배제되는 증권사들의 경영상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14년 중 증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현행보다 강화**하여 적용

* (예시) '14년 상반기중 증권사의 콜차입 차입한도 기준을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 →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강화하여 적용하는 등 점진적으로 축소 유도

⇨ 콜머니 참가자는 현행 413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증권사62, 자산운용85 등) → 63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증권사16)로 축소될 전망

○ (**콜론측면**) 원칙적으로 참가대상을 **은행권으로 제한**

- 예외적으로 현재 콜시장에서 자금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콜론 한도규제***를 부과

* (예시) 총자산대비 1.5% 이내로 규제('13.1~6월중 자산운용사들의 일평균 콜론 운용규모는 총자산대비 2.4% 수준)

- 제도운용 상황을 보아가며 자산운용사의 **콜시장에 대한 예외적 참여 지속여부를 결정**

⇨ 콜론 참가자는 현행 414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증권사62, 자산운용사85 등) → 132개사(은행18, 외은지점29, 자산운용사85)로 축소될 전망

2 다양한 단기지표금리 육성의 일환으로 코리보 활성화

○ 대출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코픽스 활성화**는 지속 추진

○ **코리보 개선방안 추진**(은행연합회 주관) 등을 통해 IRS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CD금리의 대안 지표금리로서 코리보의 활성화·정착** 도모

- 정책당국은 **시장내 코리보 활용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유도

<코리보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금리제시 방식의 투명성 제고 등 코리보 신뢰성 제고**

○ 금리제시은행이 준수해야 할 **코리보 제시 기본원칙** 마련

○ 금리제시은행 내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만기 단순화**를 통한 활용도 제고(10종→6종)

▸ **코리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대폭 강화**

○ 현행 은행연합회내 **코리보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내실있게 운영

* 코리보전문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은행연합회 내에 코리보 금리제시은행·금융권·학계·정책당국 등으로 구성되는 코리보 운영 자문기구를 설치, 동기구는 코리보 관련 주요 운영사항에 관한 권고·자문 등의 역할을 담당

○ 금감원의 금리제시은행 검사시 **규정준수 여부** 등을 감독

▸ **금리제시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마련 검토**

○ 금리제시기관의 **지정근거** 명확화 및 필요시 **관련사항 법제화 검토**

○ **코리보가 CD금리를 상당수준 대체할 때까지** CD금리가 지표금리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발행의무를 부과하는 지도를 한시적으로 지속**

- 금번 제도개선 추진 이후 **코리보 활성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CD금리 공시 중단 여부를 검토**

3 단기자금시장 및 단기지표금리 관련 규율체계 정비

○ 금융회사들의 **단기자금시장 참여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하고 각 시장별로 산재한 **정보취합·공시·감독 관련 규율을 체계적으로 재정비**

Ⅳ. 기대 효과

□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하여 **콜시장 편중현상을 해소**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

○ 현행 무담보 콜 중심의 단기자금시장이 내포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성을 확보

○ 특히,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운용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다양한 단기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자금시장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전반의 효율성을 제고

□ **다양한 지표금리 육성 및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기여

○ CD금리 이외에 **코리보 등 지표금리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각 시장별로 산재한 **정보취합·공시·감독 규율을 재정비**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정보부족에 따라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Ⅴ. 향후 추진일정

□ '15년부터 콜시장에서 제2금융권의 원칙적 배제 등 **개편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및 후속조치 사항을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

○ '13.12월중, 콜시장에서 배제 예정인 기관별 구체적 차입 축소계획 마련·발표(금융위·금감원)

○ '13.12월중, 코리보 개선방안 확정·발표(은행연합회)

○ '14년중, 콜시장 참여기관 선정 관련 법규 정비(금융위)

<참고1> 단기금융시장 현황
<참고2> 그동안의 단기자금시장 개선노력의 성과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참고 1 단기자금시장 현황

1 단기자금시장 개요

□ 국내 단기자금시장은 **콜, RP, CD, CP** 등으로 구성

○ (**콜머니 / 콜론**) 금융회사 상호간에 일시적 자금과부족 해결을 위한 초단기 자금 차입(call money)·대여(call loan) 거래

○ (**환매조건부채권, RP**) 일정기간 경과 후 정해진 가격에 환매매하는 조건의 채권매매 거래

○ (**양도성예금증서, CD**) 은행 정기예금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상품을 매매하는 것으로,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부여

○ (**기업어음, CP**)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의 거래

<단기자금 운용수단별 특징>

구 분		콜머니/콜론	RP	CD	CP
도입시기		'60.7월	'77.2월	'74.5월	'72.8월
참가기관	조달	은행, 은행신탁, 종금, 증권, 자산운용, 보험 등	(금융회사간) 한국은행 및 콜시장 참가기관	예금은행	적격기업
	운용			은행간	금융회사, 법인, 개인
	중개	자금중개	자금중개, 증권	증권, 종금, 자금중개	증권, 종금
만기		최장90일	자유화	30일 이상	제한없음
최저거래 금액		1억원 (중개거래시)	우체국:5만원 기타:제한없음	제한없음	증권:1억원 기타:제한없음
이자 지급방법		만기 일시지급	만기 일시지급	할인방식 선지급	할인방식 선지급
중도환매		-	제한없음	금지	제한없음

※ 한국의 금융시장('13.1월 발간)

2 콜시장

□ 현행 콜시장은 **은행간 지준 과부족조절 시장**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의 영업자금조달 및 여유자금운용 시장**으로서 기능

○ 콜시장은 본래 **신용도가 높은 은행간 무담보 대차시장**이나,

-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을 포함한 **거의 모든 비은행금융회사가 참가**하여 낮은 금리로 영업자금을 조달하는 관행이 형성

○ **1일물 무담보콜거래 위주**(전체 콜거래 중 99.9%)로 지속 성장

○ **은행·자산운용사·증권사**가 **주요 수급기관**으로 활동

<금융권별 콜론·콜머니 현황>

(조원, %)

콜론 \ 콜머니	은행	증권사	기 타[1]	계
은 행	7.9 (29.5)	1.4 (5.0)	0.0 (0.1)	9.3 (34.7)
자산운용	9.7 (35.9)	5.1 (19.0)	1.3 (5.0)	16.1 (60.0)
기 타[2]	0.9 (3.4)	0.5 (2.0)	0.0 (0.0)	1.4 (5.3)
계	18.5 (68.8)	7.0 (26.1)	1.4 (5.1)	26.9 (100.0)

주 : 1) 증권금융, 캐피탈, 신용카드, 보험사 등 2) 증권사, 은행신탁, 증권신탁, 보험사 등
3) ( )내는 총거래금액 대비 비중 4) 13.1~6월 일평균 기준

3 RP시장

□ RP거래는 ①금융회사와 일반고객간 **대고객 RP거래**, ②**금융회사간 RP거래**, ③**한국은행 RP거래**로 구분

○ ①대고객 RP거래는 고객 예금수신, ②금융회사간 RP는 금융회사간 자금조절, ③한국은행 RP는 공개시장조작 수단으로 활용

○ **외국의 경우 기관간 RP거래가 대부분**이나 **국내의 경우** CMA 등 **대고객 RP거래 중심**으로 성장

<RP 거래 현황>

구 분 (조원)	08말	09말	10말	11말	12말	13.9말
RP매도 총잔고	44.8	54.3	65.4	73.0	79.7	92.7
기관간RP 매도잔고	6.4	7.7	10.3	14.1	17.4	20.6
대고객RP 매도잔고	38.4	46.6	55.1	58.9	62.3	72.1

4 CD시장

□ CD는 **은행 정기예금 증서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RP 또는 표지어음과 달리 **예금채무에 해당**하여 **지급준비금 예치의무* 존재**

* 예금지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요구불예금의 7%를 한국은행에 예치

○ CD는 ①금융회사와 일반고객간 **대고객 CD** 및 ②**금융회사간 CD거래**로 구분됨

□ **CD시장**은 '09.12월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크게 위축**

○ 시장성 CD 발행잔액은 **'09년말 14조원 → '12.6월말 2조원**으로 감소

○ 다만, 은행에 CD 의무발행 행정지도('12.8.21일) 이후 CD발행이 '12.8.22일 0.3조원 → '13.9월말 3.9조원으로 일정수준 증가

5 CP시장

□ CP는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수단으로 **자금조달의 편리성, 익명성, 신속성** 등으로 기업이 선호

* 회사채와 달리 이사회 의결, 발행기업 등록,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①50매이상, ②1년이상, ③특정금전신탁 편입 경우 제출) 등의 절차없이 발행가능하고 발행금액, 금리협상, 만기조절 등이 용이

○ (**발행기관**) CP를 발행·유통시킬 수 있는 **일정한 신용도를 갖춘 기업**들의 경우 **은행대출보다 저렴하게 자금조달** 가능

○ (**매수기관**) CP는 여타 단기금리상품(콜/RP/CD 등) 대비 높은 수익률로 **자산운용사·은행신탁·종금사** 등이 지속적으로 투자

□ 특히, CP시장은 **제2금융권의 기간물 단기자금 조달·운용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거래 수요 존재

* '13.9월말 현재 CP 발행잔액 : 134.5조원(이중 금융회사 CP는 23.1조원)

참고 2 그동안의 단기자금시장 개선노력의 성과

1 단기자금시장 구조개선

□ 금융회사간 단기자금거래 중 **콜거래 비중이 하락**하고 **증권사의 콜차입 규모가 감소**

○ 콜시장은 **증권사의 콜차입 제한**('11.6월) 이후 전체 시장규모가 **△3.6조원 축소**('11.5월 34.5조원(50.6%) → '13.9월 30.9조원(40.2%))

○ **증권사 콜차입(콜머니) 규모**는 제한 직후 지속 감소하여 규제 직전 대비 **△7.0조원 감소**

* 증권사 콜차입은 `11.2월 사상최대인 15.3조원까지 확대되었다가, `11.6월 차입규제 이후 `13.9월 6.8조원까지 축소

□ 콜거래에서도 **은행과 비은행간, 비은행간 콜거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은행간 거래비중은 상승**

<금융권역간 콜 거래량>

(조원, %)	'09.12월	'10.12월	'11.12월	'12.12월	'13.9월
은행간	8.2 (29.2)	8.7 (28.4)	7.2 (28.2)	8.6 (31.6)	10.2 (35.4)
비은행간	7.4 (26.3)	9.3 (30.3)	7.5 (29.4)	7.7 (28.3)	7.4 (25.7)
은행-비은행	12.5 (44.5)	12.7 (41.3)	10.8 (42.4)	10.9 (40.1)	11.2 (38.9)
전 체	28.1 (100)	30.7 (100)	25.5 (100)	27.2 (100)	28.8 (100)

주: 1) 월평균 거래량, 2) ( )내는 비중

□ **기관간RP**는 **증권사 콜차입 제한**('11.6월) 이후 **5.6조원 증가** ('11.5월 13.3조원 → '13.9월 18.9조원)

○ 종전 **증권사의 콜수요**가 일정부분 **기관간RP로 대체**되었고, '11.4월 이후 **증권금융의 시장조성 기능***도 RP거래 확대에 기여

* 거래조건이 불일치하는 경우 증금이 직접 거래당사자로 참가(딜러형중개)

○ **국내은행과 자산운용사** 등은 증권사에 대한 콜론을 줄이는 대신 **RP를 통한 자금공급**을 확대

2 단기지표금리 개선

□ 은행권에 대한 **시장성CD 발행 협조요청***('12.8.21일) 이후 발행 및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금리산정 환경은 상당수준 개선**

* 한시적으로 월평잔 2조원 수준(이중 50%는 3개월물)으로 CD발행

(조원)	`08말	`09말	`10말	`11말	`12.6말	8.20일	12말	13.9말
총 CD	20.0	13.6	6.6	3.2	2.4	0.3	3.1	3.9
(3개월물)	3.5	0.8	1.8	0.5	0.1	0.0	1.6	1.8

□ '10년 코픽스 도입 이후 **CD연동 대출은 감소**한 반면, **코픽스 연동 대출은 대폭 증가**

○ CD연동 대출비중은 '10년말 41.0%→'13.6월말 19.9%로 감소하였고, 코픽스연동 대출은 '10년말 6.9%→'13.6월말 14.6%로 증가

<은행 원화대출금 금리구조 비중 변동 추이(잔액기준)>

(조원, %)	'10말	'11말	'12.6말	'12말	'13.6말
합계	994.4	1,071.6	1,093.0	1,109.3	1,136.8
고정금리	237.7(23.9)	269.0(25.1)	321.2(29.4)	323.5(29.2)	343.6(30.2)
CD 연동	407.7(41.0)	354.7(33.1)	297.1(27.2)	252.3(22.7)	226.2(19.9)
코리보 연동	58.7 (5.9)	56.8 (5.3)	57.4 (5.3)	61.0 (5.5)	67.8(6.0)
금융채 연동	148.2(14.9)	147.9(13.8)	144.7(13.2)	163.8(14.8)	177.1(15.6)
코픽스 연동	68.6(6.9)	147.9(13.8)	157.4(14.4)	157.5(14.2)	166.3(14.6)

* 단기코픽스 연동대출은 '13.6월 기준 2,388억원 수준

○ 한편, 단기대출 기준금리로서 **단기코픽스**가 **'12.12.20일 최초 공시**되었으나, **아직까지 활용실적은 미미**

* 단기코픽스(소매 조달금리)는 CD금리(도매 조달금리) 보다 △10~15bp 낮은 수준

	`12.12.20 ~12.26	`12.12.27 ~`13.1.2	1.3~1.8	8.24~8.30	8.31~9.6	9.7~9.17	9.21~9.27
단기코픽스(%)	2.95	2.96	2.95	2.55	2.53	2.55	2.54
CD금리 평균(%)	2.89	2.89	2.88	2.66	2.66	2.66	2.66
스프레드(bp)	6	7	8	△11	△13	△11	△12

□ 한편, **파생 등 자본시장**에서는 여전히 **CD금리를 지표금리**로 활용

○ '13.6월말 금리스왑(4,927조원; 원화 + 외화) 중 84% 수준에 달하는 원화물 중 **99% 이상이 CD금리**로 계약 체결 추정

<붙임 2>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희망의 새시대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4.7.11(금) 16:00		
배포일시	2014.7.11(금) 13:30	담당부서	국제금융정책국 외환제도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글로벌금융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외환총괄팀
담당과장	최지영 과장(044-215-4750) 금융위 탁윤성 과장(02-2156-9780) 한은 정호석 팀장(02-759-5737) 금감원 이상훈 팀장(02-3145-7922)	담 당 자	정미현 사무관(044-215-4753) 금융위 손성은 사무관(02-2156-9781) 한은 신재혁 차장(02-759-5738) 금감원 김상현 수석(02-3145-7936)

제목: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T/F 발족 】

□ 정부는 지난 7.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를 구성하였음

* (ⅰ) 한국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중국내 직거래시장 개설을 위한 여건 조성 (ⅱ)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등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ⅲ) 800억위안 규모의 RQFII 획득, (ⅳ) QFII를 통한 중국투자 확대, (ⅴ) 위안화 채권 발행 활성화

○ 동 T/F에는 기재부·산업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 **관계당국,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

□ **7.11(금)**, 동 T/F의 **제1차 회의를 개최**(국제금융정책국장 주재)하여 **T/F의 구성, 운영방향 및 향후 논의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 2014.7.11.(금) **(비공개)**
- **참석범위**
  - **(관계당국)** 기재부(총괄),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KOTRA, 무역협회, 중국교통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
  - **(연구기관)** 자본시장연구원 등

【 T/F 구성 및 운영방향 】

□ 기재부가 T/F 운영을 총괄하고, ① **무역결제 활성화 작업반**, ② **위안화 금융 활성화 작업반**, ③ **자문그룹**으로 구성

○ ① **무역결제 활성화 작업반**은 무역결제 활성화팀, 청산결제체제 구축팀으로 구성하고,

○ ② **위안화 금융 활성화 작업반**은 對중국 투자 준비팀, 위안화 금융서비스 개발팀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할 계획

□ 한편,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의 경우, 별도의 **T/F**를 설치하여 운영

※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T/F」**는 국제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7.9(수) 개최**

< 구성 > 관계당국(기재부, 한은), 외국환중개사(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외환시장 참여 은행 등

< 논의 사항 >

- 거래 및 결제시스템 등 **시장 개설을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해 개괄적으로 논의
- **외환시장운영협의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일정을 마련키로 함

* 외환시장의 건전한 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환시장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자율운영기구

□ 원칙적으로 對中 교역기업, 금융회사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작업하는 **상향식 논의**(bottom-up)를 추진하되,

○ 효율적인 작업 진행을 위해 **세부 분야**에 대해서는 작업팀별 **소규모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

□ 우선은 **한중 정상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금융거래 확대**를 통해 우리 금융시장이 위안화 역외센터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계획

* (ⅰ) 위안화 거래 관련 전문인력 육성방안 마련,
(ⅱ) 주식·파생상품 등 위안화 금융거래 활성화방안 마련
(ⅲ) 위안화 금융거래 활성화 관련 중장기 추진계획 마련 등

【 향후 추진계획 】

□ 정부는 T/F 운영을 통해 위안화 청산은행(교통은행 서울지점)이 운영을 개시하고, RQFII 획득,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등 **합의사항**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 **첨부: T/F 체계 및 운영팀별 논의과제(안)**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첨 부 **T/F 체계 및 운영팀별 논의과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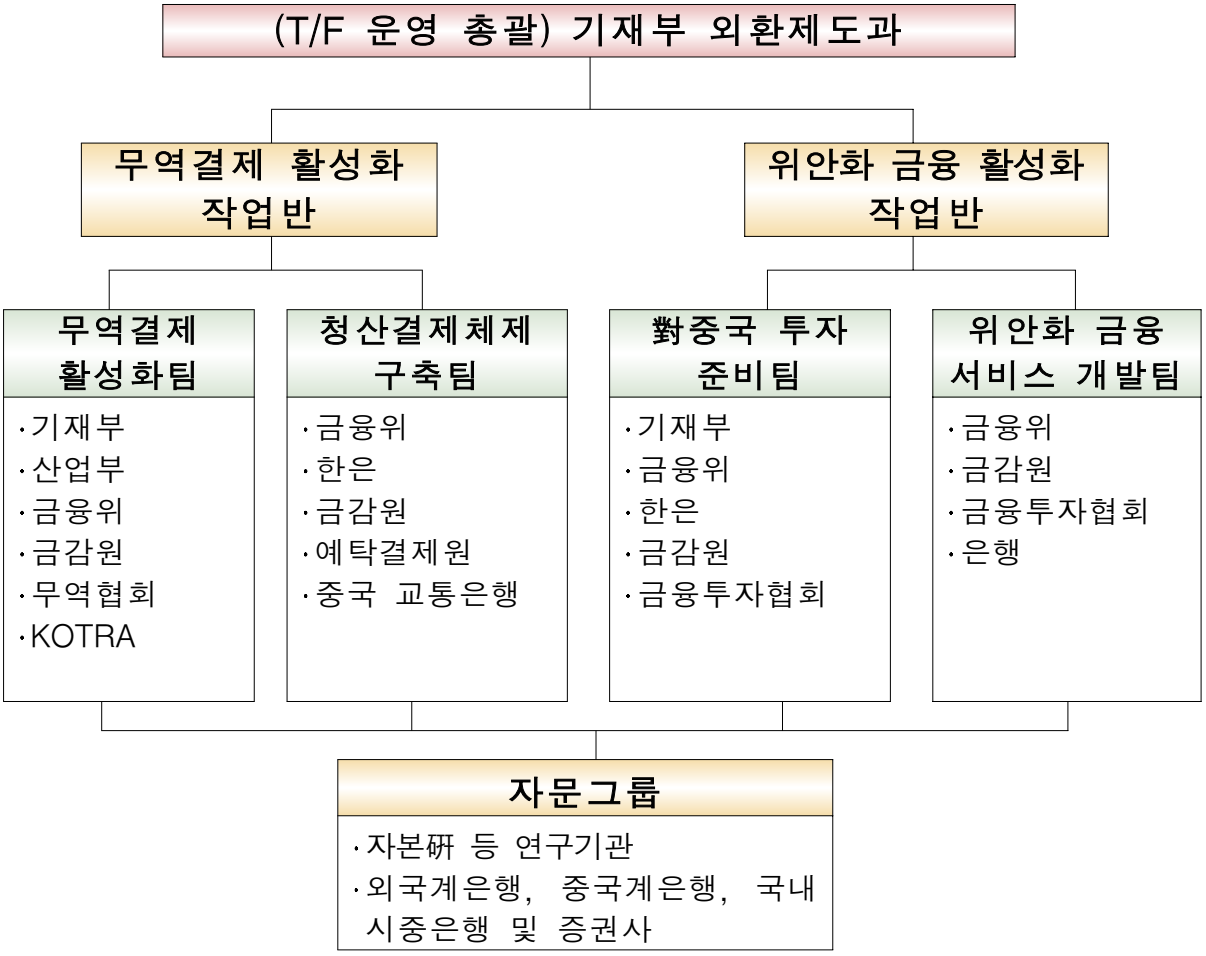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T/F
※ 별도 운영

·기재부(외화자금과)
·한은
·은행, 중개사(서울외국환중개, 한국자금중개)

< 논의과제(안) >

- **(무역결제 활성화팀)** **對中 무역기업**의 위안화 결제시 **애로사항** 발굴, **위안화 무역결제 활성화방안** 마련 등
- **(청산결제체제 구축팀)** **위안화 청산결제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검토 등
- **(對중국 투자 준비팀)** **RQFII/QFII 배분·활용방안** 등을 마련하고, **對中 협의**방안 마련
- **(위안화 금융서비스 개발팀)** 우선 **국내 위안화 표시 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중국계 기업의 채권발행 관련 **對中 협의**방안 모색 등

금융서비스국

□ 금융위 주최 TF 현황

TF명	구성인원	활동기간	활동성과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T/F	금융위·금감원 및 기재부, 법무부 등 정부기관 담당자 및 교수,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14.1~	* 진행중 - 주요역할 :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점검
바젤3 제도화 및 대응을 위한 T/F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실무관리자 등	'11.1.20~	▪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2011.9월) 작성에 참고 ▪ BCBS(바젤 은행감독위원회) 논의 동향 파악
커버드본드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	금융위, 금감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주요시중은행, 은행연합회, 신용평가사, 법률전문가 등 11명	'12.6.~7	▪ 커버드본드 특별법 제정('14.1)
개인의료보험정책협의회	복지부·금융위와 관련기관 전문가로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11.10.20~	*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 대책('12.8.30.)
보험정보협의회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 4개사 생·손보협회, 소비자전문가,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13.12~	* 제1차 보험정보협의회 개최('14.3.26.)
개인연금 정책협의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 금감원	'13.8.20~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월) *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13.12월)
보험혁신 및 건전화 TF	금융위, 금감원, 생손보협회, 보험연구원, 학계, 보험업계	'14.4.1~7.14	*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2014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 발표 ☞ '14.7.15(화) 보도자료
유사보험 규제 일원화 T/F	금융위,미래부, 해수부, 안행부, 금감원, 공제기관 참여	'12.4.9.~13.12.	* 우체국보험 및 주요공제 규제개선방안 마련('13.5.9)

TF명	구성인원	활동기간	활동성과
금융회사 IT보안 강화 TF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금융보안연구원, 학계, 업계 IT 보안 담당	'13.4~7월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 발표('13.7.11)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 T/F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방통위,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및 시중은행 등	'11.12~'12.1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마련

※ TF운영예산은 별도로 없음

□ TF통한 제도개선 등 결과물 : 별도 붙임파일 참조

□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참여한 외부 TF현황 및 작성자료 일체

o (중소서민금융국) 해당사항 없음

중소서민금융국

□ 최근 3년간 금융위(중소서민금융국) 내부 설치한 TF 현황

TF명	구 성	활동내용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T/F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서민금융과장), 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장),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장, 은행연합회 부회장, 금융결제원 전무이사, 금융연구원 부원장, 고려대(김인석 교수, 박노형 교수),.법무법인 광장 박광배 변호사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발표 ('14.3.10)
서민금융 협의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사무처장, 중소서민금융정책관, 서민금융과장), 금융감독원(부원장, 서민금융지원국장), 미소금융중앙재단이사장, 신복위 위원장, 캠코 사장,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은행연합회장,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한국이지론 대표이사, KDI 강동수 박사,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 법무법인 율촌 홍명종 변호사, 삼일회계법인 서준섭 전무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확정, 추진 ('14.7.16)
투자자 교육 강화 T/F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과장),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장,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한국투자자보호재단·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사무국장, 금융투자협회 소비자보호실장, 계명대 김성숙 교수, 자본시장연구원 최순영 박사, 금융연구원 김자봉 박사	TF 논의를 바탕으로 투자자 교육 강화 방안 발표 ('14.2.11)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T/F	금융위원회(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소비자과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 부장, 하나은행 전무, 삼성화재 기획실장, 신한생명 부사장,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 KDI 오	금융소비자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주요 과제 도출 TF 논의를

TF명	구 성	활동내용
	윤해 박사,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정책 종합계획 발표 예정 ('14년 하반기)

□ **TF통한 제도개선 등 결과물 : 별도 붙임파일 참조**

□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참여한 외부 TF현황 및 작성자료 일체**

o (중소서민금융국) 해당사항 없음

자본시장국

□ 최근 3년간 금융위(자본국) 내부 설치한 TF 현황

TFT 명	기간	설치목적	구성인원	회의 개최 회수
전자증권법 제정 T/F	'12.1.17 ~ 12.3.27	전자증권법 개정안 마련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박준(서울대 교수), 홍정훈(국민대 교수), 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 금융투자협회 증권서비스 본부장, 예탁결제원 금융 인프라 추진단장 등	8회
불공정 거래 조사 개선 TF	'12.3.30 ~ '12.12월	신속한 불공정 거래 조사 등을 위한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구축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등	5회
투자자 보호 제도개선 TF	'12.7.13 ~ '12.8.30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 제도 개선	자산운용과, 금감원, 금투협회, 자산운용사 등 업권 관계자, 금융연 및 자본연 등 학계 관계자	5회
자산운용산업 국제화 추진 TF	13.5.10 ~ 13년말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 등 추진	자산운용과, 금감원, 금투협회, 국내자산운용사, 외국사 관계자 등	1회
개별법상	13.5.10	다양한 투자자	금융위 자산운용과,	3회

규제체계 개선 TF	~ 14년말	보호장치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적용이 완화·배제되고 있는 개별법상 펀드(14개) 규제 제도개선 추진	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 중기청 등 개별법 소관 부처 담당자 및 자본연 등 학계 전문가	
신용평가관련 제도개선 T/F	'14.3.21~ * 3.21일 kick-off	독자신용등급 제도 도입방안 및 신용평가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 공정시장과, 금감원 신용평가감독팀 등	2회

□ TF통한 제도개선 등 결과물 : 별도 붙임파일 참조

□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참여한 외부 TF현황 및 작성자료 일체

o (자본국) 해당사항 없음

<붙임>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브리핑시(14:30)부터 보도가능	금융감독원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책 임 자	금융위 최유삼 과장 (2156-9910) 금감원 이창수 국장 (3145-5550) 거래소 이덕윤 본부장보(3774-9002)	담 당 자	금융위 전희규 사무관 (2156-9912) 금감원 강 전 부국장 (3145-5570) 거래소 이돈규 시장감시총괄(3774-9020)	
배 포 일	6.21.(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공보실(3145-5788~91)	총11매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 방안

1. 추진 배경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하고 **자본시장의 질서를 저해**

○ 최근에는 신종 금융상품 증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불공정 행위 수법이 다양화·고도화**

□ 금년 3월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 T/F**를 구성

○ 불공정거래 예방강화,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

⇨ 동 방안의 시행을 통해 발생단계부터 불공정거래 세력에 대한 **밀착 감시**를 통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적발시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재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 개요
불공정거래 근절
효율적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구축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
불공정거래 조사효율화
제도개선
■ 투자자 예방주의보 시행
■ 증권사의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 강화
■ 파생·현선연계거래의 시장감시 강화
■ 불공정거래 예방 감리 강화
■ 불공정예방 교육·홍보
■ 불공정 조사운영상 Control Tower 역할 강화
■ 중대사안의 정보공유를 통한 기관간 협력강화
■ 불공정 제보 활성화
■ 상장회사 내부통제 운영 내실화
■ 금감원/거래소 조사심리 인력 확충 및 전문화
■ 금전적 제재수단 확보를 위한 과징금제도 도입
■ 시장남용행위 규제
■ 불공정 전력자 공시강화
■ 불공정거래 국세청 통보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문제점
■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미흡 → 투자자 피해양산
■ 불공정수법 지능화·증가추세 → 상시적 협력체계 및 인력확보 필요
■ 과징금 제도 등 제도 미비 →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제도개선 필요

2. 주요 개선 방안

【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 】

(1) 「투자자피해 예방주의보(Investor Alert)」 제도 시행

□ (현 황) 거래 以前단계에서의 미국 등과 같은 체계적 예방경고 장치*가 없어 투자자가 불측의 피해가능성에 노출

* SEC 및 FINRA(美 증권회사 자율규제기구) 등은 「Investor Alert」 공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

□ (개 선) 정기적 예방주의보와 수시로 투자자에게 주의사항을 제공하는 「예방주의보」 제도 시행 (Two-Track)

○ (주의보 내용)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투자 유의사항을 시장에 미리 안내

※ 예방주의보 <예시>
- 정기주의보 :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 수시주의보 : 테마주 등의 이상급등 현상과 관련하여 주가 급등주 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2) 불공정거래 혐의 관련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 강화

□ (현 황) 증권회사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

- (예방조치) 1단계(고객에게 유선경고) → 2단계(서면경고) → 3단계(수탁거부예고) → 4단계(수탁거부)

□ (개 선) 투자경고·위험종목에 대해 증권회사 모니터링상 불건전 거래로 적출된 계좌에 대해 유선경고와 서면경고를 생략하고 즉시 수탁거부 예고 조치*

* (현행) 유선경고(1단계) → (개선) 수탁거부예고(3단계)

○ 아울러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고위험 종목에 대해 **예방조치대상 적출 기준을 강화**[*]

*** (현행) 일별 적출기준만 적용 → (개선) 일별 적출기준 + 기간 적출기준 적용**

○ **A증권회사로부터 수탁 거부된 계좌가 B증권회사 모니터링을 통해 적출된 경우 예방조치 강화**[*]

*** (현행) 서면경고(2단계) → (개선) 수탁거부예고(3단계)**

(3)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거래 시장감시체계 강화

□ **(현 황)** 현·선물 연계 불공정거래는 발생시 시장충격이 큰 만큼 시장감시 기준 및 감시시스템 효율화 필요

■ (현선연계 시세조종 사례) KOSPI200옵션 만기일에 풋옵션 매수 이후 기초자산(주식)을 대량 방출하여 지수를 하락시켜 부당이득 취득

□ **(개 선)** 거래소는 분석·조회속도를 향상시킨 「新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 현·선연계 감시기준을 개선[*]하고, 감시시스템 업그레이드[**]

*** (현행) 적출기준 파생상품별로 상이 → (개선) 적출기준 표준화**

**** 대용량 데이터 분석시간(40만건 기준) : (현행) 약 70초 → (개선) 약 2초**

(4) 거래소의 증권회사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감리 강화

□ **(현 황)**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효과적인 컨설팅 성격의 감리 활동 미흡

□ **(개 선)** 거래소는 증권회사의 거래소 업무 관련 규정 준수 유도 등을 위한 감리 강화

(5) 불공정거래 예방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 (현 황) 투자자 및 상장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교육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

□ (개 선) **금감원·거래소**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일반 투자자**의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 **금감원·거래소는 상장법인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상장회사 공시책임자 의무교육 강화**

○ 금감원·거래소는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건강한 투자 포털*'** 구축을 추진

* **미국 SEC는 투자자보호 홈페이지(www.investor.gov)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요령, 증권사기 피해 예방 요령 등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추진 】

(1) 불공정거래 조사·운영상의 Control Tower 역할 강화

□ (현 황) 현행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가동중

*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법률자문관,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 (개 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의 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 등 **Control Tower 역할을 강화**

○ 분기별 정기회의 및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정책, 공동조사 과제, 제도개선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

○ 동 협의회를 지원하는 **실무협의회***를 운용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 실무 기능을 수행(매월 개최)

* **구성 : 금융위(공정시장과), 금감원(조사1·2국) 및 거래소(시감총괄·심리부)**

* **기능 : ① 심리 및 심층 조사가 필요한 이상징후 및 특이사항 발생 여부 등 시장 상황 모니터링 ②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의 거래소 심리 및 금감원 조사 진행상황 ③ 자본시장법 및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진행경과 등**

(2) 주요 증권범죄 신속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개선

□ **(현 황)** 테마주 가격 왜곡 현상 등에 대해 금융당국의 **시의성 있는 대응** 필요성 제기

□ **(개 선) 중대사건에 대한 정보공유 및 적시대응 체계 구축**

○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금감원·거래소는 **종목명, 혐의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

○ 금감원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조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거래소와의 **공동조사도 실시**

*** 본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관련 증거의 확보와 본조사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 불공정거래 의심사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

※ 금융정보분석원은 소관 업무범위내의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위의 조사업무를 지원

(3)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시스템 활성화

□ **(현 황) 불공정거래 양태가 지능화·복잡화**됨에 따라, 이를 적발하고 조치하는데 제보의 중요성이 커짐

□ **(개 선)** 금감원·거래소는 제기된 **제보내용을 상호공유**하고 **제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협조체계 강화**

○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증액** 및 사전에 포상금을 내걸고 제보를 요청하는 **특별포상금**(한도 5천만원) **제도 도입**

○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을 점검하여 기준 적용을 합리화**

○ 내부제보 활성화를 위해 혐의자인 내부자가 불법혐의를 제보하는 경우 **조치감경 확대도 검토**

(4) 상장회사의 내부통제 운영 내실화

□ **(현 황)** 상장기업 스스로의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금지를 위한 자체 Compliance가 미흡**

□ **(개 선)** 상장협·코스닥협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상장회사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

○ 상장협·코스닥협은 동 점검결과를 토대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상장회사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개정 추진**

(5) 금감원/거래소의 조사 및 심리인력 확충 및 전문화

□ **(현 황)** 불공정거래의 발생 건수 증가 및 수법 고도화 등으로 인해 **조사소요 기간이 장기화**되고 **적체사건도 증가**

□ **(개 선)**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금감원의 조사인력과 거래소의 심리인력 확충 및 전문화 추진**

○ 인력충원 및 **장기근무** 허용, **조사·심리 경험자 우선 배치**

【 제도개선 과제 】

(1) 금전적 제재수단 확보 : 과징금제도 도입

□ **(현 황)**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형사제재에만 의존할 뿐 과징금과 같은 **행정제재를 통한 부당이득 환수제도가 없음**

□ **(개 선)** 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동 법 개정이후 과징금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과징금 세부 부과기준**도 마련할 계획

(2) 시장남용행위 등에 대한 규제 강화

□ **(현 황)** 위법성이 형사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Front Running* 등 **시장남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미흡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도·매수 주문을 받고 이를 체결하기 전에 자기 계산으로 그 상품을 매도·매수하는 행위**

□ **(개 선)** 회사의 **내부자가 아닌 자의 내부정보 이용** 규제 및 **현행 시세조종행위보다 구성요건 완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 대상 확대

*** (현행) 유인목적 등 요구 → (개선) 유인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유발 등 가격 및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도 규제**

(3) 불공정거래 전력 경영진 공시 강화

□ **(현 황)** 임원의 **사업기간 以前** 불공정거래 등**과거 금융범죄 전력은 공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

※ 현행 법령은 사업기간 以內에서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의 경우 임원의 제재 현황 공시의무 부과, 거래소 수시공시의 경우는 횡령·배임 사실 공시의무 부과

□ **(개 선)** 사업보고서(분·반기 포함)를 통해 **임원의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을 공시**하는 방안 추진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 선진 해외사례 및 기업의 공시부담 등을 감안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공시 수준 검토

(4) 불공정거래자 세금 탈루 혐의 국세청 통보 활성화

□ **(현 황)**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부당이득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등의 과세**를 통한 예방효과가 기대되나 통보 미흡

□ **(개 선)** 국세청과 협의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금탈루 혐의를 통지**하는 방안을 모색

○ 세법위반 관련 혐의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 검토**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① 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강화**를 통해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자자 피해 방지에 기여**

② 기관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적시대응 및 신속한 조치 가능**

③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장남용행위 금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다변화되는 **증권범죄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응**

⇨ **규정개정,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추진

(붙 임)

<방안별 세부추진일정 및 필요조치>

구분	추진방안	추진일정	필요조치	주관기관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	1. 투자자피해 예방주의보 제도 시행	9월	거래소 규정 개정	거래소
	2. 불공정거래 혐의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강화	10월	거래소 규정 개정	거래소증권사
	3 파생상품 및 현선연계 시장감시체계 강화	12월	시스템 개발	거래소
	4. 증권사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감리 강화	11월	규정준수 유도	거래소
	5. 불공정거래 예방 맞춤형 교육 및 홍보	9월	프로그램 마련	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화	1. 불공정거래 조사운영상 Control Tower 역할 강화	6월	실무협의회 가동	합동
	2. 증권범죄 신속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개선	6월	협력체계 구축	합동
	3.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시스템 활성화	9월	제보시스템 개선	합동
	4.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점검	7월	운영실태 점검	상장협등
	5. 금감원/거래소의 조사 및 심리인력 확충	연중	인력확충, 전문화	금감원거래소
제도 개선	1. 금전적 제재수단 확보 : 과징금제도 도입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추진	금융위
	2. 시장남용행위 등에 대한 규제 강화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추진	금융위
	3. 불공정거래 전력경영진 공시 강화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추진	금융위금감원
	4. 불공정거래자의 거래내역 국세청 통보 활성화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추진	금융위금감원

참고 1 FINRA의 Investor Alert 제도

□ **(개요) FINRA는 Investor alert(투자자 경보)제도를 통해 증권사기**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자관련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제공**

※ **각 이슈별로 투자 유의사항을 공표**하여 불공정행위를 예방

□ SEC, CFTC 등 **연방규제기구도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며, 각 기관별 또는 공동으로 Invest Alert를 공표

□ **(유형 및 제공주기) 재난, 자원주, 온라인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경보를 제공하며, **연초에는** 당해 연도에 점검할 투자 유의사항을 **종합 제공**

<FINRA의 사기관련 Investor Alert 유형>

- 피싱 등 온라인 아이디 도난 사기('12.2.29)
-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2012년도 12가지 팁('11.12.20)
- 금값 상승에 따른 금 투자상품이나 자원주 관련 사기('11.8.24)
- 일본 대지진('11.5.4), 중국주식 관련 투자사기('11.4.14)
- IPO 공모 관련 사기행위('11.3.15)
- 무료 점심 투자세미나 행사를 통한 사기('09.8.31)

○ 별도의 공표주기가 없으므로 필요시 경보를 공표하나, 평균 월 1~2회의 Investor Alert을 발표하고 있음

□ **(제공매체 · 방법) FINRA 홈페이지**(www.finra.org) 및 별도 홈페이지(www.saveandinvest.org)를 통해서도 제공*

* Invest Alert 공표기관 : SEC(별도 홈페이지(www.investor.gov)도 운영), CFTC, 연방거래위원회, NASAA(북미증권감독협회) 등 다수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4.11(목) 브리핑시(14시 예정)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신탁업무팀		
책 임 자	김정각 과장 (2156-9890) 박흥찬 국장 (3145-8340)	담 당 자	손성은 사무관 (2156-9891) 이경수 팀장 (3145-8360)
배 포 일	2013. 4. 11(목)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11매

제 목 : 특정금전신탁 운용 현황 및 정책방향

Ⅰ. 추진 배경

□ 특정금전신탁(또는 특금)은 **고객이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

*** 투자자가 직접 자산운용에 간여할 수 있는 1:1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 특금은 시중은행의 겸영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05년 증권사의 신탁겸영 허용 이후, **금융권역간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문투자기관의 맞춤형 투자수요가 증가**하면서 수탁고가 전년말보다 25.3%('12년말) 상승*

*** 수탁고(조원) : ('03말) 27.4 → ('09말) 101.8 → ('12말) 199.8 (퇴직연금 포함)**
수탁고 증가율(%, 전년말 대비) : 특금 25.3 > 투자일임(자산운용사) 14.2 > 펀드 6.4

□ 그러나, 특금은 **판매 및 자산운용** 등에서 **신탁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한 실정**

○ 아울러 건전성 규제가 미흡한 **Shadow Banking에 대해 정부가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특금의 개선 필요성 증가

* ELS·DLS 제도개선 방안 마련('12.9), CP시장 투명성 제고 및 발행 규제강화 방안 발표('12.9), 단기 자산운용상품간 규제차익 해소방안 마련('12.10) 등 (☞참고)

⇒ 現 특정금전신탁 시장현황을 점검하고 **1:1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유도

Ⅱ. 시장 현황

1 수탁고 현황

□ (**수탁고**) '12년말 현재 **총 46개 신탁회사**의 특금 수탁고는 **155.3조원**(퇴직연금 제외, 이하 동일)**으로서** 전년말 대비 25.3% 증가

□ (**업권별**) 수탁고 비중은 **증권사(61.3%), 은행**(38.3%), **보험**(0.4%) 順으로서

○ **증권사**는 전문투자기관이 특금을 단기자산운용수단으로 선호하는데 힘입어 **수탁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 **은행**의 경우 수시입출금식 신탁(MMT)이 가장 큰 비중(47.2%)을 차지하는 가운데 **파생상품 등의 판매채널로서 신탁을 활용**

2 주요 운용 상품별 현황

□ (**기업어음**) **51.8조원(33.1%)이 운용**되어 **특금 자산 중 가장 큰 비중***

○ CP의 경우 다수 금전신탁 재산을 1개 CP에 **분할 편입하는 사례가 있어** 신탁해지시 **자전거래의 유인이 됨**

*** 일반CP 평균 투자금액 : 개인 4천만원, 일반 법인 30억원, 금융기관 76.8억원**

○ **ABCP(39.6조원)**의 경우는 **개인투자자** 비중은 낮지만(11.5%, 4.5조원),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PF ABCP에 집중**(5.4만건, 3.8조원)

□ (**ELS**) 특정금전신탁 자산 중 ELS 운용 규모는 **9.9조원(7.0%)**

○ 은행이 **신탁을 ELS 판매수단으로 활용**하여, **은행 수탁 비중**(76.6%)이 큰 편

○ **소액 개인투자자*** **비중이 84.8%**(8.4조원)로 매우 높지만, 투자권유 자격제한이 없고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

*** 평균 투자금액 : 개인 4.2천만원, 일반 법인 5.5억원, 금융기관 45.2억원**

□ **(MMT) 총 운용규모는 37.0조원**(은행 27조원, 증권사 10조원)

○ 주로 **1일물로 운용**되어 해지시 당일 출금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지만, **일부 증권사**가 **CP를 분할 편입**함으로써 출금 요청시 **자전거래 발생 유인**

<업권별·상품별 수탁고>

(단위: 조원, %)

구 분		'09말	'10말	'11말 (A)	'12말 (B)	비중	증 감 (C=B-A)	증감률 (C/A)
특금 총수탁고		**93.4**	**104.4**	**123.9**	**155.3**	**100.0**	**31.4**	**25.3**
권역별	증 권	48.6	54.2	64.4	**95.2**	**61.3**	30.8	47.8
	은 행	44.7	50.0	59.3	**59.5**	**38.3**	0.2	0.3
	보 험	0.1	0.2	0.2	**0.6**	**0.4**	0.4	200.0
상품별	CP 등 채권형	21.4	44.2	55.7	**77.6**	**50.0**	21.9	39.3
	MMT	43.9	27.2	30.2	**39.1**	**25.2**	8.9	29.5
	정기예금형	12.8	17.3	14.9	**20.3**	**13.1**	5.4	36.2
	ELT	1.8	3.4	6.8	**9.8**	**6.3**	3.0	44.1
	주식형 자문형 자사주	4.6	3.6	4.8	**4.3**	**2.8**	△0.5	△10.4
	기타*	8.9	8.8	11.6	**4.2**	**2.7**	△7.4	△63.8

3 신탁계약 금액 및 계약기간

□ **(계약금액)** 일부 신탁업자만 **상품별 최저 가입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있고 있는 가운데(은행 5백~2천만원, 증권사 1백만원~1억원), 개인 신탁금액이 **평균 4,800만원으로 소액화**

○ 이로 인해 다수의 개인에게 모집한 신탁재산을 **펀드처럼 집합투자화**하여 신탁 본연의 **맞춤형 관리 및 투자자 보호가 곤란**

□ **(계약기간)** 대부분 상품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의 형태**이나 **채권형**의 경우 계약 건의 **68.9%가 1년 미만의 단기계약***

*** 1년 미만의 신탁계약 건 수 비중(%) : 채권형 68.9, MMT 16.8, ELT 4.2**

○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장기적 자산관리가 어렵고**, 단기 고수익 추구 유인이 많아 **건전한 상품운용이 곤란**

Ⅲ. 평가

□ 신탁은 **금융기관의 전문적 노하우를 활용**하여 **금전·재산**(부동산 등)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어, 고령화가 진전되는 시대를 맞아 그 **중요성이 증가**

○ 특히,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자의 **대체 투자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 수요가 증가**

□ 그러나, 고객의 자산운용 지시라는 특금의 특성상 완화된 자산운용 규제가 적용되면서 **신탁 본연의 기능과 달리 변질된 영업이 가능**

○ 소액·단기신탁 등으로 다수의 개인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신탁재산을 **하나의 상품에 펀드처럼 운용 가능**

○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 없는 **불완전 판매 가능**

Ⅳ. 대응방안

【 기본 방향 】

◇ 신탁을 통한 **규제차익 추구행위를 차단**하고, **신탁 투자자 보호 수준을 대폭 강화**

◇ 신탁 본연의 1:1 **맞춤형 자산관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의 규모화·장기화 유도**

	투자자 보호 (불완전 판매 방지)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 강화** (규제차익 추구 차단)
판매 건전화	① **투자자 공시·설명의무 강화** ▪ 사실상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 개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② **사전설계된 특정 유형의 상품 모집 차단** ③ **파생상품 편입 금전신탁상품 판매규제 강화** ▪ 적정성의 원칙 적용 명확화 ▪ 투자권유자문인력 사용 의무화 ▪ 최소 가입 금액 설정	
자산운용 건전화	① **자전거래 규제 강화** ② **불건전 상품운용 차단**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 강화		① **최소 가입금액 설정** ② **계약기간 장기화 유도** ③ **특정금전신탁의 재분류를 통해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1 상품판매 건전화

가. 투자자 공시·설명의무 강화

□ 증권신고서(투자자 50인 이상) 제출 의무화

○ **(문제점)** ELS 등이 특금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 분할 편입**되는 경우 실질은 공모, **형식상 사모**에 해당하여 **증권신고서 미제출**

○ **(개선 방향)** 특금에 편입되는 증권의 투자자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 [既 조치] 50인 이상 특금 위탁자에게 CP 편입시 증권신고서 제출('13.2 규정개정)

□ 신탁계약상 고객의 권리 및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 **(문제점)** 투자매매·중개업자와 달리 신탁업자는 **설명서 교부의무가 없고, 고위험의 CP, PF ABCP**를 편입하면서 추가 비용부담이 없음에도**높은 신탁 보수**를 취득

○ **(개선 방향)**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계약 설명서 표준안을 제시

나. 사전설계된 특정 유형의 상품 모집 차단

□ **(문제점)** 특금을 **특정상품 판매채널로 활용하여** 실질적 운용방법이 정해진 상품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거래고객에게 홍보하여 **다수 투자자를 모집**

□ **(개선 방향)** 창구에서의 소극적 대면 영업* 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금지**

* 특정 상품 설명서 비치·배포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 행위 금지(금투업규정)

다. 파생상품 편입 금전신탁상품 판매규제 강화

□ **(문제점)** 파생상품의 신탁 편입시 규제 차익 발생

○ 일반투자자에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ELS) 판매시 투자 적정성을 파악해야 하나, **신탁상품으로 편입시 "적정성 원칙" 미적용**

○ 파생상품 등을 판매시 **투자권유자의 자격**이 제한되나, **신탁**의 경우 **파생상품 등을 제한없이 편입**하는 계약 체결 가능

□ **(개선 방향)** 파생상품 등의 신탁 편입시 규제 강화

○ **적정성 원칙 적용 명확화** :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가 부적정한 개인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등 보호장치 강화

○ **투자권유 자격 제한** : 파생상품이 편입된 신탁계약 체결 권유시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사용 의무화 등**

○ **최소 가입금액 설정** : **일반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소 가입 금액**(예 : 1~2억원 수준) 설정

2 자산운용 건전화

가. 자전거래 규제 강화

□ **(문제점)** 자전거래*는 일부 예외적인 허용사유를 제외하고 법령상 엄격히 제한되나,

*** 같은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상호간에 매도·매수하는 거래로서 증권시장 등을 통한 처분이 곤란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됨**

○ 특금에서는 단기 고수익 실현 등을 목적으로**동일 CP, 회사채** 등을 여러 신탁재산에 **분할 편입 후** 신탁 만기시 **신규 수탁금으로 해지금을 지급하는 자전거래** 관행 존재

○ 일부 신탁사는 **자전거래를 전제**한 금전신탁상품을 운용하여 만기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문제 및 **수익률 하락** 위험 노출

□ **(개선 방향) 규제회피 목적의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제재 강화**

○ 자전거래 **세부기준***(절차·방법·가격결정 등) **명확화**

*** 펀드, 신탁, 투자일임별로 자전거래 모범규준 제정을 통해 체계적 기준을 제시**

○ **자전거래가 빈번한 신탁사를 중점 검사**하여 위법행위 제재

나. 불건전 상품운용 행위 차단

□ **(문제점)** 그간 특금 유형별 감독강화 조치로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신종 불건전 행위** 지속 대두 우려

□ **(개선 방향)** 법규의 자의적 적용, 해석상 논란에 따른 위법 소지 차단을 위해 **특금 전반*에 대한 모범규준 제시**

*** 홍보, 계약 체결, 자산운용 지시 및 이행, 자산운용결과 보고, 해지 등**

○ 아울러, 규제차익 악용, 투자자 보호 소홀 등 상품의 불건전한 운용에 대해 지속 점검·제재

3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 강화

가. 최소 가입금액 및 계약기간 설정

□ 특금이 1:1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신탁업 본질에 충실**하도록 **최소 가입금액 및 계약기간**(예: 1년이상) **설정을 의무화**

○ **(최소 가입금액)** 현재 신탁업계가 운영 중인 최소 가입금액 수준* 및 개인의 평균 신탁액(평균 4.8천만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예 : 5천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CP 기준 : 은행 3백만원~3천만원, 증권사 1백만원~1억원 (ELT는 1억 이상)**

○ **(최소 계약기간) 경과기간**(예: 1년)을 거쳐 신규 계약부터 적용하고, MMT와 같은 **단기 자금운용상품**에 대해서는 **예외 인정**

나. 특정금전신탁의 재분류를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 특금은 특정 종목·비중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신탁회사에 투자판단을 일정 부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음

□ 장기적으로 **신탁회사가 일정부분 투자의사 결정**을 행하는 경우 [(소위) 투자형(Investment type)] **펀드에 준하여 규제**하고,

○ 신탁회사 **재량 없이** 고객 지시에 따라서만 투자하고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소위) 관리형(Administration type)]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

Ⅴ. 추진계획

□ 단기간내 개정할 수 있는 **금투업규정 등의 개정과 모범규준 마련은 상반기내 완료**

□ 최소가입 금액 및 계약기간 설정 등 법령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특정금전신탁 제도개선TF 등의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상반기내 법령 개정 발의 추진**

	내 용	조치사항
판매 건전화	1 투자자 공시·설명의무 강화 ▪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 개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 증권 발행·공시 규정 개정 ▪ 금투업규정 개정 모범규준 마련
	2 사전설계된 특정 유형의 상품 모집 차단	▪ 금투업규정 개정 모범규준 마련
	3 파생상품 편입 상품 판매규제 강화 ▪ 적정성의 원칙 적용 ▪ 투자권유자문인력 사용 의무화 ▪ 신탁권유 위탁 금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규정 개정
자산운용 건전화	1 자전거래 규제 강화	▪ 금투업규정 개정 모범규준 마련
	2 불건전 상품운용 차단	
맞춤형 자산관리 기능 강화	1 최소 가입금액 설정 의무화 2 계약기간 장기화 유도 3 관리형과 투자형간 규제 차등화	▪ 자본시장법령 개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참고 자본시장 건전화 (shadow banking 관련) 추진 경과 (12.8~)

구분	발표 시기	주요 내용	추진 방법 및 시기
ELS · DLS	'12.9	• **증권사별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 (헤지자산과 고유재산 구분) • 헤지자산의 건전성 확보 등 **위험관리 강화**	시스템 구축('12년말) 모범규준 마련('12.9)
CP	'12.9	• **ABCP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 50인 이상 특금 위탁자에게 **CP 편입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13.2,시행 '13.5) 금투업규정 개정('13.2)
MMF, MMW, MMT	12.10	• MMF **유동성비율 규제** (예; 1일물 10%, 7일물 30% 이상 편입) • MMF **듀레이션 한도 축소**(90→60일) • **MMF 규제를 MMT·MMW에 적용** (편입 자산을 상위 2개 신용등급으로 제한)	금투업규정 개정 (시행 '13.하)
계열금융사 거래집중	'12.10	•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기등급 CP·회사채의 신탁재산 편입 금지**	금투업규정 (개정'13.4, 시행'13.5)
특정금전신탁	'13.4	•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ELS등 편입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 • **파생상품 편입** 금전신탁상품 **판매 규제 강화** • 규제회피 목적의 **자전거래에 대한 검사 · 제재 강화**	증권발행·공시규정, 금투업규정의 개정, 모범규준 마련 등 추진('13.상)
PEF	'13.4	•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투자 금지**	모범규준 개정 추진 ('13.4)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배포시 부터 보도 가능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책 임 자	김학수 과장 (2156-9870) 김진홍 과장 (2156-9890)	담 당 자	김성진 사무관 (2156-9873) 손성은 사무관 (2156-9891)	
배 포 일	2013. 4. 17.(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5매

제 목 :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1.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4.17(수) 제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금번 규정 개정안은 그간 펀드 판매, 매매위탁 주문 및 변액보험 운용위탁 등 계열사간 과도한 거래 집중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임

* 계열사간 과도한 거래는 금융소비자 보호 저해(투자자 선택권 제한, 이해상충 발생 등), 공정경쟁 질서 훼손,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기자단 워크숍, 전문가 간담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 규정변경예고('12.11월),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13.3월) 등을 거치며 일부 규정의 내용, 시행시기 등이 조정되었음

※ [추진경과] 금융위 기자단 워크숍('12.10.10일) → 시장 전문가 간담회(10.18일, 10.25일 등) → 규정변경예고(11월~12월) → 규개위 심사('13.3월)

2. 주요 내용

가. 계열운용사 펀드에 대한 판매한도 설정 (제4-20조제1항제10호)

□ **계열운용사 펀드**(신규)**판매금액**을 연간 총 펀드판매 금액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비율규제 도입**

○ 다만, 고액 기관자금이 수시 입출금되는 **단기금융펀드**(MMF)와 **전문투자자만 가입하는 사모펀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

☞ **규정 개정안 공고 즉시**('13.4월중) **시행**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일몰규제**로 도입

※ 향후 계열사간 거래집중 추이 등을 보아가며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

□ 아울러, **개방형 펀드판매망**(Open Architecture) 등 독립적·전문적인 펀드 판매·자문법인 도입 등 **시장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

<참고> 펀드판매 선진화 3단계 추진방안

① (**1단계 : 간접규제**) 투자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 마련('12.7월부터 시행중)

* 계열사 펀드에 대한 판매사의 차별적 판매촉진 행위 제한, 투자자에게 계열사 펀드임을 고지하고 非계열사의 유사한 펀드도 함께 권유

② (**2단계 : 직접규제**) 계열운용사 펀드판매 비율(50%) 직접 규제를 병행 (금번 규정 개정안 포함 내용)

③ (**3단계 : 판매시장 구조개선**) 은행·증권사 등 기존 판매 채널 외에, 자산운용사의 공동 출자를 통한 개방형 펀드판매망 설립 등 독립적·전문적인 펀드 판매·자문법인 도입 등 추진('13년)

나. 계열 증권회사와 매매위탁 거래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1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인 증권회사에 **펀드의 매매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총 위탁금액의 50%로 설정**(제4-63조제3호의2)

☞ **규정 개정안 공고 즉시**('13.4월중) **시행**

2 아울러, 자산운용사가 매매위탁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제4-66조제2항)

* 증권회사의 조사분석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수수료(이른바 '소프트 달러')를 구분하여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토록 함

☞ **규정 개정안 공고후 6개월이 경과한 날**('13.10월중)**부터 시행**

다. 계열운용사에 대한 변액보험 운용 위탁한도 설정 (제4-63조제7호)

□ **계열 운용사**에 **변액보험 운용을 집중 위탁**하는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계열사 변액보험 위탁 한도**(50%)**를 설정**

☞ 변액보험 위탁기준 정비 및 계약체결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 경과후 '14.7월부터 시행**

라. 계열사 발행 증권 인수 관련 규제정비 (제4-19조제7호)

□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발행하는 증권**에 대하여 **주관회사 업무수행 및 최대물량 인수 행위 금지***

*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인수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감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상위 금융투자업규정(공적규제)으로 이관하는 내용임

☞ **규정 개정안 공고후 6개월이 경과한 날**('13.10월중)**부터 시행**

마. 계열사 발행 증권 권유 및 편입

1 펀드와의 규제차익 해소 등을 위해 **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시 계열회사 발행 증권 편입**에 대한 기준 마련(제4-77조제15호 등)

* [편입한도] **주식** : 투자일임·신탁 전체 수탁고의 50%까지, **채권** : 전체 계열회사가 투자일임·신탁업자에 출자한 금액까지

○ 다만, 신탁재산중 **퇴직연금, 자사주신탁**은 별도의 규제체계가 있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

2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CP 권유 및 편입 제한**

○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CP 등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제4-20조제1항제5호자목)

○ 펀드·투자일임·신탁 등 **고객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 회사채·CP 등을 편입하는 행위를 제한**(제4-63조제6호 등)

☞ 상기 두 가지는 **규정 개정안 공고후 6개월**('13.10월중)**부터 시행**하되, **2년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일몰규제**로 도입

3. 향후 계획

□ 금융위 의결을 거친 규정 개정안은 **4.23일경 공고될 예정**

○ 이와 함께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에 대해서도 **계열사 적립금 비중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간접규제를 도입**(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12.12월)하였고, **업계 자율의 계열사간 거래 완화*** **유도**(4월중)

* [例示] 운용·자산관리계약기준 계열사 적립금 비율제한(50%) 등

□ 향후 계열사간 거래실태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점검하고 **규제 수준의 적정성, 연장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지속**해 나갈 예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 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주요 변경내용**

	규정변경 예고안	금융위 의결안
펀드판매 50% 제한	- MMF만 규제대상에서 제외 - 비율산정 주기 : 매분기 - 별도의 유효기간 없음	- 전문투자자 사모펀드도 제외 - 비율산정 주기 : 매년 - 2년간 유효기간 설정
변액보험 운용 위탁	- 시행시기 : '14.1월부터	- 시행시기 : '14.7월부터
계열사 발행 증권 인수	- 시행시기 : 공고 즉시	- 시행시기 : 공고 후 6개월 이후
계열사 발행 회사채, CP 편입	- 투자일임·신탁재산의 계열사 증권 편입 한도 : 투자일임·신탁 재산의 10% - 규제대상의 예외 없음 - 시행시기 : 공고 후 3개월 이후 - 별도의 유효기간 없음	- 투자일임·신탁재산의 계열사 증권 편입 한도 : 펀드와 유사하게 조정(주식은 50%, 채권은 계열사 출자비율까지 등) - 퇴직연금·자사주신탁의 경우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시행시기 : 공고 후 6개월 이후 - 2년간 유효기간 설정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10.30(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책 임 자	김정각 과장 (02-2156-9890)	담 당 자	이한샘 사무관 (02-2156-9894)	
배 포 일	2012. 10. 29(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1~48)	총 9매

제목 : 단기 자산운용상품 현황 및 정책방향

1. 추진배경

□ 최근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에 따라 단기 자산운용상품(MMF, MMW, MMT)에 대한 **자금유입 현상**이 나타나면서 건전성·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점검 및 선제 대응 필요성**이 점증

* MMF, MMT, MMW 규모(조원) : ('09말)123, ('10말)107, ('11말)100 ('12.8말)132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의 체계적 규제**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 은행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기구나 영업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기/유동성 변환을 수반하는 신용의 중개

○ **MMF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MMF 규제 수준을 점검하여 **위험관리체계를 일부 보완**할 필요

□ 나아가, **실질*은 유사**하면서도 **업권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인한 **단기 자산운용상품간 규제차익 제거**방안 마련도 시급

*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안정성 높은 단기자산에 투자하는 등 동일한 기능

⇒ 단기 자산운용상품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건전성·상품간 규제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

2. 단기 자산운용상품시장 현황

1 규제 현황

□ **(MMF)** '96년 도입 후, **안전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평가, 환매**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장치를 마련

○ 시장충격에도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MMF 편입재산의 자산별 만기*, 가중평균잔존만기(90일), 신용등급(상위 2개)**을 제한

* 국채 : 5년, 지방채·특수채 : 1년, CD : 6개월 등

○ 장부가평가를 허용하되 시가와의 차이를 제한하며 **익일출금제('04년 제도개선*)**를 통해 투자자간 형평성 확보

* SK글로벌, 카드채 사태를 거치면서 ① 가중평균잔존만기 축소(120일→90일), ② 익일환매제 도입, ③ 신용등급·분산투자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 **(MMT·MMW)** 신탁·일임 등 일대일 계약 특성이 감안되어 **MMF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수준

* MMT·MMW : 1일물 또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 등으로 운용하는 수시입출식 특정금전신탁상품(MMT), 랩어카운트(MMW)

○ 판매단계에서 개별 투자자의 **특성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하되, **투자자 유형화를 전제**로 **유형별 집합주문** 허용

○ 편입자산 결제일 규제*, 계열사증권 편입규제** 외에는 MMF 규제 수준의 **엄격한 자산운용규제 미적용**

* 결제일과 거래일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 금지

** (신탁) 신탁업자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편입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내로 제한
(일임) 투자자 동의 없이 일임업자(이해관계인 포함) 발행증권에 투자 금지

2 최근 시장동향

□ **(시장규모)** 금융위기 여파로 규모가 급증했던 **'09년말(123조원) 이후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확대('12.8월, 132조원)**

○ **(MMF)** '09.3월(129조원) 이후 감소하였으나, **'12년 들어 법인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12.8월 75조원 수준으로 증가**

○ **(MMT·MMW) 당일 입출금의 편의성 등으로 수요가 지속**되면서 12.8월 각각 **33조원, 25조원 수준**

< MMF, MMT, MMW 시장 규모 >

(단위 : 조원, 연말 기준)

		'08	'09	'10	'11	'12.8월
MMF		90.6	72.4	67.1	53.9	74.7
MMT		31.9	45.0	26.7	30.1	32.6
	은행		17.9	20.7	23.5	22.2
	증권		27.1	6.0	8.6	10.4
MMW		-	5.1	13.2	16.1	24.9
합 계		122.5	122.5	107.0	100.1	132.2

□ **(자산운용 현황)** 단기상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1일물 위주로 편입·운용하고 있으나, CP·정기예금 등 기간물도 일부 편입**

○ MMF는 **채권(31%)·CP(37%)·정기예금(19%) 위주**로 운용하며, MMT는 은행의 경우 **RP(69%)** 등 1일물 위주로 운용하는 반면, 증권사는 RP(38%) 외에 기간물인 CP(26%) 비중도 높음

< 단기금융상품 자산운용 현황('12.8월말) >

단위 : 조원(%)

		채권	CP	예금	콜론	RP	기타	합계
MMF		23.3(31.2)	27.5(36.8)	14.5(19.4)	3.2(4.3)	-	6.4(8.5)	74.7
MMT	은행	-	-	0.2(0.7)	0.1(0.4)	15.3(69.1)	고유계정대 : 4.8(21.7) 기타 : 1.8(80)	22.2
	증권	-	2.7(25.8)	2.9(28.1)	-	3.9(37.7)	0.9(8.4)	10.4

○ MMW는 **주로 CP, RP, 발행어음** 등으로 운용

* (운용사례) CP 34%, MMDA 13%, RP 10% 등

3 단기 자산운용상품 시장 평가

□ 최근 유럽 **재정위기·증시 변동성 지속** 등으로 인해 **단기 부동자금이 유입**되면서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 자산운용현황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 MMF의 경우 시가괴리율,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MMT·MMW도 RP 등 단기자산 비중이 큼

□ 다만,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변동 등 **시장충격이 있는 경우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

○ 향후 금리인상 등 시장상황에 따라 **환매규모가 급증**하는 경우 **유동성이 문제될 가능성** 상존

□ 한편, **MMF에 대한 규제수준을 평가**하고, 규제수준이 낮은 **MMF 유사상품(MMT·MMW)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발생가능한 **부작용도 사전에 차단**할 필요

○ MMF의 경우 기존의 제도개선을 통해 강화된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어 **해외논의는 선별해서 수용**함이 바람직

○ 반면, MMT·MMW는 집합주문이 허용된 반면, 일대일 계약 특성상 **MMF보다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 자금유입 증가 및 대량인출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훼손** 우려

* 단기유동성이 풍부하고 당분간 금리 하향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 시점이 상품간 규제차익 제거를 시행할 수 있는 적정한 시기

3. 향후 정책방향

< 기본방향 >

◇ 우리 금융시장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상황**에 유의하여 **자금유출입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 MMF는 시장상황 악화시 **환매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동성비율 도입 등 **제도 보완**

◇ MMT·MMW 등 MMF 유사상품은 상품의 기능과 실질을 감안하여, **MMF와 규제차익이 없도록 규제체계 정비**

1 MMF 규제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MMF 규제는 **전반적으로 엄격한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음

○ 다만, **시장경색·대량환매** 등의 사태 발생시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보완 필요

□ 자산만기 규제를 통해 유동성 리스크를 간접 규율하고 있으나 유동성 위기시 **대규모 환매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미흡**

○ 또한, MMF는 현금성 자산으로 **금리변동**에 대해 **자산가치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

- 현행 듀레이션 한도(90일 이내)가 해외에 비해 긴 편으로, **시장변동성 확대시 이자율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 미국도 자산 만기, 편입규제를 통해 MMF 유동성 규제를 하였으나, '10년 유동성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듀레이션도 60일로 축소

(2) 개선방향

□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직접비율 규제 도입**

○ 대량환매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유동성 자산***을 **MMF 재산의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

* 현금, 국채, 통안채, 1일 또는 7일 이내 만기 자산

** (예시) 1일 이내 만기 자산 : 10%, 7일 이내 만기 자산 : 30%

□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 한도 축소**

○ 시중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듀레이션 한도를 하향조정**(예시 : 60일)

2 MMF와 유사상품간 규제차익 제거

(1) 현황 및 문제점

□ 펀드와 달리 신탁·일임은 일대일 계약임을 전제로 **펀드대비 낮은 수준의 운용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 **실제 판매 과정**에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적극적·소극적 맞춤성 요건이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 또한, MMT·MMW는 유형별로 구분된 투자자에 대해**투자재산별 집합주문을 허용**한 반면, **운용규제가 느슨하여 리스크 발생 우려**

○ CP 등 기간물을 **공동보유(분할편입)한 상황**에서 **일부 계정의 출금**이 있는 경우, **신탁·일임 재산 및 고유재산간 거래가 발생**하며

- 금리인상 등 시장상황에 따라**다른 투자자에의 손실** 또는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

(2) 개선방안

1 기존 MMF 규제를 MMT·MMW에 적용

○ 편입자산에 대한 **신용등급 규제 도입**(예시 : 상위 2개 등급까지)

○ 만기가 긴 자산을 편입할 수 없도록**자산만기 한도를 설정**(예시 : 3개월)

* 신탁·일임 원리에 따라 고객재산이 개별계좌별로 관리되는 점을 감안, 듀레이션이 아닌 자산만기 규제로 대체

※ 만기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을 위한 (일반)신탁·일임계약이 중도해지 수수료 하한선 도입여부, 수익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익일출금 전환여부 등도 검토

2 MMF 신규 유동성비율 규제를 MMT·MMW에도 도입

○ 단기 수시입출금 수요에 문제가 없도록 MMF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동성비율 규제**(계좌별)

* 유동성자산을 신탁·일임 재산의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예시 : 1일 이내 만기자산 10%, 7일 이내 만기자산 30%)

3 펀드·신탁·일임 전반의 규제체계 정비방안 검토

○ 단기금융상품시장 뿐만 아니라 광의의 자산운용산업에 속하는 **펀드·신탁·일임 간 규제차익 제거** 추진

○ 아울러, 신탁·일임 판매 단계에서 **실질적 모집행위** 여부 등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

4. 향후 추진계획

□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11월중)

○ 다만, 시행시기는 **업계 준비기간**과 **향후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 유예기간** 후 시행(예시 ; '13.7월부터)

□ 아울러, **특정금전신탁 실태를 점검**하여 **신탁전반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1 MMF 규제 관련 글로벌 논의동향

□ MMF 등 **그림자금융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대**시켰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그림자금융에 대한 규제논의**가 진행중

① **(FSB)**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그림자금융 규제 권고안 마련**을 요청함에 따라 관련 **정책제안을 검토** 중(연내 발표 예정)

- 유동성 위기 등의 상황에서도 **MMF의 충분한 환매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건전성 제고 장치** 등의 도입을 검토

※ 금년 7월중 MMF 규제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연말까지 연기

< FSB MMF 규제방안 주요 내용 >

① 환매 보장을 위한 완충자본(NAV buffer) 적립

② MMF 자산의 일정부분을 유동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유동성규제 강화 등

- 또한 단기상품간 규제차익이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지지 않도록 **MMF 유사상품간 규제정합성 제고 필요성도 강조**

② **(미국 SEC)** 글로벌 위기 이후, **MMF 안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강화 방안***을 시행('10.10월)

< SEC의 MMF 규제방안('10.10월) 주요 내용 >

① 상위 2개 등급 증권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등 자산편입규제 강화

②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을 60일로 축소 등

- 이후, 시가평가 전환, 완충자본 적립, 환매제한 등의 **추가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으나, **최근 보류 발표**

참고2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관련 정책방향

□ 정부는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그림자금융 현황 및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리스크 확대 방지**를 위한 **감독강화·규제차익 해소** 등을 추진

① (ELS·DLS) 최근 ELS·DLS 발행이 증가하여 투자자가 **발행자 신용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리감독 강화**

* ELS·DLS 발행액 규모(월평균, 조원) : ('09) 1.0, ('10) 2.0, ('11) 2.7, ('12.3) 5.2, ('12.6) 3.5

< ELS·DLS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① 투자자 재산을 고유재산과 구분하고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발행자별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4/4분기)

② ELS·DLS 발행·운용현황을 매월 금감원에 정기 보고하도록 하는 등 상시적인 감독·감시 강화

② (CP)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시장구조의 투명성 제고·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CP발행 추이(조원) : ('09말) 63, ('10말) 74, ('11말) 89, ('12.7말) 114

< CP시장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①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ABCP 신용평가결과 공시대상에 평가내용도 포함하고, 증권사의 ABCP 거래내역 보고를 의무화

② 만기 1년 이상, 다수투자자 대상 판매 등 사실상 공모 회사채와 유사한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여 등 감독 강화

③ MMF의 CP 편입한도를 축소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등을 통해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도모

③ (MMF·MMT·MMW) 단기 자산운용상품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상품간 규제차익 해소**방안 마련

금융투자협회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보 도 참 고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책 임 자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 김철배(2003-9016)	담 당 자	신동준 부장(2003-9200)	
배 포 일	2013. 7. 23 (화)	배포부서		총 9매

제목 :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설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펀드 상품**을 한 곳에서 **비교하고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이하 "펀드슈퍼마켓")이 문을 열 예정

□ 금융투자협회는 금년 초부터 업계 공동으로 추진해 온 **펀드슈퍼마켓** 설립과 관련하여,

○ '13.7.23일 현재까지 **41개 자산운용사** 등이 **자본금 출자 의향을 전달**하는 등 설립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 **'13.7.25일**부터 펀드슈퍼마켓 설립과 운영을 책임질 **대표이사 공모**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회사설립을 추진

○ 가급적 **'13.11월말까지** 회사설립을 마무리 한 후,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이르면 2014.1월**부터 펀드 슈퍼마켓이 출현할 전망이며

○ 펀드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펀드상품**의 가입조건, 수익률, 수수료 등을 **한 곳에서 쉽게 비교**해 볼 수 있게 되고

○ 지금처럼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하여 펀드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와 보수를 지불하면서 펀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별첨 〉: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설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설립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013. 7. 23

금융투자협회

순 서

Ⅰ. 설립 추진배경 1

Ⅱ. 설립 추진상황 2

Ⅲ. 향후 추진계획 4

Ⅳ. 기대효과 5

Ⅰ. 설립 추진배경

□ **펀드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긴 하였지만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

○ 특히, 펀드 투자비용 및 거래의 편의성, 안정적 수익 등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온라인 전용펀드**나 **지수연계형펀드(ETF 등)**의 수탁고가 지속적으로 증가

< 펀드 수탁고 추이 >

(단위 : 억원, %)

구 분	2004년	2006년	2010년	2013.5월
펀드 전체	1,869,928	2,346,150	3,151,828	3,417,056
-온라인펀드	100	893	14,199	20,483
-지수연계형	18,445	29,844	80,393	100,861

□ 저금리·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후대비 자산운용에 대한 관심증대, 부동산가격 안정세, 선진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펀드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

○ 특히 인터넷사용의 보편화, 투자성향의 보수화 추세 등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펀드가입**이나 **지수연계형펀드**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

□ 한편, 은행 등에 비해 열세인 **판매채널의 취약성**은 **금융투자업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주요요인**의 하나로 작용

☞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금융투자업계 공동**으로 모든 자산운용회사의 펀드를 차별없이 판매하는 **온라인 펀드슈퍼마켓(개방형 펀드판매망) 설립**을 추진

Ⅱ. 설립 추진상황

1 지금까지의 추진경과

□ **('13.1.31)**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 공동으로 "개방형 펀드 판매망 도입과 독립투자자문업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개최**

□ **('13.3~5월)** 펀드슈퍼마켓 국내 도입방안 관련 **연구용역**(안진딜로이트) 및 금융투자업계 **의견수렴**

□ **('13.5.9~현재) 출자의향서 접수**

○ '13.7.20 현재까지 41개사(운용사 37사, 펀드평가사 4사)가 자본금 출자의향을 전달하였으며, 일부 자산운용사 및 증권 유관기관 등이 추가 출자의사를 표명 중

→ **약 200~230억원 수준의 자본금 확보 예상**

□ **('13.6.26) 출자예정자 총회**를 개최, 펀드슈퍼마켓 **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사무국** 구성·운영

→ 현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준비 중

2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의 주요 특징

□ **(다양한 상품)** 펀드슈퍼마켓은 원칙적으로 시중에 출시되는 **모든 공모펀드를 판매**할 예정

○ 이에 따라, 펀드에 가입하려는 투자자는 여러 사이트(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펀드슈퍼마켓만 방문하면 비교·선택 가능***

*** ('13.5월말 기준) 온라인전용펀드 수 729개, 공모펀드 수 3,320개**

□ **(저렴한 가격)** 펀드슈퍼마켓은 원칙적으로 펀드가입시 받는 **선취수수료를 면제하고,**

○ **펀드보수도** 현행 오프라인 펀드에 비해 **1/3 수준만 받을 예정**

※ 현행 펀드 수수료 및 보수 현황 : 별첨

□ **(이용 편의성)** 펀드슈퍼마켓은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자신이 선호하는 유형의 펀드를 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유지**할 예정

○ 개인별 포트폴리오, 위험감수 성향 등을 입력하면 가장 적합한 펀드상품이 제시되는 프로그램 운영

□ **(중립적인 판매채널)** 펀드슈퍼마켓은 다수의 자산운용사 등이 지분을 분산 소유함으로써 **특정주주에 의한 지배 방지**

○ **상품선정 및 배치 등에 있어서도 객관적 지표**(평가등급, 수익률 등)를 기준으로 운용할 예정

*** 오프라인에서 판매권유를 위해 상품선정 및 배치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계열여부, 수수료 등)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효과**

< 펀드 슈퍼마켓 주요 특징 >

구 분	내 용	비 고
판매 상품	· 원칙적으로 시중에 출시되는 모든 공모펀드를 취급	기존 온라인 전용펀드의 3.5배
보수	· 계좌관리 수수료 수준의 저렴한 보수 수취	오프라인 대비 1/3 수준
이용 편의성	· 강력한 펀드 비교·검색 기능 제공 · 투자자별 포트폴리오 및 위험관리 툴 제공 · 개별 펀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리서치, 등급 정보 등) 제공	펀드평가사(4社)가 주주로 참여, 적극적 역할 수행
소유구조 및 운영	· 회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다수의 출자자가 지분을 배분	자산운용사, 펀드평가사, 유관기관

Ⅲ. 향후 추진계획

□ **('13.7.25~8월초) 대표이사** 공모 및 선임 (설립준비위원회)

○ 공개모집과 헤드헌터사를 통한 추천의뢰를 병행

○ **펀드판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리더쉽과 덕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능한 인사**를 발굴, 선임할 예정

□ **('13.8월~) 법인설립** 절차* 진행 (설립준비위원회)

*** 정관 작성, 발기인 총회, 상호 선정, 조직·직원 채용 등**

□ **('13.11월경)** 금융위원회에 영업 **인가 신청***(신설 법인)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14.1월중)** 펀드판매 및 **서비스 개시** (신설 법인)

Ⅳ. 기대효과

1. 투자자 측면

□ 다양한 펀드상품을 한 곳에서 쉽게 비교하고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펀드를 선택 가능**

□ 기존의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 펀드에 가입할 때보다 **훨씬 싼 수수료와 보수를 지불하고 펀드투자 가능**

→ 궁극적으로 **펀드 수익률 제고 효과**

2. 자산운용업계 측면

□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인 **판매채널 취약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음

○ 특히, 판매망 취약으로 금융지주계열 등 대형 자산운용사에 비해 애로가 큰 **중소형 자산운용사 등에게는 영업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로 작용 가능

3. 금융산업 발전 측면

□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펀드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은행 예·적금에 편중되어 있는 투자관행 개선에 도움**

→ 궁극적으로 **은행과 금융투자업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 미래창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기획재정부 국제통화협력과,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책 임 자	김진홍 과장 (02-2156-9890) 강기룡 과장 (044-215-8730) 김도인 실장 (02-3145-6700)	담 당 자	이호영 사무관 (02-2156-9892) 유예림 사무관 (044-215-8732) 함용일 팀 장 (02-3145-6702)	
배 포 일	2013.11.20(수)	배포부서	대변인실(2156-9543~48)	총 5매

제 목 : APEC 펀드 패스포트 논의 진전사항 및 대응방향

1. 그간의 추진경과

□ '13.9.20일, APEC 재무장관회의시 **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폴**은 회원국간 **펀드 상호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위한 **의향서에 서명**하였음

○ 의향서는 **서명국을 중심**으로 향후 펀드 **패스포트 도입 논의**를 지속하고, **내년중 업계 의견수렴** 기간을 갖기로 하는 내용임
(참여 기속은 아님)

□ '13.11.14-15일, 의향서 서명국간은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여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 내용**과 향후 **업계 의견수렴 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 이에 앞서, **국내**에서는 동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금융위·금감원·자본연·예탁원·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관계기관 T/F**를 발족한 바 있음 (11.8일, 1차 회의)

2. 논의 진전사항 ※ 실무그룹 논의결과 중심

1 上記 4개국의 의향서 서명 이후 **태국·필리핀**이 펀드 패스포트 **의향서에 추가 서명**할 의사를 표명함

○ 현재 同 2개국은 의향서 추가서명을 위한 국내외 절차를 확인 중이며 의향서 서명을 전제로 실무그룹 논의에는 이미 참여중임

2 또한, 실무그룹은 **펀드 패스포트 운영을 위한 각종 세부규정**(운용사 인가, 보관약정, 자산운용 제한, 환매, 회계감사,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하여 **'14.4~6월(3개월간)** 공개 의견수렴을 추진하는데 합의함

○ 同 기간 동안 제출되는 각국 **업계의 의견**은 실무그룹이 종합·검토하여, '14년 하반기중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에 반영**할 계획임

< 향후 펀드패스포트 추진 일정(잠정) >

'13.11-'14.3월	'14.4-6월	'14.7-9월	'14.10월	'14.11-'15.1월	'15.2월
공개의견 수렴안 마련	공개의견 수렴	세부규정에 반영	세부규정 최종 의견수렴	세부규정 마무리	MOU 체결

3 내년 8월경 **한국에서** 펀드 패스포트 세부규정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및 워크숍**을 함께 **개최**하기로 확정하였음

* 실무그룹 : 의향서 서명국(6개국)간 세부규정 논의 등 회의체
워크숍 : APEC內 관심국가(13개국)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체

○ 펀드 패스포트 논의에 **우리나라가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업계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회를 모색하고자 한국에서 관련 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으며 회원국이 동의하여 개최를 확정함

○ 同 회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호주 재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금융감독원·자본연구원**(잠정)이 주관할 계획임

3. 향후 대응방향

□ 정부는 旣구성된 국내 **펀드 패스포트 T/F**를 통해 **국내 입장을 종합정리**하여 향후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할 계획임

○ 우리 **자산운용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펀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펀드 패스포트 규정이 설계되도록 논의에 지속 기여

□ 아울러, 내년 상반기 공개 의견수렴에 대비하여 우리 **업계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수렴·전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내년 8월 **한국에서 개최할 실무그룹 및 워크숍**을 계기로 펀드 패스포트 참여국을 보다 확대하고, 우리 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함

※ 펀드 패스포트 최종 참여여부는 '15.2월 관계기관간 MOU 체결 前 결정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참 고 1 **APEC 펀드 패스포트 의향서 서명식 개요**

1. 개요

□ 펀드의 등록·판매에 대한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국가간 펀드의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 (**'펀드 상호인증제'**)

○ 현재 **EU**에서 同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ASEAN**과 함께 **APEC** 차원에서 논의 진행중

< EU 펀드 상호 인증제 현황 >

◆ '85년 **UCITS*** 지침을 마련, 同 지침에 따라 펀드를 특정 국가에 설정시 추가적인 조치없이 여타 EU 회원국에 판매 가능
('12년말 기준 UCITS 펀드가 전체 유럽 펀드시장의 71% 차지)

* 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2. 그간의 APEC내 논의경과

□ '10.9월, **호주**가 처음으로 APEC내 논의를 제안한 이후 관심국가를 중심으로 **추진방향** 및 **기본골격**에 관한 논의 지속

○ 호주 주도로 APEC 회원국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워크숍**을 7차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구체적 진전 없이 기본 관심만 확인**

○ **'11년·'12년 APEC 재무장관회의**시 **"펀드 상호인증제 논의를 지지한다"**는 원론적 내용이 코뮤니케에 반영

□ '13.9.20일, **APEC 재무장관회의** 계기에 **4개국(한국·호주·뉴질랜드·싱가폴)은 펀드 패스포트 출범 논의를 공식화**하는 성격의 **공동의향서**(Statement of Intent) **서명**

○ 펀드 상호 인증제 출범을 위해 필요한 **작업 추진에 합의**하는 내용

참 고 2 펀드 패스포트 의향서(9.20일 서명) 주요내용

□ **구성** : 본문 + 부속서 (①기본원칙, ②일정표)

□ **본문**

○ 서명국간 펀드 패스포트의 도입 취지·목표 공유

○ 서명국은 향후 펀드 패스포트 설립시 잠재적 회원국이 될 자격으로, 세부규정 마련작업을 수행

○ 서명국은 펀드 패스포트의 기본원칙(부속서①) 및 일정표(부속서②) 승인

○ 향후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규정 마련

○ 펀드 패스포트 참여 가능성이 있는 다른 회원국의 참여 독려

○ 펀드의 국경간 판매와 관련된 정책결정(조세협약·자본규제 등)의 잠재적 충격을 완화하는데 주력

○ 同 의향서는 펀드 패스포트 출범을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내법을 대체하지 않음

□ **부속서**

① 기본원칙 (Framework Document) : 대상펀드, pilot group 출범·운영, 펀드 설정국 및 진출국의 감독권 행사, 공동위원회 구성 등 사항 규정

② 일정표 : ('14.상반기) 의견수렴 → ('14.하반기) 의견수렴 결과를 세부규정에 반영 → ('15.2월) Pilot group 출범 → ('15년중) 국가별 법·규정 정비 → ('16.1월) 펀드 패스포트 공식 출범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7. 개인신용평가 관련
   A. 최근 3년간 개인신용평가 관련 민원접수 내역
   B. 최근 3년간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및 성과
   C. 신용평가 회사 별 개인신용평가 개요 및 회사별 차이점
   D. 개인신용평가 관련 법령 및 규정
   E. 개인신용평가 회사별/종류별 수수료 현황 (건당 수수료 및 연간 수수료 수입)

□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하여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8. 주식시장 관련

A.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현 시장별 최근 3년간 시장상황 및 이에 대한 금융위의 평가

B. 최근 3년간 주식시장 선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및 성과

A.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현 시장별 최근 3년간 시장상황 및 이에 대한 금융위의 평가

□ 최근 3년간 시장상황

구분		2011년	2012	2013	2014.6월
코스피	거래량(백만주)	87,732	120,647	81,096	28,125
	거래대금(조원)	1,702	1,196	986	452
	시가총액(조원)	1,042	1,154	1,186	1,197
	주가지수(p)*	1,825.74	1,997.05	2,011.34	2,002.21
코스닥	거래량(백만주)	134,765	146,478	97,591	41,273
	거래대금(조원)	558	528	450	215
	시가총액(조원)	106	109	119	130
	주가지수(p)	500.18	496.32	499.99	537.06
코넥스	거래량(백만주)			8	4
	거래대금(조원)			0.05	0.03
	시가총액(조원)			1	1
	주가지수(p)*	-	-	-	-

* 연말기준 주가지수

** 지수 미산출

□ **시장에 대한 평가**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고 수준까지 회복세(코스피 사상 최고치 2,228p, 11.5월)를 보인 증시는,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 및 기업실적 둔화 등 **대내외 불안 등으로 약세로 전환**

- 금년 들어서도 중국 등 주요 신흥국 회복세 미약 및 원화 강세 심화 등 증시환경 악화로 **박스권에서 정체**

○ **7.25일 현재,** 미국 중심 글로벌 경기회복 가속화에 따른 落水효과, 정부의 내수 및 배당활성화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면서 증시는 **완만하게 회복중**

- 다만, **금년 후반부터 美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외국인 자금이탈 등 **증시 부담 우려도 상존하는 상황**

○ 이와관련, 정부는 침체된 주식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해 **'기업상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중(6.30)**

○ 한편, **작년 7월 개장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이 창업초기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직접자금조달 및 성장 지원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험자본시장으로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

* '14.6월말, 상장기업 수는 55개사, 시가총액은 11,815억원으로 개설 당시(21개사, 4,689억원)에 비해 2배이상 증가

B. 최근 3년간 주식시장 선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 및 성과

□ 최근 3년간 주요 대책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가	<공통>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종가 급등락 완화(5월)	<공통> 종류주식에 대한 별도의 진입·퇴출 요건 신설(4월) 투자위험 정보에 관한 공시 신설(4월) 매매거래정지 제도 개선(4월) 성실공시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4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규제의 실효성 강화(9월) 주식시장 단기과열 완화장치 도입(10월) <코스닥> 영업손실 관련 관리종목 지정기준 및 상장수수료 기준 정비(12월)	<공통> 사후심사 중심 공시관리 체계 마련(3월) 자율공시사항 정비(4월) K-IFRS 도입 관련 수시공시 제도 개선(4월) <유가> 진입요건 현실화, 최대주주 변경 제한 질적심사 전환 및 글로벌 우량기업에 대한 특례 마련(5월) <코스닥> 중소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2월)	<공통> 상장요건 등의 합리적 개선(6월) 변동성완화장치(VI) 도입(9월 예정) 시간외시장 개편(9월 예정) <유가> 매매수량단위 축소(6월) <코스닥> 바스켓매매제도 도입(9월 예정)
코스닥				
코넥스				코스닥 신속 이전 상장제도 등 정비(6월)

□ 성과

○ 주식시장의 거래·상장·공시 제도 등을 지속 개선함으로써 **시장제도를 선진화**해 나가는 한편,

○ **거래의 안정성·신뢰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 역점을 두고 주식시장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9. 국민행복기금 관련
   A. 국민행복기금 개요(대상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사업계획서 대통령 등 보고서 사본)
   B. 국민행복기금 운영 현황(성과 및 당초 계획대비 현황에 대한 평가)
   C. 지원 내역(신청자/지원자, 신청액/지원액, 중도탈락(포기)자/금액, 상환계획대비 상환율)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의원실에 제출완료하였습니다

유일호 의원(새누리당)

10. 단기지표금리

A. 단기지표금리 개선을 위한 T/F 구성 이후 논의내용 및 진행상황(회의현황 및 회의자료, 회의록 일체)

□ '12.7월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관계기관 합동 T/F 구성**

○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실무책임자 및 학계전문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여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는 은행·증권사의 의견전달 등을 위해 옵저버로 참여

○ '12.7월~'12.12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T/F 개최

□ 동 T/F를 통해 **CD금리를 포함한 단기지표금리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점검·모색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논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12.8월)

- 단기코픽스 신규 도입, 시장성CD 발행 활성화, CD금리 산정방식 개선방안 등 마련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발표('12.10월)

- 코픽스 내부통제 표준절차 마련, 은행연합회의 공시 사전검증 강화, 코픽스 관리위원회 신설, 사후검사 강화방안 등 마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

<붙임1>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논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12.8월)

<붙임2>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12.10월)

<붙임 1>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2012. 8. 22(수) 브리핑시(15:00)부터 보도가능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은행과, 자본시장과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금융투자감독국 (한국은행) 금융시장부			
책 임 자	최용호 과장 (2156-9730) 배준수 과장 (2156-9810) 김학수 과장 (2156-9870) 이형일 과장 (2150-2750) 양현근 국장 (3145-8020) 이은태 국장 (3145-7580) 서영경 부장 (759 -4521)	담 당 자	이인욱 사무관 (2156-9733) 서나윤 사무관 (2156-9814) 오유정 사무관 (2156-9875) 양윤영 사무관 (2150-2753) 권창우 팀 장 (3145-8045) 박학순 팀 장 (3145-7600) 민좌홍 팀 장 (759 -4473)	
배 포 일	2012. 8. 22(수)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8)	총 2 매

제 목 :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논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T/F***를 구성(7.19)

*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합동T/F 회의 개최」 보도참고자료 참조(7.19)

○ T/F에서 검토 중인 다양한 방안 중 **5차 TF회의(8.21)**를 통해 확정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우선 발표**

□ **주요 개선내용**

①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3개월물 조달평균비용**을 **반영**하고 **매주 발표**되는 **단기코픽스**를 **신규도입**

- **단기코픽스**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 가계 신용대출** 등의 **단기지표금리**로서 **활용**될 전망

-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단기코픽스**는 **금년 11월 첫째주(잠정) 공시** 예정(은행연합회)

*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단기코픽스 연동상품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추진

② 시장성CD 발행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 시장성CD를 당분간 일정수준(약 2조원) 발행키로 협의

③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인 호가제출 기본원칙 마련, CD 관련 정보공시 강화 등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 CD금리 산정의 유효성 및 투명성 제고

- 금년 9월중 기본원칙 마련 및 정보공시 강화를 시행하고, 금년 하반기에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 향후 TF 논의과제 및 추진계획

○ 향후 관계기관 합동TF를 중심으로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모색 등을 지속 추진

○ 금번 개선방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 상세내용은 '별첨' 참조

<별첨>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논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이 자료는 2012년 8월 22일(수) 금융위원회 브리핑(15:00 예정)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논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012. 8. 22.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계기관 합동T/F

목 차

Ⅰ. 그동안 추진경과 ····· 1

<참고1> 그동안 발표된 단기지표금리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 2

Ⅱ.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 3

Ⅲ. 시장성CD 발행 활성화 추진 ····· 6

Ⅳ.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 7

Ⅴ. 향후 TF 논의과제 및 추진계획 ····· 9

<참고2> 자금시장 대안 지표금리별 장단점 비교 ····· 10

Ⅰ. 그동안 추진경과

□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T/F**를 구성(7.19 보도참고자료 배포)

*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학계전문가,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참여

○ 합동T/F는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련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현재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

⇨ **[기본방향]** 1. **대출시장**에서 CD금리를 대신할 수 있는 **지표금리** 마련
2.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3. 금리스왑시장 등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모색

* 다양한 이해관계자, CD연동 상품잔액('12.3말 은행대출 327조원, 금리스왑 4,211조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유효한 CD금리가 고시**될 필요

□ 그동안 T/F는 **총 5차례 회의**를 통해 단기코픽스 도입, CD금리 유효성 제고,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등을 다양하게 논의

○ 또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토론회, 전문가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장참가자 의견***을 **적극 수렴**

* T/F회의시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가 참여하여 은행·증권사 의견을 전달
*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8.20, 금융연구원 주최)
* 은행 실무담당자(8.7), 은행 부행장(8.13) 등 간담회 개최

□ 현재 T/F에서 검토 중인 다양한 방안 중 **5차 회의(8.21)**를 통해 확정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우선 발표**하기로 결정

○ **단기대출 지표금리**로서 ①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한 ② **시장성CD 발행 활성화** 및 ③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참고 1 그동안 발표된 단기지표금리 등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

◇ 그동안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단기지표금리**를 포함한 **단기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

○ **시장참가자**들이 CD금리를 대신하여 **코픽스, 통안채 금리, RP금리**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구분	주요 내용
1. 코픽스 신규도입 ('10.1월)	□ **대출시장**에서 CD금리를 대신할 수 있는 **코픽스**를 신규도입(은행연합회 매달 공시중) ○ 도입이후 **코픽스 연동 대출비중**이 **+14.3%** 증가 * '09말→'12.3말 비중: CD(49.6→30.0%), 코픽스(0.0→14.3%)
2. 단기지표금리 육성방안 마련 ('10.7월)	□ 단기국채 발행을 통해 **단기국채금리***를 단기지표금리로 육성 * 원활한 단기국채 발행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 □ **통안채 금리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매주 일정규모 이상의 **통안채 정례발행** 지속
3. 단기자금시장 구조적 개선방안 ('11.6월)	□ 콜시장 위주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시장을 **기관간 RP시장** 등으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선방안** 마련 ○ **기간관 RP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유효성 있는 RP금리**가 도출되도록 유도
4. RP시장 활성화 등 RP금리 육성방안 ('12.6월)	□ **RP거래 인프라 보완, 증권금융의 RP거래 시장조성자 기능 강화** 등 RP거래 활성화 세부방안 마련 ○ **예탁결제원 RP거래 시스템(SAFE+)**을 통해 **주요 일물별 RP금리**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12.7월)

Ⅱ.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1. 검토배경

□ '10.1월, 대출시장에서 CD금리를 대신하기 위해 **코픽스***를 도입

* 9개 국내은행들의 '자금조달 가중평균비용지수'이며, 매월 1회(매월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잔액기준 코픽스와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를 발표중

○ **코픽스**는 **대출지표금리**로서 **은행 자금조달비용 반영도**가 **높은 장점** 등이 있어,

- 만기가 상대적으로 장기인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활용 비중**이 확대되면서 **기존 CD연동 대출 비중**이 **축소**

* 주택담보대출 코픽스 비중(%): ('10.1월)코픽스도입, ('10말)21.5, ('11말)40.1, ('12.3말) 41.3

(%, %p)		'09.12말(A)	'12.3말(B)	B-A	'12.3말 잔액
원화대출	CD금리 연동	49.6	30.3	△19.3	327.3조원
	코픽스 연동	-	14.3	+14.3	153.9조원
가계대출	CD금리 연동	72.1	37.0	△35.1	166.2조원
	코픽스 연동	-	34.0	+34.0	152.8조원
기업대출	CD금리 연동	32.8	24.5	△8.3	146.8조원
	코픽스 연동	-	0.1	+0.1	1.0조원

* 출처: 금융감독원

* '12.3말 총잔액: 원화대출 1,079.6조원, 가계대출 448.8조원, 기업대출 599.6조원

□ 다만, **코픽스**는 총 자금조달의 가중평균비용으로 **평균만기**가 **9~10개월 수준**이고 **월 1회만 발표**됨에 따라,

○ 은행들은 **만기가 1~2년내로 짧은 변동금리부 단기대출***의 경우 여전히 코픽스 보다는 **CD금리**를 **선호**하는 경향

* 예: 운전자금용 기업대출, 가계 신용대출 등

◇ CD금리를 대신할 **단기대출 지표금리 개발 필요성**이 제기

⇨ 현행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단기코픽스 신규도입** 추진

2. 단기코픽스 도입방안

◇ 코픽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3개월물 조달평균비용을 반영**하고 **매주 발표**되는 **단기코픽스**를 **신규도입**

□ **[산정 대상은행]** 현행 코픽스 산정대상인 **9개 국내은행***

* 우리·국민·신한·하나·외환·SC·씨티·농협·기업은행 등

○ 9개은행 수신이 **국내은행 총수신의 대다수**를 차지('12.7말 87.3%)하고 있어 **금리의 대표성 확보**가 가능

□ **[산정범위]** 현행 코픽스 산정시 포함되는 조달상품 중 **만기가 3개월물*인 조달상품**을 대상으로 산정

* '11.1월~'12.6월중 9개은행이 매주 신규취급한 총 조달액 중 3개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4.8% 수준

□ **[공시주기]** **단기대출 지표금리**로서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주 공시*** 추진

* 예) 前주 조달평균금리를 月요일·火요일 점검한 후, 水요일 공시

□ **[공시유형]** 9개은행이 **매주 신규취급한 3개월물 자금조달의 가중평균금리**를 지수화하여 발표 (신규취급액 기준만 발표)

〈 코픽스와 단기코픽스 비교 〉

구분	코픽스('10.1월~)	단기코픽스
개념	**총 조달상품**의 가중평균비용지수	**3개월물 단기조달상품**의 가중평균비용지수
산정 대상은행	9개 은행	左同
산정대상 조달상품 범위	**모든 조달상품** (단, 수시입출금식·요구불예금, 전환사채 등 제외)	코픽스 산정대상 조달상품 중 계약만기 **3개월물 상품** * 3개월 정기예금, 회전식예금, CD 등
공시주기	**매월 1회**(매월 15일)	**매주 1회**(매주 수요일)
공시유형	잔액기준 코픽스 및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신규취급액 기준 단기코픽스**
산정방식	수기입력 방식	전산입력 방식

3. 기대효과

□ **단기코픽스**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업대출, 가계신용대출** 등의 **단기지표금리**로서 **CD금리**를 상당부분 **대신**할 전망

○ **은행** 입장에서 **단기코픽스**는 **단기 자금조달비용 반영도***가 CD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편**

* 단기코픽스는 전체 3개월물 조달의 가중평균금리인 반면, CD금리는 3개월물 조달에서 극히 일부만 차지하고 있는 CD를 대상으로 산정

○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도 **단기코픽스**는 일시적인 외부충격에 의한 **과도한 금리 변동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

※ 주택담보대출 등 **장기대출**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고정금리** 및 변동성이 적은 기존 **코픽스**로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

* '11.6.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지속 추진중

4. 추진일정

□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은행 및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기코픽스 세부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9월초)

* 수신상품 세부범위, 은행별로 상이한 3개월물 개념 통일 등

□ 단기코픽스 **연동 대출상품 개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추진 (~10월말, 9개은행·은행연합회)

* 은행 의견수렴 결과 전산시스템 구축에 약 2개월 소요

*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시 전까지 수기방식으로 단기코픽스를 산출하여 금리 적정성 등을 검증할 계획(9월 이후)

□ **단기코픽스 공시**(11월 첫째주 잠정, 은행연합회)

Ⅲ. 시장성CD 발행 활성화

□ **예대율 규제 계획 발표**('09.12월), 풍부한 은행예금유입 등으로 '10년 이후 은행이 발행하는 **시장성CD 잔액이 지속 감소**

○ 특히, 금년 7월 중순 이후에는 **은행들의 시장성CD 발행이 크게 위축**된 상황

(조원, 말잔)	'08말	'09말	'10말	'11말	'12.6말	8.21
시장성 CD	20.0	13.6	6.6	3.2	2.4	0.3

* 출처: 한은, * 시장성CD: 증권사인수를 통해 거래되는 CD(→CD금리 산정 대상)

□ 이 경우 **증권사**들이 잔액이 거의 없는 **시장성CD**의 **금리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CD금리의 유효성이 저하**되는 문제 발생

□ **기존 CD연동 상품잔액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유효한 CD금리가 고시**될 필요

◇ **CD금리 연동 대출잔액이 많은 은행들이 시장성CD**를 **당분간 일정수준 발행**키로 협의

○ 은행들이 **월평균 잔액**이 **총 2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성CD를 발행**

○ CD금리 유효성 제고를 위해 최소 **50%(1조원)**는 **3개월물 시장성CD**로 발행

⇨ CD금리 산정의 직접대상이 되는 **3개월물 시장성CD**가 **과거 수준의 평잔**을 유지하게 되면서 **CD금리 유효성 제고** 효과

Ⅳ. CD금리 산정방식 개선

1. 검토배경

□ 최근 CD금리의 유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행 CD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

○ CD 유통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증권사*가 제출하는 호가**를 기준으로 금리가 산정됨에 따라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 현재 금융투자협회가 매 6개월마다 CD 거래실적 상위 10개 증권사를 호가제출기관으로 선정

○ 특히, **CD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거래가 없는 경우 금리산정 기준이 없어** 금리의 투명성 및 정확성이 결여된다는 비판

□ 한편, 일부 증권사는 **금리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호가 제출을 기피**하고 있어 **금리산정의 안정성**에도 문제

○ 현재 증권사 호가 제출은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증권사가 호가제출 거부시 강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

2. CD금리 산정방식 개선방안

□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인 CD금리 호가제출 기본원칙** 마련

< 호가제출 기본원칙(예시) >

① CD호가의 공정하고 성실한 제출
② CD호가는 CD거래내역 및 기준금리, 유사채권 수익률, 은행 조달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

□ **CD 발행 및 거래내역** 등 관련 **정보 공시 강화**

○ (**발행정보 공시**) 은행의 **CD발행내역 실시간 공시시스템** 구축

* (현행)CD발행내역이 비공식적으로 집계·유통되고 있어 속보성 및 정확성 결여
→(개선)은행이 발행 즉시 보고하고, 금투협은 채권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 공시

○ (**거래내역 공시**) 증권사의 **건별 CD거래내역 공시를 강화*** 하고 **만기별·잔존기간별 세분화**된 **집계정보**를 제공

* (현행) '09년 제도개선으로 건별 CD거래내역이 공개되고 있으나, 거래 CD의 발행은행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 (개선) 발행은행도 공시

□ **증권사**에 대한 **호가제출 의무 및 인센티브 부여**

○ 협회가 지정하는 **증권사**에 대한 **호가제출의무 부여**

* (현행) 현재 금융투자업 규정상 협회에는 금리를 관리·공시할 의무가 있으나 증권사는 관련 의무가 없음 → (개선) 증권사에 호가제출의무 부여

○ 필요시 호가제출 증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3. 기대효과

□ 기본원칙 등을 통해 **시중금리 등 시장여건**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된 금리산정**을 **유도**

□ **세부정보 공시 강화***를 통해 **금리산정의 투명성 제고**

* 공시된 자료는 증권사 금리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금리산정의 정확성 제고에도 기여

□ 증권사 호가제출 의무부여를 통해 **안정적·지속적 금리산출** 도모

4. 추진일정

□ **협회 기본원칙** 마련 및 **CD관련 정보 공시강화** 시행(9월중, 금투협)

□ **증권사 호가제출 관련 감독규정 개정**('12년 하반기, 금융위)

Ⅴ. 향후 TF 논의과제 및 추진계획

1.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모색

□ 금리스왑거래 등 **자금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정한 단기지표금리** 검토 필요

○ 그동안 T/F에서 **기존 지표금리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대체 지표금리를 검토하였으나, **단기지표금리별로 한계***가 존재

* 통안채금리(은행 신용위험 반영도가 낮음), 은행채금리(3개월물 발행금리가 없음), 코리보(은행 호가에만 의존), RP금리(3개월물 거래가 거의 없음) 등

□ 향후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결과, LIBOR 개편 동향 등을 감안하여 **기존금리 보완*** 또는 **새로운 단기지표금리 육성** 등 추진

* 예) 3개월물 이상 RP거래 활성화를 통해 3개월물 RP거래금리 육성 등

2. 금번 개선방안 관련 후속조치

□ 금번 개선방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 **단기코픽스 도입 및 CD발행 활성화 방안** 등이 **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 점검

□ 신규도입되는 단기코픽스의 활용 추이 등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의견수렴을 거쳐 **단기코픽스 활성화 방안** 마련 검토

□ 시중은행들의 **시장성CD 발행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 향후 관계기관 합동TF를 중심으로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 모색** 등을 **지속 추진**

참고 2 자금시장 대안 지표금리별 장단점 비교

◇ 자금시장 **단기지표금리**로 활용되기 위한 특징(요건)

① 전반적인 **시중 자금상황**을 적절히 **반영**
② **실시간**으로 **금리 수준의 탐색·산출**이 가능
③ 이해관계에서 **중립성(공정성)**이 보장
④ **금융기관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 등

금리	장점	단점
1.통안증권 금리(91일물)※	• 거래량이 많아 **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잘 반영**(실제 거래금리) • **공정성** 높음(조작가능성 적음) • 매일 공시(금융투자협회)	• 무위험금리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반영하지 못함**
2. 은행채 금리(3개월)	• 금리스왑거래의 주 거래자인 **은행의 신용위험을 반영** • 매일 공시(민간평가기관)	• 은행채 발행만기 제한(1년 이상)으로 **3개월물 발행금리 산출**이 곤란
3. KORIBOR (3개월)	• LIBOR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제적 통용성**이 높은 편 • 매일 공시(연합인포맥스)	• 현재 **은행들의 호가**에만 **의존**하는 문제
4. RP금리 (3개월)	• 은행, 2금융권 등 모든 금융기관의 **실제 거래금리** 반영 • 매일 공시(예탁결제원)	• 현재 **국내 RP거래**가 7일 이내 **초단기물에 편중** • 담보부거래로 금융기관의 신용위험을 잘 반영하지 못함
5. 단기코픽스	• 은행 자금조달사정 및 신용리스크 반영도가 높음 • 조작가능성은 적은 편	• **매주 1회 고시**됨에 따라 **자금시장 상황을 실시간 반영하지 못함**(후행성)

※ 향후 단기국채금리가 산출되면 통안채 금리와 장단점이 유사할 것으로 예상

<붙임 2>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12. 10. 22(월) 브리핑시(14:00)부터 보도가능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일반은행검사국, 소비자보호총괄국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			
책 임 자	최용호 과장 (2156-9730) 양현근 국장 (3145-8020) 박세춘 국장 (3145-7050) 김용우 국장 (3145-5700) 김평섭 부장 (3705-5704)	담 당 자	이인욱 사무관 (2156-9731) 권창우 팀 장 (3145-8045) 이성원 팀 장 (3145-7110) 정영석 부국장 (3145-5688) 이열강 대 리 (3705-5223)	
배 포 일	2012. 10. 22(월)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8)	총 1 매

제 목 :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

□ 은행연합회가 **9.17일** 공시한 코픽스('12.8월 기준)에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 향후 유사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음

□ 同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은행의 검증강화를 위한 코픽스 내부통제 표준절차 마련
② 은행연합회의 공시前 사전검증 강화
③ 협회 내 수정공시 등을 심의하는 코픽스 관리위원회(가칭) 신설
④ 은행 내부통제 준수 등에 대해 사후검사 강화 등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별첨>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별첨

이 자료는 2012년 10월 22일(월) 금융위원회 브리핑(14:00 예정)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

2012. 10. 22.

관 계 기 관 합 동

목 차

Ⅰ. 검토배경 ····· 1

<참고1> 코픽스 관련 현황 ····· 2

Ⅱ. 현행 코픽스 문제점 ····· 3

Ⅲ. 개선방안 ····· 4

Ⅳ. 추진계획 ····· 7

<참고2> 코픽스 제도개선 전후 비교 ····· 8

Ⅰ. 검토배경

□ '10.1월 도입된 **코픽스(COFIX)***는 주택담보대출 등 만기가 긴 대출의 **기준금리**로서 **활용도****가 **지속 증가**

* 코픽스(Cost of Funds Index)는 9개은행이 제공한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서 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경 공시

** '12.6말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41%(127조원), 원화대출의 14%(156조원)가 코픽스 연동

○ 금년중 **단기코픽스**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어 **대출시장**에서 **코픽스(단기코픽스)의 활용도**는 **더욱 커질** 전망

□ 그러나 최근 **은행의 정보제공 과정에서 입력오류**로 인하여 9.17일 공시된 **코픽스**('12.8월)가 **실제보다 높게 잘못 공시***된 사실이 발견

* 실제 보다 잔액기준 코픽스는 1bp,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3bp 높게 공시

○ 은행연합회는 잘못 공시된 코픽스를 **수정공지**(10.8일)하였고, 은행들은 **고객이 실제보다 추가납부한 이자**에 대해 **환급** 조치

* 은행연합회, 은행권(10.4), 타 금융협회(10.17)에 환급 관련 협조공문 송부

* 금감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은행권에 공문 송부(10.11)

□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조달한 비용**을 기초로 산출하는 금리로 LIBOR 등 호가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성이 높은 금리**

○ 그러나 이번과 같은 **공시오류**가 재차 발생할 경우 **대출기준 금리**로서 **신뢰성**이 **저하**되고, **대출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

☞ 현행 **코픽스 금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향후에는 **유사한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필요

※ 금년중 도입되는 **단기코픽스**도 코픽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단기코픽스 공시 前에 신뢰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

참고 1 **코픽스 관련 현황**

1. 코픽스 운영근거

□ **은행연합회(협회)와 9개은행간 협약**을 통해 마련한 **「코픽스 운용지침」**에 따라 매월 **산출 및 공시***

* 매월 15일경 협회 홈페이지에 잔액기준 코픽스 및 신규취급액 코픽스 2종 공시

2. 절차

1 9개은행 단계: 산출 및 제출

○ (산출) **은행**들은 금리조사표(한은 제출) 등을 기반으로 **코픽스 계산시 포함**되는 **수신상품별 금액 및 가중평균금리**를 산출

○ (자체검증) 은행들은 협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대차대조표 금리조사표 세부자료 등과 비교하여 **자체검증 실시**

○ (제출) 은행들은 **「코픽스 기초자료 입력시스템」**을 통해 **4개 기초정보***만 공시 직전일(매월 14일경)에 협회에 제출

* ① 월말 잔액합계, ② 잔액합계의 가중평균금리
③ 월중 신규취급액합계, ④ 신규취급액합계의 가중평균금리

2 협회 단계: 공시

○ (검증) **협회**는 은행이 입력한 **기초정보**가 전월과 비교하여 **변동폭이 과도***한 경우에만 **해당 은행에 검증을 요청**

* 잔액(전월비 ±15%), 신규취급액(전월비 ±70%), 가중평균금리(전월비 ±40bp)

○ (공시) **협회**는 홈페이지에 **매월 15일경 코픽스 공시**

3. 활용현황

□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기준금리**로 주로 활용중

<'12.6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중 코픽스 연동 비중(금감원)>

	총 원화대출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기업대출
비중	14%	34%	41%	0.2%

Ⅱ. 현행 코픽스 문제점

1. 은행별로 코픽스 산출·검증 절차가 상이

□ 코픽스 자체검증 등 **내부통제 표준절차가 없어 은행**에 따라 기초정보 검증 절차 및 내부통제 강도 등이 **상이**

2. 은행연합회 사전검증 효과가 미미

□ 협회는 '코픽스 운용지침'에 따라 은행에게 **4개 기초정보**만 받고 있어, 전월 대비 **과도하게 변동**된 경우만 은행에 **검증을 요청**

○ 그 결과 협회는 이번 공시오류와 같은 **은행 입력실수** 등을 **공시 前에 검증하지 못하는 상황**

3. 수정공시 관련 근거 및 절차가 부재

□ 현행 **'코픽스 운용지침'**은 **기초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어도 **수정하지 않도록** 규정

○ 따라서 이번과 같이 **은행의 입력실수 등 오류**가 발견되어도 지침상 **수정공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수정공시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정함에 따라 **수정공시 결정**과 관련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 마련이 **필요***

* 이번 코픽스 수정공시는 협회가 9개은행에 개별동의를 받아 시행

4.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미흡

□ 운용지침 개정, 절차 검증 등 코픽스 관련 주요사안에 대해 **협회**가 사안별로 **은행들과 개별협의**를 통해 **대응**

Ⅲ. 개선방안

◇ **코픽스(단기코픽스)** 관련 **은행 및 은행연합회**의 **사전검증 강화**

○ **업계 자율**로 **코픽스** 관련 **내부통제 표준절차** 마련

○ 공시 前 **은행연합회의 사전검증** 강화

◇ 은행연합회 내 **독립적인 「코픽스 관리위원회(가칭)」** 신설

○ 위원회가 **코픽스(단기코픽스) 수정공시** 여부 **심의**

○ 위원회에서 **코픽스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

◇ **코픽스(단기코픽스) 내부통제 준수** 등과 관련 **사후검사 강화**

1. 내부통제 표준절차를 마련하여 은행 자체 검증강화

□ (현행) **은행별**로 금리 산출, 자체검증, 제출 등의 절차가 **상이**

□ (개선방안)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의 **코픽스(단기코픽스) 내부통제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은행 내규**에 반영

* 현재 CD금리는 금투협 주관으로 금리제출 기본원칙 마련중(8.22일 발표)
* 英 LIBOR 개혁 최종안(9.28)에도 기초금리 제출 관련 행동규범 마련 포함

○ 코픽스 검증 등과 관련 **은행들이 최소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내부통제 절차**에 반영하여 **오류 발생**을 **최소화**

< 표준절차에 포함되는 검증강화 내용(예시, 은행연합회) >

① 협회 제출 前에 은행이 산출한 코픽스 관련 정보와 **재무상태표·금리조사표 세부자료** 등과 **비교**하여 **자체검증 강화**

② 코픽스 관련 정보를 **산출담당자(실무자)가 입력**하고 나서, **확인책임자(팀장급)**가 **확인한 후에 협회에 제출**

③ 산출한 코픽스 정보를 부서장(부장급)에게 **사전보고**하고, 정보입력後 사전 보고자료와 입력자료를 **사후보고**하여 **부서장 확인**

2. 협회 사전검증체계 강화

□ (현행) 은행연합회는 은행이 제출한 4개 기초정보가 전월에 비해 **변동폭이 과도한 경우**에만 **은행에 검증**을 요청

□ (개선방안) 은행들이 **코픽스(단기코픽스) 기초정보** 뿐만 아니라 **기초정보 산출을 위한 세부자료***도 **공시 前****에 **협회**에 전산 **제출**

* 코픽스 산출시 포함되는 수신상품별 조달금액 및 금리

** 코픽스 관련 자료(→매월 14일경), 단기코픽스 관련 자료(→ 매주 화요일)

< 코픽스 공시 전 은행이 협회에 제출하는 자료 개선 前後 비교 >

개선 前	개선 後
○ 4개 기초정보 수치만 제출	○ 4개 기초정보(현행과 동일) ○ **(신설) 코픽스 산출 관련 세부정보*** * 수신상품별 조달금액 및 금리

○ **협회**는 전산시스템(코픽스 자료 입력시스템)을 통해 **은행이 제출한 세부자료**를 기초로 **코픽스 수치를 별도로 산출**하고,

- 이를 **은행이 입력한 수치와 교차검증***한 후 공시

* 은행의 입력·계산 실수 등을 협회가 공시 전에 검증 가능

3. 「코픽스 관리위원회(가칭)」 신설

□ (현행) 협회 및 은행간 체결한 COFIX 운용지침 상 **수정공시**는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 **수정공시** 관련 **객관적인 기준 및 결정절차** 등이 **없는 상황**

○ 또한, **코픽스(단기코픽스)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논의 절차가 없어** 협회와 은행 등이 사안별로 결정

* 예) 은행이 신규 개발한 수신상품을 코픽스(단기코픽스) 산정대상에 포함시킬 지 여부, 코픽스(단기코픽스) 운용지침 개정 등

□ (개선방안) 은행연합회 내 별도의 **「코픽스 관리위원회(가칭)」 신설**(협회, 은행 등에 독립적인 민간위원회로 설치)

○ 위원회는 **학계,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및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처 관계자** 등 **5~7인**으로 구성(위원장은 민간인 중 1인이 담당)

○ **위원회**는 **수정공시 기준, 수정공시 여부, 운용지침 개정** 등 코픽스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 등을 담당

< 「코픽스 관리위원회(가칭)」의 역할(예시) >

① 코픽스(단기코픽스) **운용지침 개정사항**에 관한 **심의**
② 수정공시 기준 및 수정공시 여부 등 **수정공시 관련 심의**
③ 코픽스(단기코픽스) **검증절차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완방안 권고
④ 은행 신규상품 개발시 **코픽스(단기코픽스) 산정대상에 포함 여부 심의**
⑤ 기타 코픽스(단기코픽스) 운영에 관한 권고 및 자문

○ 위원회는 **금년중 구성을 완료**하고, **'13년초**부터 **운영**

4. 사후검사 강화

□ **코픽스(단기코픽스)** 관련 **내부통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후검사** 실시(금감원)

○ 특히, 이번 오류사태와 관련 **소비자 피해방지 조치, 내부통제 강화** 등이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집중검사** 실시(금감원, 금년중)

5. 지표금리 개선 지속 추진

□ **관계기관 합동TF*** 주관으로 코픽스, CD금리, 코리보 등 **기준금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

*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기재부·한은·금감원, 학계 전문가, 연구기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운영중(7.19~)

Ⅳ. 추진계획

◇ 추가적인 **코픽스 공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을 가급적 조기**에 **적용 완료**할 계획

○ 금년중 도입되는 **단기코픽스**도 신뢰성 제고를 위해 **同 개선방안**을 **적용**할 계획

추진과제	조치 필요사항	주관	일정
1. 표준절차 마련	**코픽스(단기코픽스) 내부통제 표준절차** 마련	은행연합회, 9개은행	10월중
	은행별 내규에 반영	9개은행	11월중
2. 협회 사전검증 강화	은행이 협회에 제출할 코픽스·단기코픽스 **세부자료 선정**	은행연합회, 9개 은행	10월중
	코픽스·단기코픽스 세부자료 **전송시스템 개선**	은행연합회, 9개 은행	금년중
3. 코픽스 관리위원회 신설	**위원회 설치** 및 **수정공시** 관련 **코픽스 운용지침 개정**	은행연합회	11월중
	위원회 구성	은행연합회 등	금년중
	위원회 활동 개시	코픽스 관리위원회	'13년초
4. 사후검사 강화	**코픽스·단기코픽스 내부통제 절차 준수** 등 **정기검사 실시**	금융감독원	수시
	코픽스 내부통제 강화 등과 관련 **집중검사**	금융감독원	금년중
5. 지표금리 개선방안 지속 마련	지표금리 관련 **제도개선** 추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TF	금년말

참고 2 코픽스 제도개선 전후 비교

구분		현행	개선
공시前	은행	• 은행별로 코픽스 산출 검증, 제출 등 절차가 상이	• **9개은행**이 **내부통제 표준절차**에 규정된 **검증** 준수
		• 은행이 코픽스 관련 기초정보 4개*만 협회에 제출 * 신규취급총액 및 가중평균금리, 잔액총액 및 가중평균금리	• **기초정보**와 함께 코픽스 산출 관련 **세부정보***도 제출 * 코픽스 산출시 포함되는 수신상품별 조달금액 및 금리
	협회	• 전월과 비교하여 변동폭이 과도한 경우만 사전검증 가능	• 세부정보를 기초로 **수치를 자동산출**하여 **은행 입력수치**와 **공시前 교차검증** * 은행의 입력오류 실수 등 방지
공시 당일	협회	• 매월 15일경 공시	左同
공시後	금융감독원	• 은행업무 전반의 내부통제 준수 여부 검사 실시	• **코픽스·단기코픽스** 관련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사후검사**
수정공시	코픽스 관리위원회	• COFIX 운용지침 상 **수정공시가 불가능**	• **코픽스 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수정공시 기준 및 수정공시 여부** 등 심의
코픽스 관련 사안	코픽스 관리위원회	• 은행연합회에서 사안별로 은행과 협의하여 결정	• **코픽스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 * 운용지침 개정, 신규상품의 코픽스 산정대상 포함 여부 등

이 운 룡 의원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1. 기술신용평가 관련

1-1.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자격 요건, 인허가 절차

□ 현재 TCB 자격은 **인력요건***을 완비하여 **'기술신용정보 산출 및 제공'을 겸업 신고한 신용조회회사**에게 주어짐

* 기술거래사, 변리사, 기술사, 3년이상 연구소 근무 연구원 또는 3년이상 기술평가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등 **전문가 10명 이상**

○ 금감원은 적절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신용조회회사의 TCB 신고를 수리**하고 있음

□ 앞으로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14.6.20. 박대동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 신용조회회사 외에 **특허·회계법인도 적정 요건을 구비**할 경우 **TCB**가 될 수 있음

1-2. 기술신용평가 수수료가 기술평가 난이도와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100만원으로 책정된 사유

□ 기술신용평가 수수료는 은행과 기술신용평가기관(TCB)간 협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임

1-3. 기술정보 DB(TDB) 구축시 대학 보유 특허 및 기술이 누락된 사유

□ 현재 대학이 보유한 특허의 경우, 특허청에 등록된 약 63,000 여건의 특허 정보를 TDB에서 제공하고 있음

○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대학 보유 기술은 향후 대학들과 협약 등을 통해 TDB에 집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1-4. 대학보유 특허 및 기술을 기술신용평가 제도와 연계 활용하기 위해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TCB 역할 부여에 대한 금융위원회 검토 의견

□ 앞으로 **'기술신용조회업'을 신설**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14.6.20. 박대동의원 발의)이 **통과**되면,

○ 신용조회회사 외에 **특허·회계법인도 적정 요건을 구비**할 경우 **TCB**가 될 수 있음

○ 법 개정 과정에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등도 일정 요건 충족시 TCB로 인가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해 보겠음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2. 은행별 기술금융 전담 조직 운영 현황 (신설 계획 포함)

□ 금융감독원에서 작성하여 제출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3.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추진 관련 (추진목표, 일정, 세부 추진성과, 성과미비 사유)

추진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일정(당초)	추진상황 및 성과 (성과 미비사유)
1. 유동성 위기에 선제적 대응		
1 시장안정 P-CBO 발행	'13년 7월 ~ '14년 12월	'14년말까지 6.4조원 규모 P-CBO발행 계획 ⇒ '14.7월까지 약 3조원 가량의 P-CBO를 발행하여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 실시 ⇒ 기업들의 신청수요 및 회사채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를 '15년말까지 연장 운영하여 유동성 지원 추진
2.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 완화		
1 하이일드펀드 세제 지원	'13년 4/4분기	'14.1.2.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확정 이후 '14.7월말까지 1.1조원 규모 하이일드펀드 조성 ⇒ 과거 조성된 하이일드펀드*와 비교할 때 조성 속도는 순조로운 편 * '07년 Junk-Bond 펀드는 3년간 7,500억원 조성 ⇒ 하이일드펀드는 현재까지 0.4조원 규모의 비우량(BBB+) 회사채를 매입 ⇒ 하이일드펀드 조성이 본격화된 5월 이후 비우량회사채 총발행 규모*가 증가 * 회사채 총발행(억원) : ('14.3)250 ('14.4)618 ('14.5)1935 ('14.6)1457 ('14.7)2309

추진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일정(당초)	추진상황 및 성과 (성과 미비사유)
2 QIB 제도개선	'13년 3/4분기	'13.11월 근거규정 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13.12월) ⇒ '13년 동양사태 이후 비우량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면서 제도활용이 미흡하나, 금융투자협회에 제도 문의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등 활용가능성은 상존
3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13년 4/4분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13.11.13)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채권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또는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사채권을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영 §87, §99, §109)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 등급 이내의 신용등급 이내일 것 등(금투업규정에서 규정)
4 유동화 증권 발행 제도 개선	'13년 4/4분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 ⇒ 건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3. 회사채 시장의 인프라 개선		
1 신용평가제도 개선사항 모니터링 및 필요시 추가 보완방안 추진	'13년 3/4분기	신평사 검사실시 및 독자신용등급 도입 추진 등 ⇒ '13.11월~'14.1월까지 국내 3대 신평사(한신평, 한기평, 나이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후조치 진행 중 ⇒ '13.8월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제, 제재근거가 강화된 자본시장법을 개정·시행 ⇒ 독자신용등급 도입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검토 중

추진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	일정(당초)	추진상황 및 성과 (성과 미비사유)
2 수요예측 제도 개선	'13년 8월	수요예측 제도운영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 (i) 수요예측시 발행사의 공정한 금리제시 유도 (ii) 증권사의 과도하게 낮은금리 제시관행 제한 등 ⇒ 회사채 발행금리 합리화 및 금리투명성 제고
3 유통시장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13년 4/4분기	채권유통시장 개선 T/F 운영 및 개선과제 검토
4 사채관리회사 제도 보완	'13년 3/4분기	사채관리회사 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 * ①커버넌트 조항의 신고서기재 충실, ② 주관회사의 커버넌트 내용에 대한 적정성 의견 기재, ③ 사채관리회사 손해배상책임 명시 등 ⇒ 발행사·투자자간 정보격차 해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4. 금융관행 실태조사 보고서

☐ 별도제출

이운룡 의원(새누리당)

5. 구속성 예금 규제 변천 연혁
- 도입연도, 관렵 법·규정·고시 변경일, 변경목적 및 주요내용

□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구속행위 규제 주요 연혁

도입 시기	규제 형식*	개정일	목적 및 주요 내용	비고
'98.4월	감독규정	'98.4.1.	○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 마련 - 차주의 자금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행위, 금융기관 이용자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6조
'00.12월	시행세칙	'00.12.20.	○ 예금의 구속행위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중소기업에 대해 여신실행일 전후에 예금 등을 수취하거나, 공제에 가입시키거나, 양도성예금증서·금융채·환매조건부채권 등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행위 -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하여 예금 등 유가증권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 실질적으로 여신거래처의 자금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67조
'06.12월	시행세칙	'06.12.28.	○ 예금의 구속행위 유형 명확화	제67조
'09.9월	시행세칙	'09.9.30	○ 은행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및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속성행위 규제제도의 개선을 추진 - 구속성행위 기준을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액의 1%를 초과(이하 '1% 규제')하는 예금 등으로 구체화	제67조
'10.11월	은행법	'10.11.18	○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상향 입법)	제52조의2
	시행령	'10.11.18	○ 불공정영업행위의 내용 및 은행이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상향 입법)	제24조의4
	감독규정	'10.11.18	○ 불공정영업행위 대상을 보험, 펀드까지 확대	제88조
	시행세칙	'10.11.18	○ 1% 규제 대상을 신용이 낮은 개인으로 확대	제67조
'12.11월	시행세칙	'12.11.26.	○ 1%규제가 적용되는 예금등의 범위, 월수입금액 산정기준 및 예외인정 사유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선불카드 등을 1%규제 적용대상으로 명시 - 월수입금액 산정기준 명시 - 1%규제의 예외인정 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	제67조
'14.2월	시행령	'14.2.11.	○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은행상품의 가입·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제24조의4
	감독규정	'14.2.11.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대표자 등에 대해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예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및 보험·집합투자증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제88조
	시행세칙	'14.2.11.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제88조제6항에서 구속행위 간주규제 제도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된 예외인정 기준 및 월수입금액 산출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 - 구속행위 간주규제의 예외 인정대상의 정비 - '1%규제' 적용대상 은행상품에 대한 월수입금액 산출기준의 정비 - 실질적 규제에 대한 관련 조항 정비	제67조

* 시행령 : 은행법시행령, 감독규정 :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